

발 간 등 록 번 호
11-1262000-000295-10

대한민국 외교문서요약집

(구 외교사료해제집)

1980

외 교 부

| 일러두기 |

1. 본 책자는 공개된 외교문서의 내용을 요약 수록한 것으로, 책자의 성격을 보다 적절히 반영하기 위하여 2022년부터 책자의 제목을 「외교사료해제집」에서 「외교문서요약집」으로 변경하였다.
2. 본 책자는 2011년에 공개된 1980년도 외교문서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각 문서철별 내용을 요약·기술하고 해당 문서철에 대한 최대한의 기본정보를 제공 하도록 노력하였다.
3. 요약문은 각 외교문서철의 주제순(분류번호순)으로 수록하였으며, 각 요약문 첫머리에 문서철 제목, 생산연도, 생산과와 함께 마이크로필름(MF) 번호 및 면수 등의 정보를 표기하였다.
4. 문서철 제목은 생산 당시 사용했던 국가명, 용어 등을 그대로 표기하였고, 요약문은 현재 시점의 국가명으로 변경, 표기하였다.
 - 단, 요약문에서 문서철에 수록된 자료 언급 시에는 당시 자료 제목을 그대로 표기
5. 본 책자는 목차, 본문, 부록(1980년 외교일지)으로 구성되어 있다.

1980년도

001	전두환 제11대 대통령 당선 및 취임	28
002	제11대 전두환 대통령 취임식, 1980.9.1.	29
003	재외공무원 자녀 기숙사 건립 및 운영. 전3권 (V.1 1974-76)	30
004	재외공무원 자녀 기숙사 건립 및 운영. 전3권 (V.2 1977)	31
005	재외공무원 자녀 기숙사 건립 및 운영. 전3권 (V.3 1978)	32
006	Noiville, Jean-Francois 프랑스 외무성 아주국장에 대한 서훈	33
007	김대중 내란 음모사건	34
008	1980.5.18. 광주사태 [민주화운동] 관련 해외 반한단체 동향 및 홍보활동. 전3권 (V.1 해외 반한단체 동향 분석 및 대책)	35
009	1980.5.18. 광주사태 [민주화운동] 관련 해외 반한단체 동향 및 홍보활동. 전3권 (V.2 재외공관 활동보고)	36
010	1980.5.18. 광주사태 [민주화운동] 관련 해외 반한단체 동향 및 홍보활동. 전3권 (V.3 6.12. 대통령 특별담화 관련 조치사항 및 해외반응)	37
011	1980.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자료	38
012	김대중 재판에 대한 각국 반응. 전6권 (V.1 대통령 보고)	39
013	김대중 재판에 대한 각국 반응. 전6권 (V.2 독일, 7-10월)	40
014	김대중 재판에 대한 각국 반응. 전6권 (V.3 독일, 11-12월)	41
015	김대중 재판에 대한 각국 반응. 전6권 (V.4 이탈리아)	42
016	김대중 재판에 대한 각국 반응. 전6권 (V.5 기타 서구지역)	43
017	김대중 재판에 대한 각국 반응. 전6권 (V.6 북구지역)	44
018	주한 외교단의 김대중 공판 방청 문제	45
019	민청학련 사건 관련 시인 김지하 구속·석방 문제	46
020	한국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기구 NGO 및 기타 외국단체 반응	47
021	김대중 및 광주사태 관련자 등에 대한 진정 및 조치. 전2권 (V.1 I)	48
022	김대중 및 광주사태 관련자 등에 대한 진정 및 조치. 전2권 (V.2 II)	49
023	한국 국내정세에 대한 호주 반응	50
024	한국 국내정세에 대한 캐나다 반응	51
025	한국 인권문제에 대한 캐나다 관계기관의 문의	52
026	한국 국내정세에 관한 프랑스의 반응	53
027	한국 국내정세에 대한 독일 반응	55
028	1980.5.18. 광주사태 [민주화운동] 관련 교황청 반응	56
029	김대중 납치사건 및 복권에 대한 일본의 반응	57
030	김대중 납치사건 관련자 최세현 전 주일본공사 및 윤영로 주일본대사관 참사관 문제	58
031	김대중 내란 음모사건에 관한 일본의 반응. 전4권 (V.1 7-9월)	59
032	김대중 내란 음모사건에 관한 일본의 반응. 전4권 (V.2 10-11월)	60
033	김대중 내란 음모사건에 관한 일본의 반응. 전4권 (V.3 12월)	61
034	김대중 내란 음모사건에 관한 일본의 반응. 전4권 (V.4 11.21. 스키 수상 발언 이후 상황 보고 및 일지)	62
035	김대중 내란 음모사건: 일본 내 반한집회	63
036	김대중 내란 음모사건: 일본 노동조합 총평회의의 한국상품 하역 거부 및 불매운동	64
037	김대중 내란 음모사건: 일본 언론 반응. 전2권 (V.1 7-10월)	65
038	김대중 내란 음모사건: 일본 언론 반응. 전2권 (V.2 11-12월)	66
039	한국 국내정세에 대한 뉴질랜드 반응	67
040	한국 국내정세에 대한 미국 반응. 전6권 (V.1 미국 정부의 반응, 5-12월)	68
041	한국 국내정세에 대한 미국 반응. 전6권 (V.2 미국 의회 반응, 2-6월)	69
042	한국 국내정세에 대한 미국 반응. 전6권 (V.3 미국 의회 반응, 7-9월)	70
043	한국 국내정세에 대한 미국 반응. 전6권 (V.4 미국 의회 반응, 10-12월)	71

044	한국 국내정세에 대한 미국 반응. 전6권 (V.5 재미국 동포 반응)	72
045	한국 국내정세에 대한 미국 반응. 전6권 (V.6 언론보도)	73
046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 피고인에 대한 구명운동	74
047	미국 국무부의 한국 인권문제 보고서	75
048	미국 평화봉사단원의 1980.5.18. 광주사태 [민주화운동] 관련 발언문제	76
049	한국 국내문제와 관련한 미국 의회 의원의 서한	77
050	한국정세에 대한 중동 및 아프리카지역의 반응	78
051	한국정세에 대한 아주지역 반응	79
052	한국정세에 대한 구주지역 국가 반응	80
053	1980.5.18. 광주사태 [민주화운동] 관련 중남미 반응	81
054	의병대장 김상태 유품 인수	82
055	주한 국제기구 직원 및 전문가의 대우문제	83
056	주한 외교관에 대한 면세문제	84
057	주한 독일 전문가의 특권 및 면세문제	85
058	주한 외교단지 조성사업 추진	86
059	한국의 대캄푸차 정책	87
060	국제기구에서의 중국대표권 문제에 대한 한국의 입장	88
061	이란·이라크 사태 관련 중동문제 특별위원회 회의	89
062	한국의 대일본 외교정책	90
063	한국의 대PLO(팔레스타인해방기구) 정책	91
064	미국 Reagan 행정부 수립에 따른 한·미국 외교관계 고찰	92
065	대아프리카 외교 강화방안	93
066	1980년대 대구주 외교 강화방안	94
067	대중남미 외교 강화방안	95
068	미국 국무부의 한국 관계 브리핑	96
069	중공·소련의 대한반도 태도	97
070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	98
071	미국의 대외정책	99
072	Carter, Jimmy 미국 대통령 연두교서	100
073	United Arab Emirates(UAE)의 국문 명칭 개칭	101
074	한·버마 관계 증진방안	102
075	한·중국 정부일반	103
076	주프랑스대사관 피습사건	104
077	Schneiss, Paul 독일 목사 입국 금지	105
078	일본 총평계 노조 간부 방한 문제	106
079	주일본 각 공관에 대한 경계 강화	107
080	한·일본 정부일반	108
081	주한 미국대사관 공보실(ICA)의 'For the Record' 배포 문제	109
082	미국·중국 관계	110
083	일본·중공 관계	111
084	미국·중공 관계	112
085	Brown, Harold 미국 국방장관 중공 방문, 1980.1.5.-13.	113
086	일본·소련 관계	114
087	일본·미국 관계	115
088	Brezhnev, Leonid 소련 공산당 서기장 인도 방문, 1980.12.8.-12.	116
089	국교수립 -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전2권 (V.1 1974-79)	117
090	국교수립 및 단절 - 기니. 전2권 (V.1 1977-79)	118
091	국교수립 및 단절 - 기니. 전2권 (V.2 1980)	119

092	국교수립 - 키리바시	120
093	국교수립 - 나이지리아. 전4권 (V.1 1961-77)	121
094	국교수립 - 나이지리아. 전4권 (V.2 1978)	122
095	국교수립 - 나이지리아. 전4권 (V.4 1980)	123
096	대소련 외교관 접촉	124
097	국교단절 - 세이셸, 1980.5.28.	125
098	국교수립 - 바누아투	126
099	남태평양도서 제국에 대한 외교기반 확대 및 북한침투 저지 대책	127
100	재외공관 설치 - 아랍에미리트연합국	128
101	재외공관 설치 - Montreal(캐나다)총영사관	129
102	재외공관 설치 - 피지, 1980.12.17.	130
103	주München(독일)총영사관 설치 검토	131
104	주이란대사관 직원 및 가족 일부 철수	132
105	주센다이·시모노세끼·나하(일본)영사관의 총영사관 승격	133
106	재외공관 설치 - 모리타니	134
107	재외공관 설치 - 나이지리아	135
108	우간다 주재 공관원 및 교민 비상대피	136
109	재외공관 설치 - Anchorage(미국)총영사관	137
110	주한공관 설치 - 노르웨이	138
111	주한공관 설치 - 파키스탄총영사관(서울), 1980.6.25.	139
112	주한공관 설치 - 페루	140
113	태평양지역 공동체 구상. 전5권 (V.1 1-2월)	141
114	태평양지역 공동체 구상. 전5권 (V.2 3-5월)	142
115	태평양지역 공동체 구상. 전5권 (V.3 6-9월)	143
116	태평양지역 공동체 구상. 전5권 (V.4 10-11월)	144
117	태평양지역 공동체 구상. 전5권 (V.5 12월)	145
118	ASEAN(동남아국가연합)의 대외관계 및 동남아 정세	146
119	한·ASEAN(동남아국가연합) 경제계 지도자 합동회의, 제2차. Kuala Lumpur, 1980.11.6.-7.	147
120	SPC(남태평양위원회) 및 SPF(남태평양협의회의) 회의	148
121	ASEAN(동남아국가연합) 외상회의, 제13차. Kuala Lumpur, 1980.6.25.-26.	149
122	AIPO(ASEAN의원연합기구) 총회, 제3차. Jakarta, 1980.9.2.-6.	150
123	ASPAC(아시아태평양이사회) 사회문화센터 각국의 탈퇴 경위 및 해체문제	151
124	ASPAC(아시아태평양이사회) 사회문화센터 실무회의, 제42차. 서울, 1980.2.12.	152
125	ASPAC(아시아태평양이사회) 사회문화센터 집행위원회 정기회의, 제12차. 서울, 1980.4.18.	153
126	ASPAC(아시아태평양이사회) 사회문화센터 집행위원회 정기회의, 제13차. 서울, 1980.6.30.	154
127	ASPAC(아시아태평양이사회) 사회문화센터 장래 문제 검토	155
128	ASEAN(동남아국가연합) - EC(구주공동체) 관계	156
129	OAS(미주기구) 총회, 제10차. Washington D.C., 1980.11.19.-27.	157
130	OAS(미주기구) 이사회 회의	158
131	EC(구주공동체) 정상회담	159
132	NORDIC(북구협력기구)	160
133	EC(구주공동체) 외상회의	161
134	EC(구주공동체) 아주국장 회의 및 정부총국장 회의(정치위원회)	162
135	아랍 정상회담, 제11차. Amman(요르단), 1980.11.25.-27.	163
136	이슬람 외상회의, 제11차. Islamabad(파키스탄), 1980.5.17.-22.	164
137	아프리카 지역협력기구 및 공동체 회의	165
138	AAPSO(아시아아프리카인민단결기구) 반동회의 25주년 기념총회. Colombo(스리랑카), 1980.5.23.-25.	166
139	OAU(아프리카단결기구) 정상회담, 제17차. Freetown(시에라리온), 1980.7.1.-4. 전2권 (V.1 사전준비)	167

140	OAU(아프리카단결기구) 정상회담, 제17차. Freetown(시에라리온), 1980.7.1.-4. 전2권 (V.2 결과보고)	168
141	신정부 승인 - 볼리비아	169
142	한국인 원폭피해자 구호	170
143	베트남 억류 공관원 석방 교섭(대미국)	171
144	베트남 억류 공관원 석방 교섭(대스웨덴)	172
145	베트남 억류 공관원 석방 교섭(대제네바)	173
146	베트남 억류 공관원 석방 교섭(대태국)	174
147	베트남 억류 공관원 석방 교섭(대프랑스)	175
148	베트남 억류 공관원 석방 교섭(대유엔)	176
149	베트남 억류 공관원 석방 교섭(청와대 보고 및 서한)	177
150	베트남 억류 공관원 석방	178
151	한·일본 간의 교환 서신	179
152	미국 주요인사의 한국 관계 연설문	180
153	한·말레이시아 정책협의회, 제1차. 서울, 1980.5.12.	181
154	한·영국 정책협의회, 제2차. 서울, 1980.10.8.-11. 전6권 (V.1 사전교섭)	182
155	한·영국 정책협의회, 제2차. 서울, 1980.10.8.-11. 전6권 (V.2 개최준비)	183
156	한·영국 정책협의회, 제2차. 서울, 1980.10.8.-11. 전6권 (V.3 결과보고)	184
157	한·영국 정책협의회, 제2차. 서울, 1980.10.8.-11. 전6권 (V.4 경제·통상관계 회의록)	185
158	한·영국 정책협의회, 제2차. 서울, 1980.10.8.-11. 전6권 (V.5 협의회 자료)	186
159	한·영국 정책협의회, 제2차. 서울, 1980.10.8.-11. 전6권 (V.6 관계부처 자료)	187
160	동부아프리카지역 국가 정상회담	188
161	공관장회의, 1980년도 - 구주지역. Madrid, 1980.4.7.-9. 전4권 (V.1 기본문서)	189
162	공관장회의, 1980년도 - 구주지역. Madrid, 1980.4.7.-9. 전4권 (V.2 공관자료 I)	190
163	공관장회의, 1980년도 - 구주지역. Madrid, 1980.4.7.-9. 전4권 (V.3 공관자료 II)	191
164	공관장회의, 1980년도 - 구주지역. Madrid, 1980.4.7.-9. 전4권 (V.4 공관자료 III)	192
165	공관장회의, 1980년도 - 아주·미주지역. 서울, 1980.3.11.-18. 전3권 (V.1 사전준비)	193
166	공관장회의, 1980년도 - 아주·미주지역. 서울, 1980.3.11.-18. 전3권 (V.2 결과보고)	194
167	공관장회의, 1980년도 - 아주·미주지역. 서울, 1980.3.11.-18. 전3권 (V.3 자료)	195
168	공관장회의, 1980년도 - 중동·아프리카지역. Geneva, 1980.4.3.-5. 전2권 (V.1 기본문서)	196
169	공관장회의, 1980년도 - 중동·아프리카지역. Geneva, 1980.4.3.-5. 전2권 (V.2 자료)	197
170	미국지역 명예영사 회의. Washington D.C., 1980.11.13.-15.	198
171	총영사회의, 1980년도 - 미국지역. Seattle, 1980.7.1.-2.	199
172	한반도 관계 세미나	200
173	아시아태평양지역 정세 간담회, 제4차. Washington D.C., 1980.1.16.-17.	201
174	한·일본 협력위원회	202
175	최규하 대통령 사우디아라비아 및 쿠웨이트 방문, 1980.5.10.-16. 전11권 (V.1 기본계획)	203
176	최규하 대통령 사우디아라비아 및 쿠웨이트 방문, 1980.5.10.-16. 전11권 (V.2 국별교섭: 사우디아라비아)	204
177	최규하 대통령 사우디아라비아 및 쿠웨이트 방문, 1980.5.10.-16. 전11권 (V.3 국별교섭: 쿠웨이트)	205
178	최규하 대통령 사우디아라비아 및 쿠웨이트 방문, 1980.5.10.-16. 전11권 (V.4 의전 I)	206
179	최규하 대통령 사우디아라비아 및 쿠웨이트 방문, 1980.5.10.-16. 전11권 (V.5 의전 II)	207
180	최규하 대통령 사우디아라비아 및 쿠웨이트 방문, 1980.5.10.-16. 전11권 (V.6 의전 III)	208
181	최규하 대통령 사우디아라비아 및 쿠웨이트 방문, 1980.5.10.-16. 전11권 (V.7 공동성명 및 합의문서안)	209
182	최규하 대통령 사우디아라비아 및 쿠웨이트 방문, 1980.5.10.-16. 전11권 (V.8 결과보고)	210
183	최규하 대통령 사우디아라비아 및 쿠웨이트 방문, 1980.5.10.-16. 전11권 (V.9 준비자료)	211
184	최규하 대통령 사우디아라비아 및 쿠웨이트 방문, 1980.5.10.-16. 전11권 (V.10 참고자료)	212
185	최규하 대통령 사우디아라비아 및 쿠웨이트 방문, 1980.5.10.-16. 전11권 (V.11 언론보도)	213
186	ZIAUR Rahman 방글라데시 대통령 방한 초청계획	214
187	Romano de Lopez Portillo, Carmen 멕시코 대통령 영부인 방한 초청계획	215

188	박동진 외무장관 인도 및 스리랑카 방문, 1980.3.27.-4.1. 전2권 (V.1 스리랑카)	216
189	박동진 외무장관 인도 및 스리랑카 방문, 1980.3.27.-4.1. 전2권 (V.2 인도 및 결과보고)	217
190	김동휘 외무차관 이란 방문계획	218
191	박동진 외무장관 일본 방문, 1980.4.16.-18. 전3권 (V.1 사전준비)	219
192	박동진 외무장관 일본 방문, 1980.4.16.-18. 전3권 (V.2 결과보고)	220
193	박동진 외무장관 모로코 및 튀니지 방문계획	221
194	박동진 외무장관 스페인 및 영국 방문, 1980.4.6.-11.	222
195	노신영 외무장관 아프리카 순방, 1980.11.15.-12.7. 전3권 (V.1 사전준비)	223
196	노신영 외무장관 아프리카 순방, 1980.11.15.-12.7. 전3권 (V.2 결과보고)	224
197	노신영 외무장관 아프리카 순방, 1980.11.15.-12.7. 전3권 (V.3 자료)	225
198	Peacock, Andrew S. 호주 외무장관 방한 초청계획	226
199	Forde, Henry de B. 바베이도스 외상 방한 초청계획	227
200	Jimenez Hijo, Ramon E. 도미니카공화국 외무장관 방한 초청계획	228
201	Florencio MAYE Ela Mangué 적도기네 외무장관 겸 군사최고평의회 제1부위원장 방한, 1980.8.18.-22. 전2권 (V.1 기본문서)	229
202	Florencio MAYE Ela Mangué 적도기네 외무장관 겸 군사최고평의회 제1부위원장 방한, 1980.8.18.-22. 전2권 (V.2 의전 및 자료)	230
203	Quam, S. E. 가나 외무차관 방한, 1980.10.25.-30.	231
204	Abdul Aziz HUSSEIN 쿠웨이트 국무원장관 겸 외무장관 직무대리 방한 초청계획	232
205	Fathulla JAMEEL 몰디브 외상 방한, 1980.5.5.-8.	233
206	Tupouto'a 통가 외상 [겸 국방장관] 방한, 1980.12.4.-7.	234
207	Gilmour, Ian 영국 국새상서 겸 외상 대리 방한, 1980.7.1.-5.	235
208	윤석헌 특사(주유엔대사) 에콰도르 방문, 1980.1.23.-26.	236
209	특별사절단 아프리카지역 순방, 1980.11.17.-12.13. 전2권 (V.1 사전준비)	237
210	특별사절단 아프리카지역 순방, 1980.11.17.-12.13. 전2권 (V.2 결과보고)	238
211	특별사절단 서남아 및 중동 순방, 1980.11.14.-12.4. 전2권 (V.1 사전준비)	239
212	특별사절단 서남아 및 중동 순방, 1980.11.14.-12.4. 전2권 (V.2 결과보고)	240
213	특별사절단 중미 순방, 1980.11.26.-12.16. 전2권 (V.1 사전준비)	241
214	특별사절단 중미 순방, 1980.11.26.-12.16. 전2권 (V.2 결과보고)	242
215	특별사절단 중남미지역 순방, 1980.11.23.-12.16. 전4권 (V.1 사전준비)	243
216	특별사절단 중남미지역 순방, 1980.11.23.-12.16. 전4권 (V.2 국별교섭)	244
217	특별사절단 중남미지역 순방, 1980.11.23.-12.16. 전4권 (V.3 결과보고)	245
218	특별사절단 중남미지역 순방, 1980.11.23.-12.16. 전4권 (V.4 감사서한 및 자료)	246
219	Chuba, Okadigbo 나이지리아 대통령 특별보좌관 방한, 1980.8.3.-7.	247
220	한·호주 의원친선협회 의원단 호주 방문, 1980.3.24.-30.	248
221	한·인도네시아 의원친선협회 의원단 인도네시아 방문, 1980.1.14.-21.	249
222	한·멕시코 의원친선협회 의원단 멕시코 방문, 1980.1.16.-19.	250
223	브라질 하원 의원단 방한, 1980.6.23.-28.	251
224	중국 입법위원단 방한, 1980.3.31.-4.7.	252
225	콜롬비아·한 의원친선협회 의원단 방한, 1980.6.9.-11.	253
226	프랑스 국회의원 방한	254
227	Sudreau, Pierre 프랑스 하원 의원 방한, 1980.11.3.-8.	255
228	인도네시아 국회 의원단 방한	256
229	이탈리아 상원 의원단 방한, 1980.9.21.-26.	257
230	일본 국회의원 방한	258
231	나이지리아 국회 의원단 방한	259
232	네덜란드 국회의원 방한	260
233	Freer, W. W. 뉴질랜드 노동당 의원 방한, 1980.5.2.-9.	261

234	Boontheng Thongswasdi 태국 하원의장 방한, 1980.4.27.-5.3.	262
235	영국 국회의원 방한	263
236	영국 IPU(국제의원연맹) 의원단 방한, 1980.2.23.-3.3.	264
237	미국 의회 의원단 방한	265
238	미국 하원 의원단 방한, 1980.1.6.-8.	266
239	Solarz, Stephen 미국 하원 의원 방한, 1980.7.12.-14. 전3권 (V.1 사전준비)	267
240	Solarz, Stephen 미국 하원 의원 방한, 1980.7.12.-14. 전3권 (V.2 결과보고)	268
241	Solarz, Stephen 미국 하원 의원 방한, 1980.7.12.-14. 전3권 (V.3 자료)	269
242	한·일본 의원안전보장협의회 총회, 제3차. 1980.4.27.-30.	270
243	한·일본 의원연맹 합동간사회의. 서울, 1980.5.2.	271
244	네덜란드·한 의원친선협회	272
245	이규호 전 국토통일원장관 독일 방문, 1980.5.20.-22.	273
246	유종하 외무부 미주국장 과테말라 방문, 1980.4.16.-17.	274
247	정세조사단 일본 방문, 1980.6.21.-27.	275
248	기우치(木内昭胤) 일본 외무성 아주국장 방한, 1980.6.9.-13.	276
249	일본 주요인사 방한	277
250	Thompson, Dudley 자메이카 국가보안상 방한계획	278
251	Kariuki, G. G. 케냐 대통령실 국무장관 방한, 1980.4.21.-26.	279
252	Olivares Santana, Enrique 멕시코 내무상 및 Farias, Luis M. 하원의장 비공식 방한, 1980.7.10.-12.	280
253	나이지리아 정책전략연구원 대표단 방한, 1980.10.19.-24.	281
254	Van Waarde, Andries 주Rotterdam(네덜란드) 명예총영사 방한, 1980.3.30.-4.8.	282
255	Godoy Figueredo, Victor M. 파라과이 외무성 국제기구국장 방한, 1980.7.7.-12.	283
256	SAYAH Mohamed 튀니지 수상실 장관 겸 PSD당 사무국장 방한 초청계획	284
257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부차관보 방한	285
258	Kell, Raymond M. 미국 주Portland 명예총영사 방한, 1980.1.12.-19.	286
259	윤하정 주호주대사 피지 독립 10주년 기념행사 참석, 1980.10.8.-13.	287
260	연하구 주네덜란드대사 Beatrix 네덜란드 여왕 즉위식 참석, 1980.4.29.-30.	288
261	현시학 주멕시코대사 니카라과 혁명 1주년 기념식 참석, 1980.7.17.-21.	289
262	최완복 국토통일원장관 Belaunde Terry, Fernando 페루 대통령 취임식 참석 및 에과도르 방문, 1980.7.25.-8.2.	290
263	아프리카지역 특사 전두환 제11대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방한	291
264	박충훈 국무총리 서리 오히라(太平) 일본 수상 장례식 참석, 1980.7.8.-10.	292
265	북한의 대중공·소련 관계	293
266	독일의 대북한 무기 수출문제	294
267	북한·일본 관계	295
268	북한·소련 관계	296
269	북한·미국 관계	297
270	북한 인권에 대한 미국 하원 청문회	298
271	북한 체육계 인사 미국 입국	299
272	북한사절단 동남아 및 서남아 순방	301
273	북한사절단 및 인사 중남미 순방	303
274	Mohamed Hosni MUBARAK 이집트 부통령 북한 방문, 1980.1.10.-13.	304
275	일본 자민당 아시아아프리카 문제연구회 의원단 북한 방문, 1980.9.8.-18. 전2권 (V.1 2-4월)	305
276	일본 자민당 아시아아프리카 문제연구회 의원단 북한 방문, 1980.9.8.-18. 전2권 (V.2 8-11월)	306
277	미국인사 북한 방문	308
278	북한·일본 경제 관계	309
279	일본·북한 간 민간기업협정의 연장	310
280	일본의 대북한 전략물자 수출문제	311
281	북한 주체사상 라틴아메리카 세미나. Panama City, 1980.4.17.-19.	313

282	북한 주체사상 아시아지역 세미나. New Delhi, 1980.9.6.-7.	314
283	조선자주평화통일 국제연락위원회[조자통]의 유엔NGO(비전문기구) 등록 추진	315
284	조선자주평화통일 국제연락위원회[조자통] 구주지역 회의	316
285	1979.10.26. 및 12.12. 사태 이후 북한 동향	317
286	북한 노동당 제6차 전당대회. 평양, 1980.10.10.-14. 전3권 (V.1 기본문서)	318
287	북한 노동당 제6차 전당대회. 평양, 1980.10.10.-14. 전3권 (V.3 각국 언론보도 내용)	319
288	북한 일반	320
289	북한의 대미국 평화협정 제의	321
290	북한의 연방제 주장	322
291	Carter(미국)·Tito(유고슬라비아) 간 남북문제 해결노력. 전3권 (V.1 1977-78.3월)	323
292	Carter(미국)·Tito(유고슬라비아) 간 남북문제 해결노력. 전3권 (V.2 1978.4월)	324
293	Carter(미국)·Tito(유고슬라비아) 간 남북문제 해결노력. 전3권 (V.3 1978.5-80.3월)	325
294	북한의 남북한 총리회담 제의. 전3권 (V.1 기본문서)	326
295	북한의 남북한 총리회담 제의. 전3권 (V.2 미국·일본과의 협조 및 각국 반응)	327
296	북한의 남북한 총리회담 제의. 전3권 (V.3 참고자료)	329
297	남북한 간 우편교환 문제	330
298	1980년도 Moscow 올림픽대회: 남·북한 단일팀 구성문제	331
299	동구권의 인사교류 현황	332
300	대동구권 관계 개선	333
301	공산권 여행 허가 - 동구	334
302	비동맹 방송기구 회의, 제2차. Freetown(시에라리온), 1980.9.1.-5.	335
303	비동맹 수산관계 회의. Rome, 1980.12.15.-17.	336
304	비동맹 특별 각료회의 개최 추진. 전4권 (V.1 개최동향 및 대책, 2월-6.16.)	337
305	비동맹 특별 각료회의 개최 추진. 전4권 (V.2 개최동향 및 대책, 6.17.-7월)	338
306	비동맹 특별 각료회의 개최 추진. 전4권 (V.3 각국에 대한 교섭, 6.5.-17.)	339
307	비동맹 특별 각료회의 개최 추진. 전4권 (V.4 각국에 대한 교섭, 6.18.-7월)	340
308	일본의 안전보장 및 방위 문제	341
309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공표 일본관계 보고서 분석	342
310	일본·미국 안보협력	343
311	FY81 미국의 국제안보원조법	344
312	미국 국방관계	345
313	청와대 안보대책회의 자료	346
314	안보 정세보고	347
315	주한미군 병력 현황	348
316	주한미군 철수(감축)	349
317	바르샤바(WARSAW) 조약기구	350
318	ANZUS(태평양안보조약기구) 이사회, 제29차. Washington D.C., 1980.2.27.-28.	351
319	SOFA(주둔군지위협정) 한·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125차, 1978.5.4.	352
320	SOFA(주둔군지위협정) 한·미국 합동위원회 - 상무분과위원회	353
321	주한 UNC(유엔군사령부) 연례 보고서	354
322	캐나다 한국 참전 용사회	355
323	북한의 도발사건	356
324	국회 국방위원회 의원단 미국 방문, 1980.3.20.-26.	357
325	Chaverri Samudio, Johnny 코스타리카 공안 내무성 정보국장 방한, 1980.9.15.-21.	358
326	Brown, Harold 미국 국방장관 방한, 1980.12.13.	359
327	Meyer, Edward 미국 육군참모총장 방한, 1980.6.30.-7.3.	360
328	한·일본 간 해군순양훈련함 상호방문 문제	361
329	중공의 핵전력 개발 문제	362

330	NPT(핵확산금지조약) 평가회의, 제2차. Geneva, 1980.8.11.-9.5. 전4권 (V.1 제1-2차 준비회의)	363
331	NPT(핵확산금지조약) 평가회의, 제2차. Geneva, 1980.8.11.-9.5. 전4권 (V.2 제3차 준비회의)	364
332	NPT(핵확산금지조약) 평가회의, 제2차. Geneva, 1980.8.11.-9.5. 전4권 (V.3 제2차 평가회의)	365
333	NPT(핵확산금지조약) 평가회의, 제2차. Geneva, 1980.8.11.-9.5. 전4권 (V.4 제안 및 회의요록)	366
334	한·일본 간 군사협력	367
335	공무원 국제기구 파견 및 훈련	368
336	국제기구 분담금	369
337	유엔 공채 원리금 상환액 수령	370
338	유엔총회, 제35차. New York, 1980.9.16.-12.17. 전7권 (V.1 기본대책 I: 3-8월)	371
339	유엔총회, 제35차. New York, 1980.9.16.-12.17. 전7권 (V.2 기본대책 II: 9-10월)	372
340	유엔총회, 제35차. New York, 1980.9.16.-12.17. 전7권 (V.3 기조연설 중 한국문제 발언내용)	373
341	유엔총회, 제35차. New York, 1980.9.16.-12.17. 전7권 (V.4 본회의 및 위원회별 토의)	374
342	유엔총회, 제35차. New York, 1980.9.16.-12.17. 전7권 (V.5 제3위원회)	375
343	유엔총회, 제35차. New York, 1980.9.16.-12.17. 전7권 (V.6 종합보고서)	376
344	유엔총회, 제35차. New York, 1980.9.16.-12.17. 전7권 (V.7 국가별 지지교섭)	378
345	유엔 특별총회, 제11차. New York, 1980.8.25.-9.15.	379
346	유엔 긴급 특별총회, 제6차. New York, 1980.1.10.-14.	380
347	UNCOW(유엔전원위원회) 회의. New York	381
348	유엔안전보장이사회/아프가니스탄사태 토의, 1980.1.5.-9.	382
349	UNCHS(유엔인간거주위원회) 총회, 제3차. Mexico city, 1980.5.6.-15.	383
350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대한 유엔의 제재조치	384
351	주유엔 북한대표부 동향	385
352	Suy, Erik 유엔 사무차장 방한, 1980.8.8.-13.	386
353	Matane, Paulias 주유엔 파푸아뉴기니대사 방한, 1980.6.17.-23.	387
354	UNMCK(유엔기념묘지위원회)	388
355	팔레스타인인의 국제 유대의 날 기념행사	389
356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총회, 제36차. Bangkok, 1980.3.18.-29. 전2권 (V.1 기본계획)	390
357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총회, 제36차. Bangkok, 1980.3.18.-29. 전2권 (V.2 결과보고)	391
358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공업기술 인간주거 및 환경회의, 제4차. Bangkok, 1980.9.23.-29.	392
359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무역위원회 회의, 제23차. Bangkok, 1980.11.18.-24.	393
360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무역진흥기관장회의, 제2차. Bangkok, 1980.7.22.-28.	394
361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아시아·태평양지역 사회복지 및 사회개발장관회의, 제2차. Bangkok, 1980.10.9.-15.	396
362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해양환경 보호에 관한 지역회의. Bangkok, 1980.8.4.-8.	397
363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해운·운수·통신위원회, 제4차. Bangkok, 1980.12.16.-22.	398
364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RNAM(농기계지역망사업) 운영위원회, 제3차. Bangkok, 1980.11.25.-27.	399
365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TCG(무역협력단) 회의, 제3차. Bangkok, 1980.11.13.-14.	400
366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TNG(무역협상단) 회의, 제9차. Bangkok, 1980.11.17.	402
367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VMO(세계기상기구) 태풍위원회 회의, 제13차. Bangkok, 1980.12.2.-8.	403
368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방콕협정] 무역협상단 참가국 상임위원회: 제2차 라운드 협상 준비회의. Bangkok, 1980.9.23.-30.	405
369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방콕협정] 무역협상단 참가국 상임위원회, 제8차. Bangkok, 1980.4.30.-5.2. 전2권 (V.1 기본문서)	407
370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방콕협정] 무역협상단 참가국 상임위원회, 제8차. Bangkok, 1980.4.30.-5.2. 전2권 (V.2 회의자료)	408
371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방콕협정] 무역협상단 참가국 상임위원회, 제9차. Bangkok, 1980.12.15.-18.	409
372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표준기구장 정부 간 회의. Bangkok, 1980.11.3.-7.	410
373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정부 간 철도 그룹회의. Bangkok, 1980.8.25.-9.1.	411

374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농·공업에 관한 정부 간 회의. 동경, 1980.10.21.-27.	412
375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해운·운수·통신위원회, 제3차. Bangkok, 1980.1.21.-2.1.	413
376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YDP(세계장애자의 해)에 관한 기술회의 및 지역세미나. Bangkok, 1980.9.9.-15.	414
377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RMRDC(광물자원개발센터) 집행이사회, 제3차. 서울, 1980.9.11.-18.	415
378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TDB(무역개발이사회), 제21차. Geneva, 1980.9.15.-27.	416
379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기술이전위원회, 제3차. Geneva, 1980.11.17.-28.	417
380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중석위원회 회의, 제12차. Geneva, 1980.2.25.-29.	418
381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특혜특별위원회, 제9차. Geneva, 1980.5.27.-6.4.	419
382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해운위원회, 제9차. Geneva, 1980.9.1.-13.	420
383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국제화물 복합운송협약에 관한 유엔회의. Geneva, 1980.5.8.-27.	421
384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무형무역 및 무역금융위원회, 제9차. Geneva	422
385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제품위원회, 제9차. Geneva, 1980.7.14.-25.	423
386	Minai, Ahmed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특별자문관 방한, 1980.8.6.-10.	424
387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의 유엔 전문가로의 전환문제	425
388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 총회, 제3차. New Delhi(인도), 1980.1.21.-2.9.	426
389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IDB(공업개발이사회) 및 상임위원회 회의. Vienna	428
390	UNCSTD(유엔과학기술개발회의)/ICSTD(개발을위한 과학기술정부간위원회) 회의, 제1-2차. New York	429
391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방글라데시 공업개발협력을 위한 공업장관회의. Dacca(방글라데시), 1980.12.2.-5.	430
392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비료공업협의회, 제3차. Sao Paulo(브라질), 1980.9.29.-10.4.	431
393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의약품공업협의회, 제1차. Lisbon(포르투갈), 1980.12.1.-5.	432
394	UNDP(유엔개발계획) 집행이사회 특별회의. New York, 1980.2.11.-20.	433
395	UNEP(유엔환경계획) 이사회, 제8차. Nairobi(케냐), 1980.4.16.-29.	434
396	Khosla, Ashok UNEP(유엔환경계획) INFOTERRA(국제환경정보조체계)담당 국장 방한, 1980.12.17.-19.	435
397	Banerjee, Purnendu K. UNHCR(유엔난민고등판무관) 수석 자문관 방한, 1980.8.13.-18.	436
398	Volfing, Dle UNHCR(유엔난민고등판무관) 대외담당 국장 방한, 1980.9.17.-20.	437
399	UNICEF(유엔아동기금) 일반	438
400	WFP(세계식량계획) 분담금 서약회의. New York, 1980.2.21.	439
401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상주대표부 설치 검토	440
402	심명원 IAEA(국제원자력기구) 및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 상주대표 임명, 1980.5.28.	441
403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총회, 제23차. Montreal(캐나다), 1980.9.16.-10.7. 전2권 (V.1 기본문서)	442
404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총회, 제23차. Montreal(캐나다), 1980.9.16.-10.7. 전2권 (V.2 각국의 이사국 입후보 지지요청)	443
405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특별 항공운수 회의, 제2차. Montreal, 1980.2.12.-28.	444
406	IMCO(정부간해사자문기구) 소위원회 회의. London	445
407	IMCO(정부간해사자문기구) 해사안전위원회, 제42-43차. London	446
408	IMCO(정부간해사자문기구) 해양환경 보호위원회 회의, 제14차. London(영국), 1980.11.10.-14.	447
409	이병휘 위원 IAEA(국제원자력기구) 사무차장 입후보. 전2권 (V.1 사전준비 및 진행보고)	448
410	이병휘 위원 IAEA(국제원자력기구) 사무차장 입후보. 전2권 (V.2 각국 교섭)	450
411	IAEA(국제원자력기구) 원자력발전소 안전지침	451
412	IAEA(국제원자력기구) 총회, 제24차. Vienna(오스트리아), 1980.9.22.-26.	452
413	IAEA(국제원자력기구) 이사회. Vienna(오스트리아)	453
414	INFCE(국제핵연료주기평가회의). Vienna	454
415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비동맹 조정국 회의, 제1차. Buenos Aires(아르헨티나), 1980.6.30.-7.4.	455
416	WMO(세계기상기구) 아시아지역회의, 제7차. Geneva(스위스), 1980.6.2.-14.	456
417	WMO(세계기상기구) 기본조직 전문위원회 특별회의. Geneva(스위스), 1980.12.1.-10.	457
418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총회, 제21차. Belgrade(유고슬라비아), 1980.9.23.-10.28. 전5권 (V.1 사전준비)	458

419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총회, 제21차. Belgrade(유고슬라비아), 1980.9.23.-10.28. 전5권 (V.2 대책 및 훈령)	459
420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총회, 제21차. Belgrade(유고슬라비아), 1980.9.23.-10.28. 전5권 (V.3 국내 인권문제 제기 대비 각국 교섭)	460
421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총회, 제21차. Belgrade(유고슬라비아), 1980.9.23.-10.28. 전5권 (V.4 제109-110차 집행이사회)	461
422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총회, 제21차. Belgrade(유고슬라비아), 1980.9.23.-10.28. 전5권 (V.5 결과보고)	462
423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군비축소교육 세계대회. Paris(프랑스), 1980.6.9.-13.	463
424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아시아 뉴스네트워크 창설을 위한 자문회의. New Delhi(인도), 1980.12.15.-18.	464
425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아시아태평양지역 국내위원회 회의, 제7차. Wellington, 1980.7.6.-12.	465
426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통신개발에 관한 정부 간 회의. Paris, 1980.4.14.-21.	466
427	교황 요한 바오로 2세(John Paul II)의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본부 공식방문, 1980.6.2.	467
428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교육에 관한 지역자문회의. 평양, 1980.5.12.-17.	468
429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북한대표부 동향	469
430	공업소유권 보호를 위한 파리동맹 총회. 제5차. Geneva, 1980.9.22.-26.	470
431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 공업소유권에 관한 개발협력 상설위원회, 제7차. Geneva, 1980.4.28.-5.1.	471
432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 북한관계	472
433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이사회, 제78차. Rome, 1980.11.24.-12.5.	473
434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아시아태평양지역 총회, 제15차. New Delhi(인도), 1980.3.5.-13.	474
435	FAO(유엔식량농업기구)/CCP(상품문제위원회) 정부 간 연구단 회의. Rome	475
436	FAO(유엔식량농업기구)/CCP(상품문제위원회) 정부 간 육류연구단 회의, 제9차. Rome, 1980.12.8.-12.	476
437	FAO(유엔식량농업기구)/COFO(산림위원회) 회의, 제5차. Rome, 1980.5.26.-30.	477
438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식량농업 식량안보에 관한 비동맹 전문가 회의. Belgrade(유고슬라비아), 1980.7.7.-9.	478
439	FAO(유엔식량농업기구)/TCP(기술협력계획) 북한 농업 건축단 태국 및 이탈리아 방문	479
440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사업계획조사단 북한 방문, 1980.8.27.-9.16.	480
441	FAO(유엔식량농업기구)/APRACA(아시아태평양지역농업신용연합회) 총회, 제3차. Dacca(방글라데시), 1980.12.9.-12.	481
442	FAO(유엔식량농업기구)/CECAF(중동대서양수산위원회) 어업통계작업단 회의, 제1차. Dakar(세네갈), 1980.10.13.-17.	482
443	FAO(유엔식량농업기구)/IOFC(인도양수산위원회) 회의, 제6차. Perth(호주), 1980.2.25.-29.	483
444	FAO(유엔식량농업기구)/IPC(국제포플라위원회) 회의, 제16차. Izmir(터키), 1980.11.4.-12.	485
445	FAO(유엔식량농업기구)/IPFC(인도태평양수산위원회) 회의, 제19차. 교토(일본), 1980.5.21.-30.	486
446	FAO(유엔식량농업기구)/WECAFC(중서대서양수산위원회) 회의, 제3차. Havana(쿠바), 1980.11.18.-22.	487
447	FAO(유엔식량농업기구) 동남아·태평양지역 식물보호위원회 회의, 제12차. Chiangmai(태국), 1980.10.27.-11.3.	488
448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아시아·동남아시아 농업통계위원회, 제8차. Kathmandu(네팔), 1980.10.26.-31.	489
449	IFAD(국제농업개발기금) 총회, 제3차. Rome, 1980.1.15.-18.	490
450	IFAD(국제농업개발기금) 총회, 제4차. Rome, 1980.12.8.-11.	491
451	WHO(세계보건기구) 총회, 제33차. Geneva(스위스), 1980.5.5.-23. 전2권 (V.1 사전준비)	492
452	WHO(세계보건기구) 총회, 제33차. Geneva(스위스), 1980.5.5.-23. 전2권 (V.2 결과보고)	493
453	WHO(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회의, 제31차. Manila(필리핀), 1980.9.9.-15.	494
454	ITU(국제전기통신연합)/CCITT(국제전신전화자문위원회) 총회, 제7차. Geneva, 1980.11.10.-21.	495
455	유엔 인권위원회 회의, 제36차. Geneva, 1980.2.4.-3.14.	496
456	캄푸차인의 인도적 구호를 위한 공여국 회의. Geneva, 1980.5.26.-27.	497
457	인도지나 난민구호	498
458	유엔 세계여성회의. Copenhagen(덴마크), 1980.7.14.-31. 전6권 (V.1 사전교섭)	499
459	유엔 세계여성회의. Copenhagen(덴마크), 1980.7.14.-31. 전6권 (V.2 원칙제가 및 참가준비)	500
460	유엔 세계여성회의. Copenhagen(덴마크), 1980.7.14.-31. 전6권 (V.3 북한행동 대비 사전 저지 교섭)	501

461	유엔 세계여성회의. Copenhagen(덴마크), 1980.7.14.-31. 전6권 (V.4 결과보고)	502
462	유엔 세계여성회의. Copenhagen(덴마크), 1980.7.14.-31. 전6권 (V.5 NGO Forum)	503
463	유엔 세계여성회의. Copenhagen(덴마크), 1980.7.14.-31. 전6권 (V.6 여성지위향상을 위한 유엔사무총장 질의서, 1979)	504
464	유엔 마약위원회 관계회의	505
465	유엔 범죄예방 및 범죄자 처우에 관한 회의, 제6차. Caracas(베네수엘라), 1980.8.25.-9.5. 전4권 (V.1 사전준비 I: 1978-79)	506
466	유엔 범죄예방 및 범죄자 처우에 관한 회의, 제6차. Caracas(베네수엘라), 1980.8.25.-9.5. 전4권 (V.2 사전준비 II)	507
467	유엔 범죄예방 및 범죄자 처우에 관한 회의, 제6차. Caracas(베네수엘라), 1980.8.25.-9.5. 전4권 (V.3 사전준비 III)	508
468	유엔 범죄예방 및 범죄자 처우에 관한 회의, 제6차. Caracas(베네수엘라), 1980.8.25.-9.5. 전4권 (V.4 결과보고)	509
469	인종차별철폐협약 당사국회의, 제7차. New York, 1980.1.11.	510
470	인종차별철폐협약 가입에 따른 제1차 보고서 제출	511
471	IOE(국제수역사무국) 아시아지역회의, 제12차. Jakarta(인도네시아), 1980.11.10.-15.	512
472	IOE(국제수역사무국) 총회, 제48차. Paris, 1980.5.26.-31.	513
473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CCOP(아시아천해저광물자원공동탐사조정위원회) 회의, 제17차. Bangkok, 1980.11.4.-17.	514
474	AOPTS(아시아태평양우정학교) 관리이사회. Bangkok(태국), 1980.11.4.-6.	515
475	INTELSAT(국제전기통신위성기구) 이사회, 제41-44차	516
476	INTELSAT(국제전기통신위성기구) 가입국 총회, 제6차. Venice(이탈리아), 1980.10.20.-24.	517
477	INTELSAT(국제전기통신위성기구) 임시 가입국 총회 및 제9차 서명자회의. Orlando(미국), 1980.3.31.-4.5.	518
478	세계관광회의, 제1차. Manila(필리핀), 1980.9.27.-10.10.	519
479	WTO(세계관광기구) 집행위원회 및 CAP(동아시아태평양지역 위원회) 회의	520
480	IOLM(국제법정계량기구) 총회 제6차. Washington D.C., 1980.6.16.-20.	521
481	ICCAT(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 제2차 특별회의 및 제11차 조사통계 상임위원회. Madrid(스페인), 1980.11.3.-18. ...	522
482	IWC(국제고래위원회) 총회, 제32차. Brighton(영국), 1980.7.21.-26. 전2권 (V.1 사전준비)	523
483	IWC(국제고래위원회) 총회, 제32차. Brighton(영국), 1980.7.21.-26. 전2권 (V.2 결과보고)	524
484	CODEX(공동식품규격위원회) 회의	525
485	CDI(국제면화개발기구) 설립에 관한 작업단 회의, 제2-3차	526
486	ICMMP(국제군진의학 및 약학위원회) 총회, 제23차. Santiago(칠레), 1980.12.1.-6.	527
487	비정부 간 국제기구에 대한 북한의 활동	528
488	APU(아시아의원연맹) 제16차 총회 및 제29차 이사회. Taipei(중국), 1980.10.5.-11.	529
489	IPU(국제의원연맹) 총회, 제67차. Berlin(동독), 1980.9.16.-24. 전5권 (V.2 한국입장 지지 교섭, 5-8월)	530
490	IPU(국제의원연맹) 총회, 제67차. Berlin(동독), 1980.9.16.-24. 전5권 (V.3 한국입장 지지 교섭, 9월)	531
491	IPU(국제의원연맹) 총회, 제67차. Berlin(동독), 1980.9.16.-24. 전5권 (V.4 결과보고)	532
492	IPU(국제의원연맹) 총회, 제67차. Berlin(동독), 1980.9.16.-24. 전5권 (V.5 북한의 반한책동)	533
493	IPU(국제의원연맹) 이사회, 제126차. Oslo(노르웨이), 1980.4.7.-12.	534
494	S.I.(국제사회주의연맹) 집행이사회. Oslo(노르웨이), 1980.6.12.-13.	535
495	S.I.(국제사회주의연맹) 총회, 제15차. Madrid, 1980.11.13.-16. 전10권 (V.1 대책 및 교섭, 6월-8.19.)	536
496	S.I.(국제사회주의연맹) 총회, 제15차. Madrid, 1980.11.13.-16. 전10권 (V.5 각국에 대한 교섭, 6-8월)	537
497	S.I.(국제사회주의연맹) 총회, 제15차. Madrid, 1980.11.13.-16. 전10권 (V.6 각국에 대한 교섭, 9-11월)	538
498	S.I.(국제사회주의연맹) 총회, 제15차. Madrid, 1980.11.13.-16. 전10권 (V.9 회의문서)	539
499	S.I.(국제사회주의연맹) 총회, 제15차. Madrid, 1980.11.13.-16. 전10권 (V.10 참고자료)	540
500	A.I.(국제사면협회) 대응활동	541
501	ICJ(국제법률기위원회) 인사 방한 요청	542
502	INTERPOL(국제형사경찰기구) 총회, 제49차. Manila(필리핀), 1980.11.13.-21.	543

503	INTOSAI(국제최고회계감사기구) 총회, 제10차. Nairobi(케냐), 1980.6.16.-25.	544
504	EROPA(동부지역공공행정기구) 집행이사회, 제24차. Manila, 1980.12.12.-13.	545
505	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 총회, 제45차. Stockholm, 1980.6.2.-13.	546
506	WEC(세계에너지회의) 총회, 제11차. Munchen(독일), 1980.9.8.-12.	547
507	CIOFF(국제민속예술제 조직위원회) 가입	548
508	한국의 제34차 CISM(국제군인체육대회) 총회 참석 추진. 전2권 (V.1 1979년도)	549
509	한국의 제34차 CISM(국제군인체육대회) 총회 참석 추진. 전2권 (V.2 1980년도)	550
510	EAHC(동북아수로위원회), 제3차. 서울, 1980.9.2.-5.	551
511	한·독일 간의 재정협력에 관한 협정. 1980.2.18. 서울에서 서명: 발효(조약 제704호)	552
512	한·캐나다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 방지를 위한 협정. 전3권. 1978.2.10. 서울에서 서명: 1980.10.19. 발효(조약 제725호) (V.1 1974-75)	553
513	한·캐나다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 방지를 위한 협정. 전3권. 1978.2.10. 서울에서 서명: 1980.10.19. 발효(조약 제725호) (V.2 1976-77)	554
514	한·캐나다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 방지를 위한 협정. 전3권. 1978.2.10. 서울에서 서명: 1980.12.19. 발효(조약 제725호) (V.3 1978-81)	555
515	한·일본 간의 교육시설 확충, 국립묘지 및 보건 연구기관 장비 현대화 및 도시하수처리시설 사업을 위한 차관에 관한 각서교환. 1980.1.18. 서울에서 각서교환: 발효(조약 제698호)	556
516	한·스리랑카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장에 관한 협정. 전2권. 1980.3.28. Colombo에서 서명: 1980.7.15. 발효 (조약 제711호) (V.1 1978)	557
517	한·스리랑카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장에 관한 협정. 전2권. 1980.3.28. Colombo에서 서명: 1980.7.15. 발효 (조약 제711호) (V.2 1979-80)	558
518	한·칠레 간의 항공협정. 1979.8.14. Santiago에서 서명: 1980.10.24. 발효(조약 제719호)	559
519	한·덴마크 간의 해운협정. 전3권. 1980.1.9. 서울에서 서명: 발효(조약 제696호) (V.1 1975-78.10월)	560
520	한·덴마크 간의 해운협정. 전3권. 1980.1.9. 서울에서 서명: 발효(조약 제696호) (V.2 1978.11-79.6월)	561
521	한·덴마크 간의 해운협정. 전3권. 1980.1.9. 서울에서 서명: 발효(조약 제696호) (V.3 1979.7-80.1월)	562
522	우편 관련 기관 간 악정 체결	563
523	한·남아프리카공화국 간의 국제소포 우편물 교환을 위한 특별협정 체결 교섭	564
524	한·칠레 간의 사증면제협정. 1980.9.5. Santiago에서 서명: 1980.10.5. 발효(조약 제716호)	565
525	한·코트디부아르 간의 문화협정. 1980.2.28. Abidjan에서 서명: 1980.12.10. 발효(조약 제705호)	566
526	한·케냐 간의 문화협정. 1980.11.6. Nairobi에서 서명: 11.21. 발효(조약 제721호)	567
527	한·세네갈 간의 문화협정. 1979.4.24. 서울에서 서명: 1980.8.4. 발효(조약 제712호)	568
528	한국 정부에 대한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기술원조 제공에 관한 보충협정 개정. 1980.1.3. 및 1.21. Vienna에서 서명: 발효(조약 제703호)	569
529	스위스의 의장권 및 실용신안권에 관한 협정 체결 제의	570
530	일본·중국 간의 어업협정 개정	571
531	한·국아일랜드 간의 어업협정. 1980.8.25. Auckland에서 서명: 발효(조약 제713호)	572
532	한·프랑스 간의 어업협정. 전3권. 1980.9.19. Paris에서 서명: 12.19. 발효(조약 제717호) (V.1 1975-78)	573
533	한·프랑스 간의 어업협정. 전3권. 1980.9.19. Paris에서 서명: 12.19. 발효(조약 제717호) (V.2 1979)	574
534	한·프랑스 간의 어업협정. 전3권. 1980.9.19. Paris에서 서명: 12.19. 발효(조약 제717호) (V.3 1980)	575
535	한·키리바시 간의 키리바시 연안에서의 어업에 관한 협정. 전2권. 1980.12.18. Tarawa에서 서명: 발효(조약 제727호) (V.1 1978-79.9월)	576
536	한·키리바시 간의 키리바시 연안에서의 어업에 관한 협정. 전2권. 1980.12.18. Tarawa에서 서명: 발효(조약 제727호) (V.2 1979.10-81.1월)	577
537	한·뉴질랜드령 니우에 및 토켈라우 간의 어업협정 체결 교섭	578
538	한·솔로몬아일랜드 간의 어업협정. 1980.12.12. Honiara에서 서명: 발효(조약 제726호)	579
539	한·투발루 간의 어업협정. 1980.6.18. 서울에서 서명: 발효(조약 제710호)	580
540	한·가봉 간의 무역협정. 1975.7.7. 서울에서 서명: 1980.11.18. 발효(조약 제722호)	581
541	한·니카라과 간의 무역협정 체결 교섭	582

542	한·오스트리아 간의 섬유류 교역에 관한 협정	583
543	한·EC(구주공동체) 간의 섬유류 교역에 관한 협정. 전10권. 1979.9.12. Brussels에서 서명: 1980.2.1. 발효 (외무부고시 제49호) (V.1 1977.4-8월)	584
544	한·EC(구주공동체) 간의 섬유류 교역에 관한 협정. 전10권. 1979.9.12. Brussels에서 서명: 1980.2.1. 발효 (외무부고시 제49호) (V.2 1977.9-10월)	585
545	한·EC(구주공동체) 간의 섬유류 교역에 관한 협정. 전10권. 1979.9.12. Brussels에서 서명: 1980.2.1. 발효 (외무부고시 제49호) (V.3 1977.11.1.-19.)	586
546	한·EC(구주공동체) 간의 섬유류 교역에 관한 협정. 전10권. 1979.9.12. Brussels에서 서명: 1980.2.1. 발효 (외무부고시 제49호) (V.4 1977.11.21.-12월)	587
547	한·EC(구주공동체) 간의 섬유류 교역에 관한 협정. 전10권. 1979.9.12. Brussels에서 서명: 1980.2.1. 발효 (외무부고시 제49호) (V.5 양측 교섭안)	588
548	한·EC(구주공동체) 간의 섬유류 교역에 관한 협정. 전10권. 1979.9.12. Brussels에서 서명: 1980.2.1. 발효 (외무부고시 제49호) (V.6 가서명본, 1977.12.23.)	589
549	한·EC(구주공동체) 간의 섬유류 교역에 관한 협정. 전10권. 1979.9.12. Brussels에서 서명: 1980.2.1. 발효 (외무부고시 제49호) (V.7 1978년도 기준치 및 연 증가율 합의문, 1977.12.1.)	590
550	한·EC(구주공동체) 간의 섬유류 교역에 관한 협정. 전10권. 1979.9.12. Brussels에서 서명: 1980.2.1. 발효 (외무부고시 제49호) (V.8 1978)	591
551	한·EC(구주공동체) 간의 섬유류 교역에 관한 협정. 전10권. 1979.9.12. Brussels에서 서명: 1980.2.1. 발효 (외무부고시 제49호) (V.9 1979-80)	592
552	한·EC(구주공동체) 간의 섬유류 교역에 관한 협정. 전10권. 1979.9.12. Brussels에서 서명: 1980.2.1. 발효 (외무부고시 제49호) (V.10 협정문)	593
553	[1978.2.7.자] 한·미국 간의 면직물·모직물·인조섬유직물 및 직물제품의 교역에 관한 협정의 개정. 전2권. 1980.9.8. Washington D.C.에서 각서교환: 발효(외무부고시 제55호) (V.1 1979)	594
554	[1978.2.7.자] 한·미국 간의 면직물·모직물·인조섬유직물 및 직물제품의 교역에 관한 협정의 개정. 전2권. 1980.9.8. Washington D.C.에서 각서교환: 발효(외무부고시 제55호) (V.2 1980)	595
555	한·UNFPA(유엔인구활동기금) 간의 인구계획에 관한 제2차 협정. 1980.1.18. New York에서 서명: 발효(조약 제699호)	596
556	한·핀란드 간의 경제·공업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1979.9.13. Helsinki에서 서명: 1980.2.23. 발효(조약 제701호)	597
557	한·가봉 간의 경제·기술·문화 및 과학협력에 관한 협정. 1975.7.7. 서울에서 서명: 1980.11.18. 발효(조약 제723호)	598
558	한·가봉 간의 협력에 관한 한·가봉 공동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협정. 1975.7.7. 서울에서 서명: 1980.11.18. 발효(조약 제724호)	599
559	한·독일 간의 광산재해방지사업의 확장을 위한 각서교환. 1980.6.4. 서울에서 각서교환: 발효(외무부고시 제54호) ...	600
560	한·사우디아라비아 간의 경제기술협력협정의 개정 검토	601
561	한·세네갈 간의 경제기술협력협정. 1979.4.24. 서울에서 서명: 1980.9.1. 발효(조약 제714호)	602
562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한국 가입. 1980.1.27.	603
563	외교·영사 관계 및 특권·면제에 관한 법적의견 문의 및 회신	604
564	[UNIDROIT] 국제유언형식의 통일법에 관한 협약 가입 추진	605
565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제6조, 제16조 및 제23조의 해석 적용에 관한 협정(보조금및상계관세규약) 한국 가입, 1980.7.10. 전6권 (V.1 1975-76)	606
566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제6조, 제16조 및 제23조의 해석 적용에 관한 협정(보조금및상계관세규약) 한국 가입, 1980.7.10. 전6권 (V.2 1978)	607
567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제6조, 제16조 및 제23조의 해석 적용에 관한 협정(보조금및상계관세규약) 한국 가입, 1980.7.10. 전6권 (V.3 1979)	608
568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제6조, 제16조 및 제23조의 해석 적용에 관한 협정(보조금및상계관세규약) 한국 가입, 1980.7.10. 전6권 (V.4 1980.1-3월)	609
569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제6조, 제16조 및 제23조의 해석 적용에 관한 협정(보조금및상계관세규약) 한국 가입, 1980.7.10. 전6권 (V.5 1980.5월)	610

570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제6조, 제16조 및 제23조의 해석 적용에 관한 협정(보조금및상계관세규약) 한국 가입, 1980.7.10. 전6권 (V.6 1980.6-12월)	611
571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한국 가입, 1980.10.2.	612
572	국제민간항공협약의 개정[48조 가항]에 관한 의정서	613
573	국제민간항공협약 개정 의정서[50조 a항] 한국 가입, 1980.2.15.	614
574	중공의 항공안전에 관한 국제협약 가입 시 중국대표권 문제에 관한 유보 선언에 대한 한국의 입장	615
575	파나마 운하의 영구중립 운영에 관한 조약 의정서 한국 가입, 1980.11.4.	616
576	저작권 인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한 다자 간 협정 법전화 작업	617
577	INTELSAT(국제전기통신위성기구)의 특권 면제 및 면책에 대한 의정서 한국 가입, 1980.10.9.	618
578	우주물체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국제책임에 관한 협약 한국 가입, 1980.1.14.	619
579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개정 외교회의, 제1차. Geneva, 1980.2.4.-3.4.	620
580	과도한 손해 또는 무차별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특정 재래식 무기의 사용금지 및 제한에 관한 유엔회의, 제2회기. Geneva, 1980.9.15.-10.10.	621
581	1977년 국제사탕협정 한국 가입, 1980.1.2. 전2권 (V.1 1977)	622
582	1977년 국제사탕협정 한국 가입, 1980.1.2. 전2권 (V.2 1978-80)	623
583	항해 문제에 대한 법적 검토	624
584	해양법 대책위원회 자문위원단 회의	625
585	유엔해양법회의, 제3차. 제9회기. New York, 1980.2.27.-4.4. 전6권 (V.1 대표단 구성 및 훈령)	626
586	유엔해양법회의, 제3차. 제9회기. New York, 1980.2.27.-4.4. 전6권 (V.2 의견서 및 제안)	627
587	유엔해양법회의, 제3차. 제9회기. New York, 1980.2.27.-4.4. 전6권 (V.3 대표단 준비자료)	628
588	유엔해양법회의, 제3차. 제9회기. New York, 1980.2.27.-4.4. 전6권 (V.4 대표단 보고 및 연설문)	629
589	유엔해양법회의, 제3차. 제9회기. New York, 1980.2.27.-4.4. 전6권 (V.5 결과보고)	630
590	유엔해양법회의, 제3차. 제9회기. New York, 1980.2.27.-4.4. 전6권 (V.6 자료)	631
591	유엔해양법회의, 제3차. 제9회기 속개회의. Geneva, 1980.7.28.-8.29. 전6권 (V.1 대표단 구성 및 훈령)	632
592	유엔해양법회의, 제3차. 제9회기 속개회의. Geneva, 1980.7.28.-8.29. 전6권 (V.2 의견서 및 제안)	633
593	유엔해양법회의, 제3차. 제9회기 속개회의. Geneva, 1980.7.28.-8.29. 전6권 (V.3 대표단 보고)	634
594	유엔해양법회의, 제3차. 제9회기 속개회의. Geneva, 1980.7.28.-8.29. 전6권 (V.4 결과보고)	635
595	유엔해양법회의, 제3차. 제9회기 속개회의. Geneva, 1980.7.28.-8.29. 전6권 (V.5 연설문)	637
596	유엔해양법회의, 제3차. 제9회기 속개회의. Geneva, 1980.7.28.-8.29. 전6권 (V.6 회의문서)	638
597	유류오염 재난 시 공해상의 개입에 관한 국제협약 가입 추진	639
598	[UNCITRAL] 국제상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회의. Vienna, 1980.3.10.-4.11.	640
599	ILC(국제법위원회)의 최해국조항에 관한 협약 초안	641
600	베트남·중공의 Paracels Spratleys 군도(서사·남사군도)에 관한 영유권 분쟁	642
601	엘살바도르·온두라스 간의 평화협정 체결	643
602	이란·이라크사태 보고서, 1980.9-11월	644
603	이란·이라크사태	645
604	중동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중동평화협상. 전2권 (V.1 1-8월)	646
605	중동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중동평화협상. 전2권 (V.2 9-12월)	647
606	사이프러스의 AALCC(아아법률자문위원회) 가입 문제	648
607	AALCC(아아법률자문위원회) 각료급 특별회의 및 전문가 회의. Kuala Lumpur, 1980.12.8.-12.	649
608	AALCC(아아법률자문위원회) 총회, 제21차. Jakarta(인도네시아), 1980.4.24.-5.1. 전4권 (V.1 사전준비)	650
609	AALCC(아아법률자문위원회) 총회, 제21차. Jakarta(인도네시아), 1980.4.24.-5.1. 전4권 (V.2 국내조치)	651
610	AALCC(아아법률자문위원회) 총회, 제21차. Jakarta(인도네시아), 1980.4.24.-5.1. 전4권 (V.3 결과보고)	652
611	AALCC(아아법률자문위원회) 총회, 제21차. Jakarta(인도네시아), 1980.4.24.-5.1. 전4권 (V.4 참고자료)	653
612	몽골 및 세네갈의 AALCC(아아법률자문위원회) 가입	654
613	한·일본 간 200해리 수역 적용 문제	655
614	남북한의 정식국호 사용 문제	656
615	중공 및 중국의 호칭 문제	657

616	쿠바인의 Havana(쿠바) 주재 페루 및 베네수엘라대사관을 통한 망명 요청	658
617	해상 선박 압류 문제	660
618	해양 관계 국제법 해석	661
619	주일본 한국문화원 설치 및 운영	662
620	제2차 한·튀니지 문화 공동위원회 개최계획	663
621	한·일본 문화 및 청소년 교류 일반	664
622	미국 Florida 및 New York주 '한국의 날' 선포	665
623	Picho-Owiny Albert W. 우간다 공보방송장관 방한, 1980.4.30.-5.5.	666
624	일본 언론인 방한	667
625	스리랑카·한 친선협회	668
626	일본 요미한국(讀賣)신문 서울지국 재개설 허가	669
627	캐나다 Toronto대학 한국학과 신설	670
628	미국 Harvard대학 교수 방한	671
629	미국 학계인사 방한	672
630	세계이슬람연맹 주한 사무소 설치 검토	673
631	한국 이슬람교 부산성원 건립	674
632	일본 창가학회 인사 방한 문제	675
633	1980년도 Moscow 올림픽대회. 전3권 (V.1 참가준비, 1977-80)	676
634	1980년도 Moscow 올림픽대회. 전3권 (V.2 한국대표단 및 심판 참가문제, 1980)	677
635	1980년도 Moscow 올림픽대회. 전3권 (V.3 각국반응 및 대체올림픽 개최문제, 1980)	678
636	Sheikh Isa bin MOHAMED AL KHALIFA 바레인 체육청소년 장관 방한, 1980.10.10.-15.	679
637	일본·한 친선협회, 1979	680
638	일본·한 친선협회, 1980	681
639	방글라데시·한 친선협회	682
640	모로코·한 친선협회	683
641	중공의 경제개혁 및 대외경제정책	684
642	독일 주재 한국 금융기관 검사를 위한 한·독일 간 교섭	685
643	한·일본 경제·통상협력	686
644	한·나이지리아 경제·통상협력	687
645	한·사우디아라비아 경제 및 철도·항공협력	688
646	한·세네갈 경제·통상협력	689
647	한·베네수엘라 경제협력	690
648	한·중국 경제각료회담, 제14차. Taipei, 1980.4.10.-16. 전2권 (V.1 기본문서)	691
649	한·중국 경제각료회담, 제14차. Taipei, 1980.4.10.-16. 전2권 (V.2 자료)	692
650	한·독일 경제실무자회담(재정차관·기술협력분야), 제10차. Bonn, 1980.5.19.-24.	693
651	한·일본 경제협력 실무자회담, 제7차	694
652	한·핀란드 혼성위원회, 제1차. 서울, 1980.4.9.-12.	695
653	한·네덜란드 공동위원회, 제5차. The Hague, 1980.6.26.-27.	696
654	한·칠레 [민간] 경제협력위원회 합동회의, 제3차. 서울, 1980.10.13.	697
655	한·인도네시아 [민간] 경제협력위원회 합동회의, 제3차. Jakarta, 1980.8.19.-20.	698
656	한·필리핀 [민간] 경제협력위원회 합동회의, 제3차. 서울, 1980.6.18.-19.	699
657	한·튀니지 [민간] 경제협력위원회 합동회의 창립	700
658	IECOK(대한국제경제협력의체) 총회 제11차 및 김원기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 영국 방문, 1980.6.20.-7.4.	701
659	중공 경제정책 세미나. Hong Kong, 1980.10.8.-9.	702
660	아시아태평양지역 노동장관회의, 제8차. Manila, 1980.11.28.-12.1.	703
661	IER(동서경제기구) 주최 Budapest 국제심포지엄 참가, 1980.10.13.-15.	705
662	덴마크 관민 혼성 경제사절단 방한, 1980.5.18.-22. 전2권 (V.1 기본문서)	706
663	덴마크 관민 혼성 경제사절단 방한, 1980.5.18.-22. 전2권 (V.2 영접준비)	707

664	서사모아 경제조사단 방한 초청계획	708
665	최종원 건설장관 중동 순방	709
666	Khalid bin Abdullah AL-ATTIYAH 카타르 공공사업성 장관 방한, 1980.9.12.-15.	710
667	BOONCHU Rojanastien 태국 경제담당 부수상 방한, 1980.11.20.-22. 전2권 (V.1 사전준비)	711
668	BOONCHU Rojanastien 태국 경제담당 부수상 방한, 1980.11.20.-22. 전2권 (V.2 결과보고 및 자료)	712
669	Martinez M., Ricardo E. 베네수엘라 기획조정 장관 방한, 1980.5.19.-25.	713
670	Ziaur 방글라데시 대통령의 경제원조 요청 문제	714
671	차드 내란에 의한 피난민구호계획 지원	715
672	한국의 대카메룬 원조(무상원조)	716
673	한국의 대중앙야프리카 원조(무상원조)	717
674	한국의 대에콰도르 원조(무상원조)	718
675	한국의 대적도기네 원조(무상원조)	719
676	한국의 대에티오피아 원조(무상원조)	720
677	한국의 대에티오피아 한발구호 원조	721
678	한국의 대라이베리아 원조(무상원조)	722
679	한국의 대모리셔스 태풍피해 구호금 지원	723
680	한국의 대말라위 원조(무상원조)	724
681	한국의 대파키스탄 원조(무상원조)	725
682	한국의 대세이셸 원조(무상원조)	726
683	한국의 대시에라리온 원조(무상원조)	727
684	한국의 대수단 원조(무상원조)	728
685	한국의 대수리남 원조(무상원조)	729
686	한국의 대우간다 원조(무상원조)	730
687	한국의 대오토볼타 원조(무상원조)	731
688	WHO(세계보건기구)를 통한 대베트남 의료원조	732
689	한국의 대자이르 Kisangani 병원 지원	733
690	화신산업(주)의 태국 Thai Zinc Ltd. 인수 및 제련공장 연불 수출 문제	734
691	ADB(아시아개발은행) 차관 도입	735
692	대일본 미국차관 상환교섭	736
693	대이라크 건설업체 진출	737
694	대우개발의 수단 영빈관 건설	738
695	1980년도 대외기술공여사업	740
696	한·벨기에 전자교환시설 운용 기술협력사업	741
697	한·이집트 과학기술협력	742
698	전매청·우간다 국영 연초회사 간의 상호기술협력에 관한 각서교환	743
699	한·미국 과학기술협력	744
700	대중동 및 아프리카 의료요원 파견	745
701	한·캐나다 자원개발협력	746
702	한파라산업(주)의 팔라우 인광석 개발 합작투자	747
703	한·호주 원자재 가공 공동연구단회의, 제1-2차	748
704	한·호주 자원협력위원회, 제1차. Canberra, 1980.2.27.-29.	749
705	한·콜롬비아 자원협력위원회, 제1차. Bogota, 1980.11.12.-14.	750
706	한·인도네시아 자원협력 실무위원회, 제2차. 서울, 1980.3.26.-28.	751
707	중공의 석유개발 현황	752
708	향공유 공급확보 대책	753
709	이란산 원유도입. 전2권 (V.1 1-2월)	754
710	이란산 원유도입. 전2권 (V.2 3-12월)	755
711	쿠웨이트산 원유도입. 전2권 (V.1 1975-78)	756

712	쿠웨이트산 원유도입. 전2권 (V.2 1979-80)	757
713	말레이시아산 원유도입	758
714	사우디아라비아산 원유도입	759
715	원유도입 정부대표단 중동 및 프랑스 순방, 1980.9.24.-10.22.	761
716	원유도입 교섭 정부대표단 중동 및 인도네시아 순방, 1980.1.6.-18.	762
717	Diaz Serrano, Jorge 멕시코 석유공사(PEMEX) 총재 방한, 1980.10.19.-22.	764
718	이란·이라크 분쟁에 따른 원유정세 및 각국 반응	765
719	한·가봉 간의 우라늄 공동 탐사	767
720	수산외교 강화방안	768
721	한·호주 간의 수산 합작조업	769
722	한·브라질 어업협력	770
723	한·일본 간 제주도 및 북해도 주변 수역에서의 조업 자율규제조치 교섭. 전11권 (V.7 8.26.-31.)	771
724	한·일본 간 제주도 및 북해도 주변 수역에서의 조업 자율규제조치 교섭. 전11권 (V.8 9월)	772
725	한·일본 간 제주도 및 북해도 주변 수역에서의 조업 자율규제조치 교섭. 전11권 (V.9 10.1.-13.)	774
726	한·일본 간 제주도 및 북해도 주변 수역에서의 조업 자율규제조치 교섭. 전11권 (V.10 10.15.-29.)	775
727	한·일본 간 제주도 및 북해도 주변 수역에서의 조업 자율규제조치 교섭. 전11권 (V.11 11-12월)	776
728	한·케냐 어업협력	777
729	한·파푸아뉴기니 어업협력	778
730	한·세이셸 어업협력	779
731	한·일본 어업공동위원회 회의, 제15차. 서울, 1980.12.1.-3. 전2권 (V.1기본문서)	780
732	한·일본 어업공동위원회 회의, 제15차. 서울, 1980.12.1.-3. 전2권 (V.2자료)	781
733	미국의 수산자원보호관리법 개정, 1980.12.5.	782
734	한·일본 농림·수산 기술협력위원회 회의, 제12차. 서울, 1980.3.11.-14.	783
735	한·미국 농산물 실무자회의, 제3차. 서울, 1980.8.27.-29.	784
736	중공의 한·일본 간 대륙붕 공동개발지역에서의 석유시추 개시에 대한 항의 성명 발표, 1980.5.7.	785
737	일본·중공 간 대륙붕 공동개발 문제	786
738	한·일본 대륙붕 석유개발 항공지원 사업	787
739	IMF(국제통화기금)/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총회, 제35차. Washington D.C., 1980.9.30.-10.3.	788
740	IMF(국제통화기금)/IBRD(국제부흥개발은행) 개발위원회 Task Force 회의, 제1-5차	789
741	ADB(아시아개발은행) 총회 제13차 및 김원기 재무장관 미국 방문, 1980.4.30.-5.13.	791
742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Panel member 선정	793
743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MTN(다자간무역협상) 협정 가입 대책 및 주요국 가입 동향. 전2권 (V.1 1979.1-7월)	794
744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MTN(다자간무역협상) 협정 가입 대책 및 주요국 가입 동향. 전2권 (V.2 1979.8월-1980)	795
745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MTN(다자간무역협상): 한·아르헨티나 양자협상	796
746	튀니지의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잠정가입 연장	797
747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MTN(다자간무역협상): 한·미국 양자협상. 전2권 (V.1 1979.1-2월)	798
748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MTN(다자간무역협상): 한·미국 양자협상. 전2권 (V.2 1979.3-80.6월)	799
749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총회, 제36차. Geneva, 1980.11.24.-26.	800
750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CG-18(18개국 자문단) 회의	801
751	ISO(국제사탕기구) 회의. London(영국)	802
752	IWC(국제소맥위원회) 회의, 제91차. London, 1980.11.24.-27.	803
753	ICAC(국제면화자문위원회) 총회, 제39차. Manila(필리핀), 1980.11.24.-29.	804
754	CCC(관세협력이사회) 상임기술위원회 회의, 제107-110차. Brussels(벨기에)	805
755	CCC(관세협력이사회) 세관감시제도 대표자 회의, 제13차. Ottawa(캐나다), 1980.4.21.-25.	806
756	CCC(관세협력이사회) 조화제도위원회 회의, 제21-23차. Brussels(벨기에)	807
757	CCC(관세협력이사회) 총회, 제55-56차. Brussels(벨기에), 1980.6.16.-20.	809

758	CCC(관세협력이사회) 평가위원회 및 잠정기술위원회 회의. Brussels(벨기에)	810
759	CCC(관세협력이사회) 품목분류위원회 회의, 제44-45차. Brussels(벨기에)	811
760	일본의 견직물 수입규제	812
761	대중동 중장기 통상증진 대책	813
762	한·중공 교역 추진	815
763	한·쿠바 교역 추진	816
764	한·체코슬로바키아 통상	817
765	대한상공회의소·세네갈중앙상공회의소 간의 경제협력 의정서 체결	818
766	[1978.2.7.차] 한·미국 간의 면직물·모직물·인조섬유직물 및 직물제품의 교역에 관한 협정의 시행	819
767	대동구권 교역 추진	820
768	대동구권 교역 추진을 위한 현지 법인체 설립 문제	821
769	한·호주 및 한·뉴질랜드 통상장관회담. 전3권 (V.1 사전준비)	822
770	한·호주 및 한·뉴질랜드 통상장관회담. 전3권 (V.2 결과보고)	823
771	한·호주 및 한·뉴질랜드 통상장관회담. 전3권 (V.3 자료)	824
772	한·벨기에 통상장관회담, 제6차. 서울, 1980.11.1.-5.	825
773	한·자메이카 상공장관회담, 제3차. 서울, 1980.4.13.-17.	826
774	한·말레이시아 통상장관회담. Kuala Lumpur, 1980.4.1.-3.	827
775	한·필리핀 통상장관회담, 제2차 및 서석준 상공장관 말레이시아·중국 방문, 1980.11.16.-26.	828
776	한·싱가포르 [통상] 각료회담, 제1차. Singapore, 1980.3.27.-31. 전2권 (V.1 기본문서집)	829
777	한·싱가포르 [통상] 각료회담, 제1차. Singapore, 1980.3.27.-31. 전2권 (V.2 자료집)	830
778	한·EC(구중동체) 간의 섬유류 교역에 관한 협정 운영	831
779	한·핀란드 섬유 [쿼터]회담. Helsinki, 1980.2.26.-27. 전2권 (V.1 사전준비)	832
780	한·핀란드 섬유 [쿼터]회담. Helsinki, 1980.2.26.-27. 전2권 (V.2 결과보고 및 자료)	833
781	1980년도 한·일본 생사료회담, 제1차. 서울, 1980.6.18.-19.	834
782	1980년도 한·일본 생사료회담, 제2차. 동경, 1980.9.16.-17.	835
783	1980년도 한·일본 생사료회담, 제3차. 서울, 1980.11.14.-15.	836
784	1980년도 한·일본 생사료회담, 제4-5차. 동경	837
785	한·일본 무역회담, 제15차. 서울, 1980.1.10.-11.	838
786	한·노르웨이 [섬유]쿼터회담. Oslo, 1980.2.28.-29.	839
787	한·미국 특정품목 [칼라 T.V. 및 비고무화류]쿼터 협상	840
788	[1978.1.1.-81.12.31.] MFA(다자간섬유협정) 종합평가를 위한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TC(직물위원회) 회의. Geneva, 1980.10.22.-27.	842
789	[1978.1.1.-81.12.31.] MFA(다자간섬유협정) 장래문제 협의를 위한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TC(직물위원회) 회의, 제1차. Geneva, 1980.12.8.-10.	843
790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개발도상국 간 MFA(다자간섬유협정) 평가회의. Bangkok, 1980.7.30.-8.4.	844
791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TSB(직물감독기구) 회의 및 정위원 임명	845
792	MFA(다자간섬유협정) 섬유수출 개발도상국 회의, 제1차. Bogota(콜롬비아), 1980.11.3.-7.	846
793	Pacific Rim Opportunities Conference, 제1차. Vancouver, 1980.11.19.-21.	847
794	무역진흥확대회의. 전3권 (V.1 제1-2차)	848
795	무역진흥확대회의. 전3권 (V.2 제3-4차)	849
796	무역진흥확대회의. 전3권 (V.3 제5-7차)	850
797	통상사절단 미국 방문, 1980.6.15.-28.	851
798	이탈리아 통상사절단 방한, 1980.8.4.-8.	853
799	라이베리아 투자유치사절단 방한, 1980.12.21.-24.	854
800	멕시코 Baja California주 통상사절단 방한, 1980.11.20.-24.	855
801	파키스탄 통상사절단 방한, 1980.6.8.-10.	856
802	스위스 산업전시회(SWISSKOR 80) 사절단 방한, 1980.5.28.-6.8.	858
803	Cointat, Michel 프랑스 대외무역상 방한, 1980.11.6.-7.	859

804	Molapo, Mooki V. 레소토 상공장관 방한, 1980.5.18.-24.	860
805	MAHATHIR bin Mohamad 말레이시아 부수상 겸 무역공업상 방한, 1980.10.6.-11. 전2권 (V.1 사전준비)	861
806	MAHATHIR bin Mohamad 말레이시아 부수상 겸 무역공업상 방한, 1980.10.6.-11. 전2권 (V.2 결과보고)	862
807	Montenegro, Jose G. 파나마 자유무역지역청장 방한, 1980.4.4.-9.	863
808	Solbes, Pedro 스페인 통상관광성 차관보 방한, 1980.7.13.-15.	864
809	Farouk I. EL MAGBOUL 수단 통상협력장관 방한, 1980.9.2.-7.	865
810	Nott, John 영국 상무장관 방한, 1980.1.23.-26.	866
811	아랍 상공회의소연합회 인사 방한	867
812	대이란 긴급물자 공급	868
813	대코트디부아르 어선 수출	869
814	대보츠와나 군수품 수출	870
815	대그리스 및 터키에 대한 일반군수품 수출 관련 의견 문의 및 회신	871
816	대과테말라 군수품 수출	872
817	대이란 군수품 수출	873
818	대자메이카 군수품 수출	874
819	대말레이시아 군수품 수출	875
820	대태국 군수품 수출	876
821	대튀니지 군수품 수출	877
822	대남미지역 군수품 수출	878
823	중공산 석탄 수입	880
824	일본산 쌀 도입	881
825	소련산 명태 수입	882
826	미국산 쌀 도입	883
827	베트남산 무연탄 수입 문제	884
828	한·일본 간 정기여객선(부관페리호) 운항 개선	885
829	한·일본 간 구해저전선 문제	886
830	한·일본 간 신해저케이블 설치	887
831	싱가포르항공기(SIA)에 대한 김포공항 야간 계류 허용조치	888
832	시베리아철도 이용을 위한 부산-Vostochny항(소련) 간 화물운송 요청	889
833	미국의 PAN AM에 대한 할인요금 적용 신청	890
834	한·미국 해운회담. Washington D.C., 1980.2.7.-8.	891
835	서Berlin 국제수입박람회 참가, 1980.8.27.-31.	892
836	제4차 Dakar(세네갈) 국제박람회 참가, 1980.11.25.-12.7.	893
837	중동지역 국제박람회 참가	894
838	구주지역 국제박람회 참가	895
839	1980년도 동구권 개최 국제박람회 참가	896
840	Cairo(이집트) KOTRA 사무소 설치 요청	897
841	77그룹 각료회의. New York	898
842	선진국 경제정상회담(G7), 제6차. Venice(이탈리아), 1980.6.22.-23.	900
843	ECDC(개도국간경제협력위원회) 아시아태평양지역 기구 설립문제	901
844	콜롬보플랜 자문위원회 회의, 제28차. Jakarta(인도네시아), 1980.11.20.-25.	902
845	콜롬보플랜 기술협력이사회, 제150-151차. Colombo(스리랑카)	904
846	PBEC(태평양경제협력회) 총회, 제13차. Sydney(호주), 1980.5.6.-9.	905
847	SPEC(남태평양경제협력기구) 선박기금 모금 사절단 방한, 1980.5.5.-7.	906
848	Davignon, Etienne EC(구주공동체) 집행위원 방한, 1980.5.13.-14.	907
849	한국의 방사성 폐기물 해양 투기	908
850	아프가니스탄사태(보고서)	909
851	아프가니스탄사태. 전2권 (V.1 1979.6-80.1월)	911

852	아프가니스탄사태. 전2권 (V.2 1980.2-12월)	912
853	각국의 폴리스اريو(서부사하라) 승인	913
854	서부사하라 문제	914
855	중국 정세	915
856	중국·중공 관계	917
857	중공 정세	918
858	중공·베트남 분쟁	919
859	동독·서독 관계	920
860	이란사태. 전11권 (V.1 1978)	921
861	이란사태. 전11권 (V.2 언론보도, 1978)	922
862	이란사태. 전11권 (V.3 1979.1-3월)	923
863	이란사태. 전11권 (V.4 1979.4-8월)	924
864	이란사태. 전11권 (V.5 1979.9-12월)	925
865	이란사태. 전11권 (V.6 보고문, 1979)	926
866	이란사태. 전11권 (V.7 언론보도, 1979)	927
867	이란사태. 전11권 (V.8 1980.1-2월)	928
868	이란사태. 전11권 (V.8 1980.3-5월)	929
869	이란사태. 전11권 (V.10 보고문, 1980.1-2월)	930
870	이란사태. 전11권 (V.11 보고문, 1980.3-5월)	931
871	오히라 마사요시(大平正芳) 일본 수상 서거 및 각국 조위사절 일본 방문	932
872	일본 자위대 간첩 사건	933
873	일본 정치정세. 전3권 (V.1 오히라(大平) 내각 불신임안 통과)	934
874	일본 정치정세. 전3권 (V.2 중·참의원 동시 선거)	935
875	일본 정치정세. 전3권 (V.3 스즈끼(鈴木) 내각 출범)	936
876	일본 정세	937
877	라이베리아 군사혁명	938
878	사우디아라비아 Mecca 사원 점령사건	939
879	미국 대통령 선거, 제40대, 1980.11.4. 전4권 (V.1 선거동향, 1-9월)	940
880	미국 대통령 선거, 제40대, 1980.11.4. 전4권 (V.2 선거동향, 10월)	941
881	미국 대통령 선거, 제40대, 1980.11.4. 전4권 (V.3 공화당 및 민주당 전당대회, 1980.7-8월)	942
882	미국 대통령 선거, 제40대, 1980.11.4. 전4권 (V.4 대통령 선거, 1980.11월)	943
883	미국 신락통치령 남태평양 도서지역 독립문제	944
884	짐바브웨 독립. 전2권 (V.1 1-2월)	945
885	짐바브웨 독립. 전2권 (V.2 3-4월)	946
886	재외동포 동향	947
887	히로시마현 한국회관 건립 유공자 서훈	948
888	일본의 국제인권 규약 가입 관련 재일본 한국인의 법적 지위 및 대우 문제	949
889	재일본 한국인 법적지위 및 복지향상 문제. 전2권 (V.1 1-10월)	950
890	재일본 한국인 법적지위 및 복지향상 문제. 전2권 (V.2 11-12월)	951
891	재일본 한국인 신용조합협회(한신협) 지원문제. 전2권 (V.1 1979)	952
892	재일본 한국인 신용조합협회(한신협) 지원문제. 전2권 (V.2 1980)	953
893	재일본 한국인 유골봉환	954
894	미국 South California(남가주) 한국학교 건립 지원 요청	955
895	재사할린 동포 귀환문제	956
896	재외국민의 법적지위 실태 조사	957
897	이란·이라크전에 따른 한국 근로자 보호대책 및 철수계획	958
898	재외동포의 반한 단체 동향. 전2권 (V.1 5-7월)	959
899	독일 내의 반한활동	960

900	재일본 조선인 민주화 촉진 연맹(조민련) 동향	961
901	재일본 한국인 보안사범에 대한 특별사면조치. 전2권 (V.1 1-5월)	962
902	재일본 한국인 보안사범에 대한 특별사면조치. 전2권 (V.2 6-9월)	963
903	재일본 한국인 서승·서준식 형제 간첩사건	964
904	재일본 한국인 유학생 학원 침투 간첩단사건	965
905	한민통 인사의 일본 재입국 문제	967
906	조총련 동포 북한 방문	968
907	조총련 동향	969
908	조총련의 반한영화 상영	970
909	브라질 십자새마을농장 건설 추진 현황 보고	971
910	남미지역 농업이민	972
911	브라질 불법체류자 구제 및 십자새마을농장 건설문제. 전3권 (V.1 1-7월)	973
912	브라질 불법체류자 구제 및 십자새마을농장 건설문제. 전3권 (V.2 8-12월)	974
913	브라질 불법체류자 구제 및 십자새마을농장 건설문제. 전3권 (V.3 한·브라질 간 쌍무협정안)	975
914	일본어선의 한국영해 및 어업전관수역 침범	976
915	필리핀 회교 반도에 의한 한일개발 신폴호 피납사건	977
916	소련의 한국어선(제3삼광호) 납치사건	978
917	남미 거주 한국인 불법체류 문제	979
918	마약 밀수 범죄 관련 한·미국 간 협력	980
919	한국군용기의 일본 이·착륙 건에 대한 일본의 항의	981
920	주한미군이 사용 중인 조선호텔 반환 교섭	982
부록		983



1980년도

전두환 제11대 대통령 당선 및 취임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공보

MF번호 2010-1 / 1 / 1-85

1980년 중 전두환 제11대 대통령 당선 및 취임 관련 내용임.

1. 정부 및 언론계 반응

- 미국: 한국 민주화 정치 일정의 빠른 이행 및 한·미 관계 발전에 대한 희망 표명
- 일본: 우방국으로서의 축의를 표하고, 한국의 민주화 방향에 대해 신중한 자세 견지
- 구주 국가: 국내문제 불간섭 원칙 견지, 한국의 정치·사회적 안정 및 경제발전 기대
- 아시아 및 아프리카 국가: 국내문제 불간섭 원칙 견지, 한국의 정치적 안정 및 경제발전 기대

28

2. 축전 접수 현황(1980.9.8.)

- 국가원수급: 호주, 싱가포르, 인도, 아르헨티나, 파나마, 독일, 이탈리아, 오만, 요르단, 라이베리아, 케냐 등 42개국
- 행정수반급: 일본, 태국, 자메이카, 영국, 네덜란드, 카타르, 모리셔스 등 14개국
- 외상급: 대만(구 자유중국), 스리랑카, 가봉 등 3개국
- 기타 외국인사: 11개국 23명
- 교민회: 52개국 93개

제11대 전두환 대통령 취임식, 1980.9.1.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의전1

MF번호 2010-1 / 2 / 1-230

1980.9.1. 실시된 제11대 전두환 대통령 취임식 관련 내용임.

1. 제11대 대통령 취임식

- 일시 및 장소: 1980.9.1. 11:00, 잠실 실내체육관
- 초청 범위
 - 행정부: 차관급 이상, 군 장성
 - 입법부: 국회의장·부의장, 국회의원
 - 사법부: 대법원장, 대법원 판사
 - 통일주체국민회의: 운영위원장, 운영위원, 전국 지역회 회장 및 간사, 서울지구 대의원
 - 중앙선관위 위원장 및 위원, 헌법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 주한 외교사절

2. 경축 리셉션

- 일시 및 장소: 1980.9.1. 18:30, 경회루
- 참석 범위: 행정·입법·사법부 대표, 외교사절, 사회·종교·교포단체, 통일주체국민회의, 중앙선관위, 헌법위원회 대표 등 350명

3. 취임 축하 만찬

- 일시 및 장소: 1980.9.1. 20:30, 세종문화회관
- 참석 범위: 행정·입법·사법부 대표, 외교사절, 사회·종교·교포단체, 통일주체국민회의, 중앙선관위, 헌법위원회 대표 등 350명

재외공무원 자녀 기숙사 건립 및 운영. 전3권 (V.1 1974-76)

생산연도 1974-1978

생 산 과 총무 / 법무

MF번호 2010-1 / 20 / 1-127

1. 재외공무원 자녀 기숙사 설치를 위한 의견조사 및 계획안 작성(1974.3월)

- 중·고·대학생 기숙사 이용 희망 직원 수: 217명(남학생 114명, 여학생 75명)
- 규모: 200명(100실) 수용, 3~5층 건물
- 건립 후보지: 장충동 전 국회의장 공관(총무처 연금기금 소유재산)
- 재원 조달: 정부예산 예비비 및 외교협회 기부금

2. 외교관 자녀 기숙사 건립방안(1976.8월)

- 외교협회에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여 외무부 감독하에 기숙사를 건립한 후 운영을 위임

3. 재외공무원 자녀 기숙사 건립 준비위원회(1976.12월)

- 구성
 - 위원장: 외무부차관
 - 위원: 기획관리실장, 구주국장, 통상국장, 기획관리실 정책조정관, 교수부장, 총무과장
 - 고문: 외교협회 사무총장
- 기능: 기숙사 건립계획 수립 및 운영에 따르는 주요사항 심의

재외공무원 자녀 기숙사 건립 및 운영. 전3권 (V.2 1977)

생산연도 1974-1978

생 산 과 총무 / 법무

MF번호 2010-2 / 1 / 1-280

1. 재외공무원 자녀 기숙사 건립 추진상황 대통령 보고(1977.3.16.)

- 예산 확보: 1977년도 외무부 소관 세출예산에 2억 7천만 원 계상(외교협회에 대한 경상보조)
- 규모: 200명(100실) 수용, 3~5층 건물
- 건립 후보지: 장충동 전 국회의장 공관(총무처 연금기금 소유재산)
- 자원 조달: 정부예산 예비비 및 외교협회 기부금

2. 재외공무원 자녀 기숙사 건립 준비위원회 발족(1977.1.7.)

- 외무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기숙사 건립 준비위원회 발족(건축사무소장 임명, 보조금 교부, 부지 선정 등 결정)

3. 재외공무원 자녀 기숙사 건립계획안 작성(1977.2~12월, 외교협회)

- 사업 현황, 사업추진 경위, 재외공무원 자녀 실태 및 문제점, 입사대상 인원
- 기숙사 건축계획: 위치 선정, 기숙사 설계, 기본 기구도, 건축공사 추진계획
- 예산편성 및 자금계획: 소요예산 편성 및 총괄표, 예산 집행계획
- 기숙사 운영 및 관리계획: 기구, 사업계획 및 예산과 결산, 운영비 예산 자원, 입사기준 및 관리

4. 재외공무원 자녀 기숙사 건립용 대지 매입계약 체결(1977.6.20.) 및 시공업체 선정(10.31.)

- 규모: 2,747평
- 주소: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산41-77
- 시공업체: 대한주택공사

5. 재외공무원 자녀 기숙사 기공식 개최(1977.11.9.)

재외공무원 자녀 기숙사 건립 및 운영. 전3권 (V.3 1978)

생산연도 1974-1978

생 산 과 총무 / 법무

MF번호 2010-2 / 2 / 1-285

1. 재외공무원 자녀 기숙사 운영 준비위원회 구성(1978.1.13.)

- 1978.7월말 준공, 8월부터 입주 예정임에 따라 운영 준비위원회(위원장: 외무부차관) 발족

2. 재외공무원 자녀 기숙사 준공식(1978.11.20.)

- 기숙사 건설 유공자에 대한 감사패 수여(대한주택공사 사장, 세일건설 사장, 외교협회 사무총장 등 7명)
- 건립 규모: 대지 2,747평, 건평 1,163평(지하 1층, 지상 3층)
- 수용 규모: 100명
- 입사자격: 외교관 및 재외공무원 자녀로서 국내대학 취학 또는 취학 예정자

Noiville, Jean-Francois 프랑스 외무성 아주국장에 대한 서훈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서구

MF번호 2010-2 / 3 / 1-11

1. 주프랑스대사관은 1980.5.22. Jean-Francois Noiville 프랑스 외무성 아주국장의 베트남 억류 공관원 및 한국민들에 대한 아래 내용의 외교적 지원 기여를 감안하여 외교 공로훈장(수교훈장 광화장) 서훈을 건의함.

- 베트남 잔류 한국인에 대하여 후불 조건으로 사이공 주재 프랑스 병원에서 치료
- 1976~77년간 계속된 한국 민간인 등의 베트남 출국 시 사이공 주재 프랑스총영사관이 통행증 발급
- 하노이 주재 프랑스대사관을 통해 베트남 외무성에 대한 한국공관원의 석방 교섭
- 사이공 주재 프랑스총영사관을 통해 한국공관원 3명에 대한 서신 연락, 약품 전달, 송금 중계, 억류공관원 근황, 북한책동 등 정보 제공
- 프랑스 외무차관의 하노이 방문(1975.11월) 및 베트남 수상의 파리 방문(1978년) 시 한국공관원에 대한 석방 교섭

2. 외무부는 1980.11.13. Noiville 프랑스 외무성 아주국장 방한 계기, 수교훈장 광화장을 서훈함.

김대중 내란 음모사건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구주총괄 / 일본

MF번호 2010-2 / 4 / 1-158

1980년 중 외무부는 김대중 내란사건과 관련한 아래 주요사항을 전 재외공관에 통보, 주재국 정부 및 언론 반응을 보고할 것을 지시함.

1. 1980.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선포 및 계엄포고령 전문

2. 광주사태 복구 상황(1980.5.29.)

3.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설치(1980.5.31.)

- 설치 목적 및 기구 성격, 법적 근거 및 의결 시행
- 구성: 비상대책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 국무총리, 경제기획원·외무부·내무부·법무부·국방부·문교부·문공부장관·중앙정보부장, 대통령 비서실장, 계엄사령관, 합동 참모회 의장, 각 군 참모총장, 국군 보안사령관, 대통령 임명 10인 이내 위원

4. 계엄사령부 발표 광주사태 전모(1980.6.1.)

5. 광주사태 관련 계엄사 추가 발표(1980.6.5.) 및 수습대책(6.7.)

- 사상자, 이재민 구호, 피해 복구 등

6. 국내사태 관련 외무부장관 명의 전 재외공관장 앞 서한 발송(1980.6.16., 7.24.)

- 국내사태를 이용한 북한의 대남책동과 수출부진 대처를 위한 재외공관의 분발과 근무 기강 확립

7.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의 김대중 내란 음모사건 조사 결과 발표(1980.7.4.)

8. 김대중 내란 음모사건 홍보 참고자료(1980.8월, 문화공보부 해외공보관)

1980.5.18. 광주사태 [민주화운동] 관련 해외 반한단체 동향 및 홍보활동. 전3권 (V.1 해외 반한단체 동향 분석 및 대책)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일본

MF번호 2010-2 / 5 / 1-262

1. 해외 반한단체 시위 발생 원인

- 최근 국내 계엄령 확대 실시와 광주사태 발생에 따른 불순분자들의 조직적 책동
- 주재국 매스컴의 계엄령 및 광주사태에 대한 편파적 보도
- 본국 실정에 어두운 재외동포들의 감상적 부화뇌동 행위

2. 재외동포 시위의 주요 특성

- 북미 및 구주지역 중 교민이 많은 독일과 일본지역 집중
- 주요 구호 및 요구사항
 - 계엄령 철폐, 군의 정치 불개입, 조속한 민주정부 수립, 정치범 석방, 전두환 장군 사퇴, 김대중 석방

3. 해외 반한단체 동향 분석 및 대책(1980.6.30., 외무부)

- 반한활동 현황
- 지역별 반한활동 유형
- 외무부 조치사항
 - 홍보활동 및 교민 선도활동 강화, 불순교민 및 반한단체 동향 파악, 대정부 접촉 강화
- 반한활동 추세 전망
- 대책: 홍보 및 대교민 선도활동 강화, 친한단체 활동 강화
 - 1980년 하반기 계획: 교민회 순방, 미주지역 총영사회의 개최, 재일동포 모국 방문, 언론인 방한 추진 등
- 한민통의 S.I.(사회주의인터네셔널) 총회(1980.11월, 마드리드)에서의 반한책동 대책

1980.5.18. 광주사태 [민주화운동] 관련 해외 반한단체 동향 및 홍보활동. 전3권 (V.2 재외공관 활동보고)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일본

MF번호 2010-2 / 6 / 1-209

1. 외무부는 1980.6.10. 국내사태와 관련, 북한의 왜곡선전 대비 홍보활동 강화를 위한 특별대책반 운영을 아래와 같이 전 재외공관에 지시함.

- 외무부는 특별대책반(반장: 외무부차관)을 구성, 24시간 비상근무 태세 수립
- 전 재외공관은 공관장 책임하에 특별대책반을 구성하여 24시간 비상근무 태세를 수립하고 주재국 정부 및 제외동포를 대상으로 홍보 강화

2. 전 재외공관은 특별대책반을 구성하고 활동 실적을 외무부에 보고(1980.6.10.~8.7.)

- 관할지역 교민선도 및 홍보활동

1980.5.18. 광주사태 [민주화운동] 관련 해외 반한단체 동향 및 홍보활동. 전3권 (V.3 6.12. 대통령 특별담화 관련 조치사항 및 해외반응)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일본

MF번호 2010-2 / 7 / 1-254

1. 1980.6.12. 외무부는 5·18 광주사태(민주화운동) 관련 “국가기강 확립에 관한 대통령 담화” 전문을 전 재외공관에 송부, 주재국 정부 및 언론계 등에 적극 홍보하고 결과와 반응을 보고할 것을 지시함.

- 국민투표, 개헌안 확정, 선거 실시, 신정부 수립 및 정권 이양 등 정치발전 일정 준수 입장 홍보
- 과감한 정부시책 적극 홍보, 한국의 현실에 대한 주재국 지지 획득
- 전국비상계엄 확대 불가피성 및 국가보위 비상대책위 설치 당위성 홍보
- 외국의 대한민국 투자 및 교역, 각 분야별 교류를 위한 정부의 개방적이고 전진적 시책 홍보

2. 대통령 특별담화 관련한 조치사항 및 해외 반응(1980.6.13.~7.14., 외무부)

- 외무부 본부 및 각 재외공관별 조치사항
- 각국별 반응: 정부 및 언론계
- 교민 동향

1980.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자료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국제연합

MF번호 2010-2 / 9 / 1-241

1. 일지 및 발표문

- 광주사태 일지
- 계엄사 발표 광주사태 경위, 진상, 처리(서울신문)
- 최규하 대통령 특별성명(1980.5.18.)

2. 북한책동

- 한시해 주유엔 북한대사, 기자회견(1980.5.20.)
 - 남한의 군사독재정권은 한국민의 반파쇼, 민주화 투쟁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을 자행하였다.
- 임춘추, '남조선 5.17. 폭압조치 규탄 평양시민 군중대회' 연설(5.25.)
 - 남한의 군사파쇼도당은 나이 어린 학생들에게 총칼을 퍼붓고 그들의 머리를 때려 눈알이 빠지게 만들었으며, 여학생들의 가슴에 칼을 박아 살해하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 허담, 남조사태를 이용한 북괴의 선전책동

3. 참고자료

- 전국비상계엄의 배경(정세 설명자료)
- Documents on the Recent Events in Kwangju, S. Korea(Japanes Catholic Council for Justice and Peace, Tokyo)

김대중 재판에 대한 각국 반응. 전6권 (V.1 대통령 보고)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아주총괄 / 서구 / 북구

MF번호 2010-2 / 10 / 1-267

1980.9.17. 김대중 재판에 대한 각국의 반응 관련 대통령 앞 보고내용임.

1. 경과

- 김대중 사건 재판과 관련하여 미국과 일본 및 서구의 비판적 반응이 지속되어 왔으며, 제1심 선고공판을 계기로 반응이 격화 확산됨.
- 이와 관련, 각국의 반응이 격화되어 한국 정부 지도층에 대한 메시지가 발송되어 왔고, 비판적 반응이 각계로 확산되었으며, 미국, 호주 및 구주의회에서는 결의안까지 제출됨.
- 메시지 접수 현황: 대통령 앞 메시지(13), 국무총리 앞 메시지(1), 외무부장관 앞 메시지(5)

2. 전망

- 김대중 사건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이 사형으로 결정되는 경우, 각국의 반응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미국, 일본, 유럽, 대양주 국가로부터의 반응이 강할 것으로 예상됨.
- 국제적으로 조직화된 반응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며 각종 국제회의 및 국제기구 등에서 한국 국내 문제가 취급될 가능성이 큼.
- 각국 반응의 격화는 이조 회화전(프랑스), 민속예술단 순방(아시아, 중동), 국악 연주단 순방(구주) 등 한국 해외문화교류 사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3. 대책

- 김대중 사건에 대해 기소 단계부터 주요 외교사절과 재외공관을 통한 집중적인 홍보활동 및 필요한 조치
- 향후 김대중 사건 공판에 따른 각국의 부정적 반응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공세적 홍보활동 전개
- 각국 정부, 여론 형성층 주요인사, 방한인사 및 기타 친한인사 등을 중심으로 설득 및 자료 배포
- 한국으로 보내오는 서한, 메시지 등은 내용 및 주재국과의 관계 등을 감안하여 선별적으로 처리

김대중 재판에 대한 각국 반응. 전6권 (V.2 독일, 7-10월)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아주총괄 / 서구 / 북구

MF번호 2010-3 / 1 / 1-240

1980.7~10월 중 김대중 재판에 대한 독일 정부의 반응 및 언론보도 내용임.

1. 브란트 서독 사민당 당수, 최규하 대통령 앞 김대중 사건 진상규명 촉구 진정서 송부(1980.7.5.)

- 7.9. 주독일대사는 브란트 당수를 면담, 김대중 사건 배경 설명

2. 겐서 독일 외상, 주독일대사 면담(1980.7.8.)

- 겐서 외상은 최근 한국사태 관련 민주주의 정체 및 김대중 등 야당 정치인의 구속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독일 등 우방국과의 관계를 감안하여 김대중 등 구속 정치인의 조속 석방을 촉구

3. 슈미트 독일 수상 및 프랑케 내독관계상 명의 국무총리 서리 및 통일원장관 앞 친서 접수 (1980.7.21.)

- 김대중의 석방 촉구, 최근 사태가 한국의 정치발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를 기대

4. 김대중 재판 제1심 선고공판(사형언도)에 대한 독일 언론보도(1980.9.17.)

- 겐서 외상은 EC(구주공동체) 회원국 정부에 각국 주한 대사를 통해 한국 정부에 사면을 요청할 것을 제의
- 카터 미국 대통령이 한국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줄 것을 요청
- 브란트 사민당 당수, 전두환 대통령 앞 메시지 발송
 - 내용: 김대중 사형선고 재고를 요청하며, 김대중의 사형은 사회발전과 인권보전 노력에 대한 도전임.

5. 스트라우스 독일 바바리아 주지사 겸 기사동맹 당수 명의 전두환 대통령 앞 전문 접수(1980.10.25.)

-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김대중 사형 불집행 요청

김대중 재판에 대한 각국 반응. 전6권 (V.3 독일, 11-12월)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아주총괄 / 서구 / 북구

MF번호 2010-3 / 2 / 1-208

1980.11~12월 중 김대중 재판에 대한 독일 정부의 반응 및 언론보도 내용임.

1. 고등군법회의의 김대중 사형선고(1980.11.3.)에 대한 브란트 독일 시민당 당수의 전두환 대통령 앞 사면 청원서 접수(11.5.)

- 군사재판 항소심에서의 김대중 사형선고에 대한 우려 표명 및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에 의한 사면 요청

2. 겐서 독일 외상, EC(구주공동체) 외상회의에서 김대중 사면 제의(1980.11.4.)

- EC 회원국의 최고지도자 공동명의로 한국 정부에 대한 사면 청원 제의

3. 독일 연방하원, 김대중 관계 동의안 채택(1980.11.27.)

- 김대중 구명을 위한 독일 정부의 노력을 지지하고, 여타 우방국 정부의 김대중 구명 노력 촉구

4. 독일 자민당 전당대회, 김대중 사형판결 취소 요구 동의안 만장일치 채택(1980.12.6., 뮌헨)

5. Offergeld 독일 경제협력장관, 대한민국 개발원조 중단 시사(1980.12.19.)

- 김대중 사형집행이 실현될 경우, 한국에 대한 개발협력의 근거를 찾을 수 없어 원조 중단 시사

김대중 재판에 대한 각국 반응. 전6권 (V.4 이탈리아)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아주총괄 / 서구 / 북구

MF번호 2010-3 / 3 / 1-117

1980년 중 김대중 재판에 대한 이탈리아 정부의 반응 및 언론보도 내용임.

1. 김대중 재판 제1심 선고공판(사형언도) 언론보도(1980.9.17.)

- 국제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김대중이 사형언도를 받았으며, 이에 미국, 독일, 일본, 호주 등 관계국이 우려를 표명하였음을 보도

2. CISL(기민당계), CGIL(공산당계), UIL(사회당계) 이탈리아 3대 노조, 김대중 사형선고에 대한 항의 서한을 주이탈리아대사관에 송부(1980.9.18.)

- 김대중 사형선고는 한국 군사법정의 불공정을 의미함.
- 김대중 선고 취소를 요청하는 전 이탈리아 노동자들의 의사를 한국 정부에 전달 요청함.

3. Malfatti 이탈리아 외무성 사무총장, 주이탈리아대사를 외무성으로 초치하여 김대중 관계 희망 사항 전달(1980.9.22.)

- 이탈리아 정부는 의회와 여론이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김대중의 사형선고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음.
- 이탈리아 3대 노조 및 7개 지방노조, 15개 지방자치 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장으로부터의 항의 전문이 주이탈리아대사관으로 송부됨.

김대중 재판에 대한 각국 반응. 전6권 (V.5 기타 서구지역)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아주총괄 / 서구 / 북구

MF번호 2010-3 / 4 / 1-264

1980년 중 김대중 재판에 대한 서구 국가의 반응 및 언론보도 내용임.

1. 1980.9.17. 김대중 재판 제1심 선고공판(사형언도) 관련 영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스페인, 스위스 등 서구 국가의 언론보도

- 김대중의 사형언도를 사실 보도하고 미국, 독일, 일본, 호주 등 관계국의 우려 표명을 인용 보도

2. Simone Veil 구주의회 의장, 김대중 재판 관련 구주의회 결의안을 한국 정부에 전달(1980.9.19.)

- 한국 당국자가 김대중과 24명의 공동피의자에게 사면 및 석방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촉구
- 김대중의 구명을 위하여 구주의회 9개국 정부는 한국 정부에 즉각 개입할 것을 요청
- EC(구주공동체) 외상 및 한국 국가원수에게 구주의회 의장 명의의 결의안 전달

3. 룩셈부르크 정부, 성명 발표(1980.9.19.)

- 김대중의 사형언도에 경악을 금치 못함.
- 김대중의 정치적 공판 및 극형언도는 인권에 관한 중대한 침해이며, '자유세계의 방어를 위한 필요' 라는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음.
- 김대중의 한국법에 규정된 항소 절차 적용 및 사형 불집행을 희망함.

4. 한·오스트리아 친선협회장(Winkler 전 비엔나대학 총장), 김대중 사면을 호소하는 전두환 대통령 앞 서한 송부(1980.9.23.)

5. 스페인 상원, 김대중 사형면제 호소 결의안 채택(1980.11.21.)

김대중 재판에 대한 각국 반응. 전6권 (V.6 북구지역)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아주총괄 / 서구 / 북구

MF번호 2010-3 / 5 / 1-228

1980년 중 김대중 재판에 대한 북구 국가의 반응 및 언론보도 관련 내용임.

1. 스웨덴 정무차관보, 주스웨덴대사를 초치하여 스웨덴 외무장관 명의 김대중 재판 관련 서한 전달 (1980.9.17.)
2. Eliassen 노르웨이 외무차관, 주노르웨이대사를 초치하여 김대중 재판 관련 노르웨이 정부 입장 전달(1980.9.19.)
 - 김대중 사형선고에 대해 우려 표명
 - 인도주의에 입각, 김대중 사형집행 중단 요청
3. Koivisto 핀란드 수상, 주핀란드대사 면담 시 김대중 재판에 대한 핀란드 정부 입장 전달(1980.9.22.)
4. Ole Espersen 의원 등 덴마크 사민당 소속의원 15명이 연대 서명한 김대중 석방 호소 서한 접수(1980.10.9.)
5. 핀란드 국회의원 등 62명의 핀란드 인사, 김대중 사건 관련 연서를 주핀란드대사관에 접수 (1980.12.5.)
 - 김대중 사형선고에 반대하며 사형선고 취소와 공정한 재심 요구
6. 북구 국가 주한 외교사절 소환계획
 - 1980.12.8. 주스웨덴대사는 한국 정부가 김대중의 사형을 집행할 경우,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등 북구 국가 정부는 자국의 주한 외교사절을 소환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외무부에 보고
7. 덴마크 국회의원 총 179명 중 121명이 연대 서명한 전두환 대통령 앞 김대중 사형판결 번복 호소문 접수(1980.12.8.)
 - 김대중의 사형집행은 다수 덴마크 국민에게 한국에 대한 비우호적 태도와 증오감을 제공하여 양국관계 악화 가능성을 초래

주한 외교단의 김대중 공판 방청 문제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의전1

MF번호 2010-3 / 6 / 1-31

1980년 중 주한 외교단의 김대중 공판 방청 문제 관련 내용임.

1. 1980.8.14. 김대중 사건 개정 공판 방청권 교부 현황(1980.8.13.)

- 신청공판 및 방법
 - 주한 일본대사관: 8.6.자 아주국장 앞 서한
 - 주한 미국대사관: 8.11.자 공한
 - 주한 영국대사관: 8.13. 오전 전화로 문의

2. 주한 외교단의 김대중 공판(보통군법회의) 방청 현황(1980.8.26.)

- 방청권 교부 현황
 - 미국(3매): 8.13. 미주국에서 2매 교부, 8.25. 미주국에서 미 국무부 법률고문에 1매 추가 교부
 - 일본(2매): 8.13. 의전실에서 교부
 - 영국(1매): 8.13. 의전실에서 교부
 - 호주(1매): 8.14. 의전실에서 교부
 - 호주(1매): 8.14. 의전실에서 교부
 - 캐나다(1매): 8.21. 의전실에서 교부
 - 인도(1매): 8.22. 의전실에서 교부
 - 네덜란드(1매): 8.26. 의전실에서 교부

3. 주한 외교단의 김대중 공판(고등군법회의) 방청 현황(1980.11.1.)

- 방청권 교부 현황
 - 미국(2매): 10.23. 의전실에서 교부
 - 일본(2매): 10.23. 의전실에서 교부
 - 네덜란드(2매): 10.23. 의전실에서 교부
 - 호주(1매): 10.23. 의전실에서 교부
 - 캐나다(1매): 10.23. 의전실에서 호주대사관에 교부된 1매를 1회 사용 조건으로 교부
 - 스웨덴(1매): 11.1. 의전실에서 교부

민청학련 사건 관련 시인 김지하 구속·석방 문제

생산연도 1977-1980

생 산 과 일본

MF번호 2010-3 / 7 / 1-134

1977~80년 중 민청학련 사건 관련 김지하 시인의 구속 및 석방 문제 관련 내용임.

1. 김지하 사건

- 죄목: 긴급조치 4호 위반, 국가보안법, 반공법 내란 선동 혐의
- 기소
 - 1974.5월 반공법 위반 혐의 기소
 - 5.27. 긴급조치 4호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별도 기소
- 판결
 - 1974.7.13. 보통군법재판 사형, 7.20. 보통군재확인 감형으로 무기징역
 - 1975.2.15. 형 집행정지 처분
 - 4.3. 형 집행정지 취소 처분
 - 1978.12.27. 징역 20년으로 특사 감형, 현재 서울구치소 수감 중

2. 김지하 관련 서한 송부

- 1979.11.1. 김지하의 건강 문제 관련하여 하버드대학의 Reischauer는 벤스 미 국무장관 앞 서한 송부
 - 동인은 투옥상태인 김지하의 건강이 매우 나빠졌다는 기사를 읽었다고 하면서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 김지하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건의해 줄 것을 촉구

3. 김지하 구출 군중대회(1979.12.18., 로마)

- 개최 경위
 - 1979.12.18. '김지하 구출위원회'는 Petroselli 로마시장(공산당)의 사회로 로마시청에서 군중 집회를 개최
 - 동 집회는 공산당 당수, 기민당 지도자, 이탈리아 3대 노조 지도자 등 정계, 언론계, 문화계 인사 등 100여 명이 가담하여 결의안 채택 및 청원서 서명
- 조치내용
 - 대사관의 이탈리아 외무성 접촉: 1979.12.15. 및 12.18. 외무성 정무부국장 등 방문, 이탈리아 정부 측 조치 당부
 - 대사관 보안조치: 이탈리아 치안 당국을 포함하여 공관 보안조치 당부

한국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기구 NGO 및 기타 외국단체 반응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국제연합

MF번호 2010-3 / 9 / 1-158

1980년 중 한국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기구 NGO 및 기타 외국단체의 반응 관련 내용임.

1. WCC(세계기독교협의회)

- 주제네바대사는 1980.11.20. WCC 국제부장을 방문하여 김대중 공판과 관련된 11.6.자 WCC 사무총장 서리의 대통령 앞 전문을 실은 WCC의 11.13.자 뉴스 Ecumenical Press Serice 내용에 대해 항의하고, 동 국제부장과 면담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 동 대사는 동 사건이 독립된 사법기관에 의하여 공정하고 공개적인 재판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 왔으며, 현재도 대법원에 계류 중인 동 사건에 대하여 어떤 형태로든 이에 개입한다는 것은 독립 국가에 대한 부당한 주권 침해로 결코 용납할 수 없음을 지적함.
 - 특히 일부 내용보도는 전혀 근거 없는 것이며, 다른 기관도 아닌 범세계적인 종교기관이 이와 같은 허위 외신보도를 마구 인용한 태도에 대해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하고 이의 시정을 강력히 요청함.
 - 이에 대해 동 부장은 한국 측 입장을 총장 서리가 출장에서 귀임하는 대로 보고한 후, 처리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함.

2. IPU(국제의원연맹)

- 주제네바대사, 테렌치오 IPU 사무총장 면담(1980.8.5.)
 - 동 총장은 IPU 이사회가 설치한 '국회의원의 인권에 관한 특별위원회'가 1980.8.4.~7.까지 제네바에서 개최되고 있으며, 동 회의에서 몇몇 나라 국회의원의 신상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고 말한 후 최근 프랑스에서 발간된 신문에 한국 국회의원 14명이 구금되어 있다고 보도된 바 있음을 지적하면서 한국문제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함.
 - 상기 관련, 동 대사는 특별위원회가 한국 국회의원 문제를 논의해야 할 이유는 없으나, 만약 논의하게 될 경우 동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명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함.

3. 기타

- 외무부는 1980.5.30. 최근 국내사태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국내단체의 유엔사무총장, 유엔인권 위 등에 대한 서신 발송 또는 접촉 시도 등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고 하면서 유엔사무국 및 인권위 관계인사와 접촉을 강화하여 특이사항이 파악되는 대로 보고하도록 주유엔대표부 및 주제네바대표부에 지시함.

김대중 및 광주사태 관련자 등에 대한 진정 및 조치. 전2권 (V.1 I)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북미

MF번호 2010-3 / 10 / 1-292

1. 주미국대사관, 미국 주요인사들로부터 접수된 김대중 등 석방 요구 서한을 외무부에 보고
(1980.7~11월)
2. 주미국대사관, 재일동포 간첩 최철교 등 5명에 대한 감형 진정서를 접수하고, 외무부에 보고
(1980.10월)
3. 김대중에 대한 해외로부터의 진정 현황(내용별)(1980.5.17.~12.1.)(1980.12.2., 외무부)
 - 일본(정부, 의회, 단체)
 - 미국(정부, 의회, 단체)
 - EC(구주공동체) 및 기타 구주 국가(정부, 의회, 단체)
 - 유엔 등 국제기구
 - 언론(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 기타 국가

김대중 및 광주사태 관련자 등에 대한 진정 및 조치. 전2권 (V.2 II)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복미

MF번호 2010-3 / 11 / 1-245

1. 주미국대사관, 미국 주요인사들의 김대중 등 석방 요구 서한을 외무부에 송부(1980.12월)
2. 주미국대사관, 동 대사관으로 우송된 김대중 석방 청원서를 외무부에 송부(1980.12.10.)
3. 주뉴욕총영사관, 관내 뉴저지주 듀몬트 거주 미국인 3명으로부터 접수된 김대중 구명에 관한 탄원서를 외무부에 보고(1980.12.12.)
 - 첨부: 탄원서 3통
4. 외무부, 김대중 사건과 관련된 진정 서한을 법무부에 송부(1980.12.17.)
 - 첨부: 진정 서한 8부

한국 국내정세에 대한 호주 반응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대양주

MF번호 2010-3 / 12 / 1-154

1980년 중 한국 국내정세에 대한 호주 반응 관련 내용임.

1. 주호주대사, Laucke 호주 상원의장 면담(1980.8.27.)

- 동 대사는 국내 정치 일정 및 신임 대통령 선출, 김대중 재판 등 설명
- 동 의장은 박정희 대통령 서거와 광주사태에도 불구하고, 한국민이 지혜롭게 안정을 찾았음을 높이 평가하면서 한국 국내 정치발전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

50

2. Peacock 호주 외상, 1980.9.17. 호주 하원에서 김대중 재판에 대한 호주 정부의 공식 입장을 아래와 같이 답변함.

- 정치적 고려에 좌우된 듯한 재판에서 김대중에 사형이 선고된 것을 크게 개탄함.
- 김대중 및 관련 피의자의 신병에 관한 강한 관심을 재천명함.
- 김대중에 대한 선고가 대통령 및 상소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는 헌법규정에 주목, 재판부 결정이 변경되기를 희망함.
- 사형이 집행된다면 양국 간 우호관계에 영향이 있을 수 있음.

3. 호주 의회 반응

- 1980.9.18. 호주 의회는 호주 상·하원 의원 119명이 서명한 청원서를 주호주대사관에 전달함.
 - 김대중의 사형연도에 대한 재고 진정

4. 호주 언론 반응

- 일반적으로 외신을 논평 없이 보도
- The Age 사설(1980.9.18.)
 - '한국의 정국 안정 유지 여부는 민주주의국가의 전환 여부에 달려있으며, 김대중을 사형시킬 경우 현 정권 유지에 시련이 있을 것임'

한국 국내정세에 대한 캐나다 반응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복미

MF번호 2010-3 / 13 / 1-103

1980년 중 한국 국내정세에 대한 캐나다 반응 관련 내용임.

1. 주캐나다대사, Taylor 캐나다 외무성 차관보 면담(1980.9.17.)

- 동 차관보 언급 요지
 - 어제 한국에서 김대중과 그 추종자에 대한 군법회의 선고공판이 있었는데, 캐나다 일반대중은 이 문제에 대해 비상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어 캐나다 외무성은 이에 대한 외상 성명을 준비 중임.
 - 또한 한국인에 대한 재판은 한국 정부의 소관사항이나 김대중과 그 추종자들이 행한 일은 캐나다 입장으로는 정상적인 정치활동인바, 사형 등을 선고한다면 공공의 비난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대중의 의견임.

2. 노신영 외무부장관, Burney 주한 캐나다대사 면담(1980.9.19.)

- 동 대사는 맥기건 캐나다 외상이 1980.9.17. 김대중 사형선고와 관련한 성명을 발표하였는바, 외상 성명과 관련한 캐나다 정부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설명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언급함.
 - 만약 김대중이 사형에 처하게 된다면 캐나다 정부가 국제무대에서 한국을 지지하는 것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는 국내 여론이 일어날 것이 우려됨.
 - 김대중 사건은 한국의 국내문제로 아직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이나, 한국 정부가 캐나다 정부의 인권문제에 대한 우려를 고려하여 김대중의 사형이 감형되기를 희망함.

3. 캐나다 하원, 김대중 감형 촉구동의안 통과

- 제1야당인 진보보수당 소속 William Clark(벤쿠버) 하원 의원은 1980.10.9. 김대중의 사형선고와 관련하여 캐나다 의회가 한국 정부에 항의하자는 동의안을 제출하였으나, 여당의 다수의원 반대로 부결됨.
- 캐나다 하원은 11.21. 상기 의원이 제출한 김대중 문제 관련한 동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함.
 - 동 동의안은 10.9.자 동의안보다 상당히 완화된 내용으로 수정 통과

한국 인권문제에 대한 캐나다 관계기관의 문의

생산연도 1979-1980

생 산 과 북미

MF번호 2010-4 / 1 / 1-129

1979~80년 중 한국 인권문제에 대한 캐나다 관계기관의 문의 관련 내용임.

1. 이문용 외무부차관, Burney 주한 캐나다대사 면담(1979.10.22.)

- 동 대사 언급 요지
 - 캐나다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캐나다연합교회(United Church of Canada)를 비롯한 교회세력과 일반 국민은 크리스찬아카데미사건에 관하여 깊은 관계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금번 공판에서 사건 관계자 6명이 실형을 받은 것은 가혹하며, 고문을 당하는 등 공정한 처우를 받지 못하였고, 한국의 관계법령 위반 혐의라는 피의사실이 납득되지 않는다는 비판을 하고 있음.
 - 아울러 캐나다 국회는 동 사건에 대한 비판의 소리를 많이 듣고 있어 아카데미사건의 2심 공판에서는 무엇인가 선처가 있기를 바란다는 캐나다 정부와 국민의 희망을 전달하고자 함.

2. 박쌍용 외무부 정무차관보, Burney 대사 면담(1979.12.3.)

- 동 대사는 1979.11.29. 캐나다 하원에서 한 야당원이 한국에서 YWCA 사건으로 많은 인사가 연행된 사실을 거론함에 따라 캐나다 외상은 주한 캐나다대사에게 캐나다 정부의 실망(disappointment)을 표시하도록 지시하였다고 발언함.

3. 임동규 여사 등 관련 문의

- 주캐나다대사관은 1980.3.13. 캐나다에 거주하는 Margaret de Boer가 대사관 앞 서한을 통해 임동규 여사 등에 관한 죄명 등을 알려줄 것을 요청하여 왔으며 동 자료 요청을 건의함.

한국 국내정세에 관한 프랑스의 반응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서구

MF번호 2010-4 / 2 / 1-309

1980년 중 한국 국내정세에 대한 프랑스 반응 관련 내용임.

1. 1980.5.28. 프랑스 하원에서 최근 한국 국내사태와 관련하여 개최된 Rigout 의원과 Poncet 프랑스 외상 간 질의응답 내용(1980.6.2., 주프랑스대사 보고)

● Rigout 의원 질문

- 지금 한국에서는 중대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음. 미국의 명령을 받은 잔인한 정권이 자유에 관한 기본권을 주장하는 강력한 민중운동을 탄압하고 있으며, 광주에서는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함.
- 이에 서울 정권의 잔인한 탄압을 규탄하고 대한민국 군사원조를 중단하며, 미국에 대하여 한국 점령을 종결하라고 요구할 용의는 없는가?

● Poncet 외상 답변

- 국내적 측면에서 한국 정부는 박정희 대통령 서거 이후 민주화운동을 착실히 추진하여 왔음. 북한에는 그러한 운동이 전혀 존재하지 않은데도 귀하가 이점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경악을 금할 수 없음. 프랑스 정부는 금번 사태로 한국의 자유화를 위한 움직임이 장애를 받지 않게 되기를 희망함.
- 국제 정치적 측면에서 볼 때, 과거 6·25 동안 시 입증된 바와 같이 한국은 세계평화와 직결되는 중요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바, 한국 내의 현 사태가 비록 유감스러운 일이라는 하나, 외국군이 개입한 일은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음. 또한 프랑스 정부는 한국에 군사원조를 한 사실이 없음. 주한미군은 금번 한국사태에 전혀 개입한 적이 없으며, 북한의 군대도 미군과 같이 자체해 주기를 희망함.

2. 한국관계 기사

- 1980.7.21.자 르몽드지는 3명의 전직 각료를 포함한 17명의 정치인이 부패 척결의 일환으로 체포되었으며, 김대중 장래에 대한 프랑스 및 독일 외상의 우려에 대하여 한국 정부는 7.19. 용납할 수 없는 내정간섭이라고 반박하였다는 내용을 보도함.

3. Poncet 외상, 한·프랑스 관계 발언 요지(1980.11.7.자 르몽드 보도)

- 1980.11.5. 프랑스 하원 공산당원의 김대중 문제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 답변 요지
 - EC(구주공동체) 9개 회원국은 한국 정부에 3차례에 걸쳐 비공개로 김대중 구명을 위한 조치를 취한 바 있음.



- 한국은 아주지역에서 프랑스의 두 번째 교역대상국이며, 한국과 체결한 협정들은 프랑스 근로자 수만 명에게 수만 시간의 근로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프랑스 정부는 대외교역 발전 문제 이상으로 인권문제를 더 옹호할 수는 없는 일임.

한국 국내정세에 대한 독일 반응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서구

MF번호 2010-4 / 3 / 1-194

1980년 중 한국 국내정세에 대한 독일 반응 관련 내용임.

1. 계엄 확대

- 한국의 1980.5.18. 계엄확대조치에 대해 신문, 방송, 텔레비전 등 독일 언론은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대부분의 일간지는 5.19.자 조간에 무장 군인들이 경계하고 있는 서울 사진과 함께 계엄 확대 및 주요 정치인 구속 관계 기사를 1면 중간 톱 크기의 기사와 해설 등을 동시에 게재함.
- Die Welt지 보도
 - 제목: '한국은 북한의 위협 때문에 군사독재로 전환'
 - 내용: 한국은 지난 1주일 동안의 격렬한 학생소요 이후 실력자인 전두환 중장에 의해 강경한 조치가 취해졌음. 이 같은 조치는 한국의 불안 상태를 북한이 이용할 우려가 있고 약 30만 명의 학생데모로 경제가 최악의 상태에 빠졌으며,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대부분의 국민이 불안과 불만을 표시하고 있음.

2. 한국 관계 기사

- 서베를린의 Der Tagesspiegel지는 1980.6.6.자 기사에서 서울발 AP통신을 인용, '한국에서는 국회의 각 분과위원회에 해당하는 13개 분과위로 구성된 국가보위 비상대책위 상임위가 6.5.자로 발표되었는바, 상임위는 19명의 고급장교와 11명의 민간관리로 구성되어 앞으로 일상 정치문제를 결정하는 한국에서의 권력핵심이 될 것이며, 위원장은 한국의 강자 전두환 중장이 맡게 됨으로써 그의 권력은 더욱 확고하게 되었다'고 상임위 현판과 함께 보도함.

3. 대통령 당선 기사

- 독일 언론은 전두환 제11대 대통령 당선 기사를 1980.8.28.자 서울발 AP, 로이터통신 등을 인용, 일제히 크게 보도함.
- 독일 TV, 라디오 등도 8.27. 일제히 한국의 새로운 대통령 선출 기사를 취급하고, 10.26. 이후의 한국의 정치발전 과정과 전두환 대통령의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당선 축하모임에서의 연설 사진과 내용 등을 보도함.

1980.5.18. 광주사태 [민주화운동] 관련 교황청 반응

생산연도 1980-1981

생산과 남구

MF번호 2010-4 / 4 / 1-61

1980.5.18. 광주사태(민주화운동)에 대한 교황청 반응 관련 내용임.

1. 외무부 정무차관보, 주한 교황청대사 면담(1980.6.20.)

- 박쌍용 정무차관보는 주한 교황청대사의 광주 방문 소감을 청취하고, 일본 천주교 정의평화 협회회의 광주사태에 대한 왜곡발표 문제에 대해 협의함.
- 주한 교황청대사 언급 요지
 - 광주 체류 중 만난 사람들은 계엄병사들의 시위자들에 대한 과격행동도 있었지만, 일부 시위자들의 행동도 난폭하였음을 시인(임신부, 여학생들에 대한 흉악행위 소문 확인안됨)
 - 광주지구 천주교회, 수도원 피해 무, 4명의 신부 중 2명은 이미 자수
 - 1980.6.5.자 일본 천주교 정의평화협회의 왜곡발표 보도를 박 차관보로부터 듣고 보도내용을 교황청에 보고, 일본 천주교단의 동 발표가 온당치 못함을 지적함. 교황청이 동 일본 천주교단의 처사를 조사할 것으로 보임.

2. 외무부, 일본 천주교단의 왜곡발표 관련 주한 교황청대사 면담, 대통령 보고(1980.6.21.)

3. Collette Noir 수녀의 유언비어 유포 혐의 수사

- 1980.7.23. 합동수사본부는 Noir 가톨릭 수녀(프랑스인)에 대한 광주사태 유언비어 유포 관련 혐의조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외무부에 통보하면서 해당 대사관의 문의가 있을 시 적의 조치할 것을 요청함.
 - 동 수녀 조사는 프랑스 영사 및 신부 입회하에 정중하게 하였음.
 - 동 수녀는 유언비어 유인물 전달사실 시인 이외는 일체의 혐의 내용 부인
 - 본인의 건강과 입회인의 요구로 조사중단
 - 방증 수사로 추가 방증 포착 시 재차 수사 협조 의뢰 예정

김대중 납치사건 및 복권에 대한 일본의 반응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일본

MF번호 2010-4 / 5 / 1-92

1980년 중 김대중 납치사건 및 복권에 대한 일본 반응 관련 내용임.

1. 김대중 복권조치에 대한 일본 언론보도 내용(1980.2.29.)

- 마이니치신문
 - 김대중씨 등 공민권 회복 정치활동 자유로이-687인 유신체제를 청산, 김지하씨는 포함되지 않음.
 - 김대중에 늦봄-기쁨 참는 가족-역경 견디어 이제는 과거지사
- 요미우리신문
 - 김대중 정계에 복귀-한국 687인의 복권을 발표, 대통령 선거로 급부상, 민주화 노선을 반영

2. 일본 정부 견해

- 이토 일본 관방장관은 1980.2.29. 오전 기자회견에서 김대중 복권 발표 관련 이는 한국 국내문제로 논평을 하지 않겠다고 하고, 특히 김대중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국민용화를 꾀하여 질서 있는 변혁을 추진하여 가려는 노력의 일환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환영하는 견해를 밝힘.

3. 김대중 기자회견(1980.3.1.자 마이니치신문)

- 본인은 납치사건에 관해 금일을 기해 사건에 관련된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을 것임.
- 다만, 사건 당사자들이 스스로 검혀히 반성하기를 바라며, 한·일 양국 정부가 이 문제를 현명하게 처리할 것을 희망할 뿐임.
- 동 사건 이외 1971년 국회의원 선거 당시 자동차 사고로 위장한 본인에 대한 살해 미수사건을 포함하여 모든 박해에 대해서도 묻지 않을 것임.

4. 김대중 구출위원회 해산

- 1980.3.24. 저녁 우에노의 중국음식점 동천홍에서 김대중 복권과 구출운동을 추진하였던 인사 약 100여 명이 모여 '김대중 구출대책위원회(위원장 정재준)'를 정식 해산시킴.
 - 이는 김대중의 생명이 구출되어 공민권이 회복되었고, 정치적 자유 회복 등 소기 목적이 달성 되었기 때문임.

김대중 납치사건 관련자 최세현 전 주일본공사 및 윤영로 주일본대사관 참사관 문제

생산연도 1979-1980

생 산 과 일본

MF번호 2010-4 / 6 / 1-107

1. 김대중 문제(언론보도)

- 1980.1.16.자 요미우리신문은 '한국 참사관 조사 응하지 않고 이일, 김대중 사건' 제하로 사회면 1단에 아래와 같이 보도함.
 - 김대중 사건을 수사 중인 경시청 특수본부는 1.15. 동 사건에 관련되었다는 혐의를 갖고 있던 당시 윤영로 주일본대사관 참사관이 작년 11월 동 대사관 참사관으로 도쿄에 착임한 사실을 밝힘.
 - 동 본부는 윤 참사관에 대하여 참고인으로 사정 청취를 행할 방침을 결정, 동 참사관에 신입 하였으나 동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1개월 후 이임함.
 - 윤 참사관은 1973.8월 김대중 사건 발생 직후에 이임하여 동 사건에 관련되었다는 혐의를 가지고 있음.
 - 한편 김형욱 전 중앙정보부장은 지난 1977.6월 미국 하원 외교소위원회에서 행한 증언 가운데 윤 참사관을 실행그룹의 일인으로 지칭한 바 있음.

2. 최세현 전 주일본대사관 공사의 소재에 관한 일본 측 관심

- 1980.1월 일본 외무성 및 법무성 측은 최세현 전 주일본대사관 공사의 일본 출국기록 및 루트를 주일본대사관 측에 거듭 문의함.
 - 일본 측은 그간 자국 출입국 관리당국이 동인의 1979.12.12.~20. 공항 기록을 조사하였으나 출국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다며, 일본 언론이 동인 소재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고 만약 보도 시 국회에서의 질의 등이 예상되어 양국이 상호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될 것이 우려된다고 함.
 - 이에 대하여 주일본대사관 측은 확인되는 대로 알려주겠다고 하는 한편, 대외적으로 불필요한 잡음 발생이 없도록 외무성 측이 대처해 줄 것을 당부함.
 - 이재춘 주일본대사관 정무과장은 1.26. 마타노 일본 외무성 북동아과장과 양국 간 현안문제 협의시 최 공사의 일본 출국 일자를 문의한바, 일본 측은 최 공사가 지난 1979.12.8. British Air ways편으로 출국한 사실이 나리타공항 입관 기록에서 확인되었다고 말하며, 최 공사는 주일본대사관의 이임 통보가 있었고 소정의 출국 절차를 받고 떠났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말함.

김대중 내란 음모사건에 관한 일본의 반응. 전4권 (V.1 7-9월)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일본

MF번호 2010-4 / 7 / 1-270

1980년 중 김대중 내란사건에 대한 일본 반응 관련 내용임.

1. 외무부장관, 김대중 문제 관련 스노베 주한 일본대사 면담(1980.7.31.)

- 동 대사 언급 요지(일본 각계 관심)
 - 첫째, 동인에 대한 기소내용 가운데 한·일본 간 정치결착 전 일본을 포함한 해외에서의 행동이 포함되고 있는지, 양측 간 양해에 의하면 그와 같은 행동은 불문에 부친다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것이 포함된다면 일본에서 큰 정치문제로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음.
 - 둘째, 동인에 대한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될 것인가 하는 점
 - 셋째, 동인이 사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점인데 사형에 처해지는 경우에 큰 정치문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실제로 본인이 만났던 어떤 정치인은 '정치결착에 관하여 정부가 책임을 져서 현직의 외무대신이 사직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함.
- 동 장관 언급 요지
 - 동인의 한·일본 간 정치결착 전 해외에서의 행동부분은 죄벌의 근거로서가 아니라 그와 같은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국민에게 알린다는 사실 설명으로 언급될 것이라고 설명함.
 - 아울러 사형집행 문제에 관하여는 행정부에서 말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하고, 어떠한 결론이 나올지 모르겠으나 대법원까지 가게 되며, 형 확정 후에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법적으로 사면제도가 있다고 설명함.
 - 재판은 원칙적으로 공개되며, 안보에 관한 부분 심리에 있어서는 비공개로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재판은 공개되고 기자들에게도 방청이 허용될 것으로 본다고 언급함.

2. 김대중 1심 선고공판(1980.9.17. 10:00~10:10)

- 동 공판에서 육군본부 계엄보통군법회의 재판부는 '간단한 판결 이유'를 낭독하고, 김대중에게 사형을 선고함.
- 이와 관련 무라오카 주한 일본대사관 공사는 9.17. 외무부 아주국장에게 구형 시 논고문과 금일 선고공판의 판결문 내용을 제공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며, 아울러 논고내용이 일본 측에 전달된 기본입장(정치결착 양해사항 유지)으로부터 일탈되는 바가 없는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함.

3. 스즈키 일본 수상, 김대중 재판 관계 발언(1980.9.22., NHK TV 회견)

- 국가보안법이 적용되지 않았으며, 해외 연동이 대상으로 되지 않았으므로 정치결착 재검토는 생각하고 있지 않음.
- 그러나 김대중 문제가 일본 측이 우려하는 사태가 될 경우 대한 기술원조, 경험 등에 있어서 정부로서도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될 것임을 확실히 말하고 싶음. 김대중의 생명에 관심을 가지고 국제여론에 호소하여 노력하고자 함.

김대중 내란 음모사건에 관한 일본의 반응. 전4권 (V.2 10-11월)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일본

MF번호 2010-4 / 8 / 1-287

1980년 중 김대중 내란사건에 대한 일본 반응 관련 내용임.

1. 김대중 재판 관련 일본 내 반응

- 1980.10.8. 스즈키 일본 수상은 참의원 답변에서 재판 개입의 인상을 주는 태도는 적당치 못하나, 김대중의 신변에는 계속 관심을 유지하겠다고 언급함.
- 10.8. 일본 외무성은 김대중 사형판결의 근거법령은 국가보안법일 것으로 분석함.
- 10.9. 기자회견에서 미야자와 관방장관은 판결문 전문을 요청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구체적 적용 법령의 확인을 한국 당국에 촉구해 나가겠다고 하고, 그러나 법령적용 경위에 있어서 나라가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으나 일본의 기준에서 말하자면 석연찮은 인상은 면할 수 없다고 언급함.

2. 나카시마 일본 외무차관, 주일본대사 면담(1980.11.4.)

- 동 차관 언급내용
 - 한국 고등군법회의의 김대중 항소심 사형판결 관련, 일본 정부의 관심을 거듭 전달함.
 - 일본 내 여론의 중압을 이해해 주기 바라며, 이를 본국에 전달 바람.
 - 제1심 판결문 제공에 협력 바람.
- 동 대사 언급내용
 - 김대중 재판은 본질적으로 국내문제이며, 특히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임.
 - 판결문은 국내 관계법령 등에 비추어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이 관계 사법 당국의 일관된 입장임.
 - 일본 내 여론의 동향도 알고 있으나, 한국도 법치국가로서 사법부의 존엄성은 물론 독립 국가의 존엄성도 유지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상호 깊이 유념, 신중히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임.

3. 주일본대사, 스즈키 수상 면담(1980.11.21.)

- 동 수상 언급내용
 - 김대중 문제는 사형이 집행될 경우, 언론을 포함하여 일본의 민심이 크게 반발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 극형의 사태가 되면, 국회에서 대한민국 협력에 제동을 거는 야당의 결의안이 통과되어 동 사태가 대한민국 협력에 제약을 주지 않을까 우려됨.
 - 북한과 더욱 적극적으로 교류를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질 수도 있을 것임.
 - 우방으로서 솔직한 심경으로 말한 상기 내용을 전두환 대통령과 한국 정부 수뇌부에 전달해 주기 바람.

김대중 내란 음모사건에 관한 일본의 반응. 전4권 (V.3 12월)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일본

MF번호 2010-4 / 9 / 1-162

1980년 중 김대중 내란사건에 대한 일본 반응 관련 내용임.

1. 국무총리, 스노베 주한 일본대사 면담(1980.12.2.)

- 동 대사 언급내용
 - 지난 1980.11.21. 스즈키 일본 수상이 주일본대사와 면담한 것은 한국에 대한 내정간섭을 의도한 것은 결코 아니었으며, 한·일 간의 우호 협력관계를 유지 발전시킨다는 입장에서 일본 내 여론 동향에 우려를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고, 현재의 당면문제로 양국이 서로 감정에 치우치는 상황이 전개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언급함.
- 국무총리 언급내용
 - 더 큰 문제는 일본 언론의 거듭된 대한민국 편향보도라고 하면서, 어려운 문제이나 한국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바, 일본 언론의 보도 성향과 아울러 일본 총평 측의 언동이 한국 국민들을 자극하고 있음을 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함.

2. NHK 뉴스보도(1980.12.2. 19:00)

- 1980.12.1. 스노베 대사와 외무부차관 간 회담에서 한국 측은 대일본 반한단체 규제를 요청하였다고 알려져 있음. 동 단체는 조총련, 한민통 등을 말하고 있는바, 일본에 있는 소위 반한 단체에 대하여 한국 실정이 왜곡되고 있으며, 이를 일본 매스컴이 편파적으로 보도하고 있다는 것임.
- 이러한 배경이 스즈키 수상 발언을 둘러싸고 한·일 간에 긴장을 가져왔다고 말하고 있음.
- 일본 정부 소식통에 의하면 상기 회담에서 한국 측은 일본 국내에서 한국의 현 체제에 대한 반대활동을 하는 단체의 규제, 보도기관의 편파적인 보도의 시정조치, 재일 한국인에 대한 원조 강화 등 세 가지 항목을 요청하였다고 함.

3. 김대중 문제에 대한 스즈키 수상 발언(1980.12.15.자 요미우리신문 석간)

- 발언내용
 - NHK TV '총리에게 듣다' 프로에서 '김대중은 일본에서 납치된 경위로 보아 일본이 그의 재판에 관심을 갖는 것은 인정이다'라고 발언함.
 - 동 수상은 처음으로 납치사건을 언급하며 일본 측의 관심이 당연하다는 견해를 표명함.
- 동 수상 발언의 영향
 - 금후 한국 측의 태도를 경화시킬 가능성이 예상됨.
 - 일본 국내에서는 '정치결착 재검토' 요구에 용기 제공이 예상됨.

김대중 내란 음모사건에 관한 일본의 반응. 전4권 (V.4 11.21. 스즈키 수상 발언 이후 상황 보고 및 일지)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일본

MF번호 2010-4 / 10 / 1-186

1980년 중 김대중 내란사건에 대한 일본 반응 관련 내용임.

1. 요미우리신문 보도내용(1980.11.24.)

- 일본 외무성 측은 1980.11.23. 대법원 판결이 예상보다 빨리 12월 초에도 내려질 수 있는 긴박한 상황이며, 대통령 특사도 반드시 낙관적인 것이 아님을 밝힘.
- 동 외무성 측은 '12.5.부터 일주일 내 대법원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는 예측이 강하다'라고 하면서 대통령에 의한 감형 가능성과 관련, '한국 정부 내의 공기는 엄하다'고 말함.
- 일시귀국한 스노베 주한 일본대사도 어두운 전망을 보고하였음을 외무성 수뇌가 밝힘.

62

2. 한국상품의 하역거부와 불매운동

- 일본 총평은 1980.12.1. 간부회의를 개최하여 아래의 행동계획을 결정함.
 - 사형이 확정될 시 즉시 10분간 Strike 실행
 - 한국상품 불매운동은 한국 내 국민감정을 고려, 당장 실시는 보류
- 일본 노조의 움직임
 - 11.28. 전일본 교통운송노조는 12.3. 이후 한국에 대한 수출입물자의 항만하역 및 운송은 거부하기로 결정
 - 12.3. 국철노조와 국철동력차노조는 한국 수출입물자의 하역거부를 행하는 전 일본 항만노조와 연대행동을 취하기로 결정

3. 스즈키 일본 수상 발언(1980.11.21.) 이후 한·일 양측 조치 및 반응일지

- 작성기간: 1980.11.21.~12.22.
- 작성기관: 외무부 아주국

김대중 내란 음모사건: 일본 내 반한집회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일본 / 북미 / 의전1

MF번호 2010-4 / 11 / 1-273

1980년 중 김대중 내란사건에 대한 일본 내 반한집회 관련 내용임.

1. 후쿠오카 반한단체 시위(1980.8.11. 17:30)

- 집회 장소: 후쿠오카시 중앙구 계고공원
- 주최 및 참가인원: '김대중을 죽이지 말라' 후쿠오카현 집회, 1,200명
- 특이동향
 - 동 집회에서는 미야조노 시즈오 현평 의장과 김용구 조총련 후쿠오카현 본부위원장의 인사 후 '일본 정부가 사실상 한국 군사독재 탄압체제를 지지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요지의 결의문을 채택함.
 - 집회 후 데모대는 '김대중을 즉시 석방하라'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19:00~20:00 주후쿠오카 총영사관 앞에서 시위한 후 해산함.

2. 일본 자민당, 김대중 재판에 대한 입장을 지방조직에 시달(1980.10.17.)

- 일본 자민당은 아래 이유를 들어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김대중 재판의견서 채택 등에 있어 신중히 대처할 것을 각 지방조직에 지시함.
 - 재판은 한국 내 문제로 특히 심리 중임.
 - 공권력 개입이 입증되지 않는 한 1973~74년의 일·한 정치결착 재검토는 없음.
 - 지방자치단체법 제99조 2항의 대상이 아님.
 - 일본 정부로서는 김대중 재판에 관심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음.

3. 히비야 대음악당 집회(1980.12.9., 도쿄)

- 주최: 안보 파기 제요구 관철 중앙실행위원회
- 참가인원: 약 2,500명
- 명칭: 김대중 사형 저지 긴급 항의 집회

김대중 내란 음모사건: 일본 노동조합 총평의회의 한국상품 하역 거부 및 불매운동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일본

MF번호 2010-4 / 12 / 1-54

1980년 중 김대중 내란사건에 대한 일본 노동조합 총평의회의 한국상품 하역거부 및 불매운동 관련 내용임.

1. 일본 총평 움직임

- 1980.11.27. 도미츠카 총평 사무국장은 최종 판결(12.5.), 처형 전망(12.7.)이라는 정보에 의거, 아래 사항을 계획 중이라고 표명
 - 일본의 5개항에서 1980.12.3.~5. 한국상품 하역거부
 - 한국상품 불매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
 - 한국 정부에 경제제재를 가하도록 일본 정부에 요청
- 11.29. 마키에다 총평 의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의 5개항에서 교통항만노조를 통하여 한국상품의 하역거부와 불매운동을 전개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표명
- 12.1. 총평은 간사회를 개최, 아래의 행동방침 결정
 - 사형이 확정될 시 즉시 가맹조합 및 전 노동자가 10분 이상 Strike 실시
 - 지금까지 제기된 한국제품 불매운동에 대해서는 한국 내 국민감정을 고려, 당장 실시를 보류

2. 일본 사민련 움직임

- 1980.11.29. 덩 사민련 대표는 스즈키 일본 수상과의 면담에서 총평이 주도한 한국제품의 항만 하역거부와 불매운동에 관하여 민중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운동은 한국 내 반일 감정과 일본 내 반한 감정을 부채질할 뿐이라는 비판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던바, 이에 대해 스즈키 수상은 잘 알겠다며 의견을 참고하겠다고 답함.

3. 총평, 한국상품 불매운동 중지

- 1980.12.5. 아사히신문, 요미우리신문 등 주요 일간지는 총평이 한국상품 불매운동을 중지했다는 기사를 보도함.
 - 마키에다 총평 의장은 12.4. 일본 외국특파원협회에서 김대중 처형 반대운동의 하나로 검토하고 있던 한국제품 불매운동을 중지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말함.
 - 동 의장은 중지 이유로 총평 내부에서도 일부 다른 의견이 있었으며, 동 의견은 만일 미국의 노동조합이 자동차의 무역마찰을 이유로 일본차 불매운동을 벌인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등의 문제가 생긴다는 것임.

김대중 내란 음모사건: 일본 언론 반응. 전2권 (V.1 7-10월)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일본

MF번호 2010-4 / 13 / 1-234

1980년 중 김대중 내란사건에 대한 일본 언론반응 관련 내용임.

1. 김대중 군법회의 송치와 관련한 해설기사(1980.7.5.자 아사히신문)

- 1980.7.4. 김대중이 형법의 내란음모죄, 국가보안법, 반공법, 계엄령 포고 등의 위반 용의로 군법회의를 받게 된다는 것이 확실해졌는바, 이로써 전두환 보안사령관 등 한국 군부 실권파는 체제를 견고히 하는데 있어 최대의 방해자를 제거하려 하고 있음.
- 동일 계엄 당국이 발표한 김대중의 용의 내용은 전국규모의 학생데모와 광주폭동을 조직하고, 자금 제공자가 되었다는 것으로 지금까지의 발표와 대차가 없으나, 한국 재판의 경우 확실한 증거도 없이 관계자 자백만으로 유죄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바, 김대중의 경우도 유죄는 거의 틀림없다고 보고 있음.

2. 일본 언론의 김대중 사형선고 반응(1980.9.17.자 석간보도)

- 스즈키 수상
 - 1980.9.17. 김대중 사형판결에 관하여 수상 관저에서 가진 기자단 질문에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한국 정부에 대하여 중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이야기하여 왔으나 이와 같은 제1심 판결이 보여진 데 대해 대단히 우려하고 있다'라고 말함.
 - 또한 '하루, 이틀 중에 도쿄-서울에서 한국 정부에 대해 일본 정부의 관심과 우려를 전달하고 싶다'라고 말함.
- 이토 외상과 미야자와 관방장관
 - 일본 정부는 9.17. 오전 김대중 사형판결과 관련하여 미야자와 관방장관과 이토 외상 등이 긴급 협의, 동 사태를 심각히 받아들이면서 아래와 같이 정부 견해를 밝힘.
 - 판결은 김대중이 놓여있는 상황이 매우 험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일본 정부로서는 사태의 향방을 우려하고 있음. 종래부터 일본 정부는 김대중의 신병에 대해 중대한 관심을 가져왔으나, 이번 사태에 이르게 된 것을 심각히 받아들이고 있음.

3. 김대중 판결문 관련(1980.10.10.자 마이니치신문)

- 한국 정부는 김대중에 대한 판결문 전용에 관하여 관례에 따라 공표하지 않는다며 일본 정부에 판결문 제공을 거부하고 있음. 이에 한민통은 1980.10.9. 실제로는 한국 군사재판의 판결문이 지금까지 공표되어 왔음을 지적함.

김대중 내란 음모사건: 일본 언론 반응. 전2권 (V.2 11-12월)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일본

MF번호 2010-5 / 1 / 1-325

1. 김대중, 2심 사형판결 언론 반응(1980.11.4.자 아사히신문)

- 제목: ‘김대중씨 2심도 사형, 한국고등군법회의에서 피고에 감형판결, 대통령 판단에 초점, 대법원은 서류 심리, 정부 재차 우려 표명’
- 보도내용
 - 일본 외무성은 1980.11.3. 김대중에 대한 고등군법회의가 1심대로 사형판결을 내린 것에 대하여 ‘재판의 행방에 대하여 우려의 뜻을 거듭 밝히지 않을 수 없음. 김대중 신병에 관하여 중대한 관심을 표명하는 바이며, 금후의 사태 추이를 주시하고자 함’이라는 견해를 발표함.
 - 빠르면 4일 중에도 다카시마 외무차관이 주일본대사를 불러 일본 정부의 이와 같은 중대 관심을 거듭 한국 측에 전달할 것임.

2. 니혼게이샤이 신문보도(1980.12.2.자)

- 제목: 미국 차기 정권 발족 전에 김대중 처형도, 미국 신문보도(워싱턴 D.C., 12.1.발 지지통신)
- 내용
 - 1980.12.1.자 US World Report지는 아시아 외교 소식통 견해라고 하며 김대중이 레이건 미 대통령 취임 전에 처형될 듯하다고 전함. 동 지는 그 이유로 전두환 정권이 1) 군 내부 강경파를 화유한다 2) 학생들에게 정부의 힘을 보여준다 3) 미국으로부터의 자유 독립을 표시한다 등과 동시에 처형이 1.20. 이전에 행해진다면 레이건 차기 정권을 곤혹시키지 않게 된다고 말하고 있음.

3. 일본경제신문 보도(1980.12.30.자)

- 제목: 극형 회피 기대-외무성
- 김대중 재판의 판결지연 보도 요지
 - 김대중 재판의 최종심 판결이 내년으로 지연될 것이 확실한 가운데 외무성 내에서는 극형 회피의 기대감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음.
 - 12월 초로 예상되었던 최종 판결이 지연되고 있는 자체가 한국 내에 신중론이 강해졌다는 증거라는 견해에 의한 것임.
 - 전두환 대통령은 미국, 일본 등 국제여론의 동향을 보면서 김대중 처형으로 인해 미국·한, 일본·한 관계를 악화시키고 싶지 않다고 하는 고도의 정치판단을 굳혀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관측도 일부 나타나고 있음.

한국 국내정세에 대한 뉴질랜드 반응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대양주

MF번호 2010-5/2/1-118

1980년 중 한국 국내정세에 대한 뉴질랜드 반응 관련 내용임.

1. Farnon 주한 뉴질랜드대사, 김영삼 방문 문제

- 1980.7.28. 한용운 보안사 중령은 상기 건 관련 외무부 아주국장에게 김영삼이 현재 가택 연금 상태에 있으므로 외부인사와의 접촉이 제한되어 있는데 외교관의 경우 특별히 동인을 만나야 할 이유가 있고 외무부가 인정할 만한 경우 외에는 접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그와 같은 방향에서 본 건이 조치될 수 있기를 희망함.
- 이에 따라 외무부 아주국장은 즉시 Farnon 대사와 통화하여 동인이 김영삼을 만나야 할 이유가 있는지,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동인이 현재 가택연금 상태에 있음에 비추어 가택 출입이 어려워 동인의 행동이 자유롭게 된 이후에 접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본다고 말함.
 - 이에 대해 Farnon 대사는 김영삼을 단순히 예방하려고 한 것뿐이며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 줄 몰랐다고 하면서 외무부 의견에 따라 방문계획을 취소하겠다고 말함.

2. Farnon 대사, 외무부차관 면담 시(1980.7.30.) 국내정세에 관한 한국 측 설명

- 데모사태 이후 북한은 대남비방 활동과 불안 상황 조성을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고, 한국 정부는 안정과 질서 유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민의 대정부 신뢰가 점점 굳어져 가고 있음.
 - 정치 일정에 관해서는 최규하 대통령이 발표한 바에 따라 예정대로 진행되어 갈 것이며, 경우에 따라 발표된 일정이 단축될 수도 있음.
- 숙정 작업은 국민의 환영을 받고 있으며 현재 정부의 방침은 10·26 사태 이전의 제반제도를 전부 고치자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은 계속 유지·발전시키고 개혁할 것은 과감히 개혁해나간다는 것임.
- 김대중 재판은 공정하고 공개된 상황에서 진행될 것임.
- 한국의 국내문제에 대해 우방 국가가 우호적인 관심 표시를 해주는 데 대해 한국 정부는 선의의 충고를 바라고 있으나 한국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스스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방국들이 이러한 점을 이해하여 한국 정부의 노력을 지지해줄 것을 기대함.

3. 국내정세에 대한 뉴질랜드 종교계 및 노조 반응

- 뉴질랜드 장로교는 1980.10.31. 멀든 뉴질랜드 수상에게 미국의 대한민국 경제 및 군사지원 삭감 종용을 요청하는 결의를 채택함.
- 뉴질랜드 노조연합 회장은 11.3. 호주 노조와 긴밀히 협조하여 한국문제를 토의하겠다고 함.

한국 국내정세에 대한 미국 반응. 전6권 (V.1 미국 정부의 반응, 5-12월)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북미

MF번호 2010-5/3/1-314

1980년 중 한국 국내정세에 대한 미국 반응 관련 내용임.

1. 주미국대사, 홀부르크 미 국무부 차관보 면담(1980.6.20.)

- 동 차관보는 한국 국내문제에 관하여 아직도 우려하고 있으며, 안보와 안정을 조화시키는 문제가 미국으로서는 어려운 문제라고 함.
 - 미국은 한국의 현 정부가 안정을 추구하고 있는 노력을 저해하는 것은 아니나, 김대중 및 김종필 등 정치인들이 구속상태에 있고, 특히 가족들의 면회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함.
- 동 대사는 대통령이 6.12. 특별담화를 통해 정치 일정을 분명히 밝힌 바 있으며, 한국 정부는 동 일정대로 이를 시행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재차 설명함.
 - 이와 관련, 동 차관보는 미국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바이나, 구속 정치인, 국회 기능 정지, 계엄령 해제 시기 등의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 나갈지 주시하게 된다고 말함.

2. 김대중 공판에 대한 미국 측 요망사항

- 미 국무부 한국과장은 1980.8.2. 주미국대사관 관계관과의 면담을 요청, 김대중 공판 및 한·미 관계에 대해 아래와 같이 말함.
 - 미 행정부는 한국의 현행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김대중에게 관용이 베풀어지는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음. 김대중 문제는 사법부가 처리할 내부문제임을 미 행정부도 잘 알고 있지만, 한·미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사한 비공식적 관심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음.
 - 국형이 되는 경우, 국제적 반응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이며 미 행정부가 국내여론으로부터 받을 압력은 대단할 것이며, 그 후 한국 정부가 감형조치를 하더라도 한국은 일단 피해를 받은 후가 될 것임.

3. 레이건, 김대중 구명 요청 기사(1980.11.20.자 워싱턴포스트지)

- 레이건 미 대통령은 한국 정부에 자신도 카터 미 대통령처럼 김대중 처형이 한·미 관계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는 점을 통보하였다고 언급함.
- 카터 행정부 관리들은 레이건 측에 김대중 처형을 반대하도록 촉구한 바 있으며, 11.19. 홀부르크 차관보는 레이건 측으로부터 즉각적인 반응이 나온 점에 대해 매우 사려 깊고 유익하며 훌륭한 것이라고 논평하고 안도의 빛을 나타냄.

한국 국내정세에 대한 미국 반응. 전6권 (V.2 미국 의회 반응, 2-6월)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북미

MF번호 2010-5 / 4 / 1-182

1980년 중 한국 국내정세에 대한 미국 반응 관련 내용임.

1. 아시아·태평양지역 인권문제에 대한 미 하원 의회 청문회(1980.2.4.~6.)

● 질의응답 내용

- Lonker 의원: 인권문제를 다룬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며, 특히 독재정권이 무너진 후 새로운 정권이 전혀 다른 방향의 정권을 수립할 수도 있음. 또한 필리핀 및 한국은 중요한 안보문제가 있으므로 인권과 안보 목표를 동시에 이룩하여야 한다는 문제가 있는바, 양자 간의 조화를 발견하여야 할 것이며 인권만을 말하는 사람 중에는 외교정책의 복잡성을 모르는 사람도 있음.
- Wolff 의원: 본인은 최근 방한 시 김대중, 김영삼, 및 김수환 추기경 등 정부 비판인사들을 접촉하였는바, 이들 인사들도 인권문제 때문에 원조를 감축하는데 대해서는 반대함. 물론 이들 인사들도 지금이 인권사태 개선을 위한 기회라고 보고 있지만, 만약 미국이 너무 강한 압력을 행사한다면 오히려 미국의 압력에 반대하게 될 것임. 김대중도 주한미군 철수에는 반대하여 왔음.

2. 미 하원 아태소위원회, 한국관계 청문회(1980.6.25.)

● Wolff 하원 아태소위원장 개회사 요지

- 한국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태로 민주주의가 토착화되고, 국내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간의 희망이 무산되었다는 점에 유의함.
- 민주적 절차회복을 위한 전진을 재개하는 것이 한국 국민과 미국이 최선의 이익에 합치되는 것임.

● Armacost 국무부 동북아담당 부차관보 증언내용

- 한국의 최근 사태로 미국 안보, 경제이익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한·미 관계 자체에는 전혀 영향이 없으며, 양국은 계속 긴밀히 협조하고 있음.
- 미국의 주요 관심사는 정치인 구속, 의회활동 중지, 군부의 정치개입임.
- 최규하 대통령의 1980.6.12.자 정치 일정 발표에 따른 정치발전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한국의 장기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임.

한국 국내정세에 대한 미국 반응. 전6권 (V.3 미국 의회 반응, 7-9월)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북미

MF번호 2010-5 / 5 / 1-148

1980년 중 한국 국내정세에 대한 미국 반응 관련 내용임.

1. 미 하원 아태소위원회 한국 관계 청문회(1980.8.28.)

- 제목: Korea Oversight
- 주요 내용
 - Wickham 장군의 발언 및 이와 관련한 한국 언론의 보도 문제, 인권과 안보의 우선순위에 관한 문제, 현 정부에 대한 한국 국민의 지지에 관한 문제, 수출입은행 차관에 관한 문제, 김대중 재판에 관한 문제 등
 - 홀부르크 국무부 차관보는 미국 정부가 기존에 발표한 방침에 따라 1) 미국 정부가 우려하고 있는 점(한국 언론의 오보 문제, 한국 정부의 국민으로부터의 지지 문제 및 김대중 재판) 2) Wickham 장군 발언에 관한 해명 및 동 장군 지지 3) 한국 언론의 오보가 장기적으로 양국관계 증진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 4) 수출입은행 차관 거절이 대한국 정책의 지렛대로 쓰이지 않는다는 점 등에 대해 답변하고 곤란한 경우에는 답변을 회피하기도 함.

2. 김대중 선고에 대한 미 의회 반응

- Frank Church 미 상원 외교위원회 위원장(민주)은 1980.9.17. 상원 본회의에서 김대중 사형 선고에 대해 아래 요지로 발언하고, 동 발언을 의사록에 기록하게 함.
 - 김대중에게 관용을 베풀 것을 촉구함. 그렇지 않을 경우, 한·미 우호관계가 손상될까 두려움
 - 본인은 Javits 의원과 공동으로 김대중의 사면을 요청하는 서한을 작성, 전두환 대통령에게 발송할 예정임.
- Robert Dole 상원 의원(공화)은 김대중은 전두환 대통령에 의해 감형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전 대통령 체제에 대한 정통성과 견고성을 부여하기 위한 책략이라고 하고, 김대중은 공정하고 공개적인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발언함.
- 그 외 하원 의원의 발언요지는 아래와 같음.
 - Don Bonker 의원(민주): 김대중의 형량 감축 촉구
 - John Porter 의원(공화): 김대중 재판 결과는 미국의 계속적인 대한민국 지원을 위태롭게 할 것임.

한국 국내정세에 대한 미국 반응. 전6권 (V.4 미국 의회 반응, 10-12월)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북미

MF번호 2010-5 / 6 / 1-228

1980년 중 한국 국내정세에 대한 미국 반응 관련 내용임.

1. 미 하원 의원 공동 결의안 제출(1980.9.23.)

- Don Bonker 미 하원 외무위원회 국제기구소위원장(민주)과 Philip Burton 의원(민주)은 공동 명의로 김대중 사건 및 민주화 문제와 관련한 결의안(Concurrent Resolution) 제출
- 결의안 요지
 - 한국 정부는 민주화 발전에 관한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김대중 사형선고 감형을 촉구함.
 - 김대중의 법적 혐의사실은 억지이며, 그의 재판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공정성의 기준을 무시한 것임.
 - 이들의 무거운 형량이 그대로 집행된다면 미 의회는 한·미 관계를 재고할 것임.
- 11.20. 미 하원 외무위원회 국제기구소위원회, 상기 결의안 통과

2. Carl Levin 상원의장, 김대중 선고 관련 결의안 제출

- 결의안 요지
 - 한국 정부는 정치발전 공약을 준수하여야 함.
 - 한국 정부가 동인들에 대한 선고를 집행할 경우, 한·미 간의 현존관계 재검토
 - 미국 대통령은 한국 정부에 정치발전과 김대중의 석방을 촉구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함.

3. 상원 의원들의 전두환 대통령 앞 서한 발송

- Sam Nunn 미 상원 군사위 소속 의원(조지아, 민주)과 Clement Zablocki 하원 외무위원장(위스콘신, 민주)은 1980.12.1. 및 12.3.자 전두환 대통령 앞 서한을 주미국대사를 경유하여 발송
- Sam Nunn 상원 의원 서한 요지
 - 김대중이 처형될 경우, 미 의회는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정책을 추진하기가 더욱 어렵게 될 것임.
 - 대통령이 수 주일간 이와 같은 어려운 문제를 결정함에 있어 본인의 뜻을 고려할 것을 희망함.
- Clement Zablocki 위원장 서한 요지
 - 양국 간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본인의 노력이 김대중 처형으로 더욱 어렵게 될 것임을 우려하면서 귀하가 앞으로 어려운 결정을 함에 있어 본인의 이러한 우려를 고려할 것을 희망함.

한국 국내정세에 대한 미국 반응. 전6권 (V.5 재미국 동포 반응)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북미

MF번호 2010-5 / 7 / 1-235

1980년 중 한국 국내정세에 대한 재미동포 반응 관련 내용임.

1. 교민 데모사태 현황

- 1980.5.28. 외무부는 최근 미국 및 캐나다 지역에서 발생한 교민 데모사태를 주미국, 주캐나다 대사관에 알리면서 공관 및 공관원 안전을 위해 각별히 조치하라고 지시함.
- 교민 데모사태 현황
 - 뉴욕: 5.23. 주뉴욕총영사관 앞에서 50여 명, 유엔대표부 앞에서 20여 명이 플래카드를 들고 약 2시간 동안 시위
 - 워싱턴 D.C.: 5.23. 교포 70여 명이 계엄령 즉각 해제 등 내용의 플래카드를 들고 미 국무부 앞에서 약 1시간 동안 시위
 - 시카고: 5.25. 시카고 민주학생연합회 주최로 약 300여 명의 학생 및 교포가 시내에서 계엄령 해제 등 구호를 내걸고 시위
 - 애틀랜타: 5.27. 학생 12명이 시내 중심가에서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
 - L.A.: 교포 30여 명이 연명으로 성명 발표

2. 한국계 미국 시민, NYT에 반한광고 게재

- NYT는 1980.6.30. '미국 국민에게 보내는 긴급호소문-한국 국민을 지원할 때는 왔다' 제하의 재미 서울대학교 동창회 등 12개 학술종교단체 연합 명의의 반한광고 게재
- 광고문 요지
 - 계엄령과 군사독재는 한국에서 미국의 국가이익이 수호될 수 없으며, 더 이상 한국 국민의 투쟁을 방관할 때는 그들의 욕구불만이 반미 증오심으로 발전될 것임.
 - 미 의회에 한국사태의 조사와 함께 미 국무부의 태만을 조사하도록 촉구하며, 카터 미 대통령에게 군사통치가 종식될 때까지 대한민국 원조의 동결을 촉구하는 편지를 쓰도록 호소함.

3. 김대중 구명단체 활동

- 1980.11.16. 자신한민보 등은 '김대중의 구명운동, 시카고 목요회' 제하의 시카고 목요회가 김대중 구명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여 450여 명의 서명을 획득한 후 상원 외교위원장, 일리노이 상원, 하원 아시아태평양위원장에게 송부하였다고 보도함.

한국 국내정세에 대한 미국 반응. 전6권 (V.6 언론보도)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북미

MF번호 2010-5/8/1-278

1980년 중 한국 국내정세에 대한 미국 언론보도 관련 내용임.

1. L.A. Times 보도(1980.8.12.자)

- 일요일 논단면, '순교자 죽음에는 침묵이 없다-김대중 사형 집행하면 한국은 격풍을 맞이할 것이다' 제하의 전 유엔대사이며 현 신디케이트 칼럼니스트인 앤드류 영의 기고 기사 게재
- 기사 요지
 - 마틴 루터킹 목사가 정부 파괴공작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았다고 가정할 때의 두려움과 격동 상황을 상상해보라. 김대중은 한국의 마틴 루터킹임.
 - 김대중 사건은 전략적 안보와 인권문제가 교차하는 것으로서 한국 사회의 극단적인 분열과 진통을 피하기 위해 군사정부는 김과 23명 관련자에 대한 날조된 기소를 취하하고, 모든 정치범을 석방하며 자유민주선거의 일정을 세워야 할 것임.
 - 한국 독재정권이 김대중을 사형 집행했을 경우, 기독교의 양심과 미국의 인권옹호자들은 이 문제를 계속 거론할 것이며, 순교자 김대중은 죽어서 더욱 강력한 위협이 될 것임.

2. 워싱턴포스트지 보도(1980.11.27.자)

- '김대중 처형은 한·일 관계를 악화시킬 것이다' 제하 기사 게재
- 기사 요지
 - 한국의 현 정부는 김대중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 구세대총이 갖고 있던 강한 반일 감정을 이용, 국민적 지지를 얻으려 하고 있음.
 - 일본 소식통은 전 대통령이 김대중의 처형을 관철할 것으로 보고 있는바, 일본 내에서 김대중 문제는 중대한 정치문제가 되고 있음.
 - 일본 소식통은 일본 정부가 김대중 문제에 있어서 압력 수단을 갖고 있지 못하며, 주한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는 미국만이 전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함.

3. L.A. Times 보도(1980.12.12.자)

- 김대중 문제에 관한 사실 게재
- 사실 요지
 - 전두환 대통령은 김씨를 사면할 정치적 권한과 법적 권한을 갖고 있으며, 사실 그의 체포, 재판, 선고는 전 대통령의 승인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었음.
 - 김씨에 대한 증거는 믿을 수 없는 것이고, 자백은 강압에 의한 것임.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 피고인에 대한 구명운동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북미

MF번호 2010-5 / 9 / 1-91

- 1980년 중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 피고인에 대한 미국 내 구명운동 관련 내용으로 피고인 김재규의 구명을 요청하는 각종 단체와 개인이 보내온 영문 서한, 문서 및 김재규 구명 광고 등이 수록됨.

미국 국무부의 한국 인권문제 보고서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북미

MF번호 2010-5 / 10 / 1-44

1. 미 국무부는 미국 대외원조법 제502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미국의 경제 및 군사원조를 받고 있는 한국을 포함한 각국의 인권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1980.2.5. 미 의회에 제출함.

2. 한국 관련 내용

- 대부분이 10·26 사태 이전 상황에 관한 것으로 종래처럼 한국 인권상황에 대해 비교적 온건한 비판을 계속하고 있음.
- 최근 상황에 대해서는 10·26 사태 이후 긴급조치 해제 및 정치범 석방이 이루어졌으며, 다만 계엄령으로 인해 일부 인권이 계속 통제되고 있음을 지적함.

3. 북한 관련 내용

- 북한 사회가 폐쇄적, 권위주의체제로 개인 인권이 완전히 무시되고 있음을 지적함.
- 북한 내 인권 제약은 언론 및 집회 자유의 억압을 훨씬 뛰어넘어 개인 각자의 의식구조를 국가가 강제하고 있다고 밝힘으로써 극히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음.

4. 인권보고서 목차

- 서언
- 제반 자유를 포함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
 - 고문
 - 잔학한 비인도적 처우 또는 형벌
 - 자의적 체포 및 투옥
 - 공정한 재판의 거부
 - 주거 침입
- 식량, 주택, 건강, 교육 등 기본적 욕구 충족과 관련한 정부시책
 - 1인당 국민소득이 1979년도 경우 1,624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소득분배도 여타 개도국에 비해 보다 공평한 것으로 보임.
 - 거주, 이전, 이민의 자유
 - 정치과정 참여 자유
- 시민적, 정치적 자유 존중 문제
- 인권 침해의 국제적 조사에 관한 정부의 태도

미국 평화봉사단원의 1980.5.18. 광주사태 [민주화운동] 관련 발언문제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북미

MF번호 2010-5 / 11 / 1-114

1980년 중 미국 평화봉사단원의 1980.5.18. 광주사태(민주화운동) 관련 발언 내용임.

1. 1980.7.15. AFP통신에 의하면 한국에서 근무한 바 있는 주한 미 평화봉사단 단원 2명이 광주 사태 관련하여 스톡홀름에서 한국 정부에 위해가 되는 과장·왜곡된 발언을 하였는바, 이에 외무부는 아래조치를 취함.

- 7.18. 주한 미국대사관에 한국 측의 불만을 표시하고 적절한 시정조치를 요구함.
 - 주한 미국대사관 측은 동인들이 한국 내에 있다면 평화봉사단에서 제적·추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겠으나 이미 출국한 이후로 실효적인 제재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표명함.
 - 외무부는 주한 미국대사관 측에 상기 2명이 양국 간 체결된 협정에 따라 내한하였음에 비추어 그들의 언행에 대해 미국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해 미국 측 시정조치를 계속 요구함.

2. 평화봉사단원으로 한국에서 근무를 마친 후 귀국 도중 스톡홀름에서 행한 Steven Clark와 Carolyn Perry 양인의 광주사태 발언과 관련, 외무부는 광주사태 시 희생자 수는 2천 명에 달한다는 최근의 외신보도에 대해 주재국 인사 및 언론계 문의가 있을 경우 동 보도는 과장된 것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는 입장을 표명하도록 주요 공관에 지시함.

- 광주사태 시 사망자 수는 174명, 부상자 수는 380명으로 집계

3. 금번 사태 관련, 한국 정부는 1980.7.22. 관계부처와 미 평화봉사단 관계관 회의를 개최하고 대책을 논의함.

한국 국내문제와 관련한 미국 의회 의원의 서한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북미

MF번호 2010-5 / 12 / 1-65

1980년 중 한국 국내문제와 관련한 미국 의회 의원의 서한 내용임.

1. Stephen Solarz 미 하원 의원(미 의회 의원 32명 연서)의 최규하 대통령 앞 서한

- 동 서한의 접수 여부를 놓고 당분간 한·미국 간 갈등 지속

2. Lester Wolff 미 하원 외무위 아·태 위원장의 최규하 대통령 앞 서한

- 1980.8.11. 동 서한을 주미국대사관 경유 접수
- 8.12. 동 서한을 청와대에 발송
- 8.19. 동 서한은 최 대통령의 사임으로 처리되지 못하고 외무부에 이첩되었으므로 박충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송부 예정
- 서한 내용
 - 최근 사태는 미국의 전통적인 지지를 어렵게 만들 것임.
 - 머스키 미 국무장관은 현재의 한국사태가 오히려 사회 안정을 해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지적함.
 - 김대중에 대한 재판은 미국의 계속적 지원을 약화시킬 것임.

3. Don Edwards 미 하원 의원의 카터 미국 대통령 앞 서한

- 인권 등 분야에서 미국의 정책 수행에 필요한 경우 수출입은행 차관을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는 수출입은행 규범에 따라 현재 인가된 대한국 차관 4억 5천만 달러의 지급을 거부할 것
- 수출입은행 자금 거부는 한국의 안보에 위협을 가하지 않으면서 미국이 행사할 수 있는 수단임.
- 한국에서는 인권이 전반적으로 억압받고 있음.

한국정세에 대한 중동 및 아프리카지역의 반응

생산연도 1979-1980

생 산 과 근동

MF번호 2010-5 / 13 / 1-87

1979~80년 중 한국정세에 대한 중동 및 아프리카지역 반응 관련 내용임.

1.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 보고

- 비상조치 및 광주사태 관련하여 당지 모든 일간지, 라디오 및 TV는 외신을 인용하여 특별한 논평 없이 연일 보도함으로써 주재국 관계인사는 물론 일반인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음.
- 당관은 서울발 외신이 사실 이상으로 과장 확대 보도되는 예가 있어 불필요한 오해와 과잉 추측의 우려가 있음을 감안, 비상조치 선포에 관한 한국 대통령의 메시지를 필두로 금번 조치의 불가피성과 조치 직전의 상황 및 북한의 도발 등을 문서로 작성하여 사우디 외무성과 당지 주재 외국공관 및 언론계에 전달하는 한편, 당관 공보관 명의 설명문도 별도로 작성하여 언론기관 및 관계인사 등 210개 기관에 배포함.
- 당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우디 정부 내 중견간부, 기업인 및 기타 인사들 중에는 한국사태를 전쟁 직전 또는 내란 등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 동 사태가 지속될 경우 주재국 내 한국업체에 대한 공사발주 기피 등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큰 지장을 받을 소지가 있는 것으로 우려됨.

2. 한국 측 종합대책

- 최근 국내 사정에 관한 올바른 인식을 주기 위해 주재국의 정계, 언론계, 경제계 등에 대한 적절한 홍보활동 전개
- 중동지역 한국근로자들이 유언비어 등에 현혹되거나 동요 없이 직장에 충실하도록 취약 사업장을 중심으로 조치 강구
- 국내사태에 대한 북한 및 중동진출 경쟁 대상국의 반한 발언 및 책동 등 저지

3. 박쌍용 외무부 정무차관보는 1980.7.16. 주한 가봉대사 대리를 초치, 김대중 문제에 대한 한국 입장을 아래와 같이 설명함.

- 김대중 문제는 한국 국내문제임이 분명하며, 한국 정부는 제3국의 견해 표명이나 논평을 요망하지 않음을 명백히 하고자 함.
- 김대중 문제는 앞으로 공개법정에서 공정하고 정당한 법 절차에 따라 처리될 것임.

한국정세에 대한 아주지역 반응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동남아

MF번호 2010-5 / 14 / 1-31

1980년 중 한국정세에 대한 아주지역 반응 관련 내용임.

1. 주인도네시아대사, 말리크 인도네시아 부통령 면담(1980.11.8.)

● 동 부통령 언급사항

- 김대중 사건 관련하여 한국 대통령에게 사면을 요청하는 서신 또는 전문을 보낼까도 생각하였으나 악영향을 우려하여 행하지 않았으며, 한국의 가장 가까운 친구의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에게 자신의 뜻을 은밀히 전해주기 바람.

2. 주방글라데시대사는 1980.11.8. 김대중 항소심과 관련하여 방글라데시 주요 일간지는 한국 육군 고등군법회의가 김대중에 대해 항소심을 기각하고 원심대로 사형을 선고하였고, 계엄사령관이 동 형량 선고를 확인, 김대중은 자동적으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고 최종 대통령에게 사면을 요청 하게 된다는 내용과 계엄사령관은 김대중 추종자 중 3명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 확인하는 한편 여타 16명에게는 20년에서 2년의 징역선고를 확인하였다는 내용을 아무런 논평 없이 로이터 통신을 인용하여 사실 보도하였다고 보고함.

3. 주홍콩총영사관은 1980.11.19. 최근 수일간 접수한 김대중 재판 관계 항의 서한 20여 통을 외무부에 송부함.

4. 네팔 인권연맹은 1980.11.24. 주네팔대사관에 서한을 보내 김대중의 처형에 반대한다는 뜻을 한국 정부에 전달해줄 것을 요청함.

한국정세에 대한 구주지역 국가 반응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구주총괄 / 북구

MF번호 2010-5 / 15 / 1-132

1980년 중 한국정세에 대한 구주지역 국가 반응 관련 내용임.

1. 주스웨덴대사는 1980.7.11. 덴마크,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4개 북구 국가 외상을 대표하여 덴마크 외상이 한국 국내문제와 관련하여 한국 대통령 앞으로 전문을 보냈다는 사실이 덴마크 신문에 보도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스웨덴 외무성 한국담당과 접촉하여 동 전문 발송 경위 등에 관해 문의함.

- 최근 북구 국가들이 상호 전화로 연락하여 김대중 문제 등을 포함한 한국의 최근 사태 발전에 관해 우려를 표명하기로 합의하고, 4개국 외상이 각각 최규하 대통령 앞으로 전문을 발송하게 됨.
- 스웨덴은 휴가 중인 Ullsten 외상을 대신하여 7.10. 외상 서리인 Jan Erik Wikstrom 문교장관 명의로 전문을 발송함.
- 핀란드는 금후 북구이사회 관계회의가 있을 경우 동 문제를 논의할 수 있으므로 이번에는 전문을 발송하지 않기로 함.
- 한국 측은 한국 국내문제에 대해 알가알부하는 동 전문의 내용이 부당함은 물론 외교관례를 무시하고 서한을 일반 전문으로 대통령에게 직접 보낸다는 것은 의전상 이해할 수 없다고 항의함.

2. 박쌍용 외무부 차관보는 1980.7.16. 한국 주재 구주지역 공관장들을 초치, 김대중 문제에 대한 한국 입장을 설명함.

- 참가자
 - Angeloni 주한 교황청대사
 - Akay 주한 튀르키예대사
 - Dudli 주한 스위스대사 대리
 - Navarro 주한 스페인대사 대리
 - Waller 주한 오스트리아대사관 상무관
- 한국 입장
 - 김대중 사건은 한국의 국내문제임이 분명하고, 한국은 이 문제에 대해 타국의 논평이나 견해를 필요로 하지 않음.
 - 김대중과 그의 공모자들은 공개재판에서 공정하고 정당한 법 절차에 따라 처리될 것이므로 타국이 동 문제에 관해 알가알부하는 것은 한국 정부에 대한 내정간섭으로 간주하게 될 것임.
 - 김대중은 재판 과정에서 가족 면회, 의사 진찰, 변호인 선임 등을 허용받게 되며, 김대중이 조사 과정에서 고문을 받았다는 외신 보도는 악의에 찬 오보임.

1980.5.18. 광주사태 [민주화운동] 관련 중남미 반응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중미

MF번호 2010-5 / 16 / 1-72

1980년 중 광주사태(민주화운동) 관련 중남미 국가 반응 관련 내용임.

1. 비상계엄 전국 확대 관련 조치사항

- 1980.5.19. 주파나마대사관
 - 정식 공한으로 동 조치가 부득이함을 파나마 외무성에 통보
 - 유력 언론인 2명에게 동 내용을 설명하고, 이해와 협조 요청
- 5.19. 주수리남대사관
 - 수리남 외무성 의전실장에게 비상조치 사태의 불가피성 설명
- 5.20. 주멕시코대사관
 - 멕시코 외무차관 및 아주국장 방문, 한국 정부 사정 설명
- 5.20. 주페루대사관
 - 페루 외무성 정무국 아시아과장에게 동 조치의 불가피성 설명
- 5.21. 주불가리아대사관
 - 불가리아 외무성 정무국장 및 국제기구국장에게 동 조치의 필요성 및 내용 설명
- 5.23. 주아르헨티나대사관
 - 아르헨티나 외무성 경제담당 차관과 의전장에게 한국 정부 사정 설명
- 5.26. 주콜롬비아대사관
 - 콜롬비아 외무성 정무 및 경제차관보, 하원 부의장, 국방장관 등에 금번 조치에 관해 상세 설명

2. 중남미 국가 반응

- 1980.5.19. 파나마 외무성
 - 한국 정부 사정 설명에 대해 이해 표명
- 5.20. 멕시코 외무차관 및 아주국장
 - 한국 정부 사정 설명에 대해 이해 표명
- 5.21. 우루과이 대통령
 - 한국 국내사태가 조속 수습될 것을 희망
- 5.23. 아르헨티나 외무성 경제담당 차관
 - 하루속히 평온과 안정을 되찾기를 기대
- 5.29. 과테말라 대통령
 - 한국 정부를 계속 지지할 것이며, 조속한 정치적 안정을 기대

의병대장 김상태 유품 인수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일본

MF번호 2010-6 / 1 / 1-23

1980년 중 의병대장 김상태의 유품 인수 관련 내용임.

1. 한국일보는 1980.6.24. 항일 의병장 김상태 장군의 유품이 당시 일본군 수비대장이던 일본군 대위의 아들에 의해 주교베총영사관에 전달되었다고 보도함.
2. 상기 보도를 접한 독립유공자 유족회가 탐문한 결과, 김상태 장군의 증손인 김형철(강원도 영월군 거주)을 찾음.
3. 주교베총영사관은 1980.9.3. 김상태 장군 유품을 유품 보관인과 연락하여 수령함.
4. 주교베총영사관은 1980.9.9. 상기 유품을 동 유족에게 전달하도록 외무부에 송부함.
 - 유품 내용
 - 사진 1매, 십자가 1점

주한 국제기구 직원 및 전문가의 대우문제

생산연도 1978-1980

생 산 과 의전2 / 조약1

MF번호 2010-7 / 14 / 1-236

1978~80년 중 주한 국제기구 직원 및 전문가의 대우 문제 관련 내용임.

1. 외국인 전문가의 특권 및 면제의 범위에 관한 지침

- 1978.5.1. 외무부, 외국과 체결한 기술협력협정 및 문화협정에 의해 한국에 파견된 외국인 전문가 및 교수 등에 대해 부여하는 특권·면제의 범위를 일정 기준으로 통일하기 위해 지침 설정

2. 한국 내에서 유엔이 향유하는 특권과 면제에 관한 한·유엔 간 실험정 체결

- 주요 내용
 - 1978.6.6. 유엔에서 서명, 1978.7.6.자로 발효
 - 한국에 주재하는 유엔에 대해 1951년 한·유엔 간 협정을 종료시키고, 1946.2.13.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국제연합의 특권 및 면제에 관한 협약”의 제규정 적용
 - 현지 고용 유엔 한국인 직원에 대해서는 공적 행위에 대한 법적소송 절차 면제, 유엔으로부터 받는 봉급 및 수당에 대한 소득세 면제만 인정하고 병역의무 면제는 불인정

3. 주한 국제기구 직원 및 전문가의 대우 문제

- 전문기구의 특권면제협약, 유엔특권면제협정, UNDP(유엔개발계획)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외무부는 주한 국제기구(UNDP, 유니세프, UNMCK(유엔기념공원), WHO(세계보건기구), ASPAC(아시아 태평양이사회) 직원 및 전문가의 대우 문제를 1979.1.1.부터 재조정하기로 결정
 - 국제기구 직원: 외교관신분증, 자동차 ‘외교’ 감찰 발급 등 기존 외교관 대우에서 하향 조정
 - 국제기구 전문가: 면세권을 불인정하고 특별신분증 C 발급 등

4. 주한 국제기구 직원 대우 재조정

- 외무부는 1979.5.30. 각 국제기구와 한국 간의 호의적 관계 및 그들의 한국 내 업무 수행 편의를 고려, 7.1.부터 협정상외 대우 수준보다 상향 조정하여 시행하기로 결정

주한 외교관에 대한 면세문제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의전2

MF번호 2010-7 / 15 / 1-29

1980년 중 주한 외국공관 및 외교관 사용 전기요금에 대한 면세 관련 내용임.

1. 주한 외교단용 전기요금 면세

- 면세 내역 및 면세액: 전기요금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10%
- 면세 해당자
 - 사용인의 명의로 주한 외국공관(대사관 또는 국제기구), 외교관(면세카드 소지자)일 것
- 전기요금 분류
 - 대사관용 전력은 업무용, 대사관저 및 외교관의 주택용 전력은 주거용 요금 부과

84

2. 주한 필리핀대사관 전기요금 면세

- 주필리핀대사는 1980.3.27. 주재국의 외교관 사용 전기요금에 부과하는 에너지세의 상호주의에 의한 면세방침 통보와 관련, 한국 정부의 외교공관 및 외교관에 대한 여사한 면세혜택 부여 여부 문의
- 외무부는 4.16. 주한 필리핀대사관의 경우 전기사용 계약자가 한국인으로 되어 있어 면세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나, 계약자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면세혜택이 가능하다고 회신

3. 주한 일본대사관 전기요금 면세

- 1980.11.27. 주한 일본대사관은 외교 공관을 통해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일본 외교관의 전기 및 가스 요금의 면세가 시행되지 않고 있음을 외무부에 통보
- 12.10. 외무부,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상호주의 원칙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관련 조항에 근거하여 아래 해결방안을 국세청장(한국전력 사장)에게 제시하고 검토 요청
 - 한전과 이해관계 외교관 사이에 단독 전력 수용계약 체결
 - 한전 또는 아파트 관리자가 선납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방안

주한 독일 전문가의 특권 및 면세문제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의전2

MF번호 2010-7 / 16 / 1-23

1980년 중 한·독일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및 의정서에 따른 주한 독일 전문가의 특권 향유 범위 관련 내용임.

1. 인적 범위

- 기술훈련센터와 모범연구소의 독일 교사 및 기술자
- 독일 전문가, 특정 사업의 자문관, 정부 고문관 및 그 가족

2. 물적 범위

- 독일 전문가가 독일 측으로부터 받는 보수에 대해 조세 또는 기타 재정적 부과금 면제
- 독일 전문가와 그들 가족이 한국에 도착한 날로부터 9개월 이내에 수입하는 각 세대당 가구와 1대의 자동차를 포함한 개인용품에 관해 수출입세와 기타 재정적 부과금 면제
- 독일 전문가 및 그들 가족에 대해 개인용품의 한도 내에서 의약품, 식품 및 음료의 면세수입 허용
 - 9개월 이후의 의약품, 식품 및 음료 등에 대해서는 합리적 한도 내에서 면세수입을 허용하는 것으로 양측이 합의
 - 동 의정서에 예시된 전기 품목 이외에도 전문가의 체재기간 동안 가전제품 및 자동차의 부속품 면세수입에 합의하여 이를 허용

주한 외교단지 조성사업 추진

생산연도 1979-1980

생 산 과 의전2

MF번호 2010-7 / 18 / 1-145

1979~80년 중 주한 외교단지 조성사업 추진 관련 내용임.

1. 추진 경위

- 1978.8월 외교단지 조성을 위한 관계부처 실무자 회의(건설부, 제1무임소장관실, 외무부, 서울시 각 담당관 참석)에서 외교단 주택난 해소를 위해 정책적 차원에서 관계부처 간 협의하기로 합의
- 서울시는 1978.10.27. 대통령 재가를 얻어 10월부터 종로구 구기동에 공관 및 관저용으로 12,000평, 강남구 역삼동 및 서초동에 공관원 주택용으로 28,000평의 부지를 마련하여 외교단지를 조성하고자 택지를 조성 중임.

2 주한 외국공관 대상 설문서 발송

- 외무부, 1979.4.11. 주한 외국공관을 대상으로 구기동 외교단지 조성방안에 관한 의견 및 입주 희망 여부를 조화하는 설문서 발송
 - 14개 공관이 입주 희망, 미국 등 11개 공관은 입주 불희망 의사 표명

3. 주한 외교단장의 외교단지 내 주택 건립 및 임대 요청

- 주한 외교단장(주한 튀르키예대사)은 1979.9.13. 구기동 외교단지 조성과 관련, 부지매입을 희망하는 3~4개 공관을 제외한 여타 공관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에서 주택을 건립, 임대하여 줄 것 등을 요청

4. 서울시 구기동 및 서초동 외교단지 조성 관련 협조 요청사항

- 구기동 외교단지에 대해서는 각국 건축의 독창성이 제고되도록 설계상의 제반 제약을 해제하기 위해 현재 풍치지구내 속한 동 단지를 미관지구로 지정하여 줄 것
 - 1980.8월 서울시의 요청에 대해 건설부는 11.14. 구기동 단지에 대해 풍치지구 해제
- 서초동 외교단지에 대해서는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조정하여 줄 것
 - 8월 서울시의 요청에 대해 건설부는 11.17. 서초동 단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 조치

5. 참고자료

- 외교단지 조성 관계(1979.9.19., 외무부)
- 구기동 외교단지 관계(의전실), 종로구 구기동 외교단지 조성사업(1980.8.14., 의전실)
- 외교단지 조성사업(8.23., 외무부 의전실)

한국의 대캄푸차 정책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동남아

MF번호 2010-8 / 2 / 1-44

1980년 중 한국의 대캄보디아(구 캄푸차) 정책 관련 내용임.

1. 캄보디아대표권 문제와 아세안 입장

- 아세안 입장: 폴포트 (구) 정권을 합법 정부로 재확인
 - 아세안 외무장관 공동성명(1980.6.25.): 베트남군의 태국 침공 비난 및 즉각 중지 촉구
 - 아세안 외무장관 폐막 공동성명(6.26.): 폴포트 정권 지지 재확인 및 유엔대표권 계속 지지
 - 아세안 내부의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은 현실 인정론: 행삼린 신정부 승인 대신 베트남군 철수, 폴포트 정권 지지
- 한국 정부 기본입장
 - 아세안 입장에 동조, 단 대베트남 관계도 다소 고려(아세안 국가는 한국의 전통적 우방, 아세안과의 대화 추진 및 안보유대 강화)
 - 상기 한국 측 입장의 대외적 표시는 필요시 최소한의 경우에 한하도록 함.

2. 외무부장관, 아세안 국가 대사 면담(1980.7.25.)

- 주한 아세안 4개국 대사(싱가포르 제외)는 각기 자국 정부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전제하고, 지난 제13차 아세안 외무장관회의의 공동성명을 전달한 후 캄보디아 문제에 관한 아세안 입장을 설명하면서 지지 협조를 요청해 옴.
 - 아세안 입장: 베트남군 무력 점령하에 수립된 행삼린 정권의 승인은 베트남 행위를 용인하고 캄보디아 문제의 평화적 해결(중립, 비동맹, 민의 반영 정부수립)을 방해하는 것으로 봄으로써 폴포트 정권을 인권면에서는 지지하지 않지만 계속 정통 정권으로 인정하는 것임.
 - 한국 입장: 아세안과의 우호 협력관계 증진을 중시하는 한국으로서는 가능한 한 협력을 할 용의가 있으나, 한국이 유엔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아세안 입장을 적극적으로 돕기에는 제약이 있을 것임.

국제기구에서의 중국대표권 문제에 대한 한국의 입장

생산연도 1976-1980

생 산 과 중국 / 국제기구2

MF번호 2010-8 / 3 / 1-192

1976~80년 중 국제기구에서의 대만(구 자유중국)대표권 문제에 대한 한국 입장 관련 내용임.

1. IOC(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의 대만대표권 문제

- 외무부 아주국은 1977.11.29. 각종 국제경기 연맹회의 및 스포츠 경기에서의 대만대표권 문제 대처방안(시안)에 관한 재가를 득함.
- 1978.4.14. 서울에서 개최된 세계육상연맹집행위에서 한국 정부는 대만의 호칭을 '대만'으로 개칭하는데 찬성하고, 중국(구 중공) 가입 및 대만 축출에 기권함.
- 이와 관련, 양서곤 대만 외교부 차관은 5.29. 주대만대사를 초치, 한국 측 행위는 극히 비우호적 행위이며 여사한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해 주기 바란다고 언급함.
- 1979.4.7. 몬테비데오에서 거행된 제81차 IOC 회의에서 중국 가입, 대만 잔류 결정
- 1979.11.26. 나고야 IOC 회의에서 '중화민국올림픽위원회'를 '중국대북올림픽위원회'로 명칭 변경 결정

2. 1978년도 세계동력회의에서의 대만대표권 문제

- 1978.8.17. 외무부는 동력자원부에 국제회의에 있어서 중국 및 대만과 관련되는 문제에 관한 지침을 송부하고, 정부 방침에 따라 세계동력회의의 대표단장에게 훈령하도록 요청

3. 대만의 IUSS(국제지질학연맹) 재가입 문제

- IUSS는 1976.8월 시드니 개최 제25차 총회에서 대만을 축출하고 중국 가입 승인
- 대만이 재가입을 추진하였으나, 대만 가입에 불리한 내용의 수정안이 통과되어 대만 재가입 부결

4. 중국의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CCOP(동아시아및서태평양해저광물자원공동탐사 조정위원회) 참가 문제

- 외무부는 1979.8.16. 중국의 ESCAP/CCOP 참가에 대해 '중국의 가입에 관한 입장을 회보할 필요 없음'이라는 입장을 정하고 8.17. 동력자원부에 동 내용 통보

이란·이라크 사태 관련 중동문제 특별위원회 회의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근동

MF번호 2010-8 / 4 / 1-49

1. 제1차 대중동 대책회의(1980.10.16.)

- 대이란 관계 악화 방지: 주이란대사의 조기 임명 및 가능한 한 조속 부임조치, 북한의 모락선전 적극 봉쇄 및 대비
- 배터리 수출 건: 이란 측 요청사항인 PRC-77형 무기용 배터리 수출은 긍정적 방향으로 추진
- 근로자 대피 문제: 당분간 사태를 관망하면서 추후 결정
- 중동지역 각국별 진출방안 연구 검토 등

2. 제2차 대중동 대책회의(1980.10.20.)

3. 제3차 대중동 대책회의(1980.10.27.)

4. 제4차 중동문제 특별대책회의(1980.11.25.)

- 기본정책 고려
 - 기존의 중립정책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취하지 않음.
 - 수출시장 또한 원유 도입선으로 이란과의 관계 증진에 중요성을 부여함.
 - 이라크의 잠재적 가치를 인정하는 동시에 이란·이라크 전쟁 이후 한국의 중립정책을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무기공급 등을 요청(주프랑스대사관 경유) 해오고 있는 이라크와의 관계 개선은 중장기 대중동정책의 주요 목표로 삼음.
- 이란 및 이라크에 대한 군수품 공급
 - 이란에 대한 일반 군수품 수출은 제3국을 경유하여 조용한 방법(해상운송)으로 추진함. 무기류는 전쟁 종료 후로 연기함.
 - 이라크에 대해서는 전쟁 종료 후에 협의한다는 방식으로 상담을 지연시킴.
- 이라크의 건설 재개 요청
 - 1981.1월까지 약 400명의 기능공을 재투입하도록 하되 최소한 민간회사 간의 신변보호협정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함.
- 주이란대사관 공보관 파견 문제
 - 주이란대사관 공보관은 3급 갑류 공무원 1인으로 부활시킴.

한국의 대일본 외교정책

생산연도 1979-1980

생 산 과 일본

MF번호 2010-8 / 5 / 1-75

1979~80년 중 한국의 대일본 외교정책 관련 내용임.

1. '1980년대 한국 외교' 자료 송부(1979.8.4., 주일본대사 보고)

- 일본 정치정세, 군사, 경제, 외교정책, 한국과의 관계 및 전망, 앞으로의 과제(일본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 한국의 외교 목표(일본이 당면하고 있는 과제 고려)

2. 중·장기 대일본 외교 대책(1980.12.18.)

- 한반도 주변 정세 전망
- 일본과 한반도 정세와의 관계
- 한·일본 관계의 전망과 그 대책
- 중·장기 대책
 - 외교·안보적 측면: 일본과의 선린 우호관계 유지 및 발전, 일본 내의 대한민국 지지 기반 확대 강화, 일본 정부를 통한 제3국과의 관계 개선, 대미국 외교 적극화로 일본 견제, 동북아 정세 안정화에 일본 기여도 촉구, 한·미·일 안보협력으로 일본 군국주의 견제
 - 경제·자원적 측면: 점진적 수출 확대를 통한 무역 불균형 개선, 자원 확보를 위한 한·일본 간 협력체제 구축
 - 홍보·교민적 측면: 국민적 차원에서의 우호관계 발전 유도, 일본의 편파 여론 시정 노력

한국의 대PLO(팔레스타인해방기구) 정책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중동

MF번호 2010-8 / 6 / 1-84

1980년 중 한국의 대PLO(팔레스타인해방기구) 정책 관련 내용임.

1. PLO에 관한 외무부장관 성명(1980.5.13.)

- 정부는 PLO를 사실상 승인 단계를 넘어섰으며, 절차상 승인도 시간문제에 불과함.
- 한·사우디 공동성명 문안에 PLO에 대한 승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으나, 공동성명 문안의 표현은 PLO를 적극적인 자세로 평가한 것이며, 사실상 승인한 것으로 받아들여도 좋을 것임.
- 그러나 한국에 PLO 대표부를 설치하는 문제와 같은 기술적인 문제는 아직 검토하지 않음.
- 현재 82개국이 PLO 대표부를 설치하고 있는 등 세계적인 추세가 PLO를 인정하고 있는 만큼 한국 정부가 PLO를 상대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제정세 흐름에 역행하는 것임.

2. 제1회 아시아 주니어 배구선수권대회(1980.10.13.~27., 서울) 시 PLO 대표단 초청 문제 검토

- 배구연맹에서 PLO 지위: 1980.7.31. 모스크바 국제배구연맹 총회 시 PLO 가입
- PLO 대표 초청 필요성
 - PLO의 아시아 배구연맹 가입 확실
 - 자연스러운 스포츠 교류를 통한 대PLO 관계 개선
- 외무부 중동국 의견
 - 배구대회가 순수한 스포츠대회임을 감안, 스포츠 교류를 통한 대PLO 관계 개선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 배구협회나 동 협회장 명의로 PLO 대표를 초청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3. IMF(국제통화기금) /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총회 시 PLO 옵서버 초청 문제에 대한 한국 입장 (1980.9.3.)

- IMF / IBRD 이사회는 1980.7월 개최되는 연차총회에 PLO 옵서버 초청을 저지하기 위한 미국 측 결의안을 채택하고, 이를 각 회원국(총회)의 서면 투표에 회부함(투표 마감일: 1980.9.9.).
- 한국 입장 검토 및 건의
 - 미국 측에 대하여 한국의 투표 불참 입장을 사전에 설명
 - 사우디 등 아랍 국가의 요청에 부응하여 금번 서면 투표에 불참하도록 함.
 - 한국 정부가 대미국 관계의 희생을 무릅쓰고 아랍권 입장에 동조하기로 결정한 사실을 사우디 등 몇몇 아랍 국가에 통보하도록 함.

미국 Reagan 신정부 수립에 따른 한·미국 외교관계 고찰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북미

MF번호 2010-8 / 7 / 1-306

1980년 중 미국 레이건 신정부 수립에 따른 한·미국 간 외교관계 고찰 관련 자료 내용임.

1. 미국의 대외정책 및 대한민국 정책 전망(1980.11.10.)

- 개관, 미국의 대외정책 전망, 레이건 신행정부의 대한민국 정책, 한·미국 현안문제 타결 전망 및 대책

2. 미국의 신정부와 한·미국 관계의 발전 방향(1980.11.13.)

- 개관, 공화당 정강정책과 당선 후 기자회견 내용, 한·미국 현안문제 및 대책, 참고자료(미국 행정부 사무인수반과 자문위원회 위원명단 및 이력사항)

3. 한·미국 관계(10·26 사태 이후)

- 10·26 사태 이후 한·미국 관계, 미·북한 관계 접근 동향

4. 최근의 한·미국 관계(1980.12월)

- 서언, 한·미국 관계 현황, 주요 현안(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안보협력 강화, 경제협력 및 통상 확대, 당면한 소위 김대중 문제에 대한 이해 촉구), 한국의 대미국 요망사항, 미국의 한국에 대한 요망사항

5. 한·미국 현안문제(1980.12월)

- 한·미국 관계 개관, 한·미국 현안문제, 미국의 대한민국 정책(신행정부), 한국의 대미국 현안문제 타결 추진 방향, 결어

6. 대미국 관계 개선방안(1980.12월)

- 현황, 현안문제, 한국의 대미국 요망사항, 미국의 대한민국 요망사항, 대미국 교섭 추진 방향, 참고 사항

7. 대북한 제압외교를 위한 중·장기 외교정책(1980년)

- 한반도 주변 정세, 강대국의 대한민국 정책, 관계 발전 방향, 대책

대아프리카 외교 강화방안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서부아프리카

MF번호 2010-8 / 9 / 1-37

1980년 중 대아프리카 외교 강화방안 및 Mini States 접촉 강화 관련 내용임.

1. 아프리카지역 공관의 주재국 및 겸임국에 대한 외교 강화 대책 제출

- 주카메룬대사관, 주가봉대사관, 주케냐대사관, 주우간다대사관, 주에티오피아대사관

2. Mini States에 대한 접촉 강화

- Mini States와의 효율적인 접촉 강화를 위한 주유엔대표부 건의에 따라 아래 13개국에 대하여 기존 접촉창구와 병행하여 주유엔대표부를 접촉창구로 활용하도록 함.
 - Mini States 명단: 몰디브, 사모아, 솔로몬제도, 적도기니, 지부티, 코모로, 카보베르데, 상투메프린시페, 바베이도스, 도미니카연방,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바하마
- Mini States와의 접촉 관련 참고 및 유의사항
 - 바베이도스, 도미니카연방, 세인트루시아 및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우호 협력관계 강화 및 북한침투 책동 저지에 주안점을 두고 접촉활동 강화
 - 바하마: 수교 교섭 중점 추진 중임. 1980.11월 김용휴 특사파견을 교섭하였으나 국내 사정 이유로 한국특사 접수를 회피
 - 사모아, 솔로몬제도 및 몰디브: 현재로서 현안 교섭 추진에 특별한 애로점은 없음.
 - 지부티 및 코모로: 주프랑스대사로 하여금 외교 업무 지속
 - 카보베르데: 주포르투갈대사 및 주세네갈대사를 통한 현재의 접촉채널 계속 유지
 - 적도기니: 당분간 겸임대사(주카메룬대사) 출장을 강화하는 등 대화채널 일원화
 - 상투메프린시페: 주유엔대표부의 동국 측에 대한 대화통로 확보가 긴요한바, 이를 위하여 주유엔 포르투갈대사의 측면 지원 확보

1980년대 대구주 외교 강화방안

생산연도 1980-1981

생 산 과 구주총괄

MF번호 2010-8 / 10 / 1-143

1980년대 대구주 외교 강화방안 관련 내용임.

1. 10·26 사태 이후 구주지역 외교의 문제점

- 개요, 대서구 남북 외교활동 현황, 구주 외교상 현안, 북한의 대서구 외교활동 실태, 한국 외교활동상 문제점, 결론 및 대책

2. 1980년대 대구주 외교 강화방안(1980.9월)

- 1980년대 국제사회의 여건 변동
- 여건 변동에 따른 대구주 외교 강화의 필요성
- 대구주 외교 강화방안
 - 외무장관회담: 정기적 외무장관회담 개최(프랑스, 벨기에, 영국 등)
 - 정책협의회 활용: 영·독·프·벨기에 등과 연 1회 개최. 기타 국가와의 정책협의회 개최 추진
 - 경제 관계 심화: 각국과의 경험증진, 교역량 증대 및 무역균형 유지 등
 - 초청 및 방문외교 강화: 정부 고위당국자 교환 방문 등
 - 정당, 의회와의 관계 심화: 여·야당 요인과의 접촉 강화 등
 - 지역협력체와 협력 강화: EC(구주공동체), NC(북구이사회),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 외교기반 강화: 미수교국과 국교수립 적극 추진(아일랜드) 등
 - 북한침투 저지: 공식 관계 수립 저지(벨기에, 스페인, 이탈리아), 북한의 통상·경제 침투 저지 등
 - 친한단체 육성 및 강화: 참전용사회 적극 활용 등
 - 문화·예술·학술·체육 교류 강화: 구주 국가에서의 한국 미술 5천 년 전 조기 개최 등

3. 북한의 대구주 침투 저지 및 한국의 수교 확대방안(1980.9.25.)

- 한국 단독 수교국에 대한 북한침투 저지: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튀르키예, 영국, 프랑스,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 동시 수교국에서의 북한 고립화 방안 및 관계 개선: 북구 국가, 몰타
- 남·북 미수교국에 대한 북한침투 저지 및 한국과의 관계 개선: 아일랜드, 산마리노, 사이프러스

대중남미 외교 강화방안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중미

MF번호 2010-8 / 11 / 1-42

1980년 중 대중남미 외교 강화방안 관련 내용임.

1. 한국의 대카리브 외교 강화방안(1980.8월)

- 카리브 정세 개관
- 대카리브 외교정책
- 한국의 대카리브 외교 강화방안
 - 남북한의 대카리브 외교 현황
 - 북한의 대카리브 침투 양상
 - 한국의 대카리브 외교 강화방안: 거점 상주공관 증설 확보(바베이도스, 도미니카공화국에 상주 공관 신설), 한국공관 비상주 국가 순방 강화, 정보망 다변화, 미수교국에 대한 수교 추진(중남미 30개국 중 27개국과는 기수교, 카리브 소재 3국과는 미수교), 독립예정국에 대한 수교 교섭 추진(앤티가바부다, 세인트키츠네비스 등)

2. 대중남미 외교시책 및 업무계획 요약(1980년)

- 정세 개황
- 남북한 공식 관계 대비
- 1980년도 주요 업무계획
 - 상주대사관 개설(카리브 1국)
 - 겸임국 및 관할국 조정
 - 주한 상주공관 유치
 - 유력인사 방한 초청(멕시코, 베네수엘라, 브라질에 비중)
 - 사절단 파견: 대통령 취임식, 독립경축 특사, 미수교국 정세조사, 북한침투 대상국
 - 미수교국 수교 추진: 트리니다드토바고, 바하마, 쿠바
 - 겸임국 활동 강화
 - 통상 증진
 - 협정 체결 등

미국 국무부의 한국 관계 브리핑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북미

MF번호 2010-8 / 12 / 1-131

1980년 중 미 국무부의 한국 관계 브리핑 관련 내용임.

1. 1980.8.13. 정오

- 미국의 한국 군부에 대한 태도
 - 미국은 한국 상황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고 있으며, 한국 국민의 전폭적 지지를 받는 자유롭고 공정한 정부가 수립되기를 희망함.
- 한국 국민이 원하는 정부형태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행사가 문제의 핵심임.
- 한국은 미국이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으며 미국은 다만 한국에서 일어나는 사태의 진전 상황을 주시하고 있을 뿐이며 어떠한 협박(threats)도 가하지 않고 있음.
- 김영삼의 정계 은퇴에 대해서는 논평을 거부함.
- 최규하 대통령의 하야설에 대해서도 논평을 거부함.

2. 1980.8.27. 정오

- 전두환 대통령 당선에 대한 논평
 - 예상치 못한 일은 아니며 이는 개헌과 그것에 의한 총선 시까지의 과도정부임. 이 정부의 성공 여부는 광범위한 지지 기반을 갖는 정부와 국민 참여를 허용하는 정치제도를 이룩하는 것이며, 신정부가 이러한 방향으로 움직일 것으로 기대함.

3. 1980.8.29. 정오

- 카터 미 대통령이 단지 의례적이 아닌(substantive) 친서를 보낸 것은 사실이나 내용은 밝힐 수 없음.
- 한국 정부의 정치 일정 약속이 지켜지길 기대하며, 장래 한·미 관계도 이 약속의 준수 여부에 따라 가변적이 될 것임.

4. 1980.9.17. 정오

- 지금 당장 김대중 사건에 논평하지 않겠음. 그러나 여하간 사형 감형을 위한 정부 간 협의는 없음.
- 김대중 감형 건에 대해 추측하지 않겠으며, 향후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 논평하지 않겠음. 머스키 장관의 성명에서 나타난 바 있지만 미국의 우려는 한국 정부가 이미 알고 있음.

중공·소련의 대한반도 태도

생산연도 1979-1980

생 산 과 중국 / 동구

MF번호 2010-8 / 13 / 1-28

1979~80년 중 중국(구 중공)·소련의 대한반도 태도 관련 내용임.

1. 1979.1.6.자 소련 이즈베스티야지의 '한·중국 관계' 위요한 중국 비난 논평

- 워싱턴포스트지는 한국이 대중국 수교 목적으로 우선 중국과 통상 관계를 수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중국이 결국 서울 측의 이러한 움직임에 호응해 올 것으로 한국은 믿고 있다고 보도

2. 러시아 언론 및 러시아 고위층의 대한민국 동향 분석

- '모스크바방송은 중국은 한반도 통일문제에 있어 남조선 정권을 인정하려 함'(1978.12.14.)과 '한국의 대중국 수교 노력에 중국이 호응할 것'(12.31.) 등 두 차례에 걸쳐 보도
- 밴스 미 국무장관이 그로미코 소련 외상에게 '한·소련 관계 개선이 바람직하다'라고 언급한 데 대해 러시아 측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음.

3. Julian Ridsdale 영국 하원 의원 언급

- Ridsdale 의원은 1979.11.22. 주영국대사에게 베이징 체류 시 피우 영국 총리 보좌관 등과 의견 교환을 가진바, 피우 보좌관은 중국이 'UNITED KOREA'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언급함.
 - 소련이 북한의 남침을 종용하고 있는 반면에 중국은 이를 제지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
- 주영국대사가 12.13. Ridsdale 의원 접촉 시 피우 보좌관 발언에 대해 문의한바, 사적인 의견으로 보이며 소련이 대리전쟁을 종용해 온 것을 비판하는 것과 관련하여 그러한 발언이 나온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

생산연도 1979-1980

생 산 과 일본

MF번호 2010-8 / 14 / 1-167

1979~80년 중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 관련 내용임.

1. 오키타 일본 외상의 기자회견 중 한국 관계 요지(1979.11.9.)

- 한국정세는 비교적 빠르게 수습될 전망
- 김대중 사건 문제 등은 한국 측의 수습 방향을 고려하여 대응
- 양국 간 경제면을 포함하여 기존 관계 유지
- 대북한 관계는 경제문화 측면에 국한
- 남북대화를 실현할 수 있는 환경조성 노력

2. 오히라 일본 수상의 연두 기자회견 중 한국 관계 요지(1980.1.1.)

- 최규하 대통령 중심으로 국민융화 목표로 조용한 변혁이 행해지고 있는바, 일본은 이를 주시하면서 성공되기를 기대하고 있음.
- 남북대화의 진전은 없으나, 미·소·중·일본이 기회 있을 때마다 한반도의 평화에 대해 상호이해를 돈독히 하여 국제환경의 조성을 꾀하여야 할 것임.
- 김대중 문제 관련 한국 공권력의 일본 주권 침해 증거가 없으므로 한국에 원상회복을 요구할 입장은 아님. 외교가 결착되어 있으므로 새로운 사실이 없는 한 재론할 입장은 아님.

3. 스즈키 일본 수상의 기자회견 중 한국 관계 요지(1980.7.18.)

- 한·일본 간 관계는 자민당과 내각이 일관되게 한·일본 간 우호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왔으며, 금번 내각에서도 동 방침에는 변함이 없음.
- 한국정세 추이를 신중히 지켜봐야 할 것인바, 기본적으로 금후에도 한·일본 간 관계를 발전시켜 갈 것임.
- 각료회의 문제는 외상 등 관계 각료와 협의하여 방침을 정할 것임.

미국의 대외정책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북미

MF번호 2010-8 / 15 / 1-107

1980년 중 미국의 대외정책 관련 내용임.

1. 브레진스키 미 대통령 안보담당 보좌관 연설(1980.5.16.)

- 미국의 외교정책을 5개 항목으로 나누어 설명
 - 우방 선진국과의 유대강화
 - 제3세계, 비동맹 국가와의 관계 증진, 특히 공산계 비동맹국의 진정한 의미에서의 비동맹 관계 촉진
 - 중동평화 달성, 중동지역에 대한 외세침입과 파괴 행동 방지
 - 미국의 공약 준수와 전략지역 안보 확보
 - 소련과의 균형 유지, 미국은 소련과의 우호와 군축 합의를 원하나 소련의 성의 표시 없이는 실현이 어려움.

2. 차기 미국 의회의 대외문제 처리 전망(1980.11.12., 뉴욕타임스)

- 민주당 진보파 중진의원들의 대거 탈락으로 제97차 의회는 외교·국방 분야에서 레이건 행정부에 보다 폭넓은 행동의 자유를 줄 것으로 전망됨.
- 특히 과거 12년간 대통령의 전쟁 수행, 대외무기 판매 및 정보공작 활동의 권한을 억제하는 의회의 제반 입법조치 등이 폐지 또는 수정될 가능성이 있음.

3. 레이건 후보의 대통령 당선 후 동향(1980.11.9., 변홍진 한국일보 기자의 레이건 회견내용)

- 한·미 관계: 새로 출범한 한국 정부와 긴밀한 관계 유지, 동맹관계 증진에 역점, 선거공약 준수 재확인, 신뢰를 바탕으로 외교정책 추진
- 주한미군: 감축 불고려, 계속 주둔 문제는 더 이상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없음.
- 인권문제: 미국의 가치 기준에만 따라야 한다는 종래방침을 재고하고, 국가체제에 관계없이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이념을 바탕으로 정책 추진
- 한국 통일문제: 평화와 자유 원칙 고수. 북한의 무력 통일방안에 단호히 대처

Carter, Jimmy 미국 대통령 연두교서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북미

MF번호 2010-8 / 16 / 1-77

1980년 중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의 연두교서 및 연설 관련 내용임.

1. 카터 미 대통령의 연두교서(1980.1.22. 발표) 중 대외관계 요지

- 1980년대의 미국 대외정책 5대 목표
 - 미국과 미국의 맹방 및 우방들의 군사력 증강 지속
 - 맹방 및 우방과의 협력하에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침략자에 대한 응징을 위한 적극 외교 전개
 - 에너지와 인플레이션 문제 해결에 역점을 두고 긴박한 국제경제 문제 해결에 진력하며, 교역 확대 및 개발 원조를 수단으로 하여 세계 경제성장 추구 계속
 - 전 세계에 걸쳐 민주제도의 발전과 인권보호책 개선을 열성적으로 지원 계속
 - 핵무기의 확산과 개발 방지 노력에 역점을 두고, 상호적이고 감시 가능한 군축 실현에 계속 헌신
- 아시아 안보
 - 세력균형은 아시아 안보에 근본적임.
 - 미국은 동 지역의 강력한 군사력 주둔 및 일본, 호주, 뉴질랜드, 한국 등 동맹국들과의 긴밀한 관계 유지를 통해 세력균형을 유지해 왔음.
 - 작년의 경우, 필리핀과는 1991년까지의 기지 사용을 위한 협정을 체결하고 일본과는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국과는 주한미군을 적어도 1981년까지는 현 수준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한국 안보에 대한 미국 공약 재확인인 박정희 대통령 서거 이후 정치적 변화를 겪고 있는 한국인들에게 극히 중요함.
 - 소련의 아프간 침공에 대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반응은 고무적이었는바, 호주가 특히 그러하였음.

2. 카터 대통령의 연두연설(1980.1.23.)

- 동 연설에서 한국에 대한 특별한 언급은 없었으나, 미국은 1950년대 한국에 대한 소련의 도전을 저지한 바 있으며, 유럽 및 태평양지역뿐만 아니라 전략적 중요성을 가진 모든 지역에서 우방국의 이익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함.

United Arab Emirates(UAE)의 국문 명칭 개칭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근동

MF번호 2010-8 / 17 / 1-43

1980년 중 UAE(아랍에미리트연합국)의 국문 명칭 개칭 관련 내용임.

1. UAE 국문 명칭 개칭 검토(1980.7.8.)

- UAE의 국문 명칭 개칭 문제
 - 동국이 성격상 7개 반자치국으로 구성된 연합국이라는 특성을 부각시키는 동시에 구성원인 Emirate의 지위를 존중하는 두 개 측면을 고려하고 Emirate의 아랍 원어를 원용하여 그 명칭을 '아랍이마라트연합국'으로 하거나 Emirate의 영어 명칭을 원용하여 '아랍에미레이트연합국' 중 어느 하나로 개칭할 것을 건의

2. UAE 국문 건의(1980.7.21.)

- 1980.6.27. 무역진흥확대회의에서 대통령이 지시한 UAE의 국문 명칭과 관련, 외무부는 아랍지역 주재 공관장들의 의견을 종합, '아랍에미리트연합국'으로 개칭할 것을 건의

3. UAE 국문 명칭 개칭

- 1980.6.18.자로 한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한 UAE를 종래 '아랍토후국연합'으로 호칭하여 왔으나, 동국의 국문 명칭을 7.28.자로 '아랍에미리트연합국'으로 개칭하기로 함.

한·버마 관계 증진방안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서남아

MF번호 2010-8 / 19 / 1-54

1980년 중 한·미얀마(구 버마)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한·미얀마 관계 현황 및 증진방안(1980.8월)

- 문제 제기
 - 1975.5.16. 한국 및 북한과 동시 수교한 미얀마는 표면상 대남북한 등거리 외교를 표방하였으나, 그동안 대통령, 수상, 외무장관 등 수뇌급 인사의 북한 방문과 북한의 경제협력 지원 등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증진시켜 옴. 한반도 문제에 관해서도 북한 측 입장을 지지하는 등 대북한 관계에 적극적인 면을 보여 온 데 비하여 한국과의 관계는 다소 소원해진 감이 있음.
 - 한국 정부는 우선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대미얀마 관계 증진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함으로써 한·미얀마 관계가 금후 더욱 발전되고, 미얀마에서의 대북한 우위 외교를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조성되어야 할 것임.
- 한국의 대책(세부 추진계획)
 - 내원 대통령 방한 추진
 - 외무부장관 미얀마 답방
 - 세인 루인 내무·종교장관 방한 추진
 - 무상원조 공여 계속
 - 미얀마 Aid Group 참가
 - 언론인 방한 초청
 - 제3차 한·미얀마 통상장관회담 조기 개최

2. 대미얀마 관계 증진을 위한 대책 건의(1980.11.1., 주미얀마대사관)

- 유력인사 방한 초청: 제2공업장관 Maung Cho 대령, 내무·종교장관 Sein Lwin 준장, 상무장관 Khin Maung Gyi 대령
- 외무부장관 미얀마 방문
- 경제·기술협력 및 통상 관계: 무상원조, 미얀마 원조단 참여, 미국 수입, 양봉 훈련, 농업시찰단 초청, 기타 기술 훈련
- 문화교류: 축구 시합, 미얀마 민속예술단 초청, 공보방송국장 및 TV 연수생 초청, 미얀마어 연수생 파견
- 공관 인원 증원

한·중국 정무일반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중국

MF번호 2010-8 / 21 / 1-56

1980년 중 한·대만(구 중화민국) 간의 주요 정무 관계 동향임.

1. 이문용 외무부차관, 덩모우시 주한 대만대사 면담(1978.1.22.)

- 덩모우시 대사는 경제각료회의가 한국의 국내사정으로 연기되었다고 하면서 조속한 개최를 희망
- 이문용 차관은 동 회의가 취소된 것이 아니라 연기된 것이며, 조속한 개최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언급

2. 국무총리, 양진영 박사 접견(1980.1.31.)

- 동 총리는 중국(구 중공)과의 관계 개선 희망을 표하면서 공식관계는 어렵더라도 경제교류는 큰 장애가 없을 것이라고 하고, 제3국을 통한 교역보다 직접적인 교역을 하는 것이 양국에 유익할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
- 또한 양 박사가 가능한 협조를 해 주기를 바란다고 한바, 양 박사는 가능한 협력을 하겠다고 함.

3. 최규하 대통령, 당종 전 주한 대만대사 면담(1980.7.11.)

- 최 대통령은 '나는 새것을 취하되 옛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라고 언급한 데 대해 당종 전 대사는 '옛것을 중시한다'라는 말씀에 감명을 받았다고 말함.

주프랑스대사관 피습사건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서구

MF번호 2010-9 / 1 / 1-51

1980년 중 주프랑스대사관 피습사건 관련 내용임.

1. 제1차 피습(1980.9.17.)

- 사건 개요
 - 1980.9.17. 프랑스 청년 공산당원 10여 명이 주프랑스대사관에 침입, 적색 물감을 공관 벽과 직원 차량에 투척
- 조치사항
 - 주프랑스대사는 프랑스 외무부 및 경찰에 공관 특별경비 요청
 - 외무부는 전 재외공관에 공관 경비 강화 지시와 주한 프랑스대사를 초치하여 동건 배후 조사를 요청
- 프랑스 측 조치
 - 주프랑스대사관에 대한 파리 경찰의 경비 강화

2. 제2차 피습(1980.11.4.)

- 사건 개요
 - 1980.11.4. 18:30경 4~5명의 괴한이 주프랑스대사관 관리인 숙소 창문을 파손, 공관 정문 및 외벽에 적색 페인트를 투척하고, 공관 벽에 '살인자'라고 낙서(김대중 사형선고와 관련된 폭력시위로 추정)
- 조치사항
 - 외무부는 11.5. 주프랑스대사로 하여금 제1차 피습사건 이후 프랑스 측의 조사 결과 회보가 없었음에 유감을 표명하고 금번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 및 향후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청하도록 지시, 동일 주한 프랑스대사를 초치하여 한국 측 요청사항 전달
 - 주프랑스대사관은 공관 자체 경비를 강화하고, 출입자 단속을 위한 제반조치 강구
- 프랑스 측 수사 결과 및 반응
 - 프랑스 경찰의 수사 결과 동 범인 4명은 20세 전후의 공산당원으로 밝혀진바, 특수경찰 당국에서 계속 수사 중임. 11.5. 주프랑스대사는 외무부 지시에 의거하여 프랑스 외무부 아주국장을 면담한바, 동 국장은 외교공관 경비 책임자인 의전장실에 직접 협조를 요청할 것을 약속

3. 주프랑스대사관 피습사건 중간수사 결과 요지(1980.11.25.)

- 1980.11.5. 피습사건 후 프랑스 경찰은 공산당 소속을 자칭하는 대학생, 고등학생 등 시위대를 4회 심문한 결과 동 시위대가 공산당에 의해 조직된 것은 사실이나, 북한과의 관계는 확인되지 않음.
- 주프랑스대사관 벽의 낙서는 파리 경시청에 의해 제거되었으며, 프랑스 경찰의 빈번한 순찰 및 시간별 보안 확인 등 조치로 경비가 보강됨.

Schneiss, Paul 독일 목사 입국 금지

생산연도 1979-1980

생 산 과 서구

MF번호 2010-9/3/1-17

1. Paul Schneiss 독일 목사의 재입국 문제 검토 요청(1979.7.13.)

- Paul Schneiss 목사의 입국 금지 조치 문제 관련, 주한 독일대사관은 동 목사의 한국 재입국에 관한 진정 서한(1979.4.14.자)을 접수, 이를 외무부에 송부하고 동시에 동 문제에 관한 한국 관계 당국의 호의적 배려를 요청하여 옴.
- 외무부는 동 진정 서한 및 종전 관련 서류 내용에 의하면 동 목사는 미국 감리교 기관지 Response(1977.9월호)에 게재된 문제 기사에 대해 항의 조치를 취하였음이 인지되며, 또한 동 목사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가 이미 1년 6개월 이상 경과된 점 및 기존 한·독일 양국 간의 우호관계 등을 감안하여 법무부 및 중앙정보부에 동 목사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 해제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회보해 줄 것을 요청함.

2. Paul Schneiss 목사의 재입국 문제에 대한 회신(1980.3.11.)

- 법무부는 Paul Schneiss에 대하여 입국 금지를 해제하고, 현지 사증발급 금지로 대체하였음을 외무부에 회신함.

일본 총평계 노조 간부 방한 문제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일본

MF번호 2010-9/8/1-34

일본 총평계 노조 간부의 1980.8.10.~13. 방한 관련 내용임.

1. 방문단

- 이노우에 전 일본 노동총연맹 부서기장, 카토 일본 노동조합 총평회의 전국 체신노조 부위원장, 아사이 총평 전국전화노조 정치담당 중앙집행위원

2. 주요 일정

- 노동총연맹 방문, 현충원 참배, 자동차 노조 방문, 노동청장 면담, 판문점 시찰, 체신노조 방문

3. 총평대표단 북한 방문 보도

- 1980.9.11.자 도쿄신문은 '남진의사 없음. 김일성, 총평 의장에게 표명' 제하로 보도함.
 - 북한을 방문 중인 마키에다 총평 의장은 9.10. 저녁 대안시 초대소에서 약 2시간 30분에 걸쳐 김일성과 회담함.
 - 동 회담에서 김일성은 최근의 한국정세에 대하여 김대중이 기독교 신자임은 세계가 다 알고 있는데도 공산주의자라는 옷을 입혀 죽이려고 하고 있다고 하면서 전두환 대통령에게 불편한 사람은 모두 공산주의자가 되고 있다고 전두환 체제를 비판함.
 - 또한 김일성은 남측 당국자는 남진의 위협을 구실로 하고 있으나, 북한은 남진의사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함.

주일본 각 공관에 대한 경계 강화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일본

MF번호 2010-9/9/1-86

1980년 중 주일본 각 공관에 대한 경계 강화 관련 내용임.

1. 공관 경계 강화 지시(1980.5.29.)

- 외무부는 주일본 각 공관에 아래 내용으로 공관 경계 강화를 지시함.
 - 관계기관의 첩보에 의하면, 북한은 대남공작의 일환으로 일본을 통한 우회 침투공작을 강화하는 한편, 일본 극좌파 등을 이용하여 이란에서처럼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을 습격하여 국제적 관심 야기 및 국내 혼란 조성을 기도하고 있다고 함.
 - 상기 내용을 유념하여 특히 조총련 등 북한 동조세력의 불순한 움직임에 대비하여 당국과 긴밀히 협조, 공관 경계 대책을 강구하고 결과를 보고 바람.

2. 주일본 각 공관 경계 강화 현황(1980.6.17.)

- 주일본대사관: 자체 경비 강화, 주재국 경찰이 경계 강화
- 주오사카총영사관: 민원 홀을 7층에서 1층으로 옮기고, 경비 경찰관을 4명으로 증원
- 주후쿠오카총영사관: 직원 일·숙직 강화, 공관 담장 철망 설치, 경찰 4명이 24시간 경비
- 주삿포로총영사관: 직원 일·숙직 강화, 경찰관 4명으로 증원
- 주센다이총영사관: 직원 일·숙직 강화, 경찰에 협조 요청 등

3. 한민통 등 과격 대모대의 주요코하마총영사관 난입 사건

- 발생 경위
 - 1980.12.4. 15:00경 한민통 과격분자 등 약 40명의 데모대가 주요코하마총영사관 정문으로 난입
- 한국 측, 난입 사건 철저 수사 촉구
- 1981.1.20. 임청일 등 주모자 4명은 요코하마 지방 검찰청에 서류 송검(주거침입 혐의)

한·일본 정무일반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일본

MF번호 2010-9 / 10 / 1-107

1980년 중 한·일본 간의 주요 정무 관계 동향임.

1. 주일본대사, 오키타 일본 외상 면담(1980.2.8.)

- 오키타 외상 발언 요지
 - 한국정세: 10·26 사태 후 한국 국민의 의연한 대처에 감명을 받았고 헌법 개정 등 조용한 가운데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기원
 - 경제관계: 한국경제는 아직도 성장 가능성이 있으며 지금은 조정기에 해당되는바, 약간만 조정하면 곧 성장을 계속할 것임. 일본으로서도 금년 100억 달러 내외의 무역적자가 예상되나, 한국으로부터의 수입 증대에 계속 노력하겠음. 미국 도입과 관련하여 한국 측이 미국 정부에 한국 사정을 설득해 보는 것이 좋겠음.
 - 남북대화: 대화의 계속은 다행한 일임. 한반도 안정은 일본의 장래에 중요하며, 남북대화는 동 지역 안정에 도움이 됨.
 - 환태평양공동체: 한국도 당연히 참가하여 주요 멤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2. 국무총리, 스노베 주한 일본대사 면담(1980.4.11.)

- 스노베 대사 언급 요지
 - 한·일본 외무장관회의 관련하여 일시귀국하였는바, 이에 앞서 한국의 정치발전 및 제반 정치 일정, 남북대화, 경제문제 등에 관한 한국 측 견해를 요청
- 동 총리 답변 요지
 - 정치관계: 각 대학의 소요사태와 국내 질서가 안정될 때까지 계엄령 불해제, 헌법 개정안은 금년 중에 마무리될 것이나 국민투표가 금년 중에 내년으로 넘어갈지는 앞으로의 진전에 달려 있음.
 - 남북관계: 남북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 미·일본이 북한과의 접촉을 삼가하여 주는 것이 한국에 대한 지원이 됨. 한국은 양측이 행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는 태도로 남북대화에 임할 것인바, 편지 교환, 가족 면회 등 비정치적인 분야에서의 교류를 추진하고자 함.
 - 경제관계: 일본 측과 최대한의 경제협력을 희망하고, 1980.7월로 예정된 구매사절단 방한을 환영함.

3. 외무부장관, 스노베 대사 면담(1980.11.5.)

- 김대중 문제, 한민통의 S.I. 참석 문제, 일본 각료의 북한 정식명칭 호칭 문제, 재일한국인 중학생의 자살 문제 등에 관해 의견 교환

주한 미국대사관 공보실(ICA)의 'For the Record' 배포 문제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복미

MF번호 2010-9 / 22 / 1-77

1980년 중 주한 미국대사관 공보실(ICA)의 'For the Record' 배포 문제 관련 내용임.

1. 박동진 외무부장관은 1980.8.8. Monjo 주한 미국대사 대리를 초치하여 주한 미국대사관 공보실(ICA)이 김대중 문제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For the Record' 보도자료를 일부 한국군 부대에 직접 배포하고 있다고 하고 즉각 배포 중지를 요청함.
 - 박 장관은 국방부가 동 보도자료 배포를 한국군 내부의 단결을 와해시키려는 정치적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함.
 - Monjo 대사 대리는 지난 몇 년 동안 'For the Record'를 배포해 왔다고 하고, 미국에 보고하여 회답을 받을 때까지 배포를 중단 조치하겠다고 함.
2. 한국 정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미국 측이 계속 배포하자 1980.10.11. 노신영 외무부장관은 Gleysteen 주한 미국대사를 초치하여 배포활동이 계속되면 한·미 관계를 매우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하고 배포 중지를 재차 요청하자, 동 대사는 'For the Record'를 제작, 배포하지 않을 것이라고 함.

미국·중국 관계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북미 / 중국

MF번호 2010-9 / 28 / 1-124

1980년 중 미국·대만(구 자유중국)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Wolf 미국 하원 아태소위원장 일행, 대만 방문(1980.1.21.~23.)

- 대만관계법 집행 현황 감독 및 재대만 미국협회(American Institute in Taiwan)의 업무 현황 청취
- 장경국 총통, 손운선 행정원장, 주무송 외교부장, 장광세 경제부장 등과 무역, 인권, 중·미 협력 문제 및 태평양지역 안보 문제 등에 대한 의견 교환

110

2. 미국 하원 아태소위원회, 대만관계법 청문회(1980.6.11.)

- Richard Holbrooke 차관보는 안보문제, 무기 판매, 중국(구 중공)·대만 간 관계, 경제문제, 국내 정치 등에 관해 증언

3. 미국·대만 간 외교면책특권부여협정 서명(1980.10.2.)

- 협정 명칭
 - Agreement on Privileges, Exemptions and Immunities between the American Institute in Taiwan and the Coordination Council for North American Affairs
- 체결 배경 및 경과
 - 1979.1.1. 미·중국 간 국교수립 후 대만과의 외교관계가 단절됨에 따라 미 의회는 비정부 간 수준에서 미·대만 간 관계 유지 및 발전의 필요성을 인정, 4.10. Taiwan Relations Act 통과
 - 동 Act는 대만이 The American Institute of Taiwan 및 그 구성원에 대해 특권과 면제를 부여할 경우 대통령은 대만 기구 및 그 구성원에 대하여 상응한 특권과 면제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
 - 지난 1년 반 동안 대만 측과 교섭

일본·중공 관계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일본 / 중국

MF번호 2010-9 / 29 / 1-123

1980년 중 일본·중국(구 중공)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제1차 일본·중국 고위 사무레벨회의(1980.3.17.~18., 도쿄)

- 수석대표
 - 중국 측: Han Nien Lung 외교부 부부장
 - 일본 측: 가토리 외무심의관
- 한반도 문제 관련 중국 측 입장
 - 북한의 남침은 없다고 봄.
 - 남북한 실무회담의 순조로운 진행을 환영함.
 - 남북한 총리회담이 실현되기를 희망함.
 - 중국도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이 필요함을 잘 알고 있음.

2. 이토 미사요시 일본 외상, 중국 방문(1980.9.2.~4.)

- 황화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 화국봉 총리, 등소평 면담 등

3. 제1차 일본·중국 각료회의(1980.12.3.~5., 베이징)

- 참가자
 - 중국 측: 곡목 부총리 겸 국가기본건설성위원회 주임, 요익림 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회 주임, 황화 외교부장, 왕병건 재정부장, 이강 외교경제무역부장 등
 - 일본 측: 이토 마사요시 외무대신, 와타나베 미치오 대장대신 등
- 주요 토의 의제
 - 국제정세: 캄보디아(구 캄푸차) 문제, 대아세안 협조, 중·미국 관계, 한반도 정세 등
 - 양국관계: 엔 차관 제공, 에너지협력 등

미국·중공 관계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북미 / 중국

MF번호 2010-9 / 31 / 1-310



1980년 중 미국·중국(구 중공)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장문진 중국 외교부 부부장, 미국 방문(1980.3.16.~20.)

- 주요 일정
 - 국무장관회담, 크리스토퍼 국무차관 면담, 브레진스키 미 대통령 안보담당 보좌관 면담, Mondale 부통령 예방
- 주요 협의사항(장문진·밴스 국무장관회담)
 - 미·중국 외교 및 군사협력 문제, 미국의 대중국 원조 문제, 파키스탄 지원 및 모스크바올림픽 거부 문제, 아프가니스탄사태 공동 대처방안, 동북아 정세

2. 경표 중국 부총리 겸 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서장, 미국 방문(1980.5.25.~6.5.)

- 주요 일정
 - 국방장관회담, 카터 미 대통령, 머스키 국무장관, 브레진스키 안보담당 보좌관 면담
- 방문 목적
 - 미·중국 군사협력 추진 문제 협의
- 양국 협의사항
 - 미국 정부, 대중국 군사 지원 장비 및 기술 판매: 방공레이더, 헬리콥터, 대형트럭, C-130 수송기, 조기경보레이더, 장거리 통신장비, 제트엔진 점검 장비 등 9개 품목 수출연장 신청 승인

3. 양국 간 정상회담(1980.7.10., 도쿄)

- 카터 대통령, 화국붕 중국 주석
- 미·중국 관계, 아프가니스탄 및 인도차이나 문제, 태국 안보

4. 박일파 중국 부총리, 미국 방문(1980.9.16.~28.)

- 방문 목적
 - 제1차 중·미국 공동경제위원회 회의 참석
- 주요 협의 및 협의사항
 - 영사, 섬유, 해운, 항공 등 4개 협정 체결

Brown, Harold 미국 국방장관 중공 방문, 1980.1.5.-13.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안보 / 중국

MF번호 2010-10 / 1 / 1-124

Harold Brown 미국 국방장관의 1980.1.5.~13. 중국(구 중공) 방문 관련 내용임.

1. 방문 경위

- 서향전 중국 국방상 초청

2. 공식수행원

- W. Komer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 등 17명

3. 주요 일정

- 국방장관회담, 화국봉 주석, 등소평 부수상 면담, 중국 제6기갑사단 방문

4. 주요 협의 결과

- 아프간, 캄보디아(구 캄푸차) 문제
 - 미·중국 양국은 1979년 소련의 아프간 침공에 대해 적절한 조치의 강구 필요성에 의견이 일치함.
 - 미·중국 양국은 베트남의 캄보디아 침공이 소련의 지원을 받은 잔인한 행위로 국제관례를 위반한 중대한 문제라는데 의견이 일치함.
- 양국 군사협력
 - 미국 측은 고도 정밀무기의 대중국 공여 용의를 표명하고, 인민해방군 사절단에 대한 미국 방문을 초청함.
- 군축회의
 - 중국은 최초로 제네바 군축회의 참석 의사를 표명함.
- 한반도 문제
 - 등소평 중국 부수상은 소련의 극동에서 남진 정책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의 대북한 접촉을 권유함.

5. 방문 평가

- 미·중국 수교 이래 양국 국방책임자 간 최초 협의로서 양국은 군사안보 분야에 대한 협력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소련의 국제적 팽창에 대항하기 위한 상호협력에 합의함.
- 미·중국 양국은 소련의 아프간 침공에 대해 세계 전략적 차원에서 이해관계가 일치하였으나,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 불일치가 상존함.

일본·소련 관계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일본

MF번호 2010-10/3/1-141

1980년 중 일본·소련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1945년 소련은 제2차 세계대전 시 일본 북방 4개섬(에토로후, 구나시리, 시코탄, 하보마이)을 점령하고, 1946.2월 자국 영토에 편입함.
2. 일·소련 공동성명(1956년)은 소련이 일·소련 간 평화조약 체결 시 시코탄, 하보마이 2개 도서를 일본에 반환한다고 명기하였으며, 일본은 동 성명에 따라 평화조약 체결을 주장해 왔으나 1978.1월 일·소련 간 외상회담에서 소련 측은 영토 문제의 존재를 부인함.
3. 포리얀스키 주일본 소련대사는 1979.10월 다카시마 일본 외무차관 면담 시 일·소련 간 영토 문제의 존재를 부인하고, 일본의 북방영토 문제 제기는 소련에 대한 내정간섭이라고 함.
4. 일·소련 간 외상회담(1980.9.24., 뉴욕)에서 이토 일본 외상은 북방 4개 도서 반환을 위해 평화조약 체결을 희망하였으나, 그로미코 소련 외상은 섬 문제는 심의할 문제가 아니며 일본은 보다 현실적인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함.
5. 이토 외상은 1980.10.31. 순시선으로 북방 4도 시찰 시 앞으로 국제여론에 호소하여 북방 4개 도서 반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함.
6. 포리얀스키 대사는 1980.11.5. 일본 북해도 신문의 서면 질의에 대해 소련은 1956년 일·소련 공동성명의 제원칙을 준수해 왔으며, 북방영토의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함.

일본·미국 관계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일본 / 북미

MF번호 2010-10 / 4 / 1-192

1980년 중 일본·미국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오키타 일본 외상, 미국 방문(1980.3.19.~22.)

- 주요 일정
 - 밴스 국무부 장관, 브라운 국방부 장관, 던컨 에너지부 장관 등 면담
- 주요 협의 결과
 - 미국은 소련이 아프가니스탄 내 군사활동의 증가 등 장기적으로 점령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하고, 이란에 억류된 미국대사관 인질 석방을 위해 다방면으로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설명함.
 - 미국은 소련의 점증하는 위협에 대비하여 일본의 국방비 증가를 요청한바, 일본은 국방비의 점차적인 증액에 동의함.
 - 미국은 일본 정부 보조금 지원으로 생산된 일본 쌀이 국제 미국시장을 교란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표명함.

2. 오히라 일본 수상과 카터 미 대통령 간 정상회담(1980.4.30.~5.1.)

- 아프간, 캄보디아(구 캄푸차)사태 관련 미국은 일본의 지지에 사의를 표명함.
- 미국은 중국(구 중공)이 우호국이지 동맹국이 아니라고 하고, 대중국 무기 불판매 정책을 확인함.
- 미국은 인도차이나 난민 구호를 위한 원조 제공을 요청한바, 일본은 1980년 중 UNHCR(유엔 난민기구)을 통한 6천만 달러의 원조 제공의사를 표명함.
- 양국관계 관련 미국은 일본의 방위개선계획의 가속화를 희망하였으며, 일본은 일본산 자동차 수입 증대로 미국이 처한 어려운 사정에 대해 이해를 표함.
- 미국은 대한방위공약을 재확인하고,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일·미 간 긴밀한 연락 유지를 희망함.

Brezhnev, Leonid 소련 공산당 서기장 인도 방문, 1980.12.8.-12.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서남아

MF번호 2010-10 / 5 / 1-99

브레즈네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의 1980.12.8.~11. 인도 방문 결과임.

1. 방문 경위

- Reddy 인도 대통령의 1980.9.29.~10.7. 소련 방문에 대한 답방

2. 주요 일정

- Reddy 대통령 예방, 간디 수상 회담, 인도 국회 연설

116

3. 주요 결과

- 아프가니스탄 등 주변 정세
 - 인도 측은 1979년 소련의 아프간 진주가 인도 등 인접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아프간 독립과 비동맹 지위 회복을 위한 정치적 해결을 촉구한바, 소련 측은 미국, 이란의 대아프간 불개입 보장 시 철수하겠다는 종래 입장을 반복함.
 - 브레즈네프 서기장은 인도 국회 연설에서 페르시아만 및 인접 도서에 핵무기 설치 금지, 내정 간섭 금지 등 페르시아만 평화와 안전에 관한 원칙 5개 항목을 제시함.
 - 양측은 인도양에서의 군비 증강 비난 및 인도양의 평화지대화를 주장함.
- 양국관계
 - 양측은 경제기술협력협정, 1981~85년간 무역협정 등 4개 협정 및 의정서에 서명함.
 - 소련·인도 간 우호관계 재확인, 세계 평화유지와 전쟁 재발을 위한 노력 등을 요지로 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함.

4. 방문 평가

- 브레즈네프 서기장은 인도 방문을 통해 아프간 침공으로 인한 소련의 제3세계에 대한 후원자로서의 이미지 손상을 회복하고자 함.
 - 이는 소련이 대외적으로 평화를 추구한다는 이미지를 부각시켜서 1981.2월 인도에서 개최될 예정인 비동맹 외상회의를 앞두고 아프간 문제에 대한 논란을 완화시키려고 하는 의도로 보임.
- 인도는 상기 공동성명서에 아프간 사태에 관한 직접 언급이 없는 등 기본적인 친소련 입장은 변화가 없으며, 금번 동 서기장의 인도 방문을 통해 소련과 우호관계를 재확인함.

국교수립 -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전2권 (V.1 1974-79)

생산연도 1974-1980

생 산 과 근동

MF번호 2010-10 / 6 / 1-233

1974~79년 중 UAE(아랍에미리트연합국)에 대한 수교 추진 관련 내용임.

1. 추진 경위(1972.12.10. UAE 승인, 1974~79년간 수교 추진)

- 1974.2.6. 주이란대사. 주이란 UAE대사에게 외교관계 수립 정식 제의
- 1974.4.6.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 UAE 외무성에 한국과의 국교수립 요청
- 1975.5.17. UAE 정부, 한국과의 국교수립 문제 검토를 통보
- 1976.7월 UAE 외무차관, 이동원 특사의 UAE 방문 시 양국 간 관계수립을 위하여 경제협력 증진의 선행을 언급
- 1976.9.14. 한국 정부, 주아부다비총영사관 설치를 제의
- 1979.12.1.~13. 주카타르대사, UAE 방문 시 UAE 측은 한국과 영사관계 수립 필요성 인정

2. 한국 정부는 UAE 측이 수교 제의에 대해 소극적인 이유는 수교 시 구체적인 실리가 없고, 소련, 중국(구 중공) 등 공산국가의 압력행사의 근거 제공을 원하지 않는다는 데서 기인한 것으로 관측함.

국교수립 및 단절 - 기니. 전2권 (V.1 1977-79)

생산연도 1977-1980

생 산 과 서부아프리카

MF번호 2010-10 / 10 / 1-252

1977~79년 중 기니에 대한 수교 추진 관련 내용임.

1. 한국 정부는 비동맹 국가와의 관계 개선의 일환으로 북한 단독 수교국인 기니와 외교관계 수립을 위해 1976년부터 다각적 교섭을 진행하여 1977.12.27. 기니와 외교관계 수립에 합의하였으며, 1978.1.6. 기니와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을 발표함.
2. 정부 경제조사단(단장: 노영찬 외무부 이종동국장)의 1978.3.13.~17. 기니 방문 시 기니 정부는 주기니대사관 개설에 동의함.
3. 기니 경제사절단은 1978.10.22.~29. 방한하여 한·기니 간 외교관계를 재확인하고, 양국 간 수산협력(기니 연수생의 방한 초청)을 강화하기로 함.
4. 한국 정부는 1979.10.29. 주기니대사관 개설을 위해 전순규 공사를 기니에 파견하기로 하고, 11.21. 주세네갈대사를 기니 겸임대사로 임명하기 위해 기니 정부에 아그레망을 신청함.

국교수립 및 단절 - 기니. 전2권 (V.2 1980)

생산연도 1977-1980

생 산 과 서부아프리카

MF번호 2010-10 / 11 / 1-170

1980년 중 기니에 대한 외교관계 단절 관련 내용임.

1. 경위

- 1978.1.6. 기니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1979.12.27. 주기니대사관 개설을 위해 전순규 주세네갈대사관 공사를 대사 대리 자격으로 기니에 파견함.
- 1979.12.27. 전순규 공사는 기니에 입국하여 1980.1.8. 장기체류 비자를 신청함.
- 1980.1.19. 기니 정부는 전 공사에게 대사 대리 자격이 아닌 경제대표부 자격의 체류비자를 발급하고, 1.22. 일방적으로 외교특권이 없는 한국 경제대표부 개설을 알리는 회람을 작성하여 기니 주재 외교단에 배포함.
- 한국 정부는 노영찬 주세네갈대사를 1980.1.22.~30. 기니에 파견하여 경위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나, 기니 외상은 면담을 기피하고 외무부 의전관은 경제대표부 설치 허가 결정은 기니 당 정치국 결정이라고 언급함.
- 1980.1.28. 한국 정부는 주세네갈대사에게 경제대표부 허가에 대해 기니 정부에 항의하도록 훈령하고, 2.8. 전순규 공사를 소환함.

2. 한국 정부는 기니 정부가 기니 대통령의 북한 방문(1979.10월) 등 북한과의 긴밀한 관계를 감안하고, 한국으로부터 경험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경제대표부 개설만 허용한 것으로 관측함.

국교수립 - 키리바시

생산연도 1978-1980

생 산 과 대양주

MF번호 2010-10 / 12 / 1-340

1978~80년 중 키리바시공화국에 대한 외교관계 수립 관련 내용임.

1. 한국 정부는 1979.6월 한국기업의 어업 진출 지원을 위하여 남태평양지역의 영국 통치령인 키리바시에 어업교섭단을 파견함.
2. 이한림 주호주대사가 1979.7.7.~13. 키리바시 독립 경축사절로 출장하여 7.10. Tabai 키리바시 대통령을 예방하고 박정희 대통령 명의 독립 축하 및 키리바시를 승인하는 공문을 전달하면서 수교를 제의한바, Tabai 대통령은 호의를 표하고 조속한 회답을 약속함.
3. 양국은 1979.10월 한·키리바시 간 어업협정에 가서명함.
4. 키리바시 정부는 1980.2.7. 주호주대사관을 통해 2월 중순 한국과의 수교 문제를 검토할 예정 이라고 통보하고, 3.10. 외교관계 수립을 희망하는 공한을 송부함.
5. 양국은 1980.5.2. 한·키리바시 간 공동발표문을 통해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함.

국교수립 - 나이지리아. 전4권 (V.1 1961-77)

생산연도 1961-1981

생 산 과 서부아프리카

MF번호 2010-11 / 4 / 1-205

1961~77년 중 나이지리아에 대한 외교관계 수립 추진 관련 내용임.

1. 한국 정부는 1960.12.12. 나이지리아를 승인하고, 나이지리아와 외교관계 수립을 위해 1963.3.9.~11. 아프리카 특별사절단(단장: 이수영 주유엔대사)을 나이지리아에 파견함.
 - 3.11. 이수영 대사는 J. Wachuku 나이지리아 외상과 회담하고 양국 간 수교 문제에 대해 협의 한바, 양측은 국교수립에 원칙적으로 합의함.
2. 한국 정부는 1967.9월 나이지리아 라고스에 코트라사무소를 설치함.
3. 한국 정부는 1973.8.1. 6·23 선언에 입각한 새로운 외교정책에 따라 아프리카 미수교국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주카메룬대사관을 나이지리아와의 외교관계 수립 추진을 위한 책임공관으로 지정함.
4. Sani Muhammed 주카메룬 나이지리아대사는 1976.7.12. 주카메룬대사에게 나이지리아가 비동맹그룹 및 제3세계에서 지도적 역할을 담당한다는 정책하에 비동맹그룹 회원인 북한과만 5.25.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고 설명함.
5. 주카메룬대사는 1976.9.2. 나이지리아 입국을 신청하였으나, 입국비자가 거부됨.
6. 한우석 주코트디부아르대사가 1976.12월, 1977.8월, 9월 3회에 걸쳐 나이지리아에 출장하여 한·나이지리아 간 관계 개선을 위한 접촉을 가졌는바, 나이지리아 측은 한국과의 경제협력 증진에 따라 대한민국 정책을 재검토 중이라고 함.

국교수립 - 나이지리아. 전4권 (V.2 1978)

생산연도 1961-1981

생 산 과 서부아프리카

MF번호 2010-11 / 5 / 1-233

1978년 중 나이지리아에 대한 외교관계 수립 추진 관련 내용임.

1. 한국 정부는 1960.12.12. 나이지리아를 승인하고, 6·23 선언(1973년)에 입각한 새로운 외교 정책에 따라 한·나이지리아 간 외교관계 수립을 추진함.
2. 박동진 외무부장관은 1978.3.1. 영국 방문 중 Owen 영국 외상과 회담 시 한·나이지리아 간 외교관계가 수립될 수 있도록 영국 정부의 협조를 요청함.
3. 한우석 주코트디부아르대사의 1978.3.12.~26. 나이지리아 라고스 방문 시 나이지리아 외무 차관은 양국 간 수교 문제를 호의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함.
4. 박동진 장관은 1978.9.29. 유엔본부에서 H. Adefope 나이지리아 외상과 면담 시 양국 간 수교를 요청한바, 동 외상은 귀국 후 검토할 결정할 것이라고 함.
5. 한우석 대사는 1978.12.1.~4. 나이지리아를 출장하여 Tonwe 나이지리아 외무성 의전장을 면담하고 수교 관련 진전사항에 대해 문의한바, Tonwe 의전장은 나이지리아 외무성 아주국장이 한국과의 수교정책 건의서를 작성 중이라고 함.

국교수립 - 나이지리아. 전4권 (V.4 1980)

생산연도 1961-1981

생 산 과 서부아프리카

MF번호 2010-11 / 7 / 1-166

1980년 중 나이지리아에 대한 외교관계 수립 관련 내용임.

1. 경위

- 한국 정부는 1960.12.12. 나이지리아를 승인하고, 1979.12.17. 박동진 외무부장관 명의 정식 수교 제의 공한을 Audu 나이지리아 외상에게 전달함.
- 1980.2.15. 샤가리 나이지리아 대통령 주재하에 개최된 나이지리아 정부 각의에서 한국과의 외교관계 수립을 의결하였으며, 2.22. 한·나이지리아 양국은 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함.

2. 평가

-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의 최대국이며, OAU(아프리카단결기구) 내 지도적 국가임을 감안하여 한국 정부의 나이지리아 수교는 아프리카 미수교국과의 관계 개선에 기여할 것임.
- 나이지리아는 주요 산유국이며, 막대한 석유 자원에 힘입어 대형사업 개발을 추진할 계획인바, 금번 수교는 정부의 원유 등 자원 확보는 물론 한국기업의 나이지리아 진출에 도움이 될 것임.

대소련 외교관 접촉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동구

MF번호 2010-11 / 8 / 1-225

1980년 중 주유엔대표부의 대소련 외교관 접촉 결과임.

1. 경위

- 반기문 주유엔대표부 서기관은 A. G. Rastanin 주유엔 소련대표부 2등서기관을 1980.2~12월간 12회 접촉하고, V. Lessiovski 유엔사무총장 특별보좌관을 1979.12~80.12월간 7회 접촉함.

2. 주요 협의 요지

- 한·소련 간 관계 개선 문제
 - 소련 측은 한·소련 간 관계 개선을 희망하였으며, 북한과 주한미군 존재가 최대 장애요소라는 입장을 견지함.
- 한·소련 간 접촉 채널 문제
 - 한국 측은 현재 하위급 외교관 접촉경로를 고위급 외교관 접촉으로 상향하고자 하였으나, 이에 소련 측은 불가하다고 함.
- 한반도 통일정책과 남북대화 문제
 - 소련 측은 한국의 평화통일정책과 남북대화 실현을 위한 제안이 현실적이라고 하고, 북한의 통일정책은 비현실적인 점이 많다고 함.
- 미국·북한 간 접촉
 - 소련 측은 미국·북한 간 접촉이 이루어지면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도모할 것이라고 함.
- 소련·북한 간 관계
 - 소련 측은 북한과는 소원하며 북한이 중국(구 중공)으로 기우는 것은 사실이나, 북한의 무기체제가 소련식인바, 북한은 소련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함.
- 김정일 부상에 대한 반응
 - 소련 측은 북한 김일성체제는 김정일보다 집단군사지도체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함.

3. 평가 및 전망

- 현 단계에서 한·소련 간 관계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진전은 기대하기 어려우며, 소련 측이 북한의 대중국 편향에 대한 견제책으로 한국 카드를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에 대한 경계가 필요함.

국교단절 - 세이셸, 1980.5.28.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동부아프리카

MF번호 2010-11 / 9 / 1-87

1980년 중 세이셸에 대한 국교단절 관련 내용임.

1. 경위

- 1976.6월 한국 정부는 세이셸과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7월 주케냐대사관을 세이셸 겸임공관으로 지정함.
- 198.2.19.~23. 주케냐대사가 세이셸 출장 시 Hodoul 세이셸 외상은 남북대화가 결렬되고 교착 상태가 계속될 경우 한국과의 단교를 시사함.
- 1980.5.28. 세이셸 정부는 주케냐대사관을 통해 한국과 외교관계 단절을 통보함.

2. 한국 정부는 르네 세이셸 대통령이 1977.6월 탄자니아 지원하에 혁명으로 정권을 장악한 후 반서방 사회주의 노선을 추구, 1978.5월 북한 방문 후 북한의 허위 선전과 책동으로 한국과의 외교관계를 단절한 것으로 관측함.

국교수립 - 바누아투

생산연도 1976-1980

생 산 과 대양주

MF번호 2010-11 / 10 / 1-238

1976~80년 중 바누아투에 대한 국교수립 관련 내용임.

1. 독립 및 승인

- 1906년 이래 영국과 프랑스 공동통치령으로 있던 남태평양의 뉴헤브리데스는 1980.7.30. The Independent Republic of Vanuatu로 독립

2. 독립경축특사, 바누아투 방문(1980.7.28.~8.3.)

- 뉴헤브리데스 정부는 Lini 수상 명의로 독립기념식에 경축사절단 파견을 요청하는 국무총리 앞 공한을 주호주대사관에 송부함.
- 외무부는 1980.6.20. 바누아투공화국 독립에 대한 국가승인 및 경축사절단 파견에 관한 재가를 득함.
- 윤하정 단장은 8.2. 바누아투를 방문하여 Lini 바누아투 부수상 겸 내무장관과 외교관계 수립 원칙에 합의

3. 국교수립 공동성명 발표

- 주호주대사와 바누아투 외무차관보 간에 외교경로를 통해 수교 발표일자 협의
 - 1980.10.24. 바누아투 정부, 주호주대사관에 한국과의 외교관계 수립에 대한 동시발표 결정을 통보하면서 발표 희망일자를 알려 줄 것을 요청함.
 - 주호주대사관, 11.5. 외교관계 수립 발표를 제의
- 외무부는 11.5. 보도자료를 통해 바누아투와의 외교관계 수립 발표

남태평양도서 제국에 대한 외교기반 확대 및 북한침투 저지 대책

생산연도 1976-1980

생 산 과 대양주

MF번호 2010-11 / 11 / 1-180

1976~80년 중 남태평양도서 국가에 대한 외교기반 확대 및 북한침투 저지 대책 관련 내용임.

1. 남북한 외교 대비

- 한국 수교 현황
 - 수교국: 지역 내 전 독립국(11개국), 바누아투공화국은 수교 합의
 - 상주공관: 주호주대사관, 주뉴질랜드대사관(주피지대사관 개설 추진 중)
- 북한 수교 동향
 - 수교국: 호주, 파푸아뉴기니, 피지, 사모아
 - 상주공관: 없음(1975.10.3. 주호주대사관 일방 철수)

2. 외교기반 확대방안

- 수교 확대 대상 및 방안
 - 바누아투, 1980.7.30. 독립과 동시에 외교관계 수립 합의
- 상주공관 개설 대상 및 추진방안
 - 파푸아뉴기니: 3월 주인도네시아대사 출장 시 상주공관 개설 문제 교섭
 - 피지: 8월 피지 정부와 개설 원칙에 합의

3. 북한의 침투저지 대책

- 북한의 수교 추진국 및 대책
 - 대상 국가: 솔로몬제도, 바누아투, 뉴질랜드, 투발루, 통가, 나우루, 키리바시
 - 대책: 유력인사 방한 초청, 기술 연수생 초청, 어업협력 등
- 북한의 공관 설치 추진국 및 대책
 - 대상 국가: 피지, 파푸아뉴기니, 호주
 - 대책: 실질 협력 강화 등

재외공관 설치 -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근동

MF번호 2010-12 / 1 / 1-116

1980년 중 주UAE(아랍에미리트연합국)대사관 설치 관련 내용임.

1. UAE 관할 공관 조정

- 외무부는 1980.1.25. 걸프지역 공관에 주사우디대사관으로 되어 있는 UAE의 관할 공관을 여타 걸프 연안지역 공관으로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해당 공관의 의견 보고를 지시함.
- 주바레인대사관으로 UAE의 관할 공관 변경

128

2. UAE 수교 및 국명 변경 재가

- 1980.6.18. UAE와 수교
- 7.23. UAE의 국명 명칭에 관해 7.28.부터 '아랍토후국연합' 대신에 '아랍에미리트연합국'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기로 함.

3. 주UAE대사관 설치에 관한 재가(1980.7.25.)

- 설치 필요성
- 정치적 측면: 걸프지역에서의 대북한 우위 유지 및 북한책동 저지, 유엔 및 비동맹회의 등에서 지지 기대, 중동지역 미수교국에 대한 관계 개선 모색
- 경제적 측면: 안정적 원유 공급지 확보, 통상·건설 진출 확대
- 영사교민 보호적 측면: 근로자의 보호 및 영사 업무의 신속한 편의 제공

4. 주UAE대사관 개설에 관한 재가 및 대사 대리 부임 훈령

- 외무부는 1980.10.7. UAE 상주공관 개설을 위한 창설 요원을 파견하여 1980.11월 초부터 공관을 개설, 운영하기로 함.
- 외무부는 11.21. 주UAE대사 대리에게 부임 훈령사항 통보

5. 주UAE대사관 개설

- 주UAE대사관 설치를 1980.12.5. 주재국 외무성에 통보

재외공관 설치 - Montreal(캐나다)총영사관

생산연도 1979-1980

생 산 과 북미

MF번호 2010-12 / 2 / 1-31

1979~80년 중 주몬트리올총영사관 개설 관련 내용임.

1. 재외공관 신설계획

- 주몬트리올총영사관 설치 필요성
 - 북한의 준동 억제, 퀘벡 독립 가능성에 대비,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적극 활용, 자원 확보
 - 외교 기반 조성, 교민 보호 등

2. 주몬트리올총영사관 신설 동의 요청 공한 및 캐나다 외무성의 회신 공한

3. 주몬트리올총영사관 개설(1980.8.15.)

- 6.27. 김창훈 주몬트리올총영사 발령

재외공관 설치 - 피지, 1980.12.17.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대양주

MF번호 2010-12 / 3 / 1-185

1980년 중 주피지대사관 설치 관련 내용임.

1. 주피지대사관 설치 필요성(1978.12.9.)

- 정치면
 - 남태평양지역의 신생 독립국가군 대두
 - 남태평양 협의기구를 통한 불력화 경향
 - 남태평양지역에 대한 북한침투 저지
 -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의 지지 확보 및 기존 우호관계 심화
- 경제면
 - 남태평양 국가의 200해리 경제수역 선포에 따른 어업협력
 - 수출시장 개척 및 자원 확보

2. P. Freeman 대외무역공사(피지) 사장 명예영사관 지정 문제

- 경위
 - 동인은 국무총리 앞 서한을 통해 주피지대사관 설치 때까지 본인이 명예영사로 지정되어 활동할 것을 희망
 - 외무부는 1979.10.16. 주호주대사에게 의견 보고를 지시
 - 주호주대사관은 11.30. 동인이 상업적인 이해관계가 깊이 관련되어 있어 부적절하다는 의견 보고
- 조치
 - 외무부는 주호주대사를 통해 외무부 아주국장 명의 서한을 동인에게 전달하도록 조치

3. 주피지대사관 개설 경위

- 1980.7.25. 주피지대사관 설치에 관한 대통령 재가를 득함.
- 1980.8.2. 외무부, 주호주대사에게 피지 상주공관 설치 결정을 알리고, 피지 측과 공관 설치에 관한 교섭 지시
- 1980.8.22.자 피지 상주공관 설치에 관한 피지 정부의 동의 공한을 주호주대사관에 송부
- 1980.12.17. 주피지대사관 개설

주München(독일)총영사관 설치 검토

생산연도 1974-1980

생 산 과 서구

MF번호 2010-12 / 4 / 1-79

1974~80년 중 주뮌헨총영사관 설치 검토 관련 내용임.

1. 주뮌헨총영사관 설치 건의

- 주독일대사는 바이에른주 수도 뮌헨에 아래 이유로 총영사관 설치를 건의
 - 정치관계: 바이에른주는 큰 정치적 비중 차지
 - 경제 및 통상관계: 뮌헨시는 과학과 교육의 중심지일 뿐 아니라 유럽의 교통·경제·통상 중심지
 - 영사관계: 바이에른주 등 남부지역은 교민 다수가 거주

2. 주뮌헨총영사관 재설치 검토

- 외무부는 1980.11.11. 주독일대사에게 교민 보호 업무의 효율 제고 및 서독과의 제반관계 확대 방안에 일환으로 주뮌헨총영사관 설치 문제를 재검토 중이라고 하고 뮌헨의 중요도, 교민 현황 등 관련 사항 파악을 지시
- 주독일대사관은 11.19. 및 11.28. 관련 검토자료 보고

3. 1981년도 재외공관 신설계획 작성

- 1980.12.19. 외무부는 1981년도 상주공관 개설이 필요시 되는 지역을 통보해 줄 것을 관련국에 요청한바, 구주국장은 12.31. 상주공관이 필요한 지역으로 뮌헨지역을 통보

주이란대사관 직원 및 가족 일부 철수

생산연도 1979-1980

생 산 과 중동 / 총무

MF번호 2010-12 / 5 / 1-214

1. 공관원 일부 철수 관련 지시 및 건의

- 1979.2.17. 외무부, 주이란대사에게 이란의 치안 상태가 급속도로 악화되어 가고 있고 신변안전에 위험한 사태에 있음을 감안, 당분간 불요 불급한 공관 직원의 일시귀국에 대한 판단 및 건의사항을 보고할 것을 지시
 - 주이란대사, 불상사 예방을 위해 필수 요원을 제외한 공관원의 감축을 즉각 단행해야 할 시점에 도달한 것이라고 보고

132

2. 공관원 감축

- 1979.2.19. 외무부, 주이란대사에게 공관원 감축 방침 통보

3. 이란사태 관련 조치

- 1980.1.7. 주이란대사관 공관원 6명 및 가족 14명을 잠정 귀국시키기로 결정
 - 1.15.부터 개별적으로 귀국 완료
- 4.26. 주이란대사관 공관원 긴급 철수와 관련하여 관계부처 회의 소집
- 4.28. 주이란대사관에 공관원 3명 및 가족 10명 비상 철수하도록 지시
 - 해당 직원과 가족, 순차적으로 철수

주센다이·시모노세키·나하(일본)영사관의 총영사관 승격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일본

MF번호 2010-12 / 6 / 1-101

1980년 중 주센다이·시모노세키·나하(일본)영사관의 총영사관 승격 관련 내용임.

1. 일본 주재 3개 영사관에 대한 총영사관 승격 검토

- 1979.10.25. 외무부는 주센다이영사관, 주시모노세키영사관, 주나하영사관에 대하여 효율적인 교민 보호와 일본과의 다각적인 관계 증진을 위하여 현재의 영사관을 총영사관으로 승격시키는 문제를 검토, 제반여건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추진하고자 관련 공관에 총영사관 승격의 필요성 및 관련 자료 보고를 지시
 - 주일본대사 및 해당 영사관은 총영사관 승격 필요성을 보고

2. 총영사관 승격 교섭

- 1980.2.18. 외무부, 주일본대사에게 3개 영사관의 총영사관 승격 방침을 주재국 외무성에 구두로 통보하고 주재국 측의 양해가 얻어지는 대로 승격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취할 예정임을 알리도록 지시
- 오재희 주일본대사관 공사가 기우치 일본 외무성 아시아국장 면담 시 동 국장은 3개 영사관의 총영사관 승격에 동의함을 구두로 표명

3. 총영사관 승격 재가

- 1980.4.15. 일본지역 3개 영사관에 대한 총영사관 승격에 관한 재가를 득함.

4. 총영사관 승격조치

- 1980.4.30. 외무부는 주일본대사에게 3개 영사관 승격을 제의하는 구상서를 일본 외무성에 전달 하고, 일본 측의 조속한 회보를 요청하도록 지시
- 5.1. 이재춘 주일본대사관 정무과장은 일본 외무성 북동아과장을 방문, 3개 영사관의 승격을 제의 하는 구상서를 전달하고 승격 동의에 관한 구상서를 접수
- 5.22. 주센다이영사관과 주시모노세키영사관을 총영사관으로 승격
 - 주나하영사관, 추후 승격조치

재외공관 설치 - 모리타니

생산연도 1979-1980

생 산 과 마그레브

MF번호 2010-12 / 7 / 1-57

1979~80년 중 주모리타니대사관 설치 관련 내용임.

1. 외교관계 재개

- 외무부, 1978.12.19. 대통령에게 모리타니와의 수교 교섭 경위 보고

2. 재외공관 신설

- 1979.2.29. 모리타니 상주대사관 설치에 관한 대통령 재가를 득함.
- 필요성: 원양어업 진출 확대를 통한 경제적 실리 증진 및 비동맹권과의 관계 강화

3. 주모리타니대사관 설치

- 외무부는 1979.10.19. 주모리타니대사관 설치 및 주모리타니대사 대리 임명을 통지하는 모리타니 외상 앞 외무부장관 서한을 주모리타니대사관 직원 부임 시 휴대하도록 주세네갈대사에 송부
- 김승호 참사관은 11.5. 주모리타니대사관 개설차 모리타니에 부임

재외공관 설치 - 나이지리아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서부아프리카

MF번호 2010-12 / 8 / 1-103

1980년 중 주나이지리아대사관 설치 관련 내용임.

1. 외교관계 수립

- 한·나이지리아 양국은 1980.2.22.자로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하기로 합의
- 외무부, 대통령에게 나이지리아와의 외교관계 수립 과정 보고

2. 주나이지리아대사관 창설

- 외무부는 1980.2.29. 홍순영 주나이지리아대사 대리를 소개하는 나이지리아 외상 앞 외무부장관 명의 서한을 주나이지리아대사관 직원 부임 시 지참하도록 재가
- 홍순영 주나이지리아대사 대리와 진기호 1등서기관은 3.24. 한우석 주코트디부아르대사와 함께 라고스에 도착, 3.25. Tonwe 나이지리아 외무성 의전장을 방문하여 대사관 창설팀 도착을 통보

135

대한민국 외교부 기록

우간다 주재 공관원 및 교민 비상대피

생산연도 1979-1980

생 산 과 동부아프리카

MF번호 2010-12 / 9 / 1-188

1979~80년 중 우간다 주재 공관원 및 교민 비상대피 관련 내용임.

1. 우간다 상황

- 우간다 수도 캄팔라시에서 1979.2.3. 21시 Total 해상의 석유탱크가 폭발하고 송전시설이 파괴된 데 이어 2.3. 및 2.4. 밤 시내에서 총성이 남.
- 3.7. 우간다군과 탄자니아군이 마사까시에서 캄팔라시 방향으로 10마일 지점인 루카야에서 대치 중임.
- 4.12. 새벽 반아민군과 탄자니아군은 캄팔라에 입성함.

136

2. 동 사태 관련 조치

- 외무부는 1979.2.7. 주우간다대사 대리에게 교민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
- 교민 철수 등 최악의 사태에 사전대비 조치 지시
- 2.9. 우간다 주재 파키스탄대사 대리 관저가 무장괴한에게 피습되고, 대책 토의를 위해 외교단 회의 소집
- 2.17. 주우간다대사관 비상시 대비계획 보고
- 3.5. 외무부, 교민 및 상사 주재원을 안전지대로 철수 지시
- 3.7. 전 공관원 및 교민 철수(대사, 부영사 잔류)
- 3.11. 대우(주) 기술진 철수(케냐 나이로비), 철수 공관원 복귀
- 3.20. 대우(주) 기술진 복귀
- 3.21. 대우(주) 기술진 철수(4.7. 전원 귀국)
- 4.4. 전 교민 케냐로 철수
- 4.5. 공관장 가족 철수(대사, 공관원 2명 잔류)
- 5.8. 공관원 가족 복귀

3. 신정부 수립 및 승인

- 1979.4.13. Lule 우간다 대통령 정부가 출범한바, 다수국가는 신정부와의 관계 개선 희망 표명
- 4.23. 외무부는 주우간다대사에게 신정부 수립 축하 및 우호관계 유지 희망 공한을 우간다 외상에게 수교할 것을 지시
- 4.26. 주우간다대사, Samuel Karugire 외무장관 서리에게 동 공한 수교

재외공관 설치 - Anchorage(미국)총영사관

생산연도 1977-1980

생 산 과 북미

MF번호 2010-12 / 10 / 1-95

1977~80년 중 주앵커리지총영사관 설치 관련 내용임.

1. 설치 건의

- 1977.6월 미국 주재 총영사 회의에서 설치 건의
 - 급증하는 교민(교민 수: 1,200명) 보호 등

2. 외무부 기획관리실장은 1980.3.24. 미주국장에게 1980년도 공관 신설계획에 따라 앵커리지 등에 총영사관을 설치하기로 대통령 재가를 필요하다고 통보하고, 주재국 정부와 필요한 사전 조치를 조속히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함.

3. 미국 입장 타진

- 외무부는 주미국대사에게 주앵커리지총영사관 등 설치에 관한 미국 정부 입장을 타진하도록 지시
- 주미국대사관은 미 국무부 한국과장의 견해를 비공식 타진한바, 국무부는 별다른 이의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언급
 - 1980.5.1. 미 국무부는 주미국대사관에 주앵커리지총영사관 개설에 관한 동의 구술서 송부

4. 주앵커리지총영사관 개설(1980.9.22.)

- 6.27. 김용권 주앵커리지총영사 발령

주한공관 설치 - 노르웨이

생산연도 1977-1980

생 산 과 복구

MF번호 2010-12 / 11 / 1-70

1977~80년 중 주한 노르웨이대사관 설치 관련 내용임.

1. 이문용 외무부 차관보, 주한 노르웨이대사(도쿄 상주) 면담(1977.10.26.)

- 주요 내용
 - 이문용 차관보는 북구 국가 중 기타국은 이미 주한 상주공관을 설치하였거나 설치 예정인바, 노르웨이도 양국 간의 관계 강화를 위해 빠른 시일 내 주한 상주공관 설치를 희망
 - 동 대사는 본인도 수차례에 걸쳐 건의하였으나, 노르웨이 정부 및 국회는 신규공관 설치 자체를 비경제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신규공관 증설 대신 중점공관과의 효과적 활동 또는 국제기구 등을 중심으로 하는 공관 운영을 하고자 한다고 설명

2. 노르웨이 공업성 장관, 외무부장관 면담(1978.10월)

- 외무부장관은 Haukvik 공업성 장관에게 주한 노르웨이대사관 개설이 속히 실현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함.
- 공업성 장관은 귀국 후 외상과 협의하겠다고 함.
- 주노르웨이대사는 공업성 장관의 방한 보고 등을 계기로 주한 상주공관 설치 문제 검토가 본격화 되고 있다고 보고

3. 노르웨이 정부, 주한 노르웨이대사관 개설 입장 통보

- Bergendahl 주일본 노르웨이대사관 참사관은 1979.4.3. 외무부 구주국장 면담 시, 노르웨이 정부는 상주대사관을 1980.1.1.부터 개설한다는 원칙을 결정하고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고 언급
- 상주대사관 건물 및 관저 물색에 있으며, 공관 창설 준비과정에서 적극적인 협조 요청
- 구주국장은 노르웨이 정부의 주한 상주대사관 개설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협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함.

주한공관 설치 - 파키스탄총영사관(서울), 1980.6.25.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서남아

MF번호 2010-12 / 12 / 1-73

1980년 중 주한 파키스탄총영사관 설치 관련 내용임.

1. 주한 상주공관 유치교섭

- 외무부는 1970.12.30. 주이슬라마바드총영사에게 주한 파키스탄 상주공관 설치 노력을 지시

2. 파키스탄 정부, 주한 상주공관 설치 결정

- 주이슬라마바드총영사는 1980.2.18. 파키스탄 외무성으로부터 서울 주재 파키스탄총영사관 설치에 관한 공한을 접수하였다고 보고
- 외무부는 주이슬라마바드총영사에게 환영을 표하고 최선을 다하여 총영사관의 활동을 지원할 것이라는 내용의 답신을 파키스탄 측에 전달할 것을 지시

3. 주한 파키스탄총영사관 개설 보도자료

- 외무부는 1980.2.29. 주한 파키스탄총영사관 개설에 관해 비공식 보도 형식으로 국내 언론기관에 보도하도록 조치

4. 주한 파키스탄총영사관 설치 및 정식 업무 개시(1980.8.10.)

- 6.20. Bashir A. Bhatti 주한 파키스탄총영사 부임

주한공관 설치 - 페루

생산연도 1971-1980

생 산 과 남미

MF번호 2010-12 / 13 / 1-75

1971~80년 중 주한 페루대사관 설치 관련 내용임.

1. 타이베이 주재 중남미 공관의 서울 유치

- 외무부는 1971.11.1. 유엔에서 '중국대표권 문제'에 관한 알바니아 안의 통과로 특히 지난 1년간 속출하고 있는 대만(구 자유중국)과의 외교관계 단절 등으로 타이베이 주재 각국 상주공관의 폐쇄 또는 철수가 더욱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중 현재 대만에 주재하고 있는 중남미 국가들에 대해 이들이 공관을 폐쇄 또는 철수 시 이를 서울로 이동하도록 교섭 방침을 정함.
- 외무부는 11.2. 주페루대사 대리에게 주대만 페루 상주공관 철수 시 한국과의 호혜원칙과 지난 7월 서울에서 페루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한 페루 상주공관 설치를 언급한 바 있음에 비추어 시기를 포착, 주한 페루 상주공관을 유치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지시
- 주대만대사는 11.5. 주중국(구 중공) 페루대사관이 11.1.부로 폐쇄되었다고 보고

2. 주한 페루대사관 유치교섭

- 주페루대사는 1971.11.11. Calle 주재국 외무성 정무담당 차관보에게 호의적인 고려를 요청한바, 동인은 예산 및 인원에 난제가 있으나 상부와 협의하겠다고 언급
-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 회의에 참석 중인 권동만 외무부 심의관은 1975.3.17. Gustavo Silva 페루 외무성 정무국장을 방문, 주한 상주공관 설치 문제 관련 협의한바, 동인은 금년 중에 주한 페루 상주공관 설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상주공관 설치가 실현되는 경우 우선 Charge d'Affaires가 될 것이라고 말함.
- 주페루대사는 1979.12.6. Nava Carrillo 페루 외무차관을 면담, 주한 상주공관 설치를 고려하여 줄 것을 요청한바, 동인은 한국 측 관심사를 고려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

3. 주한 페루 상주대사관 개설 결정

- 페루 정부는 1979.9.4. 주한 페루대사관 개설을 결정, Garcia Pike 주일본 페루대사관 참사관을 주한 페루대사 대리로 임명
- 동인은 1980.1.10.~14. 서울을 방문하여 관저를 물색하고 귀임하였으며, 2.8. 공식 부임을 통보해옴.

태평양지역 공동체 구상. 전5권 (V.1 1-2월)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아주총괄

MF번호 2010-12 / 14 / 1-320

1980년 중 태평양지역 공동체 구상 관련 내용임.

1. 환태평양 연대구상

- 1980.1.5. 오키타 일본 외상,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 시 오키타 일본 수상은 환태평양 구상에 대해 아태 각국 주요 정책에 대해 협의할 수 있는 기구를 구상하는 것이라고 언급하였다고 함.
- 1.9. Wolf 미국 하원 의원, 'Pacific Community Association' 창설 제의
- 1.16. 오키타 수상, 호주 방문 계기에 호주 국립대(ANU) 주최 환태평양기구 국제심포지엄 개최 합의

2. 태평양지역 공동체 구상II(1980.2월, 외무부 아주국)

- 분석
 - 기본 인식, 입장 및 추진상황
 - 문제점
- 구체적인 움직임의 정황
 - 일본의 중간보고서
 - Wolf 의원, PCA 창설 제의
 - 오키타 일본 수상 대양주 순방 등
- 한국의 추진 현황
- 태평양지역 공동체 구상에 대한 각국의 입장과 추진 현황

3. 태평양지역 공동체 Task Force 설치 목적

- 태평양지역 공동체 구상과 관련한 관련 국가 추진 현황의 종합적, 체계적 연구분석
- 동 구상과 관련한 한국 입장 및 대책 수립 등

태평양지역 공동체 구상. 전5권 (V.2 3-5월)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아주총괄

MF번호 2010-12 / 15 / 1-186

1980년 중 태평양지역 공동체 구상 관련 내용임.

1. 태평양지역 공동체 구상에 관한 한국 입장

- 외무부, 1980.3.6. 태평양지역 공동체 구상의 필요성 및 대처 방향에 대한 대통령 앞 보고
 - 일반적 필요성: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지속적이고 공동의 발전과 번영 도모
 - 한국으로서의 필요성: 안보적 측면, 경제적 측면
 - 기본 대처 방향: 원칙적으로 적극적 자세, 기구 구성에 처음부터 참여, 참가 범위에 문화개방원칙을 찬성하되 우선은 실현되기 쉬운 국가로 구성

142

2. 남태평양 도서국 회의(1980.3.26.~29., 하와이)

- 참가국
 - 한국,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서독, 뉴질랜드

3. 일본 환태평양 연구그룹, 환태평양 연구 대상에 관한 최종보고서 발표(1980.5.19.)

- 본 구상 추진의 필요성, Framework 및 목표, 추진 상설기구

4. 아시아태평양 경제 심포지엄(1980.5.26.~27., 도쿄)

- 주최: 일본 수출입은행 외 3개 경제단체
- 주제: 아태지역의 민간금융거래 현황 및 전망

태평양지역 공동체 구상. 전5권 (V.3 6-9월)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아주총괄

MF번호 2010-12 / 16 / 1-169

1980년 중 태평양지역 공동체 구상 관련 내용임.

1. Pacific Community Concepts: Towards Economic Cooperation in Asia(1980.6.20., 뉴욕)

- 주최기관
 - Asia Society
- 참가자
 - Wolf 미 하원 아태소위원장(기조연설), 학계, 금융계, 언론계, 외교단 등
 - 주뉴욕총영사는 선진·개도국 간의 격차를 좁히기 위한 미국의 의지와 국제교역 자유화를 위한 기본 방침 및 방향 설정 강조

2. Pacific Basin Planning Session(1980.7.7.~10., 콜로라도)

- 주최기관
 - Aspen Institute, Humphrey Institute of Public Affairs 공동
- 일반적 견해
 - 협력이 가능한 분야부터 시작하여 기능적인 방법으로 단계적인 Institution Building을 하는 것이 바람직

3. 환태평양 공동체 세미나(1980.9.15.~18., 호주국립대학교)

- 참가자
 - 한국,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및 아세안 5개국, 피지, 통가, 파푸아뉴기니 등 14개국 45명
- 주요 토의 결과(합의사항)
 - 태평양지역의 경제협력을 위해 양자·다자 간 지역 기관 강화와 정부 측 참석 필요
 - 협력은 점진적으로 추진
 - 아세안지역과 남태평양지역의 이익, 특히 경제적 이익 증진 중시

태평양지역 공동체 구상. 전5권 (V.4 10-11월)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아주총괄

MF번호 2010-12 / 17 / 1-118

1980년 중 태평양지역 공동체 구상 관련 내용임.

1. 일본 수상, 환태평양 구상 보류 의향

● 배경

- 지난 1980.9월 캔버라에서 개최된 전문가 회의에서 아세안 회원국들이 환태평양 공동체 구상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표시한바, 이는 일본이 새로운 기구 설립을 강행할 경우 대아세안 외교에 손실을 가져올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

144

2. 환태평양 공동체에 관한 세미나 결과보고서(수록)

3. 태평양지역 공동체 구상(Ⅲ)(외무부)

- 태평양지역 공동체 구상(Ⅱ) 발간 이후 1980.11월까지 전개된 태평양지역 공동체 구상의 주요 진전사항

태평양지역 공동체 구상. 전5권 (V.5 12월)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아주총괄

MF번호 2010-12 / 18 / 1-162

1980년 중 태평양지역 공동체 구상 관련 자료임.

1. Pacific Basin Project Seminar의 Rapporteur's Report
2. 주호주대사의 Drysdale ANU 교수 접촉을 통해 파악한 태평양지역 공동체 구상 관련 보고
3. 태평양지역 공동체 관련 1981년 주요 행사(예정)
4. 1980년도 주요 동향 일지(아주·대양주지역)
5. 태평양지역 공동체 구상 현황
6. 아세안 기구 현황 및 제3국 간 관계
7. 太平洋地域共同體構想(Ⅲ)

ASEAN(동남아국가연합)의 대외관계 및 동남아 정세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동남아

MF번호 2010-13 / 1 / 1-69

1980년 중 아세안의 대외관계 및 동남아 정세 관련 내용임.

1. 제3차 아세안·미국 연례회의(1980.9.10.~12., 마닐라)

- 수석대표
 - 아세안 측: Hidalgo 대사
 - 미국 측: Albrecht 국무부 부차관보
- 협의 내용
 - 미국·아세안 간 무역 증진, 경제협력, 관광 증진, 교육문화협력

146

2. Ray Cline 레이건 미 대통령 당선자의 외교고문, 아세안 방문(1980.11.20.~28.)

- 순방국: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 Cline 교수 발언 요지
 - 캄보디아(구 캄푸차) 문제 적극 대처
 - 아세안과 긴밀한 협조 및 약속 이행
 - 명백하고 일관성 있는 대외정책 채택

3. 미얀마(구 버마)의 아세안 가입 문제

- 아사히신문 보도(1980.9.19., 주일본대사 보고)
 - 미얀마의 대아세안 접근 강화, 차기 아세안 외상회의 옵서버 참가 방침
- 조치사항
 - 1980.8.22. 아세안 5개국 및 미얀마 주재 대사에게 각각 상기 사실을 통보하고, 각 주재국 입장 및 반응 등 관련 정보 파악 지시
- 공관 보고
 - 주미얀마대사관: 미얀마의 아세안 가입설은 근거 희박
 - 주싱가포르대사관: 미얀마는 아세안을 포함한 어느 그룹에도 가입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한·ASEAN(동남아국가연합) 경제계 지도자 합동회의, 제2차. Kuala Lumpur, 1980.11.6.-7.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동남아

MF번호 2010-13 / 2 / 1-135

1980.11.6.~7.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제2차 한·아세안 경제계 지도자 합동회의의 관련 내용임.

1. 참가자

- 한국 측: 20명
- 아세안 측: 5개국 각 10명씩

2. 회의 목적 및 의의

- 지역 경제권과의 경제협력방안 모색
- 석유 등 자원의 안정적 공급원 확보방안 모색
- 수출시장의 다변화 정책 및 유사한 경제발전 수준을 가진 경쟁국의 입장에서 상호 협력방안 모색 등

3. 한국 측 발표 및 토의 의제

- 한국의 정치, 경제 현황과 전망 및 한국의 제5차 5개년 경제사회개발계획과 아세안 각국의 참여 및 협력방안
- 한·아세안 5개국 간의 교역 확대 및 금융, 자원, 자본, 기술협력
- 한·아세안 간 플랜트 수출 또는 제3국으로의 공동진출 등

SPC(남태평양위원회) 및 SPF(남태평양협의회) 회의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동남아

MF번호 2010-13 / 3 / 1-46

1. 제11차 SPF(남태평양협의회) 정상회담(1980.7.14.~15., 키리바시 타라와)

- 참가국
 - 호주,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등 12개 회원국
- 주요 토의사항
 - 뉴헤브리데스 독립, 핵폐기물의 남태평양 투척 문제 등
- 회의 결과
 - 결의문 및 SPARTECA(태평양지역 통상경제협력협정) 채택

148

2. 제22차 SPC(남태평양위원회) 총회(1980.10.23.~29., 파푸아뉴기니 포트모르즈비)

- 참가자
 - 호주, 뉴질랜드, 미국, 영국, 프랑스 등 25개 국가 및 남태평양 미독립도서 대표
 - 한국 측: 장기안 주피지대사(옵서버 대표)
- 협의 내용
 - 남태평양에서의 핵실험 및 핵폐기물 처리규제 문제
 - 남태평양 해역에서의 참치 남획방지 문제
 - 비정치적 성격의 남태평양회의를 정치 기구화하는 문제

ASEAN(동남아국가연합) 외상회의, 제13차. Kuala Lumpur, 1980.6.25.-26.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동남아

MF번호 2010-13 / 4 / 1-65

1980.6.25.~26.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제13차 아세안 외상회의 관련 내용임.

1. 참가국

- 아세안 국가: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싱가포르
- 비아세안 국가: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이탈리아

2. 주요 의제

- 캄보디아(구 캄푸차)사태 및 아프가니스탄 문제
- 아세안·EC(구주공동체) 대화조정국 지정
- 아세안·EC 합동협력위원회(1980.9월, 마닐라) 대표 직급 결정 문제
- 신임 아세안 사무총장 선출

3. 회의 결과

- 베트남군의 태국 침공사태 관련 태국·캄보디아 간 국경사태에 관한 공동성명서(베트남 행위 규탄) 발표
- 아세안·제3국(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인도) 간 외상회담 개최

AIPO(ASEAN의원연합기구) 총회, 제3차. Jakarta, 1980.9.2.-6.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아주총괄

MF번호 2010-13 / 5 / 1-111

1980.9.2.~6.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제3차 AIPO(아세안의원연합기구) 총회 관련 내용임.

1. 참가국

- 아세안 국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등 5개국
- 옵서버: 한국, 호주, 일본, 방글라데시, 구주 의회

150

2. 주요 토의사항

- 남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정치정세 검토
- 아세안·EEC(유럽경제공동체) 경제협력
- 마약에 관한 공동입법계획
- AIPO 상설사무국 설치
- 아세안 국가의 대외무역방안(특히 대일본 무역관계)
- 아세안 국가 간 농업협력

3. 회의 결과

- 캄보디아(구 캄푸차)사태 긴급 조사 및 조속 해결 결의(베트남군 캄보디아 철수)
- 태국·캄보디아 국경 난민 및 라오스, 베트남으로부터의 불법 이민 등 난민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협력 추진
-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무력 침공과 군사개입 비난, 군대 철수 유엔 결의 이행 촉구
- 1982년 이후 AIPO 상설사무국 설치 합의

ASPAC(아시아태평양이사회) 사회문화센터 각국의 탈퇴 경위 및 해체문제

생산연도 1976-1980

생 산 과 문화교류

MF번호 2010-13 / 6 / 1-212

1976~80년 중 ASPAC(아시아태평양이사회) 사회문화센터의 각 회원국 탈퇴 경위 및 해체 문제 관련 내용임.

1. 창립 경위

- 1968.10.25.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 간 유대 강화 및 사회문화 분야 공통목적 달성을 위해 ASPAC 산하 기구로 설립, 서울에 사무국을 설치하고 비정치적 지역협력활동 개시
- 창설 회원국
 - 호주, 대만(구 자유중국),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태국, 베트남 등 9개국

2. 회원국 이탈 현황

- 탈퇴 회원국: 호주(1974.7.1. 탈퇴), 말레이시아(11.12. 탈퇴), 월맹(1975.4.30. 패망 소멸), 태국(1976.4.7. 탈퇴), 뉴질랜드(6.30. 탈퇴), 필리핀(1980.6.30. 탈퇴)
- 잔류 회원국: 한국, 일본, 대만
- 탈퇴 사유: 중국(구 중공)과의 관계 개선 등 국제정세 변화에 따라 대만이 회원국으로 있는 ASPAC에서 탈퇴

3. ASPAC 사회문화센터 해체 건의(1980.7.4., 외무부)

- 해체 사유
 - 3개 잔류국 중 일본의 탈퇴 가능성 농후
 - 센터 운영 재원확보 어려움 가중
- 해체 결정 대외발표 방안: 회원국 공동성명 또는 공동보도자료
- 해체 시기: 잔무 정리 등 감안, 1981.6.30.부로 해체 추진

ASPAC(아시아태평양이사회) 사회문화센터 실무회의, 제42차. 서울, 1980.2.12.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문화교류

MF번호 2010-13 / 7 / 1-162

1980.2.12. 서울에서 개최된 제42차 ASPAC(아시아태평양이사회) 사회문화센터 실무회의 관련 내용임.

1. 참가국

- 한국, 일본, 대만(구 자유중국), 필리핀

2. 주요 내용

- 1978~79년 재정 보고
- 1980~81년 행정비 및 사업비 예산
- 회원국 분담금 납부 현황

ASPAC(아시아태평양이사회) 사회문화센터 집행위원회 정기회의, 제12차. 서울, 1980.4.18.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문화교류

MF번호 2010-13 / 8 / 1-166

1980.4.18. 서울에서 개최된 제12차 ASPAC(아시아태평양이사회) 사회문화센터 집행위원회 정기회의의 관련 내용임.

1. 참가국

- 한국, 일본, 대만(구 자유중국)

2. 회의 결과

- 의장 선출
 - 박동진 외무부장관 재선출
- 1978~79 회계연도 활동 보고
 - ASPAC 장학금 수여
 - 제1차 아시아태평양 도시문제회의(1978.11.27.~12.4., 타이베이)
 - 제2차 아시아태평양 문화재 및 전통성 보전회의(1979.5.28.~6.2., 서울)
 - 제1차 아시아태평양 청소년 범죄회의(1979.11.25.~12.2., 타이베이)
- 1980~81 회계연도 행정비 및 사업비 예산안 심의
- 제1차 아시아태평양 인구회의(도쿄) 및 제1차 아시아태평양 사회개발세미나(마닐라) 개최 결정

ASPAC(아시아태평양이사회) 사회문화센터 집행위원회 정기회의, 제13차. 서울, 1980.6.30.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문화교류

MF번호 2010-13 / 9 / 1-127

1980.6.30. 서울에서 개최된 제13차 ASPAC(아시아태평양이사회) 사회문화센터 집행위원회 정기회의의 관련 내용임.

1. 참가국

- 한국, 일본, 대만(구 자유중국)

2. 회의 결과

- 제12차 정기 집행위원회 회의록 검토
- 1979~80 회계연도 활동 보고
 - 제1차 아시아태평양 청소년 범죄회의(1979.11.25.~12.2., 타이베이)
 - 제10차 아시아태평양 영화제(1980.6.9.~13., 서울)
 - 필리핀의 회원국 탈퇴(6.30.)
- 1981~82 회계연도 행정비 및 사업비 예산안 심의

ASPAC(아시아태평양이사회) 사회문화센터 장래 문제 검토

생산연도 1974-1980

생 산 과 문화교류

MF번호 2010-13 / 10 / 1-64

외무부는 1976.8.4. ASPAC(아시아태평양이사회) 사회문화센터의 현황과 장래 문제를 아래와 같이 검토함.

1. 회원국 현황

- 1968.10.25. 창설 당시 회원국 중 5개국이 이탈하여 현재 한국, 일본, 대만(구 자유중국), 필리핀 4개국만 잔류

2. 재정 현황

- 창설 당시 분담금 총액이 회원국 이탈로 252,859달러에서 205,500달러로 감소되어 약 37% 적자

3. 사업 내용

- 학자 교류, 음악인 대회, 영화회, 지역 문화재 복구사업, 청년 문제 세미나 등
- 한국이 대만과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로 한국에서 대다수 사업 개최

4. ASPAC 사회문화센터 장래 문제

- 회원국 이탈, 재정 현황 등의 상황에 비추어 동 센터 폐지에 대한 2개 방안 마련
 - 자금난에 의한 운영 불가능 사유로 기능 정지 및 자연 소멸
 - 동 센터 활동 정체를 이유로 1977~78 회계연도 분담금 지급을 중지하여 1977.6월경 자연 해체

ASEAN(동남아국가연합) - EC(구주공동체) 관계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동남아

MF번호 2010-13 / 11 / 1-117

1980년 중 아세안·EC(구주공동체) 간 주요 관계 동향임.

1. 제2차 아세안·EC 각료회의(1980.3.6.~8., 쿠알라룸푸르)

- 아세안·EC 경제협력협정 서명(3.7.)
 - 협정 유효기간 5년, 5년 후 2년마다 갱신
 - 상호 간 최혜국대우 부여 및 아세안·EC 간 개발협력조항 포함
- 정치관계 공동성명 채택
 - 캄보디아(구 캄푸차) 및 아프가니스탄사태 관련, 국가 주권 및 자결권 존중의 아세안·EC 간 공동입장 천명

2. 제1차 아세안·EC 공동협력위원회(1980.11.28.~29., 마닐라)

- 수석대표
 - EC 측: Roy Denman 집행위 대외총국장
 - 아세안 측: Devakula EC 담당 조정관
- 통상·경제·개발협력 공동발표문 주요 내용
 - 아세안·EC 새로운 통상 증진계획 승인
 - EC의 새로운 GSP(일반특혜관세제도) 계획에 대한 아세안 개선 요구에 유익하고 섬유류 및 여타 상품의 무역 현황 검토
 - 무역 촉진을 위한 실무그룹 설치 결정
 - 아세안 국가의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가입 문제에 대한 EC의 적극적 역할 지속
 - 아세안·EC Business Council 설치 등 경제협력 공동계획 채택
 - 1981.1월 EC 광산전문가 그룹 아세안 방문
 - 농업, 공업, 수송 및 통신에 관한 아세안 국가의 지역별 계획서 제출에 대한 EC 측 재정지원 동의 표명

OAS(미주기구) 총회, 제10차. Washington D.C., 1980.11.19.-27.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남미

MF번호 2010-13 / 12 / 1-178

정부는 1980.11.19.~27.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제10차 OAS(미주기구) 총회에 오재희 주미국대사관 공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국

- 회원국(26): 아르헨티나, 바베이도스,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그라나다, 과테말라, 아이티, 온두라스, 자메이카, 멕시코, 니카라과,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세인트루시아, 트리니다드토바고, 수리남, 미국,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등(쿠바는 자격 정지로 불참)
- 특별 초청국(6): 한국, 바하마,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방글라데시, 호주, 필리핀
- 국제기구: 유엔, IDB(공업개발이사회), FAO(유엔식량농업기구), IMF(국제통화기금) 등

2. 주요 의제

- 인권문제 결의안
- 지역협력기금 설치
- 집단 경제 안보
- 특별총회 개최 문제
 - 역내 개발협력 문제 논의를 위한 몬테비데오 특별총회 개최
 - 특별총회 개최 1개월 후 세인트루시아에서 제11차 총회 개최

3. 한국대표단 주요 활동

- 본회의 및 5개 분과위 참석, 비동맹회의에서 한국문제 토의에 대한 한국 입장 지지 확보 노력 전개
- 미주지역 각국 대표 접촉, 한국의 대OAS 관계 증진 의사 표명 및 상주 옵서버 지위획득 협조 요청

OAS(미주기구) 이사회 회의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미주총괄

MF번호 2010-13 / 13 / 1-115

1980년 중 개최된 OAS(미주기구) 산하 이사회 회의 관련 내용임.

1. 제19차 IICA(미주농업협력기구) 상임이사회 회의(1980.9.22.~26., 멕시코시티)

- 참가국
 - 28개 OAS 회원국, 11개 상주 옵서버국(오스트리아, 벨기에, 이집트, 프랑스, 독일,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특별 초청국(한국)
- 수석대표
 - 민병석 주미국대사관 참사관
- 협의 내용
 - 농촌개발에 관계되는 기술적인 문제, 소요예산 협의 및 결정
- 한국대표단 초청 동기
 - 한국의 대OAS 개발협력사업 제의
 - 한국의 농촌개발 성공사례 인지
 - 한국의 IICA 농업개발계획에 한국 참여 유도
- 한국대표단의 회의 참석 기대 효과
 - OAS 상임이사회에 계류 중인 한국의 대OAS 협력사업 제의 수락 추진
 - OAS 사무국 및 중남미 국가 유력인사 접촉을 통한 OAS 상주 옵서버 가입 촉진

2. 제15차 CIES(미주경제사회이사회) 회의(1980.10.14.~17., 워싱턴 D.C.)

- 참가국
 - 27개 OAS 회원국, 16개 상주 옵서버국, 특별 초청국(한국)
- 수석대표
 - 민병석 주미국대사관 참사관
- 주요 토의 내용 및 결의사항
 - 보호주의에 대한 결의안
 - GSP(일반특혜관세제도) 개선 결의안
 - 다자무역협상 결과 이행에 관한 결의안
 - 중남미 및 카리브해 지역 구조적 문제에 관한 결의안
 - 파나마 운하 Toll에 관한 결의안
- 한국대표단 활동
 - 한국의 대OAS 협력사업 제의
 - Alejandro Orfila OAS 사무총장 방한 초청 제의
 - OAS 사무국 및 중남미 국가 유력인사 접촉을 통한 OAS 상주 옵서버 가입 촉진

EC(구주공동체) 정상회담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서구

MF번호 2010-13 / 14 / 1-139

1980년 중 개최된 EC(구주공동체) 정상회담 관련 내용임.

1. EC 정상회담(1980.4.27.~28., 룩셈부르크)

- 참가자
 - 9개 EC 회원국 정상
- 주요 의제
 - 영국의 EC 예산 부담금 문제
 - 이란의 미국 인질 억류 문제(5.17.까지 인질 석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경제제재조치 단행)
 - EMF(구주통화기금) 창설

2. EC 정상회담(1980.6.12.~13., 베니스)

- 참가자
 - 9개 EC 회원국 정상
- 주요 의제
 - EC의 대중동 정책
 - 경제사회, 에너지 현황 및 전망
 - EC 예산제도 개선
 - 선진공업국 간 관계: 다자 간 국제무역 조직 강화
 - 남북문제: 개도국과의 협력 강화
 -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회원국 확장 문제

3. EC 정상회담(1980.12.1.~2., 룩셈부르크)

- 참가자
 - 9개 EC 회원국 정상 및 그리스 외상
- 주요 의제
 - 그리스 EC 회원국 가입 문제(1981.1월 회원국 지위 부여)
 - 이탈리아 지진 피해지원(18억 달러 재정지원 및 13~17억 달러 저리 차관공여 합의)
 - 폴란드사태 관련 농산물 원조 문제

NORDIC(북구협력기구)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북구

MF번호 2010-13 / 15 / 1-120



1. 제27차 NORDIC(북구협력기구) 이사회(1980.3.4.~7., 아이슬란드 레이캬비크)

- 참가국
 -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 주요 토의 내용
 -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군 노르웨이 무기 배치 등 구주 안보 문제
 - 북구 국가 간 자유무역 확대 및 공동세제 혜택
 - 공동 가스파이프 설치 문제
 - 북구 국가 간 위성중계 실시 문제
 - 짐바브웨 및 로디지아 승인 문제

2. NORDIC 외상회의(1980.3.27.~28., 핀란드 헬싱키)

- 참가국
 -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 주요 토의 내용
 - 노르웨이·아이슬란드 간 안마옌섬 해역 어로 분쟁
 - 아프가니스탄사태 및 남아공 인종차별정책 대책

3. NORDIC 외상회의(1980.9.1.~2., 노르웨이 오슬로)

- 참가국
 -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 주요 토의 내용
 - 유엔총회 대비 북구 국가 간 정책 협의
 - 남북 경제질서 문제
 - 캄보디아(구 캄푸차) 등 동남아 문제

4. NORDIC 비공식 정상회의(1980.11.26.~27., 덴마크 코펜하겐)

- 참가국
 -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 주요 토의 내용
 - 북구 국가 간 공업, 에너지, 과학기술 분야 협력
 - 라디오·TV 등 방송 분야 협력

EC(구주공동체) 외상회의

생산연도 1979-1980

생 산 과 구주총괄

MF번호 2010-13 / 16 / 1-166

1. EC(구주공동체) 외상회의(1979.11.20., 브뤼셀)

- LOME 협정 II 시행과 관련된 EC 역내 합의사항 서명
- 1980년 GSP(일반특혜관세제도) 계획 승인
 - 중국(구 중공)이 처음으로 특별협정을 조건으로 1980년 GSP 수혜국에 포함
- EC·사이프러스 관계
 - 각료이사회는 Coreper로 하여금 1980년 EC·사이프러스 간 관계를 규정할 대사이프러스 협상 지침 초안을 조속히 준비하도록 지시
- MTN(다자간무역협상) 결과 토의
 - 각료이사회는 MTN 결과를 토의, 수락하였으며 12월에 서명이 가능하도록 서명과 관련된 제반조치를 취함.
- 정치·외교 문제에 관한 선언문 채택

2. EC 외상회의(1980.2.5., 브뤼셀)

- 핵에너지 문제 관련 아래 안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
 - 방사선물질의 폐기물 분야에서의 공동체 행동계획
 - 방사선 핵연료의 재처리에 관한 공동체 전략 목표 및 방사선 핵연료의 재처리 임시위원회 설치에 관한 각료이사회 결정 초안
 - 공동체 내에서의 증식형 원자로의 선택권 문제
- 철강 문제
 - 철강 분야의 예산부문-산업전환계획을 위한 공동체 원조자금 조달을 위한 ECSC 예산의 추가 자원 할당에 관한 집행위 제안 토의
- 유고 문제
 - 각료이사회는 1976.12.2. 벨그라드 선언에 따라 유고와의 새로운 협력협정 체결을 위하여 회원국 대표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협상을 계속 추진하도록 지시
-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위한 긴급원조 승인

EC(구주공동체) 아주국장 회의 및 정무총국장 회의(정치위원회)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서구

MF번호 2010-13 / 17 / 1-225

162

1. EC(구주공동체) 아주국장 회의(아주 전문가 회의)(1980.1.10.~11., 로마)

- 한국문제에 관한 주요 토의 내용
 - 10·26 사태 이후 한국정세는 민주화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추이를 계속 관망하여야 할 것임.
 - 최규하 대통령에 의한 과도정부 구성과 개헌 추진 등 정치적 이양 작업은 조용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12·12 사태의 정확한 원인은 잘 알 수 없으나, 군 내부 파벌 간의 대립이 노출된 것으로 보임.
- 주요 결과
 - 주로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인도 문제에 관해 토의가 이루어짐.
 - 한국문제에 대해서는 의견 및 정보 교환 정도의 간략한 의견 교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 국내 정세가 안정 속에 민주화 작업을 조용히 추진하고 있다는 데 의견이 일치된 것으로 분석됨.

2. EC 정무회의(정무총국장급)(1980.6.26.~27., 로마)

- 주요 의제
 - 중동문제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
 - 아프리카지역 현안문제
 - 마드리드 구주안보회의 개최 문제
 - 아프가니스탄 문제

3. EC 정치위원회 회의(1980.7.17., 룩셈부르크)

- 주요 결과
 - 한국문제가 토의되었으며 EC를 대표하여 의장국이 한국 정부에 대하여 그들의 우려를 표명하기로 합의함.
 - 영국은 EC 회원국의 일반적인 의견임에 비추어 동 조치에 합의하였으나, 본 문제를 제기하는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위원회의 결정에 상당한 유보감을 가지면서 합의함.

아랍 정상회담, 제11차. Amman(요르단), 1980.11.25.-27.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중동총괄

MF번호 2010-13 / 18 / 1-172

1980.11.25.~27. 요르단 암만에서 개최된 제11차 아랍 정상회담 관련 내용임.

1. 참가국

- 요르단,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소말리아, UAE(아랍에미리트연합국), 북예멘, 이라크, 사우디, 수단, 튀니지, 모로코, 지부티, 모리타니 등 15개국

2. 주요 의제

- 이란·이라크분쟁
- 이스라엘·이집트 간 평화협정 및 대이집트 제재
- PLO(팔레스타인해방기구) 및 레바논 문제
- 아랍 국가 중 저개발국을 위한 개발기금 설치

3. 회담 결과

- 아랍연맹 정상회담 최종선언문 채택
 - 예루살렘 해방과 PLO 독립 국가 수립 지지
 - 캠프데이비드협정 비난 및 대이집트 보이콧 강화
 -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략 규탄
 - 이란·이라크 분쟁의 평화적 해결 촉구 및 이라크 영토권에 대한 합법성 유지
- 50억 달러 아랍개발기금 설치, 비산유국 응자
- 대이스라엘 아랍정치 행동계획 승인
- 아랍 정상회담 매년 개최 합의(주최국은 아랍연맹 알파벳 순)

이슬람 외상회의, 제11차. Islamabad(파키스탄), 1980.5.17.-22.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중동

MF번호 2010-14 / 1 / 1-73

1980.5.17.~22.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개최된 제11차 이슬람 외상회의 관련 내용임.

1. 참가국

- 39개국(PLO(팔레스타인해방기구) 포함, 이집트와 아프가니스탄 참가는 거부)

2. 주요 의제

- 아프가니스탄 및 이란 사태
- 팔레스타인 및 남부레바논 문제
- 이란·이라크 관계

3. 이슬람 외상회의 결의문 채택 주요 내용

- 아프가니스탄사태 해결을 위한 소련과의 대화 추진 및 동 사태 해결방안 강구 문제를 3인 위원회(파키스탄 외상, 이란 외상, 이슬람회의 사무총장)에 위임
-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수도로서의 기정사실화 법안 심의에 대한 유엔안보리 소집 모색 및 이스라엘의 동 조치 지지국과 단교
- 미국 인질 구출작전에 대한 비난 및 인질사태 해결을 위한 이란의 계속적인 노력 촉구

아프리카 지역협력기구 및 공동체 회의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서부아프리카

MF번호 2010-14 / 2 / 1-53

1980년 중 개최된 아프리카 지역협력기구 및 공동체 회의 관련 내용임.

1. 제7차 프랑스·아프리카 정상회담(1980.5.8.~10., 프랑스 니스)

- 참가국
 - 프랑스 및 아프리카 25개국(15개국 국가원수 참석)
- 주요 의제
 - 국제경제 현황 및 아프리카에 대한 영향: 아프리카 비산유 최빈국의 국제인플레이션 및 유가 인상 영향
 - 프랑스·아프리카 식량, 에너지, 재정협력 문제
 - 국제 현안문제: 차드 내전, 서부사하라사태, 모스크바올림픽 문제 등

2. 제5차 ECOWAS(서부아프리카경제공동체) 정상회담(1980.5.27.~28., 토고 로메)

- 참가국
 - 토고, 베냉, 가나, 나이지리아, 세네갈 등 15개국
- 주요 의제
 - 공동체 회원국의 공산품, 농산품에 대한 관세, 비관세 철폐
 - 회원국 간 교통·체신망 개발을 위한 장단기 계획서 채택 및 체신망 개발 특별기금 설정
 - 회원국 농산물정보센터 설립
 - 공동방위협약 체결

3. 제6차 ECOWAS(서부아프리카경제공동체) 정상회담(1980.10.27.~28., 니제르 니아메)

- 참가국
 - 니제르, 세네갈, 부르키나파소(구 오토볼타), 코트디부아르, 말리, 모리타니 등
- 주요 결과
 - 농촌 수리화 계획 등 역내 경제개발을 위한 회원국 간의 상호 협력 문제 논의
 - 차기 의장으로 세네갈 대통령 선출
 - 차기 회의를 1981.10월 다카에서 개최하기로 결정

AAPSO(아시아아프리카인민단결기구) 반동회의 25주년 기념총회. Colombo(스리랑카), 1980.5.23.-25.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국제기구2

MF번호 2010-14 / 3 / 1-64

1980.5.23.~25.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개최된 AAPSO(아시아아프리카인민단결기구) 반동회의 25주년 기념총회 관련 내용임.

1. 참가국

- 31개 회원국(주로 친소련 좌경국가) 및 3개 준회원국, 15개 좌익 공산계 민간기구 단체
- 북한은 3명의 대표단 파견, 한국 관련 결의안 제출

166

2. 회의 목적

- 반동회의 25주년 기념
- 반동회의부터 짐바브웨 독립까지 탈식민주의 역사 토의

3. 주요 의제

- 군사조약 및 군사기지 철폐 투쟁
- 남아공, 나미비아, 팔레스타인, 걸프지역 인민과의 국제연대
- 한국의 최근 사태 발전 및 통일을 위한 한국인과의 연대성
- 신국제 경제질서, 데탕트, 군축을 위한 투쟁

OAU(아프리카단결기구) 정상회담, 제17차. Freetown(시에라리온), 1980.7.1.-4. 전2권 (V.1 사전준비)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동부아프리카

MF번호 2010-14 / 4 / 1-154

1980.7.1.~4. 시에라리온 프리타운에서 개최된 제17차 OAU(아프리카단결기구) 정상회담 관련 사전준비 내용임.

1. 제34차 OAU 각료회의(1980.2.6.~15., 에티오피아)

- 주요 토의내용
 - 1980~81 회계연도 예산안
 - OAU 정상회의 및 특별각료회의 일정
 - 차드 경제회복 및 평화유지군 파견 지원
 - 튀니지·리비아 간 지역분쟁 해결
 - 영국 정부의 짐바브웨(구 로디지아) 자유선거 보장, 정치범 석방, 애국전선 자유행동 보장 문제

2. 제35차 OAU 각료회의(1980.6.18.~29., 시에라리온)

- 주요 토의내용
 - OAU 평화유지군 창설 검토
 - 아프리카 난민 문제 및 외세 개입 문제
 - 아프리카·아랍 경제협력
 - 범아프리카 통신·우편연합 설립
 - 팔레스타인 및 중동문제

3. 제13차 OAU 특별각료회의(1980.3.10.~12., 에티오피아)

- 짐바브웨 신생독립국 및 신정부 승인 결의안 채택

OAU(아프리카단결기구) 정상회담, 제17차. Freetown(시에라리온), 1980.7.1.-4. 전2권 (V.2 결과보고)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동부아프리카

MF번호 2010-14 / 5 / 1-142

1980.7.1.~4. 시에라리온 프리타운에서 개최된 제17차 OAU(아프리카단결기구) 정상회담
관련 결과 내용임.

1. 참가자

- 국가원수 및 정부 수반
 - 시에라리온, 세네갈, 기니, 토고 등 23개국
 - 친서방 온건파 국가에 비하여 좌경 국가 수뇌들이 대거 참석
- 각료급 인사
 - 리비아, 세이셸 등 27개국
- SWAPO(서남아프리카인민기구) 등 각급 해방운동단체 옵서버
- 국제기구 옵서버 및 역내기구 대표
 - 유엔, WHO(세계보건기구),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사무총장 등

2. 주요 의제

- 정치 분야
 - 차드사태 관련 중립군 파견(소요 경비 6,200만 달러 모금 추진)
 - 서부사하라 및 남아공 문제
 - 정치·안보이사회의 신설 문제
 - 팔레스타인 및 중동문제
 - 디에고가르시아섬의 모리셔스 귀속
 - 짐바브웨 OAU 가입
- 경제 및 기타 분야
 - 라고스 행동계획
 - 에너지개발위원회, 사막화방지위원회 설치 추진

신정부 승인 - 볼리비아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남미

MF번호 2010-14 / 6 / 1-35

한국 정부는 1980.8.6.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볼리비아 신정부를 승인함.

1. 볼리비아 정세 추이

- 1980.7.17. 군사 쿠데타 이후 7.18. 군사혁명위원회 추대를 통해 Luis Garcia 장군이 신정부 대통령으로 취임
- 신정부 군부세력은 민정 지지 노조 및 혁신세력의 항거를 진압하고, 볼리비아 전역에 실효적 지배 성공
- 볼리비아 신정부는 7.18. 한국 정부의 승인을 요청하는 공한을 주볼리비아대사관에 송부

2. 각국 반응

- 군부 집권 반대
- 미국, EC(구주공동체), 아덴지역 국가들은 볼리비아 군사정부 비난
-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등 인근 국가와 대만(구 자유중국), 이스라엘, 이집트, 남아공은 신정부 승인

3. 신정부 정치 성향 및 대한국 정책 전망

- 강력한 반공노선 추구
- 신정부 내 외상 등 다수의 친한 인사 포함에 따라 친한국 정책 계속 유지 전망

4. 한국 정부 조치사항

- 한·볼리비아 양국 간 우호 협력관계 발전을 희망한다는 내용의 공한 발송(1980.8.6.)
- 볼리비아 국경일 계기, 대통령 명의 볼리비아 신정부 대통령 앞 축전 발송(8.11.)

한국인 원폭피해자 구호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일본

MF번호 2010-14 / 7 / 1-195

1980년 중 한국인 원폭피해자 구호 관련 내용임.

1. 일본 후생성 원폭피해자 구호 관계관 방한(1980.2.25.~28.)

- 방한 목적: 독일치료 환자 인선(피폭자 10명) 및 구체적 사무절차 협의
- 파견자(3인): 후생성 공중위생국 기획관, 히로시마 원폭병원 부원장, 히로시마현 원폭대책과장

2. 재한 원폭피해자 독일치료 실시에 관한 합의서(1980.10.8. 교환) 주요 내용

- 독일치료 대상자는 별첨 명부 선정 10명
- 독일치료 대상자는 일본 후생성이 미리 지정한 의료기관 입원
- 독일치료 대상자에게 일본 도착 즉시 피폭자 건강수첩 교부
- 입원 기간은 2개월 이내, 필요시 후생성 동의를 얻어 연장 가능(최장 6개월)
- 독일치료자에 대한 귀국 수속 및 안내는 주일본대사관이 담당

3. 제1차 재한 원폭피해 환자 10명(남 6명, 여 4명), 1980.11.17. 독일치료 목적으로 출국

베트남 억류 공관원 석방 교섭(대미국)

생산연도 1975-1978

생 산 과 동남아

MF번호 2010-21 / 7 / 1-249

1975~78년 중 베트남에 억류된 공관원의 석방 교섭(미국 정부) 관련 내용임.

1. 억류 공관원 석방 교섭 관련 한국 정부의 미국 정부에 대한 협조 요청사항

- 공관원 8명의 소재 확인
- 소재 확인 시 프랑스, 벨기에, 일본, 스위스, 교황청 등 월남에 공관을 유지하고 있는 우방국 대사관으로의 긴급 피난 지원
- 사이공 및 기타 지역에서의 치안 상태 및 한국인 관련 정보 제공
- 베트남 신정권 관련 정보 제공(대외정책, 대한민국 태도 등)
- 체포 수감된 공관원 3인의 석방 및 북한으로부터의 보호

2. 미국 정부의 협조 내용

- 미국 측은 베트남 패전 상황에서 억류된 한국공관원 3인의 석방을 위해 협조할 수 있는 방도가 없음을 표명
- 미국의 직접 개입보다 UNHCR(유엔난민기구) 및 스웨덴 정부의 협조를 통한 대안 제시
- 미·베트남 실무회담(1975.11.12., 파리) 및 미·베트남 관계정상화회담(1977.5.2., 파리)에서 억류된 한국공관원의 석방 문제 제기

베트남 억류 공관원 석방 교섭(대스웨덴)

생산연도 1975-1979

생 산 과 동남아

MF번호 2010-21 / 8 / 1-298

1975~79년 중 베트남에 억류된 공관원의 석방 교섭(스웨덴 정부) 관련 내용임.

1. 박정희 대통령, 주한 스웨덴대사 대리 면담(1975.11.20.)

- 베트남에 억류된 주베트남대사관 직원 및 한국 교민 문제에 대한 스웨덴 정부의 협조 당부

2. 스웨덴 정부, 이익보호국 지정 결정(1975.11.26.)

- 베트남 잔류 공관원 및 교민들의 조기 출국을 위한 스웨덴 정부의 월맹 정부와의 교섭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스웨덴 정부, 외교관 8명 및 교민의 신변안전과 송환에 관련된 사항에 관해 이익보호국으로 한국 지정

3. 억류 공관원 구출 경과

- 1976.5.7. 억류 공관원 8명 중 5명은 프랑스 전세기편으로 베트남을 출국(홍콩 경유)하여 귀국
- 외무부는 스웨덴 정부의 지원과 협조에 대해 사의 표명
- 이대용 경제공사, 안희완 영사, 서병호 주재관 등 3명의 공관원은 베트남 신정권에 의해 계속 억류

베트남 억류 공관원 석방 교섭(대제네바)

생산연도 1975-1978

생 산 과 동남아

MF번호 2010-22 / 1 / 1-513

1975~78년 중 베트남에 억류된 공관원의 석방 교섭(ICRC(국제적십자위원회) 및 UNHCR(유엔난민기구) 등 국제기구) 관련 내용임.

1. 주제네바대사, ICRC 총재 면담(1975.5.1.)

- 베트남 잔류 공관원 및 교민 출국 교통편(항공, 선박) 제공 요청
 - ICRC 제공 항공편에 의한 베트남 철수 가능성 협의
 - 공관원 8명, 교민 154명, 한국인과 결혼한 베트남 국적 가족 105명 등 사이공 잔류자 명단 제공

2. 주제네바대사, UNHCR 고등판무관 면담(1975.8.12.)

- 베트남 잔류 공관원 및 교민의 출국 항공편 제공 요청

3. 박정희 대통령, 적십자사 총재 면담(1977.6.7.)

- 월맹에 억류된 공관원 3인의 석방 중재 역할 당부

4. 억류 공관원 구출 경과

- 1976.5.7. 억류 공관원 8명 중 5명 프랑스 전세기편 베트남 출국, 홍콩 경유 귀국
- 9.14. 교민 및 베트남인 가족 등 48명 ICRC 전세기편 베트남 출국
 - 외무부는 ICRC의 지원과 협조에 대해 사의 표명
- 이대용 경제공사, 안희완 영사, 서병호 주재관 등 3명의 공관원은 베트남 신청권에 의해 계속 억류

베트남 억류 공관원 석방 교섭(대태국)

생산연도 1977-1978

생 산 과 동남아

MF번호 2010-22 / 3 / 1-423

1977~78년 중 베트남에 억류된 공관원의 석방 교섭 관련 주태국대사관의 보고 내용임.

1. 주태국대사관, 국제적십자사 방콕사무소 및 주태국 하노이대표부 접촉(1977.1.5.)

- 베트남에 억류된 공관원 석방 협조 요청
 - 베트남 패망에 따라 1975.4.30. 주베트남대사관 철수 과정에서 8명의 공관원 잔류사태 발생
 - 이대용 경제공사, 안희완 영사, 서병호 주재관 등 3명은 베트남 신정부에 의해 체포 수감

174

2. 사이공 거주 교포인 이순흥 회장의 활동 지원

- 수감 공관원 면회, 의약품 및 생필품 지입 등 이순흥 회장의 수감 공관원 지원활동 내용 보고
- 베트남 출국 교포 및 이산가족 명단 보고

베트남 억류 공관원 석방 교섭(대프랑스)

생산연도 1976-1978

생 산 과 동남아

MF번호 2010-22 / 5 / 1-487

1976~78년 중 베트남에 억류된 공관원의 석방 교섭(프랑스 정부) 관련 내용임.

1. 주프랑스대사관, 프랑스 외무성 접촉(1976.1.7.)

- 잔류 공관원의 베트남 출국 협조 요청
 - 잔류 공관원 8인의 프랑스 전세기편으로 베트남 출국 편의 제공 요청
 - 1976.5.7. 억류된 공관원 8명 중 5명은 프랑스 전세기편으로 베트남을 출국, 홍콩 경유 귀국

2. 외무부, 1976.4.1. 팜반동 베트남 수상의 1977.4.25.~28. 프랑스 방문 시 수감된 한국공관원 3인의 석방 문제 제기를 요청

- 프랑스·월맹 수상회담에서 월맹 측은 한국외교관 석방에 이의가 없으나, 북한의 강경한 관여로 대북한 관계상 석방에 어려움이 있음을 언급
- 외무부 대책
 - 프랑스 측에 북한과의 직접 교섭 주선 요청 또는 제30차 WHO(국제보건기구) 총회에서 월맹 측에 의료지원 용의 표명 등 직접 교섭방안 강구

3. 주프랑스대사관, 1977.7.16. 재베트남 이산가족 70세대 명단을 프랑스 외무성에 전달하고, 이산가족의 베트남 철수에 필요한 제반 협조 제공 요청

- 프랑스 측은 9.30. 운항 종료 예정인 프랑스 전세기편을 통해 이산가족의 베트남 철수 지원을 약속

4. 외무부, 1977.8.19. 프랑스 외무성 및 주사이공 프랑스총영사관을 통해 재베트남 한교자치회 이순흥 회장에 대한 감사 서한 및 지속 협조 요청 서한 송부

- 이순흥 회장은 억류 공관원 3인에 대한 차입 지원, 서신 연락, 교민 출국 지원 업무 등 수행

베트남 억류 공관원 석방 교섭(대유엔)

생산연도 1975-1978

생 산 과 동남아

MF번호 2010-22 / 6 / 1-134

1975~78년 중 베트남에 억류된 공관원의 석방 교섭 관련 주유엔대표부의 보고 내용임.

1. 주유엔대사, 잔류 공관원 8명의 명단을 유엔사무총장에게 제출하고 유엔 차원의 한국공관원의 신변안전 확보 및 출국 편의 협조 요청(1975.5.8.)

- 유엔 측은 하노이 UNHCR(유엔난민기구) 상주대표를 통한 안전 구출 가능성 정보 수집 언급 및 ICRC(국제적십자위원회)를 통한 적극적 교섭 시도 필요성 제기

176

2. 주유엔대사, UNHCR 지역국장 접촉(1975.6.23.)

- 잔류 공관원 철수에 대한 UNHCR 협조 요청
 - 전세기 및 선박을 통한 한국공관원 철수 지원 약속

3. 주유엔대사, 억류 공관원 석방 교섭 대책 관련 외무부 보고(1977.12.23.)

- 유엔무대를 통한 석방 교섭
 - 유엔은 공개된 외교무대 성격으로 억류 공관원 석방과 같은 민감 사안은 다루기 어려운 문제임.
 - 베트남이 금차 총회에서 유엔에 가입되었으나, 베트남과의 직접 접촉은 거의 불가능한 실정임.
- UNHCR을 통한 석방 교섭
 - 제네바 주재 UNHCR이 사이공 함락 직후부터 공관원 석방 문제를 취급하여 왔음을 고려하여 UNHCR을 통한 석방 교섭이 효과적일 것임.

베트남 억류 공관원 석방 교섭(청와대 보고 및 서한)

생산연도 1976-1979

생 산 과 동남아

MF번호 2010-23 / 1 / 1-294

1976~79년 중 베트남에 억류된 공관원의 석방 교섭 관련 청와대 보고 내용임.

1. 사이공 잔류 공관원 출국 및 미출국 한국인 출국 대책(1976.5.13., 외무부)

- 공관원 출국 상황: 이규수 참사관 등 5명
- 미출국자: 이대용 공사(중정), 안희완 서기관(중정), 서병호 총경(내무부)
- 미출국 공관원 및 교민 출국 대책
 - 프랑스, 스웨덴 및 국제적십자사를 위주로 수감 공관원 3명의 구출 노력 지속
- 잔류 한국인 생계 대책: 사식 및 일용품 차입 계속, 공관원 가족에게는 공관 봉급 계속 지급
- 사이공 현지와의 연락: 사이공 주재 프랑스총영사관 및 이순흥 자치회장 활용

2. 스웨덴을 통한 월맹과의 한국인 출국 교섭(1976.6.3., 외무부)

3. 베트남 잔류 공관원 친필 서신 내용 보고(1976.11.5., 외무부)

- 월맹에 의해 수감 중인 공관원 3인(이대용 공사, 안희완 서기관, 서병호 총경)의 친필 서한

4. 베트남 잔류 공관원 3명 구출 교섭(1977.3.5., 외무부)

- 미 특별사절단 하노이 방문 결과
- 이순흥 자치회장에 대한 월맹 측 심문 및 조치
- 억류 공관원 가족의 탄원서, 하노이 당국 전달 문제

5. 베트남 억류 공관원 석방 교섭(1977.11.23., 외무부)

- 공관원 근황 및 건강 상태
- 스웨덴 정부 및 프랑스 정부를 통한 교섭 현황

베트남 억류 공관원 석방

생산연도 1979-1980

생 산 과 동남아

MF번호 2010-23 / 7 / 1-213



178

1. 베트남 억류 공관원 석방 교섭

- 주베트남대사관 공관원 3인 억류
 - 이대웅 공사 등 공관원 3인은 1975.4.30. 사이공 함락 시 약 200여 명의 교민 철수를 위해 잔류
 - 베트남 공산화 후 공관원 3인은 석방까지 5년간 구속 억류
- 뉴델리 3자회담(1978.7~79.5월)
 - 프랑스 정부 주선으로 억류 공관원 석방을 위한 한국, 베트남, 북한의 3자회담 개최
 - 베트남의 호의적 태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비인도적 방해 책동으로 3자회담 결렬
- 스웨덴 정부의 중재 노력
 - 스웨덴 측 정부인사와 Thach 베트남 외상 및 고위인사 간 비공식 접촉으로 협상 교섭

2. 베트남 억류 공관원 석방

- 베트남 정부의 억류 공관원 석방 결정 통보
 - 1980.3.31. Leifland 스웨덴 외무차관, Thach 외상의 석방 결정 내용을 한국 측에 전달
- 석방 공관원 인수 절차
 - 4.12. Leifland 스웨덴 외무차관 및 비서관이 사이공에서 직접 공관원 인수
 - 특별기편으로 동일 김포공항 도착

3. 베트남 억류 공관원 석방 발표 및 후속조치

- 1980.4.19. 정부대변인 문화공보부장관 명의로 억류 공관원 석방에 관한 공식 발표
- 후속조치
 - 사의 표명: 스웨덴, 프랑스, 인도, 태국 등 석방 협조 국가에 감사 표명
 - 훈장 수여: Leifland 스웨덴 외무차관 및 Nilsson 외무장관 비서관

한·일본 간의 교환 서신

생산연도 1972-1979

생 산 과 일본

MF번호 2010-23 / 8 / 1-60

1972~79년 중 한·일본 정상, 국무총리, 외무부장관 간 서한 교환 관련 내용임.

1. 박정희 대통령, 히로히토 일본 국왕과 다나카 수상에게 일본 방문계획 중지 통보(1972.10.10.)
2. 김종필 국무총리, 다나카 수상의 조문 방문에 대한 감사 서한(1974.8.22.)
3. 김종필 국무총리, 미키 수상의 취임 축하 서한(1974.12.18.) 및 답신(1975.1.13.)
4. 후쿠다 수상의 퇴임 인사 서한(1978.11.30.) 및 박정희 대통령의 회신(12.4.)
5. 박동진 외무부장관, 소노다 외상에 대한 귀국 인사(1979.3.7.)
6. 나카소네 중의원, 박정희 대통령에게 방한 귀국 인사(1979.4.17.) 및 답신(5.1.)

미국 주요인사의 한국 관계 연설문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북미

MF번호 2010-23 / 9 / 1-249

180

1. Holbrooke 미 국무부 차관보, The Asia Society에서의 연설문(1980.1.23.)
 - “1980년대의 미국과 아시아” 제하 중국(구 중공), 동북아, 한국, 동남아 문제 언급
2. Holbrooke 차관보, 편집인 및 방송인 연례 컨퍼런스 연설문(1980.3.5.)
3. Holbrooke 차관보, 민주당 여성클럽에서의 연설문(1980.3.27.)
 - 1980년 태평양에서의 미국의 위치 등 미국의 아시아정책 연설
4. Vance 미 국무장관, 미 상원 외교위원회에서의 연설문(1980.3.27.)
 - 국가안보 태세 강화, 동서 관계의 유지, 핵확산 및 무기판매 억제, 에너지 위기, 지역분쟁의 해결, 제3세계와의 관계 개선, 인권 증진, 환경 보호 등 8개 분야의 미국 외교정책 연설
5. Brzezinski 대통령 안보담당 특별보좌관, 동아일보와 인터뷰(1980.4.1.)
6. Holbrooke 차관보, 외교협회에서의 연설문(1980.4.2.)
 - “The Never Ending Tragedy” 제하 캄보디아(구 캄푸차) 문제에 관한 미국정책 연설
7. Holbrooke 국무부 차관보, 미·중 무역전국위원회에서의 연설문(1980.6.4.)
8. Muskie 미 국무장관, 워싱턴 기자클럽에서의 연설문(1980.6.9.)
 - 중동평화협상 문제 연설
 - 질의응답에서 한국관계 질문에 대해 카터 미 행정부의 강경정책 언급

한·말레이시아 정책협의회, 제1차. 서울, 1980.5.12.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동남아 / 통상1

MF번호 2010-24 / 1 / 1-198

1980.5.12. 서울에서 개최된 제1차 한·말레이시아 정책협의회 관련 내용임.

1. 개최 경위

- 1979.7월 후세인 온 말레이시아 수상 방한 시 발표된 공동성명서를 통하여 양국 간의 경제, 무역 및 기타 제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고위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

2. 수석대표

- 한국 측: 이문용 외무부차관
- 말레이시아 측: Zakaria 외무차관

3. 주요 의제

- 한반도 정세, 국제 정세, 동남아 정세, 양국 간 협력 문제

4. 주요 결과

-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 및 남북대화, 캄보디아(구 캄푸차) 문제, 비동맹에서의 협력 등
- 태평양공동체 구상, 아세안과의 협력 논의
- 말레이시아 7개 민간프로젝트 참여 문제, 한국 건설업계 진출, 원목 등 원자재의 안정적 공급, 고무산업 협력, 합작 투자, 무역역조 문제 등 협의

한·영국 정책협의회, 제2차. 서울, 1980.10.8.-11. 전6권 (V.1 사전교섭)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서구 / 경제협력1 / 통상2 / 문화교류

MF번호 2010-24 / 2 / 1-88

1980.10.8.~11. 서울에서 개최된 제2차 한·영국 정책협의회 관련 내용임.

1. 개최 경위

- 1980.3.13. 주영국대사, Cortazzi 외무성 차관보 면담 시 영국 측은 1980.9월 제2차 정책협의회 개최를 언급
- 1980.4.28. 영국 측, Sir Ian Gilmour 국새상서 겸 부외상의 7월 초 방한 희망의사 전달
- 동 계기에 외무성 차관보가 인솔하는 대표단이 방문하여 제2차 정책협의회 개최 희망
- 1990.10.8.~11. 서울에서 제2차 한·영 정책협의회 개최 합의

2. 수석대표

- 한국 측: 김동휘 외무부차관
- 영국 측: Sir Edward Youde 외무성 차관보

3. 회의 의제(영국 측 제의)

- 통상관계
 - 세계경제정세, 핵발전소, 철도 건설사업, 에너지, 수입자유화, 전자제품 관계
- 정무관계
 - 지역정세, 동서관계 및 기타 유엔·중동·아프리카 등 국제정세
- 문화관계
 - 한국 내 영국문화원의 역할

한·영국 정책협의회, 제2차. 서울, 1980.10.8.-11. 전6권 (V.2 개최준비)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서구 / 경제협력1 / 통상2 / 문화교류

MF번호 2010-24 / 3 / 1-230

1980.10.8.~11. 서울에서 개최된 제2차 한·영국 정책협의회 관련 내용임.

1. 대표단

- 한국 측
 - 김동휘 외무부차관(수석대표), 박쌍용 정무차관보, 신동원 경제차관보 등
- 영국 측
 - Sir E. Youde 외무성 차관보(수석대표), R. Sunderland 상무부 차관보 등

2. 주요 의제

- 정무관계
 - 주요 국제정세, 한반도 정세 및 남북한 관계, 한·영국 양자문제
- 경제관계
 - 세계경제정세, 양국 경험 및 통상문제
- 문화관계
 - 주한 영국문화원의 역할, 한국학 진흥사업 등 문화예술 교류

3. 회의 준비자료

- 제2차 한·영 정책협의회 개최계획(1980.9월, 외무부 구주국)
- 제2차 한·영 문화위원회 토의 안건(9월, 외무부 정보문화국)
- 제2차 한·영 정책협의회 준비사항(10.4., 외무부 구주국)

한·영국 정책협의회, 제2차. 서울, 1980.10.8.-11. 전6권 (V.3 결과보고)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서구 / 경제협력1 / 통상2 / 문화교류

MF번호 2010-24 / 4 / 1-222

1980.10.8.~11. 서울에서 개최된 제2차 한·영국 정책협의회 결과 내용임.

1. 회의 결과

- 경제관계 회의(10.8)
 - 한국의 수입자유화 문제 관련, 영국 측은 고급 소비재에 대한 수입자유화 희망
 - 영국의 한국산 전자제품 및 신발류 수입규제 완화 요청
 - MFA(다자간섬유협정) 및 GSP(일반특혜관세) 개정 문제 관련 한국 정부 희망사항 전달
 - 항공협정, 해운협정 체결 관련 회담에서 성과 기대
- 정부관계 회의(10.9.)
 - 정치발전 및 김대중 사건에 대한 영국 입장 설명
 - 영국 정부의 대북한 불승인 정책 불변, 경제는 민간차원에서 모든 국가와 교역
 - 한국의 대동구권 관계 개선에 영국 측 협조 요청
- 문화관계 회의(10.11)
 - 영국문화원 서울사무소 잔류 문제 논의
 - 1981년도 한·영국 수교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2. 회의 평가

- 10·26 사태 이후 어려운 국내정치 상황에서 우방국으로서는 처음으로 영국과 정책협의회 개최

한·영국 정책협의회, 제2차. 서울, 1980.10.8.-11. 전6권 (V.4 경제·통상관계 회의록)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서구 / 경제협력1 / 통상2 / 문화교류

MF번호 2010-24 / 5 / 1-111

1980.10.8.~11. 서울에서 개최된 제2차 한·영국 정책협의회 관련 경제·통상관계 회의
(1980.10.8.) 내용임.

1. 주요 결과

- 이란·이라크전 장기화 대비, 영국으로부터의 원유수입 문제 검토 요청
- 한국산 섬유류, 전자제품 및 신발류 수입규제 완화 요청
 - MFA(다자간섬유협정) 및 GSP(일반특혜관세) 개정 문제 관련 한국의 희망사항 전달
- 원자력 9, 10호기 및 지하철 3, 4호 건설에 대한 영국 측의 비상한 관심 표명
- 한국의 수입자유화 문제 관련 영국 측은 고급 소비재에 대한 수입자유화 희망
- 영국 측, 한국의 투자증진 및 기술이전 확대에 대한 호의적 반응
 - 영국 의회 경제사절단, 민간 경제사절단 방한 예정

2. 자료

- 경제·통상관계 회의록(1980.10.12., 외무부 국제경제국)

한·영국 정책협의회, 제2차. 서울, 1980.10.8.-11. 전6권 (V.5 협의회 자료)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서구 / 경제협력1 / 통상2 / 문화교류

MF번호 2010-24 / 6 / 1-239

1. 제2차 한·영국 정책협의회 자료(정무관계)(1980.10.10., 구주국)
2. 제2차 한·영국 정책협의회 자료(문화관계)(1980.10.11., 정보문화국)
3. 한·영국 관계 개황(1980.10월, 외무부)
4. 제2차 한·영국 정책협의회 회의자료(영문)(1980.10월, 구주국)

한·영국 정책협의회, 제2차. 서울, 1980.10.8.-11. 전6권 (V.6 관계부처 자료)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서구 / 경제협력1 / 통상2 / 문화교류

MF번호 2010-24 / 7 / 1-113

1. 제2차 한·영국 정책협의회 문화관계 의제 자료

- 문화공보부
 - 한국학 교류 지원, 간행물 상호교환, 영국 교과서 내 한국관계 오류 시정
 - 한국 대표문헌 영문번역 보급, 예술 교류, 박물관 활동 교류, 방송 교류
- 과학기술처
 - 주요 연구기관 간 협력, 민간기업연구소 간 연구원 교류 촉진, 원자력 안전에 관한 정보자료 교환
- 문교부
 - 도서관 자료 교환 및 훈련, 역사 편찬자료 교환

2. 제2차 한·영국 정책협의회 경제·통상관계 자료(관계부처)

- 경제기획원
 - 자본협력 촉진, 합작투자 증대, 기술도입 촉진, 제3국 진출을 위한 영국의 협조
 - 영국 측 관심사항: 서울지하철 건설사업, 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 제철사업
- 교통부
 - 해운항만청: 한·영국 해운협정 체결
 - 철도청: 철도 건설사업 문제
- 농수산부: 농산물 수입자유화 문제, 우제품 동물 및 축산물 수입제한조치
- 재무부: 관세분야 의제 등
- 과학기술처: 한·영국 기술협력 현황 및 요청사항
- 상공부
 - 수입자유화 조치, 수입규제 완화 촉구, MFA(다국간섬유협정) 개정에 관한 수출입국 동향 및 한국입장
 - GSP(일반특혜관세제도) 개편에 있어 한국 배려 요청, 제3국에 대한 경제협력
- 동력자원부
 - 원자력발전소 건설, 영국의 무연탄 수입

동부아프리카지역 국가 정상회담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동부아프리카

MF번호 2010-24 / 8 / 1-49



1. 동아프리카지역 3국 정상회담(1980.1.2., 탄자니아 아루샤)

- 모이 케냐 대통령, 니에레 탄자니아 대통령, 비나이사 우간다 대통령 참석
 - 1977.6월 EAC(동아프리카공동체) 붕괴 후 최초로 개최된 3국간 정상회담
- 주요 의제
 - 케냐·탄자니아 국경재개 문제, 전 EAC 자산분배, 교통 및 무역협력 등
- 회담 결과
 - 향후 정기적인 3국 정상회담 개최에 합의
 - 현안인 케냐·탄자니아 국경 재개 문제 등 주요 의제에는 진척 없음.
 - 정치이념, 경제구조 등 차이로 EAC 부활은 기대하기 어려움.

188

2. 동아프리카지역 4국 정상회담(1980.4.14.~15., 케냐 몸바사)

- 수단, 케냐, 우간다, 탄자니아 대통령 참석
- 주요 의제
 - 정치, 경제통상 및 교통통신 협력, 케냐·탄자니아 국경 재개
 - 탄자니아·수단 간 관계 개선, 와해된 전 EAC 재산처리 문제 등
- 회담 결과(공동성명 발표)
 - 지역협력에 관한 문제 협의 및 상호 이해 증진
 - 우간다 국내사정 개선에 대한 만족 표명 및 우간다에 대한 지원 재확인
 - 4개국 통상장관회의 개최로 지역 내 무역 증대방안 협의
 - 와해된 EAC 부활을 위한 관계 각료회의 개최(1980.5.7., 아루샤)

공관장회의, 1980년도 - 구주지역. Madrid, 1980.4.7.-9. 전4권 (V.1 기본문서)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구주총괄 / 동구

MF번호 2010-24 / 9 / 1-114

1980.4.7.~9.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1980년도 구주지역 공관장회의 관련 내용임.

1. 회의 의제

- 주재국의 대한반도 정책, EC(구주공동체)와의 협력 강화방안
- 1980년도 경제외교 추진방안(수출진흥 및 수입규제 대처방안)
- 외교 선전 홍보활동 및 문화외교 강화방안 등

2. 회의 결과

- 주재국의 한반도 정책에 관한 공관장 보고
 - 10·26 사태 이후 한국 정부와 국민이 합심하여 안정을 유지하면서 당면한 제반 문제를 슬기롭게 대처하고 있음에 대해 높이 평가
 - 경이적인 경제발전을 이룬 한국이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을 잘 극복할 것으로 기대
 -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통일을 위해 남북대화에 임하는 한국의 입장 이해 및 지지
- 4개항의 건의문 채택
 - 능동, 자유, 실리외교의 전개
 - 금년도 수출목표 달성
 - 효과적이며 다각적인 홍보활동
 - 북한에 대한 우위외교 확보
- 주요 건의사항
 - 대동구권 관계 개선 노력 및 재외공관 접촉
 - 주스트라스부르그총영사관 및 주마르세이유총영사관 설치 건의

3. 주요 자료

- 대동구권 관계 개선 활동(1980.3월, 구주국)
- 북한의 대중·소련 관계(3월, 구주국)
- 1980년도 대동구권 관계 개선 활동(3월, 구주국)

공관장회의, 1980년도 - 구주지역. Madrid, 1980.4.7.-9. 전4권 (V.2 공관자료 I)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구주총괄 / 동구

MF번호 2010-24 / 10 / 1-230

1980.4.7.~9.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1980년도 구주지역 공관장회의 관련 공관별 회의자료임.

1. 공관별 구주지역 공관장회의 자료(I)

- 교황청, 그리스,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벨기에 주재 대사관 회의자료

2. 주요 내용

- 정무 관계(주재국 정세 및 정책, 대한반도 정책, 우호관계 증진방안, 대동구권 관계 개선)
- 경제협력 및 통상진흥 관계(대동구권 경제협력 관계 수립방안 포함)
- 홍보문화 관계(외교선전 홍보활동, 문화외교 강화)
- 영사 및 재외국민 관계
- 공관별 건의사항

공관장회의, 1980년도 - 구주지역. Madrid, 1980.4.7.-9. 전4권 (V.3 공관자료 II)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구주총괄 / 동구

MF번호 2010-24 / 11 / 1-225

1980.4.7.~9.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1980년도 구주지역 공관장회의 관련 공관별 회의자료임.

1. 공관별 구주지역 공관장회의 자료(II)

-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영국 주재 대사관 회의자료

2. 주요 내용

- 정부 관계(주재국 정세 및 정책, 대한반도 정책, 우호관계 증진방안, 대동구권 관계 개선)
- 경제협력 및 통상진흥 관계(대동구권 경제협력 관계 수립방안 포함)
- 홍보문화 관계(외교선전 홍보활동, 문화외교 강화)
- 영사 및 재외국민 관계
- 공관별 건의사항

공관장회의, 1980년도 - 구주지역. Madrid, 1980.4.7.-9. 전4권 (V.4 공관자료 III)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구주총괄 / 동구

MF번호 2010-24 / 12 / 1-164

1980.4.7.~9.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1980년도 구주지역 공관장회의 관련 공관별 회의자료임.

1. 공관별 구주지역 공관장회의 자료(III)

- 주제네바대표부, 튀르키예,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주재 대사관 회의자료

2. 주요 내용

- 정무 관계(주재국 정세 및 정책, 대한반도 정책, 우호관계 증진방안, 대동구권 관계 개선)
- 경제협력 및 통상진흥 관계(대동구권 경제협력 관계 수립방안 포함)
- 홍보문화 관계(외교선전 홍보활동, 문화외교 강화)
- 영사 및 재외국민 관계
- 공관별 건의사항

공관장회의, 1980년도 - 아·미주지역. 서울, 1980.3.11.-18. 전3권 (V.1 사전준비)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아·미주총괄 / 미주총괄

MF번호 2010-24 / 13 / 1-282

1980.3.11.~18. 서울에서 개최된 1980년도 아·미주지역 공관장회의 관련 내용임.

1. 참가자

- 미주지역 15명, 아·미주지역 15명 공관장 등 총 30명

2. 회의 목적

- 1980년도 외교목표 및 시책 시달
- 대아·미주지역 외교의 종합적 검토
- 대아·미주지역 경제외교의 종합적 검토

3. 주요 일정

- 회의 일정(1980.3.11.~15.): 분야별로 제1~8차 회의 개최
- 기관 방문 및 시찰(3.16.~19.): 국회 방문, 제3땅굴, 산업 시찰
- 기타 대통령에 대한 귀국 신고, 대통령, 국무총리 및 외무부장관 주최 만찬 등

4. 주요 의제

- 정무 관계: 주재국 정세 및 정책, 대한반도 정책, 우호관계 증진방안
- 비동맹 및 대유엔 관계
- 경제협력 관계: 선진국과의 자본 및 기술협력 강화, 대개도국 경험 강화, 자원외교 강화
- 통상진흥 관계: 수출진흥 활동, 수입규제 대처방안
- 정보문화 관계, 영사 및 재외국민 관계, 서정쇄신 등

5. 주요 자료

- 1980년도 아·미주지역 공관장회의 주요 행사 참가자(안)
- 1980년도 아·미주지역 공관장회의(의제, 일정 및 안내서)
- 1980년도 아·미주지역 공관장회의 안내서

공관장회의, 1980년도 - 아주·미주지역. 서울, 1980.3.11.-18. 전3권 (V.2 결과보고)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아주총괄 / 미주총괄

MF번호 2010-24 / 14 / 1-196

1980.3.11.~18. 서울에서 개최된 1980년도 아주·미주지역 공관장회의의 관련 결과 내용임.

1. 주요 의제

- 정부 관계: 4강의 관계 변화 등 동북아 정세 평가, 아프가니스탄사태 평가, 10·26 사태 이후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 남북대화 평가, 환태평양기구 관계, 비동맹 및 유엔 관계
- 경제통상 관계: 경제기술협력 외교의 기본방향, 수출 확대와 자원의 장기 안정공급 확보
- 영사교민 관계: 교민선도 및 보호대책 시달, 반한인사 입국 재검토, 이민문제

194

2. 회의 결과 평가

- 10·26 사태 이후 한국 국민과 정부의 민주역량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
- 다수 공관장이 유엔가입 문제 적극 검토 건의
- 남북대화에서 한국의 적극적 대화 주도 필요성
- 국내정세 변동에 따라 외국 유력인사 및 교포의 입국금지조치 완화 필요성 제기

3. 연설문

- 박동진 외무부장관 치사
- 신현확 국무총리 치사

공관장회의, 1980년도 - 아주·미주지역. 서울, 1980.3.11.-18. 전3권 (V.3 자료)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아주총괄 / 미주총괄

MF번호 2010-25 / 1 / 1-261

1980.3.11.~18. 서울에서 개최된 1980년도 아주·미주지역 공관장회의 관련 자료임.

1. 외무부 부내 자료

- 1980년도 공관장회의 토의의제 자료
 - 1980년도 아주·미주지역 공관장회의 의제(안)
- 1980년도 아주·미주지역 공관장회의 자료(영사교민 업무 주요시책)

2. 재외공관 자료

- 통상진흥 관계 토의자료(주뉴욕총영사관)
- 1980년도 아주·미주지역 공관장회의 자료
 - 주호주대사관, 주미얀마(구 버마)대사관, 주일본대사관

공관장회의, 1980년도 - 중동·아프리카지역. Geneva, 1980.4.3.-5. 전2권 (V.1 기본문서)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중부아프리카

MF번호 2010-25 / 2 / 1-230

1980.4.3.~5.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1980년도 중동·아프리카지역 공관장회의의 관련 내용임.

1. 주요 의제

- 정무 관계에서 중동 분쟁, 아프리카 지역분쟁, 미수교국과의 관계 개선 문제
- 대유엔 및 비동맹 관계
- 자원외교 및 경제협력 강화, 건설용역 및 합작사업 확대, 수산협력
- 통상진흥, 홍보문화, 영사 및 재외국민 등

2. 회의 결과

- 주재국의 한반도 정책에 관한 공관장 보고
 - 10·26 사태 이후 한국 정부와 국민이 합심하여 안정을 유지하면서 당면한 제반문제를 슬기롭게 대처하고 있는데 대해 높이 평가
 - 경이로운 경제발전을 이룬 한국이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을 잘 극복할 것으로 기대
 -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통일을 위해 남북대화에 임하는 한국의 입장 이해 및 지지
- 4개항의 건의문 채택

3. 회의 평가

- 아프리카 및 중동 2개 지역 공관장회의의 합동 개최로 종합적인 정세평가 가능
- 비동맹권을 형성하고 있는 아·중동 국가와 우호관계 강화가 긴요
- 아·중동지역 내 미수교국과의 관계 개선 노력 필요
- 아·중동지역에 대한 수출 증대 및 경제협력 방안, 건설 진출 확대 등 논의

공관장회의, 1980년도 - 중동·아프리카지역. Geneva, 1980.4.3.-5. 전2권 (V.2 자료)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중부아프리카

MF번호 2010-25 / 3 / 1-174

1980.4.3.~5.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1980년도 아·중동지역 공관장회의의 관련 자료임.

1. 지역분쟁 전망

- 동부아프리카 및 서부아프리카 지역분쟁 전망

2. 주재국 정세평가 및 전망과 1980년도 업무계획

- 이란, 이집트, 수단, 요르단, 레바논, 이스라엘, 시리아, 이라크 전망과 계획
- 1979년도 정세 평가, 1980년도 정세 전망, 주요 현안문제, 1980년도 업무계획

3. 1980년도 아프리카지역 사업계획

- 1979년 대아프리카지역 주요 외교 실적, 주요 정세, 북한의 아프리카 진출 현황
- 1980년도 주요 외교시책, 1980년도 대아프리카 외교 강화 추진 방향

4. 1980년도 아중동지역 공관장회의 자료(아프리카지역 정무관계)

- 1980년도 아프리카지역 사업계획
- 공관별 현안문제, 건의사항 및 조치 방향

미국지역 명예영사 회의. Washington D.C., 1980.11.13.-15.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북미

MF번호 2010-25 / 4 / 1-38

1980.11.13.~15.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미국지역 명예영사 회의 관련 내용임.

1. 참가자

- 미국 17개 지역 19명의 명예총영사 및 명예영사 내외

2. 회의 결과

- 정무 관계: 한국에 대한 이해와 공감, 한국의 정치발전, 주한 미 지상군 철수, 남북회담 등 문의
- 경제 관계: 대만(구 자유중국)은 싱가포르 대비 한국의 경쟁력, 석탄수입 가능성, 한국경제에 대한 문의
- 영사 관계: 비자발급 업무 개선, 명예영사에게 일부 권한 위임 건의
- 홍보문화 관계: 미국 내 한국 이미지 조사 결과와 개선방안

3. 회의 평가

- 명예영사에 대한 업무협조 당부에 호응 및 진지한 태도로 토의
- 명예영사 회의가 시의 적절했으며, 한국에 대한 이미지 향상과 무역 증진 기대

총영사회의, 1980년도 - 미국지역. Seattle, 1980.7.1.-2.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북미

MF번호 2010-25 / 5 / 1-228

1980.7.1.~2. 미국 시애틀에서 개최된 1980년도 미국지역 총영사회의 관련 내용임.

1. 참가자

- 미국지역 총영사 10명

2. 주요 토의내용 및 대책

- 정무 및 홍보
 - 미국 정세 및 외교정책의 변화와 대한반도 정책
 - 최근 사태와 관련한 홍보 강화, 저명인사 방한 적극 추진, 자매결연 확대 등
- 경제·통상
 - 수출촉진대회 조기 개최, 대미 정부 교섭 강화, 경제홍보 강화
 - 월별 수출진흥회의의 강화, 순회 세일즈맨단 파견, 순회상품전시 확대
 - 유력 바이어의 방한 유치
- 영사교민
 - 각종 영사 업무의 신속한 처리방안
 - 주재지 유력인사 및 언론기관 접촉 강화
 - 교포 거주지역 순방, 교포 유력인사와의 접촉 강화
 - 반정부 인사의 모국 방문 허용, 입국제재 대상자 기준 완화

3. 주요 자료

- 박동진 외무부장관 훈시(연설문)
- 부내 자료(남북대화, 하반기 통상진흥활동 방향)
- 주미국대사관의 1980년도 주미국 총영사관회의 자료

한반도 관계 세미나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대양주 / 북미

MF번호 2010-25 / 6 / 1-90



1. 아시아 안보에 관한 비공식 토론회(1980.6.17., 미국 로스앤젤레스)

- 주최: 랜드연구소(Rand Corporation)
- 주요 참가자
 - 미국 측: 슈나이더 전 주한 미국대사, Solomom Rand 연구소 사회과학부장
 - 일본 측: 엔도 주멕시코 일본대사관 공사, Okazaki 방위청 심의관
- 주요 토의내용
 - 한반도사태 평가, 아시아에서의 강대국의 역할 등

200

2. 호주 개최 반한 세미나(1980.8.31., 호주 멜버른)

- 주최: 호주·북한 친선협회
- 목적: 남태평양지역 북한 통일 지지 대회
 - 친북한 인사 30여 명 참석
- 호주 정부, 북한 대표 3명에 대한 비자발급 불허

3. 제2차 한반도 문제에 관한 세미나(1980.11.20.~22., 멜버른)

- 주최: 호주 La Trobe 대학 McComack 교수(친북한)
- 친북한 교수들에 의한 세미나 개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대표단 파견
 - 김세진 외교안보연구원 연구실장 등 3인 참석

아시아태평양지역 정세 간담회, 제4차. Washington D.C., 1980.1.16.-17.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북미

MF번호 2010-25 / 7 / 1-60

1980.1.16.~17.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제4차 아시아태평양지역 정세 간담회 관련 내용임.

1. 미국 및 아시아 3국(한국, 일본, 대만(구 자유중국)) 안전보장회의(1980.1.16.~17., 워싱턴 D.C.)

- 개최 경위
 - 동북아 안보 유지를 위한 한국, 일본, 대만의 협의체로 1978년 “아·태지역 정세간담회” 창설
 - 1980년 회의는 미국을 포함한 4국 대표 간 회의로 개최
- 대표단
 - 한국 측: 이병희, 육인수, 정래혁, 이승윤, 김수한 의원
 - 미국 측: Sam Nunn 상원 의원, Price 하원 군사위원장, Stratton 의원 등
 - 일본 측: Shin Kanemura, Asao Mihara 의원 등 6명
 - 대만 측: Han Kih-Wu 등 8명

2. 아·태지역 정세간담회 각국 대표 연설문(영문)

- Melvin Price 미 하원 군사위원장 연설문
- 이병희 의원 연설문(동북아의 국제정치 및 경제 상황)
- Asao Mihara 일본 의원 연설문(동아시아에서의 현 군사 상황 및 일본의 방위정책)
- Han Kih-Wu 대만 대표단장 연설문(동북아시아 및 태평양 안보에 관한 고찰)

한·일본 협력위원회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일본

MF번호 2010-25 / 8 / 1-97

1980년 중 한·일본 협력위원회 관련 내용임.

1. 한·일 협력위원회 소위원회 회의(1980.7.3.~5., 도쿄)

- 대표단(한국 측): 정일권 의원, 김주인 의원, 장승태 의원
- 주요 의제
 - 한·일 간 국내정세에 관한 의견 교환
 - 한·일 간 협력관계 협의
 - 화국봉 방일 및 야츠기 국책연구소 이사장 방중 시 한국 관계 발언 설명

202

2. 한·일 자료 제4집(한·일 협력위원회)

- 총괄-1980년의 국제정세

3. 한·일 협력위원회 임시소위원회 회의(1980.9.2., 서울)

- 참가자
 - 한국 측: 정일권 회장, 김주인 사무총장
 - 일본 측: 회장 및 사무총장 등

4. 한·일 협력위원회, 1980년도 활동보고(1981.2.17.)

최규하 대통령 사우디아라비아 및 쿠웨이트 방문, 1980.5.10.-16. 전11권 (V.1 기본계획)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근동 / 의전

MF번호 2010-25 / 9 / 1-318

최규하 대통령의 1980.5.10.~16. 사우디아라비아 및 쿠웨이트 방문 관련 내용임.

1. 대통령 중동 방문 관련 외무부 내 Task Force 구성

- 1979.12월 박정희 대통령의 사우디아라비아 및 쿠웨이트 방문과 관련된 사전준비 작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Task Force를 구성함.
 - 전체업무 총괄: 외무부 중동국장
 - 분야별 담당
 - 정무 관계: 노창희 심의관
 - 통상 관계: 박종기 심의관
 - 경험 관계: 김재성 심의관
 - 그 외 의전 관계, 행정지원, 세부 업무 총괄조정 및 시행 관계로 구분
- 시행기간: 1979.10.11.~ 방문 종료 시까지

2. 무궁화행사 추진을 위한 조치사항(제1차 시안)

- 원칙 재가
- 방문 일정
- 영부인 동반 여부
- 수행원 결정 통보
- 현지공관 정비 강화
- 대교통부 조치사항 등

3. 최규하 대통령의 사우디아라비아 및 쿠웨이트 공식방문 건의(1980.4.23.)

- 외무부, 원유공급 확보를 포함한 중동 산유국과의 전반적인 관계 강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대통령의 중동지역(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공식방문을 시행할 것을 건의
 - 사우디아라비아: 1980.5.11.~13.
 - 쿠웨이트: 1980.5.13.~15.
- 동 방문은 10·26 사태로 연기되어 오던 중 금년 초 방문국과 비공식 협의, 방문국 정부들은 대통령의 방문을 환영한다는 입장 표명

최규하 대통령 사우디아라비아 및 쿠웨이트 방문, 1980.5.10.-16. 전11권 (V.2 국별교섭: 사우디아라비아)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근동 / 의전

MF번호 2010-25 / 10 / 1-204

최규하 대통령의 1980.5.10.~16. 사우디아라비아 및 쿠웨이트 방문 관련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교섭 내용임.

1. 최규하 대통령의 사우디 방문 희망의사 전달

- 외무부장관은 1980.1.11. 주사우디대사 대리에게 아래와 같이 통지함.
 - 양윤세 동자부장관은 사우디 고위인사 면담 시 지난해 12월로 예정되었던 고 박정희 대통령의 사우디 방문은 뜻하지 못한 사고로 실현되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
 - 한국 정부는 금년 3, 4월 최 대통령의 사우디 방문을 검토 중인바, 사우디 측 사정을 타진할 것을 요청
- 사우디 측, 최 대통령의 사우디 방문을 환영한다는 입장 표명

2. 최 대통령 방문 시기 관련 협의

- 주사우디대사 대리는 외무부의 지시를 받아 1980.3.22. 주재국 의전장을 방문, 한국 측 형편상 5월 중순 이후가 가장 바람직하므로 1980.4.27.~29. 대신 5.10. 이후 적절한 시기를 왕실에서 정해 주도록 요청함.
 - 동 의전장은 즉석에서 왕실의전실에 전화, 가급적 한국 측 의견을 반영하도록 요청하고 조속한 왕실 측의 회보를 요청함.
- 주한 사우디대사 대리는 4.4. 의전실장을 방문하여 무궁화행사 기간이 1980.5.11.~13.로 확정 되었다는 사우디 외무성의 전문을 접수하였다고 알려옴.

3. 무궁화행사(협력계획)

- 주사우디대사는 1980.5.5. Ali Reza 사우디 외무성 경제담당 차관을 방문, 한국 측이 제시한 협력계획에 대해 아래와 같이 협의함.
 - 한국 측: 금번 정상회담과 관련한 정부 간 합의문서로 1) 공동성명서 및 2) 양국 간 협력계획을 구상하고 있는 공동성명서는 대외 공표문서로서 국제정세 및 양국 간 제반문제에 관한 정상회담 내용을 차원이 높은 각도에서 다루며, 협력계획은 원유 및 안보협력 등과 같이 대외 공표가 부적당한 문제를 포함하여 양국 간의 장기적인 경제, 기술, 문화 등 제반 협력사항을 구체적으로 수록하고자함. 따라서 비공개문서로 하고자 함을 설명함.
 - 양측: 협력계획안 전반에 대하여 개략적인 의견 교환을 함.

최규하 대통령 사우디아라비아 및 쿠웨이트 방문, 1980.5.10.-16. 전11권 (V.3 국별교섭: 쿠웨이트)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근동 / 의전

MF번호 2010-25 / 11 / 1-135

최규하 대통령의 1980.5.10.~16. 사우디아라비아 및 쿠웨이트 방문 관련 쿠웨이트 교섭 내용임.

1. 최규하 대통령의 쿠웨이트 방문 관련 협의

- 주쿠웨이트대사는 1979.11.8. Al-Baptan 주재국 외무성 정무국 부국장 면담, 1979.12월 초로 예정되었던 박 대통령의 쿠웨이트 방문은 대통령의 갑작스런 서거로 불가능하게 된 데 대해 유감의 뜻을 전달함.
- 외무부는 1980.1.11. 양윤세 동자부장관의 쿠웨이트 방문 시 쿠웨이트 석유성 장관과의 면담보고에 의하면, 동 석유성 장관은 최 대통령의 주재국 방문 시기로 금년 5월 중이 좋겠다고 언급한바, 이와 관련 주쿠웨이트대사관에 아래사항을 보고하도록 지시함.
 - 금년 3, 4월 중 주재국 국왕의 외국 방문 또는 분주한 일정 여부와 예정된 국가원수의 주재국 방문계획 여부
 - 최 대통령의 3, 4월 중 쿠웨이트 측 편리한 시기에 쿠웨이트를 방문하고자 할 경우, 쿠웨이트 측 사정
- 쿠웨이트 의전실장은 최 대통령이 금년 3, 4월 중 주재국을 방문할 경우, 의전상의 어려움은 없다고 하며 한국 측이 희망하는 방문 일정을 공식 외교문서로 제의해 주면 이를 국왕실에 보고 하여 구체적인 방문 일정을 한국 측과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표명함.

2. 최 대통령의 쿠웨이트 방문 시기 협의

- 외무부는 1980.4.2. 주쿠웨이트대사에게 최 대통령의 주재국 방문 일정을 1980.5.13.~15.로 계획하고 있다고 하면서, 동 일정을 주재국 측에 구두로 통보하고 주재국 측이 이를 수락하도록 교섭을 지시함.
 - 또한 대통령의 사우디 방문 기간은 현재 확정되지 않고 있으나, 동국 방문 기간이 1980.5.11.~13.로 거의 확실시되고 있으니 필요시 상기 사우디 방문 기간을 주재국 측에 비공식으로 통보해도 무방함.
- 주쿠웨이트대사는 4.13. 주재국 외무성으로부터 최 대통령의 1980.5.13.~15. 주재국 방문을 환영한다는 요지의 정식문서를 접수하였다고 보고함.

3. 무궁화행사(협력계획)

- 외무부는 1980.5.1. 주쿠웨이트대사에게 한국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양국 정부 간 문서로는 공동성명과 한·쿠웨이트 협력계획에 관한 합의문서 두 가지임을 주재국에 설명하도록 지시함.
- 노재원 외무부 기획관리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사전교섭단은 5.4. 주재국 외상특별고문을 면담, 상기 2건의 문서에 대해 협의를 가짐.

최규하 대통령 사우디아라비아 및 쿠웨이트 방문, 1980.5.10.-16. 전11권 (V.4 의전 I)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근동 / 의전

MF번호 2010-25 / 12 / 1-288

최규하 대통령의 1980.5.10.~16. 사우디아라비아 및 쿠웨이트 방문 관련 의전 내용임.

1. 최규하 대통령 사우디 방문 일정 수정 제시

- 한국 측, 1980.4.1. 사우디 방문 일정을 아래와 같이 수정 제시
 - 5.11.(일) 11:30 리야드 도착, 오후 국왕 예방(훈장, 선물교환), 국왕 주최 만찬
 - 5.12.(월) 오전 정상회담, 오찬 황태자 주최, 오후 King Faisal 병원 시찰, 기획성 장관 브리핑, 리야드 주지사(또는 황태자) 주최 만찬
 - 5.13.(화) 오전 민방위 사령부 준공식 참석, 리야드 신공항 건설 현장 시찰, 한국근로자 대표 초청 오찬, 15:00 리야드 출발

2. 대통령 방문 일정 합의

- 주사우디대사는 1980.4.28. 사우디 왕실 의전장과 아래와 같이 일정을 확정함. 동 대사는 5.12. 행사가 많으나 한국 측 요청에 의한 것으로 불가피하다고 보고함.
 - 5.11.(일) 11:30 리야드 도착, 17:30 국왕 예방, 19:30 국왕 주최 만찬
 - 5.12.(월) 10:00 기획성 방문, 11:20 정상회담, 14:00 근로자 서훈 및 오찬, 16:00 주택단지 시찰, 17:00 King Faisal 병원 시찰, 19:30 황태자 주최 만찬
 - 5.13.(화) 11:00 리야드 출발(공식 환송행사), 11:55 다란 도착, 15:40 쿠웨이트 향발

3. 최규하 대통령의 사우디아라비아 및 쿠웨이트 공식방문 일정 설명서

- 외무부에서 선발대와 외무부와외의 연락용으로 작성
- 내용
 - 여정표
 - 사우디아라비아 공식 일정
 - 쿠웨이트 공식 일정
 - 행사별 설명서
 - 공식수행원 명단
 - 비공식수행원 명단
 - 수행기자단 명단
 - 전화번호

최규하 대통령 사우디아라비아 및 쿠웨이트 방문, 1980.5.10.-16. 전11권 (V.5 의전 II)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근동 / 의전

MF번호 2010-25 / 13 / 1-282

최규하 대통령의 1980.5.10.~16. 사우디아라비아 및 쿠웨이트 방문 관련 의전 내용임.

1. 수행원

- 주사우디대사관은 1980.4.22. 사우디 왕실 의전실 요청으로 한국 측 수행원 명단(특히 공식수행원)을 조속히 확정, 회신해 줄 것을 외무부에 요청함.
- 한국 측 수행원 명단(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 동일)
 - 공식수행원: 박동진 외무부장관, 현지 대사(장예준 주사우디대사, 김인두 주쿠웨이트대사), 양윤세 동력자원부장관, 최종완 건설부장관, 이규현 문화공보부장관, 유병현 합동참모회의 의장 등 총 14명
 - 비공식수행원: 사우디아라비아 29명, 쿠웨이트 26명
 - 수행기자단: 31명

2. 숙소와 차량

- 대통령과 공식수행원 중 일부는 사우디 측 영빈관에 투숙하기로 하였고, 여타 공식수행원들과 비공식수행원들은 힐튼호텔에서 투숙하기로 함.
- 숙소와 차량 배치

3. 항공기

- 항공기 전세 임차
 - 임차 기간: 1980.5.10.~17.
 - 임차 항공기종: B707-320C 1대
- 특별기 탑승 승무원 명단: 민경수 Captin 포함 총 18명

최규하 대통령 사우디아라비아 및 쿠웨이트 방문, 1980.5.10.-16. 전11권 (V.6 의전 III)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근동 / 의전

MF번호 2010-26 / 1 / 1-271

최규하 대통령의 1980.5.10.~16. 사우디아라비아 및 쿠웨이트 방문 관련 의전 내용임.

1. 서훈, 연회

- 외무부는 1980.5.4. 무궁화행사 관련, 사우디아라비아 및 쿠웨이트 요인 5명에 대해 행사 기간 중 서훈이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총무처에 요청함.
 - 사우디아라비아 국왕 겸 수상, 황태자 겸 제1부수상, 제2부수상 겸 방위사령관
 - 쿠웨이트 국왕, 쿠웨이트 왕세자 겸 수상
- 주쿠웨이트대사는 5.9. 무궁화행사 관련, 주재국 왕궁성으로부터 접수한 서훈 대상자는 32명으로 2대 1 비율에 따라 쿠웨이트 측이 한국 측에 수여하는 훈장도 15개(대통령 포함)에서 16개로 1개가 증가됨. 주재국 측은 추가된 동 훈장을 비공식수행원 중 제1서열이며 전 주쿠웨이트통상 대표인 노재원 기획관리실장에게 수여할 것을 희망하고 있는바, 이에 관해 지급 지시를 요청함.
- 외무부는 주사우디아라비아 및 쿠웨이트대사관으로부터 입수한 대통령 추치 오찬 참석 예정자 명단을 대통령 경호실장 직무대리에게 송부함,

2. 선물

- 외무부는 1980.4.9. 사우디와 쿠웨이트 국왕 선물로 자개 쿠란함과 동양화를 고려중이라고 하면서 쿠란함에는 보통 “경건하게 취급되어야 할 것”이라는 문안을 새겨 넣는 것이 좋다고 하는바, 이를 확인하여 함에 새길 아랍어 문안을 조사 송부할 것을 주사우디아라비아 및 쿠웨이트대사에게 지시함.
- 주사우디대사는 4.14. “경건하게 취급할 것”이라는 문안보다도 이슬람 교리를 상징하는 코란귀절이 더욱 적절하다고 하면서, 코란 문안 도안 및 규격 등 상세는 파우치편으로 보고하겠다고 회보함.
 - 또한, 주재국은 동양화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므로 선물로서 동양화 그림은 부적합하나 단 병풍은 그림과 그 제작품격이 있으므로 선물로 선택할 수 있다고 보고함.

3. 의전 일반

- 무궁화행사 관련 아래 각종 자료의 준비 여부
 - 애국가 악보, 대통령 존영, 대통령 이력서, 민요 악보, 태극기(차량기, 의장기 탁상기, 계양기) 소요 수량 및 크기, 주재국에서의 준비 여부 등
- 무궁화행사 참가자에 대한 사증발급 문제 처리, 검역, 항공기 이착륙 허가, 경호용 무기 반출입 허가, 무전기 주파수 사용허가 문제 등

최규하 대통령 사우디아라비아 및 쿠웨이트 방문, 1980.5.10.-16. 전11권 (V.7 공동성명 및 합의문서안)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근동 / 의전

MF번호 2010-26 / 2 / 1-227

최규하 대통령의 1980.5.10.~16. 사우디아라비아 및 쿠웨이트 방문 관련 공동성명 및 합의문안 내용임.

1. 사우디아라비아

- Joint Communique(Saudi Draft)
- 최규하 대한민국 대통령 각하와 할리드 사우디아라비아 국왕 폐하 간의 공동성명서(안)(국문)(1980.5.6. 작성)
 - 청와대에서 국문 용어를 일부 교정한 한국 측 문안
- Joint Communique(영문)(5.6. 작성)
- 한·사우디아라비아 합의문서(안)
 - Program for cooperation in the economic, cultural and security fields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Kingdom of Saudi Arabia

2. 쿠웨이트

- 한·쿠웨이트 공동성명서 영문(안)(1980.4.30. 작성)
- 최규하 대통령의 쿠웨이트 공식방문 종료 시 발표할 공동성명(안)(국문)(4.30. 작성)
- 대한민국과 쿠웨이트의 협력계획(안)(5월 작성)

최규하 대통령 사우디아라비아 및 쿠웨이트 방문, 1980.5.10.-16. 전11권 (V.8 결과보고)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근동 / 의전

MF번호 2010-26 / 3 / 1-209

최규하 대통령의 1980.5.10.~16. 사우디아라비아 및 쿠웨이트 방문 관련 결과 내용임.

1. 방문 의의

- 최규하 대통령의 중동 순방은 한국 대통령으로서 최초의 공식방문
- 한·사우디아라비아 및 한·쿠웨이트 간 기존 우호관계 및 실질 협력관계 강화, 향후 한국의 대중 동 외교 신장에 기여
- 장기적으로 원유의 안정적인 공급 확보에 큰 도움

210

2. 정상회담 의제

- 국제정세 및 지역정세에 관한 의견 교환
 - 국제정치정세, 중동지역·아주지역·한반도정세, 국제경제정세
- 양자관계 토의
 - 기본협력, 안보협력(사우디), 경제기술협력, 통상 관계(원유도입 포함), 문화 교류(사우디)

3. 후속조치

- 사우디아라비아
 - 한국 태권도 교관 사우디 파견
 - 한국 이슬람대학 건립부지 제공
 - 세계 이슬람연맹 한국지부 설치
 - 한·사우디 경제기술협력협정 개정에 관한 사우디 측 의사를 타진, 보고하도록 지시
 - 한국과학기술연구소와 사우디국립과학기술센터 간 공동연구 및 개발계획 촉진, 양국 유사 연구기관 및 학술연구기관 간의 협력 조장
 - 사우디 농업기술자 10명 초청훈련
- 쿠웨이트
 - 한·쿠웨이트 간 과학 및 기술연구 증진을 위한 조사단 상호 교환
 - 한국과학기술연구소와 쿠웨이트과학연구소 간 협력 도모
 - Jaber 쿠웨이트 부수상 겸 공보상 방한 초청
 - 한·쿠웨이트 양국 간 TV 교육문화프로그램(영어판) 교환
 - 팔레스타인 자녀교육 원조

최규하 대통령 사우디아라비아 및 쿠웨이트 방문, 1980.5.10.-16. 전11권 (V.9 준비자료)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근동 / 의전

MF번호 2010-26 / 4 / 1-219

최규하 대통령의 1980.5.10.~16. 사우디아라비아 및 쿠웨이트 방문 관련 준비자료 내용임.

1. 12월 행사 체크리스트
2. 무궁화계획(경호 관계 협조사항)(경호실)
3. 무궁화행사 관련 정무 관계(안)(외무부 중동국)
4. 무궁화행사 체크리스트(사우디아라비아)(외무부 중동국)
5. 무궁화행사계획 준비(정무 및 경제)(쿠웨이트)(외무부 작성)
6. 의제별 기본입장(안)(사우디아라비아)(외무부 아중동국)
7. 무궁화행사 경제 관계(쿠웨이트)(외무부)
8. 무궁화행사 경제 관계(사우디아라비아)(외무부)

최규하 대통령 사우디아라비아 및 쿠웨이트 방문, 1980.5.10.-16. 전11권 (V.10 참고자료)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근동 / 의전

MF번호 2010-26 / 5 / 1-375

최규하 대통령의 1980.5.10.~16. 사우디아라비아 및 쿠웨이트 방문 관련 자료 내용임.

1. 정상회담 의제별 설명자료(외무부)

- 국제정세 및 지역정세 검토
- 우호 협력관계 강화
- 안보협력 강화 등

212

2. Biography of His Excellency Choi Kyu Hah,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3. 무궁화행사 관련 홍보 참고자료(외무부)

- 기본 입장
- 공식방문의 배경
- 방문국과 합의 문안 발표 등

4. 방문국별 참고자료(외무부)

- 사우디아라비아
- 쿠웨이트
- 부록: 페낭

최규하 대통령 사우디아라비아 및 쿠웨이트 방문, 1980.5.10.-16. 전11권 (V.11 언론보도)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근동 / 의전

MF번호 2010-26 / 6 / 1-223

최규하 대통령의 1980.5.10.~16. 사우디아라비아 및 쿠웨이트 방문 관련 언론보도 내용임.

1. 국내 언론

- 중앙일보(1980.5.6.)
 - 최 대통령 사우디·쿠웨이트 방문, 양 국왕과 정상회담, 원유공급·경협 강화 등 논의
- Korea Herald(5.7.)
 - Choi to Begin State Visits to Saudi Arabia, Kuwait Sat.
- 경향신문(5.7.) 사설
 - 최 대통령 중동 순방의 큰 뜻
- 동아일보(5.7.)
 - 대통령의 중동외교
- 조선일보(5.7.)
 - 최규하 대통령의 중동 순방 의의, 대아랍 경협에 새 전기
- 서울신문(5.8.)
 - 최 대통령, 사우디·쿠웨이트 순방, 원유 안정공급 협의

2. 국외 언론

- 사우디아라비아 언론
 - Asharq Al-Awsat지(아랍어)(1980.5.4.)
 - Korean President will visit the Kingdom and talk with King Khaled and Crown Prince Fahd
 - Arab News(영어)(5.6.)
 - Choi, South Korean President, to visit Kingdom
 - Al Jazeera지(아랍어)(5.6.)
 - The South Korean President, to visit kingdom
- 쿠웨이트 언론
 - Arab Times(5.15.)
 - Choi reaffirms support to PLO in talks with Amir
 - Kuwait Times(5.16.)
 - S. Korea leader leaves for home satisfied

ZIAUR Rahman 방글라데시 대통령 방한 초청계획

생산연도 1978-1980

생 산 과 서남아

MF번호 2010-26 / 7 / 1-118

1978~80년 중 Ziaur Rahman 방글라데시 대통령의 방한 초청 추진 관련 내용임.

1. 1978년도

- 1978.9.5. 지아울 라만 방글라데시 대통령, 북한 방문에 앞서 주방글라데시대사에게 방한 희망 의사 표명
 - 9.7. 후크 외상, 한국으로부터 정식 초청장 접수 시 원칙적 수락 의사 표명
- 9.20. 라만 대통령, 12월 방한을 한국에 제의
- 10.31. 방글라데시 외무성 한국담당 국장, 정식 초청장 송부 요망 및 1979.3~4월 방한 실현 희망

2. 1979년도

- 1979.4.14. 박정희 대통령, 이임하는 Kamal 주한 방글라데시대사에게 라만 대통령의 방한 환영 의사 표명
- 10.11. 문기열 대사 신임장 제정 시, 라만 대통령은 1980.4월 방한 희망
 - 이후 국내사태로 추진 중단

3. 1981년도

- 1980.9.20. Kibria 방글라데시 외무차관, 주방글라데시대사에게 라만 대통령 방한 재추진 제의
- 10월 라만 대통령의 방한을 1981년 상반기에 추진하기로 원칙 재가
- 10.30. 주방글라데시대사, Kibria 외무차관에게 1981년 상반기 라만 대통령 방한 추진 전달

Romano de Lopez Portillo, Carmen 멕시코 대통령 영부인 방한 초청계획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중미

MF번호 2010-26 / 8 / 1-30

1980년 중 Carmen Romano de Lopez Portillo 멕시코 대통령 영부인의 방한 초청 추진 관련 내용임.

1. 추진 경위

- Portillo 멕시코 대통령 영부인, 1980.4.13.~21. 일본 방문
 - 멕시코 시립교향악단 인솔
- 주멕시코대사, 멕시코 대통령 영부인 및 시립교향악단 방한 초청 건의
- 1980.2.25. 멕시코 대통령 영부인 방한 초청 결정

2. 초청장 전달 및 방한 무산

- 1980.2.28. 주멕시코 대사, 멕시코 대통령 영부인 방한초청장 전달
 - 멕시코 시립교향악단 초청은 일정상 워싱턴 교향악단과 런던 교향악단 연주회와 중복됨에 따라 불가능함을 설명
- 멕시코 대통령 영부인 측은 한국 정부의 방한 초청에 사의를 표명
 - 멕시코 국내사정상 일본 방문 일정을 단축함에 따라 방한 취소를 통보

박동진 외무장관 인도 및 스리랑카 방문, 1980.3.27.-4.1. 전2권 (V.1 스리랑카)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서남아

MF번호 2010-26 / 11 / 1-270

박동진 외무부장관의 1980.3.27.~29. 스리랑카 방문 관련 내용임.

1. 방문 목적

- 하미드 스리랑카 외상 방한(1978.1.16.~18.)에 대한 공식 답방
- 유엔 비동맹회의 등 국제회의에서 한국 입장 적극 지지에 대한 사의 표명
- 한·스리랑카 간 협력 관계 강화 도모

216

2. 주요 일정

- 제1~2차 외상회담, 제이워르던 스리랑카 대통령, 프레마사다 수상 면담
- 제3차 외상회담, 방송 인터뷰

3. 한·스리랑카 외상회담(3차례)

- 남북대화, 한반도 정세, 비동맹회의에 관한 의견 교환
- 한·스리랑카 투자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서명
- 양국 간 협력증진 문제 협의, 유엔 및 비동맹에서의 협조 문제
- 북한의 대스리랑카 공관 재개설 문제, 대스리랑카 원조 제공 문제 등

4. 방문 성과

- 적극적인 대스리랑카 경제 진출 여건 조성
 - 한·스리랑카 투자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체결
 - 30만 달러 상당의 무상원조 공여 약속
- 비동맹 및 국제회의에서 지속적인 한국 입장 지지 재확인
- 북한의 스리랑카 상주공관 개설을 불허하도록 스리랑카의 협조 확보

박동진 외무장관 인도 및 스리랑카 방문, 1980.3.27.-4.1. 전2권 (V.2 인도 및 결과보고)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서남아

MF번호 2010-27 / 1 / 1-247

박동진 외무부장관의 1980.3.31.~4.1. 인도 방문 관련 내용임.

1. 방문 목적

- 바즈 파이 전 인도 외상 방한(1978.8.17.~19.)에 대한 답방
- 친소련 간디 신정부 등장에 따른 북한의 대인도 공세에 대비한 우호 협력관계 증진 도모
- 아프가니스탄사태 등 인도 및 아시아 정세 시찰 및 직접적인 의견 교환

2. 주요 일정

- 한·인도 외상회담, 무커지 상무장관, 레디 인도 대통령 면담, 라오 외상 주최 만찬
- 간디 수상 면담, 주요 언론과 기자회견 등

3. 주요인사 면담내용

- 레디 대통령: 한국정세, 한반도 문제
- 간디 수상: 서남아정세, 아프가니스탄사태에 대한 인도 입장, 인·인도 간 정기 접촉 제의
- 무커지 상무장관: 한국 경제발전, 방한 문제, 한·인도 합동경제위원회

4. 한·인도 외상회담

- 한반도 정세 설명, 국제정세 의견 교환, 비동맹 운동, 양국관계 증진 문제, 한·인도 간 정기적 협의체 설립 문제, 라오 외상 방한 초청 등 협의

5. 방문 성과

- 간디 신정부의 친소련 성향에 비추어 금후 북한의 대인도 공세 적극화 예상 시기에 방문
- 비동맹 주도국인 인도와 아프가니스탄사태 등 국제정세에 관한 직접적인 의견 교환
- 인도와 중동 등 제3국 건설 분야 합작투자 진출 기반 마련
- 한·인도 간 정기적 협의체 설립 문제에 대해 인도의 호의적 반응 확보

김동휘 외무차관 이란 방문계획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중동

MF번호 2010-27 / 2 / 1-109

1980년 중 김동휘 외무부차관의 이란 방문 추진 관련 내용임.

1. 특사 파견 결정

- 한국 정부는 1980.10.17. 최근 이란에서 북한책동 등의 영향과 한국의 대이란 우호협력 증진의 필요를 고려하여, 김동휘 외무부차관을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이란에 파견하기로 결정함.

2. 파견 목적

- 한·이란 간의 우호협력 재확인
- 양국 간 제반 협력방안 협의
- 통상 증대 모색
- 북한의 책동 및 한국 입장 설명

3. 이란 측 반응

- 주이란대사관 보고(1980.11.4.)
현재 이란·이라크 전쟁과 관련하여 당분간 특사 접수는 어려운 실정임.
- 상기 이란 측 사정을 감안하여 한국 특사 파견은 당분간 보류하기로 함.

박동진 외무장관 일본 방문, 1980.4.16.-18. 전3권 (V.1 사전준비)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일본

MF번호 2010-27 / 3 / 1-231

박동진 외무부장관의 1980.4.16.~18. 일본 방문 관련 내용임.

1. 사전 교섭

- 외무부장관은 1980.2.14. 본인이 3월 하순 및 4월 초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바, 동 시기에 일본에서 한·일 외상회담을 검토 중이라고 하면서, 그 경우 고려될 수 있는 일정은 3.23.(일) 서울 출발, 도쿄 도착, 3.24.(월) 외상회담 및 기타 일정, 3.25.(화) 도쿄 출발이 될 것인바, 이에 대해 일본 측과 비공식 외상회담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고 결과 보고를 주일본대사관에 지시함.
- 기우치 일본 외무성 아시아국장은 3.14. 오재희 주일본대사관 공사를 초치, 일본 국회 사정상 당초 약속된 3.25. 및 3.26.은 외상회담 개최가 불가능하다며 금번 해외여행을 마친 후 귀로에 일본을 방문해 주면 일정을 다시 잡겠다고 함.
- 한국 측은 한·일 외상회담 일정 관련, 1980.4.16.~18.을 제시하였는바, 일본 측 동의로 일본 방문 일정이 최종 확정됨.

2. 행사 준비(안)

- 장관 및 수행원용 숙소 문제
- 자민당 중진을 위한 오찬계획
- 전 외상에 대한 화분 전달
- 한·일 의원연맹, 친선협회, 의원안보협의회 및 기타 친한 인사에 대한 관심 표명
- 한국문화원 또는 코트라 방문

3. 외상회담 진행계획

- 2회 개최
- 외무성 대신점견실에서 별도 회담 테이블을 설치하여 시행
- 양측에서 9명까지 참석 가능

박동진 외무장관 일본 방문, 1980.4.16.-18. 전3권 (V.2 결과보고)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일본

MF번호 2010-27 / 4 / 1-1168

박동진 외무부장관의 1980.4.16.~18. 일본 방문 결과 내용임.

1. 방문 목적

- 일본 정부 초청에 의한 공식방문

2. 수행원

- 박쌍용 외무부 정무차관보, 노재원 통상국장, 김태지 아주국장
- 비공식수행원 5명

3. 주요 일정

- 주일본대사 주최 비공식만찬
- 한·일 외상회담(2회)
- 오히라 수상 예방
- 오키다 외상 주최 공식만찬

4. 한·일 외상회담

- 제1차 회담(1980.4.17. 10:40~13:10)
 - 한반도정세에 대한 의견 교환
 - 양국 간 주요 현안문제 협의
 - 제11차 한·일 정기각료회의
 - 한·일 경제 관계
 - 재일한국인 복지증진 등
- 제2차 회담(1980.4.17. 18:15~19:00)
 - 국제정세에 대한 의견 교환

5. 언론보도

- 서울신문(4.17.)
 - 정기각료회의 9월 도교서...한·일 외상회담 국제정세 전반 논의
- 조선일보(4.17.)
 - 일에 북한 접촉 신중 요망...오늘 한·일 외상회담서 군사물자 수출 안하기로

박동진 외무장관 모로코 및 튀니지 방문계획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마그레브

MF번호 2010-27 / 6 / 1-118

1980년 중 박동진 외무부장관의 모로코 및 튀니지 방문 추진 관련 내용임.

1. 추진 배경

- 유엔총회 참석 계기 중동 국가와의 협력 관계 강화 촉진

2. 방문국

- 튀니지: 1980.9.11.~13.
- 모로코: 1980.9.15.~18.

3. 방문계획 취소

- 1980.8월 초 박동진 장관의 경질로 모로코 및 튀니지 방문이 취소됨.
- 9.10. 모로코 및 튀니지 외무장관에게 박 장관 명의 이임 서한 발송

박동진 외무장관 스페인 및 영국 방문, 1980.4.6.-11.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서구

MF번호 2010-27 / 7 / 1-233

박동진 외무부장관의 1980.4.6.~11. 스페인 및 영국 방문 관련 내용임.

1. 스페인(1980.4.6.~9.): 비공식방문

- 방문 배경
 - 1980년도 구주지역 공관장회의 개최
- 주요 일정
 - 1980년 구주지역 공관장회의 주재
 - Oreja 스페인 외무장관 예방
 - 양국 간 양자관계 협의

2. 영국(1980.4.10.~11.)

- 수행원
 - 박쌍용 외무부 정무차관보 등
- 주요 일정
 - 외무장관회담
 - Carrington 영국 외무장관 주최 오찬
- 주요 협의사항
 - 한반도와 국제정세
 -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

노신영 외무장관 아프리카 순방, 1980.11.15.-12.7. 전3권 (V.1 사전준비)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서부 / 중부아프리카

MF번호 2010-27 / 9 / 1-341

노신영 외무부장관의 1980.11.15.~12.7. 아프리카 순방 관련 내용임.

1. 파견 목적

- 비동맹 중립국가와의 실질 협력관계 심화 및 비동맹 외상회의 대비
- 미수교국에 대한 수교 교섭
- 자원외교 및 통상 증대 기반 조성

2. 사절단별 파견지역

- 아시아·중동반, 미주반(1반, 2반), 아프리카반(1반, 2반)

노신영 외무장관 아프리카 순방, 1980.11.15.-12.7. 전3권 (V.2 결과보고)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서부 / 중부아프리카

MF번호 2010-27 / 10 / 1-214

노신영 외무부장관의 1980.11.15.~12.7. 아프리카 순방 결과 내용임.

1. 방문단

- 대통령 특사: 노신영 외무부장관
- 수행원: 노영찬 주세네갈대사 등

2. 순방대상국 방문 일정

- 가봉: 11.17.~20.
- 코트디부아르: 11.20.~23.
- 카메룬: 11.23.~26.
- 세네갈: 11.27.~29.
- 가나: 11.29.~12.1.
- 감비아: 12.2.~3.

3. 방문 결과(종합 평가)

- 대통령 취임 후 3개월 만에 서부아프리카지역 특사를 파견함으로써 한국이 정치적, 사회적 안정을 되찾고, 민주복지국가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시킴.
- 한국은 아프리카에 대한 북한책동에 대응하기 위해 사절단 파견 및 초청외교를 강화하고, 아프리카 국가들과 실질 협력관계 강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비동맹운동에서 한국문제에 대한 한국 입장 지지 기반을 확충하고, 뉴델리회의(1981.2월)에서 가봉, 세네갈, 감비아 등 지지 발언 국가를 확보함.
- 아프리카 국가는 자원이 풍부하고 동 지역에서의 한국 수출이 대만(구 자유중국)에 크게 뒤지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 자원 확보 및 한국의 수출시장 다변화라는 견지에서 경제 진출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노신영 외무장관 아프리카 순방, 1980.11.15.-12.7. 전3권 (V.3 자료)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서부 / 중부아프리카

MF번호 2010-27 / 11 / 1-212

1. 장관 말씀요지(안)
2. 가봉 외상 만찬 시 답사(1980.11.19.)
3. 카메룬 외상을 위한 만찬사(1980.11월)
4. 기자회견 예상 질문 및 답사(1980.11.29.)
 - 나이지리아
5. 기자회견 예상 질문 및 답사
 - 세네갈
6. 대통령 특사 노신영 외무부장관 아프리카 순방 시 Talking Paper(1980.11월)(외무부 아프리카국)
7. Draft Talking Papers
8. 노신영 대통령 특사 순방국별 주요 행사

Peacock, Andrew S. 호주 외무장관 방한 초청계획

생산연도 1979-1980

생 산 과 동남아

MF번호 2010-27 / 12 / 1-128

1979~80년 중 Andrew S. Peacock 호주 외상의 방한 초청 추진 관련 내용임.

1. 초청 경위

- Peacock 호주 외상은 1979.12월 아세안 순방 전 또는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회의 후인 1980.3월 중 공식방한을 희망함.
- 상기 관련, 한국 정부는 동 외상의 방한을 환영하며, 방한 시기는 잠정적으로 1980.3.6.~8. (2박3일)로 함이 좋을 것으로 본다는 한국 측 입장을 호주 측에 통보함.
 - 아울러 동 외상 방한을 공식방한으로 간주하며, 동건 확정 후 초청장을 송부할 예정이라고 설명
- Peacock 외상은 6월 도쿄에서 개최될 호주·일본 정기 각료회담 참석 직후인 1980.6.11.~14. 방한을 희망한다는 입장을 전달해옴.
 - 한국 측은 이의 없음을 호주 측에 전달
- 한국 측은 3.17. 동 외상 방한초청장을 주호주대사관에 송부하여 Peacock 외상 측에 전달함.

2. 방한 준비 관련 의전사항

- 방한일시
 - 김포 도착: 1980.6.11. 11:55
 - 김포 출발: 1980.6.13. 14:30
- 동 외상은 1980.5.28. 호주 출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영국, 프랑스, 일본 방문을 거쳐 방한 예정
- 수행원: 3명

3. 회담 의제(호주 측 희망)

- 양국 간 경제·통상 관계는 Anthony 호주 부수상과 한국 정부 간에 논의된 바 있으므로 가능한 한 거론하지 않을 예정이며, Peacock 외상은 최근 국제정세, 지역 내 정세, 태평양공동체 구상 등에 대한 일반적 의견 교환을 희망함.

4. 방한 취소

- 호주 외무성은 1980.5.21. 한국 국내사정을 고려하여 동 외상의 방한 취소를 주호주대사관에 통보함.

Forde, Henry de B. 바베이도스 외상 방한 초청계획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중미

MF번호 2010-27 / 13 / 1-38

1980년 중 Henry de B. Forde 바베이도스 외상의 방한 초청 추진 관련 내용임.

1. 초청 경위

- 바베이도스 외무성 차관은 1980.1.31. 주자메이카대사에게 Adams 바베이도스 수상 및 Forde 외상이 5월 마지막 주에서 6월 첫 주까지 중국(구 중공) 방문 예정임을 통보하고, 중국 방문 계기 3박 또는 4박 예정으로 방한 희망의사를 전달해옴.
- 외무부는 바베이도스 수상 및 외상의 방한 초청을 결정함.

2. 경비 문제

- 주자메이카대사는 1980.4.1. 바베이도스 정부는 관례상 정식 초청의 경우, 체재비 외 여비도 초청국에서 받아오고 있다고 하면서 초청국의 하나인 중국 측과 귀로에 한국 방문 관계로 여비분할 부담 교섭 등이 미묘하였는바, 한국 측에서 동 수상의 잠정 여정인 브리짓타운-런던-파리-베이징-홍콩-서울-호놀룰루-L.A.-뉴욕-브리짓타운 경로 중 귀로인 홍콩으로부터의 여비를 부담하는 경우 중국 측과 재협의, 한국 방문 여부를 결정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달해왔다고 통보함.
- 외무부는 4.23. 양국관계에 비추어볼 때 한국 측이 항공료까지 지불하면서 바베이도스 요인을 초청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전달함.
- 바베이도스 정부는 5.2. 귀로 항공료 전액 지불이 어렵다면 외상 일행이 서울을 방문함으로써 발생하는 항공료 추가부담금을 한국 측이 부담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함.
- Adams 수상과 Ince 정부대변인은 사정상 중국 방문 후 즉시 귀국해야하므로 방한이 불가능
- 외무부는 외상 일행의 방한으로 발생하는 항공료 추가차액을 한국 측이 부담하는데 원칙적으로 동의함.

3. 방한 일정

- 지방 및 산업 시찰
- 문화협정 및 경제기술협력협정 체결

4. 방한 연기

- 외무부는 1980.5.22. 국내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주요 외빈의 방한을 중지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동 외상에게 불가피한 사정을 설명하고, 추후 양측이 적당한 기회를 이용하여 방한해 주기를 바란다는 의사를 전달함.

Jimenez Hijo, Ramon E. 도미니카공화국 외무장관 방한 초청계획

생산연도 1975-1980

생 산 과 중미

MF번호 2010-27 / 14 / 1-28

Ramon E. Jimenez Hijo 도미니카공화국 외무장관의 방한 초청 추진 관련 내용임.

1. 추진 경위

- 1975.8.15. 주베네수엘라대사의 유엔 한국문제 교섭차 도미니카 출장 시 Jimenez 도미니카 외상이 1976.4월경 방한 의사를 표명함.
- 1979.4.26. Jimenez 외상은 한국 명예총영사 면담 시 6월경 부인 동반 방한 가능성을 시사함.
- 1979.6.9. 외무부는 동 외상 방한을 1975년 이래 추진하여 왔음을 감안, 7월 중 방한 초청하기로 함.
- 외상 부처 항공임은 초청국이 체재비만 부담하고 항공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 관례이나, 항공 임부담을 요망한다면 검토하겠으니 도미니카 측과 협의하도록 주베네수엘라대사관에 지시

2. 방한 초청 고려사항

- 도미니카 측은 1978년 선거로 야당이 승리하여 집권, 중도 좌경노선을 지향하고 있으며, 북한이 도미니카에 친선협회를 설립하고 여당 사무총장을 초청하는 등 북한과 도미니카 간 관계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므로 동 외상 부처를 방한 초청하는 것이 시기적절함.
- 동 외상 방한 기회에 양국 간 무역협정 및 과학기술협력협정을 체결함.

3. 방한 취소

- 주베네수엘라 도미니카대사관은 1979.8.9. 한국 정부의 방한 초청과 관련, Jimenes 외상은 니카라과 문제를 포함한 주요 국내사정으로 지난 7월 중 방한할 수 없었던 점을 유감으로 생각하며, 동 방한을 1980.1월에 실현되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을 주베네수엘라대사관에 통보해 옴.
- 동 외상은 1980.2월 사임으로 방한 취소

Florencio MAYE Ela Mangué 적도기네 외무장관 겸 군사최고평의회 제1부의장 방한, 1980.8.18.-22. 전2권 (V.1 기본문서)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중부아프리카 / 의전1

MF번호 2010-28 / 1 / 1-246

Florencio Maye 적도기네 외무장관 겸 군사최고평의회 제1부의장의 1980.8.18.~22. 방한
관련 내용임.

1. 방문단

- Florencio MAYE Ela Mangué 적도기네 외무장관 겸 군사최고평의회 제1부의장 및 수행원 3명

2. 방한 경위

- 1969년 이래 적도기네와 긴밀한 우호관계를 유지하여온 북한을 외교적으로 제압하기 위해 1980.1월 주카메룬대사가 Florencio Maye 외상을 방한 초청할 것을 건의
- 1980.1.22. 외무부는 주카메룬대사가 적도기네 주재 겸임대사로서 신임장 제정 계기 동 외상을 방한 초청하도록 외무부장관의 초청의사를 구두로 전달하기로 결정

3. 주요 일정

-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서리 예방 및 서훈
- 한·적도기네 외상회담
- 농수산부장관 및 경제기획원차관(장관 대리) 예방
- 공동성명 발표
- 현대자동차, 현대조선, 한국종합전시장, 유한양행 등 산업 시찰

4. 방한 성과

- 적도기네 신정부의 친한 성향 확보 계기 마련
- 한국 평화통일정책에 대한 적도기네 측 지지 표명
- 한국의 대아프리카정책 이해 제고
- 양국 간 우호 및 경제기술협력 관계 증진

Florencio MAYE Ela Mangué 적도기네 외무장관 겸 군사최고평의회 제1부의장 방한, 1980.8.18.-22. 전2권 (V.2 의전 및 자료)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중부아프리카 / 의전1

MF번호 2010-28 / 2 / 1-268

Florencio Maye 적도기네 외무장관 겸 군사최고평의회 제1부의장의 1980.8.18.~22. 방한
관련 내용임.

1. 의전

- 방한 일정 및 영접계획(안)
- 적도기네 군사최고평의회 제1부의장 겸 외상 방한 일정
- 서훈 추천
- 경주 방문 협조 요청
- 대통령 예방 및 서훈 건
- 적도기네 외상 겸 군사최고평의회 제1부의장 공식방한 영접 준비사항
 - 각 부처별 소관 협조사항

2. 연설문

- 박동진 외무부장관 만찬사
- 외무부장관 주최 만찬에서의 적도기네 외상 답사
- 적도기네 외상 면담자료
- 한·적도기네 외상회담자료
- 적도기네 외상 접견자료

Quam, S. E. 가나 외무차관 방한, 1980.10.25.-30.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서부아프리카

MF번호 2010-28 / 3 / 1-98

S. E. Quam 가나 외무차관의 1980.10.25.~30. 방한 관련 내용임.

1. 방한 경위

- 1980.9.9. 주가나대사는 1977년 한·가나 간 외교관계 수립 후 양국관계가 일진함에 비추어 오는 10.1.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 향발 예정인 Chinnebuah 외상 및 Quarm 사무차관이 총회 후 귀로에 한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방한 초청할 것을 건의
- 1980.9.18. 외무부는 주가나대사의 건의대로 외상 및 사무차관의 방한을 적극 추진하고 구체적 방한 희망 일자를 문의 보고하라고 지시
- 1980.10.11. 가나 외무성에 의하면 외상은 한국 측 초청에 감사하나 선약을 이유로 이번에 방한이 어렵지만, 사무차관의 경우에는 총회 참석 후 10월 말경 4~5일간 방한이 가능하다고 전달함.

2. 방문단

- S. E. Quarm 가나 외무차관 및 Wood 주한 가나대사(도쿄 상주)

3. 주요 일정

- 외무부차관 및 외무부장관 예방
- 외무부차관 주최 만찬
- 상공부차관, 국무총리 예방
- 포항제철, 현대자동차, 현대조선 등 산업 시찰

4. 협의사항

- 주한 가나 상주공관 개설요청
- 유엔 및 비동맹 등 국제회의에서 한국 입장 지지 요청
- 가나조업 한국 원양어선단(12척) 활동 협조

Abdul Aziz HUSSEIN 쿠웨이트 국무원장관 겸 외무장관 직무대리 방한 초청계획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근동

MF번호 2010-28 / 4 / 1-30

1980년 중 Abdul Aziz Hussein 쿠웨이트 국무원장관 겸 외무장관 직무대리의 방한 초청 추진 관련 내용임.

1. 초청 경위

- 1980.5.13.~15. 최규하 대통령의 쿠웨이트 방문 시 외무부장관은 후세인 국무원장관 겸 외무장관 직무대리를 구두로 방한 초청
- 1980.5.19. 주쿠웨이트대사는 후세인 장관 면담 후 동 장관의 방한 문제 협의
- 후세인 장관, 1980.6.16.~20. 방한 희망의사 표명
- 1980.5.28. 외무부장관 명의 방한초청장 송부

2. 방한 연기

- 1980.6.2. 주쿠웨이트대사가 방한초청장을 전달하기 위해 쿠웨이트 외무성 의전장을 접촉 시 동 의전장은 후세인 장관이 사정에 의해 금번 해외여행은 당초 계획대로 일본만 방문하고, 한국 방문은 다음 기회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통보함.
- 아울러 후세인 장관은 외무부장관의 방한초청장을 Standing Invitation으로 생각하고 꼭 방한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부연함.

Fathulla JAMEEL 몰디브 외상 방한, 1980.5.5.-8.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서남아 / 의전1

MF번호 2010-28 / 5 / 1-233

Fathulla Jameel 몰디브 외상의 1980.5.5.~8. 방한 관련 내용임.

1. 방한 경위

- 박동진 외무부장관 초청

2. 주요 일정

- 대통령, 국무총리 예방
- 외무부장관, 농수산부장관 예방
- 부산 산업시설(대동조선소) 및 새마을 시찰

3. 방한 성과

- 몰디브 외상으로서 최초 공식방한으로 금번 방한을 통해 양국 간 우호관계 강화 및 국제회의에서 양국 간 협조 계기 마련
- 한국의 평화통일정책에 대한 지지와 이해를 확보함으로써 유엔 및 비동맹회의 등 각종 국제회의에서 한국 입장 지지 재확인
- 비동맹 회원국이자 남북한 동시 수교국인 몰디브와의 관계 심화를 통해 한국의 비동맹 국가 접근 시 동국의 적극적인 협조 기대
- 몰디브 측은 양국 간 경제 관계인사의 활발한 교류와 동국 어업 분야 및 개발계획에 대한 한국의 참여에 관심을 표시, 향후 양국 간 경제협력 관계 증진에 기여

Tupouto'a 통가 외상 [겸 국방장관] 방한, 1980.12.4.-7.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대양주 / 의전

MF번호 2010-28 / 6 / 1-296

Tupouto'a 통가 외상 겸 국방장관의 1980.12.4.~7. 방한 관련 내용임.

1. 방한 경위

- 통가 외무성은 1980.10.24. 주뉴질랜드대사 앞 전문으로 Tupouto'a 외상의 아주지역 순방계획을 알리면서 방한 가능성을 타진해온바, 한국 측은 준공식방문의 예우(체재비 한국 측 부담)로서 영접할 뜻을 전달한 바 있음.

2. 방한 일정

- 대통령 예방 및 서훈(수교훈장 광화장)
- 국무총리 주최 오찬
- 외무부장관 대리 예방, 국방부장관 주최 만찬
- 육군사관학교 시찰 등

3. 한국 측 관심사항

- 우호관계 확인
 - 통가 정부는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의 평화통일정책 지지
- 국제기구에서의 협조
- 1981년도 대통가 경험 고려사항
 - 연수생 초청: 어업 분야 등 1~2명 초청 가능
 - 무상원조: 동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소규모 무상원조 제공 가능
- 어업협정 체결 제의

Gilmour, Ian 영국 국새상서 겸 외상 대리 방한, 1980.7.1.-5.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서구

MF번호 2010-28 / 7 / 1-192

Ian Gilmour 영국 국새상서 겸 외상 대리의 1980.7.1.~5. 방한 관련 내용임.

1. 방한 경위

- 1980.4월 주영국대사, Ian Gilmour 영국 국새상서 겸 외상 대리의 방한 제의 수락 건의
- 영국 측, 동인의 방한 계기 제2차 한·영국 정책협의회 개최 희망
 - 한·영국 정책협의회는 1980.10.8.~11. 별도 개최

2. 방한 목적

- 한국 정부 고위층과의 정무 협의
- 재한 영국 실업인 접촉을 통한 한국 실정 파악

3. 주요 일정

- 최규하 대통령 및 국무총리 서리 예방
- 박동진 외무부장관 면담 및 외무부장관 주최 만찬 참석
- 주한 유엔군사령부, 한·미 연합사, 판문점, 포항제철, 현대조선소 방문

4. 방한 결과

- 국내·외 정세, 남북관계 및 한반도 정세 협의
- 원자력발전소, 지하철 건설에 영국회사 참여 문제 등 협의

윤석헌 특사(주유엔대사) 에콰도르 방문, 1980.1.23.-26.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남미

MF번호 2010-28 / 8 / 1-92

윤석헌 대통령 특사의 1980.1.23.~26. 에콰도르 방문 관련 내용임.

1. 방문 경위

- 1979.4.29.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좌익 성향의 Rodos 대통령 당선
- 에콰도르 신정부는 쿠바와 북교, 중국(구 중공)과 수교 등 공산권 및 제3세계와의 관계 개선 추구
- 한·에콰도르 간 협력 강화 및 북한과의 수교 저지 교섭

236

2. 방문 결과(윤석헌 특사 활동)

- Rodos 대통령 면담
 - 한국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양국 간 우호 및 경험 관계 협의
 - 북한에 대한 한국 입장 및 평화통일정책을 설명하고 적극적 지지 요청
 - 동 대통령은 특사 파견에 대한 사의 표명, 양국 간 우호 협력관계 추진 및 한국의 평화통일정책 지지 표명
- Pareja 외상 면담
 - 한국 경제협력조사단 파견 및 경운기 100대 공여, 동 외상의 방한 초청
 - 북한에 대한 한국 입장을 설명하고, 대북한 수교 재고 요청
 - 동 외상은 한국의 평화통일정책 지지 표명, 주한 에콰도르대사관의 연내 개설 약속

3. 특사 건의사항

- 양국 협력관계 증진을 위해 연내 경제협력조사단 파견
- 에콰도르 농촌개발을 위하여 경운기 100대 기증
- 경제기술협력협정 및 어업협정 체결 적극 추진

특별사절단 아프리카지역 순방, 1980.11.17.-12.13. 전2권 (V.1 사전준비)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남부 / 동부아프리카

MF번호 2010-28 / 9 / 1-254

특별사절단의 1980.11.17.~12.13. 아프리카지역 순방 관련 사전준비 내용임.

1. 파견 경위

- 10·26 사태 후 북한은 한국 수교국에 대해 적극적인 접근 강화
 - 북한의 책동에 대한 대응과 미수교국에 대한 수교 교섭, 비동맹회의 대비 필요
- 1980.10.23. 지역별로 5개의 특별사절단 파견 결정

2. 파견 목적

- 방문국과의 우호 협력관계 재확인 및 강화
- 신정부 시책 및 한반도 문제에 대한 한국 입장 설명 및 이해 증진
- 각급 비동맹회의에서 한국 입장 지지 획득

3. 특별사절단 구성

- 특사: 천명기 보건사회부장관
- 수행원: 정도순 주케냐대사, 장명관 외무부 아프리카국장 등 7인

4. 주요 일정 교섭

- 주요인사 면담
 - 모리셔스(11.20.~22.): Ramgoolam 수상, Walter 외상, Ringadoo 재무상 등
 - 에스와티니(구 스와질랜드, 11.24.~25.): Dlamini 수상, Nsibanze 부수상, Mncina 외무국 무상 등
 - 보츠와나(11.25.~26.): Seretse 부통령, Kwelagobe 외상 대리
 - 레소토(11.27.~29.): Mosheshes 2세 국왕, Jonathan 수상, Malebo 외상 대리 등
 - 말라위(12.1.~4.): Banda 대통령, Phiri 보건상, Phiri 외무차관 대리 등
 - 케냐(12.4.~6.): Moi 대통령, Ouko 외상, Mati 국회의장, Magugu 보건상 등

특별사절단 아프리카지역 순방, 1980.11.17.-12.13. 전2권 (V.2 결과보고)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남부 / 동부아프리카

MF번호 2010-28 / 10 / 1-330

특별사절단의 1980.11.17.~12.13. 아프리카지역 순방 관련 결과 내용임.

1. 아프리카 동남부 순방 활동 및 결과

- 모리셔스(11.20.~22.): 수상, 외상, 재무상, 수산상 등 면담
 - 유엔 및 비동맹에서 한국 입장 지지, 양국 간 협력 증진 희망, 김대중에 대한 감형 희망
- 에스와티니(구 스와질랜드)(11.24.~25.): 수상, 부수상, 외무국무상,상공상 면담
 - 북한의 수교 책동 저지 약속, 한국의 경제기술협력 제공 희망, 양국 간 석탄개발 희망
- 보츠와나(11.25.~26.): 부통령, 외상 대리 면담
 - 비동맹 외상회의에서 한국 입장 지지, 차관 및 군사 분야 원조 요망
- 레소토(11.27.~29.): 국왕, 수상, 외상 대리 등 면담
 - 비동맹회의에서 한국 입장 지지, 한국기업 진출 희망
- 말라위(12.1.~4.): 대통령, 보건상, 외무차관 대리 등 면담
 - 국제무대에서 한국 입장 계속 지지, 한국 원조에 대한 사의 표명
- 케냐(12.4.~6.): 대통령, 외상, 국회의장, 보건상 등 면담
 - 남북문제에 대한 한국 입장 지지, 한국의 경제기술협력 증진 희망

2. 순방국 입장 종합 평가

- 한국의 일시적 난국 극복 및 안정을 축하
- 한반도 문제에 대한 한국 입장 지지 표명
- 한국의 적극적인 협력 제공 희망

3. 특별사절단의 종합 건의

- 남부아프리카지역 거점 상주공관 설치
- 유력인사 및 친한 인사 방한 초청 강화
- 원조, 파견 경비 등 외교 예산 대폭 확대
- 무상원조 계속 공여, 기술지원 강화, 태권도 사범 파견 확대
- 한국기업의 진출 확대

특별사절단 서남아 및 중동 순방, 1980.11.14.-12.4. 전2권 (V.1 사전준비)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서남아 / 중동총괄

MF번호 2010-28 / 11 / 1-313

특별사절단의 1980.11.14.~12.4. 서남아 및 중동 순방 관련 사전준비 내용임.

1. 특별사절단 파견 개요

- 1980.10.23. 지역별로 5개의 특별사절단 파견 결정
- 파견 목적
 - 방문국과의 우호 협력관계 재확인 및 강화
 - 신정부 시책 및 한반도 문제에 대한 한국 입장 설명 및 이해 증진
 - 각급 비동맹회의에서 한국 입장 지지 획득

2. 서남아 및 중동지역 특별사절단 파견

- 특사: 최광수 무임소장관
 - 수행원: 김태지 외무부 아국국장 등 5인
- 기간: 1980.11.14.~12.9.
- 방문국
 - 서남아지역: 스리랑카, 인도, 파키스탄
 - 중동지역: 이집트, 리비아, 수단
 - 경유지: 싱가포르, 태국

3. 주요 일정 교섭

- 주요인사 면담
 - 스리랑카(11.16.~19.): Jalewardene 대통령, Premadasa 수상, Hameed 외상
 - 인도(11.20.~22.): Reddy 대통령, Rao 외상, Gandhi 수상
 - 파키스탄(11.22.~26.): Zia ul-Haq 대통령, 샤나와즈 외상 서리, 이삭한 재무장관
 - 이집트(11.26.~28.): Taleb 국회의장, Kamal Hassan Ali 부수상 겸 외상
 - 수단(11.28.~30.): Nimeiri 대통령, Osman 외무차관
 - 리비아(12.1.~4.): Abdul Ati Obeiya 총인민회의 의장(국가원수), Issa Baba 외상 대리

특별사절단 서남아 및 중동 순방, 1980.11.14.-12.4. 전2권 (V.2 결과보고)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서남아 / 중동총괄

MF번호 2010-29 / 1 / 1-268

특별사절단의 1980.11.14.~12.4. 서남아 및 중동 순방 결과 내용임.

1. 방문 활동 및 결과

- 스리랑카(11.16.~19.): 대통령, 수상, 외상 면담
 - 뉴델리 비동맹 외상회의에 대해 적극적 지지 확보
- 인도(11.20.~22.): 대통령, 수상, 외상 면담
 - 뉴델리 외상회의 대비 인도의 호의적 반응 확보
 - 대북한 우위외교 기반 공고화 및 인도와의 관계 중시 태도 확인
- 파키스탄(11.22.~26.): 대통령, 외상 서리, 재무장관 면담
 - 지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한·파키스탄 간 조기 수교 협약 획득
 - 아프간 난민 구호의사 표명으로 양국 이해 심화
- 이집트(11.26.~28.): 국회의장, 여당 부총재, 부수상 겸 외상 면담
 - 한·이집트 간 수교 문제에 대해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는 반응
- 수단(11.28.~30.): 대통령, 외무차관 등 면담
 - 니메이리 대통령 방한 초청, 비동맹회의에서 지지 요청
- 리비아(12.1.~4.): 총인민회의 의장, 외상 대리 등 면담
 - 한반도 정세 설명, 양국 간 수교 희망 표명, 한국기업의 진출 확대 기대

2. 순방 평가

- 한국 신정부 정책에 대한 각국의 인식 제고
- 방문국과 협력관계 강화 기반 구축
- 미수교국에 대한 수교 촉진(특히, 파키스탄 및 리비아)
- 비동맹 외상회의 대비 지지 교섭

3. 관련 자료

- 아·중동지역 순방 결과보고서
- 주요 언론보도 내용
- 방문국별 자료

특별사절단 중미 순방, 1980.11.26.-12.16. 전2권 (V.1 사전준비)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중미

MF번호 2010-29 / 2 / 1-324

특별사절단의 1980.11.26.~12.16. 중미 순방 관련 사전준비 내용임.

1. 특별사절단 파견 개요

- 1980.10.23. 지역별로 5개의 특별사절단 파견 결정
- 파견 목적
 - 방문국과의 우호 협력관계 재확인 및 강화
 - 신정부 시책 및 한반도 문제에 대한 한국 입장 설명 및 이해 증진
 - 각급 비동맹회의에서 한국 입장 지지 획득

2. 카리브지역 특별사절단 파견

- 특사: 김용휴 총무처장관
 - 수행원: 이계철 외무부 미주국장 등 5인
- 방문 기간: 1980.11.22.~12.18.
- 방문국: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바베이도스, 수리남, 자메이카 5개국

3. 주요 일정 교섭

- 주요인사 면담
 - 세인트루시아(11.26.~28.): Louisy 수상, Williams 총독 서리, Rambally 국회의장, Josie 농수산상
 -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11.28.~12.2.): Cato 수상, Tannis 부수상 겸 외상, Gun-Munroe 총독, Beache 통상농업상
 - 바베이도스(12.2.~5.): Ward 총독, Cato 상원의장, Hinds 하원의장, Adams 수상, Forde 외상
 - 수리남(12.6.~10.): Chin A Sen 대통령, Haakmat 외상, Adhin 개발상, Dijk 농수산상
 - 자메이카(12.11.~14.): Glasspole 총독, Seaga 수상, Gallimore 외무담당 국무상, Broderick 농업상

특별사절단 중미 순방, 1980.11.26.-12.16. 전2권 (V.2 결과보고)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중미

MF번호 2010-29 / 3 / 1-336

특별사절단의 1980.11.26.~12.16. 중미 순방 관련 결과 내용임.

1. 카리브지역 특사 방문 활동 및 결과

- 세인트루시아(11.26.~28.): 수상, 총독 서리, 국회의장, 농수산상 등 면담
 -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 해결 원칙에 찬동, 농업 분야의 기술공여 기대
-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11.28.~12.2.): 총독, 수상, 부수상 겸 외상, 통상 농업상 등 면담
 - 북한과 불수교 방침 약속, 수상의 방한 초청 수락, 한국과의 기술공여 및 합작 희망
- 바베이도스(12.2.~5.): 총독, 상원의장, 하원의장, 수상, 외상 면담
 - 한반도 문제 해결에서 한국 입장 지지, 비동맹회의에서 한국 입장 지지, 김대중 불처형 희망
- 수리남(12.6.~10.): 대통령, 외상, 개발상, 농수산상 등 면담
 - 공동성명서 발표, 한반도 문제 및 비동맹회의에서 한국 입장 지지
- 자메이카(12.11.~14.): 총독, 수상, 외무담당 국무상, 농업상 등 면담
 - 한반도 문제 및 비동맹회의에서 한국 입장 이해, 농기구 지원 문제 검토

2. 평가 및 성과

- 방문 평가
 - 한국 신정부의 공세외교 노력 천명
 - 대카리브지역 외교 적극화를 위한 획기적 계기
- 방문 성과
 - 각 방문국과의 우호 협력관계 증진 및 실질 협력관계 강화
 - 한반도 문제 및 한국 국내정세에 대한 인식 제고
 - 유엔 및 비동맹회의에서 한국 입장에 대한 이해와 지지 확보
 - 북한의 침투 저지 기반 구축 및 공고화

3. 관련 자료

- 대통령 특별사절단 출장 결과보고서
- 카리브지역 순방 결과보고서

특별사절단 중남미지역 순방, 1980.11.23.-12.16. 전4권 (V.1 사전준비)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남미

MF번호 2010-29 / 4 / 1-118

특별사절단의 1980.11.23.~12.16. 중남미지역 순방 관련 사전준비 내용임.

1. 특별사절단 파견 개요

- 1980.10.23. 지역별로 5개의 특별사절단 파견 결정
- 파견 목적
 - 방문국과의 우호 협력관계 재확인 및 강화
 - 신정부 시책 및 한반도 문제에 대한 한국 입장 설명 및 이해 증진
 - 각급 비동맹회의에서 한국 입장 지지 획득

2. 중남미지역 특별사절단 파견

- 사절단 구성
 - 특사: 박동진 전 외무부장관
 - 단원: 현지 대사 등 5인
- 방문 기간: 1980.11.22.~12.13.
- 방문국: 코스타리카, 니카라과, 파나마, 페루, 아르헨티나, 브라질

3. 정부 훈령

- 전두환 대통령 인사 및 친서 전달
- 방문국과의 기존 우호 협력관계 확인 및 양국 공동관심사와 현안문제 협의
- 한반도 문제에 대한 정부 입장 설명, 한국 국내정세에 대한 설명
- 각급 비동맹회의에서 한국문제 거론 반대 입장 표명

특별사절단 중남미지역 순방, 1980.11.23.-12.16. 전4권 (V.2 국별교섭)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남미

MF번호 2010-29 / 5 / 1-203

특별사절단의 1980.11.23.~12.16. 중남미지역 순방 관련 관련국별 교섭 내용임.

1. 코스타리카(11.22.~26.)

- Carazo 대통령, Aitman 제1 부통령, Grillo 국회의장, Cordero 외상 서리 등 면담

2. 니카라과(11.26.~29.)

- Cruz 국가재건평의회 위원, Suarez 외상 서리, Cuenca 대외무역상 등 면담

244

3. 파나마(11.29.~12.3.)

- Royo 대통령, Ozores 외상, De Leon 국회의장 등 면담

4. 페루(12.3.~7.)

- Belaunde 대통령, Ulloa 수상, Arias 외상, Pestana 기획처 장관 등 면담

5. 아르헨티나(12.7.~10.)

- Videla 대통령, Cura 외상 서리, Martinez 경제상 등 면담

6. 브라질(12.10.~13.)

- Figueiredo 대통령, Guerreiro 외상 등 면담

특별사절단 중남미지역 순방, 1980.11.23.-12.16. 전4권 (V.3 결과보고)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남미

MF번호 2010-29 / 6 / 1-209

특별사절단의 1980.11.23.~12.16. 중남미지역 순방 관련 결과 내용임.

1. 방문 결과

- 코스타리카(11.22.~26.)
 - 에너지 분야 협력, 유엔평화대학 설립 지원, 커피 및 육류의 정책적 수입 요청 등
- 니카라과(11.26.~29.)
 - 국산 기자재 무상공여, 원면, 커피, 우유, 참깨의 정책적 수입 적극 고려, 상주공관 설치 검토
- 파나마(11.29.~12.3.)
 - 공동성명 발표, 국산 기자재 무상공여, 파나마시에서 대규모 한국상품 전시회 개최
- 페루(12.3.~7.)
 - 공동성명 발표, 태평양공동체구상 협의, 에너지와 광산 등의 개발 협력, 국산 기자재 공여
- 아르헨티나(12.7.~10.)
 - 자원 및 기술 집약산업 투자 기대, 불법 체류자 및 한국 교민의 수도권 집중 문제 대책
- 브라질(12.10.~13.)
 - 한국인 불법 체류자 문제의 조속한 해결 건의

2. 방문 평가

- 중남미 국가와의 우호 협력관계 재확인
- 한반도 정세 및 한국 신정부 시책 설명 및 각종 국제회의에서 한국 입장 지지 교섭
- 중남미 국가에 대한 북한의 침투 책동 저지 기반 공고화
- 경제기술협력 등 실리외교, 중남미 독자노선 추구 경향에 대응한 외교 노력 필요

3. 특사 건의사항(공통)

- 주요인사 교류, 민간통상사절단, 스포츠 및 예술단 등 인적교류 확대
- 중남미산 제품의 정책적 수입 및 무상공여 제공
- 홍보활동 강화, 대중남미 이민 등 교민정책 재검토 등

특별사절단 중남미지역 순방, 1980.11.23.-12.16. 전4권 (V.4 감사서한 및 자료)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남미

MF번호 2010-29 / 7 / 1-185

특별사절단의 1980.11.23.~12.16. 중남미지역 순방 관련 자료임.

1. 중남미 특별사절단 방문 후속조치

- 대통령 친서에 대한 답신 서한
 - 전두환 대통령 친서에 대한 Carazo 코스타리카 대통령의 서한
 - 전두환 대통령 친서에 대한 Videla 아르헨티나 대통령의 서한
- 박동진 특사의 방문국 주요인사에 대한 감사 서한 전달
- 박동진 특사에 대한 아르헨티나의 대십자 수교훈장 전달

246

2. 특별사절단 방문 관련 언론보도

3. 특별사절단 방문 관련 각종 자료

Chuba, Okadigbo 나이지리아 대통령 특별보좌관 방한, 1980.8.3.-7.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통상3 / 서부아프리카

MF번호 2010-29 / 8 / 1-211

Okadigbo Chuba 나이지리아 대통령 특별보좌관의 1980.8.3.~7. 방한 관련 내용임.

1. 초청 경위

- 1980.2.22. 나이지리아와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
 - 동 수교에 Chuba 정치특보가 적극적 기여
- 1980.2.27. 외무부장관 명의 방한초청장 발송
 - 3.26. 방한 초청 수락

2. 주요 일정

- 대통령(훈장 수여), 국무총리, 외무부장관 예방
- 재무부장관, 건설부장관, 상공부차관, 동자부차관 면담
- 새마을 시찰, 산업 시찰(삼성전자, 현대양행, 대우중공업) 등

3. 방한 결과

- 한·나이지리아 경제협력위원회 설치 협의
- 외상 교환 방문, 상주공관 개설 문제 협의
- 경제기술협력협정 체결 호의적 검토
- 합작은행 설립, 한국 건설업체 참여 문제, 원유공급 문제 등 협의

4. 관련 자료

- 추바 나이지리아 대통령 특별보좌관 면담자료 등

한·호주 의원친선협회 의원단 호주 방문, 1980.3.24.-30.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대양주

MF번호 2010-29 / 9 / 1-109

한·호주 의원친선협회 의원단의 1980.3.24.~30. 호주 방문 관련 내용임.

1. 방문 경위

- 양국 국회 간 의원친선협회 상호방문 원칙

2. 방문단

- 고흥문 국회부의장(단장), 정석모 의원, 김용호 의원, 이진연 의원

248

3. 주요 일정

- 시드니 방문(3.24.)
 - N. S. W. 주 상원의장 주최 오찬, Laucke 연방 상원의장 예방
- 캔버라 방문(3.25.~26.)
 - Laucke 상원의장, 슈넨덴 하원의장 예방, 상·하원 방문
 - Peacock 외상, 하이드 노동당 당수 예방
- 퀸즐랜드 방문(3.27.~28.)
 - 퀸즐랜드 수상, 광산자원장관 예방, 브리스베인 시장 방문 등

4. 관련 자료

- 한·호주 의원친선협회 국회의원단 호주 방문자료(1980.3월, 외무부 아주국)

한·인도네시아 의원친선협회 의원단 인도네시아 방문, 1980.1.14.-21.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아주총괄

MF번호 2010-29 / 10 / 1-51

한·인도네시아 의원친선협회 의원단의 1980.1.14.~21. 인도네시아 방문 관련 내용임.

1. 방문단

- 천병규 의원(단장), 이정석 의원, 김승목 의원, 변정일 의원

2. 주요 일정

- 수하르토 대통령, Daryatmo 국회의장, 말리크 부통령 예방
- 목라트 외상 방문
- 국제협력위원회 위원 간담회

한·멕시코 의원친선협회 의원단 멕시코 방문, 1980.1.16.-19.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중미

MF번호 2010-29 / 11 / 1-84

한·멕시코 의원친선협회 의원단의 1980.1.16.~19. 멕시코 방문 관련 내용임.

1. 방문단

- 김종철 의원(단장), 김상진 의원, 조홍래 의원, 이인근 의원

2. 주요 일정

- Portillo 대통령, 상원의장 예방
- 하원 외무위원장 방문 및 의원 간담회 개최, 외무차관 방문
- 김종철 의원 강연, 기자회견

3. 주요 활동

- Portillo 대통령은 10·26 사태 후 한국 국민의 헌정질서 유지를 높이 평가
- 김종철 의원, 한국의 통일정책 연설

4. 관련 자료

- 김종철 의원 연설문(국문): 한국의 통일정책
- 김종철 의원 연설문(영문)
 - Foreign Policy for Peace and Unifi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 국회의원단 멕시코 방문자료

브라질 하원 의원단 방한, 1980.6.23.-28.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남미

MF번호 2010-29 / 12 / 1-65

브라질 하원 의원단의 1980.6.23.~28. 방한 관련 내용임.

1. 방한 경위

- 1980.4.10. Ghisi 하원 의원, 주브라질대사에게 극동지역 방문 시 방한 초청 요청
- 국회 측, 브라질 의원단의 1980.5~6월 방한 환영

2. 방한단

- Adhemar Ghisi 하원 의원(단장), Angelino Rosa 의원 등

3. 주요 일정

- 국회의장 대리, 국무총리, 외무부장관, 상공부장관, 동자부장관, 보건사회부장관, 서울시장 예방
- 산업 시찰 및 농촌진흥청 방문 등

4. 방한 결과

- 한국인 브라질 불법 체류자 문제에 대한 협조 요청

5. 관련 자료

- 브라질 의원단 방한 관련 장관 면담자료 등

중국 입법위원단 방한, 1980.3.31.-4.7.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중국

MF번호 2010-29 / 13 / 1-57

대만(구 자유중국) 입법위원단의 1980.3.31.~4.7. 방한 관련 내용임.

1. 방한 경위

- 국회의장 초청

2. 방문단

- Lin Tong 입법위원(단장), Lo Chi-lien 위원 등

252

3. 주요 일정

- 국회의장 대리, 정일권 전 국회의장, 백두진 전 국회의장, 국무총리, 외무부장관, 공화당 및 신민당 총재 예방
- 판문점, 제3땅굴, 서울대학교, 한국과학기술연구소, KOEX, 현대자동차, 현대조선소, 포항제철 시찰 등

4. 관련 자료

- 외무부장관 면담 요약

콜롬비아·한 의원친선협회 의원단 방한, 1980.6.9.-11.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남미

MF번호 2010-29 / 14 / 1-53

콜롬비아·한 의원친선협회 의원단의 1980.6.9.~11. 방한 관련 내용임.

1. 방한 경위

- 국회 초청

2. 방문단

- Cesar Perez 하원 제2부의장(단장), Jaime Henriquez 의원 등

3. 주요 일정

- 국회의장 대리, 국무총리, 상공부장관, 서울시장 예방
- 판문점, 콜롬비아 참전 기념비, 대우중공업 시찰 등

4. 관련 자료

- 콜롬비아 의원단 방한 면담자료

프랑스 국회의원 방한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서구

MF번호 2010-30 / 1 / 1-251

1980년 중 프랑스 국회의원의 방한 관련 내용임.

1. Taittinger 프랑스 상원 의원 방한 초청

- 1978.2.1. 주프랑스대사 명의 방한초청장 전달
- 동 의원은 1980.9월 방한 희망

2. Jean De Lipkowski 하원 의원 방한 초청

- 1978.12.20. 주프랑스대사, 1979년 초 동 의원 방한 초청 건의
- 동 의원, 1979.3월 방한을 구주의회 선거 관계로 9월로 연기 희망
 - 1980.9월을 잠정 방한 시기로 제의

3. 프랑스 하원 재경위 의원단 방한(1980.2.27.~29.)

- 대표단
 - Vivien 하원 재경위원장(단장), Tissandier 하원 재경위 부위원장 등 하원 의원 3인 및 수행원
- 주요 일정
 - 국회의장 대리, 국무총리, 정일권 공화당 고문, 외무부장관 예방
 - 판문점, 프랑스 참전 기념비, 전경련, 광명인쇄, 방림방적 시찰 등

4. Jean-Pierre Fourcade 상원 의원 방한(1980.9.7.~12.)

- 주요 일정
 - 국무총리, 국회의장, 경제기획원장관, 상공부장관, 외무부차관 예방
 - 판문점 및 산업 시찰 등
- Fourcade 상원 의원, 방한 중 접촉인사들에 대한 감사 서한 전달

Sudreau, Pierre 프랑스 하원 의원 방한, 1980.11.3.-8.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서구

MF번호 2010-30 / 2 / 1-69

Pierre Sudreau 프랑스 하원 의원의 1980.11.3.~8. 방한 관련 내용임.

1. 방문단

- Sudreau 하원 의원(단장), Philippe Dusseigneur 한·프랑스 경험위 회장 등

2. 방한 목적

- 한·프랑스 우호 협력관계 증진 및 ENKOR '80 국제박람회 참관

3. 주요 일정

- 남덕우 국무총리 예방
 - Barre 프랑스 수상, 국무총리 앞 친서 전달
 - Sudreau 의원, 중동정세 및 중국(구 중공) 방문 시 관찰내용 설명
- ENKOR '80 국제박람회 참관
- 제5차 한·프랑스 경제협력위원회 합동회의 참석

4. 후속조치

- Barre 수상의 친서에 대한 국무총리 명의 답신 전달
 - 동 수상은 양국 간 원자력발전소 분야 협력, 외상의 방한 실현 등 언급

인도네시아 국회 의원단 방한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동남아

MF번호 2010-30 / 3 / 1-95

1980년 중 인도네시아 국회 의원단 방한 관련 내용임.

1. 방문단

- Kartidjo 국회부의장(단장), Aminrachman 의원 등

2. 주요 일정

- 대통령, 국회의장 대리, 부총리, 동자부장관 예방
- 판문점, 새마을 단지, 전매청, 포항제철 시찰 등

이탈리아 상원 의원단 방한, 1980.9.21.-26.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남구

MF번호 2010-30 / 4 / 1-55

이탈리아 상원 의원단의 1980.9.21.~26. 방한 관련 내용임.

1. 방한 경위

- 신범식 한·이탈리아 의원친선협회장 명의 초청

2. 방문단

- Bruno Lepre 상원 의원(단장), Parrino Francesco 의원 등

3. 주요 일정

- 국무총리, 외무부장관, 국보위 외무분과위원장 면담
- 판문점, 현대조선, 현대자동차 시찰, 경주 방문

4. 관련 자료

- 이탈리아 의원단 면담자료 및 외무부장관 면담 요록

일본 국회의원 방한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일본

MF번호 2010-30 / 5 / 1-79

1980년 중 일본 국회의원의 방한 관련 내용임.

1. 일본 자민당 참의원단 방한(1980.8.5.~6.)

- 방문단: 도츠카 신야 참의원 의원(일·한 의원연맹 회원) 등 2명
- 박쌍용 외무부 정무차관보 면담

2. 가스가 이코 일·한 의원연맹 회장 대행 방한(1980.8.18.~20.)

- 방문단: 가스가 이코 회장 대행(중의원 의원) 및 중의원 의원 2인
- 전두환 국보위 상임위원장 예방

3. 곤도 유다카 중의원 의원 방한(1980.11.23.~25.)

- 동 의원, 방한 전 자신의 지역구 신문에 김대중 문제를 2차례 기고
 - 김대중에 대한 부정적 의견 기고

4. 일본 사회당 대표단 방한 추진(1980.3.31.~4.1.)

- 방문단: 가와카미 다미오 국제국장(단장), 사회당 우파의원 7~8명
- 방한 목적: 한국의 민주인사들과 직접 접촉하여 한국정세 파악
- 동 방한 문제 사전협의를 위해 스기야마 국제부국장을 1980.3.25.~26. 한국에 파견

나이지리아 국회 의원단 방한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서부아프리카

MF번호 2010-30 / 6 / 1-93

1980년 중 나이지리아 국회 의원단의 방한 관련 내용임.

1. 방문단

- 공업분과위원회 의원단(1980.10.5.~8.)
 - Akintola 분과위원장 등 5명
- 건설분과위원회 의원단(1980.10.5.~11.)
 - Obasi 분과위원장 등 6명

2. 주요 일정

- 국무총리, 외무부장관, 국회의장 대리, 동자부장관, 건설부장관 방문
- 대한주택공사,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의 방문
- 판문점, 국립박물관,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대우중공업, KOEX 시찰

네덜란드 국회의원 방한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서구

MF번호 2010-30 / 7 / 1-75



1. Bolkestein 네덜란드 하원 의원 방한(1980.9.18.~21.)

- 주요 일정
 - 국회의장 대리, 외무부차관 예방
 - 산업 시찰

2. Ploeg 네덜란드 하원 의원 방한(1980.9.28.~10.4.)

- 주요 일정
 - 국회의장 대리, 외무부장관 예방
 - 판문점, 산업 시찰
- 한국전 참전인사로 방한 후 언론에 기고
 - "West Understands Nothing of Korea Development"

Freer, W. W. 뉴질랜드 노동당 의원 방한, 1980.5.2.-9.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동남아

MF번호 2010-30 / 8 / 1-87

W. W. Freer 뉴질랜드 노동당 의원의 1980.5.2.~9. 방한 관련 내용임.

1. 방한 경위

- 동인의 방한 희망 및 북한 방문 관련 사항 파악을 위해 양찬우 한·뉴질랜드 의원친선협회장 명의로 방한 초청
 - 1979.8.10.~16. 개인 자격으로 북한 방문

2. 주요 일정

- 국회의장 대리, 부총리, 상공부장관, 농림수산부장관, 외무부차관 예방
- 산업 시찰 및 경제계 인사 면담

Boontheng Thongswasdi 태국 하원의장 방한, 1980.4.27.-5.3.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동남아

MF번호 2010-30 / 9 / 1-124

Boontheng Thongswasdi 태국 하원의장의 1980.4.27.~5.3. 방한 관련 내용임.

1. 방한 경위

- 북한의 대태국 접근기도 저지 및 양국 간 우호관계 증진을 위해 방한 초청
- 태국 하원의장은 1979.9.6.~16. 북한방문단(136명) 단장으로 북한 방문

2. 방문단

- Boontheng Thongswasdi 하원의장(단장), Phan Bonchit 하원 의원 등

3. 주요 일정

- 대통령, 국회의장 대리, 경제기획원장관, 외무부장관, 서울시장 예방
- 태국 참전 기념비 참배, 지방 시찰
- 외무부 정무차관보에게 북한 방문 내용 전달

4. 후속조치

- Boontheng Thongswasdi 하원의장 명의 감사 서한을 대통령 및 국회의장 서리에게 전달

영국 국회의원 방한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서구

MF번호 2010-30 / 10 / 1-144

1980년 중 영국 국회의원의 방한 관련 내용임.

1. Williams 하원 의원 방한(1979~80년)

- 1979.10월 백두진 IPU(국제의원연맹) 한국의원단 회장 명의 초청 서한 전달
 - Williams 하원 의원은 IPU 이사회 의장 역임
- 동 의원은 1980.6월 방한을 희망하였으나 건강 악화로 방한 취소

2. Neville Trotter 하원 의원 방한(1980.8.2.~7.)

- 주요 일정
 - 국보위 상임위원장, 국회의장 대리, 부총리, 국방부장관, 외무부 정무차관보 예방
 - 제3땅굴, 판문점, 현대조선 시찰

3. 영국 의회 상공분과위원회 의원단 방한(1980.10.22.~25.)

- 방문단
 - Donald Kaberry 상공분과위 의장(단장), Cocheram 의원 등
- 주요 일정
 - 국무총리, 부총리 등 예방
 - 대우, 현대, 방림방적 시찰, 전경련 등 방문

4. Benjamin Thomas Ford 하원 의원 방한(1980.10.25.~29.)

- 주요 일정
 - 국무총리, 외무부장관, 국회사무총장 등 예방
 - 판문점 및 땅굴, 삼성전자 및 방림방적, KOEX 등 시찰

영국 IPU(국제의원연맹) 의원단 방한, 1980.2.23.-3.3.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서구

MF번호 2010-30 / 11 / 1-129

영국 IPU(국제의원연맹) 의원단의 1980.2.23.~3.3. 방한 관련 내용임.

1. 방한 경위

- 1978.8.17. 정일권 국회의장, Ben Ford 의장을 포함한 영국 IPU 의원단 방한 초청
- 1979.3.22. 백두진 국회의장 명의 방한초청장 재발송
 - 영국 의회 선거 및 10·26 사태 등으로 연기되어 오다 1980.2월 방한

264

2. 방문단

- Dudley Smith 하원 의원(단장, 보수당), George Grant 의원 등

3. 주요 일정

-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대리, 외무부장관 예방
- 유엔사령부, 판문점, 산업 시찰

4. 관련 자료

- 영국 IPU 의원단 면담자료

미국 의회 의원단 방한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복미

MF번호 2010-30 / 13 / 1-103

1980년 중 미국 의회 의원단의 방한 관련 내용임.

1. 합동경제위원회 의원단(1980.1.12.~15.)

- 방문단
 - Lloyd N. Bentsen 위원장(단장), 상·하원 의원 부처, 업계 및 노동자 대표 등
- 방한 목적
 - 아시아(필리핀, 홍콩, 대만(구 자유중국), 한국) 시장에 있어서 미국 경제의 경쟁력 현황과 동 문제가 미·아시아 관계에 미치는 문제점 조사
- 주요 일정
 - 대통령,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 예방
 - 현대조선소 시찰

2. 하원 의원단(1980.3.30.~4.2.)

- 방문단
 - Jonathan B. Bingham 외무위원회 국제경제소위원회 위원장(단장), 의원단 35명
- 방한 목적
 - 한·미국 간 정치·경제 관계 검토
 - 한국의 수출 및 무역문제 조사
 - 핵개발 계획에 관한 검토
- 주요 일정
 - 국회의장 대리 주최 만찬
 - 대통령, 국무총리, 동력자원부장관, 상공부장관 대리, 경제기획원장관, 김대중 예방
 - 한·미 경제협의회 회장 주최 오찬

미국 하원 의원단 방한, 1980.1.6.-8.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북미

MF번호 2010-30 / 14 / 1-372

미국 하원 의원단의 1980.1.6.~8. 방한 관련 내용임.

1. 방문단

- Lester Wolff 외무위원회 아태소위원회 위원장(단장), 의원단 18명

2. 방문 목적

- 아시아지역 정세 시찰
-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에 대한 아시아 각국의 견해 고찰

3. 주요 일정

- 문교부장관, 국방부장관 예방
- 판문점 시찰, 주한 미국대사 주최 리셉션, 국회 외무위원장 주최 만찬
- 대통령, 국무총리, 외무부장관, 공화당 총재, 신민당 총재 및 김대중 예방

4. 하원 의원단의 방한 결과보고서 중 한국 관계 부문 요지

- 한국 국민은 아래 3가지 주요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
 - 헌법 개정, 정치발전, 국내정치 안정
 - 경제문제
 - 한반도의 군사적 균형
- 국내정치 안정: 한국 정부는 12·12 사태로 약체화되었으며 반대세력들의 정치적 열망과 군부의 정국 안정 요청을 조화시키는 문제에 직면해 있음.
- 경제문제: 정치적 불안정으로 야기된 경제적 침체현상이 두드러짐.
- 한반도 군사 균형
 - 한국 관리들과 정치 지도자들은 미국의 즉각적이고 명확한 대북한 경고조치가 한국의 정치적 안정과 안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고 있음.

5. 면담자료

- 한반도 통일에 대한 남북한 입장(외무부)
- Wolff 의원 일행 면담자료(외무부 미주국)

Solarz, Stephen 미국 하원 의원 방한, 1980.7.12.-14. 전3권 (V.1 사전준비)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북미

MF번호 2010-30 / 15 / 1-178

Stephen Solarz 미 하원 의원의 1980.7.12.~14. 방한 관련 사전준비 내용임.

1. 북한, 미 의원 북한 방문 초청

- 1979.10월 북한, 미국 종교단체 등을 통하여 수 명의 미 의원 북한 방문 초청
 - 피초청자: Wolff 하원 외무위원회 아태소위원회 위원장, Solarz 의원 등

2. 미 의원 반응

- Wolff 위원장은 동 초청을 거절하였으나, Solarz 의원은 수락 표명
- 한국 측은 Solarz 의원 및 미 국무부에 대하여 동 의원이 북한 방문을 자제할 것을 적극 교섭
 - 동 의원은 10·26 사태로 인한 한반도 정세변화로 당분간 북한을 방문하지 않겠다고 한국 측에 통보(11.8.)
 - 북한 측은 미국을 방문한 Sihanouk 전 캄보디아(구 캄푸차) 주석 등을 동원하여 동 의원의 북한 방문을 재요청

3. Solarz 의원, 방북 결정

- Solarz 의원은 1980.6.19. 주미국대사 면담 시 자신이 그동안 한국 국내 사정과 한국 정부의 입장을 고려, 북한 방문을 연기하여 왔으나 금번 휴회기간을 고려하여 북한 방문 초청을 수락하였다고 밝힘.
 - 동 의원은 1980.7.12.~14. 방한 후 도쿄, 베이징을 거쳐 1980.7.15.~19. 북한을 방문, 베이징을 경유하여 귀국할 예정임.

4. Solarz 의원 방한 관련 주한 미국대사관의 전달사항

- 방한 일정 통보
 - 7.12. 서울 도착
 - 7.14. 도쿄 향발
- 주요인사 면담 희망
 - 최규하 대통령, 박동진 외무부장관, 최완복 통일부장관
 - 김영삼, 김종필, 김대중 등

Solarz, Stephen 미국 하원 의원 방한, 1980.7.12.-14. 전3권 (V.2 결과보고)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북미

MF번호 2010-30 / 16 / 1-195

Stephen Solarz 미 하원 의원의 1980.7.12.~14. 방한 결과 내용임.

1. 방한 및 방북 경위

- 미국 하원 외무위원회 소속 Stephen Solarz 의원은 1980.7.12.~14. 방한 후 1980.7.15.~19. 평양 방문
- 북한은 1979.10월 케이커 단체를 통해 동 의원을 초청한 후, Sihanouk 방미 시 재차 초청
 - Solarz 의원은 방북을 결정하고 방북에 앞서 한국 측의 견해를 청취하기 위해 방한 결정
- 주요 일정
 - 대통령, 외무부장관, 민간지도자 면담
 - 한국 국내정세 및 통일정책에 대한 입장과 견해 청취

2. Solarz 의원의 방북 결과 청취

- 동 의원, 1980.7.21. 주일본대사관을 방문하여 평양 방문 시 김일성의 발언 내용을 아래와 같이 브리핑함.
 - 미·북한 간 외교관계 수립 또는 공식접촉 전이라도 문화 및 학술 교류 추진
 - 어떠한 전제조건 없이 남한과의 통상 관계 개시
 - 이산가족 상봉 실현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반공법 철폐를 더 이상 주장하지 않을 것임.
- 동 의원은 남북한 교차승인은 2개의 한국을 합법화하는 것이므로 단호히 거부, 유엔 동시가입은 분단을 영속화하는 이유로 반대함.

3. Solarz 의원의 방북 평가

- 금번 평양 방문, 특히 김일성 등 북한 지도자와의 대담은 남북한 및 미·북한 관계에 대한 북한 측 입장을 직접 듣고 이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익한 기회가 된 것으로 봄.

Solarz, Stephen 미국 하원 의원 방한, 1980.7.12.-14. 전3권 (V.3 자료)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북미

MF번호 2010-30 / 17 / 1-147

Stephen Solarz 미 하원 의원의 1980.7.12.~14. 방한 관련 자료임.

1. Solarz 의원에게 전달한 자료

- Memorandum on the Current Korean Situation(외무부)
 - Introduction
 - Internal Situation Following the October 26 Incident
 - Provocation by North Korean Communists
 - Conclusion
- 최근 한국정세에 대한 설명각서(안)(외무부 미주국)
 - 서언
 - 10·26 사태 이후 국내정세
 - 북한의 책동 상황
 - 결어

2. 언론보도

- 서울신문(1980.7.10.)
 - 정치 나그네의 비정치 여로, 솔라즈 평양행, 한 건 노린 소장의 모험
- 조선일보(7.19.)
 - 솔라즈·김일성 평양서 회담, 4시간 동안...클라프 교수도 동석
- 뉴욕타임스(7.19.)
 - President of North Korea drops a condition for Talks with the South
- 워싱턴포스트(7.19.)
 - 1st such meeting in 30 years. Rep. Solarz sees N. Korean Chief
- 워싱턴포스트(7.21.)
 - Solarz says N. Koreans seek U.S. Ties
- 요미우리신문(7.24.)
 - “북조선의 유인자세” 제하 Solarz 의원의 북한 방문에 관한 해설기사 게재

한·일본 의원안전보장협의회 총회, 제3차. 1980.4.27.-30.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일본

MF번호 2010-30 / 18 / 1-156

1980.4.27.~30. 서울에서 개최된 제3차 한·일본 의원안전보장협의회 총회 관련 내용임.

1. 추진 경위

- 1977.9월 문형태 의원, 한·미·일 3국 국회의원의 동북아지역 안보 공동연구협력 강화방안을 대통령에게 건의
- 1977.10월 대통령, 청와대 안보대책회의에서 외무부 주관으로 방안 검토를 지시
- 1978.1월 국회 내 안보의원협의회 설립
- 1979.4.29.~5.2. 제1차 한·일 의원안보협의회 개최(서울)
- 1979.12.1.~3. 제2차 한·일 의원안보협의회 개최(도쿄)

2. 개최 배경

- 일본 내 안보의식 점고
 - 일본 내에서 최근 일본 방위문제와 동북아지역 안보문제에 대한 일반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자민당 내 한·미·일 안보 분야 협력 강화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
- 한·미·일 의원 간 3각 안보협의체 구성 노력

3. 주요 안건

- 세계 군사정세와 극동 군사정세에 대한 전망
- 한반도의 정세와 남북한 관계의 전망
- 한·일 안전보장을 위한 제문제

한·일본 의원연맹 합동간사회의. 서울, 1980.5.2.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일본

MF번호 2010-31 / 1 / 1-71

1980.5.2. 서울에서 개최된 한·일본 의원연맹 합동간사회의 관련 내용임.

1. 대표단(일본 측)

- 모오리 마츠헤이 일·한 의원연맹 간사, 참의원, 중의원 등

2. 개최 목적

- 제8차 총회(1979.5.23.) 후 당면한 양국 간 제문제 토의
- 제9차 총회(미정) 개최를 위한 제반사항 협의

3. 언론보도

- 한국일보(1980.5.4.)
 - 석유 공동비축 협력, 알래스카 에너지 개발도..
 - 동 간사회의는 공동발표문을 채택, 석유 공동비축, 에너지 이용의 합리화, 대체에너지개발 등을 위해 양국 에너지 관계기관이 기술협력체제 확립에 노력할 것을 다짐, 주목을 끌었음.
 - 동 합의 내용에는 앞으로 미 알래스카지역의 천연가스 벙커 C유 및 석탄 공동개발에 한·일 양국이 서로 협력할 것과 대륙붕 공동개발의 적극 추진 등이 포함됨.
- 중앙일보(5.5.)
 - 최근 서울에서 개최된 한·일 의원안보협의회와 한·일 의원연맹간사회의가 잇달아 열리자 국회 주변에서는 성격이나 멤버가 비슷한 두 회의가 일원화되어야 한다는 비판이 있음.
 - 그러나 안보협의회 측은 협의회가 한·일 뿐 아니라 한·미, 한·중(구 중공) 등 다른 우방국과 연관 사업이 있기 때문에 한·일 의원연맹 산하에 들어가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난색을 표함.

네덜란드·한 의원친선협회

생산연도 1978-1980

생 산 과 서구

MF번호 2010-31 / 2 / 1-27

1978~80년 중 네덜란드·한 의원친선협회 관련 내용임.

1. 의원친선협회 신규 결성

- 외무부, 1978.4.21. 아래 요지로 주네덜란드대사관에 지시함.
 - 국회가 네덜란드와의 의원친선협회를 신규 결성하고, 협회 일원 및 회원의 명단을 알려왔음.
 - 동 명단을 주재국 의회에 통보하고, 주재국 의회에서도 조속히 동 협회가 결성되도록 교섭하여 줄 것을 요청한바, 적극 추진 바람.

272

2. 의원친선협회 결성 노력

- 주네덜란드대사, 1978.11.24. 국회 초청으로 1978.9.28.~10.5. 방한한 바 있는 A. Ploeg 의원이 그간 주축이 되어 주재국 의원친선협회 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함.
 - 동 협회가 결성될 때까지는 앞으로 시일이 소요될 것이며, 진전이 있는 대로 보고할 예정

3. 네덜란드·한 의원친선협회 결성 추진

- 국회사무처, 1979.8.20.자 공문으로 아래사항을 외무부에 요청함.
 - 정래혁 한·네덜란드 의원친선협회장은 네덜란드 측 의원친선협회 결성 및 양국 의원단의 상호 교환 방문 문제와 관련하여 1978.8.14.~20. 방한한 Schakel 네덜란드 하원 부의장에게 전달 하였던 Note 사본을 송부, 주재국 한국공관으로 하여금 Schakel 부의장과 계속 교섭하여 동 문제를 조속히 타결하도록 협조를 요청함.

4. 네덜란드 의원친선협회 결성(1980.2.7., 주네덜란드대사 보고)

- 주네덜란드대사는 네덜란드의 의원친선협회 결성 건으로 그 동안 수차례 걸쳐 Schakel 부의장 및 Ploeg 의원과 접촉해 옴.
- 상기 양인은 네덜란드가 한국 의회와 의원 간 친선협회 결성을 한 전례가 없어 한국 측 경우와 같이 국회 공식기구로 네덜란드 측 의원친선협회를 결성할 수 없다는 네덜란드 하원 입장을 감안해 주기를 바람.
 - 대안으로 하원 내 친한 의원을 중심으로 양국 의원 간 교류, 이해 증진, 친목 도모를 위한 친한 의원단을 발족시킨 후, 회원을 상원 의원까지 넓히겠다고 약속함.

이규호 전 국토통일원장관 독일 방문, 1980.5.20.-22.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서구

MF번호 2010-31 / 3 / 1-161

이규호 전 국토통일원장관의 1980.5.20.~22. 독일 방문 관련 내용임.

1. 방문 목적

- 분단국 통일부처 간 각료급 교환 방문 및 제1차 정책실무협의회 참석

2. 주요 일정

- 내독관계성 장관, 외무성 부장관 방문
- ZDF TV 방송 회견 등
- 실무협의회 참석(내독관계성) 및 전독문제연구소, 연방정치교육본부, 서베를린 Budeshaus 방문

3. 방문 성과

- 내독관계성 독일정책 업무담당 핵심부서의 전문가들과 협의를 통해 내독 관계의 이론적·실제적 정책 입장 파악 및 실무담당관 소관정책 평가서 등 정책자료 확보
- 전독문제연구소와 평화통일연구소 간의 소규모 전문가 협의 및 협조체제 수립
- 독일 정치교육에 관한 현황 파악 및 전문가 파한, 특수자료 협조

유종하 외무부 미주국장 과테말라 방문, 1980.4.16.-17.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중미

MF번호 2010-31 / 4 / 1-13

유종하 외무부 미주국장의 1980.4.16.~17. 과테말라 방문 관련 내용임.

1. 방문 목적

- 과테말라의 정치정세 관찰 및 주재국 한국공관의 안전 문제 점검

2. 주요 접촉인사

- Erick Orlando Ovaill 과테말라 외무성 정무국장 대리
- 하라 후지오 주과테말라 일본대사
- 주과테말라 미국대사관 1등서기관
- 주과테말라 미국대사관 보안담당관

3. 종합 관찰

- 1980.1월 주과테말라 스페인대사관 사건 이후 과테말라는 평온을 유지하고 있으며, 과테말라 주재 각 주요국가 대사관은 평상시 활동을 계속하고 있음.
- 과테말라는 인구, 경제력 및 군사력에 있어서 중미 국가의 중진국이므로 한국은 과테말라와 긴밀한 우호 협력관계를 유지,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음.
- 한국으로서는 과테말라의 정치 정세가 앞으로 장기간 불안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공관 및 공관원의 정상근무 태세를 유지함이 필요함.

정세조사단 일본 방문, 1980.6.21.-27.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일본

MF번호 2010-31 / 5 / 1-81

정세조사단의 1980.6.21.~27. 일본 방문 관련 내용임.

1. 방문단

- 문덕주 대사, 김태지 외무부 아주국장, 신희석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2. 활동 목표

- 일본 정국 동향의 파악
-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의 불변을 재확인하고, 양국 우호관계 강화의 필요성 강조
- 필요시 한국의 정치발전 설명과 이에 대한 일본의 이해 촉구

3. 주요 일정

- 외무대신, 외무사무차관, 전 총리대신, 참의원 의장 면담 등

4. 활동 성과

- 집권당인 자민당이 총선에서 압승하여 당 체제를 정비하고 정책을 강력히 추진할 소지가 마련된 시기에 정부의 대외책임자인 외상 및 주요 원로정치인들과 만나 양국 간 우호 협력관계의 건전한 발전을 다짐함과 동시에 한국 정부와 국민의 안정을 위한 노력을 설명, 이해와 지지를 촉구함.
- 일본 정국의 동향은 아직 유동적이나, 자민당 내부의 움직임으로써 총리 후계자 선출을 둘러싼 대체적인 진전 동향은 파악할 수 있었음.
- 한국사태 및 정치발전 일정에 대한 설명과 이해획득 노력을 시행함.

기우치(木内昭胤) 일본 외무성 아주국장 방한, 1980.6.9.-13.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일본

MF번호 2010-31 / 6 / 1-105

기우치 일본 외무성 아주국장의 1980.6.9.~13. 방한 관련 내용임.

1. 방한 목적

- 한국 정세 파악

2. 주요 일정

- 외무부장관, 전경련 회장 예방, 김영주 대사, 외무부 아주국장 면담
- 노태우 수도경비사령관 면담, 아주국장 주최 비공식만찬
- 글라이스틴 주한 미국대사 면담
- 판문점 시찰

3. 방한 결과

- 기우치 국장은 일본 외무성이 한·일 정기각료회의를 1980.9월 중 개최할 것을 염두에 두고 준비해왔으나, 최근 총선거 실시 등 상황으로 인해 전망이 불투명하다고 설명함.
 - 일본은 한국의 정치 정세에 대해 중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바, 김대중이 사형을 언도 받는 상황이 되면 각료회의 개최도 유감스럽지만 어렵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고 설명함.
 - 오키다 일본 외상이 7월 초 방한을 준비하고 있었으나, 돌발적인 국회 해산, 중·참의원 동시선거라는 사태를 맞이하여 외상의 방한은 실현할 수 없게 되었고, 새로운 내각이 수립되면 신외상의 조속한 방한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함.
- 한국 측은 신외상이 조속한 시일 내 방한하기를 희망하며, 한·일 정기각료회의는 예정대로 가을에 실시하기를 희망함.

일본 주요인사 방한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동북아1

MF번호 2010-31 / 8 / 1-43

1980년 중 일본 주요인사 방한 관련 내용임.

1. 우라다 우지로 자민당 의원(1980.2.13.~15.)

- 방문단
 - 우라다 우지로 현 의원 외 20명의 구마모토현 인사
- 방한 목적
 - 서울-구마모토 간 KAL 취항 문제
 - 주후쿠오카총영사관의 구마모토출장소 개설 요청(한국행 비자건)
- 방한 결과(외무부차관 면담)
 - 우라다 의원은 1979.9월 구마모토-서울 노선의 대한항공 취항 이래 승객이 별로 많지 않아 성적이 부진한 상태라고 하면서, 한국 비자를 받기 위해 구마모토현 사람들은 후쿠오카까지 왕래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서 그 항공편 이용률이 하락되고 있으므로 구마모토현에서도 한국 비자발급이 가능하도록 편리를 부탁함.
 - 외무부차관은 어떠한 형태로든 편리를 도모할 수 있는 계획을 구상 중이라고 하면서, 좀 더 기다려주기를 희망함.

2. 가나야마 전 주한 일본대사(1980.2.22.~25.)

- 주요 일정
 - 국무총리, 외무부장관, 보사부장관, 문교부장관 예방
 - 무역협회장 면담, 외교안보연구원주최 세미나
- 방한 결과
 - 가나야마 대사는 국무총리 면담 시 현행 양국 간 무역활동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현행 6개월의 상사 주재원 비자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는 동시, 긴급출장 등이 빈번한 상사 대표에게는 복수 비자를 발급하여 주도록 건의함.
 - 이와 관련, 국무총리는 일단 사실을 파악하고, 선처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시함.

Thompson, Dudley 자메이카 국가보안상 방한계획

생산연도 1974-1980

생 산 과 중미

MF번호 2010-31 / 9 / 1-82

1974~80년 중 Dudley Thompson 자메이카 국가보안상의 방한 추진 관련 내용임.

● 추진 경위

- 1974년 주자메이카대사 대리는 Thompson 외무담당 국무상이 자메이카 사회주의 기수로서 한국에 대한 인식 부족 및 편견 시정과 양국 간 관계 호전의 기회 마련을 위해 방한 초청을 건의
 - 1975.1월 외무부장관 명의로 방한초청장 발송
- 1976.2월 서경석 주자메이카대사 대리의 Thompson 외상 방문 시, 동 외상이 동년 8월 스리랑카 비동맹회의를 이용, 방한을 고려 중임을 탐지
- 1977년 동인이 광업상 재직 시 1978.3월 방한 초청할 예정이었으나, 1978.1월 국가보안상으로 전보되어 1978년 하반기에 내무부장관 명의로 초청하기로 재조치
- 1979.2월 전대차관공여협정이 체결되자, 동 장관은 1979.8월 전대차관을 이용한 군수물자 도입 등 목적으로 방한 희망

Kariuki, G. G. 케냐 대통령실 국무장관 방한, 1980.4.21.-26.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동부아프리카

MF번호 2010-31 / 10 / 1-82

G. G. Kariuki 케냐 대통령실 국무장관의 1980.4.21.~26. 방한 관련 내용임.

1. 방한 경위

- 김운용 세계태권도연맹 총재 명의 초청

2. 주요 일정

- 대통령(모이 케냐 대통령 친서 전달), 국무총리, 중앙정보부장, 외무부장관 예방
- 세계태권도연맹, 판문점 방문, 울산 현대중공업 및 자동차공장 시찰

3. 방한 결과

- Kariuki 장관은 대통령 예방 시 케냐에 태권도센터를 건립, 아프리카 전역에 태권도를 보급하고자 하며, 동 사업 추진을 위해 김운용 총재의 케냐 방문과 태권도 사범 2명의 증파를 요청함.
 - 이에 대통령은 동의 표명
- 외무부장관은 케냐 외상 방한 초청을 언급하고, 케냐가 국제무대에서 한국을 계속 지지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함.
 - 동 장관은 귀국해서 외상 방한 시기를 결정할 것이며, 케냐에 북한공관 설치를 불허하고 앞으로 한국을 적극 지지하겠다고 다짐함.

Olivares Santana, Enrique 멕시코 내무상 및 Farias, Luis M. 하원의장 비공식 방한, 1980.7.10.-12.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중미

MF번호 2010-31 / 11 / 1-131

Enrique Olivares Santana 멕시코 내무상 및 Luis M. Farias 하원의장의 1980.7.10.~12.
비공식방한 관련 내용임.

1. 방한 경위

- 오히라 일본 총리 장례식에 조의사절로 참석한 후 사적 방한

2. 주요 일정

- 대통령 예방
- 국회의장 초청 오찬 등

3. 방한 결과(멕시코 내무상이 귀국길에 주홍콩총영사를 만나 언급한 내용)

- 방한 시 한국 정부가 베풀어준 예우와 세심한 배려에 사의를 표명함.
- 금번 방한 기간이 짧았으나, 한국의 발전상에 감명을 받았고, 특히 한반도 정세 및 최근 사태 등에 대한 올바른 사정을 파악하는데 유익한 방문이었음.
- 귀국하는 대로 대통령에게 소상히 보고할 것임.

나이지리아 정책전략연구원 대표단 방한, 1980.10.19.-24.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서부아프리카

MF번호 2010-31 / 12 / 1-95

나이지리아 정책전략연구원 대표단의 1980.10.19.~24. 방한 관련 내용임.

1. 방문단

- N. O. Sotoyimbo 나이지리아 정책전략연구원 상임연구관 등 대표단 9명

2. 방한 목적

- 한국의 실제 경험을 관찰·견학하고 향후 이를 나이지리아 정책 수립에 응용

3. 주요 일정

- 국무총리 예방, 외무부 정무차관보, 외교안보연구원장 면담
- 국방대학원, 한국개발연구원 방문, 현대중공업, 한국중공업, 현대자동차, 판문점 시찰

4. 방한 결과

- 양국 간 경험 및 제반 실질 협력관계 증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됨.
- 한국의 경험을 체계적으로 인식함에 따라 나이지리아 경제 및 사회개발계획을 비롯한 제반정책 수립에 참고가 될 것으로 관측됨.
- 체한 중 울산, 창원 등의 산업 시찰을 통해 한국이 과거 여러 가지 난관을 극복하고 이룩한 경제성장에 깊은 관심을 나타내며, 한국의 경제적 저력을 높이 평가함.

Van Waarde, Andries 주Rotterdam(네덜란드) 명예총영사 방한, 1980.3.30.-4.8.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서구

MF번호 2010-31 / 13 / 1-35

Andries Van Waarde 주로테르담 명예총영사의 1980.3.30.~4.8. 방한 관련 내용임.

1. 방한 경위

- 1980년도 외무부의 구주지역 유력인사 초청사업의 일환

2. 주요 일정

- 외무부 구주국장 면담, 구주국장 주최 만찬
- 코트라, 대한상공회의소 방문
- 대한선주(주) 사장 방문 및 사장 주최 오찬
- 해운항만청장 방문, 현대조선소 시찰
- 판문점 시찰, 주한 네덜란드대사, 조양상선 방문 등

Godoy Figueredo, Victor M. 파라과이 외무성 국제기구국장 방한, 1980.7.7.-12.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남미

MF번호 2010-31 / 14 / 1-77

Victor M. Godoy Figueredo 파라과이 외무성 국제기구국장의 1980.7.7.~12. 방한 관련 내용임.

1. 방한 경위

- 주파라과이대사관의 방한 초청 건의

2. 주요 일정

- 외무부차관 예방, 외무부 미주국장 면담 및 미주국장 주최 만찬
- 외무부 국제기구국장 면담 및 국제기구국장 주최 오찬
- 현대조선, 현대자동차 방문, 경주 관광

3. 방한 결과

- Godoy 국장은 외무부 인사 면담 시 특히 자국이 장차 세계 제1의 전력수출국이 될 것임을 강조하고, 향후 양국 간 기술 및 자본합작 부문에서 경제협력 긴밀화를 희망하였으며, 파라과이의 경제개발계획 및 한국 정부와의 협력가능 분야에 관한 자료를 주파라과이대사관을 통해 한국 정부에 송부하겠다고 언급함.
- 외무부차관은 수직면에서 볼 때 전력 자체를 수출하는 것보다 Value-Added Commodity를 수출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하고 파라과이 공업화를 위한 플랜트 건설계획 등을 알려주면 한국민간경제기관과 협조하여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언급함.

SAYAH Mohamed 튀니지 수상실 장관 겸 PSD당 사무국장 방한 초청계획

생산연도 1975-1980

생 산 과 마그레브

MF번호 2010-31 / 15 / 1-91

1975~80년 중 Sayah Mohamed 튀니지 수상실 장관 겸 PSD(데스톨사회당) 사무국장의 방한 초청 추진 관련 내용임.

● 추진 경위

- 1974.4.3. 튀니지 외상은 북한의 튀니지 접촉 시도와 관련, 한국이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Sayah PSD 사무총장을 방한 초청하도록 조언
- 1975.4.30. 길전식 공화당 사무총장 명의 방한초청장을 작성하여 당시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튀니지를 방문 중이던 심흥선 총무처장관을 통해 동인에게 직접 전달
 - Sayah 사무총장은 방한 초청을 수락, 1975.9~10월경 방한할 것을 통보하였으나, 이후 동 방한을 1976.4월경으로 연기
- 1977.7.13. Sayah 사무총장은 주튀니지대사를 통해 10월 중 방한 희망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튀니지 국내사정으로 방한을 1978.4월로 연기
- 1979.4.25. 주튀니지대사는 Sayah 수상실 장관 및 수행원 항공권(1등) 2매를 대한항공 파리 지사에서 구입, 동인들에게 전달함.
 - 5월 항공권 유효기간 만료로 동 항공권을 쿠폰으로 환불받아 주튀니지대사관에서 보관 중임.
- 1980.4.24. 개각으로 Sayah 장관은 건설주택상에 취임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부차관보 방한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북미

MF번호 2010-31 / 16 / 1-34

1980년 중 Michael Armacost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부차관보의 방한 관련 내용임.

1. 1980.4.8.~12. 방한

- 방한 목적
 - 고대아시아연구소, 전국경제인연합회, 미국외교협회 공동주최로 서울에서 1980.4.10.~12. 개최되는 소련의 아시아 정책에 관한 학술회의 참석
- 방한 결과(외무부차관 면담 시 동 부차관보의 발언 요지)
 - F-5E / F 합작 생산계획은 현재 미 국방부에서 검토하고 있는바, 5~6월경에 결정이 날 것임.
 - 미국 정부는 미국제품과의 경쟁과 한국군 증강계획에 차질이 없는 한 파키스탄 및 태국에 대한 한국의 무기 판매에는 반대 없음.
 - 한국 정부는 남북대화에 관하여 북한의 의도를 면밀히 관찰 파악하여 성급하지 않게 진행하는 것이 좋겠으며, 국내 정치 자유화 추진과 함께 내부의 대화 태세를 잘 정비해야 할 것으로 봄.
 - 중국(구 중공)은 한국문제에 대해 소련보다 훨씬 솔직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한국과의 경제 관계가 중국에 유익할 것이라는 것은 인정하나, 북한에 대한 입장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음.

2. 1980.10.16.~21. 방한

- 방한 목적
 - 관할지역 국가 방문계획의 일환
- 방한 결과(외무부장관 면담 시 동 부차관보의 발언 요지)
 - 미국 내 친한 인사들은 현재 한·미 간 가장 관심 있는 문제(김대중 문제를 지칭함이 분명)가 미국이 기대하는 대로 잘 해결되지 않아 미국의 입장을 어렵게 만들지 않기를 바라고 있음.
 - 중국은 대외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으나, 남북문제와 관련하여 한국을 대등한 당사자로 취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
 - 동시에 중국은 현 시점에서 대북한 관계를 위태롭게 할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을 것이 확실함.

Kell, Raymond M. 미국 주Portland 명예총영사 방한, 1980.1.12.-19.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북미

MF번호 2010-31 / 18 / 1-74

Raymond M. Kell 미국 주포틀랜드 명예총영사의 1980.1.12.~19. 방한 관련 내용임.

1. 방한 경위

- 외무부 유력인사 초청계획(주미국대사 건의)의 일환

2. 주요 일정

- 외무부장관, 외무부차관 예방
- 외무부 미주국과 명예영사 활용방안 협의
- 경제기획원, 농수산부, 문교부, 코트라 방문

286

3. 방한 결과(외무부장관 면담 시 동인 언급 요지)

- 한국은 과거 어려운 국난을 극복한 실적이 있으며, 금번의 위기도 슬기롭게 이겨나갈 것으로 확신함.
- 대미 홍보는 각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이 바람직하며, 정치계, 학계 등만 일률적으로 중시하지 않고 농촌지역에서의 농민 상대 홍보도 강조되어야 함.

윤하정 주호주대사 피지 독립 10주년 기념행사 참석, 1980.10.8.-13.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대양주

MF번호 2010-31 / 19 / 1-59

윤하정 주호주대사의 1980.10.8.~13. 피지 방문 관련 내용임.

1. 방문 목적

- 피지 독립 10주년 기념행사 참석

2. 주요 일정

- Cavalevau 피지 외무성 차관보 면담
- 영국 여왕 특사 환영식 참석
- 피지 독립 10주년 기념행사 참석
- 상공장관 면담 및 오찬

3. 방문 결과 및 관찰

- 피지 정부는 과거 식민지 경제체제이며, 설탕 재배를 중심으로 한 농업 및 제탕업 중심임. 이를 탈피하기 위해 외국자본 유치를 통한 공업화, 자유무역지대 설치를 통한 외국투자 등을 위해 노력 중이나 국내시장이 협소하고 대외시장의 지리적 원격성 등으로 인해 제조업 육성이 매우 어려운 실정임.
- 피지 정부는 한국과의 합작 및 투자를 바라고 있으며, 한국으로서도 제한적인 합작기술 원조 등을 제공함이 양국 유대강화에 필요함.
- 한국의 수출 가능 품목은 일상 소비품, 자동차, 경기계(농기계 등) 등이며 한국으로서는 원당, 목재 등을 수입할 수 있을 것이나, 지리적 원격성으로 인해 수송문제가 난관이 되고 있음.

연하구 주네덜란드대사 Beatrix 네덜란드 여왕 즉위식 참석, 1980.4.29.-30.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서구

MF번호 2010-31 / 20 / 1-90

연하구 주네덜란드대사의 1980.4.29.~30. 네덜란드 방문 관련 내용임.

1. 방문 경위

- Beatrix 여왕 즉위식 행사 경축사절

2. 주요 일정

- 경축사절 일행을 위한 Juliana 여왕 주최 만찬 참석
- Beatrix 여왕에게 신임장 제정, 여왕 주최 리셉션 참석
- Beatrix 여왕 즉위식 참석
- 경축사절 및 주재 대사들을 위한 외상 주최 뷔페 만찬 참석
- 여왕 즉위 축하 불꽃놀이 관람

3. 행사 결과

- 연 대사는 4.30. 신임 여왕을 알현, 특사 신임장을 제정하고 한국 대통령의 여왕 즉위에 대한 축의와 안부를 전달함.
 - Beatrix 여왕도 대통령에게 감사와 안부의 말씀을 전하여 줄 것을 당부
- 여왕 즉위식에는 찰스 영국 황태자를 비롯하여 벨기에, 룩셈부르크, 일본, 태국 등에서 온 왕자와 공주, 경축사절, 주재 대사, 국제재판소 판사 등 내외 귀빈이 참석함.
- 대다수 국민이 여왕 폐하의 즉위를 환영하고 왕권의 지속을 지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왕 즉위식에 반대하는 무단거주자들과 이에 동조하는 불량배들의 데모로 경찰관 90명을 포함한 약 200명 정도의 부상자가 발생함.

현시학 주멕시코대사 니카라과 혁명 1주년 기념식 참석, 1980.7.17.-21.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중미

MF번호 2010-31 / 21 / 1-29

현시학 주멕시코대사의 1980.7.17.~21. 니카라과 방문 관련 내용임.

1. 방문 목적

- 니카라과 혁명 1주년 기념식 참석

2. 주요 일정

- 니카라과 혁명 1주년 기념식 참석
- Miguel D'Escoto 외상, 대외무역상, 외무차관 면담

3. 방문 결과

- 니카라과 정부는 온건파 사임 이후 좌파세력이 혁명위를 주도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좌경노선 채택이 전망되나, 외국의 경제원조 등 현실적 필요로 당분간 중도좌경을 유지할 것으로 봄.
- 경축사절단(25개국), 기타 상주 및 겸임대사 참석

4. 건의사항

- 니카라과 외상 방한 초청
- 니카라과 경제사절단 방한 초청 적극 추진
- 대니카라과 무상원조(의약품 등)

최완복 국토통일원장관 Belaunde Terry, Fernando 페루 대통령 취임식 참석 및 에콰도르 방문, 1980.7.25.-8.2.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남미

MF번호 2010-31 / 22 / 1-351

최완복 국토통일원장관의 1980.7.25.~8.2. 페루 및 에콰도르 방문 관련 내용임.

1. 페루 방문(7.25.~30.)

- 경축사절단
 - 최완복 국토통일원장관, 윤찬 주페루대사, 이해순 외무부 의전1과장 외 1명
- 방문 목적
 - Fernando Belaunde Terry 페루 대통령 취임식 참석 및 동국 신정부 요인과의 접촉을 통한 우호 증진 도모
- 방문 일정
 - 페루 기획청 장관 면담, 주페루대사 주최 만찬
 - Bermudez 페루 대통령에게 신임장 제정, Arias 외상 면담
 - 국회 개원식 및 대통령 취임식 참석, Belaunde 대통령 내외 예방 및 대통령 주최 만찬
- 방문 결과
 - 신정부 요인들은 한국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표명함.
 - 금후 페루와의 관계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경제협력, 통상 등 실질적인 분야에서 페루의 필요와 요청에 어느 정도 부응할 수 있느냐가 관건임.

2. 에콰도르 방문(7.30.~8.2.)

- 방문 목적
 - 에콰도르와의 우의 증진 및 북한의 통상대표부 설치 동태 등 북한침투 책동 저지
- 방문 일정
 - Aleman 에콰도르 외상 서리 면담, 교민회 간부를 위한 만찬 참석
 - 한·에콰도르 친선협회 회장단을 위한 조찬 참석
- 방문 결과
 - Aleman 외상 서리는 북한의 집요한 책동에도 불구하고 대북한 불수교 견지는 물론 통상대표부 설치 허가에도 아무런 결정을 내린 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현지 공관의 다각적인 북한침투 저지 활동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이 필요함.

아프리카지역 특사 전두환 제11대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방한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동부아프리카

MF번호 2010-31 / 23 / 1-42

아프리카지역 특사가 전두환 대통령 취임식(1980.9.1.) 참석차 방한함.

1. 우간다

- 방한 인사
 - David Alexander William Nsubuga Barlow 주한 겸임 우간다대사(도쿄 상주)(1980.8.31.~9.6.)
- 주요 일정
 - 농수산부장관, 상공부차관 면담
 - 내무부 새마을 관련 브리핑 참석
 - 수원 삼성전자 방문
 - 코트라 사장 면담

2. 사우디아라비아

- 방한 인사
 - Sheikh Zein A. Dabbagh 주일본 사우디아라비아대사(1980.8.30.)

3. 모로코

- 방한 인사
 - Abdellatif Filali 주영국 모로코대사(1980.8.31.~9.2.)

박충훈 국무총리 서리 오히라(大平) 일본 수상 장례식 참석, 1980.7.8.-10.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일본 / 북미

MF번호 2010-31 / 24 / 1-237

박충훈 국무총리 서리가 1980.7.8.~10. 오히라 일본 수상 장례식 참석차 일본을 방문함.

1. 한국 정부, 1980.6.12. 오히라 일본 수상 서거 관련 발표

- 정부는 모든 국민과 함께 심심한 애도를 표하며 고인의 명복을 기원함.
- 오히라 수상은 한국에 대해 깊은 이해를 가지고 한·일 양국 간 우호 협력관계의 발전을 위해 크게 공헌해왔음.
- 그의 서거는 자유세계를 위해서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음.

292

2. 정부 조위사절단 구성

- 단장: 박충훈 국무총리 서리
- 단원: 박동진 외무부장관, 김정렴 주일본대사, 정일권 국회의원, 채문식 국회의원

3. 한·일 총리회담(1980.7.8.) 시, 일본 측 발언 요지

- 한·일 관계
 - 향후 한·일 관계를 중시, 우호 협력관계를 증진해 간다는 입장에 변함없음.
- 후임 수상 선출
 - 후임 수상 선출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
- 일본 수입축진사절단 방한
 - 사절단 방한 시 이토 수상 대리의 대통령 및 국무총리 앞 친서 휴대 예정

4. 한·일 외상회담(1980.7.9.) 주요 내용

- 한·일 관계
 - 일본 측은 한·일 간 우호협력 증진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을 천명
- 김대중 문제
 - 일본 측은 이 문제가 한국 국내문제이기는 하나 일본 국민의 관심이 크므로 우려된다고 언급
- 일본 언론의 한국문제 편파 보도
 - 한국 측은 편파 보도가 양국 간 친선 저해 요소라고 언급

북한의 대중공·소련 관계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동구

MF번호 2010-32 / 7 / 1-16

1980년 중 외무부가 작성한 북한의 대중국(구 중공)·소련 관계 관련 내용임.

1. 분석

- 북한은 기본적으로는 중국·소련 균형유지정책에 변함이 없다고 보나 1979.1월 월남의 캄보디아(구 캄푸차) 침공 규탄, 9월 하바나 비동맹 정상회담 시 쿠바의 친소련 강경노선에 대해 유고의 온건 노선 지지, 1980.2월 불가리아 개최 공산권 12개국 의회대표자 회의 시 아프가니스탄 지지 거부 등 다소 친중국 성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소련은 사회주의 원칙에 입각한 사회주의 공동체의 단결 강화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중국·소련 분쟁과 관련 소위 자주노선에 입각한 독자적 사회주의 건설을 주장하고 있는바, 북한은 중국 및 소련에 대한 균형 차원에서 소련의 동구 동맹국들과 같이 소련의 강력한 통제 하에 들어가는 것은 회피하고자 노력하는 것으로 보임.
- 군사동맹조약을 구심으로 한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은 북한에 대해서도 소련의 압력과 위협감을 느끼게 했을 가능성이 있는바, 중국은 인도차이나 반도가 소련의 영향권에 들어감에 따라 동아시아에서 유일한 공산국가인 북한의 친소련화 방지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임.

2. 전망

- 북한의 대중국·소련 균형유지 기본 입장은 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나, 중국·소련 분쟁이 더욱 첨예화되어가고 있음에 비추어 북한은 대중국·소련 관계에 있어서 더욱 미묘하고 어려운 입장에 처하게 될 것으로 전망됨.
- 북한이 기본적으로는 대중국·소련 균형유지정책을 취하고 있다 할지라도 소련은 최근 북한 태도에 상당히 불만인 것으로 보이는바, 향후 북한·소련 관계에 대해 보다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독일의 대북한 무기 수출문제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서구

MF번호 2010-32 / 12 / 1-84

1980년 중 독일의 대북한 무기 수출 문제에 관한 내용임.

1. 서독 탄약회사의 대북한 실탄수출 기도

● 개요

- 서독 탄약회사가 제조한 실탄 46만 5천 발이 북한 수출을 위해 운송되던 중 1980.7.29. 서베를린에서 일부 도난된 후, 서베를린 경찰이 실탄 전량을 압류 중이라고 8.8. 주독일대사가 보고함.

● 조치사항

- 8.7. 주독일대사 대리는 서독 외무성 관계자와 면담, 동 실탄은 COCOM(전략물자수출통제위원회) 리스트 상 대공산권 수출금지 품목이며 서독의 대공산권, 분쟁지역 군수품 수출금지 규정에도 위반됨을 지적하고, 특히 동 실탄이 대북한 수출용이므로 한국의 안보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서독 정부의 진상 조사 요구 및 업계에 대한 주의 환기를 요청함.
- 8.7. 주독일대사 대리는 주독일 미국대사관 공사와 면담, 미국이 서방국가들의 대북한 전략물자 수출 기도 방지에 영향력을 행사해줄 것과 동 실탄이 스포츠용으로 가장되어 서베를린 연합군 사령부로부터 반출 허가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함.
- 8.8. 외무부는 주미국대사에게 동 건이 한국 안보에 중대한 위해가 될 수 있으므로 미국 정부에 대해 진상 규명 및 유사사건 재발 방지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도록 지시함.
- 8.8. 주미국대사관은 미 국무부 관계관을 접촉, 상기 지시 사항에 대한 미국 측 협조를 요청함.
- 8.11. 정부차관보는 주한 독일대사를 조치, 동 건이 한국의 안보와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임을 지적, 서독 정부의 철저한 조사와 아울러 유사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강구를 요청함.

2. 1980.12.3. 주서베를린총영사는 제3차 서독 Metal Tooling 테크닉전시회(1980.10.14.~22., 모스크바)에 참가한 Fritz Werner사가 소련 및 북한에 탱크부품 생산설비를 수출했다고 보고함.

- 주독일대사는 Petersen 아주국장을 면담, 진상 규명을 요청하고 여하한 경우에도 생산설비가 북한에 수출되지 못하도록 강력히 촉구함.
- 독일 외무성은 조사 결과 전시된 공구가 북한에 수출된 바 없음을 확인했으므로 Die Neue지 보도는 사실무근으로 본다고 한국 측에 알렸음.

북한·일본 관계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일본

MF번호 2010-32 / 17 / 1-139

1980년 중 북한·일본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김일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은 1980.1.15. 재일본 거류민단 단장 앞으로 아래 내용의 서한을 발송함.

- 주변 정세는 외세 배제에 의한 통일의 새 국면을 개척하도록 요구
- 사상과 이념의 차이를 초월하여 조국통일 모색 필요
- 남북대화에 남북의 정당, 단체, 당국 대표 뿐 아니라 해외동포 참여가 긴요
- 평양, 도쿄 또는 제3국에서 직접 면담하여 통일문제를 협의할 것을 제의

2. “북송 일본인 처 자유 왕래 실현 운동”의 동향

- 최근 활동상
 - 매월 ‘망향’이라는 잡지를 발간하여 활동상을 소개하는 등 계속 활발한 움직임을 보임.
 - 1980.3.19. 오카다 마사가츠 민사당 의원으로 하야금 중의원 결산위에서 구라이시 법무상을 출석시킨 가운데 북송 일본인 처 귀향 문제에 관해 일본 정부가 노력할 것을 촉구하도록 한 바 있음.
 - 오카다 의원은 약 35분간 동 문제에 관해 집중 질의하였는바, 동 단체는 6년 전부터 국회에서 이 문제가 거론되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음.
- 단체의 성격
 - 순수한 인도적 목적으로 설립되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국제승공협회가 뒤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세계일보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함.
- 일본 내 반응
 - 동 단체가 북한의 실정을 폭로하는 등 북한을 특정 대상으로 하고 있어 조총련 등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는바, 북한의 실정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주고 좋은 면만 편파적으로 보도하는 경향이 있는 일본 언론에서는 동 단체의 활동에 대해 거의 보도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여사한 인도주의 운동에 참여하는 인사들은 동 단체의 순수한 목적은 인정하면서도 종교성이 짙은 국제승공협회와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문제 시 하는 경향도 있음.

3. 평양 예술단 공연(1980.6.26., 니가타시 현민회관)

- 참관 인원: 약 1,600명
- 6.27. 조총련과 일본 혁신계 인사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 예술단 환송연이 개최됨.

북한·소련 관계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동구 / 북미

MF번호 2010-33 / 11 / 1-59

1980년 중 북한·소련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북한,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지지 거부

- 1980.2.6.~7.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개최된 공산권 12개국 IPU(국제의원연맹) 대표자 회의에서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을 지지하는 공동성명 채택
 - 북한은 루마니아와 함께 동 공동성명에 대한 지지 서명 거부
- 각국 반응
 - 미국: 소련·북한 간 긴장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
 - 일본: 소련·북한 관계에는 기본적으로 변함이 없으나,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에 간접적 방법으로 소극적 태도 표시
 - 독일: 북한의 친중국(구 중공) 경사로 평가

2. 소련, 북한에 군사기지 요청설

- 1980.2.10.자 Newsweek지는 서방 외교소식통을 인용, 소련이 북한 청진항을 전투함기지로 사용 허가 요청했다고 보도
 - 소련이 청진항을 군사기지로 사용 요청하였는지는 미확인이나, 북한이 소련에 군사기지를 제공할 가능성은 희박

북한·미국 관계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북미

MF번호 2010-33 / 12 / 1-151

1980년 중 북한·미국 간의 주요 관계 동향임.

1. 김일성,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 의사 표명

- 1980.9.14. 평양을 방문한 일본 자민당의 '아시아아프리카문제연구회' 회원 면담 시 김일성의 발언 요지
 - 미국이 현재의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데 응한다면, 북한은 러시아(구 소련) 및 중국(구 중공)과의 군사동맹 조약을 폐기할 용의가 있음.
 - 평화협정 교섭에는 한국이 옵서버 또는 기타 적절한 자격으로 참여 가능
- 김일성 발언 평가
 - 미국·일본·중국 3각 관계의 발전 속에서 미묘한 입장에 처해 있는 북한이 미국과의 직접 접촉을 피함으로써 한·미국 관계를 이간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주한미군 철수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상투적 책략
- 김일성 발언에 대한 미국 측 반응(Armacost 국무부 부차관보 언급)
 - 미국 정부는 한국의 완전하고 동등한 참여 문제를 대북한 접촉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으로 간주
 - 김일성의 발언은 아무런 실질적 내용이 없는 선전 책략으로 보고 있으며, 미 국무부는 이에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음.

2. 참고자료

- 미·북한 접촉에 대한 한국의 대책(1980.8월, 유석열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 미·북한의 접근 의도, 미·북한 관계 전개의 시나리오, 한국 안보상의 문제점, 한국의 대응책
- 미·북한 접근에 대비한 대책(안)(8월, 미주국)
 - 미·북한의 접근 목표, 미·북한 관계 전개 과정 전망, 미·북한 접촉이 한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 대책(대미국 정책, 대북한 정책)
- 북한의 대미 외교
 - 대미 적대관계 강화기(1950~68년), 대미 인민외교 강화기(1969~74년), 대미 접촉 강화기(1974~79년)
- 미·북한 간 접촉·교류 동향(12.23.)

북한 인권에 대한 미국 하원 청문회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북미

MF번호 2010-33 / 13 / 1-92

1980년 중 개최된 북한 인권에 대한 미국 하원 청문회 관련 내용임.

1. 미 하원의 북한 등 아시아지역 공산국가 인권문제 청문회(1980.10.1.)

- 개최 경위: 미 하원 외무위원회 국제기구소위원회(위원장: Don Bonker 의원) 및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공동 주관으로 북한을 비롯하여 중국(구 중공), 베트남, 캄보디아(구 캄푸차) 등 아시아 지역 공산 국가의 인권문제에 관한 청문회 개최

298

2. 참가자

- Bonker 위원장의 사회로 Wolff, Hall, Derwinski, Pritchard 의원 등
- 증인: 행정부를 대표하여 Derian 국무부 인권담당 차관보, Negroponte 아·태담당 부차관보
- 북한 인권 전문가로서 참고 증인: Roy Kim(한국명: 김지태)

3. 북한 관계 증언 요지

- Derian 차관보
 - 북한은 폐쇄되어 있는 권위주의적인 집단 국가로서 교육·직장·거주지역 등 개인의 일거수일투족을 정부가 통제
 - 모든 언론은 국가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도록 통제하고 있으며, 정부에 반대하는 인사들은 구금되거나 재산을 몰수당하고 격리 수용
- Negroponte 부차관보
 - 북한은 폐쇄되고 완전히 통제되어 있어 인권 실태에 대해 구체적 정보를 얻기가 매우 곤란
 - 여행·언론·집회결사의 자유 등 개인 자유 개념은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음이 명백하며, 모든 개인행동 및 인권 통제
- Roy Kim
 - 북한 인권 상황, 북한의 인권 관념, 북한의 인권 개선방안 등에 관해 호의적으로 발언

4. 청문회 평가

-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비교적 짧은 시간만이 할애되어 북한 실태에 관해 충분한 토의가 이루어지지 못함.
- 참고 증인으로 증언한 Roy Kim은 북한 선전으로 일관함으로써 의원들로부터 강력한 반발을 불러 일으켰으며, 동인의 친북 성향 확인

북한 체육계 인사 미국 입국

생산연도 1979-1980

생 산 과 북미

MF번호 2010-34 / 6 / 1-136

1979~80년 중 북한 체육계 인사의 미국 입국 관련 내용임.

1. 북한 탁구팀의 미국 입국 추진

- 주미국대사는 1979.6.7. 미국 탁구협회가 1979.6.27.~7.1. 개최되는 전미 탁구선수권 대회(US Open Table Tennis Championship)에 북한 선수단을 참가 초청하였음을 보고
- 한국 정부는 북한 선수단의 미국 입국에 반대하는 입장을 미국 측에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하였던바, 미 국무부 측은 6.7. 순수한 체육경기 참가 목적의 입국은 거부하기 어렵다는 입장 표명
- 그러나 6.12. 미 국무부 측은 미 탁구협회가 북한 측으로부터 특수한 사정 때문에(due to unique circumstances) 미국 대회에 참가할 수 없게 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주미국대사관에 통보

2. 미국의 북한 농구팀 초청 문제

- 1979.6.27. AABA(미국아마추어농구협회)는 북한 농구팀을 1980.1월 혹은 2월 개도국 농구팀을 위한 미국 순회 경기에 초청(국내 체재비 부담 조건)한다는 내용의 전문을 북한 농구협회에 발송 - AABA 사무총장은 협회가 국무부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으므로 사증발급에 문제가 없다고 언급
- 7.16. 미 국무부 관계관은 AABA가 국무부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 무근이라고 부인 하면서 아래 견해 통보
 - 현 시점에서 북한 농구팀 초청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미국 외교에 도움이 되지 않음.
 - 협회는 지난 5월 세계농구대회에서 한국이 중국(구 중공)·러시아(구 소련)·북한을 모두 초청 하였으나 공산권의 모든 국가가 이에 불응한 점을 고려하여야 함.
- 북한 측은 8월 AABA가 보낸 전문에 아래 회신
 - 북한 여자 농구팀의 경기 일정상 동 초청을 수락할 수 없음을 유감으로 생각하며, 추후 AABA 측과의 접촉이 재개되기를 희망

3. 미국의 북한 권투 선수 초청설

- 1979.8.3.자 국내 언론은 미국 아마추어 경기연맹 권투위원회가 1980.1~3월 중 미국에서 개최 되는 USA 월드 국제권투대회에 북한 선수 11명을 초청할 예정이라고 보도
 - 1979.12월 국무부 담당관이 확인한바, Surkein 권투위원회 위원장은 북한 측이 초청되지 않았다고 언급
- 참고자료: 미·북한 간 문화교류 개시 보도 경위 및 배경

4. 북한의 미국 개최 세계체조선수권대회 참가

- IGD(세계체조연맹)이 1979.12.3.~9. 미국 텍사스주 Fort Worth에서 개최되는 1979년도 세계 체조선수권대회에 북한 선수단 27명의 파견 계획 통보
- 북한 선수단은 미국 입국 사증을 신청하지 않아 대회 참가 무산

5. 북한 올림픽위원회 대표단, 미국 방문(1980.2.3.~22.)

- 대표단 구성: 김유순 북한 IOC(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 박무성 북한 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 외 3명
- 방문 목적: 미국 레이크 플래시드에서 개최되는 제82차 IOC(국제올림픽위원회) 총회 및 동계올림픽 개막식 참석 등
- 주요 일정
 - 2.8. 레이크 플래시드 도착
 - 2.9.~12. IOC 회의 참석
 - 2.13. 제13차 레이크 플래시드 동계올림픽 개막식 참석
 - 2.14.~22. 뉴욕 체류
 - 웨이커 단체인 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 대표 면담, 웨이커 인사의 방북 초청
 - 국무부 한국과장 면담 주선을 요청하였으나, 국무부 측은 면담 요청 거절
 - 2.22. 폴란드 바르샤바 향발

북한사절단 동남아 및 서남아 순방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동남아 / 서남아

MF번호 2010-34 / 7 / 1-176

1980년 중 북한사절단의 동남아 및 서남아 순방 관련 내용임.

1. 북한 정부대표단의 아시아 순방

- 김경련 부총리를 단장으로 한 북한 정부대표단이 말레이시아(1980.8.21.~26.), 파키스탄(8.27.~30.), 네팔(8.31.~9.3.)을 공식방문한 데 이어, '주체사상에 관한 아시아지역 토론회'에 참석차 인도를 비공식방문(9.6.~7.)
- 한국 국내 10·26 사태 이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순방 외교의 일환
 - 한국 국내사태 비난 등을 통해 북한이 통일 노선에 지지를 확보하려는 정치적 기도는 좌절
 - 3개국 수뇌와 파키스탄 농업부장관 등의 방북에 원칙적으로 합의
 - 말레이시아와 교역을 확대하기로 한 것 등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관찰

2. 황장엽 최고인민회의 의장의 인도, 방글라데시 및 미얀마(구 버마) 방문

- 황장엽 최고인민회의 의장이 4명의 수행원을 이끌고 인도(1980.7.23.~8.1.), 방글라데시(8.1.~7.), 미얀마(8.7.~13.)를 방문
- 방문 성과
 - 인도: 북한의 통일 노선에 대한 지지 획득에 실패했으나, 전례 없는 환대를 받았을 뿐 아니라 9월 인도에서 개최되는 '아시아지역 주체사상 국제토론회' 준비 작업 마무리
 - 방글라데시와 미얀마: 북한과의 친선관계 발전과 비동맹 및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대북한 지지를 약속(미얀마) 받음.

3. FAO(유엔식량농업기구) 미국견학단의 태국 방문

- FAO의 TCP(기술협력계획)에 의거, 북한의 미곡생산기술견학단이 미국경작분야 견학 목적으로 태국(1980.12.19.~27.)을 방문
- 방문 기관
 - 중앙농업센터, 농무부 미작연구소, 마작시험장 등

4. 김충일 외교부부장의 인도, 말레이시아 및 인도네시아 방문(1980.11.27.~12.22.)

- 인도 비공식방문(11.27.~12.3.)
 - 1981년도 뉴델리 비동맹회의 및 인도·북한 간 현안 문제 협의
 - N. Krishnan 외무부 유엔담당 차관보 등 면담



- 말레이시아 방문(12.4.~21.)
 - AALCO(아시아아프리카법률자문기구) 총회 참석
 - Zakaria 외무차관과 공식 회담 및 만찬
- 인도네시아(12.13.~18.), 싱가포르(12.21.~22.) 방문
 - 인도네시아: 말리크 부통령, 목타르 외무부장관, 외무부 정무차관보, 아·태국장, 국제기구국장 면담

북한사절단 및 인사 중남미 순방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중미 / 남미

MF번호 2010-34 / 8 / 1-112

1980년 중 북한사절단 및 인사의 중남미 순방 관련 내용임.

1. 주베네수엘라 겸임 북한대사 신임장 제정

- 이인춘 주베네수엘라 북한대사(쿠바 상주)는 1980.6.11. Herrera Campins 베네수엘라 대통령에게 신임장 제정
 - 1974.10.28. 베네수엘라·북한 수교 이래 처음으로 주베네수엘라 북한대사로서 신임장 제정
 - 북한은 이를 계기로 사절단 파견 및 한국 국내사태를 악용한 선전공세 등 중남미 국가에 대한 침투 책동 강화 전망

2. 김경련 북한 부총리, 중미 순방

- 김경련 북한 부총리가 2명의 수행원을 대동하고 니카라과(1980.7.18.~21.), 가이아나(7.26.~8.6.), 자메이카(8.9.~13.) 방문
 - 니카라과: 혁명 1주년 기념식 참석
 - 가이아나: 대통령, 총리 등 고위층 면담, 북한·가이아나 양국 간 협력 강화 등 협의
 - 자메이카: 외무부장관 면담, 양국 간 협력 강화 문제 협의

3. Trade and Diplomatic Team, 중미·카리브지역 순방

- 최수현 등 5명의 북한 요원, 중미·카리브지역 국가 순방
 - 1980.7월말부터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를 순방, 수교 준비 책동
 - 8월초 카리브지역 국가(도미니카공화국,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그레나다, 자메이카) 순방. 특히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방문 시 수교를 제의하였으나, Milton Cato 수상은 거절함.

4. 북한 요원, 중남미 국가 방문

- 한주삼 등 북한 요원 3명, 1980.8.21.~9.1. 파나마 방문, 김일성 선전 및 주체사상 강연회 등 선전 책동을 벌이려다가 취소된 후 에콰도르,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방문, 북한 선전 활동 전개
- 지용호 등 북한 요원 2명, 9.4. 쿠바 하바나로부터 파나마에 입국, 친북 단체들과 접촉하여 제16차 북한 노동당 전당대회에 대한 축전 발송 교섭 등 활동 전개
- 김두일 등 북한 요원 4명, 9.26.~10.2. 베네수엘라 소도시에서 문화전시회 개최 후 10.8. 파나마 입국
 - 9.26. 로스안데스대학을 방문, 김일성대학과의 기술문화교류협정 체결 제의 및 동 대학 부총장의 방북 초청
- 이홍렬 외 2명의 북한 요원이 콜롬비아에서 전시회 개최 후 10.24. 파나마 항발

Mohamed Hosni MUBARAK 이집트 부통령 북한 방문, 1980.1.10.-13.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중동

MF번호 2010-34 / 9 / 1-108

Mohamed Hosni Mubarak 이집트 부통령이 중국(구 중공) 방문(1980.1.6.~10.) 후 1980.1.10.~13. 북한을 방문함.

1. 방문 목적

- 군사적 원조 문제 협의
 - 이집트 군 장비의 대부분이 소련제이며 중국, 북한 측이 부품 지원
- 중동 정세 설명, 방문국과의 정치적 유대 강화 및 경제협력 방안 협의

304

2. 주요 일정

- 1.10. 평양 도착, 환영 연회 참석(인민문화궁전)
- 1.11. 박성철 부주석과 회담, '낙원의 노래' 공연 관람
 - 쌍방 정세 설명, 친선 협조 관계 발전 및 관심사에 대한 의견 교환
- 1.12. 만경대 방문, 김일성 면담 및 오찬
- 1.13. 평양 출발

3. 방문 시 논의 사항

- 북한 조종사의 리비아 철수 문제, 이집트·북한 군사협력 문제
- 중동평화협상 및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이집트·북한 입장

4. 방북 결과 평가

- 이집트 측 입장
 - 중동평화문제 관련, 아랍국가의 대이집트 제재에 대한 외교적 대처의 일환으로 중국, 일본, 미국 등 순방 중의 부수적인 방문인바, 중동평화협정에 대한 북한 측 지지 확보
 - 북한의 군사, 경제적 지원 획득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 분석
- 북한 측 입장
 - 동 방문을 계기로 북한의 통일정책에 대한 지지 획득
 - 한국의 대이집트 관계 증진 견제 목적으로 판단

5. 참고자료

- 무바라크 이집트 부통령의 중국 및 북한 방문(I)(1980.1.5.)
- 이집트 부통령 북한 방문 종합(국외 일일정세)(1.15.)
- 무바라크 이집트 부통령의 중국 및 북한 방문(II)(1.15.)
- 무바라크 이집트 부통령의 중국·북한 방문(종합)(2.7., 외무부 중동국)

일본 자민당 아시아아프리카 문제연구회 의원단 북한 방문, 1980.9.8.-18. 전2권 (V.1 2-4월)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일본

MF번호 2010-34 / 10 / 1-154

일본 자민당 아시아아프리카 문제연구회 의원단의 1980.9.8.~18. 북한 방문 관련 내용임.

1. 일본 자민당 아시아아프리카 문제연구회 의원단의 방북 결정

- 1980.2.14. 일본 자민당 내 아시아아프리카연구회는 미하라 아사오 의원(전 방위청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의 방북을 결정

2. 방문 배경 및 목적

- 최근 아프가니스탄사태 등 국제 정세 변화, 남북대화 재개 등 한반도 정세 변화
- 북한의 실정 직접 파악

3. 방문단 구성

- 당초 미하라 의원을 단장으로 17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으나, 추후 국회의원 9명으로 변경
- 미하라 의원 방북 포기 후 후지이 가츠시 의원이 단장 수임

4. 방북 시기

- 1980.3.11.부터 방북하고자 했으나, 북한 측으로부터 방문 일정 회답이 늦어져 방문 시기 연기

5. 미하라 의원의 방북 재고 시사 및 방북 포기

- 1980.2.29. 마이니치신문은 미하라 의원이 한·일 의원연맹 일본 측 간부와 회담 시 “본인의 방북이 한·일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면 신중히 재고할 수밖에 없다”라고 발언하여 동인의 북한 방문 포기 시사
- 3.5. 요미우리신문은 미하라 의원이 “자신의 방북이 각 방면에 염려를 끼치는 것 같아 이번 방북은 단념하였다”라고 보도

6. 방북 계획 중지

- 1980.4.15. 동 연구회는 4.28.부터 북한에 방문단을 파견할 예정이었으나, 방문 일정 조정이 여의치 않아 계획을 중지하기로 결정

7. 참고자료

- 청와대 민정수석과 일본 외교평론가 가세 히데아키 면담 요약(1980.2.21.)

일본 자민당 아시아아프리카 문제연구회 의원단 북한 방문, 1980.9.8.-18. 전2권 (V.2 8-11월)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일본

MF번호 2010-34 / 11 / 1-208

일본 자민당 아시아-아프리카 문제연구회 의원단의 1980.9.8.~18. 북한 방문 관련 내용임.

1. 이스루기 미치유키 의원 방한(1980.9.5.~6.)

- 자민당 동 연구회 의원단의 일원으로 방북하는 이스루기 의원은 방한 중 외무부장관 대리 및 국무총리를 면담하고 아래 입장을 표명
 - 일본의 전두환 대통령 신체제에 대한 전폭 지지 의도 표명 예정
 - 정권 담당 정당으로서 일본과 인접한 북한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타진 필요
 - 특히 북한의 극동 안정,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등에 관한 입장 타진

306

2. 방북 일정

- 9.9. 평양 도착, 대외문화연락협회(대문협) 리셉션 참석
- 9.10. 대문협과 회의, 김일성 생가(만경대) 견학, 평양 지하철 시찰
- 9.11. 대문협과 회의, 소년궁전 견학, Health Center 시찰
- 9.12. 지하철 전차 공장, 집단농장 시찰, 금강산 관광(원산 경유)
- 9.14. 김일성과 오찬 면담, 서커스 관람
- 9.15. 정부 관계자와 교섭(무역 관계), 백화점 쇼핑
- 9.16. 평양 출발

3. 방북 대표단과의 오찬 면담 시 김일성 발언(1980.9.14.)

- 발언 요지
 - 대미 평화협정 체결과 동시에 북한의 대중국(구 중공)·소련 상호방위조약 폐기 용의
 -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및 교차승인 반대
- 김일성 발언 평가
 - 주한미군 철수를 노리는 한편, 대미·대일 이간을 목표로 한 책략
 - 제35차 유엔총회 개막(1980.9.16.)과 때를 맞춘 위장평화선전의 일환으로서 특히 비동맹을 겨냥

4. 방북 결과

- 대표단 구성(단장): 후지이 가츠시 의원



- 김일성 면담 시 김일성 발언 요지
 - 남북한 긴장 문제: 북한의 병력은 현재 30만 명이며, 남북한 간의 긴장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모략임.
 - 남북한 관계: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 반대
 - 노동당 대회: 노동당의 대내외 정책 검토 예정
 - 일·북한 관계: 정치관계는 모르나 경제관계는 상호 노력하면 이익이 될 수 있음.
- 김정일 후계 문제: 북한 측 간부들은 김정일의 후계를 시사하면서 분위기 조성에 노력
- 일본 대표단의 시찰 및 견학 평가
 - 집단농장의 농가 방문: 대표단 방문을 대비하여 급히 준비한 것으로 보임.
 - 백화점 방문: 물건의 품질이 그렇게 좋지 않음.
 - 소년궁전 등 과외활동 시설: 사상교육 등이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부모를 노동력으로 동원하는 동안 자식들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임.

미국인사 북한 방문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북미

MF번호 2010-34 / 12 / 1-76

1980년 중 미국 주요인사의 북한 방문 관련 내용임.

1. Thomas Reston 전 국무부 부대변인 방북(1980.9.2.~9.)

- 방북 경위: 북한 측이 People's Korea라는 북한 신문 도쿄 특파원을 통해 방북 초청
- 방북 목적: 프리랜서 자격으로 김일성 회견
- 국무부 입장: 동인의 방북이 국무부와는 전혀 무관한 개인 자격 활동이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발표할 예정
- 주요 일정
 - 김일성 생가(만경대), 조선혁명박물관, 김일성 종합대학, 평양 여자고등중학교 방문
 - 김영남 노동당 국제부장 면담

2. 웨이커 교단 소속 America Friends Service Committee 회원 방북(1980.9.2.~13.)

- 방북 경위: 1980.2월 김유순 북한 IOC(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과 한시해 주유엔대표부 북한대사는 웨이커 교도의 방북 초청 의사 표명
- 방북 목적: 미·북한 간 이해증진, 긴장 해소를 위한 비공식 교류 장려
- 주요 일정
 - 김영남 노동당 국제부장, 현준극 노동당 중앙위원 면담, 남포 소재 공장, 집단농장 시찰, 김일성 종합대학, 만수대 혁명박물관, 김일성 생가(만경대) 방문
 - 김영남 및 현준극 발언 요지
 - 북한의 비동맹 노선, 주체사상 강조
 - 한반도 긴장 완화: 남북대화 성공 여부의 관건인바, 이를 위해 양측 10만 명 이하 감군, 외국장비 도입 중지, 평화협정 체결 주장
 - 남·북한 관계: 잠정적 방안으로 고려연방제 주장
 - 미·북한 관계: 평화협정 체결(한국은 필요시 옵서버로 참가) 주장
 - 웨이커 교도 측 방북 소감 및 북한 인사 초청 계획
 - 북한의 비약적인 발전상과 평화통일 노선을 찬양, 전형적인 북한 선전 되풀이
 - 4~6명의 북한 학자를 방미 초청하는 데 대해 북한 측 원칙적 동의(방문 시기 등 구체적 사항은 논의되지 않음)

북한·일본 경제 관계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일본

MF번호 2010-34 / 13 / 1-133

1980년 중 북한과 일본 간의 경제 관계 동향임.

1. 북한의 대일본 채무 불이행 문제

- 채무 지불 기한 연장 요청
 - 1980.6월 북한 측은 1980.6.30.자로 만기되는 대일본 채무(약 90억 엔) 상환 기간을 수일간 연기해 줄 것을 일본 채권단 측에 요청
- 지불 전망
 - 금번 지불분(90억 엔)은 다소 기일이 늦어지는 일이 있더라도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장기적으로 채무를 기일 내 이행할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

2. 일·북한 무역대표부 설치 문제

- 일본 국회의원, 일·북한 무역대표부 설치 및 대북한 관세장벽 철폐 제안
 - 1980.1.31. 다가가 일본 중의원 의원은 예산위원회에서 “평양에 일본의 무역대표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
 - 2.5. 노사가 의원은 “일·중 무역의 예를 따라, 일·북한 국교 정상화 이전이라도 북한과의 관세장벽 철폐를 추진하는 것이 어떠한가?”라는 의견 제시
- 일본 정부 측 답변
 - 2.5. 오히라 수상은 “북한과의 관계 강화에 관하여는 한국 측도 이해 가능하고 납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서서히 추진하는 것이 건실한 방법”이라고 언급
 - 2.5. 기우치 외무성 아시아국장은 “일·북한 관세장벽 철폐 문제에 관해서는 검토하겠다”라고 답변

3. 동아시아 무역연구회 발족

- 1980.7.29. 대형 상사 및 기업 21개사를 중심으로 재계 인사, 정치인 참여 하에 발기 총회 개최
- 목적: 한국을 비롯한 중국(구 중공), 대만(구 자유중국), 북한 등 동아시아지역을 대상으로 무역, 산업, 자원에 관한 자료수집, 무역 증진 등 경제 제후 추진에 관한 조사 연구, 경제인 상호교류와 연구 간담회 개최 등
 - 실제로는 일본과 북한 간 경제 관계 정상화가 주목적

일본·북한 간 민간어업협정의 연장

생산연도 1979-1980

생 산 과 일본

MF번호 2010-34 / 14 / 1-99

1979~80년 중 일본과 북한 간의 민간어업협정의 연장 관련 내용임.

1. 일·북한 민간어업 잠정합의서

- 명칭: 일·조 어업 잠정 합의(민간 간 합의)
- 유효기간: 9개월(1977.10.1.~78.6.30.)
- 1978.6.30. 2년 연장에 합의(1978.7.1.~80.6.30.)
- 주요 내용: 경제수역(군사경계수역 제외) 내 200톤 미만 일본어선의 조업 인정

310

2. 일·북한 민간어업협력 잠정합의서 재연장 교섭

- 동 잠정합의서의 재연장 교섭을 위해 일·북한 우호촉진의원연맹 대표단(단장: 구노 의원)이 1980.4.29.~5.6. 북한 방문
- 대표단 구성: 일·북한 우호촉진의원연맹 의원 7명, 연맹 사무국 직원 3명, 요시이 일·조 어업 협의회 회장 등 15명
- 활동 내용: 김영남 북한 노동당 국제부장, 현준국 노동당 국제부 부부장 면담, 북한 대외문화연락 위원회와 회담
- 주요 협의 사항
- 1980.5.5. 일·북한 민간어업 잠정합의서 기간 연장(1980.7.1.~82.6.30.)에 합의
· 조건: 1981년부터 북한 200해리 수역 내 어획량 할당(1981년도 할당 3만 3천 톤), 북한의 '조업허가증'을 받은 어선만 조업 가능
- 북한 대외문화연락위원회 대표단 방일 초청
- 일본 측의 일·북한 민간항공기 임시 노선 개설 제의에 대해 북한 측은 "당장 실현은 어려우나 일본 측의 구체적 제안이 있으면 검토하겠다"라고 답변
- 북한 경제수역에 있어서의 외국인과 외국선, 외국항공기의 경제 활동에 관한 규정(일본어 가역본)(1979.8.12. 공포, 1980.1.1. 발효)
- 동 규정 실시 이후 북한 경제수역에 입어하고자 하는 외국어선은 북한의 자원보호 감독기관에 어로 기간, 어로 장소, 어선 척수, 어종별 어획량 및 총 어획량 등을 기입한 어업허가 신청서 제출 의무

일본의 대북한 전략물자 수출문제

생산연도 1979-1981

생 산 과 일본

MF번호 2010-34 / 15 / 1-280

1979~81년 중 일본의 대북한 전략물자 수출문제 관련 내용임.

1. 문제의 발단

- 1979.11.25. 일본 산케이(産經)신문은 북한이 1975년 이후 일본으로부터 소형 고속정 레이더, 군용 무전기 등 전략물자의 도입을 점차 증대시키고 있다고 보도
- 1980.3.29.~30. 한국 일간신문은 도쿄발 합동통신 보도를 인용, “북한, 선박용 레이더 등 군수물자 일본에서 대량 구입” 제하로 보도

2. 일본 정부의 설명 내용 및 입장

- 신문 보도 내용과 실제 수출 품목 및 수량과는 차이가 많음.
- 대북한 수출 품목은 COCOM(전략물자수출통제위원회) 리스트에 해당되지 않으며, 순수한 민수용으로 제작된 것이기 때문에 수출됨.
- 일본 정부로서는 무기 금수 3원칙 및 COCOM 절차를 엄격히 운영하고 있음.
 - 무기 금수 3원칙: ① 공산권 ② 유엔이 병기의 수출을 금지하는 국가 ③ 국제분쟁의 당사국 또는 그러한 염려가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무기의 수출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원칙

3. 한국 정부의 조치

- 1980.4.1. 이문용 외무부차관(장관 대리)은 스노베 주한 일본대사에게 대북한 전략물자 수출 자제 촉구
 - 일본의 대북한 전략물자 수출 문제에 관해 한국 정부의 유감의 뜻을 표명하고, 이러한 물자는 북한의 전력 증강에 기여하고 있음은 물론 간첩 납파용 물자로도 사용되고 있음을 설명하면서, 일본 측의 적극 자제를 촉구
- 스노베 일본대사의 반응
 - 일본 정부는 군용 및 COCOM 리스트 품목의 수출을 통제하고 있으나, 민수용을 군수용으로 전용하는 범위를 정하기가 어려움.
 - 또한 일본 내에는 한국에서와 같은 긴박감이 없어 행정적 권한으로 대북한 전략물자 수출을 통제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그러나 일본 제품이 납파간첩용으로 사용되었다면 유감이며, 한국 정부의 입장을 본국에 보고 하여 한국 정부의 뜻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함.



4. 참고자료

- 북한의 대일 전략물자 도입 실태(1979.11.27., 중앙정보부)
- 일본의 대북한 전략물자 수출(11.28., 아주국)
- 북한 간첩이 소지한 일제 물품에 관한 자료(12월, 중앙정보부)

북한 주체사상 라틴아메리카 세미나. Panama City, 1980.4.17.-19.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중미

MF번호 2010-34 / 16 / 1-54

1980.4.17.~19. 파나마시티에서 북한 주체사상 라틴아메리카 세미나가 개최됨.

1. 참가자

- 중남미 25개국 40여 명의 친북한 인사
- 장세국 등 북한 요원 7명은 세미나 참석 및 준비를 위해 파나마에 입국, 체류함.

2. 세미나 조직위원회 구성

- 위원장: Josef Aguilar(코스타리카 소재 주체사상 라틴아메리카연구소 소장)
- 위원(13명)
 - 가이아나: Roberto Corvin 국무장관
 - 니카라과: Ernesto Cardenal 문교부장관
 - 멕시코: Adriana Lombardo 멕시코국립자치대학교 총장, Genaro Carnero Checa 멕시코 주재 라틴아메리카 신문기자협회 회장
 - 온두라스: Juan Almendares 온두라스국립대학교 총장
 - 베네수엘라: Jose Rafael Nunuz 카라카스중앙대학교 철학과 과장
 - 에콰도르: Manuel Agustin Aguirre 전 Quito 대학교 총장
 - 콜롬비아: Gilbeato Zapata 전 국회부의장
 - 파나마: 파나마대학교 인문대 학장, 전 입법위원, 아동병원 원장, 라틴아메리카 작가연맹 대표, 입법위 사무장

3. 주요 내용

- 조직위원장 개회사, 파나마대학교 총장 축하, 코스타리카 및 가이아나 대표 등 연설
 - 주체사상에 대한 지지 및 찬양, 김일성의 지도력 찬양
- '평양 및 아동복지'에 대한 선전 영화 2편 상영
- 김일성 및 대파나마 감사 메시지와 미국의 신파나마운하조약 불이행 비판 결의문 채택

북한 주체사상 아시아지역 세미나. New Delhi, 1980.9.6.-7.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서남아

MF번호 2010-34 / 17 / 1-23

1980.9.6.~7. 뉴델리에서 북한 주체사상 아시아지역 세미나가 개최됨.

1. 참가자

- 인도·북한 친선협회 주체사상위원회 주관
- 북한 등 20여 개국 대표 80명(평양에서 파견된 인원 12명 포함)
 - 지창익 김일성대학 총장(단장), 사회과학원 부원장(부단장), 김덕수 대외문화연락위원회 국장 등
- 인도인 노무자, 농민 등 800여 명 등

314

2. 주요 내용

- 동 세미나는 N. D. Tiwari 인도 기획장관이 개최한바, 동 장관은 개회사에서 인도의 독립은 자립에 기초한 투쟁을 통해 성취된 것이며, 자립의 목표는 네루 수상에 의해 설정되었고 그 후 간디 수상에 의해 효과적으로 추구되어 왔다고 언급함.
- S. S. Mohapatra Congress(I) 사무총장은 한국 국내사태 및 미군의 한국주둔을 맹렬히 비난함.

3. 아시아지역 주체사상 연구센터 설립

- 동 세미나에서 뉴델리에 아시아지역 주체사상 연구센터를 설립하기로 결정함.

조선자주평화통일 국제연락위원회[조자통]의 유엔NGO(비전문기구) 등록 추진

생산연도 1980-1982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10-34 / 18 / 1-164

1980~82년 중 조선자주평화통일 국제연락위원회(조자통)의 유엔 NGO 등록 추진 관련 내용임.

1. 조자통의 NGO 등록 추진 현황(1980.3.19. 기준)

- 추진 및 결과
 - 1979.11.23. 유엔사무총장 앞 서한으로 유엔과의 자문관계 설정 요청
 - 1980.1.22. 유엔과의 자문관계 설정 재신청
 - 사무국 NGO 담당관은 신청 자격이 없다는 회신 송부
- NGO 등록 절차
 - 경제사회이사회 NGO 위원회(1981.2월 개최 예정)의 컨센서스를 거쳐 경제사회이사회 승인
- NGO 위원회 구성(13개국)
 - 친한국(5): 미국, 영국, 프랑스, 칠레, 스웨덴
 - 친북한(4): 이라크, 쿠바, 우크라이나, 소련
 - 중립(4): 가나, 인도, 케냐, 파키스탄

2. 파리 소재 '북한 지지 국제연락위원회'의 1980년도 사업계획

- 주한미군 철수 및 미·북한 간 평화협정 체결 촉구
- 1980년 가을 북한 지지 제3차 세계대회 개최
- 유엔이 동 기구를 비정부 간 국제기구로 인정하도록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하기로 결정

조선자주평화통일 국제연락위원회[조자통] 구주지역 회의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서구

MF번호 2010-34 / 19 / 1-92

1980년 중 개최된 조선자주평화통일 국제연락위원회(조자통)의 구주지역 회의 관련 내용임.

1. 북한 통일 지지 국제회의(1980.5.17., 룩셈부르크)

- 참가자
 - 영국, 독일,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그리스, 튀르키예 등 7개국의 친북한 인사
- 의제
 - 한반도 정세 및 통일문제
- 회의 결과
 - 전 세계 인민에 보내는 호소문과 미국 의회에 보내는 편지 및 남한 청년에게 보내는 편지 채택

2. 국제위원회 회의(1980.7.11.~12., 로마)

- 최근 한국사태 및 한반도 통일에 관한 서구 국가 회합 발기대회
- 주관: 조자통 국제위원회 및 동 이탈리아위원회
- 참가자
 - 프랑스, 핀란드, 서독, 영국, 노르웨이, 이탈리아, 그리스 등 15개 서구 국가 조자통 지부대표 등 35명
 - 북한대표 2명(노동당 중앙위 국제부 과장, 대외문화연락위 국장)
- 회의 결과
 - 결의문 채택: 5월 이래 한국사태와 군사독재 비난, 김대중 등 정치범 석방 요구, 미군철수 및 전 세계의 한국지원 중지 요구, 군사독재 존재하는 한 남북대화 실현 곤란, 유엔 인권위원회 및 회원국들에 대한 결의문 발송(한국 인권침해조사단 파견 요구 등)

1979.10.26. 및 12.12. 사태 이후 북한 동향

생산연도 1979-1980

생 산 과 일본

MF번호 2010-34 / 20 / 1-98

1979년 중 10·26 및 12·12 사태 이후 북한 동향 관련 내용임.

1. 북한의 남침 준비설

- 일본 외무성 측은 1979.12.22. 도쿄를 방문한 외무부 직원에게 최근 북한의 남침준비에 관한 첩보를 알려줌.
 - 일본 측은 북한이 지금을 남침 기회로 오판할 가능성이 있음을 뒷받침할 독자적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1979년 말부터 1980년 정월에 걸친 시기가 가장 위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일본 측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 한국이 할 수 있는 만전대처가 바람직하며, 일본 측 정보를 결코 소홀히 다루지 말 것을 당부함.

2. 일본 공안당국의 북한첩보 분석

- 1980.1.17. 오히라 일본 수상에게 보고된 일본 공안당국의 북한 동향 관계 첩보 요지
 - 북한은 10·26 사태 이후 기계화 부대의 증강, 주요 시설의 지하화 등 대남 무력공격 준비를 진행하는 한편, 남침 시 미군개입을 저지하기 위해 미국의 여론을 겨냥한 대미 평화공세와 의회인사 교류 등을 획책하고 있음.
 - 북한의 모험에 대한 중국(구 중공)·소련의 Leverage가 상실된 채 미국은 중동사태에 묶여 유사시 한국에 파병치 못할 것인바, 북한은 행동시기를 1980년 가을로 잡고 2월경부터 특수 부대에 의한 한국의 내부교란 활동을 개시할 것임.
- 첩보에 대한 분석
 - 1979년 말부터 계속 입수되고 있는 북한의 남침 위기설이 중국으로부터 온 첩보라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의 위기설 유포 배후에는 이란 및 아프간사태로 야기된 미 군사력의 분산과 동북아의 힘의 공백을 경고하고, 미국의 군사적 보완조치를 촉구하려는 저의가 숨어 있을 가능성
 - 중국 출처의 이 같은 위기설을 일본 측이 계속 유포하고 있는 것도 소련 극동군 증강에 따른 위협에 대비, 미·중·일 군사협력 관계를 촉진하고자 하는 저의가 깔려있을 가능성
 - 본 첩보의 일반적 정보가치는 인정되나, 북한의 행동시기에 대한 정보근거가 희박하며 북한의 전쟁모험 기도는 계속 주시를 요함.

북한 노동당 제6차 전당대회. 평양, 1980.10.10.-14. 전3권 (V.1 기본문서)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정보2 / 국제연합

MF번호 2010-35 / 1 / 1-139

1980.10.10.~14. 평양에서 개최된 제6차 북한 노동당 전당대회 관련 반박홍보 및 결과분석 내용임.

1. 김일성 발언 반박 홍보(1980.10월)

- 각 재외공관은 김일성의 통일문제 발언에 대한 서울 측 남북조절위 반박성명을 주재국 정부 및 내·외신 언론기관에 배포하는 동시에 한국 측 입장을 설명함.
- 북한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제안 내용의 허구성, 기만성, 비현실성 등을 설명하고 특히 북한이 진정으로 평화적 통일을 희망한다면 북한이 일방적으로 중단한 남북대화 재개에 조속히 응할 것을 촉구함.

318

2. 결과 분석(1980.10월)

- 김정일의 후계 지위 공식화가 최대의 목표 내지 과제
 - 10.14. 당직 개편에서 김정일은 당 중앙위 비서국 제1순위의 비서(총 9명), 당 중앙위 정치국 상무위원회 5명의 위원 중 4순위 위원, 당 중앙위 정치국 4순위 위원(총 19명), 당 중앙위 군사위 김일성, 오진우에 이어 3순위 위원 등 4개 요직에 공식 임명되어 김일성의 후계자로 사실상 그 지위를 확고히 함.
- 대외관계 및 대남관계 중점 목표와 과제
 - 비동맹 내 지도적 지위 적극 도전 포석
 - 통일문제 및 국내정세 이용 획책
- 대내분야는 상기 목적을 위한 대회 개최의 부수 과제
 - 특히 3대 혁명 성과 찬양은 곧 김정일의 업적 찬양
 - 경제성장 과장 과시 및 1980년대 경제건설 10대 목표 제시

북한 노동당 제6차 전당대회. 평양, 1980.10.10.-14. 전3권 (V.3 각국 언론보도 내용)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정보2 / 국제연합

MF번호 2010-35 / 3 / 1-180

1980.10.10.~14. 평양에서 개최된 제6차 북한 노동당 전당대회 관련 각국 언론보도 내용임.

1. 아주지역

- 인도네시아 Merdeka(1980.10.6.): 동 전당대회에서 김정일 후계문제가 결정될 것이며 김일성은 모택동과 스탈린도 감히 시도하지 못했던 공산왕조 건설을 기도하고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함.

2. 일본

- 아사히신문(1980.10.8.): 평양특파원발 7면 톱기사
 - 동 대회에서는 당 인사와 관련하여 김일성의 후계문제 그리고 활동보고에 있어서는 비동맹운동을 중심으로 한 대외정책과 현재 중단되어 있는 남북대화, 국내건설 문제 등이 주목되고 있다고 전하고, 지난 9월 중순부터 북한에 체재하면서 받은 감흥으로는 김일성의 후계자로 김정일이 된다는 것은 결정적이라고 함.

3. 중동지역 및 아프리카지역

- 사우디 Arab News(영어) 및 Asraq Al-Awsat(아랍어)신문(1980.10.11.): 도쿄발 AP
 - 제6차 북한 노동당 전당대회 관련 보도
- 카메룬 신문(11.10.): 제6차 북한 노동당 전당대회에 대하여 사실보도
- 카메룬 국영라디오(11.10.): 김정일이 후계자로 지명될 것이라고 보도

4. 미국

- Boston Globe(1980.10.13.): North Korea Calls For Ouster 제하 기사
 - 김일성은 한반도 통일을 위하여 한국 현 정부의 전복과 휴전선 부근의 군사시설의 철거, 군대 해체 및 군사훈련의 중지를 주장하였다고 북한 중앙통신을 인용 보도함.
 - 그러나 김일성은 북한이 한국에 대해 공산주의를 강요하지 않을 것이라는 아무런 언질도 주지 않으면서 한국 현 정부가 전복되어야 한다고만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함.

5. 미주지역 및 구주지역

- 코스타리카 La Nacion지(1980.10월): 금차 노동당 대회에서 북한이 김일성의 후계자로 김정일을 임명할 것이라고 보도하고 북한이 세계에서 전례가 없는 공산왕조를 건설하게 되었음.
- 오스트리아 Arbeiter Zeitung지(1980.10.10.): 베이징발 AFP
 - 북한 김일성은 39세 아들 김정일을 후계자로 지명하였음이 베이징 외교소식통에 의거 알려졌다고 보도함.

북한 일반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일본

MF번호 2010-35 / 4 / 1-85

1980년 중 북한의 주요 동향임.

1. 김일성 동향

- 1980.5.7. 모스크바 방송에 의하면 고 티토 유고 대통령의 국장에 출석 차 베오그라드를 방문한 브레즈네프는 동일 현지에서 김일성과 회담을 갖고, 양국관계 및 협력문제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국제문제를 협의함.

320

2. 북한의 대미 관계 개선 시도

- 일본 아사히신문(1980.6.12.): 베이징발 기사에서 “대미 관계 개선에 의욕-북한 정치위원, 통일에 연방제 호소” 제하의 해설 기사를 보도함.
 - 김영남 북한 정치위원은 1980.6.8. 평양에서 일본 학술행복단(단장: 사이토 마사나오 전 메이지대학 학장)과 회견 시, “만약 미국이 (남북한) 연방제의 실시와 통일사업을 방해하지 않는다면 그 시기에는 북한과 미국의 관계는 근본적으로 변해갈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언급

3. 북한 노동당대회 후의 북한의 진로

- 아사히신문(1980.10.14.): “노동당대회 후의 북한의 진로” 제하의 사설 기사 게재
 - 1980년대 북한 내외정책에서 어떠한 길을 택할 것인지 노동당대회는 김정일을 후계자로서 공인함과 동시에 젊은 층의 테크노크라트 집단을 중심으로 한 경제건설 추진 체제로의 이행을 서두르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나타냄.
 - 김일성은 활동 보고 가운데 조국 통일문제와 비동맹운동에 많은 시간을 소비
 - 통일문제를 협의하는 예비접촉마저 중단된 상황에서 1980년대의 전망은 불투명
 - 미국과의 관계 개선 없이는 통일을 위한 환경 조성이 어려울 것

북한의 대미국 평화협정 제의

생산연도 1979-1980

생 산 과 국제연합

MF번호 2010-35 / 5 / 1-97

1979~80년 중 북한의 대미국 평화협정 제의 관련 내용임.

1. 북한이 제의한 '평화협정'(1979.5월)

- 남북한 간 평화협정
- 미·북한 간 평화협정
- 한국 측의 반론
 - 휴전협정을 대체하는 문제를 포함하여 모든 한반도문제의 직접 당사자는 남북한 뿐이며, 직접 당사자가 문제해결의 주체가 되어야 함.
 - 직접 당사자의 주체성이 무시되는 어떠한 국제적인 움직임에도 동의할 수 없고 용인하지 않음. 이에 따라서 북한의 대미 협상제의도, 3자회담에 대하여도 반대함.
 - 한반도문제는 오직 직접 당사자인 남북한 간에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하며 7·4 공동성명 발표로 착수된 남북 간의 직접 대화가 조속 재개되고 건설적으로 운영되어야 함.

2. 김일성의 9·14 발언과 조치(1980.9.16.)

- 김일성은 1980.9.14. 평양에서 북한을 방문 중인 일본 자민당 소속 아시아아프리카연구회대표 단에게 아래 내용으로 발언
 - 현재의 휴전협정이 대미 평화협정으로 대체될 경우, 북한은 중국(구 중공)·소련과의 군사동맹 관계를 해소할 의향이 있음.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및 강대국 간의 교차승인을 반대함. 일본과의 적극적 경제교류 확대를 희망함.
- 외무부 조치 내용
 - 김일성의 발언내용에 관한 외신보도에 맞추어 9.15. 외무부는 관계부처와 협의 후 “김일성 발언은 새로운 것이 아니며 종국적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노리는 책략이다. 한반도문제는 직접 당사자인 남북한 간에 논의되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비공식 논평
 - 주미국대사와 주일본대사에게 한반도문제에 관하여 주재국과 한국과의 공통된 인식 및 이해를 바탕으로 우방으로서의 동일 보조를 취하도록 지시

북한의 연방제 주장

생산연도 1979-1980

생 산 과 국제연합

MF번호 2010-35 / 6 / 1-178

1979~80년 중 북한의 연방제 주장 관련 내용임.

1. 북한의 소위 '남북연방제' 주장(1980.6.26.)

- 연방제 주장의 경위와 내용
 - 1960.8.14. 김일성이 처음 거론: “연방제 하에서 최고민족회의를 구성하고 경제와 문화 분야에서 민족의 발전을 통일적으로 조절” 주장
 - 1969.9.2. 핀란드 공산당 기관지 질문에 대한 김일성 답변: “우리가 내놓은 연방제라는 것은 현재 남북조선에 세워진 정치제도는 그대로 두고, 양측 정부당국이 임명하는 동 수의 대표들로 최고민족위원회를 조직하는 것을 말한다. 이 최고민족위원회는 주로 남북조선의 경제·문화발전을 조절하며 민족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남북 간의 상호협조와 교류를 도모하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
 - 1980.6.8. 김영남 정치위원 겸 국제부장 발언 내용: 남북한 독자적 활동, 사회제도 건지, 최고 민족위원회 설치, 동 위원회에서 정치·군사·외교·경제·문화문제 토의, 대외적으로는 중립
- 남북연방제 비판
 - 실현 불가능한 허구적 주장: 남북한 간에는 기본적 요건인 사상, 이념, 체제의 동질성 결여
 - 현실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 주장: 35년간의 분단과 전쟁으로 남북 간 극심한 불신과 대립. 남북한 간 인구, 경제력 등 현실여건 상이
 - 대남전략의 일환: 연방제 하에서 한국의 국가적 독립성 약화, 한반도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여 봉쇄
 - 대남전략에 입각한 전략적인 허위 선전 등

2. 북한 측의 대남 편지공세 저의분석 및 대책(1980.11.29.)

- 북한 중앙방송과 평양방송 보도내용(1980.11.21.):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명의로 소위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 제안을 담은 편지를 11.20. 한국 측의 정계, 사회계, 언론계, 종교계, 학계 인사 156명에게 국제우편으로 발송했다고 보도함.
 - 11.24. 204명의 해외동포에게 서신 발송
- 북한 측의 저의 분석: 대남 및 대외공작 측면
- 기본대책
 - 한국 측은 동 북측의 편지공세에 대해 정부차원으로서의 대응조치는 취하지 않고, 국내외 홍보 조치와 외교조치 및 해외동포 대책만을 강구

Carter(미국)·Tito(유고슬라비아) 간 남북문제 해결노력. 전3권 (V.1 1977-78.3월)

생산연도 1977-1980

생 산 과 북미 / 동구

MF번호 2010-35 / 7 / 1-150

1977~78.3월 중 카터 미국 대통령과 티토 유고 대통령 간 남북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관련 내용임.

1. 카터 미국 대통령, 티토 유고슬라비아 대통령에게 서한 발송(1977.8월)

- 카터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 예정인 티토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 중 한국관계 부분을 주한 미국 대사관으로부터 입수
 - 미국의 대한방위공약을 확실히 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위하여 긴장을 완화하며,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남북한을 포함한 직접 당사국들과 회담할 용의가 있다는 취지를 밝힘.

2. 외무부장관, 주한 미국대사 대리에게 3자회담 안 재고 요청을 수락할 수 없음을 통보

- 1977.8.20. 외무부장관은 스턴 주한 미국대사 대리의 내방을 받고, 미국 측의 한반도 장래문제에 관한 소위 3자회담 안 재고 요청을 수락할 수 없음을 통보함.

3. 한국, 티토 대통령의 미국 방문 시 제의한 3자회담 거부

- 1978.3.6.~9. 티토 대통령의 미국 방문 시, 티토 대통령은 한반도문제 해결을 위한 실무급의 한·미·북한 3자회담을 제의
- 3.18. 미국 측은 티토 대통령의 동 3자회담 제안을 전달하고 한국 측 수락을 권유
- 3.28. 외무부장관은 슈나이더 주한 미국대사를 초치하여 유고 측이 제안한 3자회담 안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힘.

323

대한민국외교문서영수증

Carter(미국)·Tito(유고슬라비아) 간 남북문제 해결노력. 전3권 (V.2 1978.4월)

생산연도 1977-1980

생 산 과 북미 / 동구

MF번호 2010-35 / 8 / 1-210

1978.4월 중 한·미·북한 3자회담 안 관련 검토 및 입장에 대한 내용임.

1. 한·미·북한 3자회담 안의 장단점 분석(1978.4월, 외무부)

- 장점
 - 대화 성립으로 군사적 긴장완화에 다소 도움
 - 유고 등 동구권과의 관계 개선 가능성
 - 한국 측의 평화적 의도 표명(특히 비동맹 관련)
- 단점
 - 한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미·북한이 주도적 위치에서 직접 협상하게 되고, 한국은 제2선으로 물러나게 될 위험성이 있음. 또한 미·북한 직접 접촉을 촉진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반면 한국의 대중국(구 중공)·소련 관계 개선의 기회를 상실함.
 - 미 행정부의 철군정책을 합리화 하는데 도움을 주며 철군반대 여론을 어렵게 함. 또한 한국에 대한 장비이양 등은 북한과의 대화에 지장을 준다는 구실을 제공하여 철군 보완조치 이행에 부정적 영향을 줌.
 - 일본에 대하여 대북한 관계 촉진 효과를 줌.
 - 한국의 전력증강 계획의 실천에 유해한 영향을 끼칠 것임.
 - 3자회담으로 토의할 적절한 의제가 없음 등

2. Ceausescu 루마니아 대통령, 미국 방문 시 한반도문제 거론

- 미 국무부 한국과장은 1978.4.18. 미·루마니아 정상회담(1978.4.13.) 시 Ceausescu 루마니아 대통령이 한반도문제를 제기하면서 김일성의 소위 평화통일방안에 관하여 언급한바 있으나, 미국 측 입장에서 볼 때 새로운 내용이나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사항이 없었고 김일성으로부터 어떠한 메시지도 없었다고 언급함.
- 홀부르크 미 국무부 차관보는 4.20. 주미국대사에게 Ceausescu 대통령은 북한으로부터 환심을 얻고 자신의 대소련 독자노선을 굳히기 위하여 북한의 입장을 강력하게 대변하고 있다고 말하고, 3자회담 안에 대하여 앞으로 한·미국 간에 긴밀한 협의를 하는 반면에 한국 정부가 동 안을 반대하는 입장을 대외적으로 보여주지 않기를 바란다고 언급함.

Carter(미국)·Tito(유고슬라비아) 간 남북문제 해결노력. 전3권 (V.3 1978.5-80.3월)

생산연도 1977-1980

생 산 과 북미 / 동구

MF번호 2010-35 / 9 / 1-97

1978.5~80.3월 중 카터 미국 대통령과 티토 유고 대통령 간 남북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관련 내용임.

1. 카터 대통령에게 보낸 티토 대통령의 서한

- 서한 전달 경위
 - 1979.12.13. 주미국 유고대사는 Newsom 미 국무부 차관에게 카터 대통령 앞 티토 유고 대통령의 서한(발신일자 미상)을 전달함.
 - 1979.12.27. Monjo 주한 미국대사관 공사는 동 서한 중 한반도문제 취급부분을 외무부에 알려오면서, 동 내용에 대한 한국 측의 견해를 카터 대통령의 답신 작성 시 참고하고자 한다고 말함.
- 상기 서한 중 한반도문제 관련 내용 요지
 - 김일성의 정세 평가: 10·26 사태 이후 한국 내의 새로운 사태 발전에 따라 한국의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을 재개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였다는 생각임.
 - 김일성의 제의 내용: 평화통일을 위하여, 미·북한 간의 협상 필요. 미·북한 간 현 휴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조약 체결
 - 티토 대통령의 평가: 북한 측 제의는 긍정적
- 한국 측 견해 전달
 - 1980.1.21. 한국 측은 동 문제에 관한 아래 내용의 견해를 전달하면서 카터 대통령의 회신 작성에 참고할 것을 요청함.
 - 한반도 통일을 위하여 남북 당국 간 직접대화가 가장 긴요함. 최근 남북 간의 직접대화 움직임은 극히 바람직한 것이며, 유고 측도 이를 적극 지원하기 바람.

2. 상기 서한에 대한 미국 정부의 회신

- 미국 정부는 1980.3.17. 상기 서한 중 한국문제 부분에 대한 회신을 주유고 미국대사로 하여금 전달하도록 지시한바, 주유고 미국대사는 유고 외무장관에게 동 내용을 Aide-Memoire 형식으로 전달할 예정임.
- 미국 정부 회신 요지
 - 미국은 한반도 긴장완화와 궁극적 통일을 위해 남북 당사자 간 직접접촉이 필수적이며, 현재 남북 간 회담진행은 고무적인 진전으로 평가
 - 북한의 대미 직접접촉 제의에 대하여는 한국 측의 충분하고도 동등한 참가 하에서만 북한 측과 만나겠다는 종래 입장을 재천명한바, 미국의 대한민국 안보 공약이 확고부동함을 재확인

북한의 남북한 총리회담 제의. 전3권 (V.1 기본문서)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일본 / 북미

MF번호 2010-35 / 10 / 1-181

1980년 중 북한의 남북한 총리회담 제의 및 실무대표 접촉 관련 내용임.

1. 이종옥 북한 정무원 총리, 총리급 고위당국자회담 제의(1980.1.11.)

2. 신현확 국무총리, 회한 전달(1980.1.24.)

- 남북 총리회담 수락 및 차관급 실무회의 개최 제의

3. 북한, 실무회의 제의 수락(1980.1.30.)

4. 북한의 최근 대화재개 공세 저의 분석(1980.2월)

- 북한의 대남적화통일 기본전략 불변
- 대외적 위장평화 선전공세 강화 책략
- 사태진전에 따라 대남 폭력도발 이용 가능성 불배제
- 특히 주목되는 저의는 남북한 간 당국회의에 응한 후, 이를 대미 협상 요구의 구실로 이용하여 한·미 공동제의를 3당국 회의를 남북한과 미·북한 간의 당국회의라는 이원적 변칙실현으로 유도 하려는 책동으로 분석

5. 제1~3차 남북한 총리회담 예비회담 개최(1980.2.6.~3.4., 판문점)

- 수석대표
 - 한국 측: 김영주 외무부 본부대사
 - 북한 측: 현준국 당 중앙위 부부장 겸 정무원 참사
- 제1차 실무대표 접촉(2.6.): 남북 직통전화 개설 합의
- 제2차 실무대표 접촉(2.19.): 총리회담 장소, 의제, 수행원 관련 토의
- 제3차 실무대표 접촉(3.4.): 총리회담 장소 및 의제 관련 토의

6. 제3차 접촉까지의 북한 측의 태도 및 입장 분석

- 제3차 접촉에서 북한 측이 장소문제에 대안을 제시하고 한국 측의 의제 사전합의 제의 등에 동의한 것 등은 북한 측의 유연하고 적극적인 자세를 보임으로써 대내외 선전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임.
- 북한 측은 일단 총리 접촉을 실현시킬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금번 실무대표 접촉이 결렬될 경우(의제문제와 관련)에 대비하여 그 책임을 한국 측에 전가 시키기 위한 근거 축적을 기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음.

북한의 남북한 총리회담 제의. 전3권 (V.2 미국·일본과의 협조 및 각국 반응)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일본 / 북미

MF번호 2010-35 / 11 / 1-268

1980년 중 북한의 남북한 총리회담 제의 관련 미국, 일본과의 협조 및 각국 반응에 대한 내용임.

1. 미국과의 협조

- 1980.1.24. 주미국대사, 홀부르크 미 국무부 차관보 면담
 - 동 대사는 신현확 국무총리의 답변 서한을 알려주는 동시에 한국 측이 남북대화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설명함.
 - 홀부르크 차관보는 동 서한을 숙독한 후에 한국의 입장을 명백하게 밝힌 훌륭한 내용이라고 말하면서 현 총리 명의의 서한이 전달되었으므로 나머지 11명의 인사들이 회신을 안 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본다는 견해를 보임.
 - 동 대사는 남북한 관계가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와 있으며 남북대화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하여 한국의 강력한 국력이 기반되어야 하는바, 주한미군이 1981년 이후에도 계속 주둔하는 등 미국의 강력한 군사적 지원이 요망된다고 강조함.
 - 동 차관보는 미국의 대한민국 군사지원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언급하며 1981년 이후의 주한 미군 계속 주둔에 관하여도 긍정적인 태도를 보임.
- 3.28. 박건우 주미국대사관 참사관, 리치 미 국무부 한국과장 면담
 - 동 참사관은 최근 북한의 연이은 도발사건에 관한 미국 측 견해를 청취한바, 미국 측도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해 관심을 갖고 북한군의 동향파악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미 행정부 내에서도 북한의 도발 이유에 관하여 아래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다고 함.
 - 남북대화 진행에 불만을 품은 북한 내 강경파의 획책
 - 현재 대규모의 군사훈련을 진행시키고 있는 북한이 군사훈련을 은폐하기 위한 양동작전
 - 북한의 도발을 이유로 한국 정부가 남북대화를 중단시키는 경우에 동 중단의 모든 책임을 한국 측에게 전가시키기 위한 술책 등
 - 또한 미국 측은 이러한 북한의 도발이 소련이 배후에서 작용하는 것이라면 한반도 안정에 큰 위협이 된다는 것을 주시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소련 배후의 증거는 전혀 포착되지 않고 있다고 함.

2. 일본과의 협조

- 남북대화에 대한 소련 측 반응
 - 1980.2.5. 김태지 외무부 아주국장과 무라오카 주한 일본대사관 공사 면담 시, 동 공사는 최근 주소련 일본대사관 관원이 모로조프 소련 외무성 한반도담당 인사와 면담을 한바, 남북대화에 관한 소련 측 반응 요지를 아래와 같이 전달함.



- 금번 북한의 대화제의를 한국의 국내변화를 이용하기 위하여 한국 측이 받아들이기 쉬운 방식으로 제안한 것임.
- 소련은 북한의 이니셔티브를 환영함.
- 미국과의 대화에 관하여 북한은 논의대상을 미군 철수와 평화조약에 국한하고 있으며, 그 밖의 문제에 관하여는 미국의 참가를 배척하고 한국 측과만 논의한다는 것임.

북한의 남북한 총리회담 제의. 전3권 (V.3 참고자료)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일본 / 북미

MF번호 2010-35 / 12 / 1-203

1980년 중 북한의 남북한 총리회담 제의 관련 참고자료임.

1. 생산적 대화 실현을 위한 한국의 입장(1980.2월)

- 1979.1.19. 대화제의로 비롯된 남북의 대화는 어떻게 파탄되었는가
- 그 후 북한 측 태도는 어떻게 달라졌는가
- 대한민국은 어떠한 자세로 임하고 있는가

2. 남북대화 참고자료(1980.2월)

- 남북 간의 합의사항과 그 현황
- 남북 간의 제의내용
- 북한 대남 제의내용의 허구성
- 남북대화 주요 일지

3. 실무대표 접촉(1980년도 공관장회의 자료)(1980.3월)

- 경위
- 실무대표 접촉 결과
- 제3차 접촉까지의 북한의 태도 및 입장 분석
- 문제점
 - 의제문제는 총리 간 대화의 성격을 결정하는 중요 요소이기 때문에 양방의 태도 여하에 따라서는 이 문제를 둘러싸고 실무대표 접촉이 장기화 될 가능성도 없지 않음.
- 참고자료
 - 1.11.자 이종욱 북한 총리의 편지
 - 1.24.자 신현확 국무총리의 서한
 - 최근 남북한 대화재개에 임하는 북한의 배경 및 저의
 - 남북대화 주요 일지

남북한 간 우편교환 문제

생산연도 1971-1975

생 산 과 조약

MF번호 2010-35 / 13 / 1-71

1971~75년 중 남북한 간 우편교환 문제 관련 내용임.

1. 남북 우편교환 허용(1974.10월, 체신부)

- 문제의 경위
 - 북한은 제17차 UPU(만국우편연합) 총회(1974.5.22.~7.5., 로잔)에서 한국의 문화개방선언(6·23 선언)에 따라 회원국으로 가입. 이는 헌장 제1조에 의하여 통상우편물에 대한 단일우편 영역이 자동적으로 형성되어 이행의 의무가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편물을 교환할 수 있는 통로가 완성 개방된 것임.
- 동 조치의 이유
 - 실질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우편물 교환 통로를 남북 중 누가 먼저 실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가에 따라서 국내외적인 많은 영향을 받을 것임.
 - 따라서 한국 측은 북한이 요청하기에 앞서 우편물 교환 곧 서신왕래 정책을 미리 선언하여 6·23 선언 및 8·15 선언의 실천의지를 국내외에 입증할 필요가 있음.
- 결론
 - 남북 우편물교환은 조속히 체신부고시로서 그 제한이 해제되어야 함.
- 건의
 - 결론대로 시행할 것을 승인 요청

2. UPU 조약에 의한 남북한 간 서신교환의 문제(1975.10월)

- 결론
 - 남북한 간 서신교환은 조약상 시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으로서 남북 어느 쪽에서 먼저 표명하느냐의 단계임. 따라서 한국 측에서 먼저 선언하는 것이 요망됨.

1980년도 Moscow 올림픽대회: 남·북한 단일팀 구성문제

생산연도 1979-1980

생 산 과 문화교류

MF번호 2010-35 / 14 / 1-288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대회의 남북한 단일팀 구성문제 관련 내용임.

1. 북한, 모스크바 올림픽 남북 단일팀 구성을 제의하는 제1차 서한 발송(1979.12.20.)

- 김유순 북한 올림픽위원장 겸 체육지도위원장은 12.20. 북한 중앙방송 및 평양방송을 통하여 박종규 대한올림픽위원회 및 대한체육회 회장 앞으로 아래 요지의 편지를 발송함.
- 1980.7월에 개최되는 제22회 모스크바 올림픽 경기에 과거는 불문에 부치고 남과 북이 민족 유일팀으로 출전할 것을 제의함. 이 문제 협의를 위해 1980.1.17. 남과 북의 체육인 대표회담을 제의함.

2. 북한 측 제의의 평가

- 제35차 세계탁구선수권대회(1979.4월, 평양)의 경우와 같이 제22회 모스크바 올림픽에 한국 측의 순조로운 참가를 방해할 저의가 있음. 북한 측은 한국에서 개최되는 국제경기대회 초청에 지금까지 계속 불응해 왔음에 비추어 금번 단일팀 구성 제의의 성실성이 의심됨. 북한 측은 종래 주장해온 '남과 북의 합작'을 꾀하면서 한국 신정부의 국론분열을 획책하여 남북통일에 관한 세계 여론을 북한 측에 유리하게 유도하려는 위장 평화공세의 개시로 평가됨.

3. 박종규 대한체육회장의 제1차 회신(1980.1.11.)

- 남북한 단일 올림픽 선수단 구성은 시간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불가능함을 지적하고, 한국 측 대안으로서 남·북한 친선경기를 통한 신뢰축적 선행, 1980년 중 서울에서 개최되는 국제경기에 북한 측 참가 축구 및 모스크바 올림픽 후 남북한 체육회담 개최 제의

3. 김유순 북한 올림픽위원장의 제2차 회신(1980.1.21.)

- 북한 측은 한국 측의 시간적·기술적 난관을 인정하지 않고, 한국 측의 대안 제시를 내외여론을 의식한 구실로 해석하면서 남북 체육인이 회동하면 문제해결 가능 강조

4. 박종규 대한체육회장의 제2차 회신(1980.1.29.)

- 제1차 편지 내용과 같이 시간적·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점을 상기시키면서, 상호 신뢰축적을 위한 교환경기 개최 등 한국 측 대안을 북한 측이 수락할 것을 재차 촉구

5. 북한 올림픽위원회, 한국 측이 단일팀 구성 제의를 거부했다는 비난 성명 발표(1980.2.5.)

동구권의 인사교류 현황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동구

MF번호 2010-36 / 1 / 1-74



1980년 중 동구권의 인사교류 현황 관련 내용임.

1. 한국 국민의 동구 국가 입국 현황

- 1980년 한국 국민의 동구 국가 입국자 수: 32회 185명
 - 1979년(34회 145명) 대비 약 27% 증가
 - 원인: 모스크바 올림픽 관련 국제심판 파견, 국제경기연맹 총회 참석, 예선전 참가 등
- 한국 국민의 동구 국가 입국은 1977년에 남북대화(1973년) 진행 당시 수준에 도달한 후 계속 증가하였으며, 동구 국가는 현재 한국 국민의 동구 개최 국제행사 참가를 어느 정도 묵인하고 있음.

332

2. 동구 국가 국민의 한국 입국

- 1980년 동구 국가 국민의 한국 입국자 수: 26회 34명
 - 1979년(44회 62명) 대비 약 45% 감소
 - 원인: 주로 국내사태 때문인 것으로 보임.
- 동구 국가는 한국에서 개최하는 학술, 문화, 체육 등 국제행사 참가에 아직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음.
 - 1980년 한국 개최 국제회의 참가: 1회 3명
 - 1980년 한국 개최 국제가요제 참가: 2회 6명

대동구권 관계 개선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동구

MF번호 2010-36 / 2 / 1-185

1980년 중 대동구권 관계 개선 관련 자료가 수록됨.

1. 대동구권 관계 개선 활동(1979.8월)

- 대동구권 관계 현황
- 핀란드를 통한 대동구권 관계 개선 노력
- 분석 및 전망
 - 공식 관계 수립 기대 어려움: 남북대화 진전이 없고, 한반도 긴장 상존 및 소련의 대한반도 정책 불변
 - 비정치적 교류 점진적 증진 가능: 대한민국 인식 제고, 한국의 경제발전에 관심 증대

2. 대동구권 관계 개선 강화 방안(1980.10월)

- 동구 국가의 성격상 분류: 소련권(소련, 동독, 불가리아, 체코, 폴란드, 헝가리), 유고, 루마니아, 알바니아
- 추진 방향
 - 소련: 대소련 관계 개선을 위한 현재의 학술, 문화, 체육 교류 등 비정치적 분야의 교류 노력은 계속하되, 우방국 및 중립국 정부 또는 가능하다면 직접 협상을 통해 한국과의 관계수립을 1차 목표로 함.
 - 유고: 유고 내 한국 통상대표부 설치를 1차 목표로 경제적 교류에 주안점을 두고, 간접 교역량 확대 및 직교역 추진 등 능동적으로 유고 측에 접근함.
 - 루마니아: 유고의 경우와 같이 한국 통상대표부 설치를 1차 목표로 하고, 경제·문화적 교류 확대를 관계 개선을 추진함.
- 접근 방법: 책임공관 지정, 관계 개선 노력 계속

3. 한국의 대공산권 외교정책(1980.10월)

- 안보 면에서 본 한반도 주변 정세: 소련의 대한반도 정책, 중국(구 중공)의 대한반도 정책, 북한의 입장
- 대공산권 외교 추진 방향

4. 최근 대동구권 외교관 직접접촉 내용(1980.10.24.)

- 소련, 유고, 루마니아, 불가리아, 폴란드, 동독, 체코, 헝가리

공산권 여행 허가 - 동구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동구 / 교민2

MF번호 2010-36 / 3 / 1-58

1980년 중 동구 공산권 국가 여행 허가 관련 내용임.

1. 모스크바 올림픽 취재

- 문공부는 1980.1월 정화준 한국방송공사 기자의 모스크바 올림픽 남자배구 예선 취재 목적 불가리아 여행 허가에 대해 문의한바, 외무부는 1.14. 이의 없음을 회보함.

2. 국비 유학생의 여학 강좌 참석

- 주독일대사관은 1980.2.22. 독일에 유학 중인 국비 장학생 4인에 대해 동구권 국가 방문 가능 여부를 문의함.
 - 입국 희망자: 폴란드(정병권), 루마니아(김성기, 이문수, 이규식)
 - 목적: 현지 어학 강좌 참석
 - 기간: 1980년 여름 약 1개월간
- 문교부는 3.4. 및 3.12. 상기 국비 장학생에 대한 동구권 국가에의 입국·체제를 희망하여 외무부로 협의를 요청함.
- 이에 외무부는 3.26. 동인들의 동구권 여행이 원칙적으로 가능하나, 여행지역이 공산국가인 점에 비추어 신변안전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회보함.

3. 제67차 IPU(국제의원연맹) 총회(1980.9.15.~24., 동독 동베를린) 취재

- 문공부는 7.26. 제67차 IPU 총회에 참가하는 한국대표단을 수행하고 대표단 활동을 취재하기 위해 이경재 동아일보 편집국 기자 및 이근양 중앙일보 서독 본 주재 특파원 기자의 동구권 여행에 관한 의견을 문의함.
 - 외무부는 동일 이의 없음을 회보함.
- 주프랑스대사는 9.8. 박종길 동아일보 프랑스 주재 특파원 기자가 IPU 총회에 한국 의원단과 동행하여 동 회의를 취재하기 위해 동독 경유지 추가를 신청하여 온바, 이에 대한 의견을 문의함.
 - 외무부는 9.11. 이의 없음을 회보함.

비동맹 방송기구 회의, 제2차. Freetown(시에라리온), 1980.9.1.-5.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국제연합

MF번호 2010-36 / 4 / 1-131

1980.9.1.~5. 시에라리온 프리타운에서 개최된 제2차 비동맹 방송기구 회의 관련 내용임.

1. 동 회의 시 북한 측 책동에 대비한 외무부 지시사항

- 외무부는 1980.8.19. 제2차 비동맹 방송회의의 개최 관련 동 회의에 참가하는 아시아 및 아프리카 주요 국가 주재 공관에 북한이 회의 목적 및 의제와 관계없는 한국에 대한 모략 비방 등 반한책동을 전개하는 경우, 주재국 대표가 발언 등을 통해 북한이 동 회의를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결과 보고를 지시함,

2. 참가자

- 60여 개국 대표
- 북한 측: 이봉희 북한 중앙방송위원회 부위원장(차관급)을 단장으로 7명의 대표단 파견

3. 회의 결과

- 개도국의 TV 프로그램 활용 증진 방안으로 “TV 프로그램 뱅크”를 설치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우선 몰타, 알제리, 나이지리아, 요르단 등 4개 지역 대표 국가에 동 프로그램 뱅크를 설치하기로 결의함.
- 동 회의 기간 중 북한 측의 한국 비방 등 선전활동은 없었으며, 북한대표단은 회의 참가자 전원을 위해 리셉션을 주최하고자 하였으나 사무국에 의해 좌절됨.

비동맹 수산관계 회의. Rome, 1980.12.15.-17.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국제연합

MF번호 2010-36 / 5 / 1-57

1980.12.15.~17. 로마에서 개최된 비동맹 수산관계회의 관련 내용임.

1. 주요 의제

- 제6차 회의 시 권고된 수산분야에 대한 이행 사항 검토
- 1981.1월 하바나에서 개최될 각료급 회의를 위한 의제 채택
 - 비동맹국 및 개도국 간 다국적 수산회사 설립을 위하여 어떠한 가능성 조사를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
 - 국제기구 특히 FAO(유엔식량농업기구) 및 UNDP(유엔개발계획) 등 협력에 관한 사업을 위한 지원의 계속 및 강화 방법, 수단 고찰
- 하바나 각료급 회의에서 검토하기 위한 조정국 및 기타 회원국에 의한 연구서 및 보고서의 준비

2. 주이탈리아대사관은 1980.12.19. 동 회의 관련 아래 자료(영문)를 송부함.

- 최종보고서(안)
- 의제
- 1979.9월 국가수반회의 최종 결의서
- 연구서 각 1부(1, 2, 3, 4)

비동맹 특별 각료회의 개최 추진. 전4권 (V.1 개최동향 및 대책, 2월-6.16.)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국제연합

MF번호 2010-36 / 6 / 1-225

1. 비동맹 특별 각료회의 개최 추진 경위

- 유고 정부는 1980.5.8. 티토 유고 대통령 장례식에 참석한 비동맹 각국 대표들에게 비동맹 각료회의 개최에 대한 의사를 타진함.
 - 알제리, 탄자니아, 잠비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파키스탄, 북한 등 지지 표명

2. 비동맹 특별 각료회의 개최 추진 동향(1980.6.10.)

- 유고, 쿠바, 인도네시아 등 개최 추진, 다수 찬성으로 개최 확실 시
 - 개최 장소: 1980.7월 초(약 7일간)
 - 회의 장소: 탄자니아 아루샤, 하바나, 콜롬보 거론(장소 관련 강경·온건파 간 이견)
 - 유고 측 주장 의제(안): 포괄적 단일 의제 “국제평화와 안전 위협하는 국제정세 및 비동맹의 역할”
 - 쿠바 측 주장 의제(안): 중동 등 각 지역 분쟁 관련 다수 의제
- 북한 동향
 - 현재 한국사태가 매우 유동적이므로 비동맹의 한반도사태 예의 주시 주장
 - 종전에 있었던 비동맹 내 한국문제 Working Group 재개 요청(W/G 재개 시 베트남 제외 요청)
- 한국 측 조치사항
 - 50개 교섭 대상국 한국문제 불거론 교섭 시행 중
 - 유엔총회 한국문제 상정 책동 가능성에 대비, 유사시 교섭 태세 준비조치

3. 주유엔 북한대사, 1980.6.11. 루마니아 대표 접촉 시 동 회의 관련 주요 언급 내용

- 비동맹 각료회의에서 한국문제 토의 희망
- 동 각료회의 최종 문서 중 한국 조항 포함: 북한의 남북대화 이니셔티브 지지 표명 등

비동맹 특별 각료회의 개최 추진. 전4권 (V.2 개최동향 및 대책, 6.17.-7월)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국제연합

MF번호 2010-36 / 7 / 1-224



338

1. 비동맹 전체회의(1980.6.19., 뉴욕) 시 북한책동 시도 결과

- 북한의 1차 목표: 비동맹 특별 각료회의 개최 시 한국문제 제기
 - 동 각료회의를 개최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좌절됨.
- 북한의 2차 목표: 동 비동맹 전체회의에서 한국문제에 관한 커뮤니케 채택
 - 한국 측이 반대 발언 국가로 확보한 파나마, 모리타니, 소말리아 및 방글라데시를 포함하여 몰타 및 PLO(팔레스타인해방기구) 대표의 강력한 반대 발언과 회의장을 압도한 한국문제 거론 반대 추세로 북한의 비동맹 책동은 봉쇄됨.
- 북한책동의 실패 원인
 - 비동맹 회의 관심이 아프가니스탄 및 이란사태, 중동문제 등 중요하고 긴급한 국제분쟁 해결에 집중되고 있는 시기에 비동맹의 원칙과 흐름에 역행하며 북한이 한국 국내사태 거론을 강행한 데 대한 다수 회원국 대표의 반발을 일으킴.
 - 그간 한국과 비동맹 국가 간의 실질관계 증진을 바탕으로 외교 교섭을 전개한 결과 비동맹 다수국이 적극적인 발언을 통하여 한국문제 거론에 강력히 반대

2. 비동맹 대사급 전체회의의 한국문제 토의 결과보고서(1980.7월)

- 비동맹 전체회의의 경위 및 평가
- 북한의 한국문제 제기 책동
- 북한책동 저지를 위한 한국 측 조치
- 비동맹 대사급 전체회의에서의 한국문제 토의 경위 및 결과
- 분석 및 평가
- 향후 북한책동 전망

비동맹 특별 각료회의 개최 추진. 전4권 (V.3 각국에 대한 교섭, 6.5.-17.)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국제연합

MF번호 2010-36 / 8 / 1-198

1. 외무부, 비동맹 회의 관련 비동맹 주요 회원국 주재 공관에 교섭지침 지시(1980.6.7.)

- 비동맹 각료회의 개최를 위한 비동맹 국가 간의 협의가 진행 중임을 감안, 주재국 고위 당국자를 지급 접촉, 아래 한국 측 입장을 설명하고, 동 회의 준비를 위한 협의과정에서 주재국이 한국문제의 의제 불포함 및 회의 최종문서 초안의 한국조항 불포함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 줄 것을 교섭하고 결과 보고를 지시함.
 - 한반도문제는 그 성질상 문제의 당사자인 남북한이 직접대화를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제3자가 논의할 문제가 아님.
 - 한국은 비동맹 회의가 1976년 이래 유엔총회의 한국문제 토의 지양 추세에 부응하여 한국 문제의 불거른 및 한국조항의 불채택으로 당사자 간의 직접대화에 의한 한반도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기여해 줄 것을 희망함.
 - 금번 비동맹 각료회의는 팔레스타인 문제, 아프간 및 이란사태와 같이 현재 국제 평화와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는 국제분쟁의 해결방안을 모색, 국제정세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회의에서 한국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현재 진행 중인 남북 간의 대화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국제정세의 악화를 더욱 조장시킬 위험이 있음.

2. 각 공관의 교섭 결과 보고

- 1980.6.9. 인도 외무부 유엔국장은 많은 회원국이 한국문제 토의에는 관심이 없으므로 북한이 한국문제를 포함시키려 해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며, 한국문제가 의제 및 최종문서에 포함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함.
- 6.11. 및 6.15. 사우디 외무부의 아시아아프리카국장 및 국제기구국장은 한국문제가 거론될 시 한국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
- 6.16. 오만 외무부 정무국장은 만일 북한이 비동맹 관계회의에서 한국문제 조항 삽입을 제기할 경우 오만은 한국 입장을 지지, 이에 반대 발언 및 투표에서 반대할 것이며, 이를 주유엔 오만대표에게 긴급 훈령하겠다고 함.

비동맹 특별 각료회의 개최 추진. 전4권 (V.4 각국에 대한 교섭, 6.18.-7월)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국제연합

MF번호 2010-36 / 9 / 1-172

340

1. 외무부, 비동맹 전체회의(1980.6.19., 뉴욕) 관련 아래 공관에 교섭지침 지시(6.19.)

- 비동맹 특별 각료회의(1980.7월 초) 개최가 난망 시 됨에 따라 북한은 “Working Group on Korea”의 Coordinator(알제리)로 하여금 최근 한국 국내사태와 관련, 한국의 국내문제에 대한 공공연한 간섭을 자행하는 내용의 성명을 채택하고자 책동하여 6.19. 속개 전체회의에서 동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임.
- 주재국 외무부 고위당국자를 긴급 접촉, 북한책동이 비동맹운동 기본 원칙인 국내문제 불간섭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뉴욕 비동맹 전체회의 성격과 Terms of Reference에도 반하는 것임을 지적하고, 6.19.자 전체회의 및 조정회의에서 북한의 책동에 반대 발언하여 줄 것을 특별 교섭하고 유엔주재 동국 대표부에 필요한 훈령이 긴급 하달되도록 당부바람.
- 수신처: 주인도네시아, 스리랑카, 케냐, 가봉, 오만, 카타르, 사우디, 수단, 페루, 볼리비아, 코트디부아르, 바레인, 모로코, 싱가포르, 가나, 카메룬, 세네갈, 방글라데시대사 등

2. 각 공관의 교섭결과 보고

- 1980.6.18. 페루 국제기구국장은 한국 지지를 약속하고, 페루 대표에게 한국문제를 의제 불포함 발언하도록 훈령할 것을 언급
- 6.19. 스리랑카 외무장관은 주유엔 스리랑카대표부에 전화로 훈령 전달할 것을 언급
- 6.19. 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 국제기구국장은 요청사항을 즉시 유엔에 재타전할 것이나 통신사정상 적시에 입전될지는 의문이나 이미 보내놓은 훈령이 있으므로 이에 의거, 주유엔 콩고 민주공화국대사가 한국 입장 지지, 북한책동 저지에 적극 활약할 것으로 믿는다고 다짐

3. 비동맹 전체회의(1980.6.19., 뉴욕) 결과

- 북한은 알제리로 하여금 Working Group on Korea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동 보고서 권고 부분에 대한 결정을 내려줄 것을 요청함으로써 한국문제에 관한 뉴욕 비동맹 전체회의의 별도 코뮈니케 채택을 책동하였으나, 다수 국가 반대로 무산됨.
- “Working Group으로 하여금 정세발전을 계속 Follow하도록 요청”하는 선에서 한국문제 토의가 일단락 됨.

일본의 안전보장 및 방위 문제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일본

MF번호 2010-36 / 10 / 1-200

1980년 중 일본의 안전보장 및 방위 문제 관련 내용임.

1. 일본 외무성, “1980년대 안전보장정책 서론” 발표

- 일본 외무성의 ‘안전보장정책 기획위원회(대표: 다카시마 외무차관)’는 1980.7.27. 아래 요지의 “1980년대의 안전보장정책 서론”이라는 연구보고서를 발표함.
 - 서방 측 전체가 동방 측 전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글로벌한 관점에서 자위력 증강을 꾀할 필요가 있음.
 - 일본·미국 안보조약은 양국 간의 우호관계 기반일 뿐 아니라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함.
 - 유엔의 세계평화 유지 활동에 대한 재정적 협력 외에 요원 파견의 검토가 필요함.
 - 외교 노력으로서 남북문제 해결을 위한 경제협력, 지역안정을 위한 분쟁 주변국 원조, 서방국가와의 연대 강화, 한국 및 아세안 등의 강화를 위한 정치·경제면에서의 협력을 행함.

2. 안전보장 방위문제 관련 자민당 및 민사당 당수회담

- 스즈키 수상과 사사키 민사당 위원장은 1980.10.24. 국회 내에서 안전보장 및 방위 문제를 의제로 당수회담을 행하고 아래 사항에 대한 기본인식에 의견일치를 봄.
 - 안전보장은 평화전략을 기본으로 함.
 - 자위력 정비는 현행 헌법 범위 내로 추진
 - 재정사정을 고려함.

3. 스즈키 수상, 일본 안전보장 문제 관련 발언

- 스즈키 수상은 1980.11.10. 중의원 안전보장 특별위원회에서 일본 안전보장 문제와 관련 아래 요지로 발언함.
 - 곧 발족하게 될 종합안전보장회의의 의제에는 핵군축도 포함됨.
 - 미국에 레이건 정권이 등장하더라도 일본은 군비확장에 영향 받지 않고 자주적으로 방위력 정비 추진
 - 방위계획의 대강을 변경할 계획 없음(방위계획의 대강: 1976년 내각에서 결정, 평화 시 방위비 상한을 대GNP 1% 이내로 함).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공표 일본관계 보고서 분석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안보

MF번호 2010-36 / 11 / 1-57

1980년 중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공표한 일본관계 보고서 및 분석 관련 내용임.

1.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보고서 “동북아 군사안정에 대한 일본의 기여”에 나타난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 관련 요지(1980.6.28.)

- 일본의 대한반도 입장은 남북대화를 통한 한반도의 긴장완화 추구에 있으며, 한국의 안보목표를 지지하면서 북한과는 관계 증진을 도모하는 것이 한반도의 화해와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봄.
- 한반도 안정 유지에 있어서 미국과 일본의 역할은 상이함.
 - 미국이 한국의 안보 및 경제면에서 중추적 기여를 하는 한편, 일본은 한국과의 직접적 군사접촉을 회피하고 주요 경제파트너 역할을 하였으며, 평양 측과도 제한적 경제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최근 주한미군 감축문제와 관련하여 한국과의 방위접촉을 증대하기 시작하였으며,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일본의 견해는 아래와 같음.
 - 철수 자체보다는 그 시기와 협의 양상에 관심이 더 큼. 한반도의 적절한 군사균형 하에서는 점진적 철군에 따라 경제지원 및 투자증진을 통하여 일본이 경제적 이익을 가질 것임. 미국의 공약 약화를 북한이 지각하지 않는 한 철군은 북한으로 하여금 보다 온건한 태도를 취하게 할 가능성이 있음.
- 장기적으로, 일본은 한반도 현상유지를 위한 미국·일본·중국(구 중공)·소련 간의 견해 조정, 국제사회에서의 남북한 공존을 한반도 군사긴장의 점진적 감소를 위한 필수요건으로 보고 있으며, 정치문제에서의 미국의 선도를 전제로 일본의 대남북한 경제관계 동시 유지를 그 보조 역할로 보고 있음.

2.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공표 일본관계 보고서에 대한 한국 측 검토 주요 내용(1980.7.22.)

- 일본의 대북한 관계 증진 도모
 - 중국, 소련의 상응조치가 없이 일본이 북한과 관계 증진을 도모하는 것은 현재의 군사력 불균형에 더해 북한의 군사 외적 입장을 일방적으로 높이게 되어 한반도의 안정과 화해에 악영향을 미칠 것임.
- 주한미군 철수의 영향
 - 주한미군의 철수는 그 자체가 미국의 안보공약 약화로 이해되고 한반도의 균형추 상실을 의미하며, 북한의 오판과 남침기회를 제공할 뿐임.
- 철군의 대일본 영향
 - 철군은 한국의 정치·안보·경제적 불안을 초래하고 결국 일본의 안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인바, 투자증진을 도모할 여유를 갖게 하지 않음.

일본·미국 안보협력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북미 / 일본

MF번호 2010-36 / 12 / 1-105

1980년 중 일본·미국 간의 안보협력 관련 내용임.

1. 제12차 일본·미국 사무레벨 안보협의회(1980.6.30.~7.2., 하와이)

- 참가자
 - 일본 측: 오가와라 주미국 일본대사, 하라 방위청 사무차관 등
 - 미국 측: 맥기퍼트 국방부 안보차관보, 롱 태평양지구 사령관 등
- 회의 내용
 - 미국 측 입장: 미국은 최근 서남아·중동사태와 관련 인도양에서의 군사태세를 계속 정비할 것이며, RDF(Rapid Deployment Force) 파견을 고려하고 있음. 미국은 유럽과 적극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면서 일본에 대해서도 Steady하고 Significant한 노력을 계속할 것임.
 - 일본 측 입장: 일본은 현재 신내각이 구성되어 있지 않아 중기 방위계획 수행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음. 일본 주재 미군 경비의 증액문제에 대해서는 SOFA(주둔군지위협정)의 범위 내에서 대처할 것임. 최근 일본에서는 방위논의가 고조되고 있으며, 안보특별위의 설치가 의회 내에서 논의되고 있음.
- 한반도 관계 논의사항
 - 한국의 민주화가 충분히 진행된 것은 아니나, 외부로부터의 침략에 대한 미국의 대한방위공약은 준수될 것임.

2. 일본·미국 안보조약 체결 20주년 기념세미나(1980.8.29.~30., 도쿄)

- 1980.8.30. 양국 국회의원이 안전보장문제에 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하여 “일본·미국 안보의원 협의회”(가칭)를 1980년 말을 목표로 발족시킬 것에 합의함.

FY81 미국의 국제안보원조법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북미

MF번호 2010-36 / 13 / 1-255

미국 FY81의 국제안보원조법 관련 내용임.

1. 미국 행정부의 '한반도 보고서' 제출

- 미국 행정부는 대외원조법 관계 규정에 따라 제4차 '한반도 보고서'를 1980.2.12. 미국 의회에 제출한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최근 한반도 군사정세와 미국이 취한 조치 검토
 - 한국군 현대화 계획의 진전 상황 및 공동방위 노력에 대한 미국의 지원 언급
 - 철군정책 평가
- 동 보고서에 대한 한국 측 평가
 - 특기할 새로운 내용은 없으나, 북한의 군사위협이 아직 심각하지 않고 군사태세에도 변화가 없다는 것과 미국은 한국의 방위력 강화 지원과 한국에 대한 어떠한 무력공격도 성공하지 못할 것임을 북한 및 그 후원 세력에게 계속 분명히 할 것이라고 강조한 점이 주목할 만함.

344

2. FY81 미국 대외원조 지출법안 심의 현황(1980.7.26.)

- 미국 하원 세출위원회는 1980.7.24. 총 71억 달러 규모의 FY81 대외원조 지출법안을 채택함.
- 동 세출위 대외활동소위원회는 한국, 필리핀, 라이베리아, 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 아이티의 인권문제, 정치적 불안정을 이유로 동 국가들에 대한 원조 총액 2억 3천 450만 달러에서 25%(5천 8백만 달러)를 삭감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별도 보고서에 국가명을 표기하기로 함 (각국별 삭감 비율은 행정부 재량에 맡김).
- 금번 세출위가 채택한 법안에는 삭감 대상국을 명기하지 않고, 세계인권선언에 반하여 국민의 합법적 권리를 억압하는 정부에 대하여는 동 법에 의한 원조를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주미국대사관은 국무부가 의회 측에 대하여 미국 행정부의 원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도록 촉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던바, 국무부 측은 상·하원이 동 법안을 최종적으로 통과시키는 데는 앞으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므로 그 과정에서 한국의 정세가 호전되는 경우 미 행정부로서는 의회 측에 대하여 원안 통과를 촉구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는 견해를 보임.

미국 국방관계

생산연도 1979-1980

생 산 과 복미

MF번호 2010-36 / 14 / 1-14

1979~80년 중 이란 혁명 및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에 대한 미국 정부의 해외군사기지 이용 계획 관련 내용임.

1. 1979.12.17. 카터 미국 행정부는 1979년 이란 혁명 등 중동에서 또 다른 위기 발생 시 미국 군대가 사우디아라비아 내 군사기지 이용문제를 교섭하기 위해 R. J. Murray 국방부 근동담당 부차관보를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을 사우디아라비아에 파견함.

2. 언론 보도

- 1980.1.20. 미국 NYT지
 - 카터 행정부가 1979년 이란 혁명 및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위기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튀르키예, 중동, 인도양에 신규 군사기지를 건설하는 대신 기존 외국 공항과 항구를 이용하는 새로운 해외군사기지 개념이 대두되고 있다고 보도함.
- 2.12. NYT지
 - 오만, 케냐, 소말리아가 미국의 기존 군사시설 사용과 장비, 연료 제공에 동의했다고 보도함.

청와대 안보대책회의 자료

생산연도 1976

생 산 과 북미1

MF번호 2010-36 / 15 / 1-18

1976년 중 개최된 미국 정부의 대한민국 원조 및 주한미군 철수 관련 청와대의 안보대책회의 자료임.

1. 1976.3.31. 회의 의제

- 미 의회의 FY77 안보원조 심의
 - 미국의 대한 군사경제 원조 총액: 4억 3천 290만 달러
 - 군사원조 2억 8천 6백만 달러, 경제원조 1억 4천 690만 달러

346

2. 1976.4.13. 회의 의제

- 대한 원조 및 주한미군 철수에 관한 미 상원 외교위 한국 관계 청문회(1976.4.8.)

3. 1976.4.14. 회의 의제

- FY76 안보원조수권법안이 미국 상·하 양원협의회에서 3.30. 및 4.2. 통과됨.
 - 대한 원조액: 양원 협의회(안) 2억 870만 달러, 행정부(안) 2억 2천 770만 달러

4. 1976.5.18. 회의 의제

- 미 하원 국제관계위 국제기구소위 청문회(위원장: Donald Fraser 의원)

5. 1976.6.2. 회의 의제

- 미 행정부가 의회에 제시한 대한 군사 및 경제원조를 삭감한 Fraser-Solarz 수정안이 1976.6.2. 미 하원 본회의에서 삭제됨.

6. 1976.6.30. 회의 의제

- SOFA(주둔군지위협정) 조인 10주년 기념행사
 - 7.8. 약 200명 초대 외무부차관 주최 칵테일 행사, 7.9. 주한미군 사령부 사열식 개최 예정

안보 정세보고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안보

MF번호 2010-36 / 16 / 1-330

1980년 중 외무부가 작성한 한반도 정세, 미국의 대외 및 군사 정책, 지역정세에 관한 보고서가 수록됨.

1. 1~2월 보고서 내용

- 북한의 위장평화공세, 1979년 북한정세 종합, 위کم 주한미군 사령관의 연설 내용
- 브라운 미국 국방장관의 중국(구 중공) 방문
- 아프가니스탄 및 이란사태 현황
- 남북 총리 실무접촉회의, 미 행정부의 제4차 한반도 보고서 제출
- 한태평양 합동 해상 기동훈련 등

2. 3~4월 보고서 내용

- 남북 총리회담 실무대표 제3~6차 접촉, 버드 미 총독의 하원 청문회 증언 내용
- 홀부르크 미 국무부 차관보의 기자회견 요지 등

3. 5~6월 보고서 내용

- 남북 총리회담 실무대표 제7~9차 접촉, 바르샤바조약기구 정상회담
- 제6차 서방선진공업국 정상회담 결과 등

4. 8월 보고서 내용

- 남북 총리회담 실무대표 제10차 접촉, 미국의 대소련 핵 전략 수정 등

5. 9~10월 보고서 내용

- 이란·이라크 분쟁, 제6차 북한 노동당 전당대회, 해외주둔 미 육군 병력 감축 내용
- 최근 남북한 군사력비교, 미 F-16 전투기 한국 배치 등

6. 11~12월 보고서 내용

- 일본 방위정책 동향, 대중국 무기수출 현황, 소련의 극동지역 군사력 증대
- 브라운 미 국방장관 방한, 레이건 미 행정부의 아시아문제 보고서 내용
- 제403~404차 정전위 본회담 개최 등

주한미군 병력 현황

생산연도 1979-1980

생 산 과 안보

MF번호 2010-36 / 18 / 1-36

1979.2~80.6월 중 정부가 주한미군 사령부로부터 접수한 주한미군 병력 현황임.

1. 1979년 총원

- 2월 말(40,936명), 4월 말(40,830명), 6월 말(39,739명)
- 8월 말(39,070명), 10월 말(40,662명), 12월 말(40,287명)

2. 1980년 총원

- 2월 말(40,678명), 4월 말(41,057명), 6월 말(41,563명)

주한미군 철수(감축)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안보

MF번호 2010-37 / 1 / 1-260

1. 주한미군 철수 추진 동향

- 1976.4.21. 카터 미 대통령은 주한 미 지상군을 단계적으로 철수한다고 발표하나, 1978.12.31. 주한미군 3,386명의 철수를 완료함(1979.4.3. 현재 주한미군: 40,830명).
- 1979.7.20 카터 대통령은 북한 군사력의 재평가 후 한반도에서의 군사균형 유지 및 평화정착 추진을 위해 주한 미 2사단 전투 병력의 추가 철수는 1981년까지 중지하되 주한미군 지원 병력은 1980년 말까지 소규모의 철수를 계속할 것이라고 발표함.
- 주한미군 철수에 관한 미 행정부 보고서(11월) 요지
 - 1980년 중 1,526명의 지상 지원 병력이 철수하며 2개 대전차 미사일 중대가 해체되어 그 장비는 한국군에 이양될 예정임.
 - 상기 주한미군 지원 병력의 철수는 한반도 군사균형 및 억지력 유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평가함.
- 1980.9.6. Meyer 미 육군 참모총장은 해외 주둔 미 육군 병력 중 약 7천 명(유럽 주둔 미군 6천 명, 주한미군 900명)을 감축할 것이라고 발표함.
 - 9.8. Blakemore 주한 미국대사관 참사관은 외무부 미주국장 면담 시 상기 7천 명의 철군은 주한미군 철군과 무관하며 동 병력이 유사시 한국에 투입될 수가 있어 한국에 유리하다고 함.

2. 철군 보완조치

- 미국은 주한미군 2사단 철수 계획에 따라 한국군 전력 보완을 위해 1977년 제10차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의 회의에서 8억 달러의 장비를 무상으로 이양할 것에 합의함.
- 1980.2.12. 미국 정부는 미 의회에 제출한 한반도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군사위협이 심각하다고 하고 한국군 전력증강계획(1979년 말까지 48억 8천만 달러 투입) 등 한국의 방위력 강화를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함.

바르샤바(WARSAW) 조약기구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동구

MF번호 2010-37 / 2 / 1-29

1980.5.14.~15.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개최된 바르샤바조약기구 정상회의 결과임.

1. 목적

- 바르샤바조약기구 회원국은 1979.12월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에 대한 미국과 서구의 대소련 압력 및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의 중거리 핵미사일의 서구 배치 계획에 대한 공동전략 방안을 모색

350

2. 참가자

- 브레즈네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 바르샤바조약기구 회원국 정상 등

3. 주요 결과(공동선언 발표 요지)

- 긴장완화 및 전쟁방지를 위한 전세계 지도자들이 참석하는 세계평화회의 개최 제의
- 구주군사력의 동결, 아프가니스탄 위기의 정치적 해결
- 각종 군축협상의 완결, 무력사용 금지, 핵무기 제조 중지에 관한 국제조약 체결을 위한 협상 추진
- 분쟁지역 군사력 및 군사 활동 감축을 위한 유엔회의 개최

4. 평가

- 바르샤바조약기구 회원국은 세계평화회의, 아프가니스탄 위기의 정치적 해결을 주장함으로써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이후 소련의 팽창주의에 대한 서구 및 제3세계의 강력한 대소련 압력을 완화시키고 대소련 제재 전선 구축을 방지하려는 의도로 평가

ANZUS(태평양안보조약기구) 이사회, 제29차. Washington D.C., 1980.2.27.-28.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대양주

MF번호 2010-37 / 3 / 1-14

1980.2.27.~28. 워싱턴 D.C.에서 제29차 ANZUS(태평양안보조약기구) 이사회가 개최됨.

1. 개최 배경

- ANZUS 이사회는 당초 호주에서 1980.6월 개최 예정이었으나, 1979.12월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에 대한 인도양의 경계강화 긴급성으로 1980.2월 미국에서 개최됨.

2. 참가자

- 미국, 뉴질랜드, 호주 등 ANZUS 3개 회원국 외상

3. 주요 결과

- 미군의 호주기지 이용문제 등을 협의하고 아래 요지의 공동선언을 발표함.
 -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철수 촉구 및 소련의 주권국에 대한 무력행사 반대
 - 아프가니스탄의 비동맹 중립정부 수립으로 안전과 평화유지, 모스크바 올림픽 개최 반대

SOFA(주둔군지위협정) 한·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125차, 1978.5.4.

생산연도 1978

생 산 과 한미안보협력

MF번호 2010-37 / 5 / 1-297

한·미 SOFA(주둔군지위협정)에 의거하여 1978.5.4. 주한미군 SOFA 회의실에서 개최된 제125차 한·미 합동위원회 결과 및 영문회의록이 수록됨.

● 주요 결과

- 시설구역분과위원회 건의 22건을 승인하고, 시설구역분과위원회에 신규과제 14건을 부여함.
- 부가가치세의 시행을 위한 절차 및 수입물품의 증명 절차에 관한 재무분과위원회 건의 2건을 승인함.
- 주한미군의 비세출자금기관에 고용된 한국인 종업원의 새로운 퇴직금제도에 관한 주한미군, 외기노조(주한미군 근무 한국인 조합), 한국 노동청 대표가 서명한 양해각서를 확인함.

SOFA(주둔군지위협정) 한·미국 합동위원회 - 상무분과위원회

생산연도 1971-1978

생 산 과 안보

MF번호 2010-37 / 14 / 1-130

1971~78년 중 한·미국 간 군용 낙하산 조달, 주한미군의 공업용 가스 조달 및 폐유 처리 문제 관련 내용임.

1. 한국 군용 낙하산 조달 문제

- 1970년부터 국방부는 육군 공수보병용 낙하산을 고려흥업으로부터 조달함.
- 1972.7.18. Michael Adler 미국 USAID(국제개발처) 처장은 국방부 앞 공한을 통해 KSPI(한국안전낙하산회사)가 한미 합작으로 한국군 수요를 위해 T-10 및 T-7A 낙하산을 생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국 업체가 낙하산을 생산하고 있다고 이의를 제기함.
- 1972.9.5. 개최된 한·미 상무분과위원회 회의시, 미국 측은 상기 T-10 및 T-7A의 명칭 보호를 요청하고 한국 측은 T-10 및 T-7A의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KSPI 및 고려흥업의 참여를 희망함.

2. 주한미군의 한국 공업용 가스 조달 문제

- 1975.10~78.1월 중 주한미군 당국은 수회에 걸쳐 주한 미8군의 공업용 가스 용기에 대한 자체 안전관리 절차를 계속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고 한국 고압가스안전법에 의한 검사를 생략하여 줄 것을 한국 정부에 요청함.
- 동력자원부는 1978.1.18.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한바, SOFA(주둔군지위협정) 규정의 해석에 대한 관계기관의 의견을 문의한 후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하고, 결정을 내릴 때까지 주한미군에 대한 가스공급은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함.
 - 외무부는 1.28. 미군의 시설 및 구역 내의 관리 책임은 SOFA 제3조에 의거 미국 측에 있으며, 미군이 사용하는 제반 용기에 대한 관리와 안전책임도 미 측에 있다고 하고, 한국 시중에 유통 되는 가스용기에 대해서는 한국 법규에 따라 검열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함.

3. 한국 업체의 주한미군 폐유 구입 문제

- 한국 정부는 1978년 폐유의 국내 수입금지와 함께 한국 업체의 주한미군으로부터의 폐유 구입도 금지한바 있음. 이에, 미국 측은 1978.4.11. 한·미 합동위원회에서 주한미군의 주둔에 따른 폐유 발생이 불가피하며, 폐유 문제는 한·미 양국의 공동 관심사로서 공동 해결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함.
- 상공부는 동 현황에 대한 사실 파악 후 조치 예정이며, 절차상으로 고시 개정 등을 통해 주한미군의 폐유 구입 금지를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임.

주한 UNC(유엔군사령부) 연례 보고서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국제연합

MF번호 2010-37 / 18 / 1-33

1980.4.29. 주한 UNC(유엔군사령부)가 유엔안보리에 제출한 1978.12.18.~79.12.15. 중 한국의 휴전 유지에 대한 보고서임.

1. 주요 내용

- 1978.12.18.~79.12.15. 중 북한은 5,700건의 휴전협정을 위반함.
- 군사정전위가 지난 26년간 한반도 긴장완화 및 상호 적대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 주요 역할을 해 왔으며 UNC는 직접 당사자 간 항구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휴전협정상의 의무를 계속 할 것이라고 강조함.

354

2. 군사정전위 개최 현황

- 본회의 397회, 비서장 회의 461회 개최
- 주요 사건
 - 유엔사 경비병에 대한 북한의 총기 위협사건(1979.3.8.)
 - 비무장지대 내 북한의 장벽 및 전기 철책선 구축 사건(6월)
 - 북한의 추도 해역 침입사건(7.21.)
 - 북한 무장공비의 비무장지대 침입사건(10.15. 및 10.22.)

캐나다 한국 참전 용사회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복미

MF번호 2010-37 / 19 / 1-76

1. 제8차 캐나다 한국 참전 용사회 총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1980.9.19.~21. 캐나다 온타리오주 런던시
- 참가자: 한국 참전 용사 부부동반 1,200명
- 주요 내용
 - 신임회장 선출, 한국 민속무용 및 태권도 시범 등

2. 주캐나다대사가 상기 총회에 참석하여 연설하고 런던시 소재 원호병원에 수용 중인 한국전 참전용사 27명을 위문함.

355

대한민국 독립운동사

북한의 도발사건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북미2

MF번호 2010-37 / 20 / 1-30

1980년 중 북한의 도발사건 및 군사정전위 개최 관련 내용임.

1. 제400차 군사정전위원회(1980.4.3.)

- 주한 UNC(유엔군사령부) 측 주장
 - 북한 측에 대해 3.23. 한강 하구에서 북한의 무장침투사건, 3.25. 포항 앞바다 무장간첩선 침투사건 등의 증거를 제시하면서 이는 엄중한 휴전협정 위반이며 중대한 대결상태로 확대될 수 있었음을 상기시키면서 무장간첩 침투 중지와 관련자 처벌을 요구함.
- 북한 측 주장
 - 한국 내부 사정의 은폐를 위한 반공 모략극임.

2. 미 국방부는 주한미군 순찰대가 1980.5.12. 오후 9시 30분경 비무장지대 공동경비구역 남방에서 정체불명의 사람들과 소규모 총격전을 벌였으나 미국 측의 사상자는 없다고 발표하고, UNC는 5.13. 동 사건을 북한 측에 통보함.

3. UNC 측은 1980.5.15. 새벽 1시 30분경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공동경비구역 근처에서 UNC 경비병이 북한군과 교전했다고 발표함.

국회 국방위원회 의원단 미국 방문, 1980.3.20.-26.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복미

MF번호 2010-38 / 1 / 1-109

1980.3.20.~26. 국회 국방위원회 의원단이 미국을 방문함.

1. 방문 목적

- 제2차 한·미 국방위원회 연례회의 참석

2. 방미 위원단

- 문형태 국방위원회 위원장 등 7명

3. 주요 일정

- 한·미 군사위원회 간담회
- Stilwell 장군, Moore 제독, Vessey 육군참모차장, Komer 국방부 차관 예방
- Sam Nunn 의원, Jacob Javits 상원 의원, Holbrooke 국무부 차관보 면담

4. 주요 결과

- 한·미 양측은 아프가니스탄 및 이란 사태의 극동에 미치는 영향, 태평양지역에서의 소련의 군사력 증강, 일본의 방위력증강, 남북대화, 북한의 군사력, 10·26 사태 이후 한국의 정치발전 노력, 한·미 방위산업 협력 등에 대해 협의함.

5. 국회 국방위원의 방미 참고자료(1980.2.6., 외무부)

- 10·26 사태 이후 한·미 관계 일지, 한·미 간 주요 문제,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 아프가니스탄사태 관련 미 국무부의 세계정세 평가

Chaverri Samudio, Johnny 코스타리카 공안 내무성 정보국장 방한, 1980.9.15.-21.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중미

MF번호 2010-38 / 2 / 1-42

1980.9.15.~21. Johnny Chaverri 코스타리카 공안 내무성 정보국장이 방한함.

1. 경위

- 정부는 북한의 코스타리카 침투 저지를 위해 Chaverri 정보국장 부처를 방한 초청함.

2. 주요 일정

- 외무부차관 예방, 외무부 미주국장 면담, 판문점 및 땅굴 시찰
- 현대조선, 현대자동차, 방위산업체 시찰, 민속촌 관광

358

3. 주요 결과

- 김동휘 외무부차관은 9.16. Chaverri 정보국장 면담 시 북한의 코스타리카 침투 저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한 바, 동 국장은 계속 노력하겠다고 하고 최근 쿠바를 거점으로 한 북한의 대코스타리카 침투공세가 격화되고 있다고 언급함.

Brown, Harold 미국 국방장관 방한, 1980.12.13.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안보 / 북미

MF번호 2010-38 / 3 / 1-198

1980.12.13. Harold Brown 미국 국방장관이 방한함.

1. 경위

- Brown 국방장관은 1980.12.11.~12. 일본 방문 계기에 12.13. 방한함.

2. 수행원

- T. B. Ross 국방부 공보차관보 등 6명

3. 주요 일정

- 전두환 대통령 예방, 국방장관회담

4. 한·미 국방장관회담 시 협의 내용

- 동북아 군사정세 평가, 양국 군사협력 현안, 극동지역 미 군사력의 증강계획

5. Brown 장관의 방한 결과에 대한 언론 발표 요지(12.13.)

-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북한의 군사적 위협 및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안보정세를 검토함.
- 한국 안보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긴요하며 미국 안보에 중요함을 인식함.
- 한국은 강력하고 안정된 민주사회로서 성장할 것을 확신함.

6. Brown 장관 방한 준비자료(외무부)

- 김대중 문제에 대한 미국 행정부, 미 의회, 미 언론 반응(12.2.)
- Brown 국방장관 방한 면담 자료(12월)
 - 인적사항, 수행원 명단, 면담 자료(한반도 안보정세, 현안문제, 국내 정치 관련 문제에 관한 한국 입장)
 - 남북한 군사력 비교 및 남북한 국방비 지출 현황,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원 내역

Meyer, Edward 미국 육군참모총장 방한, 1980.6.30.-7.3.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안보

MF번호 2010-38 / 4 / 1-40

1980.6.30.~7.3. Edward Meyer 미국 육군참모총장이 방한함.

1. 방한 목적

- 주한미군 시찰

2. 주요 일정

- 최규하 대통령 예방, 육군총장 주최 만찬
- 주한미군 제19지원단, 802 공병대대, 511 비행장, 한미 1군단, 백골부대 방문

360

3. 최규하 대통령 예방 시 협의 요지

- 한·미 양측은 한반도 및 주변 정세, 중국(구 중공) 및 소련 관계와 한반도에 대한 영향, 아프가니스탄 및 이란 사태, 모스크바 올림픽 불참가 문제, 한국 국내 정세 등에 대해 협의하고, 북한의 태도로 보아 남북대화에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데 견해가 일치함.
- 미국 측은 한국의 안보는 미국의 이해와 중요한 관계에 있으며, 주한 2사단이 군사적·전략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 전쟁 재발의 억제 요소라고 언급함.

4. Meyer 육군참모총장 면담자료(6.25., 외무부)

- 한반도 주변 안보정세 검토, 미국의 대한 안보 공약, 주한미군 문제, 대한민국 안보지원의 강화

한·일본 간 해군순양훈련함 상호방문 문제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일본

MF번호 2010-38 / 5 / 1-49

1980년 중 한·일본 간 해군순양훈련함의 상호방문 추진 관련 내용임.

1. 1978.3월 한국 정부는 한·일본 간 해군사관생 훈련함의 교류 가능성에 대해 일본 정부에 의사를 타진한바, 일본 정부는 1978.7월 환영의사를 표명함.
2. 1979.7월 일본 방위청 장관의 방한 시 한·일 해군사관생 훈련함의 상호 교환 방문에 대해 합의함.
3. 1980.6.17. 국방부는 한·일본 간 해군사관생 훈련함의 상호 방문에 대해 외무부에 의견을 문의한바, 7.3. 외무부는 한·일본 간 훈련함의 상호 방문이 북한 및 주변 공산국가들의 경계심을 자극하여 중국(구 중공)과 소련의 대북한 군사협력 강화의 명분을 부여할 부정적 측면을 고려하여 한·일본 간 사전협의 후 적절한 시기에 시행할 것을 회신함.
4. 1980.8.11. 한국 정부는 주일본대사관을 통해 일본 정부에 한국 해군사관생 훈련함의 1980.12.17.~20. 중 요코스카 기항을 요청하였으나, 일본 정부가 김대중 재판과 관련된 일본 정치정세를 감안하여 신중한 입장을 보이자, 10.17. 일본기항을 취소함.

중공의 핵전력 개발 문제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안보 / 중국

MF번호 2010-38 / 7 / 1-54

1980년 중 중국(구 중공)의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관한 내용임.

1. 1980.5.9. 중국은 5.12.~6.10. 중 ICBM 시험발사 예정임을 발표하고 5.18. 및 5.21. 2회에 걸쳐 중국 서북지역 위구르에서 태평양으로 ICBM을 시험발사함.

- 미사일 제원
 - 길이 43m, 중량 200톤, 최대 사정거리 1만 2천 km, 3단식 액체연료 추진
 - 핵탄두 무게 약 1톤, 3개 핵탄두 적재 가능
- 목적
 - 중국의 우주 및 위성 개발 연구, 4대 현대화(국방 현대화) 실현 필요성

2. 주요국 반응

- 솔로몬제도, 뉴질랜드, 호주
 - 태평양에서 군비경쟁을 촉진시키는 미사일 시험에 반대하는 입장 표명
- 일본
 - 태평양 수역 내 일본어선이 조업 중이라고 하면서 중국 측에 시험발사 중지를 요청

3. 평가

- 중국은 처음으로 ICBM 시험발사에 성공하여 세계 3번째 ICBM 보유국이 되었으며 대소련 보복력을 과시함.
- 중국의 제3세계 및 비동맹권에 대한 영향력 증대로 세력판도에 변화가 예상됨.

NPT(핵확산금지조약) 평가회의, 제2차. Geneva, 1980.8.11.-9.5. 전4권 (V.1 제1-2차 준비회의)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조약2

MF번호 2010-38 / 8 / 1-263

정부는 1979.4월 및 8월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2차 NPT(핵확산금지조약) 평가회의 (1980.8.11.~9.5., 제네바)를 위한 제1~2차 준비회의에 박노수 주제네바대표부 공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국

- IAEA(국제원자력기구) 이사국 및 유엔군축 회원국 39개국

2. 주요의제

- 1980년 개최 예정인 제2차 NPT 평가회의 시기 및 장소, 의사 규칙 및 의제, 회의문서 채택 등

3. 정부 훈령

- 한국의 원자력 정책과 입장을 홍보하고, 핵보유국의 핵 군비 축소를 촉구할 것

4. 주요 결과

- 제1차 준비회의(1979.4.17.~20.)
 - 의장: R. R. Fernandez 호주대사
 - 제2차 NPT 평가회의 개최 관련 기초사항에 대해 협의하고, 제2차 준비회의는 1979.8월 개최하기로 합의함.
- 제2차 준비회의(1979.8.20.~24.)
 - 의장: G. Herder 동독대사
 - 제3차 준비회의를 1980.3.24.~4.3. 개최하고, 제2차 NPT 평가회의를 1980.8.11.~9.5. 제네바에서 개최하기로 함.
 - 제2차 NPT 평가회의 의제를 채택하고, 제1차 NPT 평가회의 Formula를 채택하여 제2차 평가회의 경비를 분담하기로 함. 한국 측 분담 비율은 0.14%로서 약 1,400달러임.
 -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군축문제에 대해 핵 선진국과 비동맹·중립국가 간 의견 대립이 표출됨.

NPT(핵확산금지조약) 평가회의, 제2차. Geneva, 1980.8.11.-9.5. 전4권 (V.2 제3차 준비회의)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조약2

MF번호 2010-38 / 9 / 1-123

정부는 1980.3.24.~4.1.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2차 NPT(핵확산금지조약) 평가회의 (1980.8.11.~9.5., 제네바)를 위한 제3차 준비회의에 이기주 주제네바대표부 참사관을 수석 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국

- IAEA(국제원자력기구) 이사국 및 유엔군축 회원국 39개국

364

2. 주요의제

- 1980년 개최 예정인 제2차 NPT 평가회의 의제, 절차 규칙, 회의문서, 최종문서 등

3. 정부 훈령

- 국제 평화의 공고화를 위하여 핵무기 비확산 및 군축,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선진·개도국 간 협력을 강조할 것

4. 주요 결과

- 의장: C. G. Maina 케냐대사
- 제2차 NPT 평가회의 시기 및 장소, 의사규칙, 의제를 확정하고 회의문서 검토를 완료함.
- 제2차 NPT 평가회의 최종문서의 구조 및 주요 내용은 제2차 평가회의 시 결정하기로 함.

5. 평가 및 대책

- 제3차 준비회의에서 제2차 평가회의 개최를 위한 준비사항을 대부분 확정함.
- 금번 준비회의에서 핵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의견 대립에 비추어 볼 때 제2차 평가회의 시 논란이 예상되며 한국은 다각적인 대책수립이 필요함.

NPT(핵확산금지조약) 평가회의, 제2차. Geneva, 1980.8.11.-9.5. 전4권 (V.3 제2차 평가회의)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조약2

MF번호 2010-38 / 10 / 1-264

정부는 1980.8.11.~9.7.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2차 NPT(핵확산금지조약) 평가회의에 노신영 주제네바대표부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국

- NPT 114개 조약당사국 중 75개국, 조약서명국 1개국, 옵서버 11개국, 유엔 등 국제기구

2. 주요 의제

- 핵무기 비확산 및 군축,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비핵지대 설정, 핵무기 비보유국에 대한 안전보장 문제
- 의장 및 부의장 선출, 사무총장 지명 인준, 회의 경비 분담금 확정

3. 정부 훈령

- NPT 목적에 대한 지지 표명 및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선진·개도국 간 협력강화
- 한국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움직임을 저지하고, 비동맹그룹의 소극적인 안전보장(Negative Security Assurance) 주장에 반대할 것

4. 회의 결과

- 77그룹의 핵군축 문제에 대한 강경한 입장 고수 등 핵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의견 대립으로 최종선언문 작성에 실패하고, 제3차 NPT 평가회의를 1985년 중 개최하기로 함.
 - 핵 선진국은 핵군축 문제를 핵보유 당사국 간의 문제로 국한하고 평화적 핵 이용 기술의 핵무기 제조기술로의 전환을 우려함.
 - 핵 후진국은 핵 선진국의 핵군축 부진을 비난하고 향후 유엔 군축위원회를 중심으로 군축이행을 촉구함.
- 한국은 동아시아를 대표하는 부의장국에 선출됨.

5. 한국대표단의 기초연설 요지

- NPT 비당사국의 조속한 가입을 촉구하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핵 선진국과 후진국 간 협력을 강조함.
- 한국의 안보 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수락할 수 없다고 하고, 각국 안보상황의 특수성을 무시한 일률적인 소극적인 안전보장 부과에 반대함.

NPT(핵확산금지조약) 평가회의, 제2차. Geneva, 1980.8.11.-9.5. 전4권 (V.4 제안 및 회의요록)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조약2

MF번호 2010-38 / 11 / 1-448

1980.8.11.~9.7.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2차 NPT(핵확산금지조약) 평가회의에서 토의된 제안 및 회의 요록의 영문 자료임.

1. 주요 의제(NPT 제8조 3항에 규정된 조약 운용 평가)

- 핵무기 및 핵폭발 장치의 양도, 인수 및 제조 금지(제1조 및 제2조)
- 안전조치 수락(제3조),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제4조)
- 핵폭발의 평화적 이용 혜택(제5조), 핵 군비축소 협상(제6조), 비핵지대 설정(제7조)

366

2. 위원회 구성 및 의제

- 제1위원회(군축 및 안보)
 - 핵무기의 비확산 의무, 핵 군축, 안전보장
- 제2위원회(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 안전조치, 평화적 이용

3. 제1위원회 보고서, 제2위원회 보고서, 최종선언문 비공식 초안, 최종회의 문서 등이 수록됨.

한·일본 간 군사협력

생산연도 1979-1980

생 산 과 일본

MF번호 2010-38 / 12 / 1-67

1. 한·일본 군사협력에 관한 보도(1980.1.31., 필립 폰즈 르몽드지 도쿄특파원)

- 한·일본 양국은 군사요원의 교환과 해군함정 기함 편의제공을 통하여 군사협력 시작
- 한·일본 양국은 모두 미국과 안보조약으로 연결되어 있어 지금까지는 미국을 통한 간접협력에 그쳤으나, 1979.7월 야마시타 방위청장의 방한을 계기로 직접 협력의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보임.

2. “자위대와 한국군 합동 연습은 합법 - 방위청 견해” 제하의 보도(1980.2.10., 요미우리신문)

- 2.9. 오전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사사 방위청 참사관은 자위대와 한국군의 합동 연습이 법적으로는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힘. 그러나 그 훈련의 타당성에 대하여는 정책 판단과 연관되나 현재로서는 그러한 필요성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언급함.

3. 오히라 수상, 한·일본 합동 군사훈련 가능성 시사(1980.3.25., 중의원 본회의)

- ‘림팩 80’과 관련하여 한국과의 합동 훈련의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집단지위권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한국과 합동 군사연습을 하여도 법적으로는 지장이 없다고 생각함. 다만 지금 구체적으로 한국과 합동 군사훈련을 하려는 의도는 갖고 있지 않다”라고 답변

공무원 국제기구 파견 및 훈련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국제기구2

MF번호 2010-38 / 13 / 1-55

1. 국제기구 직원 파견제도 조사

- 외무부는 국제기구 소재 공관에 국제기구 파견 근무제도에 관한 조사 보고를 지시하고 해당 공관은 동 제도를 보고한바, 외무부는 이를 바탕으로 “국제기구 직원 파견제도 조사” 자료를 작성함.
 - 기관: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IAEA(국제원자력기구), FAO(유엔식량농업기구),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 IFAD(국제농업개발기금), WHO(세계보건기구), ITU(국제전기통신연합), WMO(세계기상기구), WIPO(지식재산권기구),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유네스코 등
 - 조사 내용: 직종, 기간, 비용, 근무지, 자격 요건, 채용 절차, 현황

368

2. 정부 공무원의 국제기구 사무국 파견계획(안) 수립

- 목적
 - 국제기구 동향 등 정보수집
 - 국제기구 사무국 진출의 기반조성
 - 국제회의 전문가 양성
- 파견대상 기구 및 분야
 - 유네스코, ITU, IFAD, UNIDO, ESCAP, IAEA
- 파견 절차 및 소요예산 등

국제기구 분담금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국제연합 / 경제기구

MF번호 2010-38 / 14 / 1-213

1. 국제기구 분담금 지출 일원화

- 1980.1.7. 외무부는 외무부 소관 국제기구 참가 활동비 중 국제기구 분담금을 국제기구국에서 종합하여 일괄 조치하도록 재가를 득함.
 - 국제기구국, 조약국, 정보문화국 및 국제경제국에서 담당 국제기구별로 각각 분담금조치를 취해왔으나, 국제기구 분담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일원화

2. 인종차별철폐위원회 1979년도 분담금 지불

- 1980.1.7. 외무부는 1979년도 인종차별철폐위원회 분담금 납부에 관한 재가를 득함.
 - 유엔 예산 당국 지불요청서와 한국의 분담금 733달러 조속 납부 요청
 - 1980년 예산에 반영할 수 없어 예산상 예상되는 잉여분(2만 1천 달러) 중에서 지불

3. 인종차별철폐위원회 1980년도 분담금 지불

- 1980.12.16. 외무부는 1980년도 인종차별철폐위원회 분담금(843달러) 납부에 관한 재가를 득함.

유엔 공채 원리금 상환액 수령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국제연합

MF번호 2010-38 / 15 / 1-6

1. 유엔 공채 상환금 송부

- 1980.1.29. 외무부는 한국은행에 유엔 공채 상환금 송부를 알리고 수령 즉시 영수 통보를 요청함.
- 유엔사무총장이 주유엔대표부를 통해 한국 정부가 1962년 구입한 유엔 공채에 대한 제18차년도말 원금 상환액(17,600달러) 및 이자(3,008달러) 등 총액 20,608달러 송부
- 첨부: 수표 1매, 유엔사무총장 공한 사본 1부

370

2. 유엔 공채 상환금 수령증 송부

- 1980.2.7. 외무부는 주유엔대사에게 유엔 공채 상환금에 관한 한국은행의 수령증을 접수하여 송부함.

유엔총회, 제35차. New York, 1980.9.16.-12.17. 전7권 (V.1 기본대책 I: 3-8월)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국제연합

MF번호 2010-38 / 16 / 1-473

제35차 유엔총회(1980.9.16.~12.17., 뉴욕) 준비를 위한 1980.3~8월 중 내용임.

1. 유엔 및 비동맹회의 등에서의 한국문제(1980.3월, 외무부)

- 1979년도 남북한 간 주요 대결 평가
- 1980년도 유엔 및 비동맹 등 대책
- 결론: 대유엔 장기 목표(유엔 가입), 당면 목표(총회의 한국문제 토의 저지)

2. 북한의 국제기구에서의 책동에 대한 대통령 앞 보고(1980.7.2., 외무부)

- 책동 현황, 향후 책동 전망, 기본대책, 1980년 하반기 주요 국제회의

3. 제35차 유엔총회에서 한국문제 상정 전망(1980.7월, 주유엔대표부)

- 북한의 외교책동 전망
- 제35차 유엔총회에서 북한의 책동 가능성
- 북한의 책동에 대한 대처방안 및 활동계획

4. 제35차 유엔총회 기본대책(1980.8.21., 외무부)

- 제34차 유엔총회 이후 북한 동향
- 북한의 대유엔 책동 가능성 점검
- 한국의 대처 방안

유엔총회, 제35차. New York, 1980.9.16.-12.17. 전7권 (V.2 기본대책 II: 9-10월)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국제연합

MF번호 2010-39 / 1 / 1-467

제35차 유엔총회(1980.9.16.~12.17., 뉴욕) 준비를 위한 1980.9~10월 중 내용임.

1. 북한, '한국문제'의 유엔사무총장 연례보고서 포함 책동

- 1980.9.5. 한시해 주유엔 북한대사는 Perez de Cuellar 한국담당 유엔 사무차장을 면담한바, 제35차 유엔총회에 제출하는 유엔사무총장 연례보고서에 한국문제를 북한 선전 노선에 따라 포함시켜줄 것을 요청함.
- 9.5. 동 사무차장은 주유엔대사에게 상기 관련 한국 측 입장을 문의하면서, “남북한 간의 평화적 대화가 성공적으로 진전되기를 희망한다”라는 선에서 포함시키는 안을 제시함.
- 9.8. 외무부는 주유엔대사를 통해 아래 입장을 통보하고, 유엔 한국문제 불거론 입장을 분명히 함.
- 남북한 총리회담을 위한 양방 당국자 간 접촉을 진행 중이므로 유엔사무총장 보고서에 한국 문제가 언급될 이유가 없음.

2. 제35차 유엔총회 북한책동 현황

- 허담 등 7개 특사, 33개국 방문 외교 전개를 바탕으로 유엔총회에서 선전 책동
- 한국 측 대책 및 대처
- 영향력 있는 국가의 협조 획득, 반박 내지 건설적 발언 시행

3. 호주 측, 한국문제에 관한 발언 곤란 의사 표명

- 1980.10.2. 주한 호주대사는 김태지 외무부 아주국장을 면담, 유엔 제1위원회 토의 시 한국 측에 유리한 발언 요청 관련 아래 입장을 전달함.
- 호주 정부로서는 종래의 대한민국 정책에는 변함이 없으나, 유엔 제1위원회에서 한국에 유리한 발언을 하는 문제는 한국의 현 정세, 특히 김대중 문제 등에 대한 호주 정부의 관심과 관련하여 한국 측의 요청을 호의적으로 고려할 수 없다는 입장임.
- 김태지 국장은 호주 정부가 한국문제에 대해 한국의 입장을 위하여 아무런 발언도 할 수 없다는 데 대해 실망한다고 언급함.

유엔총회, 제35차. New York, 1980.9.16.-12.17. 전7권 (V.3 기조연설 중 한국문제 발언내용)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국제연합

MF번호 2010-39 / 2 / 1-311

제35차 유엔총회(1980.9.16.~12.17., 뉴욕) 시 각국 기조연설 중 한국문제 발언에 관한 내용임.

1. 유엔총회 시 한국문제 거론

- 제35차 유엔총회 기조연설(1980.9.22.~10.10.)에서 154개 유엔 회원국 중 149개국이 기조연설을 한바, 그 중 51개국이 한국문제에 관해 언급

2. 한국문제 언급 증가

-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국문제에 관해 언급하는 국가 수는 1976년의 한국문제 토의 지양 이래 감소되는 추세였으나 금년 총회에서는 9개국 증가
- 북한이 한국의 국내 사태를 악용, 비방·중상을 주로 하는 정치선전 활동을 강화하여 왔고 북한 입장에 동조하는 국가들을 동원하여 종용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

3. 한국문제 발언 국가 내용 분석(1980.10.31.)

- 한국 입장 지지: 5개국
 - 당사자 간의 남북대화를 통한 통일문제의 평화적인 해결 지지
- 북한 입장 지지: 38개국
 - 주한미군 철수, 외국 군사기지 철폐,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철수, 유엔사 해체, 현 휴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치
 - 황화 중국(구 중공) 외교부장은 한국의 국내사태를 맹렬히 비난하고 남북대화 중단 책임을 한국 측에 전가하면서 북한 입장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강조
 - 그로미코 소련 외상은 미군의 한국 주둔이 통일의 장애요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한·미 양국 비난
- 중립 입장 표명: 8개국

373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역사자료

유엔총회, 제35차. New York, 1980.9.16.-12.17. 전7권 (V.4 본회의 및 위원회별 토의)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국제연합

MF번호 2010-39 / 3 / 1-382

제35차 유엔총회(1980.9.16.~12.17., 뉴욕) 본회의 및 위원회별 토의 관련 내용임.

1. 본회의 토의

- 주요 토의내용
 - 캄보디아(구 캄푸차)사태
 -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거 등
 - 아프가니스탄사태
 - 나미비아사태
 - 팔레스타인문제
 - 중동문제
- 캄보디아 문제 토의
 - 1980.9.19. 현재 접수된 68개국 대표단의 신임장을 수락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에 대해 베트남 등 17개국이 캄보디아 대표의 신임장 제외 수정안 제출
 - 아세안을 중심으로 하는 13개국과 베트남 등 친소련 17개국 간에 격렬한 논쟁
 - 찬반 토론 후 베트남 수정안이 부결됨으로써 신임장위원회 보고서 채택

2. 위원회별 토의

- 제1위원회
 - 제1위원회 안건 50(국제안보 강화 선언 이행 검토) 토의 시, 일부 공산권 국가(11개국)가 한국문제에 관해 언급
- 특별위원회
 - 의제: 방사능 초과 문제, 대기권의 평화적 이용, 평화유지군 문제, 아랍점령지에서의 이스라엘의 인권탄압 불법행위 조사위원회 보고 등
- 제4위원회
 - 의제: 서부사하라 및 동티모르 문제

유엔총회, 제35차. New York, 1980.9.16.-12.17. 전7권 (V.5 제3위원회)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국제연합

MF번호 2010-39 / 4 / 1-376

제35차 유엔총회(1980.9.16.~12.17., 뉴욕) 제3위원회 관련 내용임.

1. 제35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 대책(1980.9.30., 외무부 국제연합과)

- 친북한 국가 및 서구 국가는 제3위원회에서 인권문제에 관련된 의제 토의 시 한국 국내문제에 대해 비난할 것으로 전망됨.
- 제3위원회 관심 의제 및 토의 일정
 - 의제12: 경제사회이사회 보고서(1980.11.17.~26.)
 - 의제82: 고문 및 비인간적 대우 문제(1980.11.27.~12.6.)
- 대처 방안
 - 소수의 중남미 및 아프리카지역 국가 집중 교섭을 통해 한국 입장 지지 발언 확보

2. 김대중 관련 유엔 및 국제사회 조치

- 1980.10.27. 제35차 유엔총회 의장(뤼디거 폰 베크마르, 서독)은 주유엔대표부대사에게 김대중에 대한 사형언도 회피 호소
- 11.20. 네덜란드, 김대중에 대한 사형 지적
 - 오스트리아 등 일부 서구 국가, 김대중 사면호소 결의안 제3위원회 제출 검토
- 11.25. 발트하임 유엔사무총장, 김대중 사면호소 메시지 전두환 대통령에게 송부
 - 중국(구 중공), 김대중 사형집행 정지를 위한 국제사회 노력 촉구
- 12.8. 제35차 유엔총회 의장, 개인자격으로 김대중 사면 요청 서한을 주유엔대표부대사에게 송부
- 12.13. 한국 측, 전두환 대통령의 회신 메시지(12.10.자) 유엔사무총장에게 전달

유엔총회, 제35차. New York, 1980.9.16.-12.17. 전7권 (V.6 종합보고서)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국제연합

MF번호 2010-39 / 5 / 1-45

제35차 유엔총회(1980.9.16.~12.17., 뉴욕) 종합보고서 관련 내용임.

1. 주요 지역 분쟁문제 처리

-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등 42개국이 공동으로 제안한 아프가니스탄 주둔 외군의 즉각적인 전면 철수를 요청한 결의안 압도적 다수결로 통과
- 캄보디아(구 캄푸차) 및 동남아시아: 30개국의 공동 결의안 가결
 - 자유선거 실시, 외군 개입 방지 보장, 유엔평화유지군 배치 등
- 남아프리카
 - 나미비아 독립문제: 유엔사무총장은 남아공 정부, 정당대표 및 SWAPO(남서아프리카인민기구)가 당사자로 참석하고 서방 5개국, 전선 5개국, 나이지리아, OAU(아프리카단결기구) 등이 옵서버로 참석하는 제네바회의 개최를 시도하였으나, 남아공 측의 거부로 동 회의가 결렬됨. 그러나 나미비아 독립 투쟁 역사상 최초로 관계당사자가 회동하여 접촉할 수 있었던 점은 긍정적인 면으로 평가됨.
 - 아파르트헤이트 정책(남아공 정부의 인종차별 정책): 예년과 같이 아파르트헤이트를 반대하는 결의(18개)를 채택함. 남아공에 대하여 유류 수출 금지를 포함한 포괄적이고 강제적인 제재조치를 단행할 것을 안보리에 촉구하고, 제재조치를 위한 국제회의 소집을 요청함.
- 중동: 팔레스타인문제, 이스라엘군의 무조건 전면 철수 촉구
- 동티모르: 동티모르인의 자결권을 재확인하는 요지의 결의안 채택

2. 기타 주요 현안문제

- 군축문제, 경제문제, 인권 및 사회문제, 난민유출 방지문제, 법률관계

3. 유엔 기구 관련 사항

- 신회원국 가입
 - 1980.1.8. 짐바브웨의 유엔가입을 결정하는 결의를 표결 없이 채택
 - 1980.9.22.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의 유엔가입 결정 결의
-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거

4. 한국 국내문제 관련 발언

- 총회 기조연설(1980.9.22.~10.10.) 시 154개 유엔 회원국 중 149개국이 기조연설에 참여한바, 그 중 51개국이 한국문제에 관해 언급함.



- 한국 입장 지지 국가: 14개국(적극 지지 5개국, 온건 발언 9개국)
- 북한 입장 지지 국가: 37개국, 중국(구 중공), 몽골, 동구 국가 등 친북한 14개국, 한국 국내문제 비방 발언
- 제3위원회 인권문제 안건 토의(1980.11.17.~20.) 시 12개 국가(백러시아, 폴란드, 쿠바, 소련, 불가리아, 중국, 동독, 몽골, 루마니아, 유고, 헝가리, 네덜란드)가 한국을 인권위반 국가의 하나로 예시, 김대중 재판, 광주사태 등 비난 발언

유엔총회, 제35차. New York, 1980.9.16.-12.17. 전7권 (V.7 국가별 지지교섭)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국제연합

MF번호 2010-39 / 6 / 1-189

제35차 유엔총회(1980.9.16.~12.17., 뉴욕)에서의 한국 입장 지지를 위한 지역별 지지교섭 관련 내용임.

1. 중동·아프리카지역 공관 활동

- 1980.9.13. 주바레인대사는 Rashid 외상과 면담, 한반도 문제에 관한 입장을 설명하고 북한의 책동 가능성에 대비한 교섭을 진행한바, 동 외상은 북한 측 책동이 있을 경우 적절히 한국 입장을 지지하겠다고 언급

378

2. 미주지역 공관 활동

- 1980.9.15. 주콜롬비아대사는 콜롬비아 외무차관을 방문, 북한의 책동 배경을 설명하면서 한국 입장 지지를 요청하고 기조연설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한바, 동 차관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함.
- 9.18. 오재희 주미국대사관 공사는 미 국무부 국제기구담당 부차관보를 면담, 총회 기조연설 및 제1위원회에서 한반도 평화유지 중요성 및 남북한 당사자 간 접촉을 통한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지지하는 내용 강조를 요청한바, 미국 측은 북한 태도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적절히 삽입하겠다고 언급
- 9.18. 주캐나다대사는 캐나다 외무성 유엔국장을 면담, 제1위원회 토의과정에서 한국 입장 지지 발언을 요청한바, 동 국장은 한국 입장을 적극 지지하겠다고 다짐

3. 아주지역 공관 활동

- 1980.9.19. 김병연 주일본대사관 참사관은 외무성 유엔국 서기관을 방문, 일본 대표의 발언에 한반도 평화유지의 중요성을 촉구하고 한국문제는 직접 당사자 간 대화를 통한 해결책을 촉구하는 내용을 발언해 줄 것을 요청한바, 동 서기관은 한국 측 입장을 현지 대표단에게 훈령하겠다고 언급

4. 구주지역 공관 활동

- 1980.9.19. 주독일대사는 Gorenflos 외무성 유엔국장을 면담, 겐서 외상의 기조연설 및 위원회 토의에서 한반도 평화유지의 중요성과 남북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내용을 포함시켜 발언해 줄 것을 요청한바, 동 국장은 상황을 보면서 한국 측 요청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언급

5. 주독일대사관 활동

- 1980.9.24. 독일 외상 주최 리셉션에서 주독일 호주대사는 주독일대사에게 호주는 유엔에서 한국문제를 일체 언급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언급

유엔 특별총회, 제11차. New York, 1980.8.25.-9.15.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경제기구 / 국제연합

MF번호 2010-39 / 7 / 1-412

제11차 유엔 특별총회가 개발도상국의 개발촉진 및 경제협력을 주제로 1980.8.25.~9.15. 뉴욕에서 개최됨.

1. 참가국

- 유엔 회원국 153개국

2. 주요 의제

- 신국제 경제질서 수립 진전사항 평가
- 개발도상국 개발촉진 및 국제경제협력 방안 마련
 - 제3차 유엔개발 10년을 위한 IDS(국제개발전략) 문제 토의
 - 유엔 남북협상(Global Negotiations)의 절차 및 의제 채택
- 최저개도국 및 MSA(다자간철강협정) 개도국 지원문제

3. 회의 결과

- IDS 최종안에 합의
 - 공식 채택은 정기총회로 이관
- 유엔 남북협상의 절차 타결 실패
 - 타협안이 제출되었으나, 미국·영국·서독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정기총회로 이관
 - 유엔 남북협상의 의제는 절차 합의 후 토의하자는 개도국 측 요구에 따라 총회로 이관
- 최저개도국에 대한 자원 이전 증대 및 MSA 개도국 지원에 관한 2개 결의안 채택

4. 평가 및 전망

- 유엔 남북협상 문제 타결에 실패한 것에 대해 개도국은 선진국 측의 무성의를 비판
- 남북협상 개최 문제는 남북문제에 대한 선진·개도국 간의 기본입장과 직결되는 것으로 에너지·일차산품 등 실질문제에서 상호 간 양보와 타협 없이는 타결을 기대하기 어려움.
- 금번 제35차 유엔총회에서도 남북협상 개최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등장할 것으로 전망되나, 타결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유엔 긴급 특별총회, 제6차. New York, 1980.1.10.-14.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국제연합

MF번호 2010-39 / 8 / 1-31

제6차 유엔 긴급 특별총회가 1980.1.10.~14. 뉴욕에서 개최됨.

1. 특별총회 명칭

- 아프가니스탄사태 관련 긴급 특별총회

2. 소집 요청(1980.1.19.)

- 안보리 결의 제462호

3. 결의안 제출(1980.1.14.)

- 파키스탄 등 24개국

4. 결의안 내용

- 무력 개입 강력 규탄
- 아프가니스탄 주둔 외국군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 전면 철군 요청
- 유엔사무총장으로 하여금 본 건의 이행 상태를 회원국 및 안보리에 신속하게 통보하도록 요청
- 안보리의 본 건의 이행 촉진 방안을 강구하도록 요청

5. 표결(1980.1.14)

- 104:18:18로 통과

UNCOW(유엔전원위원회) 회의. New York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2010-39 / 9 / 1-251

1980년 중 뉴욕에서 개최된 UNCOW(유엔전원위원회) 회의 관련 내용임.

1. 조직회의(Organizational Session)(1980.1.14.~16.)

- 토의내용: 1980년도 UNCOW 운영 방식 결정에 관한 보고서 채택

2. 제1차 회의(1980.3.31.~4.11.)

- 수석대표: 윤석헌 주유엔대사
- 주요 의제
 - 남북협상(Global Negotiations) 회의의 의제 채택
 - 남북협상의 절차, 회의기간 확정
- 합의사항
 - 의제, 절차, 기간에 대한 합의사항 전무
 - 제2차 회의에서 세부항목별 토의 진행하기로 합의

3. 제2차 회의(1980.5.5.~16.)

- 토의내용
 - 절차와 일정에 관한 미국 측 의제(안) 설명
 - 선진국은 컨센서스 방식 주장, 77그룹 측은 절차문제에 있어서 컨센서스로 결정할 것에 동의
하나 실질문제는 Package Agreement 형식 주장

4. 제3차 회의(1980.6.23.~7.4.)

- 제11차 유엔 특별총회(1980.8.25.~9.15., 뉴욕)에 관한 일정, 의제 등 확정
 - 남북협상을 위한 절차, 일정, 의제 등은 합의 실패

유엔안전보장이사회/아프가니스탄사태 토의, 1980.1.5.-9.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국제연합

MF번호 2010-40 / 1 / 1-35

1980.1.5.~9. 중 유엔안보리의 아프가니스탄사태 토의 관련 내용임.

1. 아프가니스탄사태 관련 안보리 소집 요청

- 영국과 파키스탄 등 43개국은 1980.1.3. 유엔안보리 의장 앞 공한을 통해 긴급 안보리 소집 요청
- 아프가니스탄사태가 국제 평화와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토의 요청

2. 안보리의 아프가니스탄사태 토의

- 비동맹 국가: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을 규탄
- 유고 등 기타 회원국: 소련 비난
- 동독 등 동구권 국가: 소련 지지

3. 비동맹 결의안

- 제안국: 방글라데시, 자메이카, 잠비아 등
- 내용: 아프가니스탄 무력침공 규탄, 즉각적이고 무조건적 철군 요청 등
- 결과: 소련, 동독 반대로 부결

4. 1980.1.9. 안보리, 긴급 특별총회 개최 요청 결의안 채택

UNCHS(유엔인간거주위원회) 총회, 제3차. Mexico city, 1980.5.6.-15.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정부는 1980.5.6.~15. 멕시코시티에서 개최된 제3차 UNCHS(유엔인간거주위원회) 총회에 김세택 주멕시코대사관 참사관을 옵서버 대표로 파견함.

1. 참가 경위

- 1980.1.15. HABITAT(유엔인간거주센터), 주케냐대사관을 통해 제3차 UNCHS 총회 개최를 통보하면서 한국 측의 옵서버 파견을 요청
- 1980.2.21. 외무부, 보사부 등에 한국의 주요 관심분야, 의제별 주요 관심사항 및 상세 관련 자료 송부 요청

2. 주요 내용 및 전망

- 1980.5.6. Lopez Portillo 멕시코 대통령 개회 선언
- 의장 선출 및 각국 대표의 기조연설 실시 후 의제별 토의
 - PLO(팔레스타인해방기구) 대표도 옵서버로 참석, 기조연설
- 아랍 국가는 이스라엘 점령 지역 내의 팔레스타인인 거주 문제를 거론, 이들에 대한 지원을 행하고 있어 결의문 채택에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대한 유엔의 제재조치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남부아프리카 / 국제연합

MF번호 2010-40 / 3 / 1-56

384

1. 안보리, 남아공 무기 금수위원회 회의 개최(1980.3.5.)

- 남아공과의 군사 및 핵 협력 반대 세계운동의 Minty(남아공계 인도인) 회장의 보고 청취
 -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의 남아공과의 핵 협력 관계 비난
 - 남아공이 우루과이, 파라과이, 대만(구 자유중국), 한국과 긴밀한 국방관계 수립 및 무기를 수출하고 있다고 언급
 - 대만, 한국 등에 대한 남아공의 무기수출 방지를 위해 어떠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고 언급함으로써 동 위원회는 3.12. 재차 회의를 갖고 안보리가 취할 조치 등에 관해 협의할 예정
- 한국 측 조치사항
 - 3.11. 외무부, 국방부에 남아공으로부터 무기수입 사실 여부 회신 요청
 - 3.14. 외무부, 주유엔대사에게 Minty의 한국 관련 발언 내용에 정확한 인식을 갖도록 촉구할 것을 지시
 - 3.21. 국방부, 외무부에 남아공 무기를 직접 또는 제3국을 통하여 수입한 사실이 없음을 통보
 - 3.24. 외무부, 주유엔대사에게 한국이 남아공과 국방 관계를 맺은 바가 없고 Minty의 발언은 전적으로 근거가 없다는 내용의 주유엔대사 명의 서한을 안보리 금수위원회 위원장 앞으로 발송, 동 서한이 안보리 공식문서로 배포되도록 조치 지시

2. 남아공사태에 관한 안보리 개최(1980.6월)

- 경위
 - 최근 남아공사태 관련 아프리카 그룹의 요청
- 결과
 - 6.13. 인종주의 남아공 정권의 탄압정책 비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결의(제473호)를 채택하고, 아파르트헤이트정책 철폐를 위해 남아공 정권에 아래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을 요청
 - 아파르트헤이트 반대 이유로 구금된 인사에게 사면 부여
 - 평화적 시위자에 대한 무차별 폭력 중지
 - 아파르트헤이트를 반대하는 정당, 단체에 대한 금지 철폐
 - 정치적 재판 중지
 - 모든 남아공인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 부여 등

주유엔 북한대표부 동향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국제연합

MF번호 2010-40 / 4 / 1-112

1. 북한 기록영화 상영회

- 1980.1.29. 주유엔 북한대표부, 유엔 본부 내 하마술드 강당에서 '제35차 세계탁구대회' 영화 상영
 - 상영시간: 12:20~13:30
 - 참관인원: 약 70명(대부분이 사무국 직원, 기자 약간 명)

2. IOC(국제올림픽위원회) 북한대표단 활동

- 1980.2.22. 미 국무부, 주유엔대표부에 통보
 - 북한 측 한시해 및 김유순이 2.18. 전화로 웨이커 교도를 북한대표부에 초치하고 방북 초청 표명
 - IOC 북한대표단이 학계 및 체육계 대표 면담
 - 미국 측은 주유엔 미국대표부에 한시해의 활동은 유엔 본부협정을 위배한 것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경고할 것을 훈령

3. 북한대표부 선전활동

- 1980.5.29. 이시영 주유엔대표부 참사관은 B. J. Jones 주유엔 미국대표부 참사관을 방문, 북한대표부가 보스턴지역 교포 앞으로 우송한 Press Release를 수교하면서 재미교포를 상대로 한 선전활동, 미국학자를 대상으로 한 접촉 공작 등 북한 옴서버대표부의 활동범위를 넘는 책동 강화에 주의 환기 및 필요한 제한조치 요망
- 7.7. Willett 주유엔 미국대표부 담당관은 이시영 참사관에게 동 활동은 북한대표부의 지위에 부합되지 않고 허용된 활동범위를 넘는 것으로 판단되어 유엔의 법률담당 사무차장에게 미국의 입장을 전할 것이라고 알렸음.

Suy, Erik 유엔 사무차장 방한, 1980.8.8.-13.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국제연합

MF번호 2010-40 / 5 / 1-112

Erik Suy 유엔 사무차장이 1980.8.8.~13. 방한함.

1. 방한 경위

- 1980.4.16. 주유엔대사, Erik Suy 유엔사무국 법률담당 사무차장과의 긴밀한 관계 발전 필요성 등을 감안, 동인의 방한 초청을 건의
 - 4.20. 외무부, 동인의 방한 초청 승인

386

2. 주요 일정

- 국제기구국장, 외무부장관 예방
- 부산 유엔묘지 방문, 경주 관광 및 산업 시찰(현대조선 및 현대자동차)
- 국제법학회 초청 강연 및 오찬
 - 강연 주제: 유엔의 평화유지활동

3. 외무부장관 면담(8.8.)

- 유엔 한국문제
 - 동 장관은 북한이 한국의 국내사태를 최대한 이용하려고 획책하고 있으므로 한국문제를 인권 문제의 각도에서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취급하고자 책동할 가능성이 있으나, 이에 대해 한국 측의 강력한 대응조치가 따르게 될 것이라고 언급
- 남북대화
 - 동 장관은 남북대화가 구체적 성과를 가져오지는 못하고 있으나, 인내심을 가지고 추진할 생각 이라고 언급
- 국내 정치문제
 - 동 장관은 헌법 개정 등 국내 정치 일정에 관해 설명

Matane, Paulias 주유엔 파푸아뉴기니대사 방한, 1980.6.17.-23.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대양주 / 국제연합

MF번호 2010-40 / 6 / 1-115

Paulias Matane 주유엔 파푸아뉴기니대사가 1980.6.17.~23. 방한함.

1. 방한 경위

- 1980.4.9. 주유엔대사, Matane 주유엔 파푸아뉴기니대사를 접촉, 방한 초청
- 1980.4.25. Matane 대사, 파푸아뉴기니 정부로부터 승인을 얻었다고 알려오면서 농촌개발계획, 소규모의 수력발전시설, 농업 관련 생산시설 등 시찰 의향 피력

2. 주요 일정

- 외무부 국제기구국장, 외무부차관 예방 및 만찬
- 외무부장관 예방
- 현대조선 및 현대자동차 시찰, 경주 관광, 팔당수력발전소 시찰

3. 방한 결과

- 동 대사는 외무부장관 및 차관과의 면담에서 파푸아뉴기니가 목재, 에너지, 광물자원 및 농업 부문에서 투자유치계획을 갖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한국 측의 관심을 요청
 - 동 대사는 뉴욕 귀임 후, 최근 파푸아뉴기니가 대미국 투자사절단 파견 시 작성한 자료를 송부해옴.
- 한국 측은 한국문제가 유엔 비동맹회의 및 국제기구에서 토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당사자 간 직접대화를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설명한바, 동 대사는 이해를 표명
 - 동 대사는 한국에 대해 재인식하게 되었으며, 도시와 농촌이 균형 있게 발전하고 있으며 파푸아 뉴기니도 한국을 모델로 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

UNMCK(유엔기념묘지위원회)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국제연합

MF번호 2010-40 / 7 / 1-244

1980년 중 UNMCK(유엔기념묘지위원회) 관련 내용임.

1. UNMCK 분담금 문제

- 이스탄불 Cumhuriyet 신문사의 Atila Koryurek 기자(서울 및 도쿄 주재)는 1980.3.19. 외무부 유엔과장을 방문, UNMCK 분담금 문제와 관련하여 희생을 치른 튀르키예가 지불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며 한국 정부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견해 문의
 - 유엔과장은 동 문제는 11개 관계국의 합의하에 1974.7.2. 뉴욕에서 개최된 관계국 회의에서 확정된 점 등 재정 분담에 관한 상세 내용 설명
 - 동 기자는 튀르키예 정부가 동 분담금 지불을 수락한 것은 잘못이며 문제 삼겠다고 언급
- 주튀르키예대사관 공보관이 상기 내용을 동 신문사 외신부장에게 설명한바, 외신부장은 특파원의 주장이 부당하므로 게재하지 않겠다고 확약

2. 유엔기념묘지 관리소장 선임 문제

- 유엔기념묘지 관리소장 후보는 한국 측이 천거하는 것으로 양해되어 있으나, 현 봉급 수준(1천 달러) 및 근무조건(부산 거주 등)에 맞는 영어에 능통한 책임자를 구하지 못함. 이에 외무부는 회원국에 외무부 직원 파견에 대한 의견 타진
- 외무부는 재한 유엔기념묘지 관리소장 후보로 문희철 공사를 지명하고 동 임명을 위한 특별회의가 1980.8.19. 개최됨을 통보

3. 재한 UNMCK, 제7차 정기총회 개최(1980.10.31., 부산)

- 수석대표: 박쌍용 외무부 정무차관보
- 토의내용
 - 동 위원회 의장국을 한국에서 노르웨이로 인계
 - 1980년도 사업 실적 평가 및 1981년도 사업 계획

팔레스타인인의 국제 유대의 날 기념행사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국제연합 / 중동

MF번호 2010-40 / 8 / 1-25

1980년 중 팔레스타인인의 국제 유대의 날 기념행사에 관한 내용임.

1. 경위

- 제32차 유엔총회 결의(32 / 408)에 의거, 매년 11.29.을 '팔레스타인인의 국제 유대의 날'로 정함.
- 한국 측, 1981년 이래 매년 외무부장관 및 국무총리 명의 메시지 발표

2. 1980년 기념행사 참석 요청

- 팔레스타인의 불가양의 권리행사위원회 위원장 서리(쿠바대사)는 1980.11.3.자 주유엔대사 앞 공관을 통해 팔레스타인인의 국제 유대의 날 기념회의(1980.11.28.) 개최 예정임을 알려오면서 국가원수나 정부수반의 메시지를 요청함.
- 외무부는 주유엔대사에게 팔레스타인문제에 관해 이미 밝힌 바와 같은 입장임을 재확인하고, 대사 또는 직원이 동 회의에 참석하도록 지시

3. 1980년 기념행사 관련 동향

- 주유엔대사는 1980.11.28. 행사에 참석하고, 팔레스타인의 불가양의 권리행사위원회 위원장 앞으로 동 대사 명의 11.14.자 서한 송부
- 북한은 1979년에는 김일성 메시지를 발송한 바 있으나, 1980년에는 메시지 낭독이 없었음.
- 동 행사에 48개국 이 메시지 낭독
 - 국가원수 또는 정부수반 명의 37개국
 - 각료 명의 3개국
 - 주유엔대사 명의 3개국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총회, 제36차. Bangkok, 1980.3.18.-29. 전2권 (V.1 기본계획)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2010-40 / 9 / 1-253

1980.3.18.~29. 방콕에서 개최된 제36차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총회 관련 준비 내용임.

1. 대표단 임명

- 1980.2.28. 외무부, 제36차 ESCAP 총회에 참가하는 정부대표단 임명에 관한 재가를 득함.
- 대표단 구성
 - 수석대표: 장상문 주태국대사
 - 교체수석대표: 이현홍 주태국대사관 공사(ESCAP 상임대표)
 - 경제기획원, 농수산부, 상공부, 외무부 등 담당관 및 공관 직원

2. 참가 목적

-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의 경제사회 개방 촉진을 위한 1980년대 계획 수립에 적극 참여하여 ESCAP 내에서의 한국의 주도적 지위를 계속 확보하고자 함.
- 선진국의 신보호무역주의가 세계경제 특히, 개도국의 경제개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지적하고, 선진국에 무역자유화를 촉구하기 위해 역내 개도국이 적극적으로 상호 협력할 것을 강조하고자 하며, 특히 지역협력사업에 크게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음을 천명함.

3. 정부 훈령

- ESCAP 내 경제협력 사업에 적극 참여
- 무역자유화 정책 촉구
- 에너지문제에 대처
- 자원개발협력 필요성 강조
- 한국 대표권 문제
- RMRDC(광물자원개발센터) 이사국 및 APDC(아시아태평양개발센터) 관리위원 피선 노력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총회, 제36차. Bangkok, 1980.3.18.-29. 전2권 (V.2 결과보고)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경제지구

MF번호 2010-40 / 10 / 1-75

정부는 1980.3.18.~29. 방콕에서 개최된 제36차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총회에 장상문 주태국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주요 토의내용

- '제3차 유엔개발 10개년'의 개발전략에 반영할 1980년대 ESCAP 지역 개발전략 채택
 - ESCAP 지역을 남부아시아 저소득 저성장국가 그룹, 동부 및 동남부 고성장국가 그룹, 도서·내륙·최빈국가 그룹 등 3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분야별로 전략목표 제시
 - 일본 등 선진국의 수입규제 비판
 - 에너지 위기에 대한 우려 표명
- 인도차이나 난민문제 토의
 - 1980년대 개발전략에 난민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을 촉구하는 내용 포함
- 산하 9개 위원회별 활동보고 및 1980년도 사업계획 수립

2. 한국대표단 활동 사항

- 기조연설 및 분야별 발언
 - 선진국의 보호무역정책 비판
 - 유가인상이 한국 등 비산유 개도국 경제발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지적
 - 방콕협정 확대 촉구
- 결의안 공동 제안
 - APDC(아시아태평양개발센터) 설립 결의안
 - 환경정책, 운영 및 법제화에 관한 지역협력 결의안
 - ESCAP 회의구조 개편에 관한 결의안
- RMRDC(광물자원개발센터) 집행이사국 피선
 - 임기 3년의 동 집행이사국에 재선
- APDC 관리위원회 위원 피선
 - 강박광 과학기술처 기술협력국장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공업기술 인간주거 및 환경회의, 제4차. Bangkok, 1980.9.23.-29.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2010-40 / 11 / 1-97

정부는 1980.9.23.~29. 방콕에서 개최된 제4차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공업 기술 인간주거 및 환경회의에 이남기 주태국대사관 경협관을 정부대표로 파견함.

1. 주요 의제에 대한 한국 입장

- ESCAP 공업장관회의 및 제3차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 총회에서 제기된 공업화를 위한 지역 내 문제점(의제 4)
 - UNIDO 주관으로 추진되고 있는 협의제도는 개도국 공업화에 상당히 기여할 것이므로 모든 개도국의 참여가 용이하도록 주선되어야 할 것임.
 - 선진기술의 이전은 개도국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술이 공여되어야 함.
- 공업기술 분야의 활동 및 문제점 검토(의제 5)
 - 농·공업 연계문제: 농업과 공업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동 연구가 역내 개도국을 위하여 매우 적합하고 바람직한 사업임에 동의하며, 관련 국가 간 협력체제로서 큰 성과가 있기를 기대함.
 - 공공부문 및 기초산업 분야: 한국의 중소기업공단 설립 이후 축적되는 경험이 역내 국가의 공업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2. 회의 결과

- 의장단 선출
 - 의장: 태국 대표
 - 부의장: 호주 대표, 인도네시아 대표
 - 보고서 작성위원회 의장: 인도 대표
- 토의내용
 - 각국 대표들은 기술훈련, 공공분야의 역할 증대, 중소기업 보호, 농·공업 분야 간 연계체제 확립 등을 강조
 - 특히 역내 싱가포르, 한국의 공업 발전 경험에 깊은 관심 표명
 - 캄보디아(구 캄푸차) 문제에 관해 소련 대표와 중국(구 중공) 및 캄보디아 대표 간에 공방 전개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 무역위원회 회의, 제23차. Bangkok, 1980.11.18.-24.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2010-40 / 12 / 1-117

정부는 1980.11.18.~24. 방콕에서 개최된 제23차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무역위원회 회의에 이현홍 주태국대사관 공사 겸 ESCAP 상임대표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국

- 27개 회원국, 3개 옵서버국, 19개 국제기구

2. 주요 의제

- 회원국의 무역 및 무역정책 검토(의제 4)
-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권고사항 검토(의제 5)
- 중요 검토사항(의제 6)
 - TCG(통상협력단) 진전사항 검토(의제 6-a)
 - 역내무역 및 통화협력 진전사항 검토(의제 6-b)
 - ESCAP 무역진흥센터 진전사항 검토(의제 6-c)
 - 다국 간 수출신용보험기구 진전사항 검토(의제 6-f)
 - ARC(아시아재보험공사) 진전사항 검토(의제 6-g)

3. 회의 결과

- 의장단 선출
 - 의장: 필리핀 대표
 - 부의장: 태국 대표
- 주요 토의내용
 - 의제 4: 다수 국가가 불경기, 에너지 위기 등에 우려를 표명하고, 한국은 1979년도 국제수지 및 무역 현황을 소개하고 역내 재도국과의 무역 및 경제협력에 적극 참여할 것을 천명하였으며 1979~80년 상반기에 취한 수입자유화 조치 내용 및 장래의 정책방향을 설명함.
 - 의제 5: 다수국이 ECDC(개도국간경제협력위원회)의 중요성과 이를 위한 관계기구의 활동을 지지함.
 - 의제 6: TCG 업무계획 및 결정 사항의 신속한 이해와 회원국 확대 등을 역설하고 방콕협정의 신회원국 가입을 촉구함. 다국 간 수출신용보험기구 설립에 적극 참여할 것과 ARC의 대형위험 보험 대량구매에 대한 UNDP(유엔개발계획)의 재정지원을 촉구함.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무역진흥기관장회의, 제2차. Bangkok, 1980.7.22.-28.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2010-40 / 13 / 1-100

정부는 1980.7.22.~28. 방콕에서 개최된 제2차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무역진흥기관장회의에 고일남 대한무역진흥공사 지역조사부장을 정부대표로 파견함.

1. 참가국

- 18개 국가: 미국, 중국(구 중공), 호주, 필리핀, 방글라데시,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 8개 국제기구: EEC(유럽경제공동체),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 ILO(국제노동기구), FAO(유엔식량농업기구), ICC(국제상공회의소),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GATT(관세및무역에 관한일반협정)-ITC(국제무역위원회) 등
- 1개 옵서버국: 스웨덴

2. 주요 의제

- (의제 4) 각국별 무역진흥 및 수출 마케팅 최근 동향 검토
- (의제 5) TPC(Trade Promotion Center) 활동 계획 검토
- (의제 6) UNCTAD / GATT-ITC의 활동 계획

3. 토의내용

- 의제 4: 참가 개도국은 자국의 수출진흥을 위한 최근의 조치와 정부기구의 신설 또는 조정을 설명하고, 당면 문제점을 개진함. 선진국은 개도국의 수출진흥활동 지원 현황과 최근에 취한 수입촉진조치를 설명함.
- 의제 5: TPC의 4대 기본활동 분야의 1980~81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각국의 의견 발표 및 아래 사항에 관한 특별한 배려가 권고됨.
 - 무역정보서비스 분야: TPC는 각국의 무역정보서비스기관이 효율적인 기능을 발휘하도록 보완적으로 지원해야 하고, 역내 Trade Information Bulletin 발간사업을 계속 추진함.
 - 전문요원 양성 분야: TPC는 무역 진흥 특수 분야의 각국 교관 요원의 훈련 방안을 강구하고, 역내의 각종 교육훈련에 관한 정보를 정리하여 정기적으로 개도국에 통보해야 함.
- 의제 6: TPC의 모든 사업이 ITC와의 협력 하에 이루어지므로 ITC의 지속적인 지원이 강조됨. 국가별 당면 문제점 및 요망사항은 ITC의 향후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되도록 요청됨.

4. 관찰 및 건의사항

- ESCAP의 전산화된 무역정보 활용: 일본이 1981년 초에 ESCAP 사무국에 컴퓨터 시설을 제공하여 역내 무역정보를 수집·축적하며 각국 정보센터는 터미널 장치를 통해 활용할 수 있게 되므로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함.



- ESCAP 역내 개도국에 대한 기술협력 제공 필요
- 한국의 수출진흥제도 습득을 위해 내방하는 개도국 요원을 위한 훈련 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 필요
- 중국의 수출진흥 세미나 참가 모색: 1981년 초에 ESCAP과 CCPIT 공동으로 수출진흥 세미나가 중국에서 개최될 예정인바, ESCAP 사무국을 통하여 한국 수출진흥기관도 동 세미나에 초청 되도록 추진 필요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아시아·태평양지역 사회복지 및 사회개발장관회의, 제2차. Bangkok, 1980.10.9.-15.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2010-40 / 14 / 1-71

정부는 1980.10.9.~15. 방콕에서 개최된 제2차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아시아태평양지역 사회복지 및 사회개발장관회의에 라도현 보건사회부차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정부대표단 구성

- 1980.10.2. 외무부는 제2차 아시아태평양지역 사회복지 및 사회개발장관회의에 참가하는 정부대표 임명과 훈령에 관한 재가를 득함.
- 참가 대표
 - 수석대표: 라도현 보건사회부차관
 - 교체 수석대표: 이현홍 주태국대사관 공사
 - 대표: 이광찬 보건사회부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연구위원, 이남기 주태국대사관 경제협력관, 최동식 보건사회부차관 비서관

2. 주요 의제

- 1980년대 사회복지 및 사회개발 전망 검토와 개발 전략
- 사회복지 및 개발을 위한 정책방향, 인력개발계획, 개도국 간 기술협력, 현 사회복지계획의 평가 등

3. 회의 참가 목적

- 1970년대 한국의 주요 국가 개발전략이었던 새마을운동과 자연보호운동의 성과와 성공적인 국민 참여 결과 소개
- 제5공화국 탄생과 민주복지국가 건설을 지향하는 한국의 의지 천명
- 사회복지 시책으로서 특히 의료보험 확대 실시, 노인 및 신체장애자 복지, 실업보험 및 국민복지 연금제도의 조속한 시행에 우선순위를 둘 것이라는 한국의 기본 정책 방향 소개
- 사회복지 및 사회개발을 위한 ESCAP 역내 국가 간의 협의 및 정보교환 등 협력의 필요성 강조를 통해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 천명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해양환경 보호에 관한 지역회의. Bangkok, 1980.8.4.-8.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2010-40 / 15 / 1-36

정부는 1980.8.4.~8. 방콕에서 개최된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해양환경 보호에 관한 지역회의에 양승만 주태국대사관 2등서기관을 대표로 파견함.

1. 참가국(16개국)

- 방글라데시, 중국(구 중공),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싱가포르, 스리랑카, 태국, 소련, 베트남, 스웨덴, 홍콩 등

2. 주요 토의내용

- 해양환경 보호에 관한 지역훈련센터 설치 합의
- 해양환경 보호에 관한 종합적 연구 수행 및 기술 지원
- 해양환경 보호에 관한 훈련 및 Fellowship 제공
- 해양 및 내륙수로로 유출되는 폐기물 통제에 관한 조치사항
- 해양환경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 및 법률제도 강화
- 해양환경 보호 분야 지역협력 강화: 세미나, 워크숍, 자문회의 등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해운·운수·통신 위원회, 제4차. Bangkok, 1980.12.16.-22.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2010-40 / 16 / 1-169

정부는 1980.12.16.~22. 방콕에서 개최된 제4차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해운·운수·통신위원회에 서태환 주태국대사관 상무관을 정부대표로 파견함.

1. 참가국(19개국)

- 호주, 방글라데시, 중국(구 중공), 캄보디아(구 캄푸차),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라오스, 말레이시아, 네덜란드, 필리핀, 한국, 싱가포르, 스리랑카, 태국, 소련, 영국, 미국, 홍콩 등

2. 회의 내용

- 태국 교체성 장관 축하
- 의장단 선출
 - 의장: 태국 대표
 - 부의장: 필리핀 대표, 파키스탄 대표
- 의제 채택
- 의안별 토의
 - 1979년도 해운, 항만, 내륙수로 개발
 - 인력개발 문제 및 전망
 - 해운정책 및 제도의 발전
 - 상선 및 항만관리 개발
 - 선주기구 및 협력 증진
 - 1980년도 개도국 간 기술 및 경험활동 검토
 - 1982년 및 1983년도 해운, 항만, 내륙수로 사업계획의 검토
 - 해운, 교통 및 체신 관련 조항의 검토
 - 차기 위원회의 프로젝트 검토
- 보고안 채택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RNAM(농기계지역망사업) 운영위원회, 제3차. Bangkok, 1980.11.25.-27.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2010-40 / 17 / 1-81

정부는 1980.11.25.~27. 방콕에서 개최된 제3차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RNAM(농기계지역망사업) 운영위원회 회의에 서태환 주태국대사관 상무관을 정부대표로 파견함.

1. 참가국(8개국)

- 호주,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일본, 파키스탄, 필리핀, 태국, 한국 등

2. 주요 토의내용

- 중국(구 중공)의 수확기 5대 회원국 공여 및 전문가(4명) 파견 문제 협의
- 1981년 예산안에 대한 호주 및 일본 정부 지원
- 농업기계 센서스를 위한 정기조사 및 정보 교환
- 원형기계의 상호 교환을 위한 회원국 간 협력 증대

3. 의제별 한국 입장

- 제4차 기술자문회의(1980.10.9.~11., 방콕) 분과별 토의결과 검토(의제 6)
 - 제1단계 사업기간 연장: 제4차 회의 시 제안한 1981.12.31.까지 연장하는 것에 동의
 - 한국의 기계이양, 육묘 조작 기술훈련생 초청 훈련: 한국은 ESCAP 측이 훈련생의 소요경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동의할 용의가 있음.
- 농업기계 센서스 조사(의제 7)
 - 한국 정부는 농업기계에 대한 기본 통계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음.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TCG(무역협력단) 회의, 제3차. Bangkok, 1980.11.13.-14.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경제지구

MF번호 2010-40 / 18 / 1-172

제3차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TCG(무역협력단) 회의(1980.11.13.~14., 방콕)에 앞서 개최된 TCG 5개 서브그룹 회의(1980.9월, 방콕) 결과 및 상기 제3차 회의에 대비한 한국 입장 검토 내용임.

1. 외무부는 1980.9.3. 주태국대사에게 제3차 ESCAP/TCG 5개 서브그룹 회의에 동 대사관에서 한국 입장을 참고하여 참가하도록 하고 결과 보고를 지시한바, 주태국대사관은 아래와 같이 서브그룹별 회의 결과를 보고함.

● 상품 서브그룹 회의(1980.9.8.~9.)

- 새우/해양산물의 역내 협력방안에 관한 세미나 건의사항의 촉진을 위해 아래 사항을 사무국에 요청하기로 결정
 - 새우/해양산물 협의그룹의 구성 및 약정에 관한 조사 연구
 - 새우/해양산물 역내 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 FAO(유엔식량농업기구), ITC(국제무역위원회)와의 공동 협조로 ESCAP 역내 국가(새우/해양산물 수출입국)에 대한 협의 등

● 합작투자 서브그룹 회의(1980.9.10.~11.)

- 목재 및 목제품 합작투자 가능성에 관한 연구보고서에 건의한 내용 승인
- 사무국은 각국의 합작투자 정책 및 절차에 관한 자료 준비 및 정책 건의를 위하여 전문가그룹 회의를 개최하도록 함.
- Buy-Back 협정 및 합작투자 품목 특혜 취급 문제는 차기 회의로 연기 등

● 장기계약 서브그룹 회의(1980.9.12.~15.)

- 기선정된 10개 장기계약대상품목에 대한 연구내용 승인
- 사무국은 회원국의 공·사 무역관계 기관에 배포할 연구 주선 등

● 무역진흥센터 네트워크 서브그룹 회의(1980.9.16.~17.)

- 무역정보지 발간에 합의한바, 한국은 월간 발행을 주장
- 사무국이 수집 및 배포 가능한 정보를 평가한 후 구체적인 내용을 정할 것이며, 잠정기간 동안 ESCAP/TPC 회원국의 수출입 통계, 무역관계 정책 및 규정의 개정, 상품 가격 동향 등을 회원국에 배포하기로 함.

● 무역통계, 관세품목분류의 조화 서브그룹 회의(1980.9.18.~19.)

- 국경운송 절차에 관한 연구를 사무국이 수행하도록 결정
- 사무국은 국제 간 화물이동의 간소화조치를 위한 세미나를 1981년 중에 개최하도록 함.
- 세관 절차에 관한 연구는 차기 회의로 토의 연기 등



2. 제3차 ESCAP/TCG 회의 관련 한국 정부 입장

- 역내 국가 간 무역진흥 및 협력을 위한 행동계획의 수행에 대한 진전사항 검토
- 5개 서브그룹 회의(1980.9월, 방콕) 토의내용 검토 및 결정사항 채택
- 상품 및 합작투자 서브그룹 대상품목을 단순 1차 상품에서 공산품 내지 중화학제품으로 확대 방안 건의
- 1981.2월 개최 예정인 열대목재에 관한 정부 간 회의와 지역 열대목재기구 설립안 내용 파악
- 통계목적을 위한 역내 관세품목분류의 조화 필요성 강조
- 역내 국가들의 세관 절차 및 서류의 조화를 위한 회원국의 교토 기본협약 가입 촉구
- ESCAP/TCG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경험 있는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등의 적극적 기술지원 요청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TNG(무역협상단) 회의, 제9차. Bangkok, 1980.11.17.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2010-40 / 19 / 1-125

정부는 1980.11.17. 방콕에서 개최된 제9차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TNG(무역협상단) 회의에 이현홍 주태국대사관 공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국

- 방글라데시, 중국(구 중공), 홍콩, 인도, 이란, 라오스, 말레이시아, 필리핀, 한국, 스리랑카, 태국 등

2. 주요 토의내용

- 개도국 간 경제협력 3대 우선순위 계획에 관한 보고(의제 4)
 - GSTP(개도국간특혜무역제도), STOS, MMES 설립 등 제반활동 전담 역내기구로서 TNG가 가장 적합한 기구임을 강조
- ESCAP 지역 내 개도국 간 수입구매협력 연구 검토(의제 5)
 - 회원국은 사무국 Paper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차기 STOS 회의(1981년, 자카르타)에서 토의하기로 결정
- 세관품목 분류, 무역통계에 관한 태평양 소지역 워크숍(1980.8월, 사모아) 보고서 검토(의제 6)
 - 동 워크숍의 권고사항 승인
- MFA(다국간섬유협정) 평가 및 섬유류 국제무역에 관한 개도국 간 특별회의(1980.7.30.~8.4., 방콕) 개최(의제 7)
 - 1981년 중에 국제 간 섬유류 무역에 관한 정부 간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하는데 합의함. 인도와 홍콩도 MFA의 연장교섭 관련 문제를 제기하지 않음.
- 아시아 무역증대계획 3각 협력 검토(1980.9.29., 방콕) 검토(의제 8)
 - GSTP, STOS, MMES가 UNDP(유엔개발계획)의 재정지원을 요하는 우선사업임을 확인하고 방콕협정 상임위(제5차, 제6차)의 결정사항인 장기계약 및 합작투자 분야를 차기 TNG에서 토의하기로 함.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WMO(세계기상기구) 태풍위원회 회의, 제13차. Bangkok, 1980.12.2.-8.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2010-40 / 20 / 1-162

정부는 1980.12.2.~8. 방콕에서 개최된 제3차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WMO(세계기상기구) 태풍위원회 회의에 윤석길 건설부 수자원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국

- 회원국(10개국): 한국, 홍콩, 일본, 라오스, 필리핀,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중국(구 중공) 등
- 옵서버국 및 국제기구: 미국, 소련 및 UNDRO(유엔재해기관), UNDP(유엔개발계획),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등

2. 주요 의제

- 기상과 수문 분야 국가별 이행 상황
- 재해방지 및 대책
- TOPEX(태풍실무실험) 계획 검토
- 태풍위원회에 대한 UNDP 지원
- TCP(열대성저기압계획) 협력 관계

3. 주요 토의내용

- 기상업무 및 수문업무
 - 기상업무 관련 사업계획에 대한 우선순위가 검토된바, 한국은 제주에 기상레이더와 고층기상 관측소 설치를 적극 추진하도록 요청됨.
 - 동 위원회는 회원국의 포괄적인 홍수피해 방지 및 운영을 위해 전문가와 자문관을 제공해온 일본 정보에 대해 감사 표시
- 재해방지 및 대책
 - LRCS(국제적십자사)가 동 분야에 대한 자문관을 제공할 것임을 보고한바, 회원국은 필요 시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TOPEX
 - 제1차 TOPEX 계획회의(1980.6.17.~26., 도쿄)가 큰 발전을 이룩한 것을 확인하고, 결정 사항에 대해 검토를 확인함.
 - TOPEX의 관측망은 기존 WWW 관측망을 최대한으로 이용할 것이며 실험기간 중 관측 횟수를 증가할 것임.
 - WMO 및 ESCAP 당국이 각 회원국의 고위당국자들에게 TOPEX의 성공적인 수행으로 얻을 수 있는 국가적 이익을 충분히 납득시키며 회원국 정부의 성의 있는 조치를 촉구함.



- 태풍위원회에 대한 UNDP 지원
 - UNDP 지원이 경감 축소됨에 따라 대응조치가 강구되도록 함.
- TCP(열대성저기압계획) 협력 관계
 - 동 위원회는 제4지역 허리케인위원회(RAIV Hurricane Committee)에서 태풍의 강도를 표시하기 위하여 IHS를 이용하도록 권고한데 대해 이 문제는 기술적 검토가 필요하며 그 배경이 불분명하므로 WMO가 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설명을 제공하도록 요청함.

4. 건의사항

- 지난 12년간 동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던 UNDP가 현행 지원계획을 1981년 말로 종료함에 따라 앞으로 운영 및 활동에 새로운 대책이 필요함. 특히 1981년부터 수행 예정인 TOPEX은 많은 자금이 소요되어 이를 위한 신용기금이 설치될 것이며 WMO 회원국은 기금을 제공해야 할 것임. 건설부 수자원국과 과학기술처 중앙관상대는 TOPEX의 수문 및 기상분야에 대해 적절한 수행 대책을 수립해야 함.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방콕협정] 무역협상단 참가국 상임위원회: 제2차 라운드 협상 준비회의. Bangkok, 1980.9.23.-30.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경제지구

MF번호 2010-40 / 21 / 1-276

정부는 1980.9.23.~30. 방콕에서 개최된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방콕협정 제2차 라운드 협상 상임위원회 준비회의에 이현홍 주태국대사관 공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국

- 회원국: 한국, 방글라데시, 인도, 라오스, 스리랑카 등
- 국제기구: ESCAP,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UNDP(유엔개발계획) 등

2. 제2차 라운드 협상 목적

- 양허가치와 품목 확대
- 수량 제한과 비관세장벽의 점진적 완화

3. 주요 의제

- 협상을 위한 기본자료
 - 방콕협정 양허품목에 대한 국가별 수입 현황
 - 방콕협정 회원국 간 주요 품목 교역 현황
- 방콕협정 운영에 대한 검토
 - 협상기법 선택 문제: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 제1기법 및 무역량을 고려한 제2기법
 - 양허가치의 개념 정의
 - 공동원산지규정에서의 부가가치
 - 회원국 확대 문제 및 아세안과의 협력
- 제2차 라운드 협상 지침
 - 관세 양허 문제: Percentage 기준의 관세율 인하, 관세할당 및 관세율 거치 방법
 - 비관세 양허: 수입수량 제한 완화, 신규 수입기회 제공 방법에 의함.
 - 협상방법: 단계별 양자 간 협상과 다자 간 회의 병행 추진 문제

4. 종합 관찰

- 방콕협정에 한국의 경쟁국인 일본, 대만(구 자유중국), 홍콩 등이 가입하지 않아 동 지역에서의 한국의 수출 경쟁력은 유리한 위치에 있음.



- 제2차 라운드 협상 방식
 - 한국 측 주장대로 양자협상에 의한 Request와 Offer 교환 방식에 의한 Item-by-Item 협상 형식이 됨. 종전에는 각국이 무역량에 따른 양허를 고집하였으나, 이런 경우 한국과 같이 무역량이 많은 국가는 불리한 방식임.
- 방콕협정 회원국 확대 문제
 - 사무국 보고에 의하면 가입 의사를 표시한 나라는 아프가니스탄, 네팔, 파키스탄, 베트남 등이 있으며 특히 최근 중국(구 중공)이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나타남.
 - 현 단계에서 신규가입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사무국의 적극적인 자세와 협정국들의 협조가 있으면 회원국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방콕협정] 무역협상단 참가국 상임위원회, 제8차. Bangkok, 1980.4.30.-5.2. 전2권 (V.1 기본문서)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2010-41 / 1 / 1-169

정부는 1980.4.30.~5.2. 방콕에서 개최된 제8차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방콕협정 무역협상단 참가국 상임위원회 회의에 이현홍 주태국대사관 공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국

- 한국,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라오스 등

2. 주요 의제

- 방콕협정 회원국 현황 및 신규회원국 확대 노력
- 협상 기본원칙 및 각국의 수출관심 품목 정보 교환
- 협정 이행 상황
- 차기협상 기본 원칙 및 일정
- 수출관심 품목표 제출
- 공동원산지규정
- 세관 품목 분류 및 무역통계의 조화

3. 건의사항

- 1980.9월 개최 예정인 준비회의에서는 주로 협상의 기본 원칙이 토의될 예정인바, 이에 대한 철저한 사전 준비가 요망됨. 방콕협정의 확대(회원국 수 및 품목 수)는 경제·정치·외교적 측면에서도 한국의 기본입장과 일치하므로 이를 위하여 회원국 간 양허품목 및 양허폭 확대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 양허가치에 관한 개념 정의, 공동원산지규정 중 ‘부가가치 인정 기준(FOB 기준, Ex-factory 기준 등)’에 있어서 절충안 지지로 한국의 입장을 수정하는 문제 검토를 건의함.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방콕협정] 무역협상단 참가국 상임위원회, 제8차. Bangkok, 1980.4.30.-5.2. 전2권 (V.2 회의자료)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2010-41 / 2 / 1-446

제8차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방콕협정 무역협상단 참가국 상임위원회 회의
(1980.4.30.~5.2., 방콕) 관련 자료임.

1. 제7차 방콕협정 무역협상단 참가국 상임위원회 회의(1979.9.17.~22., 방콕) 결과 보고서(영문)
2. 방콕협정 이행 보고서(영문)
3. 방콕협정 협상 기본원칙(영문)
4. 방콕협정 협상 기본원칙 국가별(방글라데시, 인도, 한국, 스리랑카) 입장(영문)
5. 회원국별 양허품목 리스트(영문)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방콕협정] 무역협상단 참가국 상임위원회, 제9차. Bangkok, 1980.12.15.-18.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2010-41 / 3 / 1-182

정부는 1980.12.15.~18. 방콕에서 개최된 제9차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방콕협정 무역협상단 참가국 상임위원회 회의에 이현홍 주태국대사관 공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국

- 한국,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라오스,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등

2. 주요 토의내용

- 방콕협정 제2차 라운드 협상 참여국 확대 문제
- 제2차 라운드 협상 준비회의 보고서 검토
- 방콕협정 운영 관련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에의 보고서 초안 검토
- 회원국의 수출관심품목, 관세환급, 덤핑 및 불공정 무역관행에 관한 협정 제9조 검토
- 회원국의 관세품목 분류조화 및 외국 무역통계 진전
- 최빈개도국 공여 특별양허조치(방콕협정 제5조 관련)
- 중장기계획(LMTC)에 관한 연구
- 무역과 생산 간의 연계가능성 연구에 관한 검토

3. 주요 결과

- 1980.9월 방콕협정 준비회의에서 결정·건의한 제2차 라운드 협상을 위한 “Modalities and Guidelines”을 수정 없이 채택
- 공동원산지규정에 대한 절충안으로 FOB 또는 Ex-factory price를 임의 적용할 수 있도록 원칙 합의
- 사무국은 수출관심 품목표를 최신화(관세 및 비관세 장벽, 수출입 통계 등)하여 재배포하고, 회원국은 관세율 변경 등 관심 품목에 대한 제반 정보를 사무국에 조속 통보
- 1981.3월 ESCAP 총회 시 방콕협정 회원국 대표가 여타 ESCAP 회원국 대표에게 방콕협정에 참여를 권유하기 위한 방콕협정 안내자료 작성을 사무국에 요청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표준기구장 정부 간 회의. Bangkok, 1980.11.3.-7.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2010-41 / 4 / 1-109

정부는 1980.11.3.~7. 방콕에서 개최된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표준기구장 정부 간 회의에 서태환 주태국대사관 상무관을 정부대표로 파견함.

1. 참가국

- 호주, 방글라데시, 중국(구 중공), 프랑스, 인도네시아, 인도, 한국, 뉴질랜드, 필리핀, 스리랑카, 태국, 소련, 영국, 홍콩 등 14개국

410

2. 회의 개최 목적

- 표준화 정책 및 사업계획에 관한 정부 간 협력증진 방안 협의

3. 주요 의제

- ESCAP 지역의 표준화 현황 검토
- 표준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행동계획
- 표준화 개발 및 지역협력계획 수행의 조화

4. 주요 결과

- 역내 ISO(국제표준기구)의 별도 설치 문제는 시일을 두고 계획 수립 검토 후 논의하도록 함.
- ESCAP은 기타 유엔 관련 기구 등과의 협력 하에 공업 발전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표준화와 품질관리 촉진을 위해 소요자금 확보를 도모하도록 함.
- 표준화 사업을 위한 정부 및 유엔기구의 협력 촉진
- NSB(국가표준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초기단계에 있는 회원국을 위해 표준화, 품질관리, 인증제도 등 현황을 검토하고, 전문가에 의한 필요한 기술 협조와 회원국 간 활동지원을 도모하도록 함.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정부 간 철도 그룹회의. Bangkok, 1980.8.25.-9.1.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2010-41 / 5 / 1-165

정부는 1980.8.25.~9.1. 방콕에서 개최된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정부 간 철도 그룹회의에 이현홍 주태국대사관 공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회의 참가 목적

- 철도수송 사고방지 기술정보 수집
- 철도종사자 훈련계획 파악
- ARU(아시아철도연맹) 설립 동향 파악
- 아시아횡단철도사업 실현 전망 파악

2. 주요 의제

- 철도 및 철도수송에 관한 제반 문제
- 철도건설 문제에 대한 기술적 검토
- 철도 훈련계획 및 시설
- 아시아횡단철도사업에 대한 검토
- ARU에 대한 전문실무단 보고서 검토

3. ARU 설립안에 대한 한국 측 입장

- 최근 배포된 ARU 규약안에 의하면 그 목적이나 기능이 정보교환, 전문가 제공 및 철도경영자 모임 등으로 현 ESCAP의 해운·운수·통신위원회 기능과 중복됨. 또한 역내 철도 중 일본 등을 제외하면 한국보다 선진 철도가 없으므로 동 연맹이 설립되어도 실익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 다만 일본을 제외한 다수 회원국이 동 설립안에 찬성하는 분위기를 감안하여, ESCAP 기존 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는 동 연맹 설립에는 찬성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도록 함.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농·공업에 관한 정부 간 회의. 동경, 1980.10.21.-27.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2010-41 / 6 / 1-172

정부는 1980.10.21.~27. 도쿄에서 개최된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농·공업에 관한 정부 간 회의에 서한혁 주일본대사관 농무관을 정부대표로 파견함.

1. 참가국

- 호주, 부탄, 미얀마, 캄보디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몰디브, 네팔, 네덜란드, 뉴질랜드, 필리핀, 한국, 태국, 미국, 소련, 서독 등 19개국
- UNDP(유엔개발계획), ILO(국제노동기구), APO(아시아생산성기구) 등

412

2. 주요 의제

- 역내 회원국의 농업 및 관련 공업의 개발 사업계획
- 농산물로부터 에너지자원 및 기타 신자원 생산에 관한 경제·기술적 가능성 검토
- 농업기계화를 위한 지역망 문제
- 추수기술 및 농약개발 문제
- 피혁산업의 기술이전 문제
- 종합실크산업에 관한 자문사업

3. 주요 결과

- 본 회의는 Biomass로부터 에탄올을 생산하는 것에 대하여 석유 대체에 최고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일치함. 이러한 새로운 자원 생산을 위해 각국의 자료, 경험 및 정보교환을 위한 정보망 설치를 권고함.
- 현재 몇 개 국가에서만 볼 수 있는 석유식물(Euphorbia Lathris)과 같은 식물 재배 권장 가능성을 여타 지역에서도 검토가 필요함.
- 제37차 ESCAP 회의 고려사항으로 '농산물로부터의 액체연료 및 신자원의 개발'이라는 표제 하의 사업계획 및 우선순위에 5개 신규사업이 포함되어야 할 것임을 확인함.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해운·운수·통신위원회, 제3차. Bangkok, 1980.1.21.-2.1.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2010-41 / 7 / 1-67

정부는 1980.1.21.~2.1. 방콕에서 개최된 제3차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해운·운수·통신위원회 회의에 서인수 교통부 수송조정실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국

- 오스트리아, 방글라데시, 중국(구 중공), 캄보디아, 프랑스,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골, 네덜란드, 뉴질랜드,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한국, 사모아, 스리랑카, 태국, 미국, 소련, 영국 등 23개국
-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UNDP(유엔개발계획),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등

2. 참가 목적

- 해운·항만·내륙수로 개발을 위한 개도국 간 협조체제 구축과 정보교환
- 한국의 해운·항만 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한 인력개발에 필요한 지원 획득
- 철도개발을 위한 국제협력에 참여

3. 주요 토의내용

- 해운분야 정책 및 인력개발
- 상선 및 해운 서비스, 항만관리개발, 내륙수로 교통 등 활동사항 검토
- 해운 분야의 개도국 간 경제·기술 협력
- 철도 및 고속도로 교통 활동사항 검토
- 국제교통설비, 전기통신 활동사항 검토
- 교통 분야 정책계획 및 연구 활동
- 우정서비스 활동사항 검토
- 관광, 항공, 농촌교통개발 활동사항 검토
- 운수·통신 분야의 개도국 간 경제기술협력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IYDP(세계장애자의 해)에 관한 기술회의 및 지역세미나. Bangkok, 1980.9.9.-15.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2010-41 / 8 / 1-132

정부는 1980.9.9.~15. 방콕에서 개최된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IYDP(세계장애인의 해)에 관한 기술회의 및 지역세미나에 차홍봉 보건사회부 사회과장을 정부대표로 파견함.

1. IYDP 기술회의(1980.9.9.~12., 방콕)

- 주요 의제
 - IYDP 목적 달성을 위한 국가의 제반조치
 - IYDP 행동계획 달성을 위한 사업계획
 - IYDP의 활동에 관한 후속조치

2. IYDP 지역세미나(1980.9.15.~19., 방콕)

- 주요 의제
 - 장애인 현황에 대한 국가별 보고
 - 장애방지 및 장애인 재활에 관한 지역협력 문제
 - 장기행동계획의 수립

3. 참가 목적

- 한국도 IYDP 기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바, 동 회의에 참석하여 한국의 기념사업계획, 장애인 복지 현황 등을 보고하는 한편, 동 회의에서 제공되는 각국 정보를 수집하여 한국의 IYDP 기념사업 추진 및 향후 장애인 복지 시책 수립에 참고하고자 함.

4. 한국대표 활동 내용

- 한국의 장애인 현황 및 복지시책 방향 발표
- 한국 정부의 IYDP 기념사업계획 소개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RMRDC(광물자원개발센터) 집행이사회, 제3차. 서울, 1980.9.11.-18.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2010-41 / 9 / 1-157

정부는 1980.9.11.~18. 서울에서 개최된 제3차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RMRDC(광물자원개발센터) 집행이사회 회의에 현병구 자원개발연구소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국

- 방글라데시,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필리핀, 스리랑카, 태국, 한국 등 9개국
- UNDP(유엔개발계획), 유네스코 등 6개 기구

2. 회의 참가 목적

- 금번 회의가 한국의 주도로 서울에서 개최되는바, 회의 진행에 따른 제반 지원은 물론 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국제회의의 한국 유치가 결실을 얻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RMRDC의 광물자원개발 및 기술협력계획 등 토의에 적극적인 자세로 참여하여 한국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한 RMRDC 전문가의 기술지원을 요청할 필요가 있음.

3. 주요 결과

- 한국은 지화학 전문가 1인을 1980.9월 말부터 2년간 RMRDC에 파견
- 한국은 매년 1명의 연대측정 기술훈련생을 회원국으로부터 접수
- 한국은 아래 분야에 대한 기술훈련 제공의사 표명
 - 채광기술 및 자원탐사
 - 지화학탐사 및 해석
 - 제련 및 선광
 - 광물 분석
 - 광물 활용 및 타당성 연구
- 주석화강암 조사를 위한 말레이시아, 태국 합동 항공탐사계획 수행 합의 및 일본 정부의 협력자금 할당
- 지구물리 및 실험적 지화학탐사국 기관들에 대한 기술 협조
- 지화학 정보지도 발간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TDB(무역개발이사회), 제21차. Geneva, 1980.9.15.-27.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2010-41 / 10 / 1-81

정부는 1980.9.15.~27.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21차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TDB(무역개발이사회) 회의에 정주년 주제네바대표부 공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국

- 113개 이사회 회원국 및 1개 비회원국
-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 UNDP(유엔개발계획), ITC(국제무역위원회), ILO(국제노동기구), FAO(유엔식량농업기구),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IMF(국제통화기금) 등 국제기구

416

2. 의제별 주요 토의내용

- 세계무역 및 경제상황 평가
- 개도국 부채 및 개발 문제
 - 부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는 경제상황에 대한 포괄적 분석과 자문에 응할 수 있는 적절한 국제기구의 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결의안이 채택됨.
- 보호주의와 구조적 조정 문제
 - 77그룹의 결의안과 선진국그룹의 결의안이 상충하여 합의에 도달하지 못함.
- MTN(다자간무역협상) 평가
 - 77그룹은 MTN에 관한 세계적 평가를 요구하려는 결의안을 제시하였으나 다른 그룹의 지지를 받지 못함.
- UNCTAD 상설기관의 합리화
 -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차기 이사회에서 계속 토의하기로 함.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기술이전위원회, 제3차. Geneva, 1980.11.17.-28.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2010-41 / 11 / 1-15

정부는 1980.11.17.~28.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3차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기술이전위원회 회의에 권영순 주제네바대표부 참사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국

- 78개 위원회 회원국
- 북한 참석

2. 주요 의제

- 개도국 기술 변형을 위한 전략 형성
- 공업소유권제도 개선의 경제·상업적 및 개발적 측면
- 개별 부문 및 개도국에 매우 중요한 기타 부문에서의 문제점
- 기술 역이전 개발 측면
- 기술이전에 관한 자문서비스 활동
- 기술이전에 관한 국제행동 규범

3. 건의사항

- 최근 경제개발 관련 기술 이전 및 개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고, 1980년대 개발 전략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바, 한국에서도 과기처, 특허청 등 관련 기관에서 관심을 갖고 기술 이전 관계회의에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국제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중석위원회 회의, 제12차. Geneva, 1980.2.25.-29.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2010-41 / 12 / 1-17

정부는 1980.2.25.~29.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12차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중석위원회 회의에 권영순 주제네바대표부 참사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국

- 30개국 및 IMF(국제통화기금),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OAS(미주기구) 등 국제기구

2. 주요 토의내용

- 중석 생산국과 소비국 간 중석시장 안정조치 협의
 - 생산국 측은 호주가 제안한 “국제중석협정” 초안을 지지한 반면, 소비국 측은 반대
- 중석시장의 소비 및 생산 증대 전망
 - 캐나다 중석광 개발과 생산 전망에 관한 정보가 주목을 받음.
- 향후 중석 통계 개선에 의견 일치
 - 특히 중석 제품의 수출입 통계에 있어서 중석의 함량, 중석의 증대되는 주요 공급원으로서의 고철에 관한 정보, 재고 수준 및 동향에 관한 자료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됨.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특혜특별위원회, 제9차. Geneva, 1980.5.27.-6.4.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2010-41 / 13 / 1-130

정부는 1980.5.27.~6.4.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9차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특혜특별위원회 회의에 권영순 주제네바대표부 참사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국

- 81개국 및 국제기구
 - 북한 불참, 중국(구 중공) 최초 참가

2. 주요 의제

- GSP(일반특혜관세제도) 시행, 유지, 개선 및 활용 방안 검토
- GSP 시행 관련 기타 문제
- GSP 관련 기술지원
- 원산지 기준의 완화 및 개선 방안

3. 주요 결과

- 대부분의 선진국은 GSP를 통한 수입 증가를 지적하고, 향후 개도국의 수출 증진 및 경제성장을 위한 개선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언급함.
- 무역확대를 통한 경제성장을 목표로 하는 개도국의 주장에 대하여 GSP 공여국은 지속적인 개선 방안(수혜국 확대, GSP 품목 확대, 특혜관세 개선)을 통해 개도국의 입장을 우대할 것을 재확인함.
- 수혜국이 GSP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UNCTAD/UNDP(유엔개발계획) 계획을 연장할 것을 건의함.
- 금번 회의 결과로서 아래 내용을 포함한 결의안을 채택함.
 - GSP 실시 기간을 연장 실시하여 1990년에 GSP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를 행할 것
 - 원산지 기준 작업단 회의를 1981년 초에 개최할 것
 - GSP 공여국은 개도국이 GSP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 제공을 계속할 것
 - UNCTAD/UNDP의 기술지원 계획을 1980년 이후 계속 연장 실시할 것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해운위원회, 제9차. Geneva, 1980.9.1.-13.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2010-41 / 14 / 1-180

정부는 1980.9.1.~13.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9차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해운위원회 회의에 권영순 주제네바대표부 참사관과 김시형 주제네바대표부 상무관을 정부대표로 파견함.

1. 참가국

- 82개국 및 ILO(국제노동기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ICC(국제상공회의소) 등 국제기구

2. 주요 토의내용

- 세계 해운수송 발전
 - 1977~78년까지 해운수송량은 0.1% 밖에 성장하지 않음. 개도국 내에서도 국가 간 상선대 발전 속도에 심한 격차를 보이고 있음.
- 해운 동맹, 행동규범 협정
 - 상기 협정이 채택된지 6년이 지난 1980.9.1. 현재까지 세계 선박 톤수의 18.7%를 보유하는 48개국만이 계약당사국임. 이에 77그룹에서는 선진 국가의 미온적인 태도를 비난함.
- 개도국 항구 개발
 - 개도국 항구시설의 미비와 혼잡으로 인한 Port Congestion Surcharges가 부당하게 많아 개도국의 무역발전에 부담이 되는바, 이를 합리화할 것을 토의함.
- 기술훈련 원조
 - 개도국의 해운발전을 위한 기술훈련 원조 강화가 촉구됨.

3. 건의사항

- UNCTAD 사무국에서는 1981.9월 이전에 Open-registry fleets에 관한 Special Session을 개최할 예정인바, 이에 대비하여 한국의 입장을 면밀히 검토할 것과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건의함.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국제화물 복합운송협약에 관한 유엔회의. Geneva, 1980.5.8.-27.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2010-41 / 15 / 1-351

정부는 1980.5.8.~27. 제네바에서 개최된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국제화물 복합운송 협약에 관한 유엔회의에 권영순 주제네바대표부 참사관을 정부대표로 파견함.

1. 참가국

- 84개국 및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IMCO(정부간해사자문기구), EEC(유럽경제공동체) 등 국제기구

2. 회의 참가 목적

- 국제화물 복합운송 협약이 한국의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한국의 입장을 반영하고 관련 정보 수집을 통한 대처 방안 마련

3. 주요 토의내용

- 상품의 국제복합수송에 관한 유엔협약 채택
 - 7년간의 오랜 협상 끝에 '상품의 국제복합수송에 관한 유엔협약'이 채택된바, 1974년에 채택된 'Code of Conduct for Liner Conferences'에 이어 UNCTAD 후원 하에 맺은 수송 분야의 두 번째 협약임.
- 협약적용의 강제성
 - 복합운송 계약 체결 시 동 협약이 강제적으로 적용됨.
- 증권발급의 의무화
 - 복합운송업자가 상품 접수 시 반드시 새로운 형태의 문서복합수송증권을 발급해야 함.
- 책임의 기간
 - 본 협약에서는 하송인과 MTO(복합운송업자) 간의 계약으로서 MTO가 상품을 접수하여 배달 될 때까지의 모든 수송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러한 모든 책임의 개념은 그동안 상용계약에서만 적용되어 왔으나 처음으로 국제협약에 구체화됨.
- 책임의 한도
 - MTO에게 손실 책임이 있을 시 단위당 920SDR 또는 Kg당 2.75SDR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책임 규정
- 협약의 발효
 - 1980.9.1.~81.8.31. 뉴욕에 공개하고, 30개국 이상의 서명, 비준 시 발효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무형무역 및 무역금융위원회, 제9차. Geneva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2010-42 / 1 / 1-353

1980년 중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9차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무형무역 및 무역금융위원회 관련 내용임.

1. 제9차 UNCTAD/무형무역 및 무역금융위원회 제1부 회의(1980.7.3.~11.)

- 수석대표: 권영순 주제네바대표부 참사관
- 주요 의제: 개도국 수출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ECGF(수출금융보증기금) 설립 검토
 - 국제금융 이슈
 - 개발금융 재원
 - 개도국 수출촉진 수단으로서의 수출 금융
 - 효과적인 국제금융협력 체계의 필요성

2. 제9차 UNCTAD/무형무역 및 무역금융위원회 제2부 회의(1980.9.29.~10.3.)

- 수석대표: 정주년 주제네바대표부 공사
- 주요 의제
 - 보험에 관한 UNCTAD의 역할
 - 개도국의 농업보험
 - 해상보험 및 특정보험의 손해 예방
 - 역내 국가 및 정부 간 재보험 Pool
 - 각국 보험제도 변천사항 검토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제품위원회, 제9차. Geneva, 1980.7.14.-25.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2010-42 / 2 / 1-43

정부는 1980.7.14.~25.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9차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제품위원회 회의에 권영순 주제네바대표부 참사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국

- 78개 국가 및 5개 국제기구

2. 정부 훈령

- 섬유류 교역: 선진수입국의 일시적 이탈로부터 MFA(다국간섬유협정) 기본원칙으로의 조속 복귀 및 실질적 산업조정 촉구
- 철강 교역: 선진국 산업조정조치 부진 및 개도국 수출의 심한 규제위협(반덤핑조사 등) 지적
- MTN(다자간무역협상): 셰이프가드 협상 결과는 개도국 수출개발에 중대한 영향 제공

3. 주요 토의내용

- 제품 교역에 관한 현황 분석
 - 개도국 측은 선진국의 보호주의 철폐와 산업 조정을 촉구하였으나, 개도국과 교역확대를 주장하는 선진국의 태도로 구체적인 결론을 얻지 못함.
- 식물 및 의류의 교역
- MTN 협정 체결
 - MTN이 개도국의 수출 증대를 위한 획기적 조치라는 선진국 측 입장과 개도국 측 입장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개도국 간 견해 차이가 노정됨.
- 공업개발 및 교역을 위한 국제협력
 - UNCTAD/UNIDO(유엔공업개발기구)의 공동노력의 일환인 합동전문가그룹의 활동을 환영함.
- 제품교역과 관련된 환경정책
 - UNCTAD/UNEP(유엔환경계획)의 공동노력을 환영함.

Minai, Ahmed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특별자문관 방한, 1980.8.6.-10.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2010-42 / 3 / 1-54

Ahmed Minai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특별자문관이 1980.8.6.~10. 방한함.

1. 방한 목적

- 아시아태평양 개도국 경제협력기구 설립 타당성 협의
 - 1980.1월 마닐라 개최 “개도국 간 경제협력에 관한 아시아지역회의”에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은 “개도국 간 협력에 관한 아시아태평양지역 기구” 설립을 제의
- 아시아태평양 개도국 경제협력기구의 역할, 기능, 기구 간 관계 및 재정 문제 협의

424

2. 면담 인사

- 외무부차관 및 국제경제국장, 경제기획원 경제협력조정관, 상공부 통상총괄과장

3. 한국 정부 입장

- 원칙적으로 동 경제협력 상설기구 설립 환영
- 개도국 간 경제협력에 적극적 참여 추진
- 중동 산유국과의 자본 협력, 개도국과의 통상·기술협력 희망
-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CPC(개도국간특혜관세협정), ESCAP/방콕협정 기참여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의 유엔 전문기구로의 전환문제

생산연도 1978-1980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2010-42 / 4 / 1-206

1978~80년 중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의 유엔 전문기구로의 전환문제 관련 내용임.

1. UNIDO의 유엔 전문기구화를 위한 제1차 유엔회의(1978.2.20.~3.11., 뉴욕)

- 참가 목적
 - UNIDO의 전문기구화는 개도국 경제개발 및 공업화 촉진 기여라는 관점에서 준비회의에 지속 참가
 - 새로운 UNIDO 헌장 채택 회의에 참여하여 신헌장에 한국의 이익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 77그룹 및 대선진국 관계 증진 도모
- 수석대표: 문덕주 주유엔대표부대사
- 주요 토의내용
 - 최고집행기관 및 예산위원회의 구성, 예산, 표결정족수 등 헌장 수록 주요 내용
- 회의 결과
 - 헌장 초안에 관한 전체위원회 보고서 채택

2. UNIDO의 유엔 전문기구화를 위한 제2차 유엔회의(1979.3.19.~4.6., 비엔나)

- 수석대표: 신기복 주오스트리아대사관 참사관
- 주요 토의내용
 - 헌장 서문 정치적 표현 삽입 문제
 - 신국제 경제질서 기본정신 명기 문제
 - 표결 정족수, 이사회 및 예산위원회 구성국, 지역안배 문제
 - 정규 예산과 기술원조
- 회의 결과
 - UNIDO 신헌장(전문 29조 부칙 3조) 채택

3. 한국 정부는 1980.10.7. 신헌장에 서명하고, 12.20. 비준서를 기탁함.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 총회, 제3차. New Delhi(인도), 1980.1.21.-2.9.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2010-42 / 5 / 1-224

정부는 1980.1.21.~2.9. 뉴델리에서 개최된 제3차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 총회에 이범석 주인도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국

- 134개국

2. 그룹별 입장

- 77그룹
 - 2000년까지 개도국 공업화를 위한 3천억 달러 규모의 Global Fund 설치
 - 리마선언 목표의 기간, 지역, 분야별 분할 추진
 - 비교우위 및 국제노동분업 원칙에 입각한 공업 재배치
 - 개도국 교역증대를 위한 정부 간 위원회의 UNIDO 내 설치
 - 선진국 시장의 대개도국 개방
 -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등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선진·개도국 간 협조
- B그룹(선진국)
 - 공업화를 위한 개도국 자신의 노력과 상호협조 촉구
 - 기금설치안 반대
- D그룹(동구권)
 - 개도국의 주권과 경제적 독립성 강조
 - 표면적으로 개도국 입장 지지, 개도국 환심 획득 정치적 목표 추구

3. 한국 대표 기조연설 주요 내용

- 개도국 공업화 적극 추진 및 선진국 보호주의 무역 정책 완화 필요
- 리마선언 목표 달성을 위한 최빈개도국 개발
- UNIDO 기능 강화를 위한 유엔전문기구로의 승격과 ITIB(국제기술정보은행) 설치안 지지

4. 주요 결과 및 평가

- 77그룹, B그룹 및 D그룹의 입장이 크게 대립하여 의견 조정을 보지 못함.
 - 77그룹의 수석 우세로 채택된 Declaration 및 Plan of Action은 실현성이 희박한 것으로 판단됨. 유엔총회에 제출할 보고서에 B그룹(안) 및 D그룹(안)도 첨부하기로 결정한바, 1980.9월 개최 예정인 유엔경제특별총회에 UNIDO 회의 보고서가 제기될 것이며, 동 토의 과정에서 다시 선진·개도국 간 치열한 논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쿠바, 알제리, 이라크, 모잠비크 등 좌경 개도국들은 Liberation Movement 등 정치적 문제를 강경히 거론하여 회의 진행 및 교섭 노력을 방해함.
- 소련을 포함한 동구권은 실질적인 토의내용에는 관심이 없고, 아프가니스탄사태 등 정치적 고려하에 표면적으로만 77그룹을 지지함.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IDB(공업개발이사회) 및 상임위원회 회의. Vienna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2010-42 / 6 / 1-18

1980년 중 비엔나에서 개최된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IDB(공업개발이사회) 회의 및 제14차 상임위원회 회의 관련 내용임.

1. 제14차 UNIDO/IDB 회의(1980.5.6.~19.)

- 참가국
 - 45개 이사국 및 옵서버국
 - 주오스트리아대사관 과학관 옵서버 참석
- 주요 결과
 - 제3차 UNIDO 총회 결정사항 이행을 위한 조치: 1981~83년 UNIDO 활동은 공업기술, 에너지 관계, 공업기술, 인적자원개발, 최빈개도국 대한 특별조치 등에 우선을 두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UNIDO 기구 개편, 타 유엔기구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함.
 - 협의제도(System of Consultations): 협의제도를 상설제도로 확립하여 제3세계 공업화를 위한 선진·개도국 간의 협의광장으로 활용하기로 함.
 - 기술이전: 개도국의 기술개발, 선택, 습득, 적용, 이전 및 사용을 위한 UNIDO의 활동이 강화되어야 하며, 상기 활동을 위한 재원으로 IFSTD(공업개발잠정기금) 및 UNIDF(공업개발기금)이 활용되어야 함.

2. 제14차 상임위원회 회의(1980.10.13.~17.)

- 참가국
 - 45개 이사국, 28개 옵서버국, 29개 국제기구
 - 주오스트리아대사관 과학관 옵서버 참석
- 주요 결과
 - 제3차 UNIDO 총회 결정사항 이행 관련 선진국 측은 원칙적인 지지 의사를 표명하면서도 이행방법에 있어 추가 예산 및 인원 보완 없이 기존 사업과 함께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태도를 보인 반면, 개도국 측은 이에 완강히 반대하여 대립함.
 - 협의제도를 위한 규칙(안)에 대해서는 선진·개도국 간 막후교섭에서 공업기술이전 등 협의과정에서의 제도상 문제점(국가기관이 개인기업체와의 영향력)을 시간적 여유를 갖고 검토하기로 상호 합의하여 이번 회의에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함.

UNCSTD(유엔과학기술개발회의)/ICSTD(개발을위한 과학기술정부간위원회) 회의, 제1-2차. New York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경제지구 / 국제연합

MF번호 2010-42 / 7 / 1-85

1980년 중 뉴욕에서 개최된 제1~2차 UNCSTD(유엔과학기술개발회의)/ICSTD(개발을위한 과학기술정부간위원회) 회의 관련 내용임.

1. 제1차 회의(1980.1.28.~2.1.)

- Financing System 설치를 위한 27명의 정부 간 전문가그룹 구성에 관해서는 지역 간 인원수 안배에 관해 합의를 보지 못하고 차기 5월 회의 개최 이전에 지역그룹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는 대로 중간 본회의를 소집 채택하기로 함.
- Interim Fund 운영지침에 관해 77그룹이 제안한 추가사항에 대해 UNDP(유엔개발계획)가 세부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함.

2. 제2차 회의(1980.5.22.~6.4.)

- 비엔나 행동강령 집행계획을 위하여 결의안을 채택하고 행정문제와 관련된 유엔사무총장의 보고서를 제35차 유엔총회에 제출하기로 함.
- Interim Fund 지침을 위한 결의안 및 재정문제를 위한 결의안을 각각 채택함.
- 유엔 재정조직에 관한 정부 간 전문가그룹을 위해 호주, 오스트리아, 칠레, 일본 등 27개국을 선출하고, 제1차 회의를 1980.8.11.~15. 뉴욕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함.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방글라데시 공업개발협력을 위한 공업장관회의. Dacca(방글라데시), 1980.12.2.-5.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2010-42 / 8 / 1-195

정부는 1980.12.2.~5. 방글라데시 다카에서 개최된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방글라데시 공업개발협력을 위한 공업장관회의에 김선길 상공부차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회의 목적

- 개도국 간의 기술협력 범위 내에서 방글라데시의 경제·공업개발 지원

430

2. 참가국

- 한국, 인도, 튀르키예, 파키스탄, 유고, 중국(구 중공), 필리핀, 스리랑카, 케냐, 페루 등 17개국

3. 주요 의제

- 방글라데시 공업개발 현황 및 재정문제
- 기술 및 금융 원조가 필요한 우선사업
- 방글라데시 기술원조 및 자원 이전 촉진 방안

4. 한국대표단 주요 활동

- 수석대표 기조연설 주요 내용
 - 한국은 개도국 간 자조협력(Self-Reliance) 정신에 입각한 협력사업을 적극 지지하며, 과거 20년간의 개발 경험을 서로 공유할 것임.
- 한·방글라데시 대표 간 양자협의를 통하여 협력가능 분야 제시
 - 공장건설사업에 대한 합작투자(자본 또는 설비)
 - 기술훈련 가능 분야: 1981.1월까지 방글라데시 측이 한국 측에 대한 요청 시안을 작성하기로 함.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비료공업협의회, 제3차. Sao Paulo(브라질), 1980.9.29.-10.4.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2010-42 / 9 / 1-125

정부는 1980.9.29.~10.4.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개최된 제3차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비료공업협의회 회의에 장기안 주상파울루총영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회의 목적

- 세계 비료공업의 균형 발전을 위한 국가 및 지역 간 비료생산시설 증가에 대한 정보 교환 및 수집
- 개도국 간 협력 계기 마련 및 국제 지원책 강구

2. 정부 훈령

- 비료 수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국 비료공업의 현황 소개
 - 한국은 요소, 복합비료 등 상당량의 비료를 수출해야 하는 입장이므로 비료수입국을 상대로 한국 비료공업 현황을 적극 소개할 것
- 세계 비료시장 동향에 관한 각종 자료를 최대한 수집할 것
- 한국의 비료공업기술은 선진국의 기술수준에 도달하여 개도국에 대한 기술지원과 플랜트 수출이 가능하므로 플랜트 수출시장 개척 가능성을 모색하도록 적극 노력할 것

3. 주요 의제

- 비료공장 건설을 위한 UNIDO 표준계약서 검토
- 비료 및 기타 공장 발생 손실보상복합보험제도
- 개도국 간 비료공업 협력 및 기술지원 방안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의약품공업협의회, 제1차. Lisbon(포르투갈), 1980.12.1.-5.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2010-42 / 10 / 1-109

제1차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의약품공업협의회 회의(1980.12.1.~5., 리스본) 관련 내용임.

1. 준비회의(1980.4.24.~27., 멕시코 칸쿤)

- 한국 대표: 진강 보건사회부 약품수급담당관
- 정부 훈령
 - 한국 제약산업 발전실태 및 성과 홍보
 - 각국 제약산업 정책에 대한 정보 및 자료 수집

432

2. 제1차 UNIDO/의약품공업협의회(1980.12.1.~5., 리스본) 주요 의제

- 원료생산을 위한 기술 계약 등의 기본 형태와 정책
- 원료 및 중간재의 가격 및 효율성
- 25개 기본의약품의 주성분 제조기술 이용도
- 의약품공업 현황에 대한 검토
- 기초약품 제조기술 이전 문제
- 주요 의약품의 원료 생산 및 합성공장의 개도국 내 설립 문제

UNDP(유엔개발계획) 집행이사회 특별회의. New York, 1980.2.11.-20.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국제연합

MF번호 2010-42 / 11 / 1-73

UNDP(유엔개발계획) 집행이사회 특별회의가 1980.2.11.~20. 뉴욕에서 개최됨.

1. 주요 의제

- UNDP 제3차 계획기간(1982~86년) 중의 자원 배분
 - 예상 자원 총액: 66억 9천 8백만 달러
 - 국별 수원액 결정 기준: 인구수 및 1인당 GNP, 기타 보완적 기준 등
- 제2차 계획기간(1977~81년)과 제3차 계획기간 간의 경과조치
- 제34차 유엔총회 채택 조치사항

2. 회의 결과

- 결정사항
 - 제2차 및 제3차 기간 간 경과조치, 대니카라과 및 대적도기니 원조, 짐바브웨 IPF 설정
- 주요 논의사항
 - UNDP 기여금 연 14% 증가: 수원국은 14% 이상을, 원조공여국은 14% 이하를 주장
 - 국별 수원액 기준치 IPF, Floor, Ceilling, Cut-off 개념
 - 1인당 GNP 500달러 미만 그룹에 대한 국별 IPF 총액 배정 비율
- 제3차 계획기간의 개발원조자금 배정지침에 합의를 이루지 못함.
 - 제27차 집행이사회(1980.6.2.~30., 제네바)에서 계속 토의하기로 결정

3. 참고자료

- 제3차 계획기간의 준비지침: 추가 계산양식(제27차 집행이사회에 제출 예정)

UNEP(유엔환경계획) 이사회, 제8차. Nairobi(케냐), 1980.4.16.-29.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2010-42 / 12 / 1-127

정부는 1980.4.16.~29.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제8차 UNEP(유엔환경계획) 이사회에 주케냐대사를 옵서버대표로 파견함.

1. 주요 결과

- 차기 회의 일정 결정
 - 제9차 이사회: 1981.5.13.~26.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 및 잠정의제 채택
 - 회기 간 협의회: 1980.12.8.~11. 개최 결정

434

2. 참고자료

- 제8차 UNEP 이사회 관련 영문 자료(이사회 보고서 등)
- 제8차 UNEP 이사회에서 채택된 열대산림에 관한 결의 및 전문가 회의 권고

Khosla, Ashok UNEP(유엔환경계획) INFOTERRA(국제환경정보조회체계)담당 국장 방한, 1980.12.17.-19.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국제경제

MF번호 2010-42 / 13 / 1-22

Ashok Khosla UNEP(유엔환경계획) INFOTERRA(국제환경정보조회체계, International Referral System)담당 국장이 1980.12.17.~19. 방한함.

1. 방한 목적

- INFOTERRA의 한국 측 창구인 국립환경연구소 등과 업무 협의
- INFOTERRA의 기능 및 책임, 뉴델리 INFOTERRA 워크숍 후속조치 논의

2. 주요 일정

- 환경청장 예방, 환경청과의 업무 협의
- 국립환경연구소와의 업무 협의
- 외무부 국제경제국장 면담
 - INFOTERRA와의 협력문제, 북한 방문 결과 설명 등
-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 방문

Banerjee, Purnendu K. UNHCR(유엔난민고등판무관) 수석 자문관 방한, 1980.8.13.-18.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국제연합

MF번호 2010-42 / 14 / 1-47

P. K. Banerjee UNHCR(유엔난민고등판무관) 수석 자문관이 1980.8.13.~18. 방한함.

1. 방한 경위

- 1975년 한국 정부는 P. K. Banerjee 유엔 정치안보담당(유엔 한국문제담당)의 방한 희망에 따라 동인을 방한 초청한 바 있으나, 동인의 사정으로 그 동안 방한하지 못하다가 1980.1월 방한할 것을 희망하여 옴.
- 동인은 1980.2.7.자로 UNHCR 사무소에 수석 자문관으로 전임
- 1980.4월 외무부는 동인의 방한 초청을 승인함.

436

2. 주요 일정

- 외무부장관 예방
- 현대조선소, 현대자동차 등 산업 시찰
- 부산, 경주지역 시찰

Volfing, Dle UNHCR(유엔난민고등판무관) 대외담당 국장 방한, 1980.9.17.-20.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국제연합

MF번호 2010-42 / 15 / 1-79

Dle Volfing UNHCR(유엔난민고등판무관) 대외담당 국장이 1980.9.17.~20. 방한함.

1. 방한 목적

- 베트남 난민 구호와 정착문제 협의

2. 주요 일정

- 외무부 국제기구국장 면담
- 대한적십자사, 부산 난민수용소 방문

3. Volfing 대외담당 국장의 외무부 국제기구국장 면담 시 주요 언급 내용(9.18.)

- 피난민 조약(피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 및 피난민 지위에 관한 의정서) 가입문제
 - UNHCR은 수차례 한국 정부에 동 조약 가입을 촉구해옴.
 - 한국 정부의 특정조항 적용배제가 가능하며, 가입문제에 대한 적극 검토를 희망함.

4. 참고자료

- 피난민 조약 가입문제 관련 자료

UNICEF(유엔아동기금) 일반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국제연합

MF번호 2010-42 / 16 / 1-75

1. 아동보호 및 복지에 관한 사회적·법률적 선언안

- 1979.12.4. 유엔사무총장, 동 선언안에 대한 한국 정부 의견을 1980.3월 말까지 제출 요청
- 1980.4.10. 보건사회부, 동 선언안에 대해 원칙적 동의

2. 청소년 정책에 관한 의견 제출

- 1980.3.24. 유엔사무총장, 청소년 정책 및 프로그램(제34차 유엔총회 결의 163호)에 대한 각국 정부의 의견이나 제안을 5.15.까지 제출 요청

438

3. 참고자료

- 주한 유니세프사무소장 면담 참고자료(1980.3.24.)

WFP(세계식량계획) 분담금 서약회의. New York, 1980.2.21.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국제기구

MF번호 2010-42 / 17 / 1-36

WFP(유엔세계식량기구) 기여금 서약회의가 1980.2.21. 뉴욕에서 개최됨.

1. 회의 개최 배경

- 1979년 유엔 및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총회, 1981~82년 중 WFP 자발적 기여금 목표액을 10억 달러로 결정

2. 회의 결과

- 한국은 국회 승인을 조건으로 10만 달러를 자발적 기여금으로 서약
- 동 회의에서 50개국이 총액 3억 3천 3백만 달러(전체 모금액은 10억 달러)를 서약함.
 - 최대 기여국인 미국 및 캐나다 등 다수국은 추후에 기여액 통보 예정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상주대표부 설치 검토

생산연도 1978-1979

생 산 과 국제기구1

MF번호 2010-42 / 18 / 1-14

1. 교통부의 항공주재관 파견 요청

- 1978.7월 교통부,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및 아시아 지역사무소에 항공주재관 파견을 요청
- 1979.5.14. 교통부, ICAO 주재관 파견 관련 직제개정안 제출

2. 외무부 국제기구국 및 주캐나다대사관 검토의견

- ICAO 관련 업무의 증대로 항공관계 직원 파견에는 이의 없음.
- 주몬트리올총영사관 개설에 맞추어 파견하는 것이 바람직함.
- 아시아 지역사무소에 주재관 파견 필요성은 없음.

심명원 IAEA(국제원자력기구) 및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 상주대표 임명, 1980.5.28.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국제기구2

MF번호 2010-42 / 19 / 1-17

1. IAEA(국제원자력기구) 및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 상주대표 임명

- 1980.5.28. 심명원 주오스트리아대사를 IAEA 및 UNIDO 상주대표로 임명
- 6.2. 심명원 대사에 대한 IAEA 및 UNIDO 상주대표 신임장 발급

2. 신임장 제정

- 1980.6.20. 심명원 대사, Khane UNIDO 사무총장에게 신임장 제출
- 6.27. 심명원 대사, Eklund IAEA 사무총장에게 신임장 제출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총회, 제23차. Montreal(캐나다), 1980.9.16.-10.7. 전2권 (V.1 기본문서)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국제기구1 / 조약1

MF번호 2010-42 / 20 / 1-227

정부는 1980.9.16.~10.7.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제23차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총회에 성기용 교통부 항공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국

- 134개 회원국, 1개 비회원국, 17개 국제기구 등

2. 주요 의제

- 의장단 선출, 33개 이사국 선출
- 1977~80년 연차보고서 승인 및 1981~83년 사업계획 확정
- Chicago 협약 개정(제83조 추가조항 신설)

3. 주요 결과

- 33개 이사국 선출(Part I 10개국, Part II 11개국, Part III 12개국)
- 시카고협약 개정(제83조 추가조항 신설)
 - 동 비준을 촉구하는 의정서 채택
- 이스라엘 관계 결의안 채택
 -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공항과 예루살렘을 원상태로 환원시키고, 이스라엘군 철수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총회, 제23차. Montreal(캐나다), 1980.9.16.-10.7. 전2권 (V.2 각국의 이사국 입후보 지지요청)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국제기구1 / 조약1

MF번호 2010-42 / 21 / 1-245

1.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Council) 이사국 선출

- 구성 및 선출
 - 총회가 선출하는 33개국으로 이사회 구성, 총회에서 투표 참가국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
- 이사국의 종류(총 33개국)
 - Part I: 항공운수 주요국 10개국
 - Part II: 국제민간항공시설 설치 공헌국 11개국
 - Part III: 지역 대표국 12개국

2. 제23차 ICAO 총회 이사국 입후보 지지 요청

- 각국의 이사국 입후보 지지 요청에 대한 한국 측 입장
 - 한국에 지지 요청을 해온 국가 전부를 지지
 - 한국의 지지 결정 통보 시 차기 ICAO 총회에서 한국의 이사국 입후보와 상호 지지 요청
- 외무부는 각국에 대한 지지 통보 관련 면담록을 작성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

3. ICAO 이사국 선출(1980.9.20.~23.) 결과

- Part I: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브라질, 이탈리아, 프랑스, 캐나다, 호주, 소련
- Part II: 아르헨티나, 인도, 멕시코, 스페인, 덴마크, 베네수엘라, 네덜란드, 중국(구 중공), 이집트, 레바논, 나이지리아
- Part III: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콜롬비아, 자메이카, 체코, 마다가스카르, 이라크, 알제리, 카메룬, 엘살바도르, 우간다, 세네갈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특별 항공운수 회의, 제2차. Montreal, 1980.2.12.-28.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국제기구

MF번호 2010-43 / 1 / 1-132

정부는 1980.2.12.~28.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제2차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특별 항공운수 회의에 윤영덕 교통부 국제과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국

- 146개 회원국 중 101개 회원국

2. 주요 의제

- 국제항공운수 업무의 과잉공급 규제
- 국제항공운임 및 요금 조정

3. 주요 결과

- 국제항공운수 업무의 정기, 비정기 분야 간 구분에 있어 현행 항공법규의 정의를 존속
- 국제항공운수 업무의 과잉공급 규제에서 Pre-Determination Method 만을 채택, 권고
- 제3차 항공운수회의를 향후 3~5년 내 개최 결정

4. 건의사항

- 한국의 ICAO 상주대표부 설치 건의
 - 북한의 ICAO 상주대표부 설치 예상
 - ICAO 내 항공업무 활동 대응 필요

IMCO(정부간해사자문기구) 소위원회 회의. London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국제기구1

MF번호 2010-43 / 2 / 1-24

1. 제24차 IMCO(정부간해사자문기구) 화재보호 소위원회 회의(1980.3.3.~7., 런던)

- 참가국
 - 26개 회원국 및 국제기구
 - 박수환 주영국대사관 해무관 등 2인 참석
- 토의내용
 - 화학물질 탱커오일 및 가스탱커에 대한 화재진압장치, Inert Gas 장치의 국제기준, 화재시험 방법, 혼용선 및 원자력선의 화재안전조치 등 기술적 사항

2. 제7차 IMCO 산적화합물 소위원회 회의(1980.3.24.~28., 런던)

- 참가국
 - 25개 회원국 및 국제기구
 - 방현재 주영국대사관 재무관 등 2인 참석
- 주요 결정사항
 - 신규 케미컬의 위험평가를 본 Code 제9차 개정안에 포함
 - Annex I 및 II 물질 수송에 대해 합의
 - 가스운반선 Code의 현실화를 위한 검토를 완료하고 SI Unit 사용 결정 등

IMCO(정부간해사자문기구) 해사안전위원회, 제42-43차. London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국제기구

MF번호 2010-43 / 3 / 1-254

정부는 1980년 중 런던에서 개최된 제42~43차 IMCO(정부간해사자문기구) 해사안전위원회 회의에 선준영 주영국대사관 참사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제42차 회의(1980.5.19.~23.)

- 참가국
 - 55개 회원국, 19개 국제기구 등
- 주요 토의 및 합의사항
 - 스리랑카 Dondra Head 해역 항로분리계획 통과
 - 조타장치의 이중설비 의무, 최신 해도 배치 의무
 - 컨테이너 안전점검 및 검사필증 부착 결의, 연료 유류 및 휘발성 액체의 선수창 적재 금지
 - 만재흡수선협약 개정안 및 해상인명안전협약 수락 촉구 등

2. 제43차 회의(1980.12.1.~5.)

- 참가국
 - 55개국, 23개 정부 간 기구 및 비정부 간 기구 등
- 주요 토의내용
 - 각국의 해상안전 관련 8개 협약의 조기 비준을 촉구
 - 1978년 SOLAS(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 의정서의 시행(추가증명 발행 등)
 - 1974년 SOLAS 협약의 개정을 논의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함.
 - 기타 검사 및 증명, 결함보고, 해난통계, 훈련 및 당직기준, 위험화물 수송, 구명설비장치, 선박설계 및 설비 등

IMCO(정부간해사자문기구) 해양환경 보호위원회 회의, 제14차. London(영국), 1980.11.10.-14.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국제기구1

MF번호 2010-43 / 4 / 1-75

정부는 1980.11.10.~14. 런던에서 개최된 제14차 IMCO(정부간해사자문기구) 해양환경 보호위원회 회의에 이은 해운항만청 선박기좌를 정부대표로 파견함.

1. 참가국

- 42개 회원국 및 1개 준회원국(홍콩), 15개 국제기구 등

2. 주요 의제

- 해양오염에 관한 국제협약 현황
- 해양오염방지협약의 통일된 해석과 가능한 개정안
- 청정 바ラスト 탱크의 사양 및 지침서의 수정안
- 유수분리기 및 감시장치 등

3. 주요 결과

- 1978년 SOLAS(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 의정서는 1981.5.1.부로 발효됨.
- 1978년 MARPOL(선박에의한오염방지를위한국제협약) 의정서는 1980.10월 기준 9개국이 비준함.
- MARPOL 1973 및 1978 Protocol의 제목을 간략히 'MARPOL 73 / 78'로 결정함.
- 대양에서의 바ラスト 수선하부중력배출 관련 개정안은 아래와 같이 재개정함.
 - 기존선, 신조선 모두 대양에서는 모든 바ラスト를 수선하부로 중력 배출할 수 있도록 함.
- 유수분리장치, 유분농도계 등 장치에 대한 규정의 개정은 차기 회의에서 검토하기로 함.

4. 건의사항

- IMCO 업무 전문위원회 설치 및 IMCO 사무국 직원 진출
- 적극적인 회의 참여, 정부 담당부서 보강 및 전문인 양성

이병희 위원 IAEA(국제원자력기구) 사무차장 입후보. 전2권 (V.1 사전준비 및 진행보고)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국제기구

MF번호 2010-43 / 5 / 1-283

448

1. IAEA(국제원자력기구) 사무차장 추천

- 1979.9.15. 과거처, IAEA 사무국 고위직에 이병희 원자력위원회 위원 추천
- 1980.5.3. 과거처, IAEA 연구사업부 담당 사무차장직에 이병희 위원을 추천하는바, 재외공관을 통한 우방국의 협조 등 필요한 조치를 외무부에 요청
- 5.13. 외무부, IAEA 사무차장직에 이병희 위원을 추천하기로 결정
 - 외무부장관 명의 정부 추천서를 IAEA 사무총장에게 제출
- IAEA 사무총장은 사무차장 후보자를 지명, 이사회와 사전협의를 거쳐 임명

2. 외무부, IAEA 사무차장 진출을 위한 교섭방안 마련(1980.5.30.)

- IAEA 연구 및 방사선 동위원소부 담당 사무차장직 응모 국가
 - 한국, 이탈리아, 프랑스
- 교섭대상국: 34개 IAEA 이사국 중 26개국
 - 이사국에 대한 사무총장의 비공식 협의 시 과반수(17개국) 이상 지지 확보
 - 교섭대상국 그룹별 교섭 시 설명자료 마련
- 채용 전망
 - 프랑스, 이탈리아 어느 국가도 서구 국가의 컨센서스를 얻지 못함.
 - 프랑스는 아직 NPT(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하지 않음.

3. 외무부, 교섭시행 지시(1980.6.14.)

- 교섭대상국 주재 공관 및 주오스트리아대사에게 교섭대상국 대표부와 교섭 지시
- 교섭 방법
 - 이병희 위원 이력서 및 주요 저서를 참조하여 Talking Paper에 따라 교섭할 것
 - Kakihana 사무차장의 사임시기가 9월로 연기된 점을 감안하여 금번 교섭 시에는 동 이사국들이 IAEA 사무총장으로부터 비공식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이병희 위원이 동 사무차장직에 가장 책임자임을 사무총장에게 강력히 추천하여 주도록 요청할 것

4. IAEA 사무차장 진출 교섭 중간 결과(1980.8.5.)

- 총 26개국 대상 교섭 중간 결과
 - 지지 예상국(3개국): 미국, 멕시코, 일본
 - 호의적 고려 예상국(6개국): 호주, 브라질,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태국, 인도네시아
 - 태도 미정국(17개국): 영국, 캐나다, 인도 등



- 교섭 유의사항

- 북한 측이 최종단계(1980.9.18.~19., 이사회)까지 한국 측 입후보를 감지하지 못하도록 유의할 것
- Eklund 사무총장의 호의적 결정 유도
- 태도 미정국가 대표 등에 대한 개인자격 접촉 반응 보고
- 한국 입후보자에 대한 각국 지지 방향 분석 보고
- 교섭 시 주오스트리아대사관 및 주제네바대표부 담당관과 협조

5. 26개국 교섭 현황(1980.9월)

- 지지 표명 15개국, 호의적 고려 5개국, 입장 불표명 4개국, 불반대 표명 2개국

6. IAEA 사무차장 후보 선정

- 1980.9.18. Eklund 사무총장, IAEA 사무차장직에 이탈리아 후보 선정
 - EURATOM(유럽원자력공동체) 측의 집요한 주장 및 사무총장에 대한 압력
- 외무부, 26개 교섭대상국 주재 공관을 통해 한국 후보자에 대한 적극 지지 및 긴밀한 협조에 사의 표명

7. IAEA 고위직 진출 문제

- 1980.12.9. 기술지원국장에 이병희 위원이 응모하였으나, 가나 후보가 임명됨.

이병휘 위원 IAEA(국제원자력기구) 사무차장 입후보. 전2권 (V.2 각국 교섭)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국제기구

MF번호 2010-43 / 6 / 1-310

1. IAEA(국제원자력기구) 사무차장직 정부추천서

- 1980.4.5. 주오스트리아대사 대리는 3.28. Hall 사무차장과 상의한바, 사무차장직의 경우 정부 추천서가 그다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외무부장관 명의를 바람직할 것이며, Eklund 사무총장도 이에 동의하였다고 보고함.
- 5.19. 주오스트리아대사관 참사관은 Eklund 사무총장에게 이병휘 원자력위원회 위원에 대한 외무부장관 명의 정부추천서를 전달함.

450

2. 연구 및 방사전 동위원소부 담당 사무차장직 관련 교섭

- 외무부는 1980.4.10. 주일본대사에게 상기 담당 Kakihana 사무차장 관련 아래 내용 교섭을 지시함.
 - 일본의 Isotope 분야에 대한 관심도 및 활동실적
 - Kakihana 사무차장의 임기 전 퇴임설 확인 및 일본 측의 자국민 추천의사 유무
 - 일본 정부가 1977년 동인을 사무차장으로 진출시키고자 행한 제반조치의 상세내용 및 추진 절차
 - 사무차장 임명 과정에 미국·소련 등 이사국의 영향력 행사 여부 등
- 황규정 주일본대사관 1등서기관은 6.20. 외무성 원자력과장을 방문, 이병휘 위원의 사무차장직 응모 사실을 알리고 Talking Paper의 내용에 따라 일본의 지지를 요청한바, 동 과장의 반응은 아래와 같음.
 - 일본은 Kakihana 사무차장의 후임자를 입후보하지 않음.
 - 동 후임에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후보자를 낸 것을 알고 있지만, 후보자 지지 요청을 받은 바 없음.
 - 한국에서 후보자를 낸 사실은 보고받지 못한바, 즉시 주오스트리아 일본대표에게 연락하여 이병휘 위원이 입후보함을 알리겠음. Kakihana 사무차장이 아직 비엔나에 있으며 후임자 선정 문제에는 전임자의 의견이 크게 참작될 것으로 생각됨.
 - 일본 측이 이병휘 위원을 지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치적 측면도 고려할 문제이므로 검토할 시간이 필요함.
- 외무부는 6.21. 상기 교섭내용을 주오스트리아대사에게 전달하면서 Kakihana 사무차장과 접촉하여 이병휘 위원을 강력 추천하여 주도록 교섭할 것을 지시함.

3. 사무차장 임명

- IAEA 이사회는 1980.9.18. 상정된 의제 심의 완료 후 사무차장 임명에 대한 비공개 비공식 협의를 가진바, Zifferoto 이탈리아 후보가 사무차장에 임명됨.
 - 이사국으로부터 별다른 이의 없이 양해를 받았으며, 동 비공식 협의회에서는 필리핀 대표만이 한국 측 후보가 임명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유감의 뜻을 표시함.

IAEA(국제원자력기구) 원자력발전소 안전지침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국제기구

MF번호 2010-43 / 7 / 1-334

1. 방사선 방호를 위한 안전기준 초안

- 1979.12.18. IAEA(국제원자력기구)는 방사선 방호를 위한 안전기준 초안에 대한 회원국 의견 문의
- 동 초안은 IAEA, ILO(국제노동기구), WHO(세계보건기구) 및 NEA(원자력기구)가 공동으로 마련
 - Part I: 방사선 방호의 목표, 범위 및 정의, 제한, 노출 기준 등
 - Part II: 운영 요건 및 실제 적용 시 지침 등
 - Part III: Part I 및 II의 요건에 대한 원칙 및 철학에 대한 설명

2. 원자력발전소 안전기준 초안

- 1980.1.22. IAEA는 원자력발전소 안전기준 초안에 대한 회원국 의견을 4.22.까지 제출 요청

3. 원자력발전소 비상발전체계에 대한 안전기준 지침(안)

- 1980.8.19. IAEA는 동 안전기준 지침(안)에 대한 회원국 의견을 11.19.까지 제출 요청

4. 해안 원자력발전소 침수방지 설계 결정에 대한 안전기준 지침(안)

- 1980.9.30. IAEA는 동 안전기준 지침(안)에 대한 회원국 의견을 12.30.까지 제출 요청

IAEA(국제원자력기구) 총회, 제24차. Vienna(오스트리아), 1980.9.22.-26.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국제기구

MF번호 2010-43 / 8 / 1-147

정부는 1980.9.22.~26.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된 제24차 IAEA(국제원자력기구) 총회에 심명원 주오스트리아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국

- 85개국

2. 주요 의제

- 총회 의장단 및 이사국 선출
- 1981년 기술원조자금 자발적 기여금, 1981년도 회원국 분담금
- 사업계획 보고, 기술원조 지원 재정, 안전조치 지원 재정, 현장 일부 조항 개정 등

3. 총회 의장 및 이사국 선출 문제

- 총회 의장 선출 문제
 - 필리핀 및 서독의 총회 의장 진출 지지 요청
 - 서독의 Haunshield를 총회 의장, 필리핀은 전체위원회 의장에 선출
- 이사국 선출 문제
 - 한국은 아르헨티나, 페루, 우루과이, 스웨덴, 튀르키예, 나이지리아, 수단, 말레이시아, 레바논을 지지하였으며, 지지국가 전원 선출됨.

4. 북한의 정치적 책동

- 북한은 기초연설을 통해 의제와 관련 없는 한국에 대한 비난 및 주한미군 철수 등 주장
- 한국 대표는 북한의 발언을 규탄하였으며, 의장 및 소련도 정치적 발언 삼가도록 설득

5. 참고자료

- 한국 수석대표 연설문(영문)

IAEA(국제원자력기구) 이사회. Vienna(오스트리아)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국제기구

MF번호 2010-43 / 9 / 1-29

1980년 중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된 IAEA(국제원자력기구) 이사회 관련 내용임.

1. 1980.2월 이사회(1980.2.13.~15.)

- IAEA 사무국 작성 1980년 IAEA 기술원조사업 전문가 및 기기 분야 계획보고서에 대한 심의

2. 1980.3월 이사회(1980.3.4.~6.)

- 기술원조, 현장 개정, 안전조치 예산 및 Post INFCE(국제핵연료주기평가회의) 대책 등 논의
- 북한 대표는 한국과 이스라엘에 제공되는 기술원조가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될 우려 제기
 - 미국은 북한의 군사제공 이의 제기에 대해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반박

3. 1980.6월 이사회(1980.6.17.~20.)

- 기술원조, 현장 개정, 안전조치 보고서, Post INFCE 대책 등 논의
- Post INFCE 대책 관련 모든 국가에 문호 개방되는 위원회 설치 결정

4. 1980.9월 이사회(1980.9.18.~19. 및 9.26.~29. 속개)

- 모나코 해양연구소에 관한 모나코·IAEA 간 협약 연장 승인
- 안전조치 관련 사항
 - 쿠바·IAEA 간 안전조치협정 승인
 - 기술원조자금, IAEA 본부 이전, IAEA 현장 개정 등 논의
- 북한은 안전조치 검사관으로 임명된 한국인 검사관이 자격이 없음을 주장
 - 미국은 북한 대표의 발언이 정치적 주장이라고 반박

INFCE(국제핵연료주기평가회의). Vienna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국제기구1

MF번호 2010-43 / 10 / 1-94

454

1. INFCE(국제핵연료주기평가회의) 최종회의(1980.2.25.~29., 비엔나)

- 참가국: 59개국, 6개 국제기구
- 수석대표: 이병휘 원자력위원회 위원
- 최종회의 결과(공동 코뮌িকে 발표)
 - INFCE 작업경과 보고, 8개 분과 작업반 및 TCC 해체
 - 원자력에너지 개발 증대, 개도국 특수성 고려 강조
 - 원자력 개발을 저해하지 않으며, 핵확산 위험을 극소화하는 대책 및 국제협력 강조
- 회의 결과 평가
 - INFCE는 기술적 검토분석 작업으로 법적 구속력 없음.
 - 미국과 기타 회원국 간 기본적 의견 대립
 - 핵확산 금지 측면에서 미국과 소련이 동일 보조
 - Post INFCE 활동이 이미 개시되고,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국제회의 소집 예상

2. 제16차 INFCE 국내자문위원회 개최(1980.3.13.)

- INFCE 최종회의 결과에 대한 국내 대책 협의

3. 참고자료

- 최종회의 수석대표 연설문(영문)
- INFCE 최종회의 참가 보고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비동맹 조정국 회의, 제1차. Buenos Aires(아르헨티나), 1980.6.30.-7.4.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국제기구

MF번호 2010-43 / 11 / 1-53

제1차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비동맹 조정국 회의가 1980.6.30.~7.4.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됨.

1. 참가국

- 비동맹 조정국: 알제리, 아르헨티나, 쿠바, 이집트, 가봉, 인도네시아, 이라크, 리비아,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유고 11개국
- 기타 비동맹 국가: 북한, 인도, 페루 3개국
- 옵서버국: 브라질, 필리핀, 우루과이 3개국

2. 주요 의제

- 각국 대표단의 제안 제출, 협력 프로그램(안) 토론
-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에서 비동맹 조정국 입장 점검
- 최종 문서 검토 및 채택

3. 회의 결과

- 협력 프로그램 작성 및 Ad-Hoc Committee 구성
- NPT(핵확산금지조약) 문제점 비판 및 NPT 평가회의 관련 권고 채택
- IAEA(국제원자력기구) 사무국 민주화 및 이사국 지역배정 불균형 시정 촉구 권고
- 원자력 평화적 이용에 관한 국제협력 증진 총회: 1983년 상반기 개최
- 런던클럽 문제 등 토의

4. 북한의 회의 참가

- 대표단: 한시해 주유엔대사 등 3인
- 북한 측이 회의 참가를 희망하여 아르헨티나 정부가 특별 도항증 발급
- 회의에서 특별한 정치적 발언은 없었음.

WMO(세계기상기구) 아시아지역회의, 제7차. Geneva(스위스), 1980.6.2.-14.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국제기구

MF번호 2010-43 / 12 / 1-138

정부는 1980.6.2.~14.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7차 WMO(세계기상기구) 아시아지역회의에 손형진 중앙관상대 기상연구소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국

- 25개 역내 회원국, 4개 역외 회원국, 4개 국제기구

2. 주요 의제

- 세계기상감시계획, 연구개발계획, 기상활용과 환경계획
- 수문학 및 수자원 계획, 교육훈련계획, 세계기후계획, 기술협력계획 등

3. 회의 결과(합의사항)

- 상층풍 관측은 0000 GMT와 1200 GMT에 시행, 적어도 30Km 고도까지 관측
- 지역기상센터에 제다를 포함
- 해상기상 통보 강화, 기상통신 실무단 구성, 농업기상 실무단 구성 등

3. 정치문제 등 특기사항

- 폴포트 대표권 문제: 중국(구 중공)·소련 간 격렬한 논쟁
- 중국과 베트남의 영유권 문제
 - 남중국해의 사사 및 난사군도의 3개 관측소 관련 베트남과 중국이 격렬한 논쟁

WMO(세계기상기구) 기본조직 전문위원회 특별회의. Geneva(스위스), 1980.12.1.-10.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국제기구

MF번호 2010-43 / 13 / 1-66

정부는 1980.12.1.~10.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WMO(세계기상기구) 기본조직 전문위원회 특별회의에 서상문 중앙관상대 기상연구소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국

- 75개국 및 7개 국제기구

2. 주요 의제

- 통합세계기상감시체제 연구, GOS(세계기상관측조직), CODES(기상통보실조직)
- GDPS(세계기상자료처리조직), GTS(세계기상통신조직), WWW(세계기상감시) 운용 등

3. 회의 결과

- GOS
 - 관측망 강화 자동관측장치, 관측단위 및 비행장 해상 관측 강화 권유 안 통과
- CODES
 - 천기도 이입법, 통보식 규정 등을 수정 통과
- GDPS
 - 기상자료의 정확성과 데이터의 교환 등이 논의 통과
- GTS
 - 통신망이 재정비되고 신속 정확을 위한 각 지역센터의 임무가 더욱 강화되어 통과
- WWW
 - WWW PLAN의 과거 업적 평가 및 향후 계획 재검토 통과
 - 예보 분석 장비 전문가의 개도국에 대한 교육 등 권유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총회, 제21차. Belgrade(유고슬라비아), 1980.9.23.-10.28. 전5권 (V.1 사전준비)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국제기구1

MF번호 2010-43 / 14 / 1-224

1. 제21차 유네스코 총회 개최

- 1980.2.19. 유네스코, 제21차 총회가 1980.9.23.~10.28. 유고 베오그라드에서 개최됨을 통보

2. 대표단 구성

- 1980.9.3. 제21차 유네스코 총회 대표단 임명
 - 수석대표: 이규호 문교부장관
 - 교체수석대표: 민병기 주프랑스대사 등 21명
- 대표단 파견 목적
 - 총회 의제 토의에 적극 참가, 정부 입장 반영
 - 북한의 한국에 대한 선전 비방활동 등 제반 정치책동에 대처
 - 교육, 과학, 문화 분야에서 국제협력 도모
 - 한국 고유문화의 우수성 및 교육, 과학, 문화 분야 발전상 소개

3. 사전 교섭활동

- 유네스코 총회 준비 실무대표단 파견
 - 주프랑스대사관 관계관 2인을 1980.9.14.~16. 벨그라드에 파견
 - 국악연주단 공연, 통신문제, 호텔 및 리셉션, 기조연설 일자 등록 등 협의
- 유고 입국 비자문제
- 총회 기간 중 우방국 통신시설 이용 관련 협의
 - 미국, 영국, 독일, 네덜란드, 일본 등과 협의
- 유네스코 문화행사 참가 문제
 - 한국 국악연주단 공연을 추진하였으나, 유고 측 비협조로 무산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총회, 제21차. Belgrade(유고슬라비아), 1980.9.23.-10.28. 전5권 (V.2 대책 및 훈령)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국제기구1

MF번호 2010-43 / 15 / 1-216

1. 제21차 유네스코 총회 대책(주프랑스대사관)

- 집행위원국 출마 문제
 - 아주지역 3개국 이 이사국 임기만료: 중국(구 중공), 인도, 인도네시아
 - 한국은 당선 전망이 높지 않아 입후보하지 않는 방안이 바람직
- 각종 위원회 출마 문제
 - 9개 위원회 위원국 선출 예정
 - 1개 위원회 정도 당선 전망 있으나, 북한의 입후보 여부를 감안하여 검토

2. 북한책동 저지를 중심으로 한 유네스코 총회 대책(국제기구국)

- 유네스코를 통한 북한 및 반한단체의 책동
 - 유네스코 사무총장 남북한 동시방문 저지, 남북한 문화교류 제의, 유네스코 사무국 친한 인사에 대한 교체 요구, 주한미군 주둔문제 거론, 한국 인권문제 제기 등
- 의제별 북한책동 가능성 및 대처방안
- 여타 정치문제 대처방안
 - 캄보디아(구 캄푸차) 대표권 문제, 이스라엘 규탄 결의안, 남아프리카 규탄 결의안

3. 제21차 유네스코 총회 훈령

- 1980.9.15. 정부대표단에 대한 정부 훈령 결정
- 기본훈령
 - 회의 참가 기본입장, 북한 및 기타 공산권 책동 봉쇄, 대동구권 관계 개선 노력
- 의제별 세부훈령
- 북한책동 대책훈령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총회, 제21차. Belgrade(유고슬라비아), 1980.9.23.-10.28. 전5권 (V.3 국내 인권문제 제기 대비 각국 교섭)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국제기구1

MF번호 2010-44 / 1 / 1-183

1. 제21차 유네스코 총회에 대한 교섭지침

- 북한책동으로 반한단체들이 국내사태 관련 인권문제 제기 동향
 - 반한 결의안 제출 등 북한의 정치책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
- 1980.8.18. 외무부, 전 재외공관에 유네스코 총회 대비 교섭지침을 하달
 - 주재국 및 반한단체에 대한 북한의 접촉 시도 등 제반 동태 및 특이사항 보고
 - 주재국 대표단 규모 및 명단 보고
 - 유네스코 총회 정치문제에 대한 주재국의 관심도 등 보고

460

2.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병합조치 관련 아랍 측의 결의안 동향

- 아랍 측은 유네스코 총회에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병합조치 비난 및 유네스코의 관계동결 요구 결의안 제출 예상
- 1980.9.10. 외무부, 동 결의안의 구체적 내용, 제안국가 및 동조국가 현황, 기타 아랍 측 제기사항 등에 대해 관련 재외공관에 파악 지시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총회, 제21차. Belgrade(유고슬라비아), 1980.9.23.-10.28. 전5권 (V.4 제109-110차 집행이사회)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국제기구1

MF번호 2010-44 / 2 / 1-125

1. 유네스코 집행이사국 선출방안

- 1978.11월 제20차 유네스코 총회 결의로 사무총장이 집행이사국 선출문제를 연구하도록 결정
 - 1979.7.8. 유네스코 사무국, 집행위원회 이사국 선출에 관한 질의서를 회원국에 송부
- 9.18. 유네스코 아주그룹은 7개국으로 소위원회를 구성, 역내 로테이션 원칙 방안 강구
 - 아주그룹 22개국을 3개 소그룹으로 나누는 시안 논의
- 한국 측은 소그룹 안이 로테이션 원칙면에서 가장 적절한 방안이므로 동 안을 지지하기로 결정

2. 제109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1980.4.30.~6.6., 파리)

- 회의 목적: 제21차 유네스코 총회 개최 준비
- 주프랑스대사관 관계관 2인 옵서버 참석
- 주요 토의내용
 - 제21차 총회 잠정의제에 3개 추가 의제 포함, 총회 업무조직안 승인, 총회 의장단 지명
 - 제21차 총회 옵서버 초청(해방단체, 비정부 간 기구, 정부 간 기구)
 - 총회 결의 이행사항 보고, 인권 위반사례에 관한 협약 및 권고위원회 보고 등

3. 제110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1980.9.3.~12., 파리)

- 회의 목적: 제21차 유네스코 총회 개최 준비
- 주프랑스대사관 관계관 옵서버 참석
- 주요 토의내용
 - 1983년 총회를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개최하기로 결정
 - 비정부 간 국제기구 옵서버 참석 안 채택
 - 제21차 총회 의장 및 부의장 지명(부의장 수 32명으로 증가) 등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총회, 제21차. Belgrade(유고슬라비아), 1980.9.23.-10.28. 전5권 (V.5 결과보고)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국제기구1

MF번호 2010-44 / 3 / 1-272

정부는 1980.9.23.~10.28. 유고 벨그라드에서 개최된 제21차 유네스코 총회에 민병기 주프랑스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자

- 151개 회원국 중 147개국 및 140개 국제기구 총 2천여 명
- 북한은 김달국 유네스코 국내위 부위원장 등 17명 참석

462

2. 주요 의제

- 1981~83년 유네스코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 신국제 경제질서, 평화유지, 인권증진, 인종차별금지 등 유네스코 역할에 대한 일반정책 심의
- 회원국에 대한 교육, 과학, 문화 분야 각종 권고안 심의
- 유네스코 사무총장 임명
- 집행이사국, 각종 위원회 위원국 선출

3. 회의 결과

- 대표권 문제: 칠레, 캄보디아(구 캄푸차), 이스라엘,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신임장 접수 결정
- 아랍 점령지역 내 교육문화기관에 대한 유네스코 결의 이행 문제
 - 점령지역 내 교육문화기관에 관한 결의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이스라엘 비난 결의안 채택
- 예루살렘시의 아랍문화재 변조문제
 - 이스라엘이 취한 변조행위를 인정하지 않도록 회원국에 요청하는 결의안 채택
- 1978년 채택된 신국제 정보질서 선언의 충실한 이행 노력
- 인권증진 및 식민주의·인종주의 제거를 위한 유네스코의 평화 노력
- 유네스코에 '국제통신개발계획' 설립 및 35개국으로 정부 간 위원회 구성 결의
- M'Bow 현 유네스코 사무총장을 재임명

4. 북한의 도발 및 한국 측의 대응조치

- 북한은 본회의 및 각위원회에서 12차례에 걸쳐 한국에 대한 도전적인 발언을 함.
- 한국대표단은 북한의 책동을 반박하는 등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함에 따라 금번 회의에서 반한 결의나 성명 등 채택은 없었음.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군비축소교육 세계대회. Paris(프랑스), 1980.6.9.-13.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국제기구

MF번호 2010-44 / 4 / 1-47

유네스코 군비축소교육 세계대회가 1980.6.9.~13. 파리에서 개최됨.

1. 회의 개최 목적

- '제2차 세계군축 10년의 해'를 맞이하여 군축분야 전문가 및 교육자를 초빙, 군축교육에 관한 현황 파악 및 군축 교육의 발전을 도모

2. 참가자

- 주프랑스대사관 관계관 3인이 옵서버로 참석
- 북한은 유네스코대표부 직원 3인이 옵서버로 참석

3. 군비축소교육 세계대회 북한 참석 동향

- 1980.6.11. 교육위원회에서 북한 송호경이 한국 비방 발언
 - 한반도를 외세 간섭 위험지역으로 지칭, 외국 군사기지 철수 주장 및 핵 기지 설치 비난
- 양태규 주프랑스대사관 참사관은 국제협력에 관한 회의에서 회원국을 비난하는 북한의 발언 행태 반박
- 북한 측 발언은 회의 최종문서에 언급되지 않았음.

4. 참고자료

- 북한 측 발언 전문(스페인어)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아시아 뉴스네트워크 창설을 위한 자문회의. New Delhi(인도), 1980.12.15.-18.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국제기구

MF번호 2010-44 / 5 / 1-166

정부는 1980.12.15.~18.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된 유네스코 아시아 뉴스네트워크 창설을 위한 자문회의에 백승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문화홍보부장을 정부대표로 파견함.

1. 참가자

- 19개국 21개 통신사 및 옵서버 등 37명

2. 회의 구성

- 아주지역 공보장관회의의 결정에 따라 설립된 모니터링 그룹, 21개 통신사 대표 그룹, 필름과 TV बैं크 그룹 등 3개 분과로 구성

3. 회의 결과

- 새로운 기구 창설 여부 관련 참가자들 간에 이견이 있었으나, 1961년 유네스코의 도움으로 창설된 OANA(아시아통신기구)의 의장국인 인도네시아가 1977년 콜롬보 결의안과 1979년 쿠알라룸푸르 결의안을 상기시키면서, 새로운 네트워크는 OANA를 주축으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러한 역할을 할 용의가 있다고 하여, 이러한 방향으로 의견이 기울었음.
- OANA의 명칭문제는 유네스코 직원의 조언에 따라 Organization of Asian Pacific News Agency로 고치고 약자는 그대로 OANA로 채택함.
- OANA의 정관 개정은 7인 소위원회를 만들어 일임하기로 했으며, 동 소위원회가 정관을 개정함.
- 차기 OANA 총회는 말레이시아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함.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아시아태평양지역 국내위원회 회의, 제7차. Wellington, 1980.7.6.-12.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국제기구

MF번호 2010-44 / 6 / 1-123

정부는 1980.7.6.~12. 뉴질랜드 웰링턴에서 개최된 제7차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지역 국내위원회 회의에 김규백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자

- 22개국 및 9개 옵서버국, 3개 국제기구 88명
- 북한 수석대표: 강달선 북한 유네스코 국내위원회 사무차장

2. 주요 의제

- 제6차 아시아 및 대양주 유네스코 국내위원회 회의에서 채택된 권고사항 이행조치 검토
- 유네스코 사업계획 및 집행에 대한 국내위원회 참여
- 유네스코 활동 중 지역협력 발전을 위한 아시아 및 대양주 국내위원회의 공헌

3. 회의 결과

- 아시아 및 대양주지역 유네스코 국내위원회는 중기계획(1984~89년) 구조와 내용을 지역 수준에서 검토하기 위해 1981.3월에 자문회의를 개최할 것
- 유네스코 사무총장에게 아시아지역 국내위원회 자문회의가 2년에 한 번씩 개최될 수 있도록 이를 유네스코 사업과 예산에 반영해줄 것을 요청
- 호주에 지역보존센터를 설치하는 제안을 지지하면서 유네스코에 아래 사항을 권고
 - 유네스코는 저명한 박물관 및 미술관 분야 학자나 전문요원이 강의나 훈련 목적으로 아시아 및 대양주지역 국가를 방문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할 것
- 한국의 판소리, 일본의 가부키와 같은 각국 고유의 전통문화유산에 대한 유네스코의 지원을 요청

4. 관찰 및 평가

- 금번 회의를 통해 중국(구 중공)과 소련은 캄보디아(구 캄푸차)의 폴포트 대표권 문제, Co-Rapporteur 선출 문제, 평화연구지역센터 설치 건의안 등 토의 시 격렬하게 대립함.
- 중국 대표는 소련의 패권주의정책이 유네스코의 기본정신인 협력과 평화구축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고 하면서 소련을 비난함.
- 소련은 아주지역에서 확고한 지지국을 6개국으로 늘려 그 영향력을 점차 확대해나가고 있는 추세이고,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선진그룹과 아세안 국가들은 반소련태도를 더욱 강화하고 있음.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통신개발에 관한 정부 간 회의. Paris, 1980.4.14.-21.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국제기구

MF번호 2010-44 / 7 / 1-186

정부는 1980.4.14.~21. 파리에서 개최된 유네스코 주최 통신개발에 관한 정부 간 회의에 김수득 문화공보부 의보담당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자

- 유네스코 회원국 중 122개국에서 대표 497명
- 북한 참가

466

2. 주요 의제

- 통신 분야에 있어서의 문제점, 필요사항, 우선순위 및 통신수단개발에 대한 국제적인 협력

3. 주요 토의내용

- 참가국 122개국 중 시간제약상 76개국의 발표가 있었던바, 주요 의제에 대해 발표된 내용은 아래와 같음.
 - 필요요건 및 우선순위, 불균형과 결핍사항, 국가정책 및 계획, 국제협력, 국제적 통신개발계획
- 6개의 지역그룹은 건의안 작성을 위해 여섯 차례의 모임을 갖고 단일 건의안을 작성하였으며, 동 건의안은 전체회의에서 수정 후 채택됨.

4. 평가

- 통신시설이나 구조 측면에서 선진·개도국 간 격차가 심하고, 소련과 중국(구 중공)을 중심으로 한 공산권 내의 두 초강대국의 대립 및 77그룹 등 복잡한 분위기 때문에 주요 의제에 대한 의견 개진에 있어 구체적인 합의나 견해 일치를 기대하기 어려웠음.
- 금번 회의의 성과는 국제통신개발계획과 국가 간 협의회 설립 건의안에 합의한 것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John Paul II)의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본부 공식방문, 1980.6.2.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국제기구1

MF번호 2010-44 / 8 / 1-56

1.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유네스코 방문 관련 문교부장관 참석 요청

- 외무부는 1980.5.13.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6.2. 유네스코 본부를 방문, 메시지를 발표할 예정임을 알려오면서 이번 기회에 유네스코의 보편성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도록 문교부장관의 동 식전 참석을 요청하였음을 문교부에 통지하고 이에 대한 문교부의 의견을 5.15.까지 외무부에 알려줄 것을 요청함.
- 문교부는 5.14. 문교부의 형편상 김옥길 문교부장관의 참석이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현지 대사가 상황판단하여 참석할 필요가 있으면 참석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문교부에 회신하여 줄 것을 요청함.

2. 교황, 유네스코 본부 공식방문

- 교황은 1980.6.2. 오전 제109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 회기 중 유네스코를 공식방문함.
- 상기 기회에 각 회원국의 문교부장관, 집행위원, 상주대표 및 사무국 고급간부들이 교황에게 소개됨.

3. 교황의 유네스코 방문 시 연설 요지

- 핵전쟁이 인류에게 초래할 위험성을 경고
- 세계평화를 위한 유네스코의 아래 각 분야별 역할 강조
 - 교육: 지식의 소유에만 머무르지 말고, 인간이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어야 함.
 - 과학: 과학의 발전이 비과학적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아야 하며, 세계평화를 위하여 이용되어야 함.
 - 문화: 정치적 이익이나 경제적 이익의 희생물이 되지 않아야 하며, 대중매체로서 이용되어야 함.

UNESCO(유엔교육학문화기구) 교육에 관한 지역자문회의. 평양, 1980.5.12.-17.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국제기구1

MF번호 2010-44 / 9 / 1-47

1980.5.12.~17. 평양에서 유네스코 교육에 관한 지역자문회의가 개최됨.

1. 회의개최 배경

- 경위
 - 1979.5월 북한, 이동혁 유네스코 북한 상주대표 명의로 회의 개최 신청
 - 1979.8월 유네스코 사무국, 상기 신청을 수락하고 회의 개최에 따른 유네스코·북한 간 합의서 체결
- 근거
 - 제20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승인된 유네스코 사업계획에 의거하여 정규 및 비정규 교육의 연결 문제를 토의하기 위하여 아시아 및 아프리카 지역에서 각각 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함.

2. 참가국

- 중국(구 중공), 인도, 스리랑카, 태국, 인도네시아, 괌 등 6개국
- 당초 11개국을 초청하였으나, 일본, 소련, 베트남, 필리핀 등 불참

3. 주프랑스대사관은 동 회의 관련 보고서를 입수, 1980.11.12. 외무부에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보고함.

- 자문회의 의장에 제21차 유네스코 총회 북한 측 교체수석대표였던 박경손이 선출
- 북한 유근손은 환영사에서 북한이 11년의 의무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860만 명의 학생이 국비로 교육받고 있음을 강조
- 북한 박경손은 북한의 공장대학과 문맹퇴치운동을 소개
- 안원준 등 6명의 북한 측 옵서버가 동 자문회의에 참석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북한대표부 동향

생산연도 1977-1980

생 산 과 국제기구1

MF번호 2010-44 / 10 / 1-56

1. 유네스코 북한대표부 홍보활동

- 유네스코 북한대표부는 1980.1.12. 평양발 ATCC 통신 내용을 홍보물로 유네스코 사무국에 배포
- 동 홍보물은 1.11. 김일성 북한 주석이 김종필, 김영삼 총재 등에게 서한을 발송한 사실을 알리고, 이종욱 북한 수상의 신현확 국무총리 앞 서한 내용을 게재함.

2. 국제기구 간부의 북한 방문 초청 문제

- 1980.5.22. 주프랑스대사관, 아래 요지의 정보를 외무부에 보고
- Najman 유네스코 대외협력부서 사무차장보의 1980.6월 초 중국(구 중공) 방문 관련, 북한 측은 동인에 대한 평양 방문을 요청하여 오던 중 5.20. 유네스코 북한 국내위원장 및 사무총장의 평양부재 이유를 들어 동인의 평양 방문 초청을 연기하였다 함.
- 외무부 조치
- 북한의 금번 초청 연기는 최근 한국의 광주사태 관련 북한의 내부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요 국제기구가 소재하고 있는 관계공관에 5.20.~6월 중 국제기구 간부의 북한 방문계획 유무 및 동 계획의 시행 혹은 취소 사례 조사를 지시함.
- 조사 결과
- 각 공관의 보고에 비추어 최근 한국사태와 관련하여 북한 측이 국제기구 간부 방문을 취소한 것으로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관계공관을 통해 계속 조사 보고하도록 함.

3. 산마리노 북한 수교 저지 문제

- 주이탈리아대사 내외는 1980.7.2. 로마 주재 Giacomini 산마리노대사 내외의 만찬 초청을 받고 제반 현안과 협력관계를 협의함.
- Giacomini 대사는 6.30. 그간 산마리노 관계관들과 접촉한 결과, 현재까지는 동국의 한국에 대한 기존 방침에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함.
- 대북한 승인과 관계수립 문제는 언제까지 막을 수 있는지는 말하기 어려우나, 본인은 한국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국이 북한과 먼저 수교하는 일이 없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함.
- 주이탈리아대사는 Giacomini 대사가 산마리노 사회당 당수이면서 좌익인사로 알려져 있으며, 외국에 주재하는 산마리노의 유일한 대사인 점을 고려할 때, 북한의 침투저지와 한국과의 협력 증진을 위해 동인의 한국 방문 초청을 외무부에 건의함.

공업소유권 보호를 위한 파리동맹 총회. 제5차. Geneva, 1980.9.22.-26.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국제기구

MF번호 2010-44 / 11 / 1-172

정부는 1980.9.22.~26.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5차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동맹 총회에 김시형 주제네바대표부 상무관을 정부대표로 파견함.

1. 개최 경위

- 제1차 파리협약 개정회의(1980.2.4.~3.4.)에서 1981년 개최 예정인 제2차 회의 준비를 위하여 금차 특별회의 개최를 결정함.

2. 주요 의제

- 회의 기간
- 개최 장소
- 예산 문제
- 개최 일자
- 올림픽 심볼에 관한 문제

3. 회의 결과

- 동 회의는 1980.9.26. 전체회의를 속개, 아래와 같이 합의함.
 - 개도국 출신 사무차장의 수를 현재 1인에서 3인으로 증가시키는 문제를 1981년 중 검토 결정함.
 - 사무차장 선출시 각 회원국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이루어지도록 사무총장은 사전에 각 회원국에게 서면통보하고 협의하도록 함.
- PCT(특허협력조약, Patent Cooperation Treaty) 동맹총회 등 기타 WIPO(지식재산권기구) 산하 기구 회의에서는 대부분 사무국이 준비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최종보고서를 채택하였으며, 차기회의 일정은 1981.11.16.~24.로 결정하고 금번 회의를 폐회함.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 공업소유권에 관한 개발협력 상설위원회, 제7차. Geneva, 1980.4.28.-5.1.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국제기구1

MF번호 2010-44 / 12 / 1-148

정부는 1980.4.28.~5.1.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7차 WIPO(지식재산권기구) 공업소유권에 관한 개발협력상설위원회 회의에 금진호 특허청 항고심판소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주요 의제

- 개도국에 대한 공업소유권 및 훈련
- 개도국에서의 공업소유권 분야 법제 활동
- 공업소유권제도 발전을 위한 정부기관 설립
- 개도국에서의 공업소유권제도의 효과적 이용
- 개도국에서 보호되는 외국기술의 취득 등

2. 회의 결과

- Direction in the field of Trademarks 관련 아래 사항에 대하여 각국은 문서로 의견을 제출하기로 함.
 - 개도국의 경제발전에 있어서의 상표의 역할
 - 소비자보호면에서의 공업소유권 문제
- 개도국 간의 협력
 - 한국 대표는 현재 WIPO의 협력으로 진행하고 있는 특허업무 현대화가 완료되면 다른 개도국에 대하여 전문가의 훈련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발언하여 좋은 반응을 얻음.
- 발명심사를 위한 국제협력제도 문제
 - 개도국에 극히 유용한 것으로서 철저히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이 지배적 의견

3. 대표단 활동 내용

- 한국 수석대표는 Pfarrer WIPO 사무차장을 방문, 현재 WIPO의 적극 협력으로 추진하고 있는 특허청 현대화 5개년 계획과 동 계획을 마무리 짓기 위하여 금년 6월 동인의 방한 계획에 대한 일정 등을 협의함.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 북한관계

생산연도 1980-1981

생 산 과 국제기구1

MF번호 2010-44 / 13 / 1-55

1. 북한의 파리협약 등 가입서

- 북한은 1980.3.7. 공업소유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가입서를 WIPO(지식재산권기구) 사무국에 기탁한바, 분담금은 Class VII(연간 약 1만 4천 스위스프랑)을 선택함.
- 북한은 상기 협약 가입 외에도 마드리드협약에도 가입서를 기탁하고, 현재 PCT(특허협력조약, Patent Cooperation Treaty)에도 가입하기 위하여 국내법 제정을 서두르고 있으며 특허법은 소련법을 모델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472

2. Felix Sviridov WIPO 사무차장, 평양 방문(1980.4월)

- 방문 기간: 약 10일간(4.16. 제네바 귀임)
- 방문 목적
 - Patent Documentation에 관한 세미나 참석
 - 북한의 WIPO 기구 가입, 즉 파리협약, 마드리드협약, PCT 가입사실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북한 국내법 제정에 소련법을 모델로 함에 따른 기술적 자문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짐.
- 북한의 WIPO 관계기구에 대한 상기 동향은 아래 이유를 근거로 소련의 압력에 의한 것으로 분석됨.
 - 소련법을 모델로 하는 점: 소련 특허관계법은 서구의 기술도입 촉진을 위하여 종래의 국가만이 점용하는 특허제도를 개정, 외국인에게는 서구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Patent를 인정하는 반면, 국내적으로 내국인 출원자에게는 Inventors Certificate만 인정하고 권리는 국가소유로 하는 이른바 이원제도를 채택하고 있음. 동 제도는 흐루쇼프 수상 등장 이후 개정되었다 함.
 - 소련인 WIPO 사무차장의 1979.10월 및 1980.4월 연이은 평양 방문에 따른 결과로 풀이됨. 소련법을 모델로 하는 국가는 체코, 불가리아, 동독으로 알려짐.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이사회, 제78차. Rome, 1980.11.24.-12.5.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국제기구1

MF번호 2010-44 / 14 / 1-353

정부는 1980.11.24.~12.5. 로마에서 개최된 제78차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이사회에 이동배 주이탈리아대사관 농무관 및 서정옥 농무관을 옵서버대표로 파견함.

1. 참가자

- 48개 이사국 대표 189명, 51개 비이사회 회원국 대표 100명 등 369명

2. 주요 의제

- 1980년 세계식량농업 현황, 산하위원회 보고
- FAO 사업계획, 재정 및 행정 계획, 기타 기구 운영 문제

3. 회의 결과

- 금번 회의는 총회가 없는 해의 이사회답게 열성적으로 진행되어 FAO 운영정책, 규정 및 문제 등이 소상히 규명된바, 옵서버인 한국 대표에게는 FAO 업무 현황 및 정책 방향의 이해에 큰 도움이 됨.
- 동 회의에서 통과된 직원(전문 및 일반) 보수규정에 대해서는 FAO 직원조합에서 상당한 로비활동이 있었음.
- 이사회 독립의장은 한국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표명하면서, 한국이 이사회의 정규위원으로 선출 되어 회의 활동에 적극 참가하게 되기를 바란다면, 그럴 경우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 표시가 있었음.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아시아태평양지역 총회, 제15차. New Delhi(인도), 1980.3.5.-13.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국제기구1

MF번호 2010-44 / 15 / 1-186

정부는 1980.3.5.~13.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된 제15차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아시아태평양 지역 총회에 김주호 농수산부 기획관리실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국

- 26개 회원국 중 22개국
 - 북한 참가
- 옵서버: 네덜란드, 교황청,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 등

474

2. 주요 의제

- 세계식량 확보
- WCARRD(세계농촌개발 및 농지개혁회의, 1979년) 권고사항 이행
- 2000년대 농업계획
- 역내 미국증산

3. 국별 기조연설 요지

- 개도국
 - 식량, 특히 미국증산과 식량비축제도의 필요성 강조
 - 소농을 위한 농촌종합개발의 당위성 언급
 - TCDC(개도국간경제기술협력) 및 ECDC(개도국간경제협력위원회) 강조
- 선진국
 - 미국증산 및 소농육성에 대하여는 개도국가군과 동일 의견
 - 미국의 경우, 충분한 식량생산 및 공급 공약
 - FAO의 활동 강화 강조
- 공산국
 - 개도국 입장과 유사하였으며, 종전과는 달리 정치적인 발언은 없었음.

4. 회의 결과

- 아시아태평양지역 농업 발전방안 관련 아래 4개 결의문 채택
 - 역내 국가 간 수산자원계획
 - 세계식량안보
 - 대아시아태평양지역 국제지원을 위한 재원
 - 화학비료 투자 증대

FAO(유엔식량농업기구)/CCP(상품문제위원회) 정부 간 연구단 회의. Rome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국제기구1

MF번호 2010-45 / 1 / 1-378

1980년 중 로마에서 개최된 FAO(유엔식량농업기구)/CCP(상품문제위원회) 정부 간 연구단 회의 관련 내용임.

1. 제20차 곡물연구단 회의(1980.2.25.~29.)

- 주요 의제
 - 세계곡물사정 현황 및 단기 전망 검토
 - 세계곡물사정 중기 전망
 - 관련 국제기구 활동 상황
 - 향후 사업계획 검토

2. 제23차 미국연구단 회의(1980.3.17.~21.)

- 회의 목적
 - 세계미국 수급, 교역, 가격 현황 및 장단기 전망 분석, 평가
 - 미국생산, 교역증진 및 세계식량안보를 위한 국제협력
 - 각국의 미국정책제도 분석, 검토 및 개선책 강구
 - 세계미국사정 완화를 위한 조기경보체제 구축 및 지역단위 미국협력체제 구축 지원
- 회의 결과
 - 여러 국가가 자국의 미국정책에 관한 기초연설 실시
 - 전통적인 쌀 수출국인 미국, 파키스탄 및 태국 대표들이 일본의 Rice Export Subsidy 관련 최근 일부 국가(일본 지칭)가 자국 내 쌀 구매가격의 1/3선으로 수출하여 세계미국시장을 교란하고 있다고 하면서 통렬히 비판

3. 제14차 유실유지연구단 회의(1980.4.9.~15.)

- 정부 훈령
 - 한국은 식용유지 수요가 급증하고 수입의존도가 심화되는 추세이므로 국제식용유지 및 유지자원의 국가별 생산 및 가격 동향을 면밀히 파악, 보고할 것
 - 축산진흥시책 추진에 따라 사료 수요도 계속 증가하고 있으므로 식물성 박류의 생산 및 가격 동향을 파악, 보고할 것

FAO(유엔식량농업기구)/CCP(상품문제위원회) 정부 간 육류연구단 회의, 제9차. Rome, 1980.12.8.-12.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국제기구1

MF번호 2010-45 / 2 / 1-238

정부는 1980.12.8.~12. 로마에서 개최된 제9차 FAO(유엔식량농업기구)/CCP(상품문제위원회) 정부 간 육류연구단 회의에 이동배 주이탈리아대사관 농무관 및 서정욱 주이탈리아대사관 농무관보를 정부대표로 파견함.

1. 참가자

- 47개 회원국 대표 및 11개 국제기구 대표 등 103명

476

2. 정부 훈령

- 실질토의에 적극 참가하고 타국 대표단 및 국제기구 요원 등과 수시 접촉, 상호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이들과의 친선을 도모하고 의제별 세부훈령에 따라 정부의 입장과 정책을 충분히 반영하여 국익증진과 국위선양에 최대의 노력을 경주할 것
- 가축 및 육류에 관한 회원국 및 관련 국제기구의 정책과 동향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동 분야에서의 국제교역에 관한 정보도 최대한 수집·검토함으로써 한국의 가축 및 육류정책 수립에 기여하도록 할 것

3. 주요 의제

- 현 시장 상황 및 단기 전망
- 가축 및 육류에 관한 최근 국제활동
- 가축 분야에 있어서의 보호주의
- 가축 및 육류 분야에 있어서 국제협력 유도 지표에 관한 후속조치
- 국제 육류개발계획
- 기타 육류의 생산소비 및 교역
- 연구단 사업 검토
- 차기회의 개최지 및 일정 등

FAO(유엔식량농업기구)/COFO(산림위원회) 회의, 제5차. Rome, 1980.5.26.-30.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국제기구1

MF번호 2010-45 / 3 / 1-174

정부는 1980.5.26.~30. 로마에서 개최된 제5차 FAO(유엔식량농업기구)/COFO(산림위원회) 회의에 장일훈 산림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파견 목적

- 임업 및 산림 분야에서의 국제협력 도모
- 한국의 임업 분야 발전상 소개
- 임업 및 산림에 관한 각종 기술정보 수집을 통한 관련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기여

2. 주요 의제

- 목재와 에너지 정책
- 1980년대 임업 경영방안
- 제4차 위원회 권고사항 추진 실적보고
- FAO 내 연관 집행부서의 의사결정
- 지역산림위원회 및 FAO 산하기구 건의사항
- 현지 사업계획 검토
- FAO 중기목표 및 향후 사업계획 제안

3. 회의 결과

- 동 회의는 사무총장 환영사 및 모로코 농업 및 농촌개혁 장관의 개회연설로 시작됨.
- FAO 사무총장은 환영사에서 이례적으로 한국의 11,000개 연료림 조성사업 실적을 찬양하고, 아시아 및 아프리카 각국이 여사한 개발방식을 도입, 적용할 것을 희망한다고 말함으로써 각국 대표의 관심을 끌었는바, 사무총장 연설에 여사한 특정국 업적을 찬양한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경이적이라는 각 대표의 의견표시가 있었음.
- 북한은 본회의에 로마 주재 FAO 상주대표 2인을 파견함.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식량농업 식량안보에 관한 비동맹 전문가 회의. Belgrade(유고슬라비아), 1980.7.7.-9.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국제기구1

MF번호 2010-45 / 4 / 1-66

1980.7.7.~9. 유고슬라비아 베오그라드에서 개최된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식량농업 식량안보에 관한 비동맹 전문가 회의 관련 자료임.

- Summary of the Report of the First Meeting of Coordinators of Non-Aligned Countries for Food and Agriculture, July 7-9, 1980(22 July 1980)
- Possible Cooperative Actions among Non-Aligned Countries to Establish an Effective Food Security System(December 1980)

FAO(유엔식량농업기구)/TCP(기술협력계획) 북한 농업 견학단 태국 및 이탈리아 방문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국제기구1

MF번호 2010-45 / 5 / 1-55

1. 북한 미곡생산기술 견학단, 필리핀 및 태국 방문 계획

- 경위
 - 제15차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지역 총회(1980.3.5.~13.) 기간 중 북한 수석대표가 FAO 사무총장에게 신청, FAO 측이 이에 관해 실무계획안을 작성
- FAO 실무안 내용
 - 북한 미곡경작기술 견학단 6명, 1980.6월 중 필리핀(2주간) 및 태국(1주간) 방문
 - 소요 경비: FAO 부담(3만 8천 달러)

2. 북한 농산물손모방지 견학단, 이탈리아 방문 계획

- 경위
 - 1980.3월 북한 FAO 대표부가 FAO 측에 신청
 - FAO 입장: FAO/TCP(기술협력계획) 사업계획의 기술성 및 북한의 FAO 가입 후 최초 신청임을 고려하여 동 신청 거부 곤란
- 계획 내용
 - 북한 농산물 손모방지 견학단 6명, 1980.6월 중 이탈리아(2주간) 방문
 - 소요 경비: FAO 부담(4만 1천 달러 지원 예정)

3. 북한 미곡수확기술 견학단, 이탈리아 방문(1980.7.18.~8.3.)

- 방문단: 성진봉 농업과학협회 부장 외 7명
- 주요 일정
 - FAO 농업부 운영국 담당관 방문
 - 미곡주산지 베르첼리 방문(이탈리아 국립 미곡공사 측 안내)

4. 북한 미곡생산기술 견학단, 태국 방문(1980.12.22.~27.)

- 주요 일정
 - 미곡연구소, 옥수수농장, 감자농장 및 벼농장 시찰 등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사업계획조사단 북한 방문, 1980.8.27.-9.16.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국제기구1

MF번호 2010-45 / 6 / 1-165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사업계획조사단이 1980.8.27.~9.16. 북한을 방문함.

1. 조사단 구성

- 단장: M. L. Dewan FAO 현장사업계획개발부 아태지역국장
- 축산, 식량손모방지, 산림, 수산 전문가 등 담당관 5명

2. 주요 일정

- 대동강 저수지 기양관개수리시설 방문, 원산농업대학 방문
- 청산리협동농장, 강서국영 돼지농장, 룡성 메추리농장 방문
- 삼일산 국영농장, 만경대 닭공장, 사료공장 방문 등

3. 주이탈리아대사관, 1980.10.22. 동 조사단의 북한 방문 결과보고서 제1차 시안 송부

- 동 보고서는 제1차 시안으로서 조사단 전체 협의를 거쳐 확정된 뒤 FAO 사무총장의 승인을 받아 북한에 송부, 동의를 득한 후 공포할 예정임.
- 동 보고서 내용
 - 방북 개요
 - 북한의 폐쇄성과 자료의 빈약성을 지적, 국제기구와의 협력 필요성 및 이를 권유하려는 방향에서 작성된 보고서임.
 - 북한의 농업수준을 칭찬하면서 기술원조의 필요성 역설, 임업수산업 분야는 낙후되어 있으므로 기술원조가 필요함.
 - 북한 소개, 행정구조, 농업 분야 정부기구, 농림축수산 실적, 북한의 7개년 경제계획 내용 등
 - FAO의 대북한 권고 및 지원사업 계획
 - 옥수수 품종개량 및 증산계획
 - 종자저장 개선 및 가공계획
 - 사찰여행 및 쌀 경작 기술습득
 - 양계 증산, 축우 증산, 간석지 개간, 과수 증산계획, 수산업 현대화 등

FAO(유엔식량농업기구)/APRACA(아시아태평양지역농업 신용연합회) 총회, 제3차. Dacca(방글라데시), 1980.12.9.-12.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국제기구

MF번호 2010-45 / 7 / 1-93

정부는 1980.12.9.~12. 방글라데시 다카에서 개최된 제3차 FAO(유엔식량농업기구)/APRACA(아시아태평양지역 농업신용연합회) 총회에 신정수 농협중앙회 부회장을 정부대표로 파견함.

1. 회의 목적

- 회원국 간의 기술협력 증진
- 회원국 간의 농업개발 관련 훈련과 경험 및 정보 교환

2. 참가국

- 한국, 방글라데시, 아프가니스탄, 피지, 인도, 인도네시아, 네팔, 필리핀, 스리랑카, 태국,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사모아(구 서사모아) 등 13개국
 - 회원국 중 이란, 쿡제도, 솔로몬제도 3개국 불참

3. 회의 결과

- 방글라데시 국책은행 총재의 환영사 및 농업성 장관의 개회사
- Small Farmer Credit Programme에 관한 각국의 경험 및 사례에 대한 설명과 토론
- 금년 말 임기가 종료되는 의장단과 이사국 선출
 - 의장국: 방글라데시
 - 부의장국: 필리핀
 - 이사국: 한국, 방글라데시, 인도, 필리핀, 스리랑카
- 제4차 총회는 필리핀에서 개최하기로 결정
- 한국대표단은 한국의 농업신용제도 개발과 새마을운동에 대한 설명을 통해 참가국들의 관심을 끌었음.

FAO(유엔식량농업기구)/CECAF(중동대서양수산물위원회) 어업통계작업단 회의, 제1차. Dakar(세네갈), 1980.10.13.-17.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국제기구1

MF번호 2010-45 / 8 / 1-87

제1차 FAO(유엔식량농업기구)/CECAF(중동대서양수산물위원회) 어업통계작업단 회의가 1980.10.13.~17. 세네갈 다카르에서 개최됨.

1. 참가국

- 모리타니, 나이지리아, 노르웨이 등 CECAF 회원국 23개국
- 포르투갈 등 옵서버
- 김상수 주라스팔마스총영사관 수산관 참석

482

2. 주요 의제

- 제1차 어업통계 실무반회의
 - 의제 채택, 예비회의 보고서 검토, 경제수역의 어업통계 수집 및 교환문제
- 제5차 자원통계 실무반회의
 - 의제 채택, 어족별 평가계획에 대한 예비회의 결정의제 검토, 차기회의에 대비한 조사 등

3. 회의 결과

- 동 회의는 작업반회의라기 보다 통계 관계 총회의 인상을 주면서도 연안국의 어업 이익 확보를 위해 열기를 띠고 있음.
- 의장에 나이지리아, 부의장에 코트디부아르 대표 선출
- CECAF PROJECT에서 작성한 라스팔마스기지 트롤언선에 대한 조사보고서 검토
 - 스페인, 일본, 소련 등 주요 어업국이 제외되었으므로 이는 부분적 평가에 불과
 - 한국어선 전체가 모로코어장에서만 조업한 것처럼 작성된 것은 사실과 다름을 지적

FAO(유엔식량농업기구)/IOFC(인도양수산위원회) 회의, 제6차. Perth(호주), 1980.2.25.-29.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국제기구1

MF번호 2010-45 / 9 / 1-84

정부는 호주 퍼스에서 개최된 제6차 IOFC(인도양수산위원회)/IPFC(인도·태평양수산위원회) 참치관리위원회 합동회의 및 제6차 FAO(유엔식량농업기구)/IOFC 회의에 김균현 수산청 어업심의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제6차 IOFC/IPFC 참치관리위 합동회의(1980.2.20.~22.)

- 참가국
 - 호주, 프랑스,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케냐, 모리셔스, 스리랑카, 탄자니아, 미국, 영국, 태국 등 13개 회원국
- 주요 의제
 - 참치 자원 및 어획 현황 검토
 - 참치 관리 및 개발 방안
 - 각종 통계 편집 등 기초자료의 개선
 - 국제협력을 위한 제도적, 재정적 정비 등
- 회의 결과
 - 차기 제7차 회의를 1년 이내에 개최하기로 합의함.
 - 참치자원관리의 시급성을 강조함.
 - FAO가 국제 참치 관계기구의 대표 회의를 주선할 것을 제의함.

2. 제6차 FAO/IOFC 회의(1980.2.25.~29.)

- 참가국
 - 한국, 호주, 바레인, 프랑스, 그리스,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케냐, 몰디브, 모리셔스, 세이셸, 스페인, 스리랑카, 스웨덴, 탄자니아, 태국, 영국, 미국 등 37개국 회원국 중 19개국
 - 서독 등 옵서버 1개국
- 주요 의제
 - 자원관리 문제
 - 수산개발 문제
 - IOFC 및 보조기관의 장래 활동 방향 등



- 회의 결과

- 차기 제7차 회의를 1982년 1/4분기 중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함.
- 200해리 경제수역설정에 따른 감시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FAO 주관 작업반 전문가회의를 개최하도록 함.
- 수산자원 평가 및 이용의 정보 수집을 위해 각국은 정확한 수산통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함.

FAO(유엔식량농업기구)/IPC(국제포플라위원회) 회의, 제16차. Izmir(터키), 1980.11.4.-12.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국제기구1

MF번호 2010-45 / 10 / 1-228

정부는 1980.11.4.~12. 튀르키예 이즈미르에서 개최된 제16차 FAO(유엔식량농업기구)/IPC(국제포플라위원회) 회의에 현신규 국립임목육종연구소 박사를 정부대표로 파견함.

1. 참가자

- 32개 회원국 중 11개국 대표 68명

2. 주요 의제

- 포플라의 육종에 관한 경제적, 사회적, 기술적 문제 토의

3. 회의 일정

- 1980.11.4. 육종에 관한 특별소위원회와 병해에 관한 분과위 합동회의, 포플라 해충에 관한 분과회의
- 1980.11.5. 포플라 명명과 등록제도에 관한 특별위원회회의, 제30차 집행위원회회의
- 1980.11.6. 개회식, 실무회의
- 1980.11.7. 실무회의, 신임 집행위원의 회합 등

4. 임원 선출

- 의장단 선출
 - 의장: 튀르키예 대표
 - 부의장: 캐나다 대표, 중국(구 중공) 대표
- 1981~84년 임기의 집행위원 선출
 - 한국 대표 현신규 박사, 집행위원에 재선
 - 피선거국: 캐나다, 한국, 네덜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튀르키예, 미국, 유고, 헝가리

5. 한국 대표 활동사항

- 의제에 한국 및 캐나다 대표의 제안으로 재생 에너지를 위한 Biomass 생산 건을 추가,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한국 대표가 소위원회 일원으로 피선됨.

FAO(유엔식량농업기구)/IPFC(인도태평양양수산위원회) 회의, 제19차. 교토(일본), 1980.5.21.-30.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국제기구1

MF번호 2010-45 / 11 / 1-71

정부는 1980.5.21.~30.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제19차 FAO(유엔식량농업기구)/IPFC(인도태평양양수산위원회) 회의에 김균현 수산청 국제어업심의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국

- 19개 회원국 중 한국, 호주, 방글라데시, 프랑스, 인도네시아, 일본 등 14개국
- 14개 옵서버국 및 6개 국제기구

486

2. 주요 의제

- 영세어업개발에 관한 심포지엄
- 수산개발 및 관리
- 참치 관리 및 기타 자원 관리
- 차기회의 시기, 장소, 의제 결정

3. 회의 결과

- 참치 관리를 위한 사무국을 스리랑카에 설치할 것을 FAO에 권고하기로 결정함.
- 1982.10월경 개최 예정인 차기 제20차 회의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하기로 함.

FAO(유엔식량농업기구)/WECAFC(중서대서양수산위원회) 회의, 제3차. Havana(쿠바), 1980.11.18.-22.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국제기구1

MF번호 2010-45 / 12 / 1-185

정부는 1980.11.18.~22. 쿠바 하바나에서 개최된 제3차 FAO(유엔식량농업기구)/WECAFC(중서대서양수산위원회) 회의에 김한모 주미국대사관 수산관을 정부대표로 파견함.

1. 참가국

- 24개 회원국 중 16개국
- 4개 국제기구가 옵서버로 참여

2. 주요 의제

- 새우자원 관련, 닭새우, 잡어, 공유자원, 연안양식, 수산관리 및 개발에 관한 통계 및 자료
- 장단기 어업개발 문제, 경제권 수역 내의 개발관계에 있어서 FAO 종합지원계획 관련 보고
- 보조기구를 포함한 WECAFC의 장래
- WECAFC의 사업수행에 대한 집행위원회 제2차 회의 보고서
- 기술협력 및 공동원조 등

3. 회의 결과

- 자원관리 문제
 - WECAFC지역 새우 어획 통제 여부 검토 건의
 - 혼획 어종 관련 망목규격 검토 제의
 - 혼획되는 잡어의 회복 및 이용 문제에 관한 전문가회의를 1981.7월 하바나에서 개최하기로 합의
- WECAFC 관할수역 연장 개정
 - 관할수역을 서경 137도까지 연장하자는 제2차 회의 시 제안을 쿠바 측이 자진 철회함.
- 차기회의 개최지 및 시기
 - 1982년 하반기 제4차 회의를 니카라과 마나과에서 개최하기로 함.

FAO(유엔식량농업기구) 동남아·태평양지역 식물보호위원회 회의, 제12차. Chiangmai(태국), 1980.10.27.-11.3.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국제기구

MF번호 2010-45 / 13 / 1-169

정부는 1980.10.27.~11.3. 태국 치앙마이에서 개최된 제12차 FAO(유엔식량농업기구) 동남아·태평양지역 식물보호위원회 회의에 하재규 국립식물검역소장 농림부기감을 정부대표로 파견함.

1. 참가국

- 호주, 방글라데시, 인도, 인도네시아 등 13개 회원국
- 한국, 중국(구 중공) 등 2개 옵서버국

488

2. 주요 의제

- 식물보호협정 및 위원회 권고이행 상황
- 식물수입 등에 있어서 검역 문제와 고립지역 특수식물보호 및 검역 문제
- 기타 식물보호 전략 및 기술협력 문제 등

3. 회의 결과

- 식물의 병해충과 잡초의 방제는 각 회원국의 정부차원에서 정보의 교환, 기술훈련, 방제법의 개발 및 방제계획 등을 수립하여 강력히 추진해야 함.
- 농작물의 병충해 발생 관련 일부 회원국은 기술과 장비 면에서 긴급방제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들 국가들로부터 긴급지원 요청 발생 시 선진회원국은 장비와 기술을 지원해야 함.
- 지역 내 회원국은 살충제의 종류와 사용방법을 협의하기로 되어 있는바, 이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회원국 중 1개국을 선정하여 살충제의 조사 평가, 등록 등에 대한 기술자문을 하도록 FAO에 요청하기로 함.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아시아·극동지역 농업통계위원회, 제8차. Kathmandu(네팔), 1980.10.26.-31.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국제기구

MF번호 2010-45 / 14 / 1-111

정부는 1980.10.26.~31. 네팔 카트만두에서 개최된 제8차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아시아·극동지역 농업통계위원회 회의에 신윤 농수산부 농산경제통계담당관실 서기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국

- 13개 회원국, 5개 유엔 및 전문기구, 8개 정부 간 기구

2. 주요 의제

- 아태지역에 있어서 FAO의 농업통계 활동 보고
- 아태지역의 식량농업통계 현황
- 식량소비조사 계획
- 수확 전 식량 감모조사
- 부락통계조사

3. 회의 결과

- 네팔 수상은 부락통계, 식량소비조사, 수확예측, 조기경보제도의 확립이 국가개발 및 지역개발계획 수립에 필수적임을 지적하고, 동 자료의 모집방법 개선과 자료의 적기 공급의 중요성을 강조함.
- 주네팔 FAO대표는 1979.6월에 개최된 세계농지개혁 및 농촌개발회의에서 농촌개발 계획의 추진과 그 평가에 이용될 소득, 소비 및 생활여건 등에 대한 각종 자료 모집을 건의하였다고 보고함.
- 아태지역의 식량농업통계 현황 관련 각국은 통계제도 개선, 조사방법 개선 계획, 농업센서스 실시 현황, 교육훈련 자료처리 전산화 및 보고서 발간의 중요성을 공통적으로 강조함.

IFAD(국제농업개발기금) 총회, 제3차. Rome, 1980.1.15.-18.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국제기구1

MF번호 2010-45 / 15 / 1-187

정부는 1980.1.15.~18.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된 제3차 IFAD(국제농업개발기금) 총회에 안광호 주이탈리아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국

- 131개 회원국 중 103개국, 2개 비회원국
- 11개 유엔전문기구, 6개 정부 간 기구 및 3개 비정부 간 기구

2. 주요 의제

- 기금재원 재조성
- 중국(구 중공)의 기금회원국 가입
- 카테고리 3 이사국 선출 문제
- 비자원 우선국가에 대한 IFAD 차관공여 억제 요구

4. 회의 결과

- 금차 총회의 최대 관심사는 IFAD의 1981~83년 융자재원을 어느 수준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조성하느냐의 문제인바, 장시간의 절충과 협의 끝에 아래 내용에 합의하는 결의문을 총회에서 승인, 통과시키는데 성공함.
 - 재원조성의 필요 인정
 - 1981~83년 재원규모를 1978~80년 최초 3년간 운용규모를 실질적으로 상회하는 규모로 할 것
- 중국, 몰디브, 그레나다 등 5개 신규회원국의 가입을 승인함.
- 카테고리 3 라틴아메리카지역 이사국 선출과정에서 비밀투표 결과 아르헨티나(29표)가 선출됨.

IFAD(국제농업개발기금) 총회, 제4차. Rome, 1980.12.8.-11.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국제기구1

MF번호 2010-46 / 1 / 1-229

정부는 1980.12.8.~11. 로마에서 개최된 제4차 IFAD(국제농업개발기금) 총회에 안광호 주이탈리아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국

- 107개 회원국, 2개 옵서버국, 12개 유엔기구, 8개 정부 간 기구 및 2개 비정부 간 기구

2. 주요 의제

- 신회원국 가입
- 집행이사회 이사국 및 교체이사국 선출
- 기금 재조성
- 1981년도 사업 및 예산
- IFAD 상주 본부 소재지 문제

3. 회의 결과

- 앙골라, 적도기니, 솔로몬제도, 짐바브웨 가입으로 총 135개 회원국이 됨.
- 한국이 1981~83년 임기의 IFAD 교체이사국으로 선출됨.
- 1981~83년간 IFAD 기금 운영규모를 15억 달러로 합의함.
- IFAD 본부 유치 문제는 1982.1월 개최 예정인 차기회의까지 유보하기로 함.

4. 건의사항

- 한국의 이사국 피선에 따른 실익 추구 강구
 - 집행이사회 이사국 진출 관련 차관도입 추진
- IFAD 기여금 예산 확보, 기여금액 통보 및 불입조치
 - 현재 1981~83년 한국은 29만 달러의 기여금을 부담하기로 결정
 - 향후 기여금액 통보 및 불입조치 예정

WHO(세계보건기구) 총회, 제33차. Geneva(스위스), 1980.5.5.-23. 전2권 (V.1 사전준비)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국제기구

MF번호 2010-46 / 2 / 1-280

1980.5.5.~23.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33차 WHO(세계보건기구) 총회 관련 준비 내용임.

1. 대표단 임명

- 수석대표: 진익중 보건사회부장관
- 파견경비: 24,033달러

492

2. 정부 훈령

- 대표단은 전 회의기간을 통하여 실질문제 토의에 적극 참여하여 금차 회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 지는데 기여하도록 하고, 본 훈령에 따른 정부의 정책과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여 국익증진과 국위선양을 도모할 것
- 대표단은 우방 국가를 비롯한 각국 대표들과 수시로 접촉, WHO를 통한 국제친선 유대 강화에 주력하는 동시에 관련 분야에서의 국제협력 강화를 도모할 것

3. 추가 훈령

- (의제 13) 짐바브웨의 정회원국 가입신청 관련 짐바브웨의 정회원국 가입을 지지할 것

WHO(세계보건기구) 총회, 제33차. Geneva(스위스), 1980.5.5.-23. 전2권 (V.2 결과보고)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국제기구

MF번호 2010-46 / 3 / 1-189

정부는 1980.5.5.~23.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33차 WHO(세계보건기구) 총회에 진의종 보건사회부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주요 의제

- WHO 기능을 감안한 기구조직의 재검토
- 2000년까지의 전 인류 보건증진전략 수립
- 국가별 보건활동상 및 정책 보고
- 집행이사국 선출

2. 회의 결과

- 캄보디아(구 캄푸차) 대표권 문제
 - 베트남 대표가 캄보디아 대표의 본회의 참석이 부당함을 제기함에 따라 중국(구 중공) 대표가 발언 종결을 제의하여 가결되었으며, 중국 대표의 캄보디아 대표 참석 인정 제안이 가결됨.
 - 한국은 기권, 북한은 중국안에 찬성
- 동지중해 지역사무소 이전 문제
 - 미국은 WHO와 이집트 간에 1951.3.25.자 협정 제37조 “협상 및 통고” 규정의 적용 여부에 대해 ICJ(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적 의견을 요청, 이에 따라 결정할 것을 제안하여 채택되었으며, 본회의는 미국 제안을 표결하여 채택함.
- 총회의 격년제 개최 문제
 - 절충안으로 제시된 영국안(WHO 예산 관련 토의가 없는 연도의 총회기간은 2주 내로 제한하자는 제안)을 가장 합리적인 안으로 반영함.
 - 한국은 격년제 개최를 지지하도록 훈령함.

WHO(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회의, 제31차. Manila(필리핀), 1980.9.9.-15.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국제기구1

MF번호 2010-46 / 4 / 1-122

정부는 1980.9.9.~15.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제31차 WHO(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 회의에 장경식 보건사회부 의정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국

- 한국, 미국, 일본, 중국(구 중공) 등 19개 회원국

2. 주요 의제

- 사업예산안 검토
- 지역회의 위원회 각국 대표의 여행비 상환
- 각국 보건사업 현황 보고
- 지역사무처장 사업 보고
- 2000년까지 전 인류의 건강을 위한 전략
- 기능면에서 본 WHO 조직구조 등

3. 회의 결과

- 1982~83년 사업계획 및 예산검토
 - 동 기간 중 한국에 대한 지원예산으로 149만 8천 달러가 계상됨.
- 지역회의 참가대표의 여비상환 문제
 - WHO 회비 부담률이 최하위에 속하는 회원국 대표 1명에게 체재비를 제외한 여비를 WHO가 지원할 것을 집행이사회와 총회에 건의하기로 결의함.
- 2000년까지 전 인류의 건강을 위한 전략
 - 일반사업계획 소위원회가 작성, 제출한 2000년까지 전 인류의 건강을 위한 지역 내 사업정책과 전략을 채택함.

ITU(국제전기통신연합)/CCITT(국제전신전화자문위원회) 총회, 제7차. Geneva, 1980.11.10.-21.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국제기구1

MF번호 2010-46 / 5 / 1-281

정부는 1980.11.10.~21.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7차 ITU(국제전기통신연합)/CCITT(국제전신전화자문위원회) 총회에 음재황 체신부 기술정책관실 기술3과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 목적

- CCITT는 ITU 산하기관으로 금번 제7차 총회에서는 국제전신전화의 기술, 운용 및 요금제도를 국제적으로 표준화하기 위한 산하 연구반의 연구보고를 심의하고 동 보고를 권고로서 채택, 승인할 예정인바, 한국 정부는 대표단 파견을 통해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국제협력과 한국 관련 분야 기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참가자

- 80개국, 20개 국제기구 대표 등 427명

3. 주요 결과

- 각 연구반에서 승인 요청한 권고사항은 일부 용어 및 자구 수정을 제외하고 요청대로 승인됨.
- 데이터 통신의 발전 추세에 따라 현재의 연구그룹 9와 10을 통합하여 그룹 9로, 연구그룹 8과 14를 통합하여 그룹 8로 하기로 함.
- CCITT의 지난 연구 기간(1977~80년) 동안 연구활동에 소요된 예산 집행액 8,238,744스위스프랑을 승인하고, 1981~84년 동안의 예산 소요액 12,915,000스위스프랑을 ITU 사무국에 요청하기로 함.
- 향후 개도국이 CCITT 연구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촉구함.
- 각 연구그룹의 의장 및 부의장 임명

4. 한국대표단 활동

- CCITT 권고 2 개정 및 연구그룹의 통합 제안과 관련한 한국 입장 발언

유엔 인권위원회 회의, 제36차. Geneva, 1980.2.4.-3.14.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국제연합

MF번호 2010-46 / 6 / 1-141

1980.2.4.~3.14.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36차 유엔 인권위원회 회의 관련 내용임.

1. 한국문제 토의

- 제36차 유엔 인권위원회는 1980.3.6. 한국문제를 토의함.
 - 한국 대표는 기초연설을 통해 한국의 신헌법 제정 및 포괄적인 인권 관계 조항의 신헌법 삽입 전망, 긴급조치 철폐, 구속자 전원 석방 및 687명에 대한 복권조치 단행 사실과 세계인권선언의 목적 및 원칙을 존중한다는 한국 입장을 밝힘.
- 작업 실무단은 차기 회의에서 한국문제가 종결될 수 있도록 한국 관련 정보 제공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포함한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동 위원회는 동 보고서를 이의 없이 채택한 후 한국문제 토의를 종결함.
- 작업 실무단 보고서 채택에 앞서 미국 대표는 한국의 인권상황이 개선된 것은 환영하나, 미국 법률대표단의 방한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에서 정치범을 변호하는 법률가들이 박해를 받고 있다고 하는바, 최근 한국의 인권상황 변화와 관련하여 동 건이 개선되었는지의 여부를 질문함.
- 캐나다 대표는 한국 인권상황 개선이 기쁜 일이지만 일부 비정상적인 면이 있다는 소문에 관해 정보 제공을 요청함.

2. 주제네바대표부는 1980.6.9. 지난 3.6. 개최된 유엔 인권위 비공개회의에서 채택된 한국문제에 관한 결의를 입수하였다고 보고함.

- 유엔 관계관은 동 결의를 한국 정부에 기송부하였거나, 송부 예정이라고 언급하고 동 결의 입수 경위는 비밀로 해줄 것을 당부함.

3. 한국 인권문제 관련 중앙정보부 의견

- 광주사태 관련, 한국 정부가 그동안 발표한 수준에서 추가 의견을 제출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 광주사태가 국제 인권 분야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이를 날조, 왜곡 및 과장하여 모략선전하고 있는데 대해 한국 측이 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북한의 선전내용이 사실로 인정될 우려가 있음.
 - 자료 제출은 한국 정부가 유엔 인권위원회에 협력하는 것으로 인식됨으로써 한국에 대한 비판 완화에 기여할 것임.

캄푸차인의 인도적 구호를 위한 공여국 회의. Geneva, 1980.5.26.-27.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국제연합 / 동남아

MF번호 2010-46 / 8 / 1-53

1980.5.26.~27. 제네바에서 개최된 캄보디아(구 캄푸차) 국민에 대한 인도적 원조 및 구호를 위한 공여국 회의 관련 내용임.

1. 외무부 아주국은 1980.5.15. 캄보디아인의 인도적 구호를 위한 공여국 회의 참석 여부에 관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개진함.

- 난민원조 구호계획에 한국이 어떠한 형태로든 계속 참가한다는 것은 인도적 관점에서 국제적으로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또한 대아세안 외교 강화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함.
- 그러나 금년 초 인도차이나 난민구호기금에 한국 능력으로는 최대한인 500만 달러를 UNHCR (유엔난민기구)을 통해 기출연하였는바, 계속해서 난민구호계획에 참가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임.
- 특히 원조 제공에 관한 서약을 행해야 하는 금번 회의는 한국이 참석하지 않고 추후 사태의 진전을 보면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2. 외무부는 1980.5.17. 주유엔대사에게 금번 공여국 회의에 불참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통보함.

3. 회의 결과

- 참가자: 62개국 대표
- 참가국으로부터 금년도 구호기금 부족액 총 1억 8천만 달러 중 1억 1,600만 달러 출연을 약속 받음.
- 일본은 금년도 구호기금 출연금 중 86%인 1억 달러를 부담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개별적으로 태국에 대해 동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2억 6천만 달러를 제공하겠다고 적극적인 자원태도를 보임.

인도지나 난민구호

생산연도 1979-1980

생 산 과 동남아

MF번호 2010-46 / 9 / 1-162



1979~80년 중 인도차이나 난민구호 관련 내용임.

1. 난민구호를 위한 각료급 국제회의(1979.7.20.~21., 제네바) 개최

- 개최 경위
 - 선진국 정상회의(1979.6.28., 도쿄) 및 아세안 외상회의(1979.6.28.~30., 도쿄)는 인도차이나 난민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국제회의를 소집할 것을 유엔사무총장에게 요청함.
- 참가국
 - 65개국
- 수석대표
 - 주제네바대사
- 회의 결과
 - 총 1억 9천만 달러에 달하는 기여금 및 현물 지원 서약
 - 한국은 인도네시아 Galang 난민센터 건립을 위한 특별 기여금 20만 달러 외에 난민구호를 위한 특별 기여금 480만 달러를 추가로 제공하기로 약속함.

2. 한국의 기여금 제공 경위

- 1979.3월 국무총리, 홀부르크 미국 국무부 차관보 면담 시 인도차이나 난민구호 기여금 증액 요청에 대해 호의적 검토를 약속
- 1979.4월 Mochtar 인도네시아 외상, 인도네시아가 추진 중인 Galang 난민수용센터 건립을 위해 한국이 도로와 부두를 건설해 줄 것을 요청
- 1979.5월 국무총리, 인도네시아 순방 시 수하르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에게 동 센터 건립에 20만 달러 기여 약속
- 1979.7월 카터 미 대통령 방한 시 한국 정부가 상당액의 구호금을 추가로 제공하기로 한·미 간 합의

3. 노신영 주제네바대사는 1980.1.10. UNHCR(유엔난민기금)에 기여금 480만 달러를 전달함.

- 태국 200만 달러, 인도네시아 180만 달러, 필리핀 100만 달러
- 필리핀 Sabang Refugee Processing Center 개소(1.21.)

유엔 세계여성회의. Copenhagen(덴마크), 1980.7.14.-31. 전6권 (V.1 사전교섭)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국제연합

MF번호 2010-46 / 10 / 1-266

1980.7.14.~31.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유엔 세계여성회의의 관련 사전교섭 내용임.

1. 회의 일정

- 7.13. 회의 조직 및 구성에 관한 사전 협의
- 7.14. 개회식 및 의제 2, 3, 4, 5, 6 토의
- 7.15.~22. 양 위원회, 의제 8, 9 토의
- 7.15.~23. General Debate 및 양 위원회 개최
- 7.22. 전 세계 여성 난민 현황 검토
- 7.23.~24. A 위원회 의제 7(a) 토의, B 위원회 의제 7(b) 토의
- 7.24.~25. A 위원회 의제 10(a) 토의, B 위원회 의제 10(b) 토의
- 7.25.~30. 전체회의, 양 위원회 보고서 검토 및 최종보고서 채택
- 7.30. 폐막

2. 회의 의제

- 개회
- 의장단 선출
- 의사규칙 채택
- 의제 채택
- 위원회 및 업무 분담 결정
- 신임장
 - 신임장 위원 지명
 - 신임장위원회 보고
- 남부아프리카 여성에 대한 인종차별 문제
- 유엔 여성 10년의 목적 달성에 있어서 진보와 장애 검토 및 평가
- 유엔 여성 10년 하반기 5년 동안의 행동계획
- 이스라엘 점령지역 내 팔레스타인 여성에 대한 점령에 대한 영향

유엔 세계여성회의. Copenhagen(덴마크), 1980.7.14.-31. 전6권 (V.2 원칙재가 및 참가준비)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국제연합

MF번호 2010-46 / 11 / 1-208

1980.7.14.~31.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유엔 세계여성회의의 관련 참가준비 내용임.

1. 대표단 임명

- 수석대표
 - 이매리 대한적십자사 부총재
- 대표
 - 이옥순 보사부 부녀아동국장
 - 홍숙자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부회장
 - 이경자 한국부인회 부회장
 - 김영정 이화여대 교수
 - 김모임 한국 여성단체협의회 부회장
- 교체대표
 - 최일섭 서울대 교수
 - 유주현 연세대 교수

2. 파견 목적

- 유엔 세계여성 10년의 정신에 따른 범세계적인 여성의 지위향상을 통한 평등, 발전 및 평화 달성
- 한국의 경제적, 사회적 개발에 있어 여성의 참여 및 활동상 소개를 통한 국제적 지위향상 도모
- 제반 정보, 자료 수집을 통한 한국의 관련 분야, 특히 교육, 고용 및 보건 분야에 있어서의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기여
- 북한의 대한민국 비난 등 정치적 책동에 대처

3. 정부대표단 준비회의(1980.7.7., 외무부)

- 참가자
 - 정부대표단 8명
 - 외무부 국제기구국장 외 담당관
 - 보사부 담당관

유엔 세계여성회의. Copenhagen(덴마크), 1980.7.14.-31. 전6권 (V.3 북한책동 대비 사전 저지 교섭)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국제연합

MF번호 2010-46 / 12 / 1-198

1980.7.14.~31.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유엔 세계여성회의의 관련 북한책동 대비 저지 교섭 내용임.

1. 외무부는 1980.6.30. 주요 공관에 유엔 세계여성회의의 관련 북한의 책동을 저지하기 위한 활동을 지시함.

- 북한은 멕시코 회의(1975년)에서 소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허정숙을 단장으로 하는 20여 명의 대표단을 파견한 점에 비추어 금번 회의에서도 대규모 대표단을 파견할 것으로 예상됨.
- 북한은 베오그라드 전체 외상회의(1978.7월)에서 비동맹 내 “Role of Women in Development” 그룹의 구성국으로 선출되었는바, 북한이 동 지위를 바탕으로 금번 회의에서 최근 한국사태를 악용한 대한민국 비난책동을 자행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상정하여 적의 대처가 필요
- 주재국의 금번 회의 참가 수석대표 등 관계인사와 접촉하여 하기 사항을 조사 보고할 것
 - 주재국에 대한 북한의 접촉시도 등 제반 동태 및 특이사항
 - 주재국 대표단 규모 및 명단
 - 금번 회의에 대한 주재국의 관심도
 - 기타 참고사항

2. 북한책동 시 한국 측 입장 적극 개진

- 금번 회의는 유엔이 1975년을 ‘세계여성의 해’로 지정하고, 1975~85년을 세계여성을 위한 10년으로 설정함에 따라 1975년 최초로 개최된 멕시코 회의에 이어 전 세계여성의 지위향상을 통한 인류의 평등, 발전 및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전 세계적 규모의 비정치적 회의임.
- 이러한 회의 목적 및 정신에 반해 북한은 1975.6월 멕시코 회의에서 주한미군 철수와 외세간섭 없는 자주평화통일 등 정치적 발언을 자행하였는바, 금번 회의 중 북한이 여성회의 목적 및 정신을 망각하고 정치문제를 거론, 한국에 대한 내정간섭 및 비난 등의 그릇된 책동을 자행할 경우 이는 전적으로 부당한 것임.
- 금번 회의에서 정치적 논의가 제기되는 데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혀주기 바람.

유엔 세계여성회의. Copenhagen(덴마크), 1980.7.14.-31. 전6권 (V.4 결과보고)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국제연합

MF번호 2010-47 / 1 / 1-364

정부는 1980.7.14.~31.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유엔 세계여성회의에 이매리 대한적십자사 부총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자

- 140개국 2천여 명

2. 회의 결과

- 정치문제 결의안 채택
 - 팔레스타인 관련 결의안
 - 칠레 관련 결의안
 - 엘살바도르 관련 결의안
 - 서부사하라 관련 결의안
 - 볼리비아 관련 결의안
 - 한국은 아랍권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팔레스타인 관련 결의안에 찬성하고, 기타 결의안 표결 시에는 불참
- 캄보디아(구 캄푸차) 대표권 문제
 - Democratic Kampuchea(폴포트 정권)의 대표권을 인정하는 신임장위원회 보고서가 본회의에서 표결 없이 채택

3. 북한의 책동 및 대응조치

- 대표단 구성
 - 북한은 금번 회의에 홍일천(보통교육부 부부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10여 명의 대표단 파견
- 불온 유인물 배포 및 게시
- 기조연설 시 한국 비난
- 반한 결의안 제출 기도
- 한국 민간 여성대표 유인 미수
- 한국 측은 현지 대표단의 활동으로 북한책동에 적절히 대처

4. 회의 평가

- 여성의 평등, 발전 및 평화 추구라는 본래 목적과는 달리 격렬한 정치문제의 토론장이 되어 상호 대립되고 있는 국가 간, 블록 간 반목과 불화를 심화시킨 가운데 별다른 성과 없이 폐막됨.

유엔 세계여성회의. Copenhagen(덴마크), 1980.7.14.-31. 전6권 (V.5 NGO Forum)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국제연합

MF번호 2010-47 / 2 / 1-120

1980.7.14.~31.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유엔 세계여성회의 관련 1980.7.14.~24. 코펜하겐대학에서 개최된 NGO 포럼(Mid-decade Forum) 내용임.

1. 회의 목적 및 성격

- 세계 각지에서 모인 남녀가 유엔 여성 10년의 절반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각 분야에서의 여성지위에 관해 토의하되, 특히 세계여성회의 토의사항을 중심으로 의견을 교환함.
 - 토의사항에 관한 공식 입장을 결정하거나 결의안 등을 채택하지는 않음.
- 회의 형태 및 내용
 - 개인별, 그룹별 회합, 작업단, 워크숍, 원탁토론, 전시회, 영사회 등
 - Daily Forum Newspaper 발간 및 세계여성회의 토의 현황에 관한 브리핑

2. 한국 정부는 1980.7월 NGO 포럼 참석을 위해 참가계획서를 제출한 국내인사 12명 중 9명을 적격자로 판단함.

- 리숙중 성신학원 이사장
- 문용주 한국여성단체협의회 간사
- 김현자 한국여성단체협의회 간사
- 김정례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위원장
- 신낙균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사무총장
- 오선주 한국여성유권자연맹 국제교류부장
- 서채완 YWCA 간사
- 이태영 가정법률상담소 소장
- 김혜영 여성문제연구회 이사

유엔 세계여성회의. Copenhagen(덴마크), 1980.7.14.-31. 전6권 (V.6 여성지위향상을 위한 유엔사무총장 질의서, 1979)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국제연합

MF번호 2010-47 / 3 / 1-108

1980.7.14.~31.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유엔 세계여성회의의 관련 여성지위향상을 위한 유엔사무총장 질의서 내용임.

1. 유엔사무총장은 1979.1월 “세계여성의 해” 목표 이행을 위한 세계행동계획의 제도적 검토 및 평가를 위한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각국이 작성,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해옴.
 - 동 질의서는 1975~78년 중 각국 정부가 여성지위향상과 여성에 대한 차별철폐를 위해 행한 조치 및 방안을 포함, 각종 계획 등에 관해 각국의 견해를 구하고 있는 내용임.
 - 동 건은 제27~28차 여성지위위원회와 1980년 코펜하겐 여성회의에서 토의될 예정임.
2. 유엔사무총장은 1979.1.25. 각 지역위원회 개최(1979.6~9월) 시 상기 질의서를 기초로 하는 보고서 작성 문제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하고 각국 정부는 늦어도 1979.3.30. 이전까지 질의서에 대한 회보를 작성하되 1부는 유엔본부로, 기타 1부는 각 지역위원회 본부로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함.
3. 여성문제에 대한 보고제도는 ECOSOC(유엔경제사회이사회) 결의 제1325호 및 제1677호에 의거, 격년제로 하게 되어 있으며 제33차 총회는 ECOSOC 결의 제1978/28에 의거 여성문제에 관한 현존 각종 보고제도 단일화 결의를 채택한 바 있음.
4. 외무부는 1979.6.22. 유엔사무총장의 공한을 보사부장관에게 송부하면서 질의서에 대한 회보를 조속한 시일 내에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함.

유엔 마약위원회 관계회의

생산연도 1979-1980

생 산 과 국제연합

MF번호 2010-47 / 4 / 1-63

1979~80년 중 개최된 유엔 마약위원회 관계회의의 관련 내용임.

1. 제6차 마약위원회 특별회의(1980.2.11.~20., 비엔나)

- 정부대표: 고왕진 보사부 약정국 마약과장
- 파견 목적
 - 한국은 현재 마약위원회 위원국은 아니나 “마약에 관한 단일협약” 및 “향정신성 물질에 관한 협약” 당사국으로서 각국 대표와의 상호 정보 교환을 통해 각종 자료를 수집하여 한국의 마약 정책 수립에 참고하며, 마약에 관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자 함.
- 정부 훈령
 - 우방국을 비롯한 각국 대표 및 옵서버와 수시 접촉, 상호 이해증진과 유대 강화를 도모하고 정부 정책과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
 -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초의 남용 방지와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한국의 성과를 각국에 홍보하여 한국의 국제적 인식을 제고하고 각국의 마약정책에 관한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할 것
 - 한국이 마약위원회 위원국으로 피선될 수 있는 기반 조성에 진력할 것
 - 약물 남용 억제 통제기금 보고서 및 운영경비 보고서 토의 시 개도국의 마약통제 업무 수행을 위한 기금 확대와 각국 정부의 기여금 납부 지지

2. 제7차 마약법 집행위원회 회의(1980.12.1.~5., 쿠알라룸푸르)

- 정부대표: 박기준 보사부 마약과 행정사무관
- 파견 목적
 - 마약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역내 국가 간 협력을 도모하고 각국 대표와의 상호 정보 교환을 통해 각종 자료를 수집하여 한국의 마약 관계 정책 수립에 기여함.
- 정부 훈령
 - 각국의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 관리 등에 관한 정보 및 자료 수집
 - 한국이 마약위원회 위원국으로 피선될 수 있는 기반 조성에 노력할 것
- 주요 결과
 - 임원 선출: (의장) 말레이시아 (부의장) 뉴질랜드, 태국
 - 국가 간의 보다 긴밀한 협력과 정보 교환
 - 각국의 협력증진을 위한 별도 정보망 구성(인터폴을 통한 협력체제 강화)
 - 수사기술의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

505

대한민국 의약품사 어휘집

유엔 범죄예방 및 범죄자 처우에 관한 회의, 제6차. Caracas(베네수엘라), 1980.8.25.-9.5. 전4권 (V.1 사전준비 I: 1978-79)

생산연도 1978-1980

생 산 과 국제연합 / 국제법규

MF번호 2010-47 / 5 / 1-350

1980.8.25.~9.5. 카라카스에서 개최된 제6차 유엔 범죄예방 및 범죄자 처우에 관한 회의
관련 사전준비 내용임.

1. 제6차 유엔 범죄예방 및 범죄자 처우에 관한 회의를 위한 아시아태평양지역 준비회의 (1978.5.15.~19., 마닐라)

- 정부대표
 - 주광일 법무부 검찰국 검찰4과 검사
 - 홍두식 법무부 청주교도소장 교정감
- 파견 목적
 - 유엔사무국은 금번 회의의 중요성 및 각국의 관심도에 비추어 각국 정부의 고위대표 참석을 희망하여 왔는바, 법무부 관계관이 대표로 참석함.
 - 범죄예방 및 범법자 처리문제에 있어서 각국 정책 및 제도와 유엔의 동향을 파악하도록 하고 의제별 분야에서 한국의 입장을 반영시켜 제6차 유엔회의 참석에 대비함.
- 정부 훈령
 - 범죄 근절 문제를 포함한 각종 유엔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한국 입장을 밝히고 특히 테러, 마약 등 국제적 범죄에 대해 국가 간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
 - 한국의 범죄 동향 및 범죄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과 제도를 적극 소개하고 타국의 정책과 제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것

2. 제5차 범죄예방 및 통제위원회 회의(1978.6.5.~16., 비엔나)

- 보고서 수록(영문)

유엔 범죄예방 및 범죄자 처우에 관한 회의, 제6차. Caracas(베네수엘라), 1980.8.25.-9.5. 전4권 (V.2 사전준비 II)

생산연도 1978-1980

생 산 과 국제연합 / 국제법규

MF번호 2010-47 / 6 / 1-350

1980.8.25.~9.5. 카라카스에서 개최된 제6차 유엔 범죄예방 및 범죄자 처우에 관한 회의
관련 사전준비 내용임.

1. 회의 일정

- 8.24. 회의 조직 및 구성에 관한 비공식 사전 협의
- 8.25. 개회식 및 의제 2, 3, 4, 8 토의
- 8.26.~29. 양 위원회 개최, 의제 3, 4, 5, 6, 7, 8 토의
 - Committee I : 의제 3, 7
 - Working Group: 의제 8
 - Committee II : 의제 4, 5
 - Sub-Committee: 의제 6
- 9.1.~4. 양 위원회 개최, 의제 3, 5, 6, 7 토의
 - Committee I : 의제 3, 7
 - Committee II : 의제 5
 - Sub-Committee: 의제 6
- 9.4.~5. 본회의 개최, 양 위원회 보고서 심의 및 최종보고서 채택
- 9.5. 폐막

2. 주요 의제

- 범죄 성향 및 범죄예방 전략
- 청소년 처벌 문제
- 권력 남용
- 범죄교정의 비수용화원칙
- 형사재판의 기준 제정

3. 초청 범위

- 각국 대표, 유엔 산하 전문기구 대표, 정부 간·비정부 간 기구 대표 및 관계 전문가

유엔 범죄예방 및 범죄자 처우에 관한 회의, 제6차. Caracas(베네수엘라), 1980.8.25.-9.5. 전4권 (V.3 사전준비 III)

생산연도 1978-1980

생 산 과 국제연합 / 국제법규

MF번호 2010-47 / 7 / 1-291

1980.8.25.~9.5. 카라카스에서 개최된 제6차 유엔 범죄예방 및 범죄자 처우에 관한 회의 관련 사전준비 내용임.

1. 유엔 범죄회의의 사무국장은 각국이 주요 의제별로 Position Paper를 작성,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바, 이와 관련 외무부는 법무부에 한국 입장에 관한 Position Paper 송부를 요청함.

- 범죄 성향 및 범죄예방 전략
 - 범세계적 범죄의 본질 및 범위
 - 범죄 통계수집 방법의 개선방안
 - 범죄 성향의 변화 및 동 원인
 - 각국 정부의 범죄예방 전략 및 새로운 지침과 정책 수립 필요성
- 청소년 범죄 재판
 - 재판의 문제 범위
- 범죄와 권력 남용
 - 경제력과 공권력의 오용으로부터 파생되는 범죄
 - 소비자 농간, 부패, 환경 범죄 및 기본적 인권을 유린하는 공권의 남용
- 교정의 비수용화 및 동 비수용화가 여타 재소자에 미치는 의미
 - 범죄인 취급에 있어서의 Standard Minimum 이행의 관점에서 본 형사정책 및 관행의 추세
 - 교정을 위한 수감제도의 대체방안
-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엔의 기준 및 지침
 - 형사재판을 받는 모든 사람의 인권보장과 존엄성 유지를 위한 현존 유엔의 기준 및 지침
- 범죄예방, 형사재판 및 발전에 대한 새로운 전망과 국제협력의 역할
 - 급속한 산업발전에 따른 범죄 급증 추세와 관련, 모든 회원국에게 여사한 위험을 경고하고 성공적으로 대처한 국가의 경험 제공

2. 외무부는 1980.8월 유엔 측이 요청한 Position Paper를 제출함.

유엔 범죄예방 및 범죄자 처우에 관한 회의, 제6차. Caracas(베네수엘라), 1980.8.25.-9.5. 전4권 (V.4 결과보고)

생산연도 1978-1980

생 산 과 국제연합 / 국제법규

MF번호 2010-47 / 8 / 1-323

정부는 1980.8.25.~9.5. 카라카스에서 개최된 제6차 유엔 범죄예방 및 범죄자 처우에 관한 회의에 주광일 법무부 검찰국 검찰4과 검사와 홍두식 법무부 청주교도소장 교정감을 정부대표로 파견함.

1. 주요 의제

- 범죄 성향 및 범죄예방 전략
- 비행 개시 전후의 소년사법
- 범죄와 권력 남용
- 사회 내 처우와 잔여 재소자에 미치는 영향
- 형사사법에 관한 유엔의 기준 및 지침
-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과 그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망

2. 주요 토의 내용

- 범죄 성향 및 범죄예방 전략
 - 경제개발 및 사회발전에 따른 각종 범죄의 성향과 범죄분석을 위한 통계수집 분석의 중요성 토의
- 소년사법
 - 급증하고 있는 소년범죄에 대한 우려와 청소년들의 건전한 보호 육성을 위한 가정, 교육기관, 사회, 국가 등의 책임 문제 협의
- 범죄와 권력 남용
 - 화이트칼라 범죄와 다국적기업 등의 범죄방지 전략 토의
- 형사사법에 관한 유엔의 기준 및 지침
 - 모든 사람의 존엄성과 권리 확보를 위한 유엔 기준 및 지침 검토
- 범죄예방을 위한 새로운 전망
 - 개인 또는 단체의 참여에 관한 문제 토의

3. 대책

- 유엔회의에서 토의되고 권고된 각종 범죄예방 및 범죄자 처우를 위한 사법 또는 행정정책에 대해 엄밀히 검토 분석한 후 한국에 적절한 제도와 정책을 취사선택하여 형사사법의 발전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함.

인종차별철폐협약 당사국회의, 제7차. New York, 1980.1.11.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국제연합

MF번호 2010-47 / 9 / 1-71

정부는 1980.1.11. 뉴욕에서 개최된 제7차 인종차별철폐협약 당사국회의에 윤석현 주유엔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CERD(인종차별철폐위원회) 위원 선출 문제

- 총12명 입후보(9명 선출)
 - 한국 지지 대상
 - 파나마, 프랑스, 아르헨티나, 필리핀, 오스트리아(6개국)
 - 재량 결정 대상
 - 인도, 시리아, 이라크(3개국)
 - 공산권 입후보
 - 불가리아, 유고, 소련(3개국)

2. CERD 소요경비 부담 문제

- 제11차 회계연도(1980년) 중 제2차 CERD 회의 개최 예정
 - 제1차 회의: 1980.3.24.~4.11., 제네바
 - 제2차 회의: 1980.8.4.~22., 뉴욕
- 동 회의 개최 시 예상되는 CERD 위원 여비: 140,658달러
 - 한국으로서는 별 이의 없음.

인종차별철폐협약 가입에 따른 제1차 보고서 제출

생산연도 1978-1980

생 산 과 조약2

MF번호 2010-47 / 10 / 1-113

1978~80년 중 인종차별철폐협약 가입에 따른 제1차 보고서 제출 관련 내용임.

1. 가입 경위

- 1978.12.5. 인종차별철폐협약 비준서 기탁
- 1979.1.4. 동 협약, 한국에 대하여 발효
- 1980.7.7. 한국 최초 인권차별보고서 유엔에 제출

2. 가입의 의의

- 유엔총회는 인종차별 및 인종 분리가 없는 국제 공동사회의 건설이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에 기여함을 강조하면서 누차 협약 미체약국의 가입을 촉구하는 결의를 채택해옴.
- 주유엔대사는 유엔 내에서의 비동맹 중립국가에 대한 한국의 입장 강화와 지지 고양을 위한 정치적 고려에서도 동 협약의 조속 가입을 건의함.
- 한국은 북한에 앞서 동 협약에 가입함으로써 인종차별 철폐를 지지하는 입장을 대외적으로 명백히 천명함과 동시에 특히 남아프리카의 인종차별정책과 인종분리 또는 인종격리정책을 규탄하는 입장에 동조함으로써 특히 제3세계에 대한 한국의 외교 강화에 기여할 것임.

3. 주요 내용

- 인종차별 규탄 및 철폐
- 인종차별 행위를 범죄로 규정
- 인종차별 행위로부터 보호 및 구제
- 시행기구로 CERD(인종차별철폐위원회) 설치

4. 제1차 보고서 요지

- 인종차별은 한국의 헌법정신에 위해
- 한국에는 인종차별의 관행이나 사회적 경험 부재
- 인종차별 규제를 위한 별도의 입법조치 불요
- 헌법 9조와 기본법제로 충분한 규제 가능

IOE(국제수역사무국) 아시아지역회의, 제12차. Jakarta(인도네시아), 1980.11.10.-15.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국제기구2

MF번호 2010-47 / 11 / 1-69

정부는 1980.11.10.~15.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제12차 IOE(국제수역사무국) 아시아지역회의에 이창구 농업진흥청 가축위생연구소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파견 목적

- 역내 가축위생 분야의 정보 교환 및 기술 교류
- 한국은 지역회의 부의장국으로서 업무 수행

512

2. 기본 훈령

- 회의에 참석한 회원국 대표들과 친선을 도모하고 토의에 적극 참여하여 상호 이해증진 및 한국의 국제적 지위향상에 기여할 것
- 한국의 수역 분야 현황에 관해 설명함으로써 동 분야에 있어서 한국의 국제적 인식을 고양할 것
- 한국이 필요로 하는 수역 관계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 및 보고할 것
- 광견병 의제에 대해서는 한국의 광견병 발생 상황과 방역 실패를 설명하고 토의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한국 측의 광견병 근절 노력에 대한 회원국의 이해증진과 국제적 인식을 고양시킬 것
- 구제역 방역 의제에 대해서는 구제역 미발생 국가의 침입방지 대책과 동·축산물의 검역제도에 관한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할 것
- 각국의 가축 위생 및 방역상황 보고에 관해서는 회원국의 돼지콜레라 및 뉴캐슬병 방역실태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충분한 의견 교환을 행할 것

3. 회의 결과

- 광견병에 관한 보고 및 토의
 - 모든 회원국은 광견병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물검역규정을 강화하고 실천할 것
 - 특히 광견병 발생지역에서는 보다 효과적인 예방약의 응용과 예방접종을 철저히 할 것
- 구제역에 관한 보고 및 토의
 - 구제역 방제에 관한 기술은 이미 확립되었으며 많은 국가들이 구제역 발생국에서 비발생국으로 전환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구제역의 방제는 각국의 가축방역시책의 능동적인 구현에 있음.
- 면양의 독혈증에 관한 보고 및 토의
- Myiasis에 관한 보고 및 토의
- 수의 공중위생에 관한 보고 및 토의

IOE(국제수역사무국) 총회, 제48차. Paris, 1980.5.26.-31.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국제기구2

MF번호 2010-47 / 12 / 1-153

정부는 1980.5.26.~31.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48차 IOE(국제수역사무국) 총회에 이창구 농촌진흥청 가축위생연구소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IOE 사무총장 선거

- 제48차 총회 시 신임 사무총장 선거와 관련하여 주한 네덜란드 및 프랑스대사관으로부터 자국 후보 지지를 요청하는 공한을 접수함.
 - 네덜란드 후보자: Jan Janssen
 - 프랑스 후보자: 5명의 후보가 출마하여 1차 투표 시 최다득표자에 대해 지지 요청
- 한국 측 대책
 - 농수산부에 대해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3개국 중 한국 수역 문제와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 또는 입후보자를 문의, 한국 입장 결정에 고려함.
 - 주프랑스대사에게 입후보자 6명 중 가장 당선이 유력한 후보를 탐문하도록 훈령하고 동 결과를 참작함.
 - 관계부처 및 주프랑스대사 보고 중 참작할만한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 금번 총회 분위기에 따라 한국 입장을 결정하도록 한국 수석대표에게 재량권 부여

2. 정부 훈령

- 가축방역대책위원회에서 논의된 바 있는 구주지역의 생축 및 축산물 수입 검역조건에 대해 해당국 대표와 기술 검토 및 협의를 할 것
- 가축방역과 경제 관계에 대해서는 서방 각국의 가축방역 사업, 투자 규모, 가축방역 분야 행정체제 및 연구기관 조직활동에 관한 관련 자료를 수집할 것
- 각국의 가축위생 및 방역상황 보고에 대해서는 제주도의 진드기와 진드기 매개 질병의 구제 연구 자료를 보고하여 한국의 방역실태를 설명할 것

3. 회의 결과

- 신임 사무총장 피선
- 1981~83년 적용 분담금 인상 결의
 - 현재 한국이 부담하는 최저 6등급(21,780프랑)이 34,020프랑으로 56% 증가
 - IOE 아주지역위원회 부의장에 이창구 대표 진출
- 1977년 제45차 총회 시 의석을 상실한 대만(구 자유중국)이 금번 총회 참가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CCOP(아시아천해저광 물자원공동탐사조정위원회) 회의, 제17차. Bangkok, 1980.11.4.-17.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경제지구

MF번호 2010-47 / 13 / 1-73

1980.11.4.~17. 방콕에서 개최된 제17차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CCOP(아시아천해저광물자원공동탐사조정위원회) 회의 관련 내용임.

1. 참가자(한국 측)

- 김종수 자원개발연구소 부소장
- 조규장 자원개발연구소 책임연구원
- 정규훈 동력자원부 행정주사

514

2. 제18차 CCOP 회의 서울 개최 문제

- 회의 개최 원칙
 - 회원국의 윤번제 개최로 1981년 제18차 회의는 한국이 개최 순서임.
- 중국(구 중공)의 문제 제기
 - 중국은 CCOP 사무국에 대해 중국의 정책상 서울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 하면서 1981년도 회의 개최지를 변경할 것을 종용함.
 - 중국은 1979년 제16차 회의 시 CCOP에 가입함.
- CCOP 사무국의 조치사항
 - Johanna 사무국장은 1979년 말 일본 측에 서한을 보내 중국의 의도를 전달하고 1981년 회의의 일본 개최 여부를 문의함.
 - 1980.5월 동인의 일본 방문 시 상기 문제를 재론하자 일본 측은 1981년 회의를 예정대로 서울에서 개최할 것과 중국의 CCOP 가입 시 정치적 문제는 거론하지 않기로 한 사실을 상기 시킴.
- 주한 일본대사관 경제담당은 7월 외무부를 방문, 한국 측이 1981년 회의를 개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일본이 이를 개최할 용의가 있다면서 한국의 공식적인 의사를 문의해옴.
 - 한국 측 반응
 - 중국이 자원개발 연구를 주목적으로 하는 역내 협력기구인 CCOP 서울 개최 변경을 종용한 것은 ESCAP 회원국으로서 이해하기 어려운 일임.
 - 동 건에 관해 관계부처와 협의, 한국의 공식 입장을 8월 중 일본에 통보할 것임.
- 외무부는 8월 동자부와 협의, 한국은 1981년도 회의를 개최할 의사가 분명히 있음을 일본 측에 전달함.

AOPTS(아시아대양주우정학교) 관리이사회. Bangkok(태국), 1980.11.4.-6.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국제기구2

MF번호 2010-48 / 1 / 1-101

정부는 1980.11.4.~6.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AOPTS(아시아대양주우정학교) 관리이사회에 권영수 체신부 국제우편과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파견 목적

- 1981~84년 우정학교 운영계획 토의 및 확정
- 우정학교에서의 한국 우정사업 현황 홍보활동 및 한국 파견 교관 및 훈련생 격려

2. 정부 훈령

- 의제 채택
 - 잠정 의제에 동의할 것
- 학교 활동사항 및 재정 운용 보고
 - 보고 내용을 예의 검토하고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이를 승인할 것
- 우편자문관 활용
 - 학교에 파견된 자문관의 활동사항 및 활용방안을 예의 검토할 것
- 1980년 이후 학교 운영계획
 - 우정관리자반 훈련기간 단축
 - 특별반 신설
 - 우정관리반 우수학생의 교관반 동시 이수
 - 교관 모집 방법 개선
 - 교장 및 교수부장 모집 개선
 - 학교 기본경비 부담 방법 변경
 - 현지 경비 부담 방법 개선
 - 교직원 보수 및 수당 인상
 - 학생 수당 인상
 - 학교 예산지급 방법 개선

INTELSAT(국제전기통신위성기구) 이사회, 제41-44차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국제기구2

MF번호 2010-48 / 2 / 1-212

정부는 1980년 중 개최된 제41~44차 INTELSAT(국제전기통신위성기구) 이사회에 이성희 체신부 전무국 국제업무과장을 정부대표로 파견함.

1. 제41차 이사회(1980.3.6.~13., 워싱턴 D.C.)

- 정부 훈령
 - 한국, 이란, 파키스탄, 튀르키예 간에 체결한 4개국 공동이사국 협정에 의거 공동이사국의 권익 보호에 노력할 것
 - INTELSAT 위성의 설계, 개발, 건설, 설치, 운용의 장기계획에 따른 예산, 조달 등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세부정보 수집에 주력
- 주요 의제
 - 사무총장 보고 심의
 - 기구 간 조정
 - INTELSAT V 계획
 - TDMA / DSI 도입계획

2. 제42차 이사회(1980.6.18.~25., 보고타)

- 주요 의제
 - 이사회 정·부의장 선출 및 자문위원회 위원장 임명
 - INTELSAT V 계획 심의

3. 제43차 이사회(1980.9.8.~18., 워싱턴 D.C.)

4. 제44차 이사회(1980.12.4.~11., 워싱턴 D.C.)

INTELSAT(국제전기통신위성기구) 가입국 총회, 제6차. Venice(이탈리아), 1980.10.20.-24.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국제기구2

MF번호 2010-48 / 3 / 1-96

정부는 1980.10.20.~24.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개최된 제6차 INTELSAT(국제전기통신위성기구) 가입국 총회에 김정렬 체신부 전무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파견 목적

- INTELSAT 일반정책 및 장기계획 심의
- 전기통신 업무 분야의 최신 기술정보 수집 및 국제동향 파악
- INTELSAT 및 동 회원국과의 협력 증진 및 유대 강화
- INTELSAT 4개 공동이사국 대표와 업무 협의 및 공동입장 모색

2. 정부 훈령

- 한국의 국제적 지위향상 및 가입국들과의 유대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
- INTELSAT 장기계획과 가입국들의 위성 운용계획 및 최신 위성정보 등 국내 관련 분야의 발전을 위해 활용할 제반 기술정보 및 자료 수집
- 공동이사국 대표들과 긴밀한 협조방안 강구

3. 주요 결과

- 위성회선 요금 인하
- INTELSAT 본부 건물 신축
- INTELSAT 자본한도액 증가
- INTELSAT 우주부문과 별도의 우주부문을 설치 및 운용하고자 하는 당사국 및 서명자가 행한 협의 승인

INTELSAT(국제전기통신위성기구) 임시 가입국 총회 및 제9차 서명자회의. Orlando(미국), 1980.3.31.-4.5.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국제기구2

MF번호 2010-48 / 4 / 1-98

정부는 1980.3.31.~4.5. 미국 올란도에서 개최된 INTELSAT(국제전기통신위성기구) 임시 가입국 총회 및 제9차 서명자회의에 장기익 체신부 정부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파견 목적

- INTELSAT 장기계획 및 연차 주요 사업 토의 참가
- 공동이사국 대표와 관련 업무 협의
- 아랍 및 인도네시아 통신위성망 설치계획과 기존 INTELSAT 위성망 조정 검토

2. 정부 훈령

- 의장단 구성
 - 의장은 주최국인 미국대표단에서 선출되도록 지지하고 부회장 및 5개 지역 부의장은 가능한 한 지역안배를 고려할 것
- 장기계획과 수반된 재정계획에 관한 이사회 보고서
 - 한국의 지구국 시설과 운용계획에 미치는 영향 및 재정적 부담을 감안하여 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할 것
- INTELSAT 협정 제7조에 의거 국제전기통신서비스 충족을 위해 INTELSAT 우주부문 시설과 별도의 우주부문 시설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취득 또는 이용할 목적으로 아랍의 ARABSAT 및 인도네시아의 PALAPA 위성망에 대한 위성망 계획서와 이사회의 건의사항을 참작할 것
- INTELSAT 기존 위성망에 대한 기술적, 재정적 장애요소의 유무 등을 검토하고 회원국의 의견과 동향을 파악하여 한국 입장을 정할 것

3. 회의 결과

- 이사회 대표권을 위한 최저투자율 결정
- INTELSAT 활동 및 재무사항에 대한 이사회 보고 검토
- 위성회선 요금 인하
 - INTELSAT은 이익금의 증가로 위성회선 요금을 1980.1.1.부터 연 5,760달러에서 5,040달러로 인하
 - 위성중계기 전용료 인하
- INTELSAT 원조 및 개발계획
 - INTELSAT 회원국 중 미개발국에 대한 위성통신기술 원조를 위하여 1980년도 중 30만 달러 제공
- 아랍지역 통신위성 설치 승인

세계관광회의, 제1차. Manila(필리핀), 1980.9.27.-10.10.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국제기구2

MF번호 2010-48 / 5 / 1-162

정부는 1980.9.27.~10.10.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제1차 세계관광회의에 김철용 교통부 관광지도국장을 수석대표(교체수석대표: 장기득 관광공사 국제기구과장)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정부 훈령

- 관광 관련 각종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여 한국 관광진흥정책 수립에 활용하도록 할 것
- UNWTO(세계관광기구)는 1980년대 세계 관광진흥의 새로운 좌표를 설정하기 위해 동 회의를 개최하는바, 한국은 UNWTO 집행위원국으로 본 회의는 물론 각종 기념행사, 한국 관광단지 개발 성공사례 발표, 관광 선전영화 경연, 관광 포스터 전시 등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UNWTO에서 한국의 활동 기반을 강화하고 관광진흥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할 것

2. 주요 의제

- 관광의 사회경제적 구조
- 관광의 제약사항
- 관광의 새 목표
- 휴일 활용의 주체로서의 개인
- 공급의 효율적 관리
- 관광 분야에 있어서 기술협력
- 인적자원개발

3. 주요 결과

- 동 회의는 1980년대 세계관광의 좌표 설정, 관광의 당면 저해요인 분석 및 각국 정부의 역할을 규명함으로써 향후 UNWTO의 각종 사업은 금번 결의내용의 구체화 및 실천방안을 중심으로 전개될 것으로 평가
- 한국대표단은 본 회의 결과를 계기로 각국 대표들과 수시 접촉하여 한국의 관광진흥과 홍보 기회로 활용하였으며 주요 관광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는데 주력함.

WTO(세계관광기구) 집행위원회 및 CAP(동아시아태평양지역 위원회) 회의

생산연도 1980-1981

생 산 과 국제기구2

MF번호 2010-48 / 6 / 1-214

1980~81년 중 개최된 UNWTO(세계관광기구) 집행위원회 및 CAP(동아시아태평양지역위원회) 회의 관련 내용임.

1. 제7차 CAP 회의(1980.4.14.~15., 인도네시아 발리)

- 정부대표
 - 박병선 교통부 관광진흥국 해외과장
- 파견 목적
 - 한국은 UNWTO 집행위원국으로 금번 회의 중 역내 회원국들과 제반 사업 추진에 관해 긴밀한 협의가 필요
- 참가국
 - 한국, 호주, 인도네시아, 일본,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등 7개 회원국
- 회의 결과
 - 회의는 당 지역 위원장인 인도네시아 관광청장의 주재로 진행되었으며, 의제는 당초 사무국 초안에 회의 결정사항의 검토 항목이 추가됨.

2. 제13차 UNWTO 집행위원회 회의(1980.4.21.~25., 마드리드)

- 수석대표
 - 서원배 교통부 관광진흥국장
- 파견 목적
 - 한국은 UNWTO 집행위원국으로서 1980년 주요 사업 및 계획 전반 토의에 적극 참여하여 동아시아태평양지역 회원국들의 이익 반영에 기여하고자 함.

3. 제14차 UNWTO 집행위원회 회의(1980.12.9.~13., 마드리드)

- 정부대표
 - 김철용 교통부 관광지도 국장
- 파견 목적
 - 1980~81년 UNWTO 일반 사업계획 추진 결과 검토 및 1982~83년 사업계획 토의
 - 한국은 동아시아태평양지역 대표 이사국으로서 UNWTO 사업에 지역 이익 반영
- 회의 결과
 - 1981년 집행위 의장국에 네팔, 제1부의장국에 이란, 제2부의장국에 루마니아 선출
 - 공동성명 채택

IOLM(국제법정계량기구) 총회 제6차. Washington D.C., 1980.6.16.-20.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국제기구2

MF번호 2010-48 / 7 / 1-171

정부는 1980.6.16.~20.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제6차 IOLM(국제법정계량기구) 총회에 한재열 공업진흥청 차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파견 목적

- 국제법정 계량에 관한 일반원칙 수립 및 규정의 통일화 사업에 적극 참여
- 한국의 계량공업 발전과 계량 기술의 국제화를 위한 정보 및 기술 교환

2. 정부 훈령

- 계량 분야에 있어서 상호 기술협력 증진을 위한 회원국의 움직임을 포함하여 국내 계량공업 발전에 활용될 정보 및 자료 수집에 주력할 것

3. 주요 의제

- 개도국 활동 상황 보고
- 개발위원회 창설
- 총회 승인을 요하는 권고안 검토

4. 회의 결과

- 계량계측 기술에 대한 국제표준기준 입수
- 국제표준화 도입은 향후 한국의 기술 발전 및 선진 기술 도입에 좋은 계기가 될 것임.
- 공업 기술의 매개체가 되는 계량계측 기술 향상은 국제 경쟁력 강화와 수출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ICCAT(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 제2차 특별회의 및 제11차 조사통계 상임위원회. Madrid(스페인), 1980.11.3.-18.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2010-48 / 8 / 1-121

정부는 1980.11.3.~18.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제2차 ICCAT(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 특별회의 및 제11차 조사통계 상임위원회 회의에 김종수 수산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제11차 ICCAT 조사통계 상임위원회 회의(1980.11.3.~11.)

- 참가 필요성
 - ICCAT 회원국으로서의 성실한 의무이행을 회원국에게 알리고 각국의 규제조치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여 한국출어선의 어로활동 촉진방안을 강구하고자 함.
- 정부 훈령
 - 대서양 해역의 자원상태 분석 및 검토 시 동 해역에서의 한국 다랑어 어획량이 가다랑어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감소상태에 있어 한국조업선의 활동이 어족자원 변동에 미치는 영향이 적음을 설명하여 규제조치가 대두될 경우 그 책임이 한국에 전가되지 않도록 할 것
 - ICCAT의 규제조치 관련, 한국은 가다랑어 연차사업과 병행하여 혼획률 조사 및 표본 수집을 강화할 것이며 규제조치의 철저한 준수를 위해 한국조업선 및 관련 종사자에게 적극적으로 지도 계몽하고 있음을 밝히고, 여타국의 국제조치 준수를 촉구할 것
 - 참다랑어 규제기간의 연장실시에 따른 추가 조치사항 및 향후 관련 규제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여 대책을 강구할 것
- 한국대표단 활동
 - 작년도 회의 시 한국어선이 지중해에서의 조업 어획량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비난이 있어 한국 정부에서 철저히 조사한 결과, 1979년도에 지중해에서 참다랑어 어업에 참여한 한국어선은 없었고 1980년도에서도 없음을 설명함.
 - 한국의 참치어업 및 자원조사 현황을 설명함.

2. 제2차 ICCAT 특별총회(1980.11.13.~14.)

- 참가 목적
 - 대서양 해역의 다랑어 보존을 위한 문제가 주로 논의될 예정인바, 한국의 실익 확보에 주력
 - 국제항 내 감시제도 운영 여부가 논의될 예정인바, 동 제도 실시가 연기되도록 노력할 것임.
- 회의 결과
 - 한국 참치기지선이 1975년 128척에서 1980.9월 말 70척으로 감소됨에 따라 분담금 감액 조치는 1979년 생산량 기준으로 한 계상을 1982년부터 감액조치함.
 - EEC(유럽경제공동체) 가입문제는 계속 토의가 진행될 것임.
 - 1980.11.13. 현재 1980년 분담금 미 납부국은 한국을 포함하여 6개국으로 납부가 독촉되었고, 한국 분담금은 72,927달러임.

IWC(국제포경위원회) 총회, 제32차. Brighton(영국), 1980.7.21.-26. 전2권 (V.1 사전준비)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국제법규

MF번호 2010-48 / 9 / 1-187

1980.7.21.~26. 영국 브라이턴에서 개최된 제32차 IWC(국제포경위원회, International Whaling Commission) 총회 관련 사전준비 내용임.

1. IWC 회원국(총 23개국)

- 포경국(11개국): 한국, 일본, 소련, 브라질, 덴마크,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칠레, 페루, 스페인, 스웨덴 등
- 비포경국(12개국):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세이셸, 캐나다, 아르헨티나, 파나마, 멕시코, 네덜란드,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2. R. Rindal 주그리스 노르웨이대사(IWC 노르웨이 위원) 방한(1980.5.20.~23.)

- 방한 목적
 - 제32차 IWC 총회를 앞두고 양국 입장 조정, 공동보조 가능성 타진 및 포경업 분야에서의 상호 협조 논의
- 주요 일정
 - 인천항만 시찰, 수산청장 예방, 수산청 생산국장·관계관 면담 및 만찬, 외무부 조약국장 면담 및 오찬, 용인 민속촌, 국립박물관 관람

3. 제32차 IWC 총회 참가계획

- 한국대표단: 김균현 수산청 생산국장(수석대표, IWC 위원) 외 수산진흥원, 포경조합, 외무부, 주영국대사관 관계관 등 6명
- 주요 의제
 - 원양 포경 중지(제31차 총회 결정사항) 실천방안, 포경업의 사회·경제적 추이
 - 상업 포경 전면 중지안, IWC 비회원국의 포경제한 방안, 포경 감시원 파견
- 한국의 기본입장
 - 영세·연안 포경업은 보호되어야 함.
 - 과학적 근거를 결여한 포경금지 확대에 반대함.

4. 참고자료

- 일본 포경협회의 “포경 전면 금지안”에 대한 Position Paper
- 프랑스·캐나다·미국 정부의 IWC 총회 시 의제에 대한 협조 요청 서한

IWC(국제포경위원회) 총회, 제32차. Brighton(영국), 1980.7.21.-26. 전2권 (V.2 결과보고)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국제법규

MF번호 2010-48 / 10 / 1-99

정부는 1980.7.21.~26. 영국 브라이턴에서 개최된 제32차 IWC(국제포경위원회) 총회에 김균현 수산청 생산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회의 결과

- 전면 포경 금지안
 - 찬성 13개국, 반대 9개국으로 채택에 필요한 3/4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
- Sperm Whale 포경 금지안
 - 일본의 최대 관심사인 동 금지안도 한국 등 포경국의 지원으로 부결
- 대만(구 자유중국)의 IWC 가입신청 부결
 - 비공개 수석대표 회의에서 토의 결과, 다수 대표가 대만을 정부로 인정하지 않아 옵서버 자격도 불허함. 중국(구 중공)은 대만의 가입에 반대하고 대신 자신들의 가입 의사 표명

2. 한국 관련 주요 결정사항

- 포경 쿼터
 - 작년과 같은 수준 확보: Minke 고래 연 940두, Bryde 고래 연 19두
- 포경 규제 강화
 - 포경 감독원을 추가하고, 한국 연안 고래에 대한 생물학적 자료를 제출하며, 조속한 시일 내 국제감시원제도에 참가할 것을 권고
- 대만산 고래고기 중계무역 건 설명
 - 일본이 IWC 비회원국인 대만산 고래고기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한국 중계무역업자가 개입된바, 한국 정부가 여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설명하여 회원국의 이해 획득

3. 참고자료

- 제32차 IWC 총회 참가보고(1980.8.4., 대통령 보고)
- 제32차 IWC 총회 참석보고(수산청)
- 제32차 IWC 총회 결과에 따른 조치(계획)(수산청)

CODEX(공동식품규격위원회) 회의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국제기구1

MF번호 2010-48 / 11 / 1-213

1980년 중 개최된 CODEX(공동식품규격위원회) 회의 관련 내용임.

1. 제1차 곡물 및 두류위원회(1980.3.24.~28., 워싱턴 D.C.)

- 개최 목적
 - 국제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곡물 및 동 가공품에 대해 품목별로 국제적으로 통용이 가능한 품질검사 기준을 설치함.
- 회의 결과
 - 제품별, 식성별, 국별로 거래 여건이 각각 달라 단일검사 기준을 설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차기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함.

2. 제27차 집행이사회(1980.10.13.~17., 제네바)

- 정부대표
 - 이동배 주이탈리아대사관 농무관
 - 강선용 주제네바대표부 2등서기관
- 주요 의제
 - 세계적 CODEX 규격기준의 제정 절차 개정안
 - 꿀에 관한 유럽지역 규격 표준안 수정 여부
 - 화학물질의 안전성에 관한 WHO(세계보건기구) 국제사업 추진 현황 보고
 - 식품에 대한 미생물학적 기준과 위생처리준칙 제정 추진상황
- 건의사항
 - 1981년 CODEX 회의 개최계획에 따른 한국 대표 파견계획 사전 수립
 - CODEX 업무 관련 국내 협조체제 강화
 - CODEX 산하 각종 위원회 참가 확대 및 회의보고서 사본 배포 확대

CDI(국제면화개발기구) 설립에 관한 작업단 회의, 제2-3차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2010-48 / 12 / 1-233

1980년 중 개최된 제2~3차 CDI(국제면화개발기구) 설립에 관한 작업단 회의 관련 내용임.

1. 제2차 회의(1980.3.17.~21., 제네바)

- 정부대표: 김시형 주제네바대표부 상무관, 김종우 상공부 섬유방적과장
- 주요 의제
 - 면화 생산국 및 비생산국 간의 투표권 배분 및 재정 부담금 문제
- 회의 결과
 - EC(구주공동체)는 투표권 배분을 50:50의 동등배분을 주장하였으며 저개발 생산국은 CDI의 조기 발족을 희망하는 면에서 이에 찬동함.
 - 한국대표단은 발언을 통해 한국은 원면의 수입과 동 제품 수출로 생산국과 소비국에 공히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개도국 면화 생산국 입장에 이해와 동정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함. 또한 CDI 설립에 있어서 의욕이 너무 앞서면 관계국 간의 이해가 첨예화함으로 적은 규모 내지 적절한 규모로 우선 발족함이 현실적이라고 건의하여 좋은 반응을 얻음.
 - 동 회의는 인도, 이집트를 비롯한 아프리카, 남미 국가의 저소득 면화 생산국 간에 설립 목적, 기능 등에 대하여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함으로써 CDI 설립에 실질적인 진전이 없었으며 제3차 작업단 회의를 재개최하기로 합의함.

2. 제3차 회의(1980.10.6.~11., 로마)

- 정부대표: 이동배 주이탈리아대사관 농무관, 유인봉 상공부 섬유원료과장
- 참가 목적
 - 원면 수입처의 다변화, 시장 확대, 통상·자원 외교 강화
 - CDI 창설에 대한 회의진행 상황 및 주요 쟁점 등 흐름 파악
- 주요 의제
 - 사업계획 검토, 회원가입 문제, 재정분담 문제, 의결권 문제, CDI 협약 검토

ICMMP(국제군진의학 및 약학위원회) 총회, 제23차. Santiago(칠레), 1980.12.1.-6.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국제기구2

MF번호 2010-48 / 13 / 1-58

정부는 1980.12.1.~6. 칠레 산티아고에서 개최된 제23차 ICMMP(국제군진의학 및 약학위원회) 총회에 조한구 육군 군의감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국제 군진(軍陣) 의학위원회 개요

- ICMMP는 제네바협약 정신에 따라 군 의료 종사자 간의 결속, 군 의료기술 향상 및 협력 증진을 위해 1921.7.21. 설립된 벨기에 리에주 소재의 국제 NGO
- 회원국은 한국 포함 85개국(북한 미가입)이며, ICMMP 의장은 총회 개최국에서 지정하고, 사무총장은 벨기에인만 가능
- 한국은 1954년 가입 이래 ICMMP 총회에 계속 참가하였으며, 1977년 서울에서 제35차 ICMMP 학술대회 개최

2. 참가 목적

- 개도국에서의 전염병 관리, 집단화상 발생 시 처리상 기술 및 치료 문제에 대한 학술토론 및 의견교환을 통하여 한국의 군 의학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3. 회의 결과

- 제24차 ICMMP 회의는 그리스 아테네에서 개최하기로 결정

비정부 간 국제기구에 대한 북한의 활동

생산연도 1978-1980

생 산 과 국제기구

MF번호 2010-48 / 14 / 1-126

1978~80년 중 북한의 비정부 간 국제기구 활동 동향임.

1. 외무부, 1978.6월 북한이 단독 가입한 비정부 간(민간) 국제기구 조사

- 세계에스페란토신문인협회, 국제석수(Masons)최고위원회, 국제수학연맹, 국제과학필름협회, 국제특수영화협회연맹, 세계과학노동자연맹, 국제민주변호사협회 등

2. 외무부, 1978.11월 북한이 가입한 국제기구 일람표 작성

- 북한 가입 유엔기구(유엔 직속기구, 유엔 전문기구)
- 북한 가입 정부 간 국제기구
- 북한 가입 비정부 간(민간) 국제기구(북한 단독 가입 기구, 한국·북한 동시가입 기구)
- 색인

3. 한국사태 관련, 국제기구를 통한 북한책동 현황(1980.7월 기준)

- ECOSOC(유엔경제사회위원회)-Category I, ECOSOC-Category II, ECOSOC-Roster, 기타 기구
- 기구 및 단체명, 책동 내용, 비교

APU(아시아의원연맹) 제16차 총회 및 제29차 이사회. Taipei(중국), 1980.10.5.-11.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아주총괄

MF번호 2010-48 / 15 / 1-107

정부는 1980.10.5.~11. 대만(구 자유중국) 타이베이에서 개최된 제16차 APU(아시아의원연맹) 총회 및 제29차 이사회에 서상린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국

- 회원국(한국, 일본, 대만, 필리핀, 태국) 6개국, 옵서버 15개국, 연맹 산하기관 등

2. 주요 의제

- APPU(아시아태평양의원연맹)로 연맹 명칭 개정 문제
- 옵서버국의 특수지위 부여에 따른 헌장 개정 문제
- 결의안 토의
 -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를 위한 긴급조치 강구를 촉구하는 결의안(일본 제의), 아시아태평양의 평화와 안전보장 수호를 위한 결의안(대만 제안),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대한민국에 대한 비방 중단과 대화 촉진을 촉구하는 결의안(한국 제안) 등

3. 회의 결과

- APU를 APPU로 개정
- 지금까지 옵서버국으로 참여해 왔던 다수 국가 및 비주권 태평양 도서 국가들에 단순한 옵서버 지위에서 준회원국으로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지위를 격상시키고, 연맹회의에서 표결권을 제외한 발언권 및 결의안 제출권 등 권리와 의무를 부여함.

4. 한국대표단 활동

- 정치위원장직 관철과 추가 결의안 공동제안 관철
- 폐회식 폐회사
- 장경국 총통 면담
- 통상 4, 5월에 개최되던 춘계이사회 개최시기를 1981년도 춘계이사회는 한국의 국내선거가 완료되고 신헌법에 의하여 신국회가 출범하는 7월 이후로 미루는데 대해 주최국인 대만과 연맹 중앙사무국 간에 원칙적으로 합의를 봄.

IPU(국제의원연맹) 총회, 제67차. Berlin(동독), 1980.9.16.-24. 전5권 (V.2 한국입장 지지 교섭, 5-8월)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국제기구2

MF번호 2010-49 / 2 / 1-254

1980.9.16.~24. 동독 베를린에서 개최된 제67차 IPU(국제의원연맹) 총회 관련 한국 입장 지지 교섭 내용임.

1. 국회 IPU 총회 사전교섭단 순방계획

- 순방 목적: 유력 국회의원과 IPU 집행위원 면담을 통해 한국 입장 지지 확보를 위한 사전 교섭
- 사전 교섭단 구성 및 방문국
 - 구주반(1980.9.4.~12., 프랑스, 벨기에, 스웨덴): 박준규 의원(단장), 갈봉근, 유한열 의원, 박종흠 국회사무처 국제과장(추후 박준규 의원 단독 방문으로 조정)
 - 미주반(1980.8.31.~9.11., 브라질, 베네수엘라, 캐나다): 이동원 외무위원장, 엄영달, 박정수 의원, 김주봉 전문위원(추후 미주반 순방계획은 취소)
 - 아·중동반(1980.8.31.~9.9., 스리랑카, 그리스, 튀니지): 김옥열, 이종률 의원
- 대표단은 순방 일정을 마치고 1980.9.12.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합류, 1박 후 9.13. 동베를린 향발

2. 각국 IPU 대표 대상으로 한국 입장 지지 확보 교섭

- 1980.7.26. 외무부, 북한의 선전 공세에 대처하고, IPU 총회에 참석하는 주요국가 대표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기 위한 각국 IPU 관계인사 대상으로 한국 입장 지지 확보 교섭 지시
 - 한국 IPU 의원단 회장대리 명의 각서(Memorandum) 활용 교섭
- 각 재외공관, 주재국 IPU 관계인사를 대상으로 한국 입장 지지 확보 내용 보고

3. 일본 사회당 의원의 IPU 사무총장 앞 한국 비난 서한 발송

- 1980.5.3. 일본 사회당 소속 Susumu Fujita 의원(참의원), '한국의 국회와 국회의원에 문제가 있으니, 한국 국회가 정상화되도록 최급하 대통령에게 IPU가 요청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전보를 Terenzio IPU 사무총장에게 발송
 - 동 의원은 IPU 사무총장 앞 메시지 내용을 5.23. 벨기에 IPU 측에도 통지

IPU(국제의원연맹) 총회, 제67차. Berlin(동독), 1980.9.16.-24. 전5권 (V.3 한국입장 지지 교섭, 9월)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국제기구2

MF번호 2010-49 / 3 / 1-201

1980.9.16.~24. 동독 베를린에서 개최된 제67차 IPU(국제의원연맹) 총회 관련 한국 입장 지지 교섭 내용임.

1. 국회 IPU 총회 사전 교섭단 활동내용

- 1980.9월 중 박준규 의장은 사전 교섭단의 프랑스, 그리스 등의 IPU 관계인사 면담을 통해 한국 입장 지지 교섭 활동 내용 보고
- 재외공관의 주재국 IPU 관계인사를 대상으로 한국 입장 지지 확보 내용 보고

2. 제67차 IPU 총회 대비 교섭 상황(1980.9.5., 외무부 국제기구국)

- 57개 재외공관의 교섭대상 인사에 대한 교섭 결과 수록

3. 제67차 IPU 총회 한국 입장 지지 교섭 상황(1980.9.13.)

- 총 회원국: 90개국
- 교섭 대상국: 57개국
- 각국 반응(57개국)
 - 지지 또는 협조 표명(38개국): 벨기에, 프랑스, 영국, 스웨덴, 독일(서독), 스페인, 튀르키예, 미국, 싱가포르, 이탈리아, 그리스, 덴마크, 네덜란드,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일본, 브라질, 포르투갈, 태국, 코스타리카, 파나마, 콜롬비아, 멕시코, 베네수엘라, 가봉, 코트디부아르, 세네갈, 부르키나파소(구 오토볼타), 케냐, 수단, 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 가나, 튀니지, 이집트, 호주, 카메룬, 스리랑카
 - 호의적 고려(6개국): 캐나다, 에콰도르, 레바논, 핀란드, 나이지리아, 인도
 - 중립적(3개국): 스위스, 요르단, 네팔
 - 지지 기대 난망(1개국): 방글라데시

IPU(국제의원연맹) 총회, 제67차. Berlin(동독), 1980.9.16.-24. 전5권 (V.4 결과보고)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국제기구3

MF번호 2010-49 / 4 / 1-287

1980.9.16.~24. 동독 베를린에서 개최된 제67차 IPU(국제의원연맹) 총회 결과 내용임.

1. 회의 결과

- 회의 기간 중 한국 의원단 자격 문제, 재판 중인 몇몇 한국 국회의원 인권문제를 거론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외교망을 통한 사전 교섭과 대표단 활동 및 1980.9.20. 국회가 소집된 점 등으로 동 문제의 공개적 거론 저지
- 북한의 사주를 받은 알제리, 쿠바, 모잠비크, 마다가스카르 등이 김대중 관계 결의안을 총회에 상정하고자 책동하였으나, 한국 측의 노력과 회의 절차상의 문제로 결의안 총회 상정에 실패
 - 다만, 총회 의장 명의의 진정서를 발송하기로 결정함으로써 회의 종결

532

2. IPU 총회 의장의 한국문제 전문 발송 관련 대책 검토

- 호소 전문 발송 경위
 - 제67차 IPU 총회, 1980.9.24. “김대중 사형선고에 우려 표명과 동시에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라는 의장(동독인)의 총회 보고 및 의장 명의 호소문을 한국 정부에 발송하도록 위임
 - 9.25. 접수된 IPU 총회 의장의 전문은 상기 수임 범위를 벗어나 “김대중 및 기타 인사의 즉각적인 석방 및 인권의 엄격 존중 호소 운운” 내용으로 변질
- 회답 및 이의 제기 여부
 - 총회 의장의 전두환 대통령 앞 진정 전보 발송에 대한 회답 여부 및 총회 보고와 동 전보 내용의 차이점에 대한 이의 제기 여부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할 만한 이유가 없음.

IPU(국제의원연맹) 총회, 제67차. Berlin(동독), 1980.9.16.-24. 전5권 (V.5 북한의 반한책동)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국제기구2

MF번호 2010-49 / 5 / 1-121

1980.9.16.~24. 동독 베를린에서 개최된 제67차 IPU(국제의원연맹) 총회 관련 북한의 반한책동 내용임.

1. 각국 국회 앞 반한 서한 발송

- 1980.6.23. 세계 각국 국회 앞 북한 최고인민회의 명의 반한 서한 발송 및 그 반응을 과장, 선전 책동
- 8.22. 외무부, 주재국 IPU 대표 측과 접촉, 북한 서한 접수 여부를 파악하고 동 기회에 주재국 IPU 대표단의 한국 측 입장 지지를 다짐받도록 지시

2. 북한대표단 각국 순방활동

- 제1진(1980.7.10.~25., 헝가리, 독일(구 동독), 폴란드)
 - 단장: 채희정 노동행정부장
- 제2진(1980.7.8.~8.5., 예멘(구 북예멘), 르완다, 부룬디, 리비아, 이라크)
 - 단장: 김일대 최고인민회의 교육위원장
- 제3진(인도, 방글라데시, 미얀마(구 버마))
 - 단장: 황장엽 최고인민회의 의장
- 허담 외교부장의 비동맹 8개국 순방(1980.7.13.~8.9.)
- 이창선 문화예술부장 비동맹 국가 순방(1980.7.15.~8.6.)

3. 제67차 IPU 총회에서의 북한 측 책동 전망

- 한국 국내사태 비방, 주한미군 철수 및 핵무기 등 군 장비 조속 철거, 김대중 등 석방 요구, 각국에 대한 북한의 자주평화노력 지지 요구
- 한국대표단 자격정지 문제 제기, 반한 결의안 채택 유도, 반한 정치적 발언 등

IPU(국제의원연맹) 이사회, 제126차. Oslo(노르웨이), 1980.4.7.-12.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국제기구2

MF번호 2010-49 / 6 / 1-131

정부는 1980.4.7.~12.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개최된 제126차 IPU(국제의원연맹) 이사회에 박준규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한국대표단을 파견함.

1. 대표단

- 박준규 의원(단장), 임영득 의원, 채문식 의원, 오세응 의원, 김옥열 의원, 정일영 의원, 국회 외무위 전문위원, 국회사무처 관계관

534

2. 참가자

- 75개국 559명 대표와 17개 기관 31명의 옵서버
 - 가나와 나이지리아의 신규가입으로 회원국은 90개국으로 증가

3. 회의 의제

- 국제안보, 군축 및 핵 비확산 문제
- 피난민 문제, 제3차 유엔개발 10년대 문제, 비식민화 달성 및 인종차별 문제

4. 회의 결과

- 한국대표단 발언 내용
 - 김옥열 의원: 정치위원회의 긴장완화(데탕트) 관계 토론에서 남북대화의 경과와 한국 입장을 설명하고, 북한의 NPT(핵확산금지조약) 미가입 사실을 지적
 - 임영득 의원: 경제 관계 연설에서 선진·개도국 간 유류 차등 가격제 적용 제의
 - 정일영 의원: 피난민 관계 토론에서 세계의 피난민 실태를 개관하고 인도적 입장에서 각국이 피난민 문제의 해결에 협조할 것을 촉구, 6·25 당시 월남한 피난민 500만 정착에 10년 소요 사실 언급
 - 박준규 단장: 식민지 관계 연설에서 짐바브웨(구 로디지아)의 독립에 축의를 표하고 나미비아의 독립을 위해 한국 정부가 정신적, 정치적, 물질적 지원을 계속할 것을 다짐
- 북한대표단 발언 내용
 - 최수현 북한대표는 정치위원회 및 경제위원회에서 연설, 대부분 종래의 주장을 반복하는 데 그쳤으나, 정치위원회 연설에서 한반도의 비핵지대화 주장

S.I.(국제사회주의연맹) 집행이사회. Oslo(노르웨이), 1980.6.12.-13.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구주총괄

MF번호 2010-49 / 9 / 1-147

1980.6.12.~13.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개최된 S.I.(국제사회주의연맹) 집행이사회 관련 내용임.

1. S.I. 당 지도자 회의(1980.2.5.~6., 오스트리아 비엔나)

- 참가국
 - 영국, 프랑스, 독일(구 서독), 이탈리아, 벨기에, 덴마크,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이스라엘, 일본, 한국, 스리랑카, 미국, 칠레, 그레나다, 모리셔스, 튀니지, 소련, 폴란드 등(24개국)
- 주요 참가자
 - Brandt(독일 사회당수), Kreisky(오스트리아 사회당수), Callaghan(영국 노동당수), Ecevit(튀르키예 민주좌파당수) 등
 - 한국 및 북한대표 불참
- 주요 의제
 - 군비 축소 문제, 아프가니스탄 문제, 올림픽 문제, 기타 사하로프 문제, 이란의 미국대사관 인질 석방 요구

2. S.I. 집행이사회(1980.6.12.~13., 오슬로)

- 참가자
 - Brandt(주재), Palme(스웨덴 사민당수), Ecevit(튀르키예 민주좌파당수), Gonzales(스페인 사회노동자당수), Soares(포르투갈 사회당수), Mitterand(프랑스 사회당수) 등 100여 명
 - 일본 소재 “한민통” 간부 배동호 등 3인이 주일본 노르웨이대사관에서 여행증명서를 발급받고, 일본 정부의 재입국 허가를 얻어 동 회의에 옵서버로 참석
 - 한국사태 관련 성명 발표 및 회의장 로비에 광주사태 관련 사진 전시
- 회의 결과(16개항의 성명을 채택하고 폐막)
 - 성명 주요 내용: 동서 긴장완화, 이란 인질, 아프가니스탄 문제, 중남미 문제, 짐바브웨 문제, 남북문제 등
- 한국문제 관련 성명 요지
 - 한국 내 탄압 증대를 지적하고 학생 및 평화적 시위자에 대한 무자비한 진압에 깊은 우려 표명
 - 야당 지도자 김대중 석방 요구, 망명 한국인들의 반정부 활동인 한민통에 대한 지지 표명 등
- 동 회의에 통일당 및 한민통이 신규 가입 신청을 하였으며, 최종 결정은 1980.11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되는 S.I. 총회에서 결정

S.I.(국제사회주의연맹) 총회, 제15차. Madrid, 1980.11.13.-16. 전10권 (V.1 대책 및 교섭, 6월-8.19.)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국제기구2

MF번호 2010-49 / 10 / 1-176

1980.11.13.~16.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제15차 S.I.(국제사회주의연맹) 총회 관련 대책 및 교섭 내용임.

1. S.I. 총회 대책(1980.7월, 외무부 국제기구국)

- 문제 제기(한민통의 S.I. 준회원 가입 문제, 한국문제 거론 가능성 등), 현재까지 취한 조치, 총회 대처를 위한 실질적 조치방안(S.I. 사무국, 스페인, 일본, 구주국가 대상 교섭, 총회 대책)

536

2. S.I. 총회 대책(1980.8.4., 외무부)

- S.I. 성격, S.I. 예정 회의, 한국의 추진 목표, 대처방안

3. 한민통 S.I. 준회원 가입책동 저지 활동

- 1980.7월 외무부, 마드리드 S.I. 총회 시 반한 친북단체인 한민통의 S.I. 준회원 가입을 저지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도록 주스페인대사에게 지시

4. 제15차 S.I. 총회(1980.11.13.~16., 마드리드) 대책(1980.10월, 외무부)

- S.I. 성격, 회의 일정 및 의제, 대책 시행 중간 결과, 전망, 대책, 건의

5. S.I. 사무총장 면담 내용(1980.8.18., 주영국대사관)

- 1980.8.15. 선준영 주영국대사관 참사관, Carlsson S.I. 사무총장 면담
 - S.I. 집행위원회(1980.6월)에 한민통 참가 경위, S.I. 마드리드 총회에 김대중 초청 문제, 한민통 준회원 가입 문제, S.I. 사절단 방한 문제 등 협의

S.I.(국제사회주의연맹) 총회, 제15차. Madrid, 1980.11.13.-16. 전10권 (V.5 각국에 대한 교섭, 6-8월)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국제기구2

MF번호 2010-50 / 1 / 1-126

1980.11.13.~16.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제15차 S.I.(국제사회주의연맹) 총회 관련 각국에 대한 교섭 내용임.

1. 각국의 S.I. 회원 정당 대상 홍보활동 전개

- 1980.6.17. 외무부, 한민통의 S.I. 준회원 가입책동과 관련, 주재국의 S.I. 회원 정당 대상 아래 사항에 관해 적극 홍보활동을 전개하도록 재외공관에 지시
 - 최근 국내사태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불식하도록 설득하고 마드리드 총회에서 한국문제가 거론되지 않도록 할 것
 - 한민통은 성격상 S.I.의 목적과 정신에 부합되지 않아 북한이나 조총련과 같이 가입 자격이 결여되어 있는 단체임을 주지시킬 것

2. S.I. 대책 관련 S.I. 회원 정당 조사

- 1980.7.14. 외무부, S.I. 대책 수립에 참고하고자 각국의 S.I. 회원국 정당에 대한 조사, 보고를 지시
 - 정당의 강령 및 정치 성향과 한국에 대한 태도
 - 정당 지도자 성명
 - 정당 지도자 등 간부 요원들과의 접촉 실적 유무 및 접촉선 역할을 할 수 있는 주재국(검임국) 내 한국인사 및 친한(협회)인사

S.I.(국제사회주의연맹) 총회, 제15차. Madrid, 1980.11.13.-16. 전10권 (V.6 각국에 대한 교섭, 9-11월)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국제기구2

MF번호 2010-50 / 2 / 1-146

1980.11.13.~16.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제15차 S.I.(국제사회주의연맹) 총회 관련 각국 교섭 내용임.

1. 총회 대책

- 1980.9.2. 외무부, 주재국(겸임국) S.I. 회원 정당의 주요 지도자 및 총회 참가 대표를 접촉, 아래내용의 지지 확보 교섭을 시행하도록 해당공관에 지시
 - 친북한 반한단체인 한민통의 S.I. 총회 참가 및 가입 저지
 - 한국문제가 안건으로 상정되거나 토의되지 않도록 협조 획득
- 9.25. 외무부, 마드리드 총회 시 기조연설자 또는 동인의 소속 정당이 김대중 문제에 관해 취한 입장과 그 내용, 동 문제에 관한 새로운 입장표명이 있을 경우 보고하도록 해당 공관에 지시
- 10.16. 외무부, S.I. 총회에서 거론이 예상되는 한국 관련 문제(김대중 관련 인권문제, 김대중 S.I. 총회 초청문제, 한민통 S.I. 준회원 가입문제)에 대한 한국 입장 통보
 - 주재국(겸임국) S.I. 정당의 총회 참석 대표단 구성 및 참석인사의 성분 등을 보고하도록 지시

2. 북한사절단 구주 방문 저지

- 1980.7월 주스페인대사관, 북한 노동당 고위사절단(단장: 김영남 노동당 국제부장 겸 중앙위 위원)이 스페인을 방문하고자 스페인 공산당 초청으로 주소련 스페인대사관에 입국사증 신청을 하였다고 외무부에 보고
- 11.3. 외무부, 상기 북한사절단이 스페인 이외 국가에 입국할 가능성이 있음을 감안, 관련국 정부 인사와 접촉하여 북한사절단 입국을 저지하고, 저지하기 어려울 경우 그들의 정치적 행동을 극소화하도록 노력할 것을 지시
 - EC(구주공동체) 주재 공관(덴마크 제외), 그리스, 튀르키예
- 11.11. 외무부, 주노르웨이대사의 보고를 인용, 북한 김영남 일행이 11.9. 덴마크를 방문하였음을 주덴마크대사에게 통보하고 스페인대사관과 접촉하여 이들에게 스페인 입국사증이 발급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지시
 - 주덴마크대사는 11.11. 현재 북한사절단의 입국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고
 - 주오스트리아대사는 11.14. 김영남 일행이 11.11. 비엔나를 경유하여 마드리드로 향할하였음이 확인되었다고 보고

S.I.(국제사회주의연맹) 총회, 제15차. Madrid, 1980.11.13.-16. 전10권 (V.9 회의문서)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국제기구2

MF번호 2010-50 / 5 / 1-227

1980.11.13.~16.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제15차 S.I.(국제사회주의연맹) 총회 관련 회의 자료임.

1. Congress Resolution
2. Willy Brandt 독일(구 서독) 사민당 당수(S.I. 의장) 연설문
3. Felipe Gonzalez 스페인 사회노동자당 당수 연설문
4. S.I. 사무총장 보고서
5. 일본 사회당 당수 연설문(군비통제 및 군비 축소)
6. 의장단 명단
7. S.I. 총회 참가자 명단
8. S.I. 회원 정당 및 기구 명단
9. 김철 통일사회당 대표 연설문
 - 연설문 초안 및 최근 한국 정치 상황, 광주사태 등 포함
10. S.I. 총회 프로그램, Press Service
11. El Salvador, Guatemala에 관한 결의안, Bolivia와 연대

S.I.(국제사회주의연맹) 총회, 제15차. Madrid, 1980.11.13.-16. 전10권 (V.10 참고자료)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국제기구2

MF번호 2010-50 / 6 / 1-172

1980.11.13.~16.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제15차 S.I.(국제사회주의연맹) 총회 관련 참고 자료임.

1. S.I. 집행위(1980.6.12.~13., 오슬로) 결과보고서

- Brandt 연설문 중 한국 관계 부분 포함
- 오슬로 집행위원회 최종 성명서(한국문제 관련 제13항 포함)
- S.I. 총회 문서
- S.I. 소개 자료
- S.I. 기술적 정보
- 잠정 의제에 관한 메모랜덤
- 오슬로 집행위원회 참가자 잠정 명단(한민통, 통사단 명의 등재)
- 일본 가톨릭정의평화협의회 제출자료: 광주사태 관련 정보
- 한민통 관련 자료
- 오슬로 S.I. 집행위 시 한국문제 관련 결정사항
- S.I. 인권에 관한 스터디그룹 보고서

2. 미국 사민당 회장으로로부터 입수한 자료

- 일본 사회당이 동 회장에게 보낸 서한
- S.I. Press Release
- General Circular
- Main Resolution Draft

3. 총회 자료

- Circular, Main Resolution Draft, Press Release
- 마드리드 총회 결의안 관련 문서

A.I.(국제사면협회) 대응활동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국제기구

MF번호 2010-50 / 7 / 1-89

1980년 중 A.I.(국제사면협회) 대응활동 관련 내용임.

1. A.I. 한국 인권 관련 비난기사 보도

- 1980.2.12. 독일 Die Welt 신문은 국제사면위 독일(구 서독) 지부가 발표한 한국 인권 관계 홍보자료를 인용, 한국에서의 인권 침해는 박정희 대통령 사망 후에도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기독교 세력에 대한 검거 선풍이 일고 있다고 보도함.
 - 김재규 등 박 대통령 시해 사건 관련자 6인의 처형 반대
 - 긴급조치 제9호 해제 이후에도 정치적 집회가 금지되고 있으며, 정치적 이유에 의한 기독교 인사 등 잠재적 반대세력에 대한 검거 선풍 계속
 - 김지하 시인은 자신의 의사 표명을 이유로 반공법 위반으로 사형선고를 받았으나, 이후 20년 징역형으로 감형됨. 동인은 1979.11월 폐결핵으로 교도소 의료기관에 이송되었으나 적절한 의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바, A.I.는 동인의 석방을 위해 노력 중
- 동 지부가 성명을 발표한 것은 통상적인 지부활동의 일환에 불과하고 특별한 계기가 될 배후사정은 별무
 - 독일은 유럽에서 영국, 오스트리아 등과 함께 사형제도가 폐지된 국가 중 하나임에 비추어 동 성명을 발표한 것으로 추정

2. 남민전 관련자에 대한 사형선고 재고 청원

- 남민전 관련 사건으로 서울형사지법에서 이재문, 안재구, 최석진, 신항식이 사형선고를 받았다는 1980.5.2. 로이터 통신보도 이후, A.I. 가입자인 인도 외 5개국(미국,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 국민은 상기 4명의 피고인에 대해 사형선고를 재고하여 감형해 줄 것을 청원
- 법무부 인권담당 과장 명의 회한으로 "동 문제는 현재 한국고등법원(Court of Appeal)에 계류 중이므로 법무부로서는 거론할 수 있는 입장에 있지 않다"고 답신 내용 작성

3. 자료

- 한국의 인권 위반에 관한 A.I. 보고서

ICJ(국제법률가위원회) 인사 방한 요청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북미

MF번호 2010-50 / 8 / 1-21

1980년 중 ICJ(국제법률가위원회) 인사의 김대중 재판 참관을 위한 방한 요청 관련 내용임.

1. 김대중 재판 참관 희망 단체

- ICJ
- A.I.(국제사면위원회)

2. 김대중 재판 참관 관련 동태

- 1980.7.22. William Butler ICJ 회장은 주미국대사에게 김대중 재판 시 ICJ 직원 1~4명의 참관 희망을 피력하고, 아울러 법무부장관에게 상기 희망 서한을 발송
- A.I.는 한국의 인권문제 확인 및 관계인사 면담차 대표단 2인의 한국 파견을 희망

3. 조치 내용

- ICJ 방한 요청
 - ICJ 방한이 한국의 인권상황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줄 우려가 있음을 감안, 사증발급을 불허하도록 지시
 - 아울러 향후 여사한 경우 동 방침에 따라 적의 처리하도록 지시
 - 주미국대사, 1980.8.1. Mr. Lakewood의 비자발급 신청 거부
- A.I.의 한국 파견 요청
 - 사증발급을 불허하고, 면담 요청은 시기상 부적절하다며 방한 연기를 종용

INTERPOL(국제형사경찰기구) 총회, 제49차. Manila(필리핀), 1980.11.13.-21.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국제기구2

MF번호 2010-50 / 9 / 1-71

정부는 1980.11.13.~21.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제49차 INTERPOL(국제형사경찰기구) 총회에 이균범 치안본부 제3부 수사지도과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자

- 98개국 대표 306명 및 9개 유관기관 대표

2. 주요 토의 내용

- 신규회원 가입 신청 승인: 보츠와나, 지부티, 기니, 짐바브웨
- 한국대표단은 짐바브웨에 대해 기권, 여타국은 찬성
- 업무 보고
- 국제통화 위조, 국제사기, 소년 범죄
- 환경보호, 일상 업무 협조 및 범죄예방 등

3. 주요 결의사항

- 마약 불법거래 단속, 강력범 전문가위원회 구성, 해외 업무 수행에 있어 각국 간 협조

4. 한국대표단 발언 내용

- 위조지폐 압수 보고, 각 회원국 간의 정보 교환에 감사 표시
- 한국 마약사범 실태, 한국에서의 총기 단속 현황 보고
- 주민으로 구성된 방범위원회 활동 보고

INTOSAI(국제최고회계감사기구) 총회, 제10차. Nairobi(케냐), 1980.6.16.-25.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국제기구2

MF번호 2010-50 / 10 / 1-274

1980.6.16.~25.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제10차 INTOSAI(국제최고회계감사기구) 총회에 동홍욱 감사원 사무총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회의 의제

- 예산 회계 및 재정 통제 관련한 전산제도의 적용
- 개도국에 있어서 현대회계감사기법의 채택 및 적용
- 국제적 및 초국가적 분야에 있어서의 정부회계감사
- 공기업의 능률과 성과 통제

544

2. 참가 목적

- 한국은 ASOSAI(아시아지역 최고회계감사기구) 이사국으로서 제2차 ASOSAI 총회 및 국제세미나(1982년)를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금번 회의 참석을 계기로 다수 회원국과 동 회의 개최 준비계획을 사전 협의함.
- INTOSAI를 통한 각국 감사의 전산화 추진 방향을 검토하고, 한국에 적합한 새로운 회계감사기법의 채택 및 도입을 추진함.

3. 회의 결과

- INTOSAI 사무총장 교체 예정 보고
 - 현 사무총장인 오스트리아 감사원장의 임기 만료로 동 후임 원장이 신임 취임 예정
- INTOSAT 각 지역그룹 활동 보고

4. 한국대표단 활동

- 대표단 일행은 주제 발언, 토론 참가와 결의안 기초 위에서의 주도적인 역할 및 아시아지역 대표로서의 폐회 연설 등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함. 특히 탄자니아, 잠비아 등 미수교국 대표들과 활발히 접촉함.

EROPA(동부지역공공행정기구) 집행이사회, 제24차. Manila, 1980.12.12.-13.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국제기구2

MF번호 2010-50 / 11 / 1-32

정부는 1980.12.12.~13.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제24차 EROPA(동부지역공공행정기구) 집행이사회에 김형준 중앙공무원교육원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파견 목적

- 지역 내 회원국 간의 경제사회발전계획 수행을 위한 효과적인 행정제도에 관한 논의 및 협력 강화
- EROPA 산하기구로 한국에 설치된 조직관리센터의 사업실적 보고 및 중앙공무원교육원의 현황 보고
- EROPA 활동 실적 심의, 사업계획 수립 참여 및 기타 공통 관심사 논의

2. 정부 훈령

- EROPA의 State Member 가입은 기구 규정상 집행이사회 권고에 의해 총회(2/3 찬성, 1981년 개최 예정)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인바, 금번 집행위에서 논의될 네팔 가입은 한·네팔 간 관계 및 회원 확대에 따른 본 기구 활성화에 유익할 것으로 보고 이를 지지하도록 할 것

3. 회의 결과(영문) 수록

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 총회, 제45차. Stockholm, 1980.6.2.-13.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국제기구2

MF번호 2010-50 / 12 / 1-157

정부는 1980.6.2.~13.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제45차 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 총회에 한재열 공업진흥청 차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 목적

- IEC 규격의 국제화, 선진화를 위한 방안 및 정보자료 수집
- 이사회 및 집행위원회의 모든 안건 토의에 참여
- 관련 전문위원회에 참가하여 규격화를 위한 토의 과정에 참여

546

2. 총회 결과

- 미국의 W. A. McAdams를 차기 총재로 선출
- 집행위원국 선출
 - 영국, 이탈리아, 중국(구 중공), 세르비아(구 유고)
- 1979년 결산안 및 1981년 예산 승인
 - 한국 부담금은 62,058프랑에서 64,880프랑으로 증가
- 차기 회의는 1981.6월 스위스 몽트뢰 개최 결정
- Lightning Protection TC 창설 결정, CMC(검증관리위원회) 예산 원안대로 통과 등

WEC(세계에너지회의) 총회, 제11차. Munchen(독일), 1980.9.8.-12.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국제기구2

MF번호 2010-50 / 13 / 1-19

정부는 1980.9.8.~12. 독일 뮌헨에서 개최된 제11차 WEC(세계에너지회의) 총회에 권영달 동력자원부 조사과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 목적

- 에너지와 사회, 에너지와 환경 등 제요인과의 상호 관련성에 관계된 에너지의 장기 안정수급에 대한 주제를 다룸.
- 각 기술토론회에 참석하여 에너지의 수급 및 보존, 대체에너지 개발과 전망 등에 대한 의견 교환 및 연구 현황 파악
- 개도국의 에너지 확보 문제
- 각 에너지원의 오일 대체에 따른 기술적·경제적 문제점 연구 토론
- 석탄 수요 증가에 대비, 증산 및 국제적 교역에 따른 투자, 수송 등 토론
- 원자력에너지 개발, 공급 및 이에 따른 문제점 파악
- 에너지 자원의 수요, 공급 및 보존에 대한 연구 토론

2. 회의 경과

- 64개국의 4,800명이 "Energy for Our World"를 명제로 에너지 공급, 에너지와 사회, 에너지와 환경에 관한 각종 분과 세미나 진행
 - 이와 관련하여 164개종 분과별 연구보고서가 본회의를 계기로 발간
- 1980.9.8. 총회 개최식에서 Schmidt 독일 총리와 Strauss 기민당 총리 후보는 세계 에너지원을 석유에서 탈피하기 위하여 석탄과 핵에너지 사용을 점진적으로 증진시켜야 하며, OPEC(석유수출국기구) 회원국은 유가 인상으로 치명적인 타격을 받은 개도국에 좀 더 적극적인 개발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주장

3. 신규 회원국 가입에 대한 한국 입장

- 짐바브웨: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 중이므로 짐바브웨 가입에 찬성
- 리비아: 의료, 건설 등 부문에서 협력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리비아 가입에 찬성
- 베트남: 아세안 국가가 찬성하는 경우 한국도 찬성, 아세안 국가가 기권 또는 반대하는 경우 한국도 기권

CIOFF(국제민속예술제 조직위원회) 가입

생산연도 1978-1980

생 산 과 국제기구

MF번호 2010-50 / 14 / 1-58

1978~80년 중 한국의 CIOFF(국제민속예술제조직위원회) 가입 관련 내용임.

1. 가입 경위

- 1978년 가입 시도
 - 모스크바 집행위 및 불가리아 총회에서 부결
 - 가입 희망국 증가로 가입원칙이 가입 희망국에서 국제민속예술제 개최 경력이 있는 국가로 제한
- 1979년 가입 시도
 - 벨기에 총회에서 부결
- 제10차 CIOFF 총회(1980.5.29.~6.1., 핀란드 탐페레)에서 한국 가입 결정
 - 표결 결과: 찬성 20, 반대 5

2. 제10차 CIOFF 총회(1980.5.29.~6.1., 탐페레)

- 참가국
 - 31개 정회원국 중 26개국
 - 장덕상 주프랑스대사관 문화원장(옵서버 참석)
- 주요 내용
 - 집행위원 개선(프랑스 등 7개국): 소련이 처음으로 집행위에 진출함. 집행위원 임기는 3년
 - 회칙 개정안 토의: CIOFF 조직 목적과 원칙을 지지하고 CIOFF 내규에 규정된 바와 같이 '정기적으로 적어도 1개 이상의 국제민속예술제를 개최하고 있는 나라만이 정회원국이 될 수 있다'라고 회칙 개정
 - 한국 가입 결정: 찬성 20, 반대 5
 - 차기 총회 개최지 결정: 1981.6.14.~24. 독일(구 동독) 칼마르크스슈타트에서 개최
 - 스위스 대표의 강연회인 '국제민속예술제의 문화적 정신'에서 1978년 Fribourg(스위스) 페스티벌에 참가한 한국의 봉산탈춤 공연 장면을 보여주고, 이두현 교수의 강연 내용 소개
- 건의사항
 - 금번 한국이 CIOFF 정회원국으로 가입함으로써 1981.6월 개최 예정인 CIOFF 총회에 참석할 때는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 특히 동 총회가 동독에서 개최된다는 점에 유의하여 동독에 민속예술단 파견 준비
 -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 CIOFF 한국위원회 조직

한국의 제34차 CISM(국제군인체육대회) 총회 참석 추진. 전2권 (V.1 1979년도)

생산연도 1979-1980

생 산 과 국제기구2

MF번호 2010-50 / 15 / 1-260

1979년 중 한국의 제34차 CISM(국제군인체육대회) 총회 참석 추진 관련 내용임.

1. CISM 총회(1980.1.6.~14., 베이징) 참석문제(1979.11.9.)

- 개최 경위
 - 1979.1월 제33차 총회 시 중국(구 중공)이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중국의 제34차 총회 개최 제의가 수락됨.
 - 1979.5월 집행위 회의 시 중국 대표는 제34차 총회에 한국대표단 초청 거절 의사를 표명, 동 집행위는 한국대표단을 초청하지 않을 경우 동 총회 취소 및 타 회원국이 유치하기로 결정하고, 중국 측에 동 결정을 통보
 - 1979.6.16. 중국 측은 한국대표단의 중국 입국 거절 회신
 - 1979.7.11. CISM 사무국은 중국의 제34차 총회 주관을 물수, 동 총회를 1979.12.9.~15. 로마에서 개최하기로 추진
 - 1979.7~8월 중국 측은 CISM 사무국과 총회 개최와 관련 수차 비공식 접촉
 - 1979.9.16.~27. CISM 총재 및 사무총장, 중국 방문: 중국 측의 태도 변경으로 한국대표단 초청을 수락함(북한과의 국교 관계를 고려하여 한국 초청에 대한 보안 유지 당부)에 따라 베이징에서 개최하기로 결정

2. 한국대표단, 제34차 CISM 총회 참석 추진

- Baiyoke CISM 재단 부이사장은 당초 1979.12.17. 또는 12.18. 중 방한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바 있으나, 12.19. 현재까지 방한하지 않고 있음.
- 12.20. 중국에 도착해야 하므로 12.19. 방한할 수 없는 경우, 중국으로 직행 예정이라고 함.
- 한국 입장 전달: Baiyoke의 중국 직행 가능성에 대비하여 국방부를 통하여 아래의 메시지를 동인에게 전달하여 중국 당국에 통보하도록 함.
 - 중국 당국은 당초 언약에 따라 한국대표단에 대한 제34차 CISM 총회 참가 초청장을 지체 없이 발급할 것과 대표단 회의 참석에 관한 입국사증 발급 등 세부사항을 알려줄 것을 요청함.

한국의 제34차 CISM(국제군인체육대회) 총회 참석 추진. 전2권 (V.2 1980년도)

생산연도 1979-1980

생 산 과 국제기구2

MF번호 2010-50 / 16 / 1-137

1980년 중 한국의 제34차 CISM(국제군인체육대회) 총회 참석 추진 관련 내용임.

1. Han FuDong CISM 중국 측 수석대표 서한

- 1980.1.8. Baiyoke CISM 재단 부이사장과 중국 측 수석대표인 Han FuDong은 CISM 베이징 총회에 한국대표단이 참석하지 않도록 설득 이해시켜 달라는 요지의 서한 제시

2. 제34차 CISM 총회 사후 문제점

- 한국 대표(국방부 전형일 소장)의 CISM 사무총장 앞 항의 공한(1980.1.24.자) 요지
 - 한국 초청 없이 제34차 베이징 총회가 개최된 데 유감 표명
 - 중국이 정치적 이유로 한국을 불초청한 것은 CISM 규약 위반임을 지적
 - 본건에 관해 사무총장의 해명 요구
- CISM 사무총장의 회신(2.18.) 요지
 - 한국 불참으로 야기된 사태는 집행위의 관심사로 이를 차기 집행위(1980.5.9.~15., 바레인) 의제로 삼입할 생각
 - 집행위에서 유사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강구 확신

3. 제1차 CISM 집행위원회 회의(1980.5.11.~16., 바레인)

- 참가자: 국방부 인사국 차장인 정탁 준장 외 1명
- 참가 범위: 15개국 26명(중국 불참)
- 주요 결정사항
 - 중국의 CISM 총회(1980.1.6.~14., 베이징)에서 한국 참가 거부 문제: 동 사실을 CISM 81 연감에 기록하도록 하고 각종 행사는 주최국 고위당국자 보장을 확인 후 집행되도록 제도화
 - 임원 선출: 부총재(브라질), 집행위원(미국, 시리아)
- 한국대표 집행위 연설 요지
 - 한국 불초청은 CISM 규정 위반
 - 어떤 국가 또는 단체도 동 건에 관해 하등의 해명 없음에 실망 표시
 - CISM 정신에 정치적 문제를 개입시키는 어떤 국가도 CISM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의견 제시

EAHC(동북아수로위원회), 제3차. 서울, 1980.9.2.-5.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국제기구2

MF번호 2010-50 / 17 / 1-67

정부는 1980.9.2.~5. 서울에서 개최된 제3차 EAHC(동북아수로위원회)에 김문선 교통부 수로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국

- 정회원국: 인도네시아, 일본, 태국, 필리핀
- 옵서버국: 중국(구 중공),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IHO(국제수로국)

2. 중국 초청 문제 검토

- 타 위원국들의 컨센서스 존중 및 대중국 관계 개선 정책에 따라 중국 초청
 - 한국의 중국 초청 시 상호주의 원칙(그간 국제회의 시 중국이 취한 대한국 태도, 중국의 참가 가능성 등 고려)에 따라 한국 측의 명시적 초청의사를 노출하지 않는 방법을 택함.
- 중국 초청에 대한 한국 입장에 비추어 국제회의 개최 시 미수교국을 초청하는 관례적인 경로인 IHO 사무국을 경유하는 전달방법을 택함.
 - IHO(모나코) 사무국 경유
 - 회의 일시 촉박에 따른 문제점
 - EAHC의 모기구로 직접적 연관성 미약
 - EAHC 사무국 경유
 - 시기적으로 적합
 - 일본 측이 자발적 협조 제공 의사 표명

3. 주요 의제 및 의결사항

- 회원국의 활동 보고
- EAHC 정관 개정
- 세계무선 항행경보에 관한 협력 관계: 구역 조정국인 일본이 1980.4.1.부터 개시한 세계무선 항행경보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책자를 간행하여 회원국에 배포
- 일본에서의 연구교육 문제
- 국제협력 및 자료 교환
- 차기 회의 부의장 선출: 차기 회의는 필리핀에서 개최, 회의 부의장은 태국으로 선출

한·독일 간의 재정협력에 관한 협정. 1980.2.18. 서울에서 서명: 발효(조약 제704호)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조약

MF번호 2010-50 / 18 / 1-60

1980년 중 한·독일 간의 재정협력에 관한 협정 체결 관련 내용임.

1. 교섭 경위

- 1979.5월 제9차 한·독일 경제실무회의(서울)에서 차관 제공 합의
- 1979.9월 양측, 문안 합의

2. 체결 의의

- 우유 가공공장 건설과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통하여 낙농업과 중소기업들 각각 육성, 발전시킴.

3. 주요 내용

- 독일 측은 한국의 우유 가공공장 건설 및 중소기업 육성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3,276만 5천 마르크(약 1,755만 9천 달러) 재정차관을 제공함.
- 차관의 사용 및 조건은 차주와 독일재건은행 간에 체결될 계약에 의함.
- 한국 정부는 독일재건은행에 대하여 조세 및 공과금을 면제함.
- 인원, 물자의 수송수단 자유선택 및 독일운송업체의 평등한 참여 보장, 공급품 및 용역 조달은 국제공개경쟁입찰에 의함.

4. 동 협정은 1980.2.18. 박동진 외무부장관과 칼 로이터리츠 주한 독일대사 간에 서명되어, 동일자로 발효됨(조약 제704호).

한·캐나다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 방지를 위한 협정. 전3권. 1978.2.10. 서울에서 서명: 1980.10.19. 발효(조약 제725호) (V.1 1974-75)

생산연도 1974-1981

생 산 과 조약1 / 경제협력1

MF번호 2010-51 / 1 / 1-409

1974~75년 중 한·캐나다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 방지를 위한 협정 체결 추진 관련 내용임.

1. 제1차 실무자회의(1975.1.20.~24., 서울)

- 수석대표
 - 한국 측: 최진배 재무부 세제국장
 - 캐나다 측: Coulombe 재무부 국제조세담당 보좌관

2. 제2차 실무자회의(1975.9.2.~5., 캐나다 오타와)

- 수석대표
 - 한국 측: 조중형 재무부 세제국 국제조세담당관
 - 캐나다 측: Coulombe 재무부 국제조세담당 보좌관

3. 실무자회의 합의사항

- 대상조세
 - 한국 측: 소득세, 법인세
 - 캐나다 측: 연방소득세
- 항구적 시설의 범위
 - 예외적으로 6개월 이상 존속하는 건설공사와 이와 관련한 6개월 이상의 기술용역 제공의 경우
 - 연예인 및 직업운동가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항구적 시설로 보지 않고 인적용역소득으로 과세
- 항구적 시설로 간주하는 종속대리인
 - 계약 체결권을 가진 종속대리인
 - 상품 재고를 보유하고 상시 상품을 인도하는 대리인
- 투자소득(배당, 이자 및 사용료)에 대한 과세원칙에 합의(15% 경감세율)
- 지점에 대한 추가 과세규정은 합의 의정서에 규정
-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자유직업소득)에 대한 과세원칙은 근로소득에 준하여 과세함.
- 이중과세회피 방법
 - 캐나다 법인 배당소득은 면세
 - 기타 제반소득은 세액공제 방법 적용
 - 기타 배당, 이자, 사용료에 대해서는 협약상의 경감세율 적용
- 학생, 훈련생에 대하여는 한국 측에 유리한 안 합의, 합의 의정서에 규정

한·캐나다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 방지를 위한 협정. 전3권. 1978.2.10. 서울에서 서명: 1980.10.19. 발효(조약 제725호) (V.2 1976-77)

생산연도 1974-1981

생 산 과 조약1 / 경제협력1

MF번호 2010-51 / 2 / 1-248

1976~77년 중 한·캐나다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 방지를 위한 협정 체결 추진 관련 내용임.

1. 교섭 경위

- 1974.1월 한·캐나다 국제운수소득 상호면세협정 체결과 캐나다 측의 보다 광범위한 조세협약 체결 제의에 대하여 상호 합의
- 1974.12월 캐나다 측, 협약 초안 송부와 동시에 실무자회의 개최 제의
- 1975.1월 제1차 실무자회의(서울) 개최
- 1975.9월 제2차 실무자회의(오타와)에서 최종 합의

2. 주요 골자

- 대상조세
 - 한국: 소득세, 법인세
 - 캐나다: 연방소득세
- 이중과세회피방법
 - 한국 거주자: 외국세액 공제방법에 의하여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자국에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함.
- 무차별대우
 - 상대방 체약국의 거주자나 법인에 대하여 조세상 자국민과 차별대우를 하지 않음.

한·캐나다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 방지를 위한 협정. 전3권. 1978.2.10. 서울에서 서명: 1980.12.19. 발효(조약 제725호) (V.3 1978-81)

생산연도 1974-1981

생 산 과 조약1 / 경제협력1

MF번호 2010-51 / 3 / 1-267

1978~81년 중 한·캐나다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 방지를 위한 협정 체결 관련 내용임.

1. 한·캐나다 이중과세협정 방위세 추가

- 한국 측은 한·캐나다 이중과세방지협정의 한국 측 대상조세에 방위세를 추가하기 위하여 1977.12.16. 캐나다 측에 가서명된 동 협정의 의정서를 수정할 것을 제의한 바 있음.
- 이와 관련 캐나다 측 요청(1978.1.11.)에 따라 한국 측 수정제의 문안 중 "As long as" 앞에 "It is understood that"을 삽입하고 "in the Republic of Korea"를 "in Korea"로 자구 수정한 후 한국 측 문안대로 동 의정서 수정에 합의한 바 있음.

2. 체결 의의

- 한·캐나다 양국의 개인이나 법인이 상대방 국가에서 납부한 세액을 자국에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여 과세상 이중부담과 불안을 해소하고, 투자소득에 대하여는 일정한 제한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특히 캐나다의 대한국 민간투자 유치를 촉진하는데 기여함.

3. 주요 내용

- 본문 27개조 및 부속의정서로 구성
- 대상조세
 - 한국: 소득세, 법인세, 방위세
 - 캐나다: 캐나다 정부에 의하여 부과되는 소득세

4. 동 협정은 1978.2.10. 서울에서 박동진 외무부장관과 Gerald E. Shanon 주한 캐나다대사 간에 서명되어, 1980.12.19. 캐나다 오타와에서 양국 대표 간에 비준서가 교환됨으로써 동일자로 발효됨(조약 제725호).

한·일본 간의 교육시설 확충, 국립의료 및 보건 연구기관 장비 현대화 및 도시하수처리시설 사업을 위한 차관에 관한 각서교환. 1980.1.18. 서울에서 각서교환: 발효(조약 제698호)

생산연도 1979-1980

생 산 과 조약 / 경제협력1

MF번호 2010-51 / 4 / 1-261

1979~80년 중 한·일본 간의 교육시설 확충, 국립의료 및 보건연구기관 장비 현대화 및 도시하수처리시설 사업을 위한 차관에 관한 각서교환 관련 내용임.

1. 교섭 경위

- 1979.8월 한·일본 경제실무회담에서 합의
- 1979.12월 양측, 문안 확정

2. 주요 내용

- 사업 및 배정액
 - 교육시설 확충(서울공대, 한양대, 이화여대, 가톨릭의대, 연세대, 조선대, 고려대): 100억 엔
 - 국립의료 및 보건연구기관 장비 현대화(국립의료원, 국립보건연구소, 국립환경연구소, 국립결핵병원, 국립정신병원, 국립나병원, 시·도립 보건연구원): 40억 엔
 - 도시하수처리시설(대구, 대전, 전주): 50억 엔
- 차관선: 일본 OECF(해외경제협력기금)
- 상환기간: 7년 거치, 18년 상환
- 이자율: 연 4%
- 인출기간: 협정 체결일로부터 5년(교육시설 및 의료장비 사업) 및 6년(도시하수시설 사업)

3. 동 협정은 1980.1.18. 서울에서 박동진 외무부장관과 스노베 료조 주한 일본대사 간에 체결되어, 동일자로 발효됨(조약 제698호).

한·스리랑카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장에 관한 협정. 전2권. 1980.3.28. Colombo에서 서명: 1980.7.15. 발효 (조약 제711호) (V.1 1978)

생산연도 1978-1980

생 산 과 조약1 / 경제협력2

MF번호 2010-51 / 5 / 1-221

1978년 중 한·스리랑카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장에 관한 협정 교섭 관련 내용임.

1. 교섭 경위

- Hameed 스리랑카 외상 방한 시(1978.1.16.~20.) 동 장관은 양국 간의 경제협력 유대관계 강화를 위하여 한국 관민훈성 경제사절단의 스리랑카 파견을 요청함.
- 한국 경제사절단, 스리랑카 방문(1978.3.22.~28.)
 - 한국 측, 양국 간 투자보장협정 체결 요청 및 초안 제시
 - 스리랑카 측, 한국 측 제의에 동의
- 외무부, 1978.5.9. 한국 측 초안에 대해 관계부처 및 조약국에 의견 문의
 - 동 의견을 종합하여 스리랑카 측 대안 대기
- 외무부, 스리랑카 측 대안을 독촉하도록 주스리랑카대사에게 지시(1978.6.9. 및 6.21.)
- 1978.6.26.자 주스리랑카대사 보고에 의하면 스리랑카 측은 상기 투자협정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고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희망, 스리랑카 측 초안 접수

2. 한·스리랑카 투자보장협정 관련 스리랑카 측 대안 송부(1978.7.12.)

- 외무부, 스리랑카 측 대안에 대해 관계부처 의견문의

한·스리랑카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장에 관한 협정. 전2권. 1980.3.28. Colombo에서 서명: 1980.7.15. 발효 (조약 제711호) (V.2 1979-80)

생산연도 1978-1980

생 산 과 조약1 / 경제협력2

MF번호 2010-51 / 6 / 1-247

1979~80년 중 한·스리랑카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장에 관한 협정 교섭 및 서명 관련 내용임.

1. 교섭 경위

- 1978.3월 한국 측, 초안 제시
- 1978.9월 스리랑카 측, 대안 제시
- 1980.3월 양측, 문안 합의

558

2. 체결 의의

- 양국 간의 투자는 상호 법적보호를 부여받게 되어 양국 간 활발한 투자증대가 기대되며, 이는 한·스리랑카 간의 경제협력 강화는 물론 기존 우호관계 증진에 크게 기여함.

3. 주요 내용

- 국내법에 의거하여 타방 당사국의 국민 또는 회사의 투자를 허용하고 동 투자에 대하여 공평한 대우와 완전한 보호를 부여함.
- 투자 및 그 수익과 투자의 권리, 사용, 향유, 처분 등에 관하여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를 부여함.
- 일방 당사국이 관세동맹, 자유무역지역, 공동 대외관세지역, 통화동맹 등과 관련하여 제3국 국민이나 회사에 대하여 부여하는 특혜는 타방 당사국의 국민이나 회사의 투자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함.
- 투자 및 그 수익의 자유로운 이전을 보장함.
- 모든 투자는 계약당사국 영역 내의 현행법에 의하여 규율됨.

4. 동 협정은 1980.3.28. 콜롬보에서 박동진 외무부장관과 하메드 스리랑카 외상 간에 서명되어, 1980.7.15. 비준서가 교환됨으로써 동일자로 발효됨(조약 제711호).

한·칠레 간의 항공협정. 1979.8.14. Santiago에서 서명: 1980.10.24. 발효(조약 제719호)

생산연도 1976-1980

생 산 과 조약

MF번호 2010-51 / 7 / 1-333

1976~80년 중 한·칠레 간의 항공협정 체결 관련 내용임.

1. 교섭 경위

- 1976.9월 한국 측, 칠레 측에 협정 체결 제의 및 초안 제시
- 1978.7월 칠레 측, 산티아고에서 항공회담 개최 제의
- 1978.10월 양측 간 항공회담 개최, 문안 합의

2. 한·칠레 항공회담(1978.10.10.~11., 산티아고)

- 수석대표
 - 한국 측: 김완수 교통부차관
 - 칠레 측: Rafael Eyzaguirre 민간항공위원회 대통령 지명위원
- 합의내용
 - 한·칠레 항공협정(안) 가서명(10.11.)
- 성과
 - 한국 민간항공의 서울-산티아고 간 직항노선을 개설함으로써 대중남미 노선 개척

3. 체결 의의

- 한국 민간항공망 확장의 일환으로 중남미 노선을 개척하고, 대중남미 경제 진출에 기여

4. 주요 내용

- 한국 측 노선
 - 한국-중간 제지점-칠레-이원 제지점
- 칠레 측 노선
 - 칠레-중간 제지점-한국-이원 제지점
- 양방 지정항공사들은 상대방 항공 당국에 운항노선상 지점을 통보함으로써 동 노선 운항을 개시할 수 있음.

5. 동 협정은 1979.8.14. 산티아고에서 윤경도 주칠레대사와 Hernan Cubillos Sallato 칠레 외상 간에 서명되어, 1980.10.24.자로 발효됨(조약 제719호).

한·덴마크 간의 해운협정. 전3권. 1980.1.9. 서울에서 서명: 발효(조약 제696호) (V.1 1975-78.10월)

생산연도 1975-1980

생 산 과 통상2 / 조약

MF번호 2010-51 / 8 / 1-192

1975~78년 중 한·덴마크 간의 해운협정 체결 교섭 관련 내용임.

1. 교섭 경위

- 1975.4.15. 덴마크 측, 해운협정 체결 교섭 가능 여부 타진
- 1977.2.14. Groot 주한 덴마크대사(일본 상주) 방한 시 협정 체결 희망
- 1977.5.10. 한국 측, 덴마크 측이 협정 초안을 제시할 경우 체결 교섭을 추진하겠다는 입장
- 1977.9.13. 상공부장관, 덴마크 방문 시 협정 체결 원칙에 합의
- 1977.10.5. 주한 덴마크대사, 외무부차관 면담 시 협정 초안 제시
- 1978.3.9. 한국 측 대안 제시
- 1978.4.17. 항만청장 덴마크 방문 시 제1조를 제외한 여타 조항에 합의
- 1978.10.5. 한국 측, 제1조 수정안을 재차 제시하였으나 미타결
- 1978.10.5. 덴마크 측, 서울에 대표단 파견(1978.11.20.~25.) 제의

2. 제1조에 대한 양측 입장

- 덴마크 측: 자유경쟁원칙에 입각한 국적선 선택의 자유를 저해하는 차별적대우 삼가
 - 배경: 한·구주 국가 간의 1976년 수송량은 100만 8천 톤이었으며, 이중 덴마크선사가 점유하는 수송량은 27.9%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함.
- 한국 측:(1차 수정안) 양 체약국 간의 운송에 있어서는 동율적취보장(50:50), 제3국과의 운송에 있어서는 차별적대우 금지 (2차 수정안)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정기선동맹현장조약의 기본원칙(40:40:20)을 준수하고 체약국 간의 차별적 조치를 삼감. 또한 어느 일방체약국이 제3국 선박에 부여하는 동등한 대우가 타방체약국 선박에도 부여됨.
 - 배경: 상기와 같이 덴마크는 한·구주 국가 간의 전체 수송량 중 27.9%를 차지할 정도로 해운업이 상당히 발전되어 있으므로 덴마크 측 안과 같이 자유경쟁원칙을 인정할 경우 한국선박 적취에 심히 불리한 영향을 미침.

한·덴마크 간의 해운협정. 전3권. 1980.1.9. 서울에서 서명: 발효(조약 제696호) (V.2 1978.11-79.6월)

생산연도 1975-1980

생 산 과 통상2 / 조약

MF번호 2010-51 / 9 / 1-185

1978.11.22.~23. 서울에서 개최된 제1차 한·덴마크 해운회담 관련 내용임.

1. 수석대표

- 한국 측: 강석재 외무부 통상국장
- 덴마크 측: Aasberg Petersen 외무부 제2정치경제국장

2. 회담 결과

- 화물 적취 문제를 중심으로 덴마크 측이 자유경쟁원칙을 주장하고, 한국 측은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정기선동맹헌장조약의 동울적취원칙을 주장하여 교섭이 결렬됨.

한·덴마크 간의 해운협정. 전3권. 1980.1.9. 서울에서 서명: 발효(조약 제696호) (V.3 1979.7-80.1월)

생산연도 1975-1980

생 산 과 통상2 / 조약

MF번호 2010-52 / 1 / 1-263

1979.9.27.~28.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제2차 한·덴마크 해운회담 관련 내용임.

1. 수석대표

- 한국 측: 임명진 주덴마크대사
- 덴마크 측: A. Petersen 외무성 정치경제국장

2. 회담 결과

- 한·덴마크 해운협정 가서명
 - 전문 및 본문 9개조, 양해각서(비밀)로 구성
- 협정 요지
 -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정기선동맹헌장조약의 동율적취원칙(40:40:20)을 따름.
 - 계약국 선박은 기국주의원칙을 따르고, 양 당사국 동의 시 별도 조치 가능
 - 적취배분원칙 보장(양해각서): 동 원칙 이행을 위한 일방당사국의 별도 조치가 가능하고 자국 해운업계의 반발을 예상한 덴마크 측의 요구로 양해각서를 비밀로 작성함.

3. 동 조약은 1980.1.9. 박동진 외무부장관과 Ole Philipson 주한 덴마크대사 간에 서명되어, 동일자로 발효됨(조약 제696호).

우편 관련 기관 간 약정 체결

생산연도 1979-1980

생 산 과 조약

MF번호 2010-52 / 2 / 1-89

1979~80년 중 우편 관련 기관 간 약정 체결 관련 내용임.

1. 한·미국 간 국제특급우편협정(1979년)

- 한·미국 국제특급우편협정(안)에 대한 의견 회보(1979.9.15., 외무부 조약과)
 - 한·미국 간 국제특급우편협정(안)은 UPU(만국우편연합) 헌장 제22조 및 UPU 협약 제6조에 의거하여 체신부와 미국 우편 당국 간에 체결, 체신부고시 조치만으로 시행이 가능하다고 봄.
 - 다만 체신부가 미국 우편 당국과 상기 협정을 체결할 경우, 기관 간 협정체제에 맞추어 서명권자가 우편 당국으로 서명하여야 할 것으로 봄.

2. 한·쿠웨이트 간 국제우편환약정(1979~80년)

- 우편환약정안에 대한 의견 회보(1979.8.23., 외무부 조약과)
 - 한·쿠웨이트 간 우편환약정은 한·쿠웨이트 양국이 모두 UPU 헌장 가입국으로 동 헌장 제8조에 의거하여 가입당사국과 우편 당국 간에 필요한 약정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체신부가 쿠웨이트 우편 당국과 우편환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고 봄.
 - 다만 체신부가 쿠웨이트 우편 당국과 상기 약정을 체결하려 할 경우 동 약정은 정부 간 협정이 아닌 기관 간 협정체제를 취하여야 하므로 서명자가 정부가 아닌 우편 당국으로 서명하여야 할 것임.
 - 또한 동 협정안 제4조는 양국 간 우편환 상환액이 상이한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상환액을 양국 간 동일하게 함이 타당하다고 봄.

한·남아프리카공화국 간의 국제소포 우편물 교환을 위한 특별협정 체결 교섭

생산연도 1975-1980

생 산 과 통상3

MF번호 2010-52 / 3 / 1-122

1975~80년 중 한·남아프리카공화국 간 국제소포 우편물 교환을 위한 특별협정 체결 교섭 관련 내용임.

1. 한·남아공 간 소포우편협정 체결 문제

- 1975.2.5. 체신부, 일본 우정청에 남아공·한 간 소포특별약정이 체결될 때까지 약 2개월간 고베 우체국에서 개낭중계를 해 줄 것을 요청
 - 4.10. 일본 우정청의 동의 통보를 받고 우편물 발송
- 1975.4.10. 체신부, 외무부에 남아공과의 소포특별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조치 요청
- 1975.5.17. 외무부, 동 협정 체결 보류를 회신
- 1976.10.1. 일본 우정청, 고베우체국을 통한 한국의 대남아공행 소포 개낭중계를 재차 거절
- 1976.10.21. 남아공행 선편 소포의 접수 중지
- 1977.1.17. 일본 우정청, 남아공과 조속한 시일 내 폐낭교환으로 대체하는 것을 조건으로 계속 중계하겠다고 통보
- 1977.1.20. 대남아공행 소포 우편물 접수 재개

2. 남아공과의 소포우편협정 관련 의견 통보(1980.1.24., 외무부)

- 한국은 남아공과의 정치 및 기타 분야에서의 관계 단절을 촉구하는 유엔 결의 존중 및 남아공의 인종차별정책에 반발하고 있는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관계를 감안, 동국과의 공식 관계를 일체 삼가하고 있는 실정임.
- 이와 같은 점을 고려, 우편 업무가 비록 비정치적 사항이더라도 한국이 남아공과 여하한 형태의 소포우편협정을 새로이 체결하는 경우 대남아공 관계 증진을 기도하고 있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하여 아프리카 비동맹 외교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동 협정을 체결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봄.
- 다만 수출진흥과 관련, 남아공에 소포발송이 불가피할 시 현 방식을 계속 이용하거나 또는 중계국을 제3국으로 전환하는 문제를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봄.

한·칠레 간의 사증면제협정. 1980.9.5. Santiago에서 서명: 1980.10.5. 발효(조약 제716호)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조약1

MF번호 2010-52 / 4 / 1-106

1980년 중 한·칠레 간 사증면제협정 체결 관련 내용임.

1. 교섭 경위

- 1979.12월 한국 측, 협정 체결 제의(한국 측 안 송부)
- 1980.2월 칠레 측, 수정안 제의
- 1980.4월 양측, 문안 합의

2. 주요 내용

-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양국 국민은 비영리 목적 및 90일 이내(선원수첩 소지자는 15일 이내) 체류를 조건으로 무사증으로 타방 국가 입국 및 체류 가능

3. 동 협정은 1980.9.5. 산티아고에서 윤경도 주칠레대사와 Rojas 칠레 외무장관 간에 서명되어, 1980.10.5.자로 발효됨(조약 제716호).

한·코트디부아르 간의 문화협정. 1980.2.28. Abidjan에서 서명: 1980.12.10. 발효(조약 제705호)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조약1 / 문화교류

MF번호 2010-52 / 5 / 1-233

1980년 중 한·코트디부아르 간 문화협정 체결 관련 내용임.

1. 교섭 경위

- 1978.5월 한국 측, 초안 제시
- 1978.10월 코트디부아르 측, 수정안 제시
- 1979.3월 양측, 문안 합의

566

2. 주요 내용

- 전문 및 8조로 구성
- 양국 간의 예술, 교육, 과학, 기술 등 분야에서의 상호협력과 민간교류

3. 동 협정은 1980.2.28. 코트디부아르 아비장에서 한우석 주코트디부아르대사와 Simeon Ake 코트디부아르 외무장관 간에 서명되어, 1980.12.10.자로 발효됨(조약 제705호).

한·케냐 간의 문화협정. 1980.11.6. Nairobi에서 서명: 11.21. 발효(조약 제721호)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조약1 / 문화교류

MF번호 2010-52 / 6 / 1-155

1980년 중 한·케냐 간 문화협정 체결 관련 내용임.

1. 교섭 경위

- 1978.11월 한국 측, 협정 초안 제시
- 1980.2월 케냐, 대안 제시
- 1980.3월 한국 측, 수정안 제시
- 1980.5월 양측, 문안 합의

2. 주요 내용

- 문화·예술·교육·과학·기술 등 분야에서의 상호교류를 통한 우호관계 증진
- 상호 간 문화기관의 설치 촉진

3. 동 협정은 1980.11.6. 케냐 나이로비에서 정도순 주케냐대사와 Robert Ouko 케냐 외무장관 간에 서명되어, 1980.11.21.자로 발효됨(조약 제721호).

한·세네갈 간의 문화협정. 1979.4.24. 서울에서 서명: 1980.8.4. 발효(조약 제712호)

생산연도 1979-1980

생 산 과 조약1 / 문화교류 / 서부아프리카

MF번호 2010-52 / 7 / 1-213

1979~80년 중 한·세네갈 간 문화협정 체결 관련 내용임.

1. 교섭 경위

- 1977.1.22. 주세네갈대사, 세네갈 정부와 문화협정 체결 합의
- 1978.11.27. 한국 측 안 세네갈 정부에 제시
- 1979.3.23. 세네갈 대통령 방한 시 서명하기로 세네갈 측과 합의
- 1979.4.7. 세네갈 측, 대안 제시
- 1979.4.14. 양측, 문안 합의

568

2. 주요 내용

- 문화·예술·스포츠 분야에서의 상호교류를 통한 양국 간 우호관계 강화

3. 동 협정은 1979.4.24. 서울에서 외무부장관과 세네갈 기획협력 장관 간에 서명되어, 1980.8.4.자로 발효됨(조약 제712호).

한국 정부에 대한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기술원조 제공에 관한 보충협정 개정. 1980.1.3. 및 1.21. Vienna에서 서명: 발효(조약 제703호)

생산연도 1979-1980

생 산 과 조약2

MF번호 2010-52 / 8 / 1-126

1979~80년 중 한국 정부에 대한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기술원조 제공에 관한 보충협정 개정 관련 내용임.

1. 개정 경위

- 1967.4.17. 동 협정 체결
- 1979.4.24. IAEA, 개정협정 제의
- 1979.9.21. 국무회의 심의 및 가결

2. 주요 내용

- 개정된 방사선 안전기준 적용
- 안전조치 강화 및 방호조치 조항 신설

3. 동 협정은 1980.1.3. S. Srisukh IAEA 대표가 서명하고, 1980.1.21. 신기복 주오스트리아대사 대리 서명으로 체결되어, 1980.1.21.자로 발효됨(조약 제703호).

스위스의 의장권 및 실용신안권에 관한 협정 체결 제의

생산연도 1979-1980

생 산 과 조약1

MF번호 2010-52 / 9 / 1-22

1979~80년 중 스위스의 의장권 및 실용신안권에 관한 협정 체결 교섭 관련 내용임.

1. 교섭 경위

- 1977.12.12.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스위스 연방정부 간의 공업소유권의 상호부여와 보호에 관한 협정”은 의장권 및 실용신안권을 포함하지 않고 있어 1979.9.13. 주한 스위스대사관은 각서교환 형식으로 동 건에 대한 협정 체결을 제의하여 옴.
- 이에 대하여 한국 정부는 현재 “공업소유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가입을 추진 중에 있고, 동 협약 가입동의안을 정기국회(1979.10월)에 상정할 예정이므로 동 협약에 가입할 경우 상기와 같은 별도의 협정 체결은 불필요하다는 내용의 공한을 1979.10.2. 주한 스위스대사관에 전달함.

2. 한·스위스 간 의장권 및 실용신안권 출원에 대한 공한 수교

- 1979.12.12. 스위스 측은 한국의 “파리협약” 가입 이전에 일부 스위스 회사가 한국에 제출하고 있는 의장권 및 실용신안권 보호에 관한 해결을 문의하여 옴.
- 이에 대하여 한국 특허청은 상호주의원칙에 의거, 스위스 국민의 의장출원을 이미 접수 처리하고 있으며, 실용신안권에 있어서도 동 권리에 대한 스위스 국민의 출원이 있을 경우 상호주의원칙에 따라 이를 접수 처리할 예정으로 있는바, 이와 같은 내용을 주한 스위스대사관에 전달함.

일본·중국 간의 어업협정 개정

생산연도 1977-1980

생 산 과 일본 / 국제법규

MF번호 2010-52 / 10 / 1-265

1977~80년 중 일본·중국(구 중공) 간 어업협정 개정 관련 내용임.

1. 일본·중국 어업부속서 개정 합의

- 1978.12.1.~9. 일본·중국 어업위원회(도쿄)에서 부속서 개정 합의
- 자원 보호를 위한 현존 보호구역 확대 및 신설
 - 제1보호구역을 동남방으로 확대
 - 제2, 제3보호구역을 동쪽으로 12해리 확대 등
- 1979.1.16. 일본·중국 간 어업협정 개정

2. 일본·중국 간 어업협정 개정 관련 조치

- 1979.2.9. 외무부, 일본·중국 간 어업협정 개정과 관련한 대책 건의 재가를 득함.
- 2.17. 외무부 성명 발표
 - 대한민국 정부는 황해 및 동중국해에 있어서의 어로에 관하여 국제법에 따른 모든 권리를 유보하며, 동 해역 연안국으로서 그러한 권리를 계속해서 행사할 것임을 재천명함.
- 2.24. 일본 정부에 한국 정부의 입장을 밝히는 구술서 전달

한·쿡아일랜드 간의 어업협정. 1980.8.25. Auckland에서 서명: 발효(조약 제713호)

생산연도 1979-1980

생 산 과 대양주 / 국제법규

MF번호 2010-52 / 11 / 1-265

1979~80년 중 한·쿡제도 간 어업협정 체결 관련 내용임.

1. 체결 경위

- 1979.10.1. 200해리 경제수역 선포
- 1980.4.26. 한·쿡제도 어업협정안 가서명
 - 입어로 및 입어 방법에 관한 부속약정은 한국 원양어업협회와 쿡제도 간에 체결하기로 합의

572

2. 체결 의의

- 남태평양의 주요 어장의 하나인 쿡제도 경제수역 내에서의 입어권을 획득함으로써 세계 각국의 200해리 수역 선포 추세로 위축되고 있는 한국의 원양어업발전에 기여함.

3. 주요 내용

- 해양생물자원의 단백질 공급원으로서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양국 간 어업협력의 조건을 설정함.
- 쿡제도 정부는 한국어선의 쿡제도 수역 내 조업을 본 협정의 규정에 따라 허가함.
- 구체적인 입어 절차는 부속약정으로 합의함.
- 한국선박과 선원을 체포 혹은 억류한 경우에는 신속히 한국 정부에 통보하며 보석금 또는 기타 보증을 조건으로 신속히 석방함.
- 선박수리 등을 위한 한국선박의 라로통가 항구 입항을 허가하며 최혜국대우를 부여함.

4. 동 협정은 1980.8.25. 오클랜드에서 외무부장관 또는 주뉴질랜드대사가 한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함으로써 동일자로 발효됨(조약 제713호).

한·프랑스 간의 어업협정. 전3권. 1980.9.19. Paris에서 서명: 12.19. 발효(조약 제717호) (V.1 1975-78)

생산연도 1975-1980

생 산 과 국제법규 / 경제협력1

MF번호 2010-52 / 12 / 1-214

1975~78년 중 한·프랑스 간 어업협정 체결 교섭 관련 내용임.

1. 한·프랑스 어업회담 추진 경위

- 1978.3.17. 주한 프랑스대사관은 프랑스령 5개 수역에 대하여 1978.2.3. 200해리 선포 통보, 한국어선의 조업허가 신청 및 통계자료 제출 요청
- 1978.8.24. 주한 프랑스대사관은 한국어선의 조업 조건 및 방법을 결정하기 위한 회담 개최 제의를 통보

2. 제1차 한·프랑스 어업회담(1978.10.4.~5., 파리)

- 수석대표
 - 한국 측: 조광제 주프랑스대사관 공사
 - 프랑스 측: Bernard Guitton 외무부 수산 관계 담당관
- 회담 결과
 - 프랑스 측의 외국어선 조업규정 설명
 - 프랑스 측은 한국 측에 수역 희망 어획량 제시를 요청하였으나, 한국 측은 입어로 수준을 우선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하여 프랑스 측은 어획량 톤당 74달러를 제시
 - 입어로는 1년간 입어료를 일괄 지불하고, 초과량 및 초과 조업일수에 대하여는 추가 입어료를 지불

3. 제2차 한·프랑스 어업회담(1978.11.22.~24., 파리)

- 수석대표
 - 한국 측: 조광제 주프랑스대사관 공사
 - 프랑스 측: Bernard Guitton 외무부 수산 관계 담당관
- 회담 결과
 - 입어로 및 총 어획량: 미합의(프랑스 측 제시조건: 입어로 톤당 50달러, 총 어획량 약 17,300톤)
 - 어업협정: 동 회담의 기본문제인 입어로 및 총 어획량이 미합의됨에 따라 협정 문안 검토에 진전이 없었음.
 - 차기 회담: 외교채널을 통하여 회담 속개에 관하여 교섭하기로 함.

한·프랑스 간의 어업협정. 전3권. 1980.9.19. Paris에서 서명: 12.19. 발효(조약 제717호) (V.2 1979)

생산연도 1975-1980

생 산 과 국제법규 / 경제협력1

MF번호 2010-52 / 13 / 1-103

1979년 중 한·프랑스 간 어업협정 체결 교섭 관련 내용임.

1. 한·프랑스 간 어업협정안에 대한 조약국 검토의견(1979.10.22.)

- 입어 조건
 - 프랑스 측 대안은 총 허가 어획량 제한, 허가 어획기간 제한 및 총 허가 척수 제한을 동시에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입어 조건을 2중 3중으로 규제하는 결과가 되어 한국 측의 안정적 조업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입어 허가장 유효기간
 - 입어 허가장 유효기간은 본 협정 제2조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1년이 되어야 할 것임.
- 입어 허가장 발급장소
 - 입어 허가장 발급장소는 입어 허가장 신청장소인 주한 프랑스대사관으로 지정함으로써, 입어 허가장 신청장소와 발급장소를 동일시하도록 함.
- 옵서버 수당
 - 여타 국가와의 입어 교섭에 선례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동 옵서버 수당은 협정문에 명문화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
- 대리인 지정
 - 다수의 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한국 측에 경제적 부담이 될 것으로 가급적 대리인의 수효를 줄이도록 함.

2. 제3차 한·프랑스 어업회담 개최 협의

- 1979.11.26. 주프랑스대사관 공사는 Louis Roudie 프랑스 외무부 전권공사와 면담하고, 제3차 회담을 1980.1월 말 또는 2월 초에 파리에서 개최하되, 잠정적으로 1980.1.28.로 정할 것에 합의함.

한·프랑스 간의 어업협정. 전3권. 1980.9.19. Paris에서 서명: 12.19. 발효(조약 제717호) (V.3 1980)

생산연도 1975-1980

생 산 과 국제법규 / 경제협력1

MF번호 2010-52 / 14 / 1-175

1980년 중 한·프랑스 간 어업협정 체결 관련 내용임.

1. 제3차 한·프랑스 어업회담(1980.5.12.~19., 파리)

- 수석대표
 - 한국 측: 권동만 주프랑스대사관 공사
 - 프랑스 측: Louis Roudie 프랑스 외무부 전권공사
- 회담 결과
 - 프랑스 측, 한국 측 주장인 6,900톤 어획량에 입어로 44만 5천 달러 지불을 수락함.
 - 1980.5.20. 한·프랑스 어업에 관한 각서(안)에 가서명

2. 체결 경위

- 1976.7.16. 프랑스 200해리 경제수역 선포
- 1980.5.20. 한·프랑스 어업에 관한 각서안 가서명

3. 주요 내용

- 한국어선은 프랑스 해외영토(뉴칼레도니아,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왈리스 푸투나, 바사스 다 인디아섬 등)의 경제수역 내에서 프랑스의 법령과 본 협정에 따라 조업할 수 있음.
- 프랑스 당국은 한국어선에 대하여 1년간 유효한 입어 허가장을 발급함.
- 동 협정은 1년간 유효하고 만료 3개월 전에 일방 정부가 폐기 또는 갱신을 서면으로 통고하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연장됨.

4. 동 협정은 1980.9.19. 파리에서 강신조 주프랑스대사관 공사와 Roudie 프랑스 외무부 공사 간에 서명되어, 1980.12.19.자로 발효됨(조약 제717호).

한·키리바시 간의 키리바시 연안에서의 어업에 관한 협정. 전2권. 1980.12.18. Tarawa에서 서명: 발효(조약 제727호) (V.1 1978-79.9월)

생산연도 1978-1981

생 산 과 대양주 / 조약1

MF번호 2010-53 / 1 / 1-143

1978~79년 중 한·키리바시 간 키리바시 연안에서의 어업에 관한 협정 체결 교섭 관련 내용임.

1. 한·키리바시 어업회담 추진 경위

- 1978.4.1. 키리바시 정부, 200해리 어업수역을 선포하고 동 수역 내 한국어선의 조업허가를 위해 어업교섭을 제의

576

2. 제1차 한·키리바시 어업회담(1979.6.25.~28., 키리바시 타라와)

- 수석대표
 - 한국 측: 주홍장 수산청 차장
 - 키리바시 측: Teiwaki 자연자원개발부 장관
- 회담 결과
 - 전문 및 총 10개 조항으로 구성된 협정 문안 합의, 6.28. 양국 수석대표 간에 협정문 가서명
 - 본 협정 외 어획쿼터, 입어로 등 구체적인 허가 절차를 정하는 부속약정은 키리바시의 독립 이후인 9월 초 서울에서 제2차 회담을 개최하여 협의하기로 함.

한·키리바시 간의 키리바시 연안에서의 어업에 관한 협정. 전2권. 1980.12.18. Tarawa에서 서명: 발효(조약 제727호) (V.2 1979.10-81.1월)

생산연도 1978-1981

생 산 과 대양주 / 조약1

MF번호 2010-53 / 2 / 1-199

1979~81년 중 한·키리바시 간 키리바시 연안에서의 어업에 관한 협정 체결 관련 내용임.

1. 제2차 한·키리바시 어업회담(1979.10.11.~13., 서울)

- 수석대표
 - 한국 측: 김종수 수산청장
 - 키리바시 측: Teiwaki 자연자원개발부 장관
- 회담 결과
 - 정부 간 합의의사록 교환: 각국의 예에 따라 입어허가 절차를 규정하는 어업협정 부속서의 한국 측 당사자는 한국 원양협회가 정부를 대신할 수 있도록 양국이 합의함으로써 어업협정 부속서의 조속한 체결을 가능하게 함.
 - 어업협정 부속서 체결 주요내용: 효력기간은 1979.10.13.부터 1년간, 입어로 18만 5천 달러 (2차 분할 지불), 입어허가증 발급 절차 및 내용 등

2. 체결 경위

- 1978.4월 200해리 수역 선포
- 1978.12월 어업협정 키리바시안 접수
- 1979.6월 한·키리바시 간 어업협정 가서명
- 1979.10월 양국 합의의사록 가서명, 한국 원양협회와 키리바시 정부 간에 입어로 및 입어 방법에 관한 부속서 체결

3. 주요 내용

- 키리바시 정부는 한국어선의 키리바시 어업수역 내 조업을 허가함.
- 선박수리 등을 위한 한국선박의 키리바시 제항구 입항을 허가하며, 최혜국대우를 부여함.
- 협정은 5년간 유효하고, 그 이후에는 일방 정부가 본 협정의 종료 의사를 타방 정부에 통보한 일자로부터 6개월이 만료될 때까지 유효함.

4. 동 협정은 1980.12.18. 키리바시 타라와에서 윤하정 주호주대사와 Teiwaki 키리바시 자연자원개발 장관 간에 서명되어, 1980.12.18.자로 발효됨(조약 제727호).

한·뉴질랜드령 니우에 및 토켈라우 간의 어업협정 체결 교섭

생산연도 1979-1980

생 산 과 경제협력1

MF번호 2010-53 / 3 / 1-106

1979~80년 중 한·뉴질랜드령 니우에 및 토켈라우 간 어업협정 체결 교섭 관련 내용임.

1. 교섭 경위

- 1980.1.4. 뉴질랜드 외무부는 주뉴질랜드대사관에 뉴질랜드령 니우에 및 토켈라우의 200해리 경제수역법이 1980.4.1.부터 발효됨을 알리고, 이에 따라 동일자 이후 외국어선의 무허가 조업을 금지하게 됨으로 한국 측이 동 지역에서의 입어를 위한 어업협정 체결을 희망한다면 동 발효일자 이전에 교섭할 것을 제의하여 옴.

578

2. 한·토켈라우 어업회담(1980.4.22.~24., 웰링턴)

- 수석대표
 - 한국 측: 강승구 주뉴질랜드대사관 참사관
 - 토켈라우 측: Mansfield 뉴질랜드 외무부 법규국장
- 회담 결과
 - 양측 대표단은 뉴질랜드 측이 낸 협정문 초안을 중심으로 협의함.
 - 실질적 입어에 관한 허가 절차와 입어로 등을 규정할 부속약정도 뉴질랜드 측이 낸 초안을 중심으로 협의, 협상을 위한 초안 작성
 - 입어로 관련 뉴질랜드 측이 연 7만 5천 달러를 제안하였으나, 한국 측은 동 수역에서 어획량이 적고 타 수역과의 균형 유지 및 어업 실정이 어려운 점을 설명하고 2만 4천 달러선을 주장함. 그러나 뉴질랜드 측은 6만 8천 달러선까지 수정하였으나, 한국 측은 3만 달러선이라도 업계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함.
 - 뉴질랜드 측은 니우에와의 어업협정 체결을 촉구함.

한·솔로몬아일랜드 간의 어업협정. 1980.12.12. Honiara에서 서명: 발효(조약 제726호)

생산연도 1979-1980

생 산 과 대양주 / 조약

MF번호 2010-53 / 4 / 1-250

1979~80년 중 한·솔로몬제도 간 어업협정 체결 관련 내용임.

1. 제1차 한·솔로몬제도 어업회담(1980.4.15.~18., 솔로몬제도 호니아라)

- 양측은 조항별로 토의한 결과 대체로 한국 측의 주장을 충분히 반영한 협정안을 성안, 4.20. 한국 수산청 차장과 Bugotu 솔로몬제도 외무차관 간에 가서명함(단, 솔로몬제도의 주장으로 발효 및 종결 통보 조항인 제8조는 차기 서울회담에서 합의 후 가서명하기로 유보).
- 양측은 부속서안에 대한 토의를 진행한 결과 대체적인 합의에 도달하였으나, 입어로 문제, 항해 일지 제공, 선박위치 보고 절차, 원양어업협회의 월별 보고, Agent 설치 문제, 선박표지 부착 문제에 대하여는 양측 간 이견이 현저하여 차기 서울회의에서 계속 협의하기로 함.

2. 제2차 한·솔로몬제도 어업회담(1980.5.23.~26., 서울)

- 한·솔로몬제도 간 어업협정안 가서명
- 입어로 및 입어 방법에 관한 부속약정은 한국 원양어업협회와 솔로몬제도 정부 간 체결

3. 체결 경위

- 1978.1.1. 솔로몬제도 200해리 어업수역 선포
- 1980.4.15.~18 제1차 어업회담
- 1980.5.23.~26. 제2차 어업회담
- 1980.5.26. 한·솔로몬제도 간 어업협정안 가서명

4. 주요 내용

- 한국어선의 솔로몬제도 200해리 어업수역 내 입어 허가
- 입어 허가 절차는 별도 부속약정으로 정함.
- 한국 선박과 선원을 억류 혹은 체포한 경우, 신속히 한국 정부에 통보하며, 보석금 또는 기타 보증을 조건으로 신속히 석방 등

5. 동 협정은 1980.12.12. 호니아라에서 양국 대표 간에 서명되어, 동일자로 발효됨(조약 제726호).

한·투발루 간의 어업협정. 1980.6.18. 서울에서 서명: 발효(조약 제710호)

생산연도 1978-1980

생 산 과 국제법규 / 경제협력1

MF번호 2010-53 / 5 / 1-292

1978~80년 중 한·투발루 간 어업협정 체결 관련 내용임.

1. 체결 경위

- 최근 세계 연안국이 200해리 경제수역을 설정함에 따라 한국 정부는 한국 원양어업의 어장 확보를 위하여 한·투발루 간 어업협정 체결을 추진함.
- Ionatana 초대 주한 투발루대사, 1979.6.13. 박동진 외무부장관 예방 시 한·투발루 간 어업협정 체결을 제의함.
- 양측, 한·투발루 어업회담(1979.12.15.~18., 피지)에서 어업협정 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함.

2. 체결 의의

- 한국 정부는 뉴질랜드(1978.3.16. 발효), 호주(1978.12.1. 가서명)에 이어 한·투발루 간 어업협정을 체결함에 따라 남태평양 주요 수역에서의 조업권을 확보함.

3. 주요 내용

- 한국어선은 투발루의 관계법령과 본 협정에 따라 투발루 어업수역에서 조업할 수가 있음.
 - 한국 정부는 투발루의 200해리 어업수역에서 어업권을 획득하여 1일 최대 137척 조업이 가능하며, 입어료는 연간 8만 4천 달러임.
- 양국 정부는 상호 어업합작 사업을 장려하고 각자의 법령에 따라 최혜국대우를 부여함.

4. 동 협정은 1980.6.18. 서울에서 박동진 외무부장관과 Ionatana 주한 투발루대사 간에 서명되어, 동일자로 발효됨(조약 제710호).

- 3년간 유효

한·가봉 간의 무역협정. 1975.7.7. 서울에서 서명: 1980.11.18. 발효(조약 제722호)

생산연도 1974-1980

생 산 과 조약1 / 경제협력2

MF번호 2010-53 / 6 / 1-297

1974~80년 중 한·가봉 간 무역협정 체결 관련 내용임.

1. 체결 경위

- 1974.4.12. 한국 측, 가봉 측에 한·가봉 간 무역협정 영문 초안을 제시함.
- 1975.3.26. 한국 측, 무역협정의 조속한 체결을 위하여 가봉 측에 프랑스어 초안을 제시함.
- 1975.4.16. 양측, 서울에서 개최된 양국 간 실무자회의에서 무역협정 문안에 합의함.
- 1975.4.17. 양측, 오쿰바 가봉 외무부장관 방한 시 무역협정에 가서명함.

2. 체결의 의의

- 한·가봉 간의 통상 관계 증진을 통하여 한국의 대아프리카 수출시장 개척과 자원 확보에 기여함.

3. 주요 내용

- 양국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따른 최혜국대우를 상호 부여함.
- 한국은 식물류, 타이어, 전자제품, 기계류 등을 수출하고, 가봉은 원유, 합판, 농축우라늄 등을 한국에 수출함.
- 각 계약국의 무역상사 및 경제 단체는 타방 계약국의 영역 내에서 활동하는 것을 보장함.

4. 동 협정은 1975.7.7. 서울에서 김동조 외무부장관과 오쿰바 가봉 외무부장관 간에 서명되어, 1980.11.18. 비준서가 교환됨으로써 동일자로 발효됨(조약 제722호).

한·니카라과 간의 무역협정 체결 교섭

생산연도 1979-1980

생 산 과 중미

MF번호 2010-53 / 7 / 1-33

1979~80년 중 한·니카라과 간 무역협정 체결 추진 관련 내용임.

1. 주멕시코대사는 1979.12.10.~12. 겸임국 니카라과 출장 계기 Martinez 니카라과 상공부장관과 무역협정 체결에 합의함.
2. 외무부는 1980.1.21. 주멕시코대사관에 한·니카라과 무역협정 초안을 송부하고 협정 체결 추진을 지시함.
3. Martinez 장관은 1980.3.31. 주멕시코대사에게 상기 무역협정 초안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합동위 설치 및 기능 등 몇 가지 점에 관하여 실무자 간 협의를 희망하고, 동 협정 체결을 한국의 니카라과산 원면구입과 연계하고자 하는 입장을 표명함.

한·오스트리아 간의 섬유류 교역에 관한 협정

생산연도 1979-1981

생 산 과 통상2 / 조약1

MF번호 2010-53 / 8 / 1-255

1979~81년 중 한·오스트리아 간 섬유류 교역에 관한 협정 체결 관련 내용임.

1. 한·오스트리아 섬유회담(1979.5.14.~16., 서울)

- 수석대표
 - 한국 측: 노재원 외무부 통상국장
 - 오스트리아 측: G. Dinzl 통상성 고문
- 주요 의제
 - 1979.7.31.자로 완료되는 한·오스트리아 간 섬유협정 협의
- 합의 내용
 - 규제기간: 1979.8.1.~82.7.31.
 - 규제대상: 7개 품목
 - 규제수준: 품목별로 전년 대비 1~6% 증가
 - 연 증가율(2차 연도 및 3차 연도): 품목별로 전년 대비 1~6% 증가
 - 총 10개 품목의 자유화: 규제품목이었던 면직물 11개 품목 중 면 블라우스, 면 셔츠를 제외한 9개 품목 및 기존 규제품목이었던 합성양말의 자유화
 - 종전 4개 협정으로 운영되어 오던 섬유협정을 1개 협정으로 통합

2. 한·오스트리아 섬유회담(1980.12.11.~12., 제네바)

- 개최 경위
 - 1980.9.26. 오스트리아 측은 MFA(다자간섬유협정) 및 현행 양자 쿼터협정 제13조에 의거, 신규 2개 품목에 대한 규제수준 설정 및 협의대상 품목의 추가를 위한 협상 제의
- 수석대표
 - 한국 측: 김철수 상공부 통상진흥국장
 - 오스트리아 측: G. Waas 통상성 국장
- 양측은 현행 섬유협정을 아래와 같이 개정 합의
 - 합성 코트(CCCN 6101)에 대한 물량 규제에 합의(1981.1.1.~7.31.)
 - 편직 셔츠(CCCN 6004)를 협의대상 품목으로 추가

한·EC(구주공동체) 간의 섬유류 교역에 관한 협정. 전10권. 1979.9.12. Brussels에서 서명: 1980.2.1. 발효 (외무부고시 제49호) (V.1 1977.4-8월)

생산연도 1977-1980

생 산 과 통상2 / 조약1

MF번호 2010-53 / 9 / 1-152

1977.8.10.~12. 서울에서 개최된 한·EC(구주공동체) 간 섬유 협상을 위한 예비교섭 결과임.

1. 교섭 경위

- EC 대표단은 1976.1.1.자로 발효된 한·EC 간 섬유협정이 1977.12.31.자로 만료됨에 따라 동 협정의 연장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방한함.

2. 수석대표

- 한국 측: 최호중 외무부 경제차관보
- EC 측: Tran Van Thin 섬유협상특별대표

3. 협의 내용

- EC 측은 현 협정상 한국의 대EC 수출섬유 중 9개 품목을 쿼터로 규제하고 있으나, 신협정에는 전 섬유류를 규제대상 품목으로 하고 있음.
- 신협정은 시장 침투율의 민감 정도에 따라 초민감 품목, 민감 품목, 저민감 품목, 비민감 품목 등 4개의 범주로 나누어 1차 연도(1978년) 기본 쿼터와 2차 연도 이후 증가율을 인정할 것이라고 설명함.
 - 초민감 품목: 티셔츠, 블라우스, 바지, 면사 등 8개 품목으로 1976년 수준을 기준으로 평균 7% 정도 삭감한 양을 차기 협정의 기본 쿼터 수준으로 하며, 총 한도량은 30,000톤
 - 민감 품목: 소비 증가율보다 약간 높은 증가율을 인정하며, 총 한도량은 14,000톤
 - 저민감 품목: 6%의 증가율을 인정하며, 총 한도량은 15,000톤
 - 비민감 품목: 6% 이상의 증가율을 인정하며, 총 한도량은 6,500톤
- 한국 측은 협상을 통한 협정 체결을 희망한다고 하고, 1978년도 기본 쿼터는 1977년도 쿼터량을 기준으로 일정한 증가율을 인정해야 하며, 1976년 수준을 기준으로 한 삭감은 수락할 수가 없다고 함.

한·EC(구주공동체) 간의 섬유류 교역에 관한 협정. 전10권. 1979.9.12. Brussels에서 서명: 1980.2.1. 발효 (외무부고시 제49호) (V.2 1977.9-10월)

생산연도 1977-1980

생 산 과 통상2 / 조약1

MF번호 2010-53 / 10 / 1-203

1977.10.26.~28. 브뤼셀에서 개최된 제1차 한·EC(구주공동체) 간 섬유 협상 결과임.

1. 개최 경위

- EC는 1977.10.11.~11.30. 한국, 홍콩 등 22개 섬유 수출국과 1978년부터 4년간 유효할 신섬유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으며, 11.7. 한·EC 간 섬유쿼터 협상에 앞서 한국과 제1차 예비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함.

2. 수석대표

- 한국 측: 신정섭 주제네바대표부 공사
- EC 측: Tran Van Thin 섬유협상 특별대표

3. 정부 훈령

- EC 입장을 청취하고, 정부의 대EC 협상 전략을 마련함.
- EC가 MFA(다자간섬유협정) 및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에 입각한 섬유류 교역의 확대 발전 및 자유화에 협조할 것을 촉구함.
- MFA 내 양자협정을 통해 EC와 협력할 용의를 표명함.

4. 협의 내용

- EC 측은 섬유협정 초안과 6개 그룹의 품목 분류표를 제시하고, 1977.11월 말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12.15. 일방 수입규제조치를 결정할 것이라고 함.
 - 또한, 섬유산업 문제가 정치·경제적으로 중대한 문제가 되고 있어 티셔츠, 블라우스, 면사 등 8개 초민감 품목에 대해서 1976년 수입실적 기준으로 제한한다고 하고 다른 품목에 대해서는 호의적으로 고려하겠다고 함.
- 한국 측은 한국 섬유사업의 당면한 문제들을 설명하고, EC 측 제안은 MFA 원칙에 위배되므로 수락할 수 없다고 함.

한·EC(구주공동체) 간의 섬유류 교역에 관한 협정. 전10권. 1979.9.12. Brussels에서 서명: 1980.2.1. 발효 (외무부고시 제49호) (V.3 1977.11.1.-19.)

생산연도 1977-1980

생 산 과 통상2 / 조약1

MF번호 2010-53 / 11 / 1-205

1977.11.7.~18. 브뤼셀에서 개최된 제2차 한·EC(구주공동체) 간 섬유 협상 결과임.

1. 개최 경위

- 한·EC 양측은 1976.1.1.자로 발효된 한·EC 간 섬유협정이 1977.12.31.자로 만료됨에 따라 1978년부터 유효할 신섬유협정 체결을 위해 제2차 협상을 개최하기로 함.

2. 수석대표

- 한국 측: 신정섭 주제네바대표부 공사
- EC 측: Tran Van Thin 섬유협상특별대표

3. 정부 훈령

- EC의 제한조치 강화가 세계 섬유류 교역질서를 파괴하고, 한국 섬유산업(약 80만 명의 고용, 1976년 한국 섬유류 수출이 총 수출의 34%)에 대한 규제가 중대한 정치, 경제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고 지적함.
- EC가 주장하는 기초연도의 쿼터량(1976년 수준에서 삭감)이 MFA(다자간섬유협정) 관계조항에 위배되어 수락할 수 없음을 지적하고, MFA 조항에 따른 정상적인 규제수준과 증가율을 적용하도록 촉구함.

4. 협의 결과

- 한·EC 양측은 섬유쿼터 할당율, 품목별 분류 및 규제수준, 섬유협정 문안에 대해 협의하였으나, 상호 이견으로 별 진전 없음.
- 한국 측은 섬유협정 기간을 5년(1978.1~82.12월)으로 하고, 섬유류의 정의는 MFA 제12조에 의거하며, 쿼터 배정의 무차별 원칙과 원산지 관계 규정의 삭제 등 EC 측이 제시한 협정 문안의 재조정을 요청함.

한·EC(구주공동체) 간의 섬유류 교역에 관한 협정. 전10권. 1979.9.12. Brussels에서 서명: 1980.2.1. 발효 (외무부고시 제49호) (V.4 1977.11.21.-12월)

생산연도 1977-1980

생 산 과 통상2 / 조약1

MF번호 2010-53 / 12 / 1-198

1977.11.7.~12.4. 브뤼셀에서 개최된 제2차 한·EC(구주공동체) 간 섬유협상 결과임.

1. 수석대표

- 한국 측: 신정섭 주제네바대표부 공사
- EC 측: Tran Van Thin 섬유협상특별대표

2. 합의 내용

- 1978년도 규제수준 증가율에 대해서는 1977.12.1. 가서명하였으며, 여타 협정 문안은 1977.12.15.까지 가서명하기로 합의함.
 - 협정기간: 1978.1.1.~82.12.31.(5년간)
- 규제대상: EC 분류 방법에 따라 118개 품목
 - 특별 규제수준 부여 품목: 45개(매년 쿼터량이 설정되는 품목)
 - Basket 대상 품목: 73개(한국의 수출이 자유로운 품목)
- 그룹 분류: 수입 민감 정도에 따라 5개 그룹으로 분류하여 초년도 규제수준 설정, 증가율 및 유통성에 차등을 둠.
- 기초연도 규제물량
 - 45개 품목에 대한 1978년도 쿼터량은 72,658톤으로 1976년 한국의 대EC 실적 대비 14.9% 증량됨.
- 1979~82년까지 매년 45개 품목의 경우 전년 대비 연 증가율은 평균 3.2%임.

3. 평가

- 한국 측은 EC가 정한 협상 시한인 1977.11월말까지 협상을 통해 섬유협정을 체결하여 향후 5년간 한국 섬유 수출업계의 안전을 도모하였으며, 앞으로는 섬유제품의 고가화, Basket 대상 품목 개발 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함.

**한·EC(구주공동체) 간의 섬유류 교역에 관한 협정. 전10권.
1979.9.12. Brussels에서 서명: 1980.2.1. 발효
(외무부고시 제49호) (V.5 양측 교섭안)**

생산연도 1977-1980

생 산 과 통상2 / 조약1

MF번호 2010-54 / 1 / 1-157

1977.11.7.~12.4. 브뤼셀에서 개최된 제2차 한·EC(구주공동체) 간 섬유협상에서 양측이 제시한 섬유협정 영문 문안 내용임.

**한·EC(구주공동체) 간의 섬유류 교역에 관한 협정. 전10권.
1979.9.12. Brussels에서 서명: 1980.2.1. 발효
(외무부고시 제49호) (V.6 가서명본, 1977.12.23.)**

생산연도 1977-1980

생 산 과 통상2 / 조약1

MF번호 2010-54 / 2 / 1-145

1979.9.12. 브뤼셀에서 한·EC(구주공동체) 간 가서명한 신섬유협정의 영문 문안임.

- 총 19조로 의정서 A, B, C, D 및 부속서로 구성
- 한·EC 간 교환한 협정 발효에 관한 공한 등 수록

한·EC(구주공동체) 간의 섬유류 교역에 관한 협정. 전10권.
 1979.9.12. Brussels에서 서명: 1980.2.1. 발효 (외무부고시
 제49호) (V.7 1978년도 기준치 및 연 증가율 합의문, 1977.12.1.)

생산연도 1977-1980

생 산 과 통상2 / 조약1

MF번호 2010-54 / 3 / 1-284

1977.11.7.~12.4. 브뤼셀에서 개최된 제2차 한·EC(구주공동체) 간 섬유협상 계기 12.1.
 양측이 서명한 1978년 섬유쿼터 기준치 및 연 증가율에 대한 영문 합의문임.

한·EC(구주공동체) 간의 섬유류 교역에 관한 협정. 전10권. 1979.9.12. Brussels에서 서명: 1980.2.1. 발효 (외무부고시 제49호) (V.8 1978)

생산연도 1977-1980

생 산 과 통상2 / 조약1

MF번호 2010-54 / 4 / 1-188

1978년 중 한·EC(구주공동체) 간 신섬유협정 체결 관련 내용임.

1. 추진 경위

- 한·EC 양측은 기존 섬유협정이 1977.12.31.자로 만료되어 1977.8~12월 신섬유협정 체결을 위한 제3차 회담 개최 결과, 1977.12.23. 브뤼셀에서 한·EC 간 신섬유협정에 가서명함.
 - 12.29. 주벨기에대사관과 EC는 공한을 통해 1978.1.1.부터 동 협정의 잠정 발효에 합의
- 1978.10.21. 정부는 주벨기에대사관이 품목별, EC 회원국별 쿼터량 등 일부 미결문제에 대해 EC와 최종 합의함에 따라 정식 서명을 위한 국내 절차를 추진하기로 함.

2. 주요 내용

- 협정 유효기간: 1978.1.1.~82.12.31.(5년간)
- 규제대상: 118개 품목
 - 특별 규제수준 부여 품목: 45개
 - Basket 대상 품목: 73개(수출이 자유로운 품목)
- 그룹 분류
 - 수입 민감도에 따라 5개 그룹으로 분류하여 초년도 규제수준 설정, 증가율에 차등을 둬.
- 한국 전통적 민속 수공제품은 쿼터에서 제외
- 한국은 쿼터 범위 내에서 수출허가서를 발급하고, EC는 5일 이내 수입허가서 발급

한·EC(구주공동체) 간의 석유류 교역에 관한 협정. 전10권. 1979.9.12. Brussels에서 서명: 1980.2.1. 발효 (외무부고시 제49호) (V.9 1979-80)

생산연도 1977-1980

생 산 과 통상2 / 조약1

MF번호 2010-54 / 5 / 1-235

1979~80년 중 한·EC(구주공동체) 간 신석유협정 체결 관련 내용임.

1. 체결 경위

- 1977.8월 예비 협상(서울)
- 1977.10월 제1차 협상(브뤼셀)
- 1977.11~12월 제2차 협상(브뤼셀)
- 1977.12월 협정안 가서명(브뤼셀)
- 1978.1월 잠정 발효
- 1979.6월 문안 합의

2. 체결의 의의

- 한국의 대EC 석유류 수출이 연간 3.2% 증가율을 확보하게 됨.

3. 주요 내용

- 1978~82년(5개년) 동안 적용될 금번 제2차 협정은 19개 조항, 2개 부속서 및 4개 의정서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118개 품목을 45개의 특별규제수준 품목과 73개의 협의대상 품목으로 나누어 규제하도록 되어있음.

4. 동 협정은 1979.9.12. 브뤼셀에서 정민길 주EC대표부 공사와 Tran Van Thin C. EC 집행위 대외총국장 간에 정식 서명되어, 1980.2.1.자로 발효됨(외무부고시 제49호).

**한·EC(구주공동체) 간의 섬유류 교역에 관한 협정. 전10권.
1979.9.12. Brussels에서 서명: 1980.2.1. 발효
(외무부고시 제49호) (V.10 협정문)**

생산연도 1977-1980

생 산 과 통상2 / 조약1

MF번호 2010-54 / 6 / 1-457

1979.9.12. 브뤼셀에서 서명된 한·EC(구주공동체) 간 섬유류 교역에 관한 협정 문안임(국문, 프랑스어, 덴마크어, 네덜란드어, 이탈리아어).

- 구성: 무역약정(제1~6조), 협정의 운영(제7~13조), 경과 및 최종 규정(제14~19조)
- 부속서 I, II 및 의정서 A, B, C, D

[1978.2.7.자] 한·미국 간의 면직물·모직물·인조섬유직물 및 직물제품의 교역에 관한 협정의 개정. 전2권. 1980.9.8. Washington D.C.에서 각서교환: 발효(외무부고시 제55호) (V.1 1979)

생산연도 1979-1980

생 산 과 통상2 / 조약1

MF번호 2010-54 / 7 / 1-252

1979년 중 한·미국 간 면직물, 모직물, 인조섬유직물 및 직물제품의 교역에 관한 협정 개정 관련 내용임.

1. 1978.11월 미국 측은 미국 섬유업계의 어려운 입장을 이유로 1979년도에 한해 일부 민감 품목에 대해 쿼터량 이하의 제한조치를 수락할 것을 요청하여, 한·미 양측은 1979.1.29.~2.1.(서울)과 1979.2.26.~3.3.(워싱턴 D.C.) 회담을 개최하여 아래 요지의 양해각서에 합의함.

- 9개 Surge 품목에 대해 1979년 쿼터량 이하로 수출
- 특정 품목에 대해 1979년도 조상사용권 포기

594

2. 제1차 한·미 섬유회담(1979.7.24.~26., 서울)

- 개최 경위
 - 1979.3월 카터 미국 대통령은 1980~82년간 한국 등 대중수출국의 대미 섬유류 수출을 보다 강력히 규제할 것을 주장한 섬유백서를 발표하였으며, 미국 측은 현행 협정에 대한 추가적 제한을 목적으로 한국 정부에 섬유회담 개최를 제의함.
- 수석대표
 - 한국 측: 김철수 상공부 통상진흥관
 - 미국 측: Smith Micheal USTR(미국통상대표부) 대사
- 미국 측은 1980~82년(협정 잔여연도) 중 융통성 제한(전용 1.5%, 조상 및 이월 2.5%) 등을 제의하였으나, 한국 측은 이에 반대함.

3. 제2차 한·미 섬유회담(1979.9.19.~21., 워싱턴 D.C.) 및 제3차 한·미 섬유회담(1979.10.6.~8., 서울)

- 수석대표
 - 한국 측: 박필수 상공부 상역차관보
 - 미국 측: Smith Micheal USTR 대사
- 한·미 간 이견차이로 합의하지 못하고, 차기 회담을 1979.11월 개최하기로 함.
 - 미국 측은 기존 섬유협정의 수정을 요구하였으며, 한국 측은 보상조치 없이는 미국 측의 수정 제의를 수락할 수 없다고 함.

[1978.2.7.자] 한·미국 간의 면직물·모직물·인조섬유직물 및 식물제품의 교역에 관한 협정의 개정. 전2권. 1980.9.8. Washington D.C.에서 각서교환: 발효(외무부고시 제55호) (V.2 1980)

생산연도 1979-1980

생 산 과 통상2 / 조약

MF번호 2010-54 / 8 / 1-201

1980년 중 한·미국 간의 면직물, 모직물, 인조섬유직물 및 식물제품의 교역에 관한 협정 개정 관련 내용임.

1. 제4차 한·미 섬유회담(1980.1.30.~2.3., 워싱턴 D.C.)

- 정부 훈령
 - 수입급증방지조치(Surge Mechanism) 관련 홍콩 EA(비특정 품목은 개별 쿼터량 설정 없이 수출) 방식을 채택하되 특정 품목의 Basket 전환은 품목수를 최소한 축소할 것
 - 융통성 하향조정 관련 일률적 방식을 지양하고 쿼터량, 향후 수출 전망 등을 고려하여 차등 조정할 것
- 수석대표
 - 한국 측: 박필수 한국 상공부 상역차관보
 - 미국 측: Web Reiter USTR(미국통상대표부) 대사
- 한·미 양측은 기존 섬유협정 제6조의 협의수준 규제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대신 ER System (수출추천통보제도) 채택을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에 가서명하고, 실무회담을 1980.4월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함.
- 평가
 - 당초 미국 측이 요구했던 선보다 한국 측에 유리하게 타결되어 한국의 대미 섬유류 수출에 별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2. 한·미 실무회의(1980.4.3.~8., 서울)

- 수석대표
 - 한국 측: 이은택 상공부 통상진흥관
 - 미국 측: McConville 국무부 섬유과장
- 양측은 ER System 운영방안 및 1979년도 모자류 수출통계 확정 등에 대해 협의하였으나, 상호 이견으로 추후 재협의하기로 함.

3. 한·미 섬유협정 수정

- 1980.4월 미국 측은 현 한·미 섬유협정 부속서 C 내용 중 기술적 착오가 있음을 지적하고, 한국 측 수정을 제의한바, 9.8. 김용식 주미국대사와 머스키 미 국무장관 간에 섬유협정 개정을 위한 아래 요지의 각서를 교환함(외무부고시 제55호).
 - 부속서 C 삭제 및 현행 협정의 제6조를 ER System에 관한 내용으로 대체함.

한·UNFPA(유엔인구활동기금) 간의 인구계획에 관한 제2차 협정. 1980.1.18. New York에서 서명: 발효(조약 제699호)

생산연도 1979-1980

생 산 과 조약

MF번호 2010-54 / 9 / 1-130

1979~80년 중 제2차 한·UNFPA(유엔인구활동기금) 간 인구계획에 관한 협정 체결 관련 내용임.

1. 체결 경위

- 1979.6월 UNFPA 측은 제2차 한·UNFPA 간 인구계획에 관한 협정 초안 제시
 - UNFPA는 제1차 한·UNFPA 인구계획에 관한 협정이 1977.12.31.자로 종료됨에 따라 한국이 수행해온 UNFPA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를 감안, 제2차 협정(1978.1.1.~81.6.30.)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약 220만 달러의 사업지원 자금을 UNFPA 본부에 요청함.
- 1979.8월 한국 측은 대안을 제시하고, 9월 양측은 문안에 합의함.

2. 체결 의의

- 정부가 유엔이 제공하는 무상지원 자금(약 297만 달러)을 유효하게 사용하여 한국의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77~81)과 관련한 가족계획사업의 목표 달성에 기여함.

3. 주요 내용(전문 및 본문 30조)

- 협정 목적: UNFPA가 1978.1.1.~81.6.30.간 정부의 인구사업을 아래와 같이 지원함.
 - 가족계획홍보제도 및 가족계획사업 통계 개선
 - 보건 및 가족계획과 새마을운동을 통합하는 연구
 - 탁아소를 통한 가족계획, 주요 통계 개선 등

4. 동 협정은 1980.1.18. 뉴욕에서 윤석현 주유엔대사와 라파엘 살라스 UNFPA 사무국장 간에 서명되어, 동일자로 발효됨(조약 제699호).

한·핀란드 간의 경제·공업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1979.9.13. Helsinki에서 서명: 1980.2.23. 발효 (조약 제701호)

생산연도 1979-1980

생 산 과 조약 / 경제협력

MF번호 2010-54 / 10 / 1-207

1979~80년 중 한·핀란드 간 경제·공업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체결 관련 내용임.

1. 체결 경위

- 1979.2월 주핀란드대사는 한·핀란드 간의 통상 및 기술협력 증진방안으로 양국 간 경제·공업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체결을 제안한바, 핀란드 측은 한국 측에 초안을 제시함.
- 1979.7월 한국 측은 상기 초안에 대해 수정안을 제시, 핀란드 측은 이를 수락함.

2. 체결 의의

- 한·핀란드 간 경제, 공업, 기술 분야의 협력 증진 등 양국 간 우호관계 증진

3. 주요 내용(전문 및 6개 조항)

- 금속가공 산업, 건축자재 산업, 제약 및 화학비료 등 화공 산업, 전자 산업, 조선업, 식품제조업 등 경제부문에서 협력 증진
- 합작투자, 상호 교환방문, 기술 교류 및 전문가 교류
- 혼성위원회 설치와 특별실무반 구성

4. 동 협정은 1979.9.13. 헬싱키에서 박동진 외무부장관과 Esko Rekola 핀란드 대외통상부 장관 간에 서명되어, 동일자로 발효됨(조약 제701호).

한·가봉 간의 경제·기술·문화 및 과학협력에 관한 협정. 1975.7.7. 서울에서 서명: 1980.11.18. 발효(조약 제723호)

생산연도 1974-1980

생 산 과 조약1 / 경제협력2 / 문화교류 / 중부아프리카

MF번호 2010-54 / 11 / 1-187

1974~80년 중 한·가봉 간 경제, 기술, 문화 및 과학협력에 관한 협정 체결 관련 내용임.

1. 체결 경위

- 1973.12.20. 가봉 측, 한·가봉 간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가봉 외무부장관 방한 계기 경제협력협정 체결 희망
- 1974.3.5. 한국 측, 협정 초안 제시
- 1974.4.13.~18. 가봉 측, 가봉 외무부장관 방한 시 협정 명칭을 한·가봉 경제·기술·문화·과학 협정으로 변경, 양측은 교섭 결과 4.17. 동 협정에 가서명

598

2. 체결 의의

- 양국 간 교류 확대 및 경제협력 증진 등 우호관계 증진에 기여

3. 주요 내용

- 투자 진흥, 기술자 교환, 기술 이전 등에 협력
- 양국은 합작회사 설립을 장려하고, 한국은 가봉인에게 기술훈련 실시 및 기술 장비 제공
- 협정은 비준서 교환 후 발효, 유효기간은 5년

4. 동 협정은 1980.7.7. 김동조 외무부장관과 오쿰바 가봉 외무부장관 간에 서명되어, 1980.11.18. 가봉 리브르빌에서 비준서를 교환, 동일자로 발효됨(조약 제723호).

한·가봉 간의 협력에 관한 한·가봉 공동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협정. 1975.7.7. 서울에서 서명: 1980.11.18. 발효(조약 제724호)

생산연도 1975-1980

생 산 과 중부아프리카 / 조약

MF번호 2010-55 / 1 / 1-137

1975~80년 중 한·가봉 간 협력에 관한 양국 간 공동위원회 설치에 관한 협정 체결 관련 내용임.

1. 체결 경위

- 1975.4.13.~18. 가봉 측, 가봉 외무부장관 방한 시 한·가봉 간 공동위원회 설치에 관한 협정안 제시
- 1975.4.17. 양측, 동 협정에 가서명

2. 주요 내용

- 공동위원회는 경제, 기술, 문화, 관광 분야에서의 양국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구로 각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연 1회 한국과 가봉에서 교대로 개최함.

3. 동 협정은 1975.7.7. 서울에서 김동조 외무부장관과 오쿰바 가봉 외무부장관 간에 서명되어, 1980.11.18. 가봉 리브르빌에서 비준서를 교환, 동일자로 발효됨(조약 제724호).

한·독일 간의 광산재해방지사업의 확장을 위한 각서교환. 1980.6.4. 서울에서 각서교환: 발효(외무부고시 제54호)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조약1 / 경제조사

MF번호 2010-55 / 2 / 1-60

1980년 중 한·독일 간의 광산재해방지사업의 확장을 위한 각서교환 관련 내용임.

1. 체결 경위

- 1977.2월 한·독일 간 광산재해방지사업약정 체결(658,500DM 지원)
- 1978.8월 제1차 추가약정 체결(380,000DM 지원)
- 1980.3월 주한 독일대사관, 제2차 추가약정안 제시
- 1980.4.23. 양측, 최종 문안 합의

600

2. 주요 내용

- 독일 측, 320만 마르크 상당의 광산용 장비를 한국 측에 제공하고 장기 전문가 4명 및 단기 전문가 다수를 한국에 파견, 추가 장비 제공
- 한국 측, 독일 전문가에 면세특권 부여
- 사업수행기관: 한국 자원개발연구소, 독일 해외기술협력청

3. 동 협정은 1980.6.4. 서울에서 박동진 외무부장관과 볼호가 에게르 주한 독일대사 간에 각서 교환으로 체결되어, 동일자로 발효됨(외무부고시 제54호).

한·사우디아라비아 간의 경제기술협력협정의 개정 검토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경제협력2

MF번호 2010-55 / 3 / 1-62

1980년 중 한·사우디아라비아 간의 경제기술협력협정 개정 검토 관련 내용임.

1. 1980.11.7. 외무부는 경제기획원, 재무부, 건설부, 농수산부 등 관련 부처 앞 공문을 통해 5월 한·사우디아라비아 간 공동성명 취지에 따라 1975년 체결한 양국 간 경제기술협력협정의 개정 필요성과 개정의 경우 포함할 요청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요청함.
2. 재무부, 농수산부, 노동청은 개정사항이 없다고 회신, 경제기획원은 1980.11.27. 한·사우디아라비아 간 합동위원회 수석대표를 현재 차관급에서 주요 경제정책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경제 각료로 격상될 수 있도록 협정 개정안에 반영을 요청함.

한·세네갈 간의 경제기술협력협정. 1979.4.24. 서울에서 서명: 1980.9.1. 발효(조약 제714호)

생산연도 1978-1980

생 산 과 조약 / 경제협력

MF번호 2010-55 / 4 / 1-155

1978~80년 중 한·세네갈 간의 경제기술협력협정 체결 관련 내용임.

1. 체결 경위

- 1979.1.19. 한국 측, 한·세네갈 경제기술협력협정 초안 제시
- 1979.3.23. 양측, 세네갈 대통령 방한 계기 서명하기로 합의
- 1979.4.7. 세네갈 측, 대안 제시
- 1979.4.9. 양측, 문안 합의

602

2. 체결 의의

- 한국기업의 대세네갈 및 서부아프리카 진출에 기여

3. 주요 내용

- 투자의 증진과 기술 및 기술자의 교환으로 양국 간 경제협력 도모
- 훈련생, 전문가의 교류를 통한 기술협력 장려
- 경제, 기술협력을 위한 혼성위원회 설치

4. 동 협정은 1979.4.24. 서울에서 박동진 외무부장관과 루이 알렉산드렌느 세네갈 기획협력부장관 간에 서명되어, 1980.9.1.자로 발효됨(조약 제714호).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한국 가입, 1980.1.27.

생산연도 1975-1980

생 산 과 조약2 / 국제법규

MF번호 2010-55 / 6 / 1-367

1975~80년 중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한국 가입 관련 내용임.

1. 가입 경위

- 1969.5.22. 유엔총회 결의에 따라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채택
- 1969.11.27. 한국 측 서명
- 1976.12.16. 국회 비준 동의
- 1977.4.27. 한국 측, 29번째로 유엔사무총장에게 비준서 기탁

2. 주요 내용(전문과 85개조)

- 조약의 체결 및 발효, 조약의 준수, 적용 및 해석
- 조약의 개정 및 변경, 조약의 정정 및 등록

3. 동 협약은 규정상 35번째 비준서 혹은 가입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30일 후에 발효되므로, 1979.12.28. 토고 정부가 35번째 가입서를 유엔사무총장에게 기탁함으로써 1980.1.27.자로 한국에 대하여 발효됨(조약 제697호).

외교·영사 관계 및 특권·면제에 관한 법적의견 문의 및 회신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국제법규

MF번호 2010-55 / 7 / 1-24

1980년 중 외교·영사 관계 및 특권·면제에 관한 법적의견 문의 및 회신 관련 내용임.

1. 경위

- 1980.2.1. 주한 독일대사관은 동 대사관 무관이 구독하고 있는 “Stars and Stripes”지에 대한 간행물 검열조치가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반한다는 항의를 해 옴.
- 동 대사관 Note Verbal 수교

2. 조치

- 1980.2.14. 외무부는 주한 독일대사관 항의에 대한 회신조치 관련 재가를 득함.
- 1980.2.18. 외무부는 비엔나협약 해석상 공관 또는 공관원이 구독하는 간행물에 대한 검열이 협약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함.
 - 외교특권·면제는 공관 기능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계엄하의 간행물 검열이 동 기능수행을 해친다고 볼 수 없음.
 - 검열은 수입업자가 간행물의 수신인을 특정하기 이전에 일괄적으로 행해지며, 검열 당시 구독자로서 공관과 간행물 간에는 권리관계가 성립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공관이 협약의 불가침권을 원용할 대상 자체가 검열 시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임.
- 다만, 예우상 공관 또는 공관원에 대해서는 무삭제본을 배포하도록 관계당국에 협조를 요청할 것임을 밝힘.

[UNIDROIT] 국제유언형식의 통일법에 관한 협약 가입 추진

생산연도 1973-1980

생 산 과 조약2

MF번호 2010-55 / 8 / 1-117

1973~83년 중 국제유언형식의 통일법에 관한 협약의 한국 가입 관련 내용임.

1. 국제유언형식의 통일법 협약 채택을 위한 외교회의(1973.10.16.~26., 워싱턴 D.C.)

- 주최: 미국 정부
- 한국 불참
- 협약 채택 필요성
 - 각국의 유언형식에 관한 국내법이 상이
 - 외국에서 유언하고자 하는 자 또는 여러 국가에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유언할 경우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2. 한국과의 관련

- 한국의 최근 경제 신장도 및 한국의 교민 수의 증대로 인한 국제적인 생활 관계 확대를 감안, 체계적인 준비를 할 필요성이 있음.

3. 동 협약은 1973.10.26. 워싱턴 D.C.에서 채택되어, 1978.2.9.자로 발효됨.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제6조, 제16조 및 제23조의 해석 적용에 관한 협정(보조금및상계관세규약) 한국 가입, 1980.7.10. 전6권 (V.1 1975-76)

생산연도 1975-1981

생 산 과 조약2 / 경제기구

MF번호 2010-55 / 9 / 1-108

1975~76년 중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제6조, 제16조 및 제23조의 해석 적용에 관한 협정(보조금및상계관세규약) 체결을 위한 협의 내용임.

1. 경위

- 1972.6월 GATT 공산품 산하 제1작업단이 수출보조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GATT 제16조 4항 및 1960년 관계 선언 검토
- 1974.2월 무역협상위원회가 보조금 및 상계관세 소그룹을 설치하여 상기 제1작업단 업무를 인계, 수출보조금 문제 협의

2. 보조금 및 상계관세 소그룹회의(1975.6.3.~13., 제네바)

- 정부대표: 안영환 코트라 국제경제과 직원
- 주요 의제: 보조금 및 상계관세에 관한 협상 방법 논의
- 협의 요지
 - 미국은 보조금 유형을 절대 금지, 일정한 기준에 입각한 금지, 지급 가능한 유형으로 구분하여 대상리스트 작성 주장
 - 한국은 상계관세규정 개정 시 개도국의 이익 확보를 주장
 - 인도는 브라질 제안의 Positive List 제도는 범위 설정이 어려우며, GATT 제37조 3항의 근본정신에 배치된다고 반대

3. 보조금 및 상계관세 소그룹회의(1975.11.10.~13., 제네바)

- 선진·개도국 간 이견으로 별 진전 없이 종결, 차기 회의는 1976.3~4월 중 개최하기로 함.
 - 토의 순서에 있어 미국은 보조금, 상계관세 순으로 토의를 주장하고 EC(구주공동체)는 개도국 특별대우문제, 상계관세, 보조금 순으로 토의 주장
 - 선발개도국은 특별대우 보장을 요청, 후진개도국은 보조금 허용 및 상계관세 적용의 전면 제외를 요청

4. 보조금 및 상계관세 소그룹회의(1976.4.5.~6., 제네바)

- 일반 문제 및 개도국 특별대우 문제에 대해 협의, 각 체약국은 제출된 각국 안에 대한 입장 및 대안을 5.17.까지 GATT 사무국에 제출하도록 함.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제6조, 제16조 및 제23조의 해석 적용에 관한 협정(보조금및상계관세규약) 한국 가입, 1980.7.10. 전6권 (V.2 1978)

생산연도 1975-1981

생 산 과 조약2 / 경제기구

MF번호 2010-55 / 10 / 1-128

1978년 중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제6조, 제16조 및 제23조의 해석 적용에 관한 협정(보조금및상계관세규약) 체결 추진 및 미국 측 안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임.

1. 경위

- 1974.2월 무역협상위원회가 보조금 및 상계관세 소그룹을 설치하여 수출보조금 문제를 협의
- 1978.7.13. 및 11.15. 제네바에서 보조금 및 상계관세 소그룹회의가 개최되어 미국 등 5개 주요 선진국이 공동 제의한 초안 등 주요사항 협의

2. 주요 쟁점사항

- 일반보조금의 심각성 및 중요성
- 수출보조금의 정의, 보조금의 지급 금지 가능성, 대개도국 특별대우 문제
-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보조금, 수입을 대체하는 국내보조금
- 제재 종류 및 절차

3. 미국 측 안에 대한 한국 정부 입장

- 1978.6.15. 미국 측은 보조금 및 상계관세 초안에 대한 한국 측 지지를 요청한바, 6.21. 외무부는 아래 입장을 주미국대사관에 통보하고 활용할 것을 지시함.
 - 상기 GATT 협정 체결 시 상계관세 발동 요건인 실질적인 피해 개념과 객관적인 기준정립 문제, 발동 절차, 다자 간 감시기구 설치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GATT 제16조 및 제6조의 취약성을 보완해야함.
 - 도쿄 선언 제5항에 규정된 대개도국 대우(Differential Treatment)가 명문화 되어야 하며, 개도국에 대한 추상적인 수혜조치보다는 개도국의 금융, 세제, 보험상 수출지원이 만족할 만한 산업구조의 개편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상계관세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됨.
 - 미국 초안은 Differential Treatment가 없으며, 개도국이나 선진국을 동일시하는 것은 도쿄 선언에 상치됨.

4. 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정 초안(영문)

- 개도국 수정안, 선진국 측 안 등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제6조, 제16조 및 제23조의 해석 적용에 관한 협정(보조금및상계관세규약) 한국 가입, 1980.7.10. 전6권 (V.3 1979)

생산연도 1975-1981

생 산 과 조약2 / 경제기구

MF번호 2010-55 / 11 / 1-200

1979년 중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제6조, 제16조 및 제23조의 해석 적용에 관한 협정(보조금및상계관세규약)에 대한 한국 정부의 가입 추진 내용임.

1. 추진 경위

- 정부는 GATT 제6조, 제16조 및 제23조의 해석 적용에 관한 협정의 서명에 대비하여 1979.3.27. 및 3.30. 2차에 걸쳐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아래의 기본입장을 수립함.
 - 협정안이 한국의 수출지원 정책에 가능한 한 부합되고 한국의 수락이 가하도록 동 협정안의 최종 채택 전에 필요한 수정을 시도함. 일단 협정안이 최종 채택되면 가입 방법을 검토함.
- 1979.10.29. Levin 주한 미국대사관 참사관은 한탁채 외무부 국제경제국장 면담 시 한국의 상기 GATT 협정의 가입을 권유함.

2. 주요 내용

- 각국의 보조관행에 대한 규율 설정
 - 수출보조금은 공산물에 대한 지급은 금지하고, 농업, 임업, 수산품은 지급 제한
 - 경제, 사회정책상 국내보조금의 지급 필요성 인정
- 타국의 불법 보조로 인한 피해 시 대응조치 규정
 - 일정한 조사 절차를 거쳐 수출국의 보조금이 지급되었으며, 이로 인해 수입국의 피해 입증 시 수입국은 상계과세 부과
- 서명국의 동의하에 유보가입 인정

3. 가입 검토

- 가입 시 장점
 - 수입국은 피해조사 및 입증 의무가 있음.
 - 수입국의 조사기간 중 한국(수출국)은 반증 자료 제시가 가능함.
 - 정부는 서명국위원회에 심사 요청이 가능함.
- 가입 시 단점
 - 수출지원제도의 점진적 감축이 불가피하며 선발개도국의 공약 의무 이행이 필요함.
 - 정부의 모든 지원제도를 대외 공표해야 함.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제6조, 제16조 및 제23조의 해석 적용에 관한 협정(보조금및상계관세규약) 한국 가입, 1980.7.10. 전6권 (V.4 1980.1-3월)

생산연도 1975-1981

생 산 과 조약2 / 경제기구

MF번호 2010-55 / 12 / 1-142

1980.1~3월 중 미국의 한국산 수출품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 및 한국 정부의 대응조치임.

1. 미국의 한국산 고무신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

- 1971.9월 미국업소의 제소 및 11월 미 재무부의 방한 조사
- 1972.6월 미 재무부, 0.7% 상계관세 부과 공고
- 1972.7월 한국 정부, 항의서 제출 및 재조사 요청
- 1972.12월 한·미 간 수출물량 자율규제 합의
- 1975.12월 미 재무부, 상계관세 징수보류 결정(1979년까지 유효)
- 1980.1.1. 미국은 한국이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제6조, 제16조 및 제23조의 해석 적용에 관한 협정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979년 미 통상법에 의거, 한국산 고무신에 대해 0.7% 상계관세를 부과함.
 - 한국 고무신류의 대미 수출실적: 1978년(2억 2천 7백만 달러), 1979.11월 말(1억 6천 8백만 달러)

2. 정부의 대응조치

- 미국에 대한 피해조사 요구
 - 정부는 미국 정부의 관계자 접촉 계기에 1980.1.4. 한국의 상기 GATT 협정 가입 선언 문안이 합의된 점을 감안, 미국의 일방적인 조치가 부당함을 지적하고 한국의 동 협정 서명 시까지 잠정적으로 한국을 1979년 미 통상법의 협정 적용국가로 대우하여 한국산 고무화류 등 기존 상계관세 부과 항목(핸드백, 타이어 및 튜브)에 대한 피해조사를 요청함.
- GATT 협정 가입 추진
 - 1980.2.11. 정부는 상기 GATT 협정이 피해조사규정(Injury Test Clause)을 도입하고 있으며, 개도국에 대한 특별조항에 따라 현행 보조금 관행을 유지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동 협정 가입을 추진하기로 함.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제6조, 제16조 및 제23조의 해석 적용에 관한 협정(보조금및상계관세규약) 한국 가입, 1980.7.10. 전6권 (V.5 1980.5월)

생산연도 1975-1981

생 산 과 조약2 / 경제기구

MF번호 2010-55 / 13 / 1-150

1980.5월 중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제6조, 제16조 및 제23조의 해석 적용에 관한 협정(보조금및상계관세규약)에 대한 한국 정부의 가입 추진 내용임.

1. 추진 배경

- GATT의 제7차 MTN(다자간무역협상) 일환으로 진행되어온 관세협상 결과, 1979.4.12. 제네바에서 GATT 제6조, 제16조 및 제23조의 해석 적용에 관한 협정이 채택됨.
- 상기 GATT 협정에 의하면 수입국은 상계관세 부과의 기본요건으로 수입국 산업에 대한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하므로 한국이 동 협정에 가입함으로써 선진국의 한국 수출상품에 대한 자의적인 상계관세 부과가 제한되며 선진국의 수입규제조치 발동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 한국이 상기 협정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협정에 보장된 항변자료 제시 등 수입국의 자의적인 상계관세 조사에 대처하는 권리행사가 불가능함.

2. 주요 내용

- 상계관세의 부가 요건 엄격화
 - 수입국은 보조금을 지급받는 상품의 수입으로 국내 산업에 피해를 유발시킨 사실을 입증한 경우에만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계관세는 수출국과 사전협의 후 부과함.
- 보조금의 지급 제한 또는 금지
 - 농산물 등 특정 일차상품 이외의 모든 생산품에 대한 수출보조금 지급을 금함.
- 개발도상국의 특수성 부분 인정
 - 정부의 수출보조금 지급이 개도국의 경제개발계획의 핵심적 부분임을 인정함.
- 상계관세 부과 및 보조금 지급에 대한 국제분쟁의 해결을 위해 위원회를 설치함.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제6조, 제16조 및 제23조의 해석 적용에 관한 협정(보조금및상계관세규약) 한국 가입, 1980.7.10. 전6권 (V.6 1980.6-12월)

생산연도 1975-1981

생 산 과 조약2 / 경제기구

MF번호 2010-55 / 14 / 1-144

1980.7.10. 한국 정부는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제6조, 제16조 및 제23조의 해석 적용에 관한 협정(보조금및상계관세규약)에 가입함.

1. 가입 경위

- 정부는 한국의 대미수출 4개 품목이 미국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상계관세 부과에 있으며, 앞으로도 철강제품 등 여타 품목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이에 대처하기 위해 GATT 제6조, 제16조 및 제23조의 해석 적용에 관한 협정 가입을 추진함.
- 1980.4.16. 최규하 대통령, 협정 가입 재가
- 1980.6.10. 노신영 주제네바대표부대사, 제네바 GATT 사무국에서 협정에 서명

2. 주요 내용

- 수입국은 보조금을 지급받는 상품의 수입으로 국내 산업에 피해를 유발시킨 사실을 입증한 경우에만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
- 정부보조제도 실시의 일반적 금지, 당사국의 협의 및 분쟁해결 절차에 관한 규정 등

3. 동 협정은 1980.1.1.부터 가입국 간에 발효됨.

- 1980.6.10. 현재 가입국: 미국, EC(구주공동체), 일본, 브라질, 칠레, 우루과이, 홍콩 등 21개국
- 한국의 경우, 서명 30일 이후 발효(1980.7.10. 발효, 조약 제709호)

4. 평가

- 상기 협정은 도쿄라운드 무역협상(1973.9~79.4월) 결과로 채택된 다자 간 무역협정 가운데 한국이 가입한 최초의 협정임.
- 앞으로 선진 수입국들이 보호무역 수단으로 수입상품에 대한 상계관세를 빈번히 활용할 가능성을 감안할 경우 정부의 상기 협정 가입은 국제적 추세에 적극 대처한다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음.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한국 가입, 1980.10.2.

생산연도 1979-1980

생 산 과 조약2 / 경제기구

MF번호 2010-55 / 15 / 1-192

1979~80년 중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의 한국 가입 관련 내용임.

1. 현지 협상단 보고

- 1979.3.26. 공식회의 개최, 대부분의 참가국이 협정안에 합의한 상태

2. 관계부처 협의

- 1979.4.4. 외무부, 농수산부, 상공부에 서명에 필요한 관계 법규, 절차, 기구 등 국내조치와 유보 필요성 등 관련사항 검토 요청
- 4.12. 공업진흥청, 서명에 이의 없음을 회신
- 10.8. 농수산부, 검토의견 송부

3. 동 협정은 1980.9.3. 주제네바대표부대사 서명으로 체결되어, 1980.10.2.자로 발효됨(조약 제715호).

- 9.5. 보도자료 배포

국제민간항공협약의 개정[48조 가항]에 관한 의정서

생산연도 1962-1969

생 산 과 조약 / 국제기구

MF번호 2010-55 / 17 / 1-148

1962~69년 중 국제민간항공협약의 개정(48조 가항)에 관한 의정서 관련 내용임.

1. 개정 목적

- 국제민간항공협약은 1944.12.7. 시카고에서 작성되고 1947.4.4. 발효된 국제협약으로 국제민간 항공이 안전하고 정연하게 발달하도록 하고 국제항공 수송 업무의 기회균등을 보장하여 경제적이고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함.

2. 비준 경위

- 1962.9.15. 로마에서 국제민간항공협약 개정 의정서 채택
- 1965.6.17. 한국 정부 비준
- 1965.7.2. 비준서 기탁

3. 비준의 의의

- 본 의정서는 10개 체약국의 요청이 있을 때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것을 총 회원국의 5분의 1/5 이상의 요청이 있어야 소집할 수 있도록 협약 제43조 (가)항을 수정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음.

4. 주요 내용(수정조항)

- 총회의 임시총회는 이사회가 소집하거나 또는 총 체약국 수의 1/5 이상이 사무총장에게 요청할 때 언제든지 개최됨.
- 수정안의 발효에 필요한 비준국 수는 66개국으로 정함.
- 66개국이 비준하면 그날로부터 비준한 국가에 대하여 발효하며, 발효일 이후 비준한 국가는 비준서를 기탁할 때에 발효함.

국제민간항공협약 개정 의정서[50조 a항] 한국 가입, 1980.2.15.

생산연도 1974-1980

생 산 과 조약2 / 국제기구1

MF번호 2010-55 / 16 / 1-137

1974~80년 중 한국의 국제민간항공협약 개정 의정서(제50조 a항) 가입 관련 내용임.

1. 개정 내용

- 국제민간항공협약 제50조 (가)항의 “이사회는 총회가 선출한 30개국의 체약국으로 구성된다”라는 문구는 “이사회는 총회가 선출한 33개국의 체약국으로서 구성된다”라는 문구로 대체됨.
- 동 협약 제94조 (가)항의 규정에 따라 동 개정에 관한 의정서에 대한 86번째의 비준서가 기탁된 일자에 이를 비준한 국가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함.

614

2. 가입 경위

- 제21차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총회(1974.9.24.~25., 몬트리올)에서 채택
- 1975.2.17. 비준서 기탁
- 1980.2.15. 한국에 대하여 발효

중공의 항공안전에 관한 국제협약 가입 시 중국대표권 문제에 관한 유보 선언에 대한 한국의 입장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조약2

MF번호 2010-55 / 18 / 1-15

1980년 중 중국(구 중공)의 항공안전에 관한 국제협약 가입 시 중국대표권 문제에 관한 유보 선언에 대한 한국의 입장 관련 내용임.

1. 미국 정부 요청

- 미 국무부는 주미국대사관을 통해 중국 정부가 항공안전에 관한 헤이그 및 몬트리올 협약 가입 시 행한 중국대표권 문제에 관한 유보 선언에 대해 의견을 요청함.

2. 한국 정부 입장

- 한국 정부는 아래 이유로 명시적 의사표시를 하지 않기로 함.
 - 미국 측 의견문익에 대해 회신할 법적 의무가 없으며, 이에 관한 전례도 없음.
 - 전 당사국의 명시적 동의가 없는 한 대만(구 자유중국)의 전면적인 당사자 자격 박탈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과 한국의 대중국 관계 개선 정책에 비추어 굳이 적극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할 필요가 없음.
 - 유보에 대한 명시적인 수락의사 표시는 대만 정부에 대한 불승인과 중국 정부의 승인을 의미하므로 이는 대만과의 현 국교 관계에도 반하며 한국이 동 협약 가입 시 행하였던 유보와도 배치됨.

파나마 운하의 영구중립 운영에 관한 조약 의정서 한국 가입, 1980.11.4.

생산연도 1979-1980

생 산 과 중미 / 조약2

MF번호 2010-56 / 1 / 1-294

1979~80년 중 파나마 운하의 영구중립 운영에 관한 조약 의정서의 한국 가입 관련 내용임.

1. 채택 경위

- 1977.9.7. 미·파나마 간 파나마 운하의 영구중립 운영에 관한 조약 의정서 서명
- 1979.10.1. 협정 발효 및 세계 모든 국가에 가입 개방

2. 가입 의의

- 한국의 해운력이 신장됨에 따라 점차 증가하고 있는 한국 국적 선박의 파나마 운하 자유통항 및 항구 출입 보장
- 비동맹 조정국인 파나마에 대한 북한의 수교 정책 사전 저지

3. 한국 가입

- 1980.10.10. 국무회의 심의
- 1980.10.20. 대통령 재가
- 1980.11.4. 가입서 기탁 및 한국에 대하여 발효

저작권 인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한 다자 간 협정 법전화 작업

생산연도 1976-1980

생 산 과 국제기구 / 조약2

MF번호 2010-56 / 2 / 1-379

1976~80년 중 저작권 인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한 다자 간 협정 법전화 작업 관련 내용임.

1. 추진 배경

- 제19차 유네스코 총회(1976년)에서 유네스코는 WIPO(지식재산권기구)와 공동으로 다자 간 협약을 추진하도록 결의한 채택
- WIPO 체약국 간 총회에서도 동 결의 채택
- 동 결의에 따라 협약 초안 작성을 위한 3차례 정부전문가 회의 개최
 - 제1차 회의(1975.11.3.~10., 파리)
 - 제2차 회의(1976.12.8.~17., 파리)
 - 제3차 회의(1978.6.19.~30., 파리)

2. 저작권 인세의 이중과세방지에 관한 국제회의(1979.11.26.~12.13., 마드리드)

- 1979.12.13. 저작권 인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한 다자 간 협정 및 추가 의정서 채택

INTELSAT(국제전기통신위성기구)의 특권 면제 및 면책에 대한 의정서 한국 가입, 1980.10.9.

생산연도 1978-1980

생 산 과 국제기구 / 조약

MF번호 2010-56 / 3 / 1-295

1978~80년 중 INTELSAT(국제전기통신위성기구)의 특권 면제 및 면책에 대한 의정서의 한국 가입 관련 내용임.

1. 교섭 경위

- 1977.4월 INTELSAT, 의정서 초안을 각국에 배포
- 1978.5월 워싱턴 D.C.에서 본 의정서 채택

618

2. 체결 의의

- 동 기구의 재산, 직원 및 회의 참석 각국 대표에게 특권, 면세 및 면책을 부여함으로써 동 기구의 원활한 활동 보장

3. 건의

- 외무부장관 명의로 한국 가입안을 동 기구 사무국장에게 기탁
- 12번째의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 등은 기탁일로부터 30일 후에 발효하고, 발효 후 가입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가입서 기탁일로부터 30일 후에 발효하는 본 의정서를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포함.

4. 한국 정부는 1978.12.14. INTELSAT 사무국장에게 “INTELSAT의 특권, 면세 및 면책에 관한 의정서”에 당사국 중 최초로 가입서를 기탁하였으며, 동 의정서 규정(제16조 1항)에 따라 1980.10.9.자로 발효됨.

우주물체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국제책임에 관한 협약 한국 가입, 1980.1.14.

생산연도 1972-1980

생 산 과 조약2

MF번호 2010-56 / 4 / 1-197

1972~80년 중 우주물체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국제책임에 관한 협약의 한국 가입 관련 내용임.

1. 채택 경위

- 1971.11.29. 제26차 유엔총회에서 결의 제2777호로 채택되어, 1972.3.29. 워싱턴 D.C., 런던, 모스크바에서 서명이 개방됨.
- 한국은 1972.3.29. 런던 및 워싱턴 D.C.에서 거행된 동 협약 서명식에 비준 조건부로 서명함.
- 동 협약은 1972.9.1. 발효되었으며, 1978.12.31. 협약당사국은 미국, 소련을 포함한 54개국임.

2. 비준 의의

- 한국이 우주물체에 의한 손해를 입었을 경우 즉각적이고도 완전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주체가 됨.

3. 주요 내용

- 우주물체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의 국제책임에 관한 국제규칙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그러한 손해를 입은 희생자에 대하여 완전하고도 공평한 보상 절차를 강구하도록 함.
- 발사국은 우주물체에 의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전적인 책임을 지며, 둘 이상의 국가가 공동으로 발사한 경우 그러한 국가들이 책임을 짐.
- 발사국의 절대책임의 면제는 청구국의 작위, 부작위 또는 중대한 부주의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입증하는 한도까지 인정함.
- 피해국은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외교경로를 통하여 1년 이내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보상은 국제법과 정의 및 형평의 원칙에 따라 결정됨.

4. 동 협약은 1971.11.29. 제26차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어, 한국 전권대표가 1972.3.29. 서명, 1980.1.14. 기탁국인 미국 정부에 비준서를 기탁함으로써 동일자로 한국에 대하여 발효됨.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개정 외교회의, 제1차. Geneva, 1980.2.4.-3.4.

생산연도 1979-1980

생 산 과 국제기구1

MF번호 2010-56 / 5 / 1-182

정부는 1980.2.4.~3.4.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1차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개정 외교회의에 김시형 주제네바대표부 상무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개정 내용

- 개발도상국의 권익 강화
- 동맹국의 자국 특허권에 대한 제재 권한 강화

2. 한국 참가 자격

- WIPO(지식재산권기구) 회원국으로 참가
 - 투표권 없고, 개정 제안은 동맹국과 공동으로 가능

과도한 상해 또는 무차별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특정 재래식 무기의 사용금지 및 제한에 관한 유엔회의, 제2회기. Geneva, 1980.9.15.-10.10.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국제법규

MF번호 2010-56 / 6 / 1-136

정부는 1980.9.15.~10.10. 제네바에서 개최된 과도한 상해 또는 무차별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특정 재래식무기의 사용 금지 및 제한에 관한 유엔회의 제2회기에 정주년 주제네바대표부 공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회의 목적

- 인도주의 정신과 군사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과잉 상해 또는 무차별 살상 효과를 지닌 특정 재래식무기의 사용 금지 또는 제한을 위한 협약 채택

2. 참가국

- 76개국(북한 불참)

3. 주요 의제

- 지뢰 및 기타 장치물 작업단
- 소이 무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에 관한 의정서

4. 주요 결과

- 특정 재래식 무기 사용 금지 및 제한에 관한 협약 체결
- 탐지불가 파편 무기에 관한 의정서 체결
- 지뢰, 부비트랩, 기타 장치물 사용 금지 및 제한에 관한 의정서 체결

1977년 국제사탕협정 한국 가입, 1980.1.2. 전2권 (V.1 1977)

생산연도 1977-1980

생 산 과 조약2 / 경제기구

MF번호 2010-56 / 7 / 1-261

1977년 중 국제사탕협정 한국 가입 관련 내용임.

1. 추진 경위

-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주관 하에 1977.4.18.~5.27. 및 1977.9.12.~10.7. 두 차례에 걸쳐 회의 개최
- 1977.10.7. 제네바에서 국제사탕협정(안) 채택
- 동 협정(안)은 유엔사무총장에게 제출되어 1977.10.28.~12.31. 유엔본부 사무국에서 회의 참가국의 서명을 위해 개방

622

2. 1977년 국제사탕협정 가입에 따른 장단점

- 장점
 - 원당가격 안정
 - 원당물량 확보
 - 원당 관계 정보 획득
 - UNCTAD를 통한 국제 협조
- 단점
 - 국제사탕기구에 대한 부담금 지불
 - 제57조에 의한 비회원국으로부터의 수입량 제한

3. 가입 의의

- 국제사탕협정의 당사국 지위를 지속시켜 적절한 가격 수준으로 소요원당을 확보함으로써 원당 수급을 원활하게 함.

4. 주유엔대사는 1977.12.29. 1977년 국제사탕협정에 서명하고, 동 협정을 한국에 잠정 적용할 것을 유엔사무총장에게 통고함. 또한 1973년 국제사탕협정을 1978.12.31.까지 3차 연장을 위한 결의문에 대한 수락서를 1977.12.23.자로 유엔사무총장에게 기탁함.

1977년 국제사탕협정 한국 가입, 1980.1.2. 전2권 (V.2 1978-80)

생산연도 1977-1980

생 산 과 조약2 / 경제기구

MF번호 2010-56 / 8 / 1-482

1. 국제사탕협정 잠정 적용

- 1978.1.5. 주유엔대사는 1977년 국제사탕협정이 1978.1.1.자로 잠정 발효되었다고 보고함.
- 동일자로 한국에 잠정 적용되었으며, 1973년 국제사탕협정은 효력 종료

2. 동 협정은 1978.12.5. 외무부장관 명의 비준서를 유엔사무총장에게 기탁함으로써 1980.1.2.자로 한국에 대하여 정식 발효됨.

항해 문제에 대한 법적 검토

생산연도 1979-1980

생 산 과 국제법규

MF번호 2010-56 / 9 / 1-92

1979~80년 중 항해 문제에 대한 법적 검토 관련 내용임.

1. 도버해협이 통항분리제도 및 해양환경보호

- 도버해협 국가들은 IMCO(국제해사기구) 회원국으로서 동 해협의 수로 및 환경보존 관리문제를 검토함.

2. 제42차 IMCO 해사안전위원회에서 제기된 스리랑카 남부 돈드라 헤드 해역에 대한 통항분리제도 실시 문제 검토

- 한국 입장
 - 한국의 경제가 수출 및 해운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연안국의 관할권 확장으로 해운업이 위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해양법회의 등에 임하는 한국의 입장임.
 - 한국 유조선은 돈드라 헤드 해역을 필히 통과해야 하는바, 통항분리제 적용은 연안국의 관할권 확대로 한국 유조선 및 상선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 종래 통항분리제는 국제해협, 통항이 빈번한 항구 등에만 적용되어 온 점에 비추어 볼 때 동 해역에의 통항분리제 실시는 다른 연안국들을 자극하여 통항분리제가 불필요하게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상기 내용을 감안하여 동 해역 통항분리제 실시는 반대나 기권을 하는 것이 타당함.

3. 호주 정부는 1980.7월 호주 본토와 태즈메이니아 섬 간의 Bass 해협에 위치한 석유개발시설물과 선박의 충돌 및 선박 상호 간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동 해협에 항해금지구역 및 항로분리지역을 설정하는 내용을 IMCO에 제기할 예정임을 통보해 오면서 한국 정부의 지지를 요청함.

- 외무부는 7.31. 동 Bass 해협에 대한 호주 정부의 항해금지구역 설정은 다른 연안국을 자극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반대 입장 표명

해양법 대책위원회 자문위원단 회의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국제법규

MF번호 2010-56 / 10 / 1-65

1980.12.1. 외무부에서 개최된 해양법 대책위원회 자문위원단 회의 관련 내용임.

1. 참가자

- 이한기 서울대 교수, 대한국제법학회, 한국원양어업협회, 수산업협동조합, 자원개발연구소, 해양 개발연구소, 한국해사문제연구소 소속 자문위원 13명

2. 주요 의제

-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제9회기 및 동 속개회의 경과보고
- 북해도 조업 문제에 대한 교섭 결과 및 문제점 검토

유엔해양법회의, 제3차. 제9회기. New York, 1980.2.27.-4.4. 전6권 (V.1 대표단 구성 및 훈령)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국제법규

MF번호 2010-57 / 1 / 1-109

1980.2.27.~4.4. 뉴욕에서 개최된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제9회기 관련 대표단 구성 및 훈령 내용임.

1. 회의 일정

- 77그룹 준비회의: 1980.2.27.~29., 뉴욕
- 본회의: 1980.3.3.~4.4., 뉴욕

2. 대표단

- 수석대표: 문덕주 외무부 본부대사
- 교체수석대표: 최운상 주자메리카대사, 박수길 외무부 조약국장
- 대표: 노창희 외무부 심의관, 강종원 주유엔대표부 참사관, 이장춘 주영국대사관 참사관, 김석우 외무부 국제법규과장, 함명철 외무부 국제법규과 서기관, 조태열 외무부 국제법규과 서기관
- 자문위원: 하윤진 국방부 해군준장, 전세봉 국방부 해군중령, 황길수 법무부 법무과장, 김희천 수산청 국제어업심의담당관, 장순호 동자부 자원개발과 사무관 등

3. 정부 훈령

- 기본지침: 해상 안보 유지, 주변해역의 자원 보존, 원양어장상의 권익 보호, 수출입국으로서의 해운업의 보호·발전, 해양환경의 보존유지
- 활동지침: 한국의 입장 적극 표시, 북한대표단이 근거 없는 주장이나 정치적인 비난을 할 경우 단호히 반박 등
- 세부지침
 - 제1위원회 소관사항: 기술이전 문제, 생산정책, 제검토 회의, 심해저기구의 재정 문제, 심해저 기구의 권한·이사회 조직 및 투표 절차, 심해저지구 소재지 문제
 - 제2위원회 소관사항: 영해에 있어서의 무해통항제도, 대륙붕외연 정의 및 수역납부 문제, 해양 경계획정 문제, 경제수역제도 폐쇄해·반폐쇄해에 있어서의 협력 문제
 - 제3위원회 소관사항: 해양의 과학적 조사, 해양환경의 보호·해양기술의 개발 및 이전
 - 전문
 - 최종조항: 협약 당사자 문제, 협약 적용 원칙에 관한 조항 신설 등

유엔해양법회의, 제3차. 제9회기. New York, 1980.2.27.-4.4. 전6권 (V.2 의견서 및 제안)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국제법규

MF번호 2010-57 / 2 / 1-217

1980.2.27.~4.4. 뉴욕에서 개최된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제9회기 관련 의견서 및 제안 내용임.

1. 관계부처 의견서

- 1980.1.5. 외무부는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제9회기 개최 관련 한국 정부의 입장 정리를 위해 관계부처에 소관사항에 대한 의견 송부를 요청함.
 - 각 부처, 소관사항에 관한 의견서를 외무부에 송부

2. 해양법에 관한 각국 제안

- 튀르키예 제안
 - 에르친 주한 튀르키예대사, 박수길 외무부 조약국장 면담(1980.1.24.)
 - 경제수역·대륙붕의 경계 설정, 반폐쇄해에서 영해폭의 결정, 반폐쇄해에서의 해양경계 결정
- 아르헨티나 제안
 - 스트라스버거 주한 아르헨티나대사관 2등 서기관, 김석우 외무부 국제법규과장 면담(1.29.)
 - 보존조치의 합의를 연안국과 어로국 간 의무화 등
- 미국 제안
 - Bleha 주한 미국대사관 1등 서기관 설명(2.27.)
 - 이사회의 의사결정 방법에 있어서 모든 이해관계 그룹 고려 등

유엔해양법회의, 제3차. 제9회기. New York, 1980.2.27.-4.4. 전6권 (V.3 대표단 준비자료)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국제법규

MF번호 2010-57 / 3 / 1-322

1980.2.27.~4.4. 뉴욕에서 개최된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제9회기 관련 대표단 준비자료 내용임.

1. 주요 미결문제에 관한 협상 경과

- 제7협상 그룹
- 제6협상 그룹
- 제3위원회 소관사항
- 제1위원회 소관사항
- 최종조항 문제

2. 한국 기본입장에 관한 Statement(안)

3. 한국이 제출할 Proposal(안)

4. 한국대표단에 대한 훈령

5.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제9회기 배경 설명

유엔해양법회의, 제3차. 제9회기. New York, 1980.2.27.-4.4. 전6권 (V.4 대표단 보고 및 연설문)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국제법규

MF번호 2010-57 / 4 / 1-175

1980.2.27.~4.4. 뉴욕에서 개최된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제9회기 관련 대표단 보고 및 연설문 내용임.

1. 대표단 보고

- 1980.3.4.: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개막 및 초반 각 협상기구별 회의 운영 일정
- 3.5.: 77그룹 회의 결과
- 3.6.: 운영위원회 법률전문가 그룹(최종조항) 및 제3위원회 비공식 회의 경과
- 3.7.: 제3위원회 비공식 회의, 제246조 BIS에 대한 토의, 외교관계 부재 시 협약 적용 문제와 군함의 사전통고 문제 관련한 한국 입장에 대한 미국대표단 Oxman 교수의 Comment
- 여타 해양법회의 제9기 회의 시 전체회의, 법률가 그룹회의, 비공식 제3위원회 회의 등

2. 연설문

-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제9회기 한국 대표 연설문
- 최종조항의 Article C 및 Article D에 대한 한국대표단 언급
- 멕시코 제안에 대한 한국대표단의 Statement
- 77그룹을 대표하여 피지가 제안한 전문(Preamble)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대표단 Statement 등

유엔해양법회의, 제3차. 제9회기. New York, 1980.2.27.-4.4. 전6권 (V.5 결과보고)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국제법규

MF번호 2010-57 / 5 / 1-252

1980.2.27.~4.4. 뉴욕에서 개최된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제9회기 관련 결과보고 내용임.

1.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제9회기 전반 회기 경과

- 152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1980.3.3.~4.4.(5주간) 뉴욕에서 개최
- 비공식협상을 완료하고 해양법 협약안 채택을 목적으로 해양법 문제 중 잔여 미결문제에 대한 세부적인 토의 및 협상을 전개
 - 대륙붕의 범위 문제
 - 200해리 이원 대륙붕에서의 해양의 과학적 조사 문제 및 이와 관련한 분쟁해결 문제
 - 협약 전문
 - 심해저개발과 관련한 문제 중 심해저기구의 재정 및 심해저개발 기업의 재정부담 문제 등에 관한 타협안 작성에 성공
- 차기 회의 주요 협상 과제
 - 심해저기구 이사회의 의사결정 방법 문제
 - 심해저광물 생산제한 문제 및 기술이전 문제
 - 협약의 최종조항 문제

2. 대통령 및 국무총리에 대한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제9회기 전반 회기 경과보고

3.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제9회기 전반 회기 경과보고서(1980.6월, 외무부)

유엔해양법회의, 제3차. 제9회기. New York, 1980.2.27.-4.4. 전6권 (V.6 자료)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국제법규

MF번호 2010-57 / 6 / 1-218

1980.2.27.~4.4. 뉴욕에서 개최된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의 제9회기 관련 참고 자료임.

1. Press Release

- Thir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Law of Sea(1980.2.27.)
- General Committee of Law of Sea Conference Recommends Extension of Informal Negotiations(3.24.)
- Future Private Negotiations Recommended for Sea Law Conference: Public Discussion Envisaged for Next Week(3.27.)
- First Committee of Law of Sea Conference Reviews Negotiations on Sea-Bed Mining System(4.1.)
- Law of the Sea Conference Begins Public Discussion on Suggestions for Revising Convention Text(4.2.)
- Governments State Views on Proposals for Revising Sea Law Negotiations Sea Law Negotiating Text(4.2.)
- 16 Speakers Address Law of Sea Conference on Negotiating Text Chances(4.3.)

2. 미국대표단 보고서 및 연설문

- 보고서
 - U.S. Delegation Report Ninth Session the Thir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Law of the Sea
 - Informal Working Paper by the United States: An Approach to Interim Protection of Investment
- 연설문
 - Statement in Plenary by Ambassador Elliot L. Richardson(1980.4.3.)
 - Statement in Plenary by Ambassador Elliot L. Richardson Special Representative of the President for the Law of the Sea(4.3.)

유엔해양법회의, 제3차. 제9회기 속개회의. Geneva, 1980.7.28.-8.29. 전6권 (V.1 대표단 구성 및 훈령)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국제법규

MF번호 2010-57 / 7 / 1-89

1980.7.28.~8.29.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의 제9회기 속개회의의 관련 대표단 구성 및 훈령 내용임.

1. 대표단

- 수석대표: 함병춘 해양법회의 특별고문
- 차석대표
 - 박수길 주유엔대표부 공사, 노창희 외무부 조약국장
- 대표
 - 이장춘 주제네바대표부 참사관, 강종원 주유엔대표부 참사관, 김석우 외무부 국제법규과장, 김규칠 외무부 국제법규과 서기관
- 자문위원
 - 하윤진 국방부 해군준장, 한길수 법무부 법무과장, 김희천 수산청 국제어업심의담당관, 유시경 환경청 해양보전담당관

2. 정부 훈령

- 기본지침
 - 연안국·해양이용 국가로서의 한국의 안보 및 경제적인 국가이익의 추구를 위한 해양정책(해상 안보 유지, 주변해역의 자원보존, 원양어업상 권익보호, 수출입국으로서의 해운업의 보호 및 발전, 해양환경의 보존 유지)의 기본과제에 따라 국가이익을 적극 반영시킬 것
- 활동지침
 - 한국의 입장이 공산국가의 입장과 동일한 경우에도 국가이익에 부합되는 한 우방과의 협조에 중대한 차질을 가져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의 입장을 적극 표시할 것
 - 북한대표단의 언동을 주시하고 특히 한국의 해양관할권 등에 관한 근거 없는 주장이나 정치적인 비난을 할 경우에는 이를 단호히 반박할 것
 - 주요국가(미국, 소련, 일본, 중국(구 중공))의 해양법에 대한 태도를 예의 관찰하는 동시에 한국의 기본적인 해양정책에 부합되는 제안이나 수정안 등에 대해서는 지지 입장을 표명할 것

유엔해양법회의, 제3차. 제9회기 속개회의. Geneva, 1980.7.28.-8.29. 전6권 (V.2 의견서 및 제안)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국제법규

MF번호 2010-57 / 8 / 1-198

1980.7.28.~8.29.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제9회기 속개회의 관련 의견서 및 제안내용임.

1. 의견 송부 요청

- 1980.7.4. 외무부는 법무부 등 관계부처에 정부 입장 정립을 위해 소관사항에 대한 의견을 회보 해줄 것을 요청함.
 - 첨부: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제9회기 전반회의 협상 경과 및 주요 미결문제
- 환경청, 수산청, 해운항만청, 동력자원부, 과학기술처 등에서 의견 회보

2. 각국 제안

- 해양법에 관한 아르헨티나 제안
 - 보존조치의 합의를 연안국과 어로국 간의 의무로 함.
 - 합리적 기간 내 합의 실패 시에는 어로국은 연안국이 정하는 규칙을 준수해야 함.
- 200해리 외측 인접수역 회유어종의 보존에 관한 아르헨티나·캐나다 수정안
 - 200해리 안팎을 회유하는 특정어종에 대해서는 현 협약안(제63조)에 의한 보존조치가 불충분 하여 남획 및 자원감소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연안국의 권한을 강화하는 수정안을 제출함.
 - 양국 수정안은 약간 차이가 있으나, 상호 문구조정을 통해 통합안을 작성 중이며, 한국 등 관계국의 지지를 공동으로 요청하고 있음.

유엔해양법회의, 제3차. 제9회기 속개회의. Geneva, 1980.7.28.-8.29. 전6권 (V.3 대표단 보고)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국제법규

MF번호 2010-57 / 9 / 1-84

1980.7.28.~8.29.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제9회기 속개회의의 관련 한국 대표단의 보고 내용임.

1. 1980.7.26. 보고

- 제1위원회 소관사항 중 심해저 문제, 최종조항에 관한 Contact Group 회의 개최
 - 제2협상그룹 위원장에 의해 9회기 전반회의의 성과에 대한 분석 보고와 77그룹 입장에 대한 설명

634

2. 1980.7.28. 보고

- 77그룹, 심해저 문제에 대한 Contact Group 회의 속개
 - 심해저지구 이사회의 의사결정 방법 문제와 이사회 구성에 관한 보고 및 각국 반응

3. 1980.7.29. 보고

- Amerasing He 의장 사회로 General Committee를 가진 후 본회의 개최

4. 1980.8.1. 보고

- 77그룹 Plenary, Wg / 21, 최종조항에 관한 Informal Plenary 개최

5. 1980.8.4., 8.6. 보고

- 최종조항에 관한 Informal Plenary, Wg / 21 개최

6. 1980.8.8. 보고

- 아시아그룹 회의 비공식 전체회의 개최

7. 1980.8.11. 보고

- 77그룹 Contact Group 회의(심해저) 개최

8. 1980.8.15. 보고

- 분쟁해결에 관한 의장 수정안, Final Clause 수정안에 대한 Informal Plenary 토의

9. 1980.8.30. 보고

- General Committee, Asian Group

유엔해양법회의, 제3차. 제9회기 속개회의. Geneva, 1980.7.28.-8.29. 전6권 (V.4 결과보고)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국제법규

MF번호 2010-57 / 10 / 1-158

정부는 1980.7.28.~8.29.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제9회기 속개회의에 함병춘 해양법회의 특별고문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회의 일정

- 77그룹 준비회의: 1980.7.23.~25.
- 본회의: 1980.7.28.~8.29.

2. 회의 결과

- 심해저 문제
 - 심해저지구 이사회의 의사결정 방법에 관한 협상이 타결되어 금회기의 가장 큰 성과로 평가
 - 심해저에 관한 기타문제(이사회 구성, 심해저 자원생산정책, 기술이전 문제 등)에 대하여 개발도상국들이 협약안의 수정을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앞으로 큰 변동 없이 현 협약안의 테두리 내에서 타결될 것으로 전망
- 대륙붕·경제수역의 경계확정 문제
 - 중간선 원칙을 고수하는 국가군과 형평의 원칙을 지지하는 국가군이 대립함으로써 타협점을 찾지 못한 상태에 있으며 대부분 극적인 해결을 기대하지 않고 있음. 결국 “인접국·대항국 간의 대륙붕·경제수역의 경계는 국제법에 따라 검정한다”라는 막연한 원칙 하에 현 협약안의 기초 위에서 타결시키고, 각국의 유보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낙착될 것으로 보임.
- 최종조항 및 기타
 - 비공식 전체회의에서 집중적인 토의를 거쳐 대체적인 합의에 도달, 협약안에 반영되었으며, 분쟁해결 절차에 관하여는 관련 조항 체제의 일부 재구성이 있었음.
- 연안국들의 관할권 확장 주장
 - 한국 정부는 군함의 영해통항제도에 관한 타협안으로서 사전통고제만을 채택할 것을 주장

3. 회의 성과

- 금번 회의에서는 비록 해양법 협약 초안을 채택한다는 당초의 목표는 이루지 못하였으나, 심해저 문제와 관련한 주요 핵심문제에 대한 실질적 협상을 거의 완료하였고 최종조항, 일반조항 등 토의가 미진하였던 문제들에 관하여도 충분한 토의를 진행, 기타문제의 협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부사항을 제외하고는 토의가 완료된 상태임.



- 금번 회의에서 작성된 “비공식협약 초안”은 비록 그 지위에 있어 공식협약 초안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고 또한 그러한 명칭을 부여함에 있어 충분한 찬·반 토의를 거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각국에 의해 일반적으로 수락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1981년 중 공식협약이 채택된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큰 변동 없이 현 비공식협약 초안의 골격 범위 내에서 타결될 것으로 전망됨.

4. 특이사항

636

- 미국의 심해저개발 국내 입법에 대한 77그룹 비난성명 발표
- OAU(아프리카단결기구)의 요청에 따라 짐바브웨의 해양법회의 참가자격 인정
- 협약안에 대한 각국의 입장 표명
 - 한국 수석대표 발언 요지
 - 이사회 의사결정방식 관련 소위 Three-Tire Approach를 타협을 위한 합리적 기초로 수락
 - 기술이전 의무화는 77그룹과 동일 견해
 - 경계획정 문제 관련 현 Text 규정이 Feasible Compromise임.
 - 무해통항 관련 선진·개도국 간의 타협안으로서 사전통고제 주장
 - 북한 수석대표 발언 요지
 - 지리적 불리국의 경제수역 이용에 관한 루마니아 제안 지지
 - 미국의 심해저개발 국내입법 비난

유엔해양법회의, 제3차. 제9회기 속개회의. Geneva, 1980.7.28.-8.29. 전6권 (V.5 연설문)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국제법규

MF번호 2010-57 / 11 / 1-164

1980.7.28.~8.29.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의 제9회기 속개회의의 관련 연설문 내용임.

1. 한국대표단

- Statement by Mr.Chang Hee Roe at the Meeting of the Informal Plenary on Final Clauses on July 29, 1980
- Statement by H. E. Amb. Pyong-Choon Hamh, Chairman of the Republic of Korea Delegation at the Plenary Meeting

2. 각국 대표단 연설문

- Complete Text of the Statement by S. P. Kozyrev, Chairman of the USSR Delegation
- Statement by the His Excellency Ambassador Jamsheed K. A. Marker(Pakistan) in the Plenary Meeting
- Statement by Vice-Chairman Shen Weiliang of the Chinese Delegation
- Statement in Plenary by Ambassador Elliot L. Richardson(미국)
- Statement by Mr. J. E. Powell-Jones(영국)
- Statement of Ambassador Toru Nakagawa(일본)
- Statement in Plenary by His Excellency Mr. J. Alan Beesly, Q. C.(캐나다)

637

대한민국 국제법규 연례판

유엔해양법회의, 제3차. 제9회기 속개회의. Geneva, 1980.7.28.-8.29. 전6권 (V.6 회의문서)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국제법규

MF번호 2010-57 / 12 / 1-151

1980.7.28.~8.29.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제9회기 속개회의 관련 자료임.

1. 해양이용에 관한 자료

- 1980.6.20. 주유엔대표부, ECOSOC(유엔경제사회이사회) 결의에 의거, 배포된 해양이용에 관한 유엔사무총장 보고서
- Uses of the Sea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638

2. OAU(아프리카단결기구) 회의 해양법 관계 결의안

- 1980.7.29. 주시에라리온대사관, 1980.6.18.~28. 시에라리온에서 개최된 제35차 OAU 각료 회의에서 채택된 해양법에 관한 OAU 선언과 결의안

3.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9회기 속개회의 문서(1980.8.19., 주제네바대표부)

- 1980.8.19. 주제네바대표부는 의장 및 각국의 비공식 제안, 의장 보고서 및 공식 보고서

유류오염 재난 시 공해상의 개입에 관한 국제협약 가입 추진

생산연도 1979-1980

생 산 과 조약2

MF번호 2010-57 / 13 / 1-115

1979~80년 중 한국 정부의 “유류오염 재난 시 공해상의 개입에 관한 국제협약” 가입 추진 관련 내용임.

1. 교통부는 1979.7.9. 내무부, 보건사회부, 수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대한민국 해양 및 연안에서의 해난사고로 인한 유류오염으로부터 한국 국민의 보호를 위해 “유류오염 재난 시 공해상의 개입에 관한 국제협약”이 IMCO(국제해사기구) 당국에 수락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외무부에 요청함.

2. 외무부는 1969.11.29. 채택되어 1975.5.6.자 발효된 동 협약에 대하여 수락 절차를 취하고자 1979.7.24. 법제처에 기존 국내법과의 저촉 여부를 검토, 결과 회보를 요청함.

- 법제처는 8.16. 동 협정안이 체약당사국에 필요한 조치를 용인하고 있어 한국선박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한편 한국 정부도 필요한 한도를 초과한 조치에 대하여 배상의무가 발생하므로 이는 헌법 제95조에 규정하는 국가나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해양오염방지법 제3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자국선박의 해양오염 행위에 대한 정부의 개입과 상기 협정의 필요한 조치 간에 마찰이 예상되니 법체계상 조약과의 관계를 규정함이 타당하다고 회신함.

3. 가입 의의

- 공해상에서 발생한 해난사고로 인한 유류오염으로부터 한국 연안 및 관계이익을 보호할 수 있음.

4. 주요 내용

- 개입권 행사: 자국 연안의 중대하고 급격한 위험방지, 경감 또는 제거를 위해 공해상 외국선박에 대한 필요조치 행사 가능
- 개입조치 내용: 실제로 입은 손해 또는 우려가 있는 손해와 균형을 잃지 않아야 함.
- 개입권 행사 절차: 원칙적으로 재난의 영향을 받은 국가와 사전 협의 필요
- 개입권 행사와 관련된 분쟁해결: 당사국 간 합의 불가능 시 조정 또는 중재에 의한 해결

[UNCITRAL] 국제상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회의. Vienna, 1980.3.10.-4.11.

생산연도 1979-1980

생 산 과 조약2

MF번호 2010-58 / 1 / 1-336

정부는 1980.3.10.~4.1. 비엔나에서 개최된 UNCITRAL(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주관 국제상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회의에 신기복 주오스트리아대사관 참사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회의 목적

- UNCITRAL 작성 국제상품매매계약에 관한 협약안 검토 및 채택

640

2. 참가국

- 62개국

3. 회의 성과

- 101개 조항과 2개 부속서로 구성된 협약안을 총회에서 최종 의결을 거쳐 확정, 한국을 비롯한 62개국 대표가 Final Act에 서명함.
- 동 협약에 대한 서명은 1981.9.30.까지 뉴욕 유엔본부에서 모든 국가에게 개방

4. 회의 평가

- 무역 관계 법령의 국제적 통일화 작업 진전
- 국가 간 무역제도나 관습 차이의 불편 해소, 분쟁 발생 소지 경감
- 무역 분야에 대한 제반 장애 제거 및 무역 원활화 기여

ILC(국제법위원회)의 최혜국조항에 관한 협약 초안

생산연도 1976-1980

생 산 과 국제법규

MF번호 2010-58 / 2 / 1-387

1976~80년 중 ILC(국제법위원회)의 최혜국조항에 관한 협약 초안 관련 내용임.

1. 최혜국조항에 관한 제조항 초안 해설의 주요 내용

- 최혜국조항의 범위
- 최혜국대우 약속자와 피약속자, 보상, 호혜적대우 등 용어의 정의
- 최혜국조항의 표현 방식, 포함 조약, 부여 약속, 적용사항
- 개인과 최혜국대우
- 국가 이외의 국제법 주체가 또한 당사자인, 국가 간의 국제적 합의에 있어서의 조항
- 최혜국대우의 법적기초
- 최혜국대우의 근거와 범위
- 최혜국조항 권리의 범위 및 취득
- 보상에 따르지 않도록 한/보상에 따르도록 한/호혜적대우에 따르도록 한 최혜국조항의 효과
- 합의된 조건 준수
- 대우가 보상의 대가로서 제3국에 부여된다는 사실의 무관성
- 시혜국과 제3국 간에 합의된 제한의 무관성
- 대우가 양자적 또는 다자적 합의하에서 부여된다는 사실의 무관성
- 대우가 제3국에 자국민대우로서 부여된다는 사실의 무관성
- 동일한 주제사항에 관한 최혜국대우와 자국민 또는 기타 대우
- 최혜국조항하의 권리 발생
- 최혜국조항의 권리 소멸 및 정지
- 시혜국의 법령 준수
- 최혜국조항과 일반적 특혜체제하의 대우와의 관계
- 최혜국조항과 개도국 간의 협정과와의 관계
- 최혜국조항과 국경무역 용이화를 위한 대우와의 관계
- 최혜국조항과 내륙 제3국에 부여되는 권리 및 편의와의 관계
- 국가승계, 국가책임 및 적대행위 발생의 경우
- 개도국을 위한 국제법의 신규칙

2. 최혜국조항에 관한 제규정 최종 초안은 1978년 제30차 ILC 회기에서 채택됨.

베트남·중공의 Paracels Spratleys 군도(서사·남사군도)에 관한 영유권 분쟁

생산연도 1979-1980

생 산 과 중국

MF번호 2010-58 / 4 / 1-123

1979~80년 중 베트남과 중국(구 중공) 간의 Paracels Spratleys 군도(서사·남사군도) 영유권 분쟁 관련 내용임.

1. 베트남 정부, 1979.10.19. 서사 및 남사군도의 베트남 영유권 주장에 관한 아래 관련 서류를 유엔안보리에 제출함.

- 서사 및 남사군도의 베트남 영토 증명 서류
- 서사 및 남사군도 영유권과 관련된 주요 사건 내용
- 서사 및 남사군도 영유권에 대한 8.7.자 베트남 외무성 성명

2. 중국 정부, 1979.11.23. 서사 및 남사군도의 중국 영유권 주장 공한 및 관련 서류를 유엔안보리에 제출함.

- 베트남 정부가 서사 및 남사군도가 중국 영토임을 인정한 증거 서류

3. 제7차 WMO(세계기상기구) 아주지역(RA-II) 회의(1980.6.12.)에서 베트남과 중국은 각각 서사 및 남사군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문서를 참가국에 배포함.

엘살바도르·온두라스 간의 평화협정 체결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중미

MF번호 2010-58 / 5 / 1-30

1. 엘살바도르·온두라스 간 외무장관회담(1980.1.18., 미국 산호세)

- 개최 목적
 - 1969년 양국 간 외교·영사·통상 관계 단절 이후 국경분쟁 및 엘살바도르인의 온두라스 이주 분쟁 등으로 악화된 양국관계 회복

2. 엘살바도르·온두라스 간 외무장관회담(1980.3.1.)

- 11년간 단절되었던 외교관계 복원에 합의

3. 엘살바도르·온두라스 간 평화협정 주요 내용(1980.10.30. 체결)

- 외교 및 영사 관계 재개
- 상대국 국민에 대한 인권 존중
- 중미 공동시장 활성화를 위한 양국 간 통상 재개
- 양국 국민 상호방문 및 교류 재개
- 상호 전쟁배상 요구 철회

이란·이라크사태 보고서, 1980.9-11월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중동

MF번호 2010-58 / 6 / 1-286



1. 이란·이라크 분쟁 현황

- 전폭기, 탱크, 중화기가 동원된 양국 국경에서의 전면전 양상

2. 이란·이라크 분쟁 배경

- 국경조약에 대한 양국 간 불만 및 걸프 연안지역에서의 패권 경쟁의식
- 쿠르드족 및 아랍계 주민의 반정부운동에 대한 양국 정부 입장 상충
- 이란혁명에 대한 이라크 집권층의 경계심

644

3. 당사국 및 제3국 반응

4. 이란·이라크 사태 전망

5. 이란 및 이라크 주재 한국근로자 현황

6. 비상사태 시 교민철수 대책

이란·이라크사태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중동

MF번호 2010-58 / 7 / 1-104

1. 이라크 정부, 1980.4.7. 호르무즈해협에 위치한 3개 도서 내 이란군 철수 요구 및 접경지역 유전시설 포격
2.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 1980.9.17. 1975년 체결된 양국 간 국경조약 폐기 선언(분쟁의 직접적 원인)
3. 이슬람 회의, 1980.9.27. 이란·이라크 사태 중재를 위한 대표단 파견
4. 이란 정부, 1980.10.5. 이라크의 조건부 휴전 제의 거부
5. 이라크 정부, 1980.10.6. 제2차 대공세 재개(휴전 거부에 대한 보복)
6. 이란 정부, 1980.10.12. 장기전 대비 전시체제 총동원령 공포

중동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중동평화협상. 전2권 (V.1 1-8월)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중동

MF번호 2010-58 / 8 / 1-276

1980.1~8월 중 중동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중동평화협상 관련 내용임.

1. 이집트·이스라엘 간 정상회담(1980.1.7.~10., 이집트 아스완)

- 사다트 이집트 대통령, 베긴 이스라엘 총리
- 회담 목적
 - 1980.2.25. 예정인 양국 간 외교관계 수립 원칙 재확인
 - 요단강 서안 및 가자지구에서의 팔레스타인 자치 문제 협의
- 주요 합의내용
 - 시나이반도로부터의 1단계 철수 완료 후 양국 간 항공기 취항, 전화개통, 우편물 교환 실시
 - 대사관, 영사관, 항공사 설치를 위한 대표단 파견
 -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규탄
 -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자치 선행에 대한 이스라엘의 긍정적 검토 반응 표명

2. 미국·이집트 간 정상회담(1980.4.8.~9., 워싱턴 D.C.)

- 카터 미 대통령, 사다트 대통령
- 주요 토의내용
 - 팔레스타인 완전 자치 개념과 자치 권한 문제
 - 예루살렘 거주 아랍인의 자치선거 참여 및 권한 문제
 - 이스라엘의 웨스트뱅크, 가자지구 점령 및 정착정책 문제
 - 이스라엘의 급수 관할권 이양 문제
 - 이스라엘의 군정 및 민정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 이양하는 문제

3. 이집트·이스라엘 간 팔레스타인 자치 문제를 위한 회담(1980.4.30.~5.7., 이스라엘 헤르츨리야)

- 무스타파 카릴 이집트 수상, 베긴 이스라엘 수상
- 주요 토의내용
 - 이스라엘 안전보장 문제
 -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팔레스타인으로 구성될 Permanent Committee에 미국 참가 및 임무 규정
 - 점령지역에서의 이스라엘 정착 문제

중동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중동평화협상. 전2권 (V.2 9-12월)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중동

MF번호 2010-58 / 9 / 1-187

1980년 중 중동문제 관련하여 배포된 유엔총회 및 안보리 문서에 대한 주유엔대표부 보고 내용임.

- PLO(팔레스타인해방기구)의 테러행위를 비난하는 이스라엘 대표 공한(1980.9.5.)
- 레바논 내에서의 이스라엘 침략행위를 비난하는 PLO 대표 공한(9.5.)
- 예루살렘 주재 외교공관 철수를 통보하는 네덜란드 및 콜롬비아 대표 공한(9.5.)
- 레바논 영토 내에서의 이스라엘의 정전협정 및 안보리 결의 위반행위를 항의하는 레바논 대표 공한(10.17.)
- 아랍 점령지에서의 팔레스타인 시장 등 관리 추방과 관련한 팔레스타인위원회 위원장 공한 (10.17.)
- 이슬람국가 외상특별회의(1980.9.18.~20., 모로코) 성명서(10.17.)
- 골란고원의 시리아영토 점령지에 관한 시리아 외상의 유엔사무총장 앞 공한(10.31.)
- UNDOF(유엔병력철군감시단)에 관한 사무총장 보고서(11.14.)
- 레바논 사태에 관한 이스라엘 대표 공한(11.14.)
- 팔레스타인 문제에 관한 유엔 긴급 특별총회 결의에 의한 사무총장 보고서(11.14.)
- 버자이트대학 폐교에 대한 데모 탄압을 항의하는 PLO 대표 공한(11.21.)

사이프러스의 AALCC(아아법률자문위원회) 가입 문제

생산연도 1978-1980

생 산 과 국제법규

MF번호 2010-58 / 10 / 1-118

1978~80년 중 사이프러스의 AALCC(아아법률자문위원회) 가입 문제 관련 내용임.

1. 사이프러스 정부는 제19차 AALCC 총회(1978.1.16.~23., 카타르 도하)에서 정회원국 가입을 신청함.

- 외무부는 1978.4.24. 우방국(튀르키예, 그리스) 및 사이프러스의 대남북한 중립적 입장을 고려하여 기권이 아닌 투표 불참 입장을 AALCC 사무국에 통보함.

648

2. 사이프러스 정부는 1979.1.3. AALCC 정회원국 가입신청에 대한 지지 요청 공한을 한국 정부에 송부해 옴.

- 제20차 총회(1979.2.19.~26., 서울)에서 가입 승인 결정 희망
- 튀르키예, 소말리아, 파키스탄 등 일부 회원국의 이의 제기, 서면투표 회부에 따라 가입 유보

3. AALCC 사무총장은 1980.10.4. 사이프러스 정회원 가입신청에 대한 찬성·반대 현황을 주인도 대사관을 통해 한국 정부에 통보함.

- 찬성 또는 찬성 간주국: 23개국(정회원국 4국 포함)
- 반대 또는 연기 요청(반대로 간주): 6개국(정회원국 1국 포함)
- 투표 불참, 기권, 입장 불명: 5개국(정회원국 1국 포함)

AALCC(아아법률자문위원회) 각료급 특별회의 및 전문가 회의. Kuala Lumpur, 1980.12.8.-12.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국제법규

MF번호 2010-58 / 11 / 1-236

정부는 1980.12.8.~12.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AALCC(아아법률자문위원회) 각료급 특별회의 및 전문가 회의에 문철순 외무부 본부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국

- 40개 회원국 중 한국, 북한, 말레이시아, 이집트, 인도, 이란, 이라크, 파키스탄, 태국 등 20개국

2. 회의 의제

- 각료급 회의
 - 의장 선출 및 제11차 유엔총회 결과 검토
 - 신국제 경제질서 실천과정에 있어서 공업화를 위한 지역협력 방안
 - AALCC 분쟁해결제도 및 UNCITRAL(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규칙의 장려 방안
 - AALCC 표준계약안의 이용확대 방안
- 전문가 회의
 - 신국제 경제질서 실천과정의 공업화 부문에서 아시아아프리카지역 협력을 위한 법적기초
 - 투자자 및 투자유치국 정부 간의 안정성 및 융통성 있는 관계 증진을 위한 법적기초

AALCC(아아법률자문위원회) 총회, 제21차. Jakarta(인도네시아), 1980.4.24.-5.1. 전4권 (V.1 사전준비)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국제법규

MF번호 2010-58 / 12 / 1-134

1980.4.24.~5.1.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제21차 AALCC(아아법률자문위원회) 총회 관련 사전준비 내용임.

1. 참가 경위

- 1979.12.27. Sen AALCC 사무총장이 주인도대사를 방문, 외무부장관의 제21차 AALCC 총회 참석을 요청함.

650

2. 각료급 인사 초청 사유 및 배경

- 해양법회의의 협상 시 AALCC 주도
- 경제수역 어업자원 최적 이용 협의
- 공업화를 위한 지역협력 협의
- 경제 분야 분쟁해결제도 정립 추진

3. 한국대표단

- 수석대표: 함병춘 특보(제20차 총회 의장)
- 대표: 이범석 주인도대사, 배병승 주말레이시아대사관 공사, 김재섭 외무부 조약과장 등 5명
 - 북한은 송재성 고등교육부 부부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3명의 대표단 참석

AALCC(아아법률자문위원회) 총회, 제21차. Jakarta(인도네시아), 1980.4.24.-5.1. 전4권 (V.2 국내조치)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국제법규

MF번호 2010-58 / 13 / 1-104

1980.4.24.~5.1.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제21차 AALCC(아아법률자문위원회) 총회 관련 국내조치 내용임.

1. 외무부는 1980.3.24. 제21차 AALCC 총회(1980.4.24.~5.1., 자카르타)에 대비한 한국 입장 수립에 참고하고자 대한상사중재협회에 아래 사항에 대한 의견을 요청함.

- UNCITRAL(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주최 신국제 경제질서에 관한 실무회의 결과 검토
-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활동 검토
- C.I.F 표준계약양식 채택
- 공업화를 위한 지역협력 방안
- 지역상사중재센터
- 배타적 경제수역 자원 이용
- 해양환경보호
- 사법공조

2. 외무부는 1980.4.16. 제21차 AALCC 총회 및 비동맹 창설 반동회의 25주년 기념으로 국무총리 명의 축하 메시지를 작성하여 AALCC 사무국에 송부함.

3. 정부 훈령

- 해양법: 심해저개발 문제, 대륙붕의 범위 및 수역납부 문제, 해양경계획정 문제 등
- 경제수역 내 생물자원 이용
- 신국제 경제질서
- 해양환경보호
- 사법공조
- 무역법 관계(분쟁해결제도)

AALCC(아아법률자문위원회) 총회, 제21차. Jakarta(인도네시아), 1980.4.24.-5.1. 전4권 (V.3 결과보고)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국제법규

MF번호 2010-58 / 14 / 1-75

정부는 1980.4.24.~5.1.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제21차 AALCC(아아법률자문위원회) 총회에 함병춘 특별보좌관을 수석대표(교체수석대표: 이법석 주인도대사)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자

- 한국, 북한을 비롯한 35개 회원국, 중국 등 38개 옵서버국, 유엔을 포함한 7개 국제기구 대표 223명

652

2. 한국대표단 활동

- 제20차 총회 의장자격으로 한국 수석대표의 개회연설 시행
- 해양법, 무역법 등 일반의제 토의에 참여, 한국 입장 적극 표명
- 수하르토 인도네시아 대통령 예방

3. 회의 결과

- 금번 총회는 비동맹 창설 반동회의 25주년 기념행사를 겸하여 개최됨에 따라 특별의제인 아시아 아프리카 간 동질성에 대한 각국 수석대표의 기조연설 시행
- 해양법, 무역법, 환경법, 사법공조에 대한 토의 진행
- 반동회의 25주년 기념 결의문 채택 문제
 - 주최국인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일본, 태국, 요르단 등이 반동회의 정신을 재확인하는 온건 결의문 제의
 - 시리아, 이라크 등 아랍 강경국가는 민족해방, 반시오니즘, 반인종차별 삽입 주장
 - 의견대립에 따라 결의문 채택 실패

AALCC(아아법률자문위원회) 총회, 제21차. Jakarta(인도네시아), 1980.4.24.-5.1. 전4권 (V.4 참고자료)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국제법규

MF번호 2010-59 / 1 / 1-386

1980.4.24.~5.1.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제21차 AALCC(아아법률자문위원회) 총회 관련
참고자료임.

1. UNCITRAL(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제12차 회기(1979.6.18.~29.) 자료

- UNCITRAL 조정규칙 초안
- 유엔총회 제출 UNCITRAL 제12차 회기 보고서
 - 제12차 회기에서 UNCITRAL 중재규칙에 대한 AALCC 건의 토의

2. 유엔해양법회의 제9회기 관련 자료

- 유엔해양법회의 제9회기에 있어서 미국의 주요 관심사항
- 해양법 각 조항에 대한 각국별 비공식 수정안 제의 공한
 - 유엔해양법회의 제9회기 협상 결과 가장 중요한 미결문제는 심해저개발 문제로 이는 유엔총회 해양법 관련 회의에서 토의할 예정

몽골 및 세네갈의 AALCC(아아법률자문위원회) 가입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국제법규

MF번호 2010-59 / 2 / 1-38

654

1. 몽골의 AALCC(아아법률자문위원회) 가입 경위

- 1979.6.19. AALCC 사무국, 몽골의 정회원국 가입 신청에 대해 기존 회원국인 한국 정부의 입장 문의
- 1979.7.18. 외무부, “국제회의에서의 대공산국 활동지침”에 따라 서면투표 기권 결정
 - 7.24. AALCC 사무국에 한국의 기권 입장 서면 통보
- 1979.10.17. AALCC 사무국, 각 회원국의 서면투표 결과 몽골의 가입 신청이 수락되었음을 각 회원국에 통보
 - 몽골, 1980.1.1.자로 AALCC 정회원국 가입

2. 세네갈의 AALCC 가입 경위

- 1980.2.18. AALCC 사무국, 세네갈의 정회원국 가입 신청에 대해 기존 회원국인 한국 정부의 입장 문의
- 1980.2.28. 외무부, 한·세네갈 우호관계를 감안, 가입 지지를 결정하고 AALCC 사무국에 지지 입장 서면 통보
- 1980.4.7. AALCC 사무국, 각 회원국의 서면투표 결과 세네갈의 가입 신청이 수락되었음을 각 회원국에 통보
 - 세네갈, 4.1.자로 AALCC 정회원국 가입

한·일본 간 200해리 수역 적용 문제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일본

MF번호 2010-59 / 3 / 1-31

1980년 중 한·일본 간 200해리 수역 적용 관련 내용임.

1. 200해리 수역 선포 검토상의 고려사항

- ‘국제적 추세에 따라 권리로서 선포해 둔다’라는 형식보다는 선포에 따른 실질적인 이해득실을 고려해야 함.
- 한·일본 간의 관계에 바람직하지 못한 영향이 야기되지 않도록 사전에 양국 간의 협의 및 입장 조정이 이루어져야 함.
- 한·일본 양국 간 국내 필요조치
 - 관계 어민들의 전업 지원 또는 보상 문제
 - 관계법령 개정 폐지
 - 기호 어류 수급 문제(한국의 경우 북해도 어장 상실에 따른 명태 수급 문제)
- 신체재 또는 신질서 수립 방향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함.
- 한·일본 간 경계획정 방법(독도 문제)

2. 200해리를 실시함에 있어서 제기될 한·일본 간 문제

- 어업 문제
 - 한·일본 어업협정 개정 폐지 문제
 - 한국의 북해도 어로 문제
- 한·일본 대륙붕 공동개발 문제
 - 현재의 공동개발체제 유지가 필요
 - 지하자원의 탐사·개발까지도 포함하는 경제수역을 선포하기에는 문제점이 있음.(단 어업수역 선포의 경우, 대륙붕과는 별도의 경제획정 원칙이 적용될 수 있음)
- 독도 문제
 - 일본은 해양제도와 관련 무인도의 경우에도 그 주변에 자체의 영해는 물론 경제수역 및 대륙붕 까지도 가진다는 입장임.
- 대중국(구 중공) 문제
 - 중국은 인접국 간의 경제수역 및 대륙붕 경계획정 원칙에 관하여 한국과는 상이한 입장을 주장하고 있음.

남북한의 정식국호 사용 문제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조약2

MF번호 2010-59 / 4 / 1-59

1980년 중 남북한 정식국호 사용 문제 관련 내용임.

1. 문제 제기

- 북한, 1980.1.11.자 이종욱 북한 총리의 신현확 국무총리 앞 서한에서 정식국호인 대한민국 사용
- 한국, 1.24.자 신현확 총리의 답신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식 호칭 사용

2. 북한의 정식국명 사용 문제점

- 헌법상 문제
- 반공법상 문제
- 국내 언론 등 홍보상 문제
- 국민심리 및 기존 반공사회질서 파괴 우려

3. 북한의 정식국명 사용의 긍정적 요소

- 국명 사용이 국제법상 국가 승인을 의미하지 않음.
- 북한은 이미 법적, 외교적으로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인정(97개국과 수교, 각종 국제기구 가입)
- 한국은 외교정책상 북한의 실체를 인정: 안보적 측면, 남북대화, 통일외교, 주변 강대국 관계 등
- 한반도 평화정착, 평화적 통일 등 한국의 평화지향정책 홍보

4. 결과

- 북한의 정식국명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남북대화 진행과 관련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용

중공 및 중국의 호칭 문제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중국

MF번호 2010-59 / 5 / 1-110

1980년 중 중국(구 중공) 및 대만(구 자유중국)의 호칭 문제 관련 내용임.

1. 한국의 대중국 호칭(1980.1.25.)

- 한·일본 간 대륙붕협정에 관한 중국 측 비난에 대한 외무부 성명(1973.3.16.)
 - 한글: 중화인민공화국 당국
 - 영문: Authoritie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 중국 호칭 문제에 대한 외무부 입장, 문공부에 통보(6.16.)
 - 영문: The Authoritie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 한·일 대륙붕 문제에 관한 중국 측 비난에 대한 외무부 성명(1974.2.6.)
 - 영문: The Authoritie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 동중국해 해상에서의 한국어선 해적행위 비난에 관한 수산청 성명(5.18.)
 - 한글: 중국 관계당국
 - 영문: Communist Chinese Authorities
- 중국의 한국어선 납치에 관한 외무부 대변인 성명(1976.6.19.)
 - 한글: 중국, 중국 당국 및 중국 관계당국
 - 영문: PRC, Peking Authorities
- 일·중국 간 어업협정 개정에 관한 외무부 대변인 성명(1979.2.17.)
 - 한글: 중국
 - 영문: The PRC

2. 대중국 및 대만 호칭 사용지침

- 경위
 - 6·23 평화통일외교정책에 입각하여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직접, 간접 접촉점 모색
- 일반지침
 - 정부기관이 대외적으로 사용하는 호칭: 공식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예외적으로 비공식 호칭 사용
 - 정부기관이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호칭: 중국과 대만을 내부적으로 사용
 - 민간인 또는 민간기관이 사용하는 호칭: 자발적인 호응에 맡기고 신문·방송 언론기관에서 사용하는 호칭을 정부가 사용하는 호칭으로 사용 권장

쿠바인의 Havana(쿠바) 주재 페루 및 베네수엘라대사관을 통한 망명 요청

생산연도 1979-1980

생 산 과 중미

MF번호 2010-59 / 6 / 1-107

1979~80년 중 주쿠바 페루대사관 및 베네수엘라대사관을 통한 쿠바인의 망명 요청 관련 내용임.

1. 쿠바 외무성, 쿠바인 해외망명 문제에 대한 쿠바 정부 성명서 발표(1979.1.25.)

- 쿠바 정부는 정치적인 이유로 생명이나 자유를 속박당할 위험에 처해 있는 자들에 한하여 망명권을 존중함. 단, 일반 파렴치범이나 도망자 및 박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자들에 대한 망명처 제공은 받아들일 수 없음.
- 쿠바 정부는 이민규정을 수립함에 따라 이민을 신청해 온 수천 명에게 출국을 허가함.
- 쿠바 정부는 망명권의 보호를 받을 만한 조건을 구비하지 않은 자들이 어떤 나라 외국대사관에든지 난폭하게 들어간 자들에게는 절대로 출국허가를 주지 않을 것임.
- 쿠바 정부는 망명권 행사권을 갖지 않는 자들이 출국을 위한 합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외국대사관에 들어가 출국허가를 강요하는 경우, 비록 이들이 동 외국대사관에 난폭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들어갔다고 해도 출국을 허가하지 않을 것임.

2. 주쿠바 페루 및 베네수엘라대사관 내 쿠바인 망명사건 일지

- 1979.5.2. 쿠바인 13명, 베네수엘라대사관에 진입하여 망명 신청
- 12.13. 쿠바인 6명, 트럭으로 베네수엘라대사관저에 망명 시도(5명 진입 성공, 1명 중상)
- 1980.1.15. 쿠바인 3명, 베네수엘라대사관저에 망명 시도(1명 성공, 1명 사망, 1명 체포)
- 1.17. 어린이 5명을 포함한 12명의 쿠바인, 트럭으로 페루대사관에 망명 시도
- 3.18. 쿠바인 6명, 트럭으로 베네수엘라대사관에 망명
- 3.28. 쿠바인 3명, 버스로 페루대사관에 망명
- 4.6. 1만여 명의 쿠바인, 페루대사관에 망명을 위한 진입 시도

3. 쿠바인 집단 망명 요청 사태 원인

- 쿠바의 경제정책 실패에 따른 국민 불만 폭발
- 카스트로의 보복조치 및 정치 공세

4. 각국 반응

- 페루, 볼리비아,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등 안데안그룹 5개국
 - 외상회의(1980.4.9., 페루 리마)를 개최하여 쿠바인 망명 희망자 출국 협조 결의



- 미국, 스페인, 캐나다, 코스타리카 등
 - 망명처 제공 의사 표명
- 쿠바
 - 쿠바 정부는 쿠바 주재 페루대사관이 반체제인사를 자처하는 일반 범죄인에 대해 비호처를 제공해주고 있다고 비난
- 페루
 - 페루 외무성은 망명 희망자수가 더욱 증가될 위험이 있으며 식량, 질병, 시설문제 등으로 희생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밝히고 즉시 유엔난민고등판무관 및 국제적십자사 등에 긴급 구호를 요청
 - 쿠바 정부가 동 사태를 페루의 범죄자보호정책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하여 페루 정부는 쿠바의 경비병 철수는 비엔나협정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반박하며 양국 간 성명전을 벌이고 있음.

해상 선박 압류 문제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국제법규

MF번호 2010-59 / 7 / 1-16



1. 사건 경위

- 부산지법은 부산항에 정박 중인 독일선박 Seaway Express호를 세방기업의 채권 확보를 위한 가압류 신청에 따라 가압류 조치함.
- 동 선박은 독일선박회사인 SETC사 소유의 독일 국적을 가진 선박으로 약 2년 전 미국선박회사인 MSEL사가 용선 사용 중임.
- 세방기업은 미국 MSEL사에 대한 약 3억 원의 채권 확보를 위하여 MSEL사가 용선한 동 선박에 대한 가압류를 부산지법에 신청한 것임.
- 동 선박 소유주인 독일 SETC사는 문제의 선박이 미국 MSEL사에 의해 용선된 것일 뿐이므로 세방기업이 미국 MSEL사에 대한 채권 확보를 위하여 동 선박을 가압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부산지법에 '제3자 이익소'를 제기함.

2. 당부 조치계획

- 동 건이 순수한 민사소송 사건임에 비추어 당부가 동 건 해결에 관여할 입장이 아님은 충분히 인지되나, 주한 독일대사관 측의 요청 및 한·독일 양국 간 기존 우호관계 등을 감안하여 법원 행정처에 동 건의 신속한 해결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당부 입장을 통보할 예정임.

해양 관계 국제법 해석

생산연도 1978-1980

생 산 과 국제법규

MF번호 2010-59 / 8 / 1-115

1. 한국 영해 내 일본 해양조사선 운항

- 1978.4.10. 체신부는 한·일본 간 해저케이블 통신망 건설계획에 따른 일본 해양조사선의 한국 영해 운항에 필요한 수속 및 절차를 외무부에 문의함.
- 8.21. 외무부는 한국 영해 내 일본 해양조사선 활동에 대한 의견을 관계당국에 아래와 같이 회신함.
 - 영해 내에서 측량조사 활동을 하는 외국선박은 영해법 규정에 따라 사전 동의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함.
 - 일반적으로 외국인의 허가 신청은 외교경로를 통해 처리하게 되어있음에 비추어 적절한 외교 경로를 통해 외무부에 조사 허가를 신청하고, 관계부처(외무부, 체신부, 국방부, 내무부)가 협의하여 처리함이 타당함.

2. 영해법 시행 관련하여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외무부 의견(1978.11.13.)

- 공해대가 없는 국제해협에서의 외국 군함 통항 문제
 - 영해법 시행령 제4조 단서규정의 적용대상은 영해 내 국제해협으로 제주해협이 동 해협의 범주에 해당함.
 - 사전통고가 면제되는 동 해협의 구체적 범위는 항로대 지정과 동시에 고시할 예정임.
- 영해 및 전관수역에서의 일본어선 조업 문제
 - 한국의 영해 범위가 한·일본 어업협정상의 전관수역보다 축소되는 수역은 대한해협 및 제주도 일부 수역이 있는바, 동 수역에서의 일본어선 조업은 한·일본 어업협정에 의거하여 금지됨.
 - 영해법 선포에 따라 영해 범위가 한·일본 어업협정상의 전관수역을 초과하는 수역은 소흑산도 및 대흑산도 일부 수역으로서 동 수역에서의 일본어선 조업은 한국 영해법 규정에 따라 처벌됨.

3. 영해 내에서의 해상사격 훈련계획의 제3국 통보 문제에 대한 외무부의 법적의견(1979.10.29.)

- 영해 내에서의 해상사격 훈련은 동 훈련지역이 연안과 가까운 지역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해야 할 국제법상 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됨.
- 따라서 해상사격 훈련계획의 일본 측에 대한 공시 방법으로 사전통보 방식을 취하고 있을 경우에는 연안에 극히 가까운 구역에서의 훈련계획도 사전에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

주일본 한국문화원 설치 및 운영

생산연도 1977-1980

생 산 과 법무

MF번호 2010-59 / 10 / 1-127

1977~80년 중 주일본 한국문화원의 설치 및 운영 관련 내용임.

1. 설립 목적

- 전통문화 소개로 한국 이미지를 부각하고 한국에 대한 이해 및 지지 기반을 조성함.

2. 설립 경위

- 외무부는 1978.4월 관계기관의 의견 조정을 거쳐 일본 정부와 동 문화원 설립에 관한 교섭을 주일본대사에게 지시
 - 법적지위: 주일본대사관의 일부를 이루며 직원은 외교관 신분임(대외직명: 문정관).
 - 규모: 문화원장 등 6명 규모, 독립건물 사용
- 1979.3.2. 문화원 공식 영문 명칭을 The Office of Cultural Affairs of the R.O.K로 결정
- 1980.5.27. 주일본대사관 문정관 및 공보관 대외직명 지정 및 업무 지휘감독체계
 - 수석: 문정관(문화원장 겸임), 차석: 문정관, 공보관
 - 문화원 및 공보관은 정무담당 산하기관으로 하며 지휘감독 업무는 대사의 명을 받아 정무담당 공사가 행함.

3. 시설 및 기능

- 기본 활동: 영사회, 강연, 세미나, 한국 관계 도서 열람 및 대출
- 전시 활동: 한국문화, 예술, 발전상 등
- 한국어 강의
- 한국문화 전시 및 공연

4. 공관과의 관계

- 독자 기능을 유지하되 공관장의 지휘감독 업무
- 외교관 명부 등재, 대외직명 부여

제2차 한·튀니지 문화 공동위원회 개최계획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문화교류

MF번호 2010-59 / 11 / 1-64

1980년 중 제2차 한·튀니지 문화 공동위원회 개최 추진 관련 내용임.

1. 추진 경위

- 튀니지 측은 Foud Mebazaa 튀니지 문화공보장관 방한(1980.11.24.~30.) 계기 제2차 한·튀니지 문화공동위 개최를 제의함.

2. 주요 의제

- 한국방송공사(KBS)와 튀니지국영방송공사(RTT) 간 프로그램 교환 및 취재 편의 제공
- 한국문화예술진흥원과 튀니지예술진흥센터 간 협력체제
- 양국 문화예술인 상호방문
- 양국 고전, 학술, 문화, 예술 등 관계 도서의 교환
- 제5차 세계연극제(서울 개최) 튀니지 참가 협조

3. Foud Mebazaa 장관의 방한 연기에 따라 제2차 한·튀니지 문화공동위 무기한 연기 결정됨.

한·일본 문화 및 청소년 교류 일반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일본

MF번호 2010-59 / 12 / 1-80

1980년 중 한·일본 간 문화 및 청소년 교류 관련 내용임.

1. 한·일본 간 문화교류 현황

- 1980년 현재 한·일본 간 문화협정 및 문화교류 계획 등이 수립되어 있지 않음.
- 1960년대 말 이후 정부 및 민간수준에서 피상적 문화교류 필요성 논의
- 양국 간 경제교류 확대, 기업인 등 인적교류 증진에 따른 간접적 문화교류는 진정한 이해증진보다는 상대방 문화에 대한 거부반응을 초래
- 양국은 그동안의 민족감정을 고려하여 문화교류를 당분간 민간수준에 의한 자연적 추세에 맡겨 놓는 입장을 취하여 옴.

2. 한·일본 대학생교류 문제

- 국보위 상임위원장, 방학을 이용한 한국 대학생의 일본방문 계획의 추진을 위해 주한 일본대사관과 적극적 접촉을 지시(1980.8.20.)
- 추진 기본방침
 - 문교부가 추진방안 작성
 - 외무부는 동 방안에 따라 주한 일본대사관과 교섭
 - 금년 겨울방학의 파견 인원은 기존 예산 범위에 따라 40명 선으로 하여 시행하되, 내년 이후부터는 한·일 양국 간의 상호교류 차원으로 각기 필요한 예산조치와 함께 인원을 증가시켜 나가는 방안을 국보위 등 상부에 건의하여 방침을 받아 추진함.

미국 Florida 및 New York주 '한국의 날' 선포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복미

MF번호 2010-59 / 14 / 1-75

1980년 중 미국 플로리다주 및 뉴욕주의 “한국의 날” 선포 관련 내용임.

1. 플로리다 주정부는 1980.9.23. 개천절인 10.3.을 “한국의 날”로 선포하고, 주도인 텔라하시에서 선포식을 거행함.

- 의의: 4천여 명으로 구성된 한인 커뮤니티에 대한 주정부의 인정 획득
- 기념행사: 민속체전 및 전통문화 설명회 개최

2. 뉴욕 주정부는 1980.10.2. 개천절인 10.3.을 “한국의 날”로 선포하고, 뉴욕한인회에 선포문을 전달함.

- 의의: 뉴욕 거주 한인들의 사회적 공헌 인정
- 외무부, Hugh Carey 뉴욕 주지사의 “한국의 날” 선포에 대해 남덕우 국무총리 명의의 감사 서한 발송

Picho-Owiny Albert W. 우간다 공보방송장관 방한, 1980.4.30.-5.5.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동부아프리카

MF번호 2010-59 / 15 / 1-105

Picho Owiny 우간다 공보방송장관의 1980.4.30.~5.5. 방한 관련 내용임.

1. 방한 경위

- 홍보시설 구입 목적
- 주우간다대사의 건의에 따라 문공부장관 명의로 방한 초청

2. 방한 의의

- 우간다의 대남북한 균형외교 정책 반영에 따른 우간다 국방차관(국방장관은 대통령이 겸임)의 북한 방문에 대한 공보방송장관의 방한
- 최초의 우간다 각료 방한으로 한국의 평화통일정책 및 남북대화 등 올바른 남북관계 인식 제고
- 우간다에 대한 탄자니아 영향력에 편승한 북한의 침투공작 저지 기반 구축

3. 주요 일정

- 외무부장관, 문공부장관, 통일부장관 예방
- KBS, 국제문화협회, 코트라, 신문협회 방문
- 제2땅굴 및 판문점 시찰
- 금성사 등 산업 시찰

일본 언론인 방한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홍보문화 / 일본

MF번호 2010-59 / 16 / 1-17

1. 고베 신문사 사장 등 방한(1980.10.20.~23.)

- 방한 목적
 - 문공부 해외홍보사업의 일환으로 일본의 유력 언론인 초청
- 방한 인사
 - 미츠다 고베 신문사 사장, 신문사 주필 등 3인
- 주요 활동
 - 문공부장관, 외무부차관 예방, 산업 시찰 등

2. 시사통신사 해설위원 방한(1980.11.5.~20.)

- 방한 목적
 - 문공부 해외홍보사업 일환으로 일본의 유력 언론인 초청
- 방한 인사
 - 다쿠보 시사통신사 해설위원 겸 해외사업부장
- 주요 활동
 - 문공부장관 예방, 외무부 정무차관보 면담, 산업 시찰 등

스리랑카·한 친선협회

생산연도 1979-1980

생 산 과 서남아

MF번호 2010-59 / 17 / 1-64

1. 한·스리랑카 친선협회 결성 경위

- 1979.6.19. 콜롬보에서 스리랑카·한 친선협회 발족
 - 새마을운동을 통한 한국의 대스리랑카 국민 홍보활동 및 계몽운동 전개
- 1979.7.8. 서울에서 한·스리랑카 친선협회 창립
 - 회장: 이해성 대한불교총연합회 이사장

2. 스리랑카·한 친선협회 회장단 방한(1980.10.29.~11.3.)

- 방한 경위
 - 한·스리랑카 친선협회장 초청
- 방한 인사
 - Victor Tennakoon 스리랑카·한 친선협회장 등 8명
- 주요 활동
 - 국무총리, 문공부차관, 서울시장 예방
 - 외무부장관, 외무부차관 예방
 - 새마을운동 시찰 등

일본 요미한국(讀賣)신문 서울지국 재개설 허가

생산연도 1978-1980

생 산 과 동북아1

MF번호 2010-59 / 21 / 1-25

1. 일본 요미한국신문 서울지국 폐쇄조치

- 1977.5.4. 문공부, 요미한국신문 서울지국 허가 취소
- 폐쇄조치 원인
 - 1977.3월 한국기업에 대한 왜곡보도
 - 4.19. 이사토 편집국장의 평양 발언

2. 일본 요미한국신문 서울지국 재개설조치

- 문공부의 조치(1980.1.15.)
 - 서울지국 설치 허가(재설치)
 - 요미한국신문 수입 및 배포 허가
- 법무부의 조치
 - 시마모토 겐로 서울지국장 겸 특파원에게 상주 장기체류 사증 발급
- 동 조치사항은 주일본대사를 통해 요미한국신문에 사전 통지

캐나다 Toronto대학 한국학과 신설

생산연도 1977

생 산 과 북미1

MF번호 2010-59 / 22 / 1-18

1. 캐나다 토론토대학, 한국학과 신설

- 토론토대학, 1976.12월 3단계로 한국학과 설치 결정
 - 1단계(1977~78년): 한국문화개론 과목 신설, 시간강사 채용
 - 2단계(1978~79년): 한국어, 역사, 문화 등 과목 확장, 시간강사 2명 채용
 - 3단계(1979~80년 이후): 완전한 한국학과 신설, 교수 채용
- 동 대학, 1977.2월 동 계획 추진을 위한 재정적 지원 및 도서 기증 요청

670

2. 한국 정부의 지원방안

- 1977.3월 문교부는 토론토대학의 한국학과 신설, 재정 및 도서 지원은 한국학과가 신설된 이후 지원방안을 강구할 예정임을 통보
- 3월 문화공보부, 한국에 관한 학술서적 67권 지원 예정 통보

미국 Harvard대학 교수 방한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북미

MF번호 2010-59 / 24 / 1-64

1. 미국 하버드대 Hofheinz 및 Calder 교수 방한(1980.7.6.~10.)

- 방한 인사
 - 하버드대 동아시아연구소 소장 Ray Hofheinz 교수
 - 하버드대 미·일 관계 전문가 Kent Calder 교수
- 방한 목적
 - 한국, 홍콩, 싱가포르, 대만(구 자유중국) 등 4개국의 경제정책 비교책자 발간
- 주요 일정
 - 과학원장, 경제차관보, 현대 및 삼성 임원 면담
 - 경제부처(경제기획원, 농수산부, 재무부, 동자부) 차관보 및 실·국장 면담

2. Moskowitz 하버드대 교수 방한(1980.7.1.~8.4.)

- 방한 인사
 - Karl Moskowitz 교수(한국 현대사 및 한국학 교수)
- 주요 일정
 - 외교안보연구원장, 외무부차관보 면담
 - 한국금융제도 연구조사를 위해 재계인사, 경제학 교수 접촉

3. Vogel 하버드대 교수 등 방한 추진

- Ezra Vogel 교수를 단장으로 4명의 대학교수가 1980.9.2.부터 북한 방문 예정임.
- Vogel 교수 및 Brandt 교수는 북한 방문 전 방한을 희망함.
- 북한은 8.22. 기술적인 이유로 동인들의 북한 방문을 연기함.

미국 학계인사 방한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북미

MF번호 2010-59 / 25 / 1-72

1. Helmut Sonnenfeldt 브루킹스연구소 객원연구원 방한

- 방한 목적
 - 소련의 아시아정책에 관한 학술회의 참석
- 주요 일정
 - 이문용 외무부차관 면담(1980.4.9.): 이란 제재, PLO(팔레스타인해방기구) 승인 문제, 남북회담, 아프간 문제 등 논의

672

2. Edward Luttwak 조지타운대학 교수 방한(1980.9.1.~7.)

- 방한 경위
 - 외무부장관 및 국보위 초청
- 주요 일정
 - 대통령 취임식 참석, 외무부차관 면담, 합참·해군·공군본부 방문, 전방 시찰
 - 국방대학원, 외교안보연구원 주최 세미나 참석

3. Frank Trager 전략정보연구소장 방한 추진(1980.9.3.~7.)

- 주요 일정(안)
 - 국회의장 직무대리 예방, 외무부차관 면담, 외교안보연구원 세미나 참석 등

세계이슬람연맹 주한 사무소 설치 검토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근동

MF번호 2010-59 / 26 / 1-87

1. 세계이슬람연맹(사우디 메카 소재), 주한 사무소 설치 희망

- 1980.1.9. 세계이슬람연맹은 가봉 주재 대표를 통해 한국에 사무소 개설 의사 표명
 - 주한 사무소 개설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 및 동 사무소가 외교공관과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
- 4.6. Al-Harakan 세계이슬람연맹 사무총장, 서울사무소 설치 의사 공식 통보

2. 외교특권 부여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

- 세계이슬람연맹은 13개국에 사무소를 설치, 4개국만 외교특권을 부여함.
 - 이슬람 국가 6개국 중 세네갈, 요르단, 가봉, 모리타니가 외교특권 부여
- 비이슬람 국가 7개국 소재 사무소에는 일체의 외교특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음.
- 주한 사무소에 외교특권 부여를 요청하는 것은 일반적인 국제관행과는 다름.

한국 이슬람교 부산성원 건립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마그레브

MF번호 2010-59 / 27 / 1-305

1980년 중 한국 이슬람교 부산성원 준공식 및 이슬람대학 기공식 행사 관련 내용임.

1. 행사 목적

- 이슬람 국가 내 친한세력 저변 확대
- 상호 우의 증진 여건 조성, 미수교국 및 중동 국가와의 관계 개선
- 북한 활동 저지 기여

674

2. 주요 참가국

- 리비아, 이란,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인도, 튀니지, 싱가포르, 카타르, 말레이시아, 일본, 아랍에미리트연합국, 대만(구 자유중국) 등 14개국 57명

3. 주요 내용

- 부산성원 준공식
- 한국 이슬람대학 건립 기공식
- 기간산업 및 전방 시찰

4. 동 행사 관련 방한 인사 주요 일정

- 부산성원 준공식, 부산시장 주최 만찬
- 울산 및 구미공단 시찰
- 외무부장관, 국무총리 예방, 국무총리 주최 만찬
- 대통령 예방, 문공부장관 주최 오찬 및 민속무용단 공연

일본 창가학회 인사 방한 문제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일본

MF번호 2010-59 / 28 / 1-47

1. 일본 창가학회(일련정종) 인사 방한 문제 관련 진정서

- 대한 일련정종 법화경 강화 불교도 명익의 외무부장관 앞 진정서(1980.1월)
 - 창가학회는 일본 공산당과 협정을 체결한 사실로 보아 공산주의자 내지 용공주의자 집단
 - 따라서 창가학회 간부들의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 내지 유보를 진정
- 진정 단체는 대한 일련정종 불교회와 주도권 다툼에서 진정서 제출

2. 창가학회(일련정종)에 대한 정부의 조치 및 입장

- 일본 창가학회는 1942년부터 국내 포교 시작
- 1964.1.24. 국무회의에서 국내 포교 금지 방침 결의
- 1973.9.13.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 현행법을 준수하는 한 정부 불개입 및 관망 방침 결정
 - 국내 창가학회 각 계보는 정부의 합법화 조치를 얻기 위해 수시로 문공부에 진정
- 일본 공명당은 창가학회를 모체로 1964년도에 창당
 - 공명당은 1975년 창가학회와 공산당 간의 협정에 반대하고 반공정책을 선명하게 표명
- 공명당이 일본의 제2야당 위치에 있으며, 헌법상 종교 자유가 보장됨을 고려할 필요

3. 진정서에 대한 조치

- 창가학회 및 일련정종 대표의 방한 규제는 공명당 및 일본 정부의 반발을 초래하여 한·일 관계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
- 1980.2월 외무부는 창가학회 인사의 입국사증 신청 시 조회할 것을 잠정 지시
 - 진정인이 주장한 일괄거부보다는 개별적으로 외무부의 지시를 받고 처리

1980년도 Moscow 올림픽대회. 전3권 (V.1 참가준비, 1977-80)

생산연도 1977-1980

생 산 과 동구 / 북미 / 문화교류

MF번호 2010-60 / 1 / 1-213

1977~80년 중 1980년도 모스크바올림픽대회 관련 참가준비 내용임.

1. 참가 준비

- 모스크바올림픽조직위의 대한체육회에 대한 회람 내용(1978.6월)
 - 올림픽 아타세 임명 요청
 - 선수단 수송방안 통보(공식 항공사는 아에로플로트 소련항공)

676

2. 아타세 임명 문제

- 소련은 미수교국으로 한국인 아타세 임명이 어려운 실정에 따라 제3국 대표 지정 협의
- 1979.6.18. 대한체육회는 일본올림픽위원회에 주소련 일본대사관 직원을 아타세로 지명 요청
 - 일본 정부는 아오키 주소련 일본대사관 참사관을 아타세로 지명 동의
- 12.27. 대한체육회, 모스크바올림픽조직위에 한국 측 올림픽 아타세 지명 통보

3. 선수단 수송 문제

- 선수단의 대한항공 전세기 이용 시 대한항공과 소련국영항공 간의 상업협약 체결 필요
- 대한항공은 소련국영항공과 상업협약 체결 교섭 시행

4. 해외교포의 올림픽 참관 허가 문제

- 영주권을 소지한 재미교포의 올림픽 참관은 원칙적으로 허가함이 타당하다는 입장
- 개별적인 참관 여행 신청은 불허, 단체관광 참가 신청에 한하여 허가함이 원칙

5. 참가 추진계획서(1980.1.22.)

- 대한체육회의 제22회 모스크바올림픽대회(1980.7.19.~8.3., 모스크바) 참가 계획서
 - 모스크바올림픽대회 파견계획
 - 모스크바올림픽대책위원회

1980년도 Moscow 올림픽대회. 전3권 (V.2 한국대표단 및 심판 참가문제, 1980)

생산연도 1977-1980

생 산 과 동구 / 북미 / 문화교류

MF번호 2010-60 / 2 / 1-271

1980년 중 1980년도 모스크바올림픽대회 관련 한국대표단 및 심판 참가문제 내용임.

1. 제22회 모스크바올림픽 참가 문제

- 미국 정부의 올림픽 불참 선언
 - 1980.1.20. 카터 미 대통령, 세계 100여 개국 국가원수에게 친서를 통해 모스크바올림픽 불참 요청
 - 카터 대통령은 소련의 아프간 침공군의 철수를 주장
 - 한국은 2.7. 최규하 대통령의 회한을 통해 미국 측 입장에 대한 협력과 지지 표명
- 세계 각국의 반응(1980.5.28. 현재 올림픽 불참 및 참석 현황)
 - 불참 74개국, 참석 84개국
 - 영국, 캐나다, 중국(구 중공) 및 아중동 회교국 등 약 30여 국가들이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점령을 규탄하고 모스크바올림픽 불참을 시사함.
 - 지역별로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국가들은 지지하고 있으며, 남미 국가는 입장 미표명, 서구 국가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음.

2. 한국대표단 올림픽 참가 여부에 대한 제문제

- 1980.1.29. 소련으로부터 제22회 올림픽대회 참가 초청장 접수
 - KOC(대한올림픽위원회), 선수 121명, 임원 37명 등 총 158명의 선수단 파견계획 수립
- 4.17. 한국 정부, 제22회 모스크바올림픽 불참 방침 결정 및 KOC에 이를 권고
 - 5.17. 대한체육회 및 KOC, 모스크바올림픽 불참을 최종 결정
- IOC(국제올림픽위원회) 총회 및 종목별 국제경기연맹 총회 대표 파견, 올림픽 불참과 별개의 문제로 IOC, NOC, ISF(국제경기연맹)의 국제회의 대표 20명 파견
- IOC의 중국대표권 문제에 따른 지침
 - 1979.11월 중국의 IOC 가입 및 대만(구 자유중국) 잔류에 따른 대표권 문제

3. 한국심판 참가 문제

- ISF, 7명의 국제심판을 파견해 줄 것을 요청
 - 유도, 레슬링, 복싱, 역도 등 종목에서 7명 지명 초청
- 미국 측, 국제심판 7명의 파견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소환 요청
 - 한국 측은 올림픽 불참으로 많은 희생이 있었고, 국제심판은 IOC의 개인적 초청임을 강조

1980년도 Moscow 올림픽대회. 전3권 (V.3 각국반응 및 대체올림픽 개최문제, 1980)

생산연도 1977-1980

생 산 과 동구 / 북미 / 문화교류

MF번호 2010-60 / 3 / 1-123

678

1. 카터 미 대통령의 모스크바올림픽 거부 선언과 반응

- 1980.1.20. 카터 대통령, '소련군이 1개월 내 아프간에서 전면 철수하지 않을 경우, 모스크바 올림픽을 거부한다'고 선언
- 카터 대통령은 100여 개국 국가원수에게 친서로 올림픽보이콧 동참 요청
- IOC(국제올림픽위원회), 미국의 정치적 입장에 관계없이 예정대로 올림픽 거행 입장 확인
 - 제82차 IOC 총회(1980.2.12.) 참석 73명 위원 전원이 예정대로 하계올림픽 개최에 찬성
- 모스크바올림픽 참가에 대해 세계 각국 입장 반분
 - 재외공관, 각국 정부의 올림픽 참가문제 보고
 - 불참 74개국, 참가 84개국(NOC 결정)

2. 한국의 모스크바올림픽 불참 관련사항

- 1980.4.25. 일본 정부, 모스크바올림픽 불참 입장 공식 결정
 - 아오키 주소련 일본대사관 참사관, JOC 아타세 활동 중지
 - 한국 측, 아오키 참사관의 KOC 아타세 활동 중지에 대해 이의 없음을 통보
- 4.17. 한국 정부, 모스크바올림픽 불참 방침 결정
 - 5.17. 대한체육회 및 KOC 합동회의에서 올림픽 불참 결의

3. 모스크바올림픽 이후의 국제스포츠제전 개최 문제

- 미국, 영국, 호주 3국이 주도
- 모스크바올림픽 이후 1980.8월 하순~9월 상순, 4~5개 지역에서 올림픽 전 종목 분산 개최
 - 모스크바올림픽 불참 선수들의 기량을 겨룰 기회 제공 목적
- 종목별 포스트올림픽 경기대회 일정
 - 육상: 필라델피아(7.16.~17.)
 - 승마: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8월)
 - 수영: 호놀룰루(8.14.~17.)
 - 체조: 미국(8.21.~23.)
 - 권투: 케냐 나이로비(9.8.~13.)
 - 역도: 호놀룰루(10.23.~28.) 등

Sheikh Isa bin MOHAMED AL KHALIFA 바레인 체육청소년 장관 방한, 1980.10.10.-15.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문화교류

MF번호 2010-60 / 4 / 1-29

Shaikh Isa bin Mohamed Al Khalifa 바레인 체육청소년 장관의 1980.10.10.~15. 방한
관련 내용임.

1. 방한 경위

- 대한체육회 초청

2. 방한 목적

- 한·바레인 간 체육교류 문제(특히 바레인 체육팀의 한국 전지훈련 관계) 협의
- 제10회 아시아경기대회 서울 유치 협의

3. 주요 일정

- 조상호 대한체육회장 면담 등

일본·한 친선협회, 1979

생산연도 1979

생 산 과 일본

MF번호 2010-60 / 5 / 1-117

1979년 중 일본지역의 일본·한 친선협회 활동 관련 내용임.

1. 주일본대사관

- 1979.2.21. 도쿄도 내 에도가와구 일·한 친선협회 결성식
- 1979.6.15. 도쿄 일·한 친선협회 총회 및 일·한 친선협회 연합회 총회 개최
- 1979.8.7. 제3회 군마현 일·한 친선협회 총회 개최

680

2. 주오사카총영사관

- 1979.1.19. 나라현 한·일 친선협회 재편총회 개최
- 1979.11.28. 제3회 오사카부 일·한 친선협회 총회 개최

3. 주요코하마총영사관

- 1979.3.18. 가나가와현 쇼오난 서부지구 일·한 친선협회 창립
- 3.25. 가나가와현 겐오오 일·한 친선협회 창립

4. 주센다이영사관

- 1979.6.2. 미야기현 시오가마지구 한·일 친선협회 설립총회 개최
- 1979.6.26. 아오모리현 서북지방 한·일 친선협회 설립총회 개최
- 1979.7.10. 미야기현 한·일 친선협회 정기총회 개최
- 1979.7.29. 이와테현 한·일 친선협회 설립총회 개최
- 1979.8.5. 제4회 아오모리현 한·일 친선협회 총회 개최

5. 주니가타총영사관

- 1979.7.15. 제2회 도야마현 한·일 친선협회 총회 개최
- 1979.8.31. 이시카와현 한·일 친선협회 정기총회 개최

일본·한 친선협회, 1980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일본

MF번호 2010-60 / 6 / 1-107

1980년 중 일본지역의 일·한 친선협회 활동 관련 내용임.

1. 주일본대사관

- 1980.5.14. 한·일 친선협회 총회 개최(도쿄 민단중앙회관)
 - 102명 참석
 - 1979년도 활동 및 결산보고, 1980년도 활동방침 및 예산 통과

2. 주오사카총영사관

- 1980.12.5. 제4차 오사카부 일·한 친선협회 정기총회 개최

3. 주요코하마총영사관

- 1980.5.24. 요코하마시 한·일 친선협회 창립총회 개최
- 1980.5.24. 제5회 가나가와현 한·일 친선협회 정기총회 개최
- 1980.10.5. 제1차 가나가와현 한·일 친선협회 연합회 총회 개최(4개 지역 연합)
- 1980.10.25. 제5차 시즈오카현 한·일 친선협회 총회 개최

4. 주센다이영사관

- 1980.7.4. 야마가타현 나가이시 한·일 친선협회 설립총회 개최
- 1980.10.29. 이와테현 한·일 친선협회 총회 개최

5. 주니가타총영사관

- 1980.7.5. 나가노현 1980년도 정기총회 개최
 - 1979년도 사업보고 및 수지결산보고
 - 1980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토의, 승인
 - 남북총리회담 개최 촉진 및 북한의 남침야욕 규탄 결의문 채택
 - 기념 강연: 가나야마 전 주한 일본대사

방글라데시·한 친선협회

생산연도 1979-1980

생 산 과 서남아

MF번호 2010-60 / 7 / 1-18

1980.11.6. 다카에서 개최된 방글라데시·한 친선협회 결성식 관련 내용임.

1. 참가자

- Islam 방글라데시·한 친선협회장 및 협회 임원과 회원 전원, 주방글라데시대사관 공관원, 한인회 대표 등

2. 특이사항

- 동 결성식에서 Islam 회장은 동 협회가 한·방글라데시 간의 모든 분야에서의 협조 관계를 보다 긴밀화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으며, 주방글라데시대사도 동 결성을 축하하고 양국 간의 우호 증진을 다짐하는 인사말을 함.
- 특히 S. H. Chowdhury 방글라데시 공보성 장관과 M. Kaffey Khan 대통령 공보비서관이 참석, 동 장관은 축하사에서 한국으로부터 배울 것이 많으니 많은 도움을 주기 바란다면 방글라데시는 그 대가로 Friendship을 주겠다는 요지의 발언을 함.

모로코·한 친선협회

생산연도 1978-1980

생 산 과 마그레브

MF번호 2010-60 / 8 / 1-48

1978~80년 중 모로코·한 친선협회 설립(1979.1.30.) 관련 내용임.

1. 설립 목적

- 친한세력의 조직화와 유기적인 홍보망 확보

2. A. Idressi 한·모로코 친선협회 사무총장 방한(1980.1.24.~31.)

- 방한 목적
 - 양국 간 어업협력 협의
 - 한·아랍 친선협회와 모로코·한 친선협회 간 자매결연 및 유대 강화 협의

3. 한·아랍 친선협회와 한·모로코 친선협회 간 우호·문화교환협력약정 체결(1980.1월)

- 체결 목적
 - 양 협회 간 기존 친선 유대 강화
 - 양 협회 회원 간 보다 긴밀한 문화 관계 증진
- 주요 방안
 - 간행물, 필름, 예술 저작물 교환
 - 학생, 교수, 과학기술자, 의사, 예술인, 사업가 등 교환
 - 양 협회 회원 상호방문
 - 체육단체 방문
 - 문화전시회 후원 등

중공의 경제개혁 및 대외경제정책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중국

MF번호 2010-60 / 9 / 1-77

1980년 중 중국(구 중공)의 경제개혁 및 대외경제정책 관련 자료임.

1. 중국 인력의 중동 수출 준비

- 1980.2.28.자 독일 디벨트지 기사

2. 중국경제의 근대화화 주변 국가에 대한 영향(1980.5월, 일본 외무성)

- 주요 내용
 - 중국경제의 조정, 1979년도 중국경제, 중국경제의 신통향 및 전망, 주변 국가에의 영향

684

3. 외무부 중국담당관실의 중국 관련자료

- 국교 정상화 이전의 중국·일본 무역(1950~72)(1980.10.4.)
 - 민간무역협정 체결, 우호무역, LT무역, 각서무역, 국교 정상화와 우호무역 및 각서무역 종료
- 중국 4개 현대화계획의 변질(10.13.)
- 결제면에서 본 중국·일본 무역(12.17.)

독일 주재 한국 금융기관 검사를 위한 한·독일 간 교섭

생산연도 1979-1980

생 산 과 경제협력1

MF번호 2010-60 / 10 / 1-85

1. 독일 주재 한국은행 점포 검사 허용 문제

- 한국 재무부, 한국은행의 해외지점에 대한 영업활동 검사 실시
 - 독일 프랑크푸르트 소재 외환은행 및 서울신탁은행 지점에 대해서 검사 실시 희망
- 독일, 외국 금융기관에 대한 본국 정부 또는 은행감독기관의 검사를 원칙적으로 불허
 - 단, 사전 정부 간 협약 체결의 경우(구상서 교환)에는 허용(미국, 일본, 이란 등)

2. 외국 진출 자국은행에 대한 상호 검사 허용 제안

- 1980.1월 한국 정부, 독일 정부에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은행 검사를 상호 허용하는 구상서 교환을 제의
- 독일 측, 1월 구상서 초안을 한국 측에 제시
- 한국 측, 4월 대안 제시 및 합의
 - 호혜주의에 입각, 은행 검사를 상호 허용
 - 동 검사는 조세부과 목적이 아닌 순수한 은행감독 목적을 위해서 시행
 - 한국 측 검사기관을 재무부에서 은행감독 당국으로 수정

3. 독일과 금융기관 검사를 위한 구상서 교환

- 1980.6.4. 주독일대사관, 제안 각서 전달
- 7.7. 독일 외무성, 회답 각서 접수

한·일본 경제·통상협력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일본

MF번호 2010-60 / 11 / 1-15



1. 대통령, 일본 대한 수입 및 경제교류 촉진단 면담(1980.7.19.)

● 대표단

- 일본 측: 우에다 미츠오 단장, 주한 일본대사 등 7인
- 한국 측: 상공부장관 등 5인

● 주요 내용

- 한국 측, 일본 구매사절단의 방한 중 활동성과 보고
- 일본 측, 이토 전 일본 수상 대리가 대통령에게 보내는 친서를 전달하고 서훈에 대한 감사 표시
- 양측, 한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통상 확대, 경제협력 문제 등 의견 교환

2. 김동휘 외무부차관, 미키타케 일본 대장성 부재무관 면담(1980.9.3.)

● 주요 내용

- 무역역조 문제, 신정부의 경제정책, IMF(국제통화기금) 총회에 PLO(팔레스타인해방기구) 초청 문제 등 논의

한·나이지리아 경제·통상협력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경제협력1

MF번호 2010-60 / 12 / 1-62

1. 나이지리아 어업자원 조사사업

- 1980.6월 나이지리아 해양조사연구소, 주나이지리아대사관에 어족자원 조사사업 협력 가능성 문의
 - 200해리 수역 내 참치 및 기타 어족 부존량, 계절풍 분포상태 및 어획 방법 조사
- 7월 수산청, 어업자원 조사사업에 참여 의사가 있는 업체를 해양조사연구소에 통보

2. 주나이지리아대사, Akin George 라고스 상공회의소 회장 면담(1980.10.9.)

- 주나이지리아대사 발언 요지
 - 민간경제 및 적극적인 민간교류 증진을 위한 한·나이지리아 간 민간경제공동위원회 결성 제의
 - 1981.5월경 라고스에서 한국 종합상품전시회 개최 예정
- Akin George 회장 발언 요지
 - 양국 간 양해 의정서 체결 제의
 - 1981.9월 대규모 통상사절단 파한 예정
 - 민간사절단 라고스 방문 시 최대한 협조를 제공할 용의가 있음.
 - 1981.11월 라고스에서 개최 예정인 대규모 국제박람회에 한국 참가 요청

3. Olaniawo 나이지리아연방 수산학교 교장 방한(1980.10.23.~31.)

- 수산청, 원양어업협회, 한국어업기술훈련소, 조선공사, 해양대학, 국립수산진흥원 방문
- 삼송산업, 남양어망, 삼해어망, 대림수산 등 방문

한·사우디아라비아 경제 및 철도·항공협력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경제협력2

MF번호 2010-60 / 13 / 1-103

688

1. 한·사우디아라비아 간 경제협력 강화

- 1980.5월 대통령의 사우디 방문 시 양국 간 동시 발표한 공동성명서 제6항에서 양국 원수는 1975년 양국 간 경제기술협력협정이 체결된 이후 경제기술분야가 크게 확대되었음에 비추어 양국은 앞으로 기대되는 협력분야를 확충하기 위하여 동 협정 내용을 재검토함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5.12. 한·사우디 간 외상회담에서도 동 협정을 개정함으로써 양국 간의 경제 기술협력을 확대 강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 제5차 한·사우디 합동위원회 회의 조속 개최 추진
- 경제기술협력협정 개정을 통해 한·사우디 경제 관계 강화 홍보
 - 대사우디 홍보 강화를 위한 관계부처 회의(1980.6.17., 경제기획원) 개최

2. 사우디 인력정책 보고

- 1980.6.8. 주사우디대사관, 사우디 인력정책 보고
 - 1979년 말 현재 사우디 내 외국인력 약 250만 명
- 한국의 인력 진출은 건설 위주에서 탈피, 기술용역, 농업, O&M 부분으로 다변화 필요

3. 한·사우디 합작 추진

- 사우디 SABIC(기간산업공사) 조사단 방한 추진
 - 사우디의 공업합작 예비조사단은 석유화학 등 합작사업 조사 목적으로 방한 추진
 - 1980.4월 방한을 추진하였으나 1981년도로 연기
- 강원산업은 SABIC과 제철공장 합작사업 추진

4. 대사우디 철도 유지, 보수 및 기술인력 지원

- 양국 철도청 간 철도청 기술요원 계약기간 연장(1980.7.13. 합의)
 - 기존 22명의 한국기술자 중 사우디 철도청이 지정한 11명에 대해 1년간 계약기간 연장

5. 대한항공 운휴 항공기의 사우디아라비아 임대운항 허가

- 1989.8.6. KAL과 사우디 AIR 간 항공기 임대계약 합의
- 8.9. 교통부, KAL기 사우디 임대운항 허가

한·세네갈 경제·통상협력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서부아프리카

MF번호 2010-60 / 14 / 1-19

1. 세네갈 경제사정과 한국의 수출 전망

- 세네갈 경제 상황
 - 10여 년의 한발로 낙화생 등 농작물 흉작,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국제수지 적자 확대로 외채 격증 및 외환보유고 감소 등 경제적 난국
- 세네갈 정부의 긴축정책 강화 및 수입통제정책으로 한국의 수출저조 전망

2. Cheik Tidiane SY 세네갈 농촌개발전문학교 학장 방한(1980.9.14.~29.)

- 내무부, 외무부, 과기처, 경제기획원 방문
-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소, 농촌경제연구원, 농촌진흥청 방문
- 새마을 연수원 입소, 새마을 부락 및 새마을 공장 시찰

한·베네수엘라 경제협력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경제협력2 / 통상2

MF번호 2010-60 / 15 / 1-152

1. Martinez 베네수엘라 경제기획조정 장관 방한(1980.5.19.~25.)

- 방한 경위
 - 동자부장관 초청
- 주요 일정
 - 경제부총리, 동자부장관, 외무부장관 등 면담
 - 동 장관은 원유, 건설, 농업, 어업, 인력 등 분야에서 협력 추진 희망
- 관계부처 회의(1980.6.12., 경제기획원) 시 베네수엘라와 구체적인 경제협력 방안 협의

690

2. 베네수엘라 민간경제사절단 방한(1980.8.30.~9.6.)

- 방한 인사
 - Emilio Conde 카라카스 공업회의소 회장 등 14인
- 주요 결과
 - 제1차 한·베네수엘라 경제협력위원회 합동회의(1980.9.4.) 참가
 - 제1차 합동회의 합의에 따라 무역협회는 양국의 경제협력 가능성을 조사 검토하기 위해 경제조사단 5명을 1980.10.12.~25. 베네수엘라에 파견하고자 함.
 - 민간차원에서의 양국민 교역 및 합작 증대방안 협의

한·중국 경제각료회담, 제14차. Taipei, 1980.4.10.-16. 전2권 (V.1 기본문서)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경제협력2

MF번호 2010-60 / 16 / 1-237

1980.4.10.~16. 대만(구 자유중국) 타이베이에서 개최된 제14차 한·대만 경제각료회담 관련 내용임.

1. 회담 일정

- 실무자 회담: 1980.4.10.~12.
- 각료회담: 1980.4.14.~16.

2. 수석대표

- 한국 측: 이한빈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
- 대만 측: 장광세 경제부장

3. 회의 의제(안)

- 경제협력 분야: 한·대만 민간경제협력위원회 지원
- 통상진흥 분야: 양국 간 통상의 확대균형, 교역 확대 장애요인 제거, 인삼류 수출증대 교섭, 무역 확대를 위한 공동교섭
- 기술협력 분야: 공동 워크숍 개최, 과학기술기관 간 협력, 시찰단 상호교환

4. 회담 결과

- 합의사항
 - 경제협력: 특정산업(기계, 전자, 철강, 섬유)에 대한 민간단체 활동 지원
 - 통상진흥: 양국 간 관세인하, 1980년도에 포니승용차 및 픽업트럭을 각각 800대씩 수입하기로 합의
 - 시찰단 상호교환 인원 30명(영농과학, 새마을운동) 등

한·중국 경제각료회담, 제14차. Taipei, 1980.4.10.-16. 전2권 (V.2 자료)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경제협력2

MF번호 2010-60 / 17 / 1-227

1980.4.10.~16. 대만(구 자유중국) 타이베이에서 개최된 제14차 한·대만 경제각료회담 관련 자료임.

1. 양국 통상 관계 현안(외무부 통상국)
2. 양국 경제각료회담 준비자료(외무부 국제경제국)
3. 양국 경제각료회담 의제(안)(경제기획원)
4. 양국 경제각료회담 자료(상공부)

한·독일 경제실무자회담(재정차관·기술협력분야), 제10차. Bonn, 1980.5.19.-24.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경제협력1

MF번호 2010-60 / 18 / 1-66

1980.5.19.~24. 독일 본에서 개최된 제10차 한·독일 경제실무자회담 관련 내용임.

1. 수석대표

- 한국 측: 차화준 경제기획원 차관보
- 독일 측: F. Klamser 경협성 아주총국장

2. 주요 결과

- 자본협력
 - 1980년 재정차관 대상사업 확정(병원건설사업 등 3개 사업 1,500만 DM)
 - 장래의 재정협력 관련 협의(독일 측은 1981년 이후 재정협력은 곤란하다는 입장 표명)
- 기술협력
 - 1980년도 기술협력사업 확정(직업훈련사업 확충 등 5개 사업 1,300만 DM)
 - 1980년 파독일 유학생 쿼터를 137명으로 확정
 - 장래 기술협력사업 대상 등 협의
- 진행 중인 재정협력 및 기술협력 협의

한·일본 경제협력 실무자회담, 제7차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경제협력1

MF번호 2010-60 / 19 / 1-282

1. 제7차 한·일 경제협력 실무자회담 예비회담(1980.1.21.~24., 서울 경제기획원)

- 수석대표
 - 한국 측: 이강두 경제기획원 경험1과장
 - 일본 측: Junichi Nakamura 외무성 경제협력과장
- 회의 결과
 - 1979년 대일 공공차관 대상사업 3개 사업에 대한 일본 측의 질문 및 현장 답사
 - 의료장비보강사업, 사립대학시설확충사업, 대구 신천우 오수분리처리사업에 대한 설명
 - 일본 측은 3개 차관사업 요청액 9천 9백만 달러에 호의적 검토 표명

694

2. 제7차 한·일 경제협력 실무자회담 본회담(1980.7.29.~30., 도쿄 외무성)

- 수석대표
 - 한국 측: 손명현 경제기획원 경험국장대리
 - 일본 측: 야나이 신이치 외무성 경제협력국장
- 회의 결과
 - 한국 측 제의 5개 사업 중 2개 사업(민간지역병원 장비보강사업, 교육시설확충사업)에 합의
 - 금액: 2개 사업 190억 엔(약 8,165만 달러)으로 1979년도 차관액과 동액
 - 일본은 국립경찰병원 및 국립원호병원 차관사업이 일본의 재정차관사업으로 부적합하다는 의견

한·핀란드 혼성위원회, 제1차. 서울, 1980.4.9.-12.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경제협력2

MF번호 2010-60 / 20 / 1-169

1980.4.9.~12. 서울에서 개최된 제1차 한·핀란드 혼성위원회 회의 관련 내용임.

1. 회의 목적

- 한·핀란드 간 통상 증대 및 경제·기술협력 증진방안 협의
- 수석대표
 - 한국 측: 상공부장관
 - 핀란드 측: Esko Rekola 통상장관

2. 핀란드 통상장관 주요 일정

- 제1차 한·핀란드 혼성위원회 회의 참석
- 건설부장관, 동력자원부장관 예방
- 한국석유개발공사 방문
- 대통령, 국무총리, 외무부장관 예방
- 한·핀란드 경험위 합동회의 참석 등

3. 회의 결과

- 양국 간 교역규모 확대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의 확대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기로 합의
 - 한국 측은 가까운 장래에 핀란드의 대한민국 구매사절단 파견 요청
- 한국 측은 조선 분야 및 텔레비전 생산에 있어서 양국 간 협력을 요청하고, 핀란드 측에서 한국 경제개발계획, 금속·전자·제철·석유화학 및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핀란드의 자본 참여를 요청
- 양국은 제3국 시장진출에서 양국 기업의 공동협력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하여 한·핀란드 간 민간경제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기로 합의

한·네덜란드 공동위원회, 제5차. The Hague, 1980.6.26.-27.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경제협력1

MF번호 2010-61 / 1 / 1-79

1980.6.26.~27. 헤이그에서 개최된 제5차 한·네덜란드 공동위원회 회의 관련 내용임.

1. 수석대표

- 한국 측: 한탁채 외무부 국제경제국장
- 네덜란드 측: J. W. A. Huibregtse 경제부 부국장

2. 회의 의제

- 양국 경제 현황
 - 한국 측: 최근 국내사태와 경제조치 설명
 - 네덜란드 측: 네덜란드의 경제정책 설명
- 양국 무역확대
- 농업분야 협력
- 경제·기술협력
- 국제경제 관계

3. 회의 결과

- 네덜란드 측은 한국이 처한 현재의 어려움은 일시적인 것이며, 중장기적인 면에서는 장래가 밝다는 인식하에 한국과의 협력 관계 강화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임.
- 네덜란드 측은 한국과의 무역역조 시정을 위해 농산물의 대한국 수출증대가 긴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으며 한국 측이 중점을 둔 섬유류 쿼터, MFA(다국간섬유협정) 및 GSP(일반특혜관세제도) 문제 등 EC(구주공동체) 내의 보호무역주의 경향에 대하여 한국 측 주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함.
- 네덜란드 측은 한국과 중동에서의 합작 진출에 많은 관심을 표시하였으며, 이를 위한 양국 간의 협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함.
- 동 회담을 통하여 한국이 비상사태 하에서도 안정을 회복하였고, 특히 대외경제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시킴.

한·칠레 [민간] 경제협력위원회 합동회의, 제3차. 서울, 1980.10.13.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경제협력2

MF번호 2010-61 / 2 / 1-41

1980.10.13. 서울에서 개최된 제3차 한·칠레 민간경제협력위원회 합동회의의 관련 내용임.

1. 개최 목적

- 민간경제협력위원회는 1976.10월 대한상회의와 칠레상회의연합회 간에 서명, 교환된 경제협력 의정서에 의거하여 양국에서 교대로 개최

2. 수석대표

- 한국 측: 조해형 한·칠레 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 칠레 측: Herman Daroch 제조업 전국협회장

3. 회의 의제

- 양국의 경제 현황 및 전망
- 무역확대 방안
- 합작투자 및 금융협력 방안
- 해운협력 방안

한·인도네시아 [민간] 경제협력위원회 합동회의, 제3차. Jakarta, 1980.8.19.-20.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통상1

MF번호 2010-61 / 3 / 1-92

1980.8.19.~20.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제3차 한·인도네시아 민간경제협력위원회 합동회의 관련 내용임.

1. 수석대표

- 한국 측: 함영훈 주인도네시아대사
- 인도네시아 측: A. Baramuli 경협위 위원장

698

2. 주요 의제

- 통상 진흥
- 합작투자 증진
- 중소기업 육성
- 자원개발협력(산림개발 포함)

3. 회의 결과(공동성명 요지)

- 인도네시아 측은 양국 간 무역역조 시정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함.
- 자원개발협력소위원회 및 건설기술훈련센터 설치
- 이중관세 차별관세 폐지 및 관세인하를 위한 노력
- 자원공급계약 장기화 촉구
- 해외건설과 인도네시아 경제 및 석탄개발에 있어서의 양국 간 협력

한·필리핀 [민간] 경제협력위원회 합동회의, 제3차. 서울, 1980.6.18.-19.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통상1

MF번호 2010-61 / 4 / 1-110

1980.6.18.~19. 서울에서 개최된 제3차 한·필리핀 민간경제협력위원회 합동회의의 관련 내용임.

1. 수석대표

- 한국 측: 김덕중 위원장(대우실업 사장)
- 필리핀 측: Dominador Lim 위원장(국제무역공사 사장)

2. 회의 의제

- 기조연설
 - 석유 위기와 국제금융시장(차동세 국제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
 - 1980년대의 동남아 경제 전망(Berardo Silverio, Isarog 제지회사 사장)
- 한·필리핀 교역 증진
- 자원개발협력
- 비교우위산업 개발협력
- 상호 통상사절단 파견

3. 회의 결과

- 무역 확대 관련, 제2차 석유 위기로 인한 세계적인 경제 혼란이 양국 간의 활발한 경제교류 추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함.
- 필리핀 측 대표들은 반도체, 전기기기 및 부품, 캠핑장비, 건축자재, 의류 및 섬유제품에 대한 수입관세 품목의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하였으며, 한국 측은 이를 제공함.
- 양국 대표단은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서 특별히 금융, 자본이전, 기술이전, 통상사절단의 교환 등과 같은 분야에 있어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함.

한·튀니지 [민간] 경제협력위원회 합동회의 창립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경제협력2 / 마그레브

MF번호 2010-61 / 5 / 1-60

1980년 중 한·튀니지 간 민간경제협력위원회 합동회의 창립 관련 내용임.

1. 경제위원회 설립 합의

- Tijani Chelly 튀니지 투자진흥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튀니지 산업시찰단은 한국 대한상공회의소의 초청으로 1980.5.12.~16. 방한함.
- 동 청장은 대한상의와 한·튀니지 경제협력위원회 설립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경제협력 의정서를 교환함.

700

2. 경제협력위원회 창립(1980.9.25.,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3. 경제협력위원회 창립총회(1980.10.30., 튀니지 튀니스)

- 참가자
 - 한국 측: 홍일 주튀니지대사 등
 - 튀니지 측: Moncef Ben Abdallah 투자진흥청장 등
- 회의 결과
 - 튀니지 측 경제협력위원회 회장 등 임원진 선출

IECOK(대한민국국제경제협의회) 총회 제11차 및 김원기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 영국 방문, 1980.6.20.-7.4.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서구

MF번호 2010-61 / 6 / 1-31

정부는 1980.6.24.~25. 파리에서 개최된 제11차 IECOK(대한민국국제경제협의회) 총회에 김원기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한국대표단의 순방 일정

- 프랑스(1980.6.21.~28.)
 - 제11차 IECOK 총회(1980.6.24.~25.)
- 영국(1980.6.28.~7.2.)

2. 회의 진행

- 후세인 세계은행 부총재의 개회사
- 부총리의 한국경제 현황 기조연설
- 강경식 경제기획원 기획차관보의 한국경제시책 설명
- 각국 대표 질의
- IMF(국제통화기금) 대표 연설
-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Chief Economist인 Mr. Hasan의 한국경제 소개

3. 회의 결과

- 참가자들은 한국경제의 현황과 최근에 일어난 일련의 사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시종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회의가 진행되었음. 특히 미국 대표는 미국 정부는 한국의 안보에 대한 관심과 양국 간의 경제협력 관계는 계속 지속될 것이며 단기적으로는 한국이 곤란을 겪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곤란을 극복할 것을 확신하며, 보다 넓은 지지에 바탕을 둔 정부 수립으로 국제적 신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함.
- 기타 각 대표들도 한국이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볼 때 성장의 잠재력이 있어 고도성장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같이 하였으며, 한국대표단이 최근 광주사태 및 국가보위상임위원회 설치 배경 등을 솔직하게 설명함으로써 한국사태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함.

4. 한국대표단 활동

- 부총리는 현 난국을 타개하기 위하여 60억 달러의 차관을 요청하고 1980.6.26. 바르 프랑스 수상과 회담하여 핵발전소 건설문제 등 양국 간의 협력을 거론함.

중공 경제정책 세미나. Hong Kong, 1980.10.8.-9.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중국

MF번호 2010-61 / 7 / 1-201

1980.10.8.~9. 홍콩에서 개최된 중국(구 중공) 경제정책 세미나 관련 내용임.

1. 회의 형식

- 중국 경제계 인사들이 중국경제 전반에 관한 일반적 설명을 청취,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

2. 참가자

- 중국 측: 제1기계공업부 부부장, 신화사 통신 홍콩지사장 등 약 50명
- 화교 상사, 홍콩의 중립계 상사 대표 등 약 150명
- 외국인: 미·일·호주 등 각국 양사 단원 30여 명, 외국 상사 대표 50여 명
- 한국 측: 주홍콩총영사관, 코트라, 수출입은행 관계자, 삼성물산 지점장 등

3. 중국 경제에 관한 발표 논문 요지

- 중국의 경제발전 목표 및 기본 형태
- 평화적 환경조성 강조
- 외자도입, 경제협력 문제
- 외자에 대한 석유탐사개발 문제
- 대외무역 관계
- 외국과의 각종 협력 희망

4. 중국 주요인사 접촉

- 라오빈 제1기계공업부 부부장
 - 한국의 대외기술협력 경과, 중동건설 참여 인원, 공사 종류, 임금, 기술자 보충 문제 등에 대해 질문하면서 큰 관심 표명
- 쉬에 무차오 국가계획위 주임 겸 경제연구소장
- 쉬량 신화사 홍콩지사 기자

아시아태평양지역 노동장관회의, 제8차. Manila, 1980.11.28.-12.1.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국제기구2 / 아주총괄

MF번호 2010-61 / 8 / 1-202

정부는 1980.11.28.~12.1.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제8차 아시아태평양지역 노동장관회의에 권중동 노동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자

- 대표: 한국, 일본, 아세안 5개국, 호주, 방글라데시 등 23개국 93명
- 옵서버: 2개국(요르단, 카타르), ILO(국제노동기구)

2. 주요 의제

- 지역기술협력
- 노동력 이동
- 노동조건 및 작업환경
- 보호주의

3. 공동성명 요지

- 지역 간 기술협력
 - ILO는 개도국 간의 기술협력을 위해 노력해야 함.
 - 각국은 ILO의 지역 간 활동을 최대한 지원해야 함.
- 노동력 이동
 - 국제 노동력 이동과 관련한 연구 검토를 위해 ILO 및 인력 수출입국 간의 협의체가 구성되어야 함.
- 근로조건 및 작업환경
 - 노동입법을 하는 과정에 사용자 및 근로자 대표의 참여 기회가 주어져야 함.
 - 산업재해에 대한 신속한 보상을 가능하게 하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함.
- 보호주의
 - 비교우위원칙을 무시한 보호주의는 철폐되어야 함.
- 분과위원회
 - 제1분과위원회: 지역기술협력
 - 제2분과위원회: 노동력 이동
 - 제3분과위원회: 근로조건 및 작업환경
 - 제4분과위원회: 보호주의



4. 한국 수석대표의 기조연설

- 근로자 고용의 증진을 위하여 인력공단 설치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1963년 이래 많은 근로자를 해외에 파견, 각국 경제건설에 참여하고 있음.
- 근로자 보호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근로조건의 향상, 작업환경의 개선, 복지시설의 설치 등 제반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또 노동조합을 지도 육성하고 있음.

704

5. 회의 평가

- 아시아태평양 노동장관회의가 계속됨에 따라 동 지역 내의 노동, 경제문제 대처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해나갈 가능성이 큼.
- 예정대로 1982년 파키스탄에서 제9차 회의를 개최할 경우, 아시아 공산국가(중국, 베트남, 북한 등)가 초청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IER(동서경제기구) 주최 Budapest 국제심포지엄 참가, 1980.10.13.-15.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통상3

MF번호 2010-61 / 9 / 1-60

1980.10.13.~15.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개최된 IER(동서경제기구) 주최 부다페스트 국제 심포지엄 참가 관련 내용임.

1. 추진 경위

- 1980.6월 주오스트리아대사, IER 주최 국제심포지엄에 한국 참가를 건의
- 1980.7.11. 외무부, 관계부처(상공부, 중앙정보부)와 사전 협의를 거친 후 참가 예비교섭 지시

2. 진전사항(주오스트리아대사 보고)

- 1980.7.22. 주오스트리아 헝가리대사관 측은 한국 측의 비자 신청서에 긍정적 태도 표명
- 주오스트리아대사 의견
 - 주오스트리아대사관 담당관 외 민간인 경제전문가(국제경제연구원 등) 1인, 합계 2인의 비자를 우선 신청, 헝가리 측의 반응 타진 건의

3. 한국 참가 신청 결과

- 비자 신청 결과
 - 입국 허가자: 이풍 국제경제연구원 연구원(미국 여권으로 비자 신청)
 - 입국 불허자: 신기복 주오스트리아대사관 참사관, 코트라, 삼성물산 관계자
- 상기 결과에 따라 이풍 연구원만 부다페스트 국제심포지엄에 참가

덴마크 관민 혼성 경제사절단 방한, 1980.5.18.-22. 전2권 (V.1 기본문서)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북구 / 통상2

MF번호 2010-61 / 10 / 1-186

덴마크 관민 혼성 경제사절단의 1980.5.18.~22. 방한 관련 내용임.

1. 방문단

- 덴마크 경제사절단
 - 에릭 라스무센 덴마크 공업인연합회장 등

2. 주요 일정

- 부총리 예방, 심포지엄 개최
- 제3차 한·덴마크 경험위원회 회의
- 상공부장관, 외무부장관 예방, 외무부차관 주최 만찬

3. 주요 협의사항

- 양국 간 교역 증대를 위한 교역증진 실무위원회 구성 합의
- 한·덴마크 기술협력진흥센터 설립 검토
- 컨소시엄이나 Sub-Contracting 형태에 의한 제3국 공동진출 방안 논의

4. 상담 실적

- 올림포스전자(주)의 전자통신기기 730만 달러의 수출계약이 이루어졌으며, 금후 5년간 약 5천만 달러의 수출을 협의하는 등 다수의 개별 상담이 이루어짐.

덴마크 관민 혼성 경제사절단 방한, 1980.5.18.-22. 전2권 (V.2 영접준비)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복구 / 통상2

MF번호 2010-61 / 11 / 1-274

덴마크 관민 혼성 경제사절단의 1980.5.18.~22. 방한 관련 영접준비 내용임.

1. 외무부는 1980.1.18. 덴마크 여왕 부군 Henrik 공의 방한 관련, 현직 왕족으로서의 Henrik 공의 지위를 고려하고, 동 경제사절단의 방한이 양국 간의 경제협력 및 통상 관계를 증진시킬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하여 아래와 같이 예우할 것을 건의하여 국무총리 재가를 필함.

- 공식방문: 정부의 빈객으로 초청장 통고
- 수상급 예우: 대통령 예방, 오찬 또는 만찬
- 국무총리 공항 영접, 국무총리 주최 환영식, 국무총리 주최 만찬 등

2. 외무부, 경상북도지사 및 경주시장 앞 공문 송부(1980.4.14.)

- Henrik 공의 체한기간 중 경주를 방문하여 석가탄신일 기념 연등행사 등 참석을 위한 협조 요청

3. 덴마크 여왕 부군 Henrik 공 공식방한 일정 세부계획(안)(외무부 의전실)

4. 덴마크 여왕 부군을 위한 만찬계획(외무부 의전실)

5. 덴마크 여왕 부군 방한 환영식 행사계획(안)(총무처)

서사모아 경제조사단 방한 초청계획

생산연도 1978-1980

생 산 과 경제협력2

MF번호 2010-61 / 12 / 1-69

1978~80년 중 사모아(구 서사모아) 경제조사단 방한 초청 추진 관련 내용임.

1. 추진 경위

- 1978.3.14. 주뉴질랜드대사, 뉴질랜드 주재 사모아 고등판무관을 방문, 사모아의 대북한 접근 저지를 요청하고 한국과의 유대관계 강화를 위해 사모아 경제협력사절단 방한 초청 건의
- 1978.3.15. 외무부, 사모아 경제협력사절단(3~4명)을 왕복 항공료 및 체제비 한국 측 부담으로 초청 예정임을 주뉴질랜드대사에게 통보
- 1978.5.6. 사모아의 대북한 접근도의 진척으로 한국 측은 동 사절단 방한을 접수할 수 없음을 주뉴질랜드대사로 하여금 사모아 측에 통보하도록 지시
- 1978.6.20. 주뉴질랜드대사, 사모아 경제협력사절단 방한과 관련 한국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동 조사단 방한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
- 1979.2.27. 주사모아 명예영사, 주뉴질랜드대사를 방문, 사모아 경험단이 6월경 방한하도록 조치 요망해 왔음을 보고
- 1979.9월 주뉴질랜드대사, Efi 사모아 수상 면담 시 사모아·북한 간 관계가 현재 이상으로 발전 되지 않기를 희망하는 입장을 표명하자, 동 수상은 향후 8~10개월을 두고 한·사모아 실질관계 발전을 기대하며 양국 간 실질관계 증진이 있을 경우 사모아·북한 간 관계에 진전이 없을 것임을 언명함.
- 주뉴질랜드대사는 경험사절단 방한 시 농어촌 새마을사업, Commercial Plantation 분야에 있어 사모아 측에서 협력 제의가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건의함.

2. 방한 목적

- 한·사모아 간 경제협력을 위한 가능분야 조사
- 농촌개발에 관한 한국의 경험조사 습득

3. Efi 수상 방한 초청 및 경제협력사절단 방한 불추진

- 주뉴질랜드대사, 1979.9월 Efi 수상 정권이 안정세에 들어가 장기집권 태세를 갖추에 따라 동 수상을 초청하여 친한세력으로 확보할 것을 건의함.
- Efi 수상이 1980.6.8.~12. 공식방한하기로 함에 따라 사모아 경제협력사절단의 방한은 더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함.

최종원 건설장관 중동 순방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근동

MF번호 2010-61 / 13 / 1-49

1980년 중 최종원 건설부장관의 중동(사우디, 쿠웨이트, 바레인, 오만, 카타르) 순방 관련 내용임.

1. 사우디, 쿠웨이트, 바레인 방문(1980.2.11.~21.)

- 출장 목적
 - 현장 확인으로 건설수출 증진방안 모색
 - 진출국 요인과의 유대 강화로 건설수출 확대
 - 건설 현장의 한국근로자 격려
- 주요 일정
 - 바레인: 국왕 알현, 주택성 장관 예방, 외무성 장관 주최 오찬 참석
 - 쿠웨이트: 공공사업성 장관, 주택성 장관, 전력수도성 장관 등 예방
 - 사우디: 농업수자원성 장관, 상무성 장관, 보건성 장관, 석유광물성 장관 등 예방

2. 오만, 카타르 방문(1980.5.15.~17.)

- 주요 일정
 - 오만: 교통성 장관, 토지 및 지방행정성 장관, 법률담당 부수상, 전기수력성 장관, 외무부 장관 예방
 - 카타르: 국왕 알현(공공사업성 장관 배석), 한국기업들에 의한 건설공사 현장 시찰 및 건설 현장의 한국근로자 격려

Khalid bin Abdullah AL-ATTIYAH 카타르 공공사업성 장관 방한, 1980.9.12.-15.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근동

MF번호 2010-61 / 14 / 1-30

Khalid bin Abdullah AL-ATTIYAH 카타르 공공사업성 장관의 1980.9.12.~15. 방한
관련 내용임.

1. 방한 경위

- 1980.5.27. 주카타르대사, 구두로 방한 초청한 바 있는 AL-ATTIYAH 카타르 공공사업성 장관에
대한 방한초청장 송부를 건의
- 1980.7.8. 주카타르대사, 공공사업성 장관에게 방한초청장 전달
- 카타르 측, 동 장관이 1980.9.15.부터 3~4일간 4명의 수행원을 대동하여 방한할 예정임을 주카
타르대사관에 전달

2. 주요 일정

- 국무총리(수교훈장 광화장 수여), 외무부장관 면담

BOONCHU Rojanastien 태국 경제담당 부수상 방한, 1980.11.20.-22. 전2권 (V.1 사전준비)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동남아 / 경제협력2

MF번호 2010-61 / 15 / 1-167

Boonchu Rojanastien 태국 경제담당 부수상의 1980.11.20.~22. 방한 관련 내용임.

1. 방한 경위

- 1979.11월 방콕은행 총재 재직 시 외환은행장 초청으로 방한 예정이었으나, 10·26 사태로 본인이 연기한 바 있음.
- 1980.10월 구주 및 미·일본 순방(1980.11.5.~19.) 후 방한 희망, 부총리 명의 방한초청장을 전달함.

2. 외무부 지시사항

- 1980.11.6. 외무부는 동 부수상 영접준비를 위해 아래 사항을 조속히 확정하여 보고하도록 주태국대사관에 지시함.
 - 방한일시 및 체한기간, 수행원 명단
 - 부수상 및 주요 수행원 약력 및 사진
 - 방한 시 새마을 현장 이외 시찰 희망사항
 - 면담자료 작성에 참고사항(주재국 정세, 양국 간 주요 현안문제, 거론 요망사항 및 건의사항 등)

3. 주요 일정(안)

- 부총리 등 경제 각료 예방
- 새마을 시찰
- 한양대에서 명예경제학박사 학위 수여
- 한국종합전시장 시찰
- 외무부장관 대리 주최 만찬
- 한·태국 여자농구친선경기 관람
 - 동 부수상의 희망으로 태국 방콕은행 여자농구팀을 방한 초청하여 경기를 갖도록 대한체육회에 협조요청조치 중에 있음.

BOONCHU Rojanastien 태국 경제담당 부수상 방한, 1980.11.20.-22. 전2권 (V.2 결과보고 및 자료)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동남아 / 경제협력2

MF번호 2010-61 / 16 / 1-255

Boonchu Rojanastien 태국 경제담당 부수상의 1980.11.20.~22. 방한 관련 내용임.

1. 방한 목적

- 한·태국 간 우호관계 증진
- 한국 정부지도자 예방
- 한·태국 경제협력 및 체육교류 증진 논의
- 새마을 현장 시찰

712

2. 주요 일정

-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 주최 만찬
- 대통령, 국무총리, 외무부장관 대리 예방
- 한양대 명예박사 학위 수여식 참석
- 수원 새마을 연수원, 새마을 모범부락(경기도 화성군), 한국종합전시장 방문
- 외무부장관 대리 주최 만찬
- 한·태국 여자농구친선경기 관람

3. 방한 결과

- 태국은 선발 개발도상국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의 경제개발정책 및 경험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바, 동 부수상의 방한은 이를 직접 목격함과 동시에 양국 간 경제협력 증진 및 전통적인 우호관계 증진을 목적으로 함.
- 1980.10월까지 95회에 걸친 태국의 새마을 시찰단 방한 결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한국의 성공적인 새마을운동 현황을 직접 목격함으로써 태국은 한국을 모델로 삼아 현재 추진 중인 농촌 개발계획에 적극 활용하고자 함.

Martinez M., Ricardo E. 베네수엘라 기획조정 장관 방한, 1980.5.19.-25.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남미 / 통상3

MF번호 2010-61 / 17 / 1-221

Ricardo Martinez 베네수엘라 기획조정 장관의 1980.5.19.~25. 방한 관련 내용임.

1. 방한 경위

- 1979.3.13. 장예준 전 동자부장관, 베네수엘라 방문 시 방한 초청
- 1980.1.7. 동자부장관, 재방한 초청

2. 방한 목적

- 양국 간 자원협력을 비롯한 경제협력 및 우호관계 증진

3. 주요 일정

- 동자부장관 면담(3회)
- 경제기획원장관(수교훈장 광화장 수여), 외무부장관, 상공부장관 면담
- 울산유공공장, 현대중공업, KIST, 경인에너지 및 한국종합전시관 시찰
- 한·베네수엘라 경제협력위원회 주관 세미나 참석

4. 방한 결과

- 자원보유국인 베네수엘라와 인력, 자본, 기술보유국인 한국과의 상호협력 필요성을 확인함.
- 베네수엘라 측은 1980.8월부터 중질유 5천 B/D의 공급 의사를 표명, 동 문제의 최종 타결을 위하여 7월 한국 측 실무대표단을 베네수엘라에 파견하기로 함.
- 원유 공급은 양국 간 정부차원에서 우선 합의하고, 공급 질서가 안정된 후에 민간상사 간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함.

Ziaur 방글라데시 대통령의 경제원조 요청 문제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서남아

MF번호 2010-61 / 18 / 1-45

1980년 중 Ziaur 방글라데시 대통령의 경제원조 요청 문제 관련 내용임.

1. 방글라데시의 경제원조 요청

- 주방글라데시대사는 1980.2.26. Osmany 방글라데시 외무부 한국 관계 국장 면담 시 방글라데시의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80.7~85.6월) 추진에 따른 소요외자(약 125억 달러) 조달을 위한 각국에 대한 원조 요청과 관련, 아래 내용의 Ziaur 방글라데시 대통령의 한국 대통령 앞 친서를 전달함.
 - 연 1억 달러 상당의 원조공여
 - 3천만 달러의 주재국 중앙은행에 대한 차관원조
 - 기타 식량원조

2. 한국 정부 입장

- 1980.4.19. 외무부 국제경제국은 방글라데시 대통령이 요청한 경제원조와 관련, 한국 정부 입장을 아주국에 전달함.
 - 한국 정부는 현재 대규모 외자(1980년도 약 70억 달러 상당)를 도입하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 까지 정부차원의 현금차관이나 원조를 제공한 사례가 없음.
 - 현재 특정개도국에 공여하고 있는 무상원조는 그 규모가 소액에 불과하여 방글라데시 측이 요청하고 있는 원조 규모에 크게 미달되며, 무상원조 자체가 현금지원이 아닌 물자자원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므로 상기 방글라데시 측 요구에 부응하기 어려운 실정임.

3. 최규하 대통령의 답신 전달

- 외무부는 1980.5.12. 현재 한국이 처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동 요청의 수락은 곤란하며, 한국의 국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계속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내용의 대통령 회답 친서를 주방글라데시대사관에 송부함.

차드 내란에 의한 피난민구호계획 지원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서부아프리카

MF번호 2010-61 / 19 / 1-35

1980년 중 차드 내란에 의한 피난민구호계획 지원 관련 내용임.

1. 라이베리아 대통령의 긴급지원 요청

- 주라이베리아대사는 1980.4.11. 현 OAU(아프리카단결기구) 의장인 Tolbert 라이베리아 대통령이 차드 내란으로 인해 발생한 차드 피난민구호를 위해 긴급지원을 호소하는 내용의 최규하 대통령 앞 친서를 주라이베리아대사관으로 전달하여 왔음을 보고함.

2. 외무부 지시사항

- 외무부는 1980.4.11. 라이베리아 대통령의 최 대통령 앞 차드 피난민구호를 위한 호소 서한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조사, 지급 보고하도록 주라이베리아대사에게 지시함.
 - 유사한 호소 서한이 세계 여타국가에도 발송되었는지 여부
 - 각국 반응
 - 한국이 취해야 할 조치사항
- 외무부, 동일 유사한 요지의 지시사항을 주카메룬대사에게도 전달함.

3. 주카메룬대사는 1980.4.13. 아래와 같이 보고함.

- 카메룬 내 차드 피난민 수: 12만 명
- 동 피난민구호계획
 - 차드피난민구호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각국에 피난민구호협력 요청
- 각국의 지원 상황
 - 4.1. 현재 미국이 280만 달러 상당의 식량 및 현금 원조
- 한국 정부 조치사항
 - 시간이 촉박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현금 원조 건의

4. 한국 정부 조치

- 차드 피난민구호를 위해 1980.7.12. 의약품을 전달함.

한국의 대카메룬 원조(무상원조)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경제협력

MF번호 2010-61 / 20 / 1-47

1980년 중 한국의 카메룬에 대한 무상원조 관련 내용임.

1. 주카메룬대사, 대카메룬 무상원조 건의

- 주카메룬대사는 1980.4.11. 한국 정부가 카메룬에 지원 검토 중인 13만 달러 중 반액을 동 국가 내 차드 피난민구호를 위한 긴급원조로, 나머지 반액을 동 국가에 대한 무상원조 공여로 배분, 지원할 것을 건의함.
- 또한 차드 난민에 대한 구호품으로는 의약품 및 수송이 간편한 일반 의료품을 건의하였으며, 카메룬에 대한 1980년도 무상원조는 국산 구급차 또는 포니승용차를 지원하여 줄 것을 요청함.

716

2. 한국 정부, 대카메룬 무상원조 결정

- 원조 필요성
 - 비동맹 등 국제회의에서 지속적인 지지 확보(1979년 비동맹회의 시 한국문제 유보 입장)
 - 차드 피난민구호 필요
 - 한국기업 진출 기반 확대
- 한국 정부 지원내역
 - 포니승용차 12대(10% 부속품 포함)와 차드 피난민구호용 의약품 일정량을 1980년도 무상원조 계획의 일환으로 공여하기로 결정

3. 공여 물자에 대한 추가경비 지원

- 주카메룬대사는 1980.11.12. 한국의 무상원조 품목 중 승용차 12대에 대한 통관, 하역비 및 육로운송 소요경비 4,097.20달러를 조속 지원하여 줄 것을 요청함.
- 외무부, 11.21. 송금조치

한국의 대중양아프리카 원조(무상원조)

생산연도 1979-1980

생 산 과 경제협력2

MF번호 2010-61 / 21 / 1-72

1979~80년 중 한국의 중앙아프리카에 대한 무상원조 관련 내용임.

1. 중앙아프리카 정부, 한국 정부 원조 요청

- 중앙아프리카의 보건사회부 장관은 1979.10.30. 주중앙아프리카대사를 초치하여 그동안 한국의 의료지원이 주재국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한 데 대하여 사의를 표하는 동시에 신청부 수립 이후 주재국이 겪고 있는 국민의료상의 제반 실정을 설명하면서 앰불런스, 의료복 및 의약품 등을 지원하여 줄 것을 요청함.
- 주중앙아프리카대사는 11.5. 동 의료지원 요청이 주재국 신청부로서는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과제이므로 한국의 1980년도 대주재국 경제협력의 일환으로 상기 중앙아프리카 측의 지원요청을 특별히 고려해 줄 것을 건의함.

2. 한국 정부, 대중양아프리카 무상원조 결정

- 외무부, 1980.8.12. 1980년도 무상원조계획의 일환으로 중앙아프리카 정부에 59,663달러 규모의 의약품 무상원조 제공을 결정함.
- 고려사항
 - 중앙아프리카는 비동맹 남·북한 동시수교국으로 1979.9월 보카사 정권 붕괴 이후 친서방적 대외정책을 표방하고 있으며, 한국과는 우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중앙아프리카는 경제, 사회분야 재건을 위한 한국의 원조제공과 1980.6월 중앙아프리카에서 개최된 개발기금 공여국회의에 한국의 참여를 요청하여 오는 등 한국과의 경험 관계 강화를 희망하고 있는바, 양국 간의 유대 강화와 비동맹 및 유엔에서의 한국 지지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3. 의약품 기증식 개최(1980.9.11., 중앙아프리카 국립중앙병원)

- 주중앙아프리카대사, 중앙아프리카 보건사회부 장관에게 의약품 전달

한국의 대에콰도르 원조(무상원조)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경제협력2

MF번호 2010-61 / 22 / 1-66

1980년 중 한국의 에콰도르에 대한 무상원조 관련 내용임.

1. 추진 경위

- 1980.1.23.~26. 북한·에콰도르 간 수교 저지 및 한·에콰도르 간 협력 강화를 위한 대통령특사 (특사: 윤석현 주유엔대사) 파견 시 윤 특사는 Pareja 에콰도르 외상에게 한국이 에콰도르의 농업발전 사업 지원을 위해 경운기 100대 가량을 기증할 용의가 있음을 밝힘.
- 1980.4.18. 주에콰도르대사는 상기 특사파견 및 공관의 수교저지 활동의 결과로 에콰도르 정부가 북한과 수교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고 보고함.
- 에콰도르 대통령 비서실장은 1980.4.30.자 서한으로 한국의 경운기 기증 제의 수락을 알려옴.

2. 한국 정부, 대에콰도르 무상원조 결정

- 1980년도 에콰도르에 대한 무상원조 규모는 제7차 무상원조 실무위원회 및 제18차 해외경제기술 협력위원회에서 15만 달러로 확정됨.
- 상기 예산 사정상 1980년 중 경운기 50대만 공여하고, 잔여 50대는 1981년 상반기에 시행하기로 결정함.

3. 경운기 기증식 개최(1980.12.4.)

- 주에콰도르대사와 에콰도르 대통령 비서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운기 기증식 개최

한국의 대적도기네 원조(무상원조)

생산연도 1979-1981

생 산 과 경제협력2

MF번호 2010-62 / 1 / 1-157

1979~81년 중 한국의 적도기네에 대한 무상원조 관련 내용임.

1. 추진 경위

- 채의석 주카메룬대사가 적도기네 출장(1979.9.4.~12.) 시 면담한 적도기네 제2부통령이 긴급물 자지원을 요청, 채 대사는 의약품, 각종 의류, 분유, 밀가루 등 가능한 긴급원조를 외무부에 건의함.
- 외무부 재가문서 요지(1980.8.5.)
 - 적도기네는 1979.9월 외교관계를 수립한 후 한국과 경제협력 등 관계 증진을 희망하고 있는바, Maye 외상 방한(1980.8.18.) 계기 일정 규모의 무상원조 방침을 통보하는 것이 양국 간의 유대 강화 및 비동맹에서의 한국 지지 기반 강화를 위해 필요함.
 - 지원 금액: 10만 달러 규모의 무상원조 제공
 - 지원 품목: Maye 외상이 희망하는 품목으로 공여(승용차, 픽업트럭, 경운기, 오토바이, 버스, 양수기, 선박엔진 등에서 선정)

2. 적도기네 정부, 한국 정부 원조 요청

- 상기 한국 측 지원 약속을 적도기네 정부에 전달한 바 있으나, 적도기네 정부는 1980.10.22. 주카메룬대사 앞 공한을 통하여 10만 달러 상당의 커피기계 25대(African Huller, Model No.1) 및 동 부품원조를 요청함.
- 주카메룬대사는 상기 원조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한국이 지원할 수 있는 물자를 적도기네 정부에 제시하여 선택하도록 할 것을 건의함.

3. 한국 정부, 대적도기네 무상원조 결정

- 1980.12.2. 적도기네에 대한 무상원조 관련, 적도기네 측이 요청한 커피기계는 한국이 생산하지 않아 지원할 수 없다고 적도기네 측에 통보하고 적도기네 측과 협의를 거쳐 아래와 같이 공여하기로 결정함.
 - 지원 금액: 95,640달러
 - 지원 품목: 10인승 마이크로버스 12대

한국의 대에티오피아 원조(무상원조)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동부아프리카

MF번호 2010-62 / 2 / 1-29

1980년 중 한국의 에티오피아에 대한 무상원조 관련 내용임.

1. 추진 경위

- 1980.9월 에티오피아 정부, 한국 정부에 의약품 원조 요청
 - 국제적십자사가 대한적십자사로 동일한 내용의 원조제공 요청(대에티오피아 지원) 전달
 - 대한적십자사는 에티오피아 원조용으로 의약품 69개 품목(한화 4,811,700원, 스위스 화폐 12,830프랑) 송부 추진
 - 대한적십자사 측은 동 원조 예정 내용을 국제적십자사에 통보하였으나, 최종 운송 항공편 및 송장 서류는 주에티오피아대사관을 통해 에티오피아 정부에 전달하기로 함.

2. 항공 운송료 문제

- 대한적십자사는 동 의약품이 에티오피아에 대한 원조물품이므로 국제항공 운송 관례에 따라 제다까지는 대한항공으로부터 무료운송을 승인받았으나, 제다에서 아디스아바바까지는 에티오피아 항공이 운송하여 줄 것을 희망함.
- 에티오피아적십자사 측이 에티오피아항공사와 협의한 결과, 동 항공사는 1978년도까지는 여사한 원조물자에 대해 무료운송을 실시한 적도 있었으나, 동 항공사의 적자운영으로 현재는 원조물품 무료운송을 일체 거절하고 있다고 함.
- 상기와 같은 사정을 감안, 대한적십자사가 아디스아바바까지의 물품 운송요금을 부담하기로 함.

3. 기증식 개최(1981.1.31.)

- 주에티오피아대사는 에티오피아적십자사에서 동 물품 기증식을 개최함.
- 에티오피아 국제적십자사는 동 의약품 기증에 대한 감사 서한을 2.11. 주에티오피아대사관에 송부해 옴.

한국의 대에티오피아 한발구호 원조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경제협력2

MF번호 2010-62 / 3 / 1-242

1980년 중 한국의 에티오피아에 대한 한발구호 원조 관련 내용임.

1. 에티오피아 한발 피해 현황

- 최근 극심한 한발 계속
- 특히 동국 남부 3개주에서 이재민 240만 명 발생

2. 에티오피아 정부, 한국 정부에 물자원조 요청(1980.4월)

- 긴급원조 품목
 - 약 30만 톤의 양곡과 기타 식품, 수송차량, 의류 및 의약품 등

3. 한국 정부, 대에티오피아 지원 결정

- 외무부는 1980.6월 한발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을 통하여 비동맹 등 국제회의에서 한국 지지를 유도하고 북한 활동을 견제하기 위해 동국이 요청해온 물자를 1980년도 무상지원 물자로 지원하기로 결정함.
 - 공여 품목: 양수기 35대, 픽업트럭 5대
 - 소요경비: 54,902.65달러

4. 기증식 개최(1980.10.25.)

- 주에티오피아대사는 아사브항에 출장하여 에티오피아 구호부흥처 제1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양수기 및 픽업트럭에 대한 기증식을 개최함.
 - 아사브 행정 및 항만당국자, 기자 및 TV 촬영반 등 취재팀 참석

한국의 대라이베리아 원조(무상원조)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경제협력2

MF번호 2010-62 / 4 / 1-35

1980년 중 한국의 라이베리아에 대한 무상원조 관련 내용임.

1. 추진 경위

- 1978.10월 테니스 라이베리아 외상 방한 시 한국 정부는 라이베리아에 국산차량 53대 및 경운기 30대를 지원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 상기 품목 중 차량은 1979년도에 이미 공여하였으나, 경운기는 예산 사정상 공여하지 못함.

722

2. 한국 정부, 대라이베리아 무상원조 결정

- 상기 무상원조 약속분 중 미이행분인 경운기 30대를 1980년 중 공여하기로 함.
 - 지원 금액: 81,630달러
- 동 공여 품목의 공여 시기는 공여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가급적 라이베리아의 국내 주요행사 시기에 맞추어 결정하기로 함.

3. 경운기 기증(1980.4.24.)

- 주라이베리아대사는 1980.4.24. 경운기 30대를 라이베리아 정부에 인계함.
- 라이베리아 정부는 주라이베리아대사관에 경운기의 효율적인 이용 및 기술지원을 위해 한국 기술자(1명) 파견을 요청해 옴.
 - 주라이베리아대사는 4.25. 라이베리아 기술자의 미숙한 기술수준으로 보아 동 기술지원이 없을 시 3개월 이전에 경운기의 과반수 이상이 고장으로 운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원조의 지속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기술지원이 요청된다고 보고함.

한국의 대모리셔스 태풍피해 구호금 지원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동부아프리카

MF번호 2010-62 / 5 / 1-20

1980년 중 한국의 모리셔스에 대한 태풍피해 구호금 지원 관련 내용임.

1. 모리셔스의 태풍피해 요청

- Ramgoolam 모리셔스 수상은 태풍피해를 위한 경제협력 요청차 1980.2.1.~17. 영국, 프랑스, 서독을 방문할 예정임.
- 동국의 태풍피해 복구를 위해 국제기구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인도 및 중국(구 중공)에서도 구호금을 전달함.

2. 한국 정부, 대모리셔스 지원 결정

- 주케냐대사, 1980.2.1. Ramgoolam 케냐 수상 예방 시 구호금 1만 달러 및 경운기 35대 기증 문서를 전달함.
- 동 수상, 한국의 구호금 및 경운기의 적시 지원에 사의를 표함.

한국의 대말라위 원조(무상원조)

생산연도 1979-1980

생 산 과 남부아프리카 / 경제협력2

MF번호 2010-62 / 6 / 1-54

1979~80년 중 한국의 말라위에 대한 무상원조 관련 내용임.

1. 말라위 정부, 무상원조 요청

- 주우간다대사는 1980.3월 말라위 출장 시 말라위 정부는 한국의 기자재 원조를 갈망하고 있으며, 우선순위는 Power Tiller, 이비인후과용 의료 기자재와 픽업트럭 지원이라고 보고함.
- 말라위 정부는 협력의사(2명)에 대해 극히 만족해하고 있으며, 말라위 의료요원의 파한 기술훈련을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함(보건상).
- 주우간다대사는 Power Tiller 30대와 이비인후과용 기자재 공여를 강력히 건의함.

724

2. 한국 정부, 대말라위 지원 결정(1980.6월)

- 말라위는 비동맹 한국 단독수교국으로 한국과는 전통적으로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1979년 비동맹회의에서 한국문제를 유보하는 등 한국 측 입장을 지지하여 왔음.
- 북한은 말라위에 대해 인접 국가를 통한 수교 교섭을 전개하여 온바, 동 수교 교섭을 저지하고 한국기업의 진출확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동국이 요청하여온 물자를 1980년도 무상원조 공여계획의 일환으로 아래와 같이 지원할 것을 결정함.
- 원조 품목: 경운기 21대(10% 부속품 포함)
- 소요경비: 58,980.60달러

3. 기증식 개최(1980.12월)

- 한국 특사의 말라위 방문 시 경운기 기증식을 개최함.
- 주우간다대사관의 요청에 따라 외무부는 동 경운기의 운송 관련 추가경비(3,250달러)를 주우간다대사관에 송금조치함.

한국의 대파키스탄 원조(무상원조)

생산연도 1979-1980

생 산 과 경제협력2

MF번호 2010-62 / 7 / 1-73

1979~80년 중 한국의 파키스탄에 대한 무상원조 관련 내용임.

1. 아프가니스탄 피난민 현황 및 파키스탄 정부의 구호대책

- 아프가니스탄 피난민 현황(1980.1.24., 주아프가니스탄대사관 보고)
 - 최근 공식집계에 따르면 파키스탄 국경에 30여 개소에 산재한 아프가니스탄 피난민이 50만 명에 달하며 1980.4월까지 10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됨.
- 파키스탄 정부의 구호대책
 - 매일 약 16만 달러의 식량, 침구, 의복, 의약품 지급, 연간 약 600만 달러 예산소요

2. 주이슬라마바드총영사 건의

- 아프간 피난민구호를 위한 무상원조로 50만 달러를 파키스탄 정부에 신속히 제공함.
 - 50만 달러 원조 제공을 약속하고, 우선 20만 달러 상당을 현물로 제공함(품목은 파키스탄 정부와 협의하여 결정).
 - 최초 20만 달러 제공 시 외무부 고위인사가 파키스탄을 방문하여 현지 공관과 함께 외교적 성과를 고양하도록 함.
- 금번 아프가니스탄사태를 한국의 대파키스탄 및 장래의 대아프가니스탄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기회로 최대한 활용하도록 함.

3. 한국 정부, 대아프간 지원 결정

- 아프간 난민구호를 위해 20만 달러 상당의 현물원조 제공을 결정함.
 - 화물트럭 15대(15만 달러)
 - 의약품, 담요, 텐트 중에서 선택 예정(5만 달러)

4. 기증식 개최(1980.8.27., 카라치)

- 화물트럭 15대 기증식 개최
- 파키스탄 모든 신문 및 방송들은 동 기증식을 광범위하게 보도

한국의 대세이셸 원조(무상원조)

생산연도 1978-1980

생 산 과 동부아프리카

MF번호 2010-62 / 8 / 1-142

1978~80년 중 한국의 세이셸에 대한 무상원조 관련 내용임.

1. 교육자금 지원

- 주케냐대사의 세이셸 신임장 제정 출장(1978.1.10.~14.) 시 면담한 Sinon 세이셸 외상은 세이셸 대통령 부인이 직접 운영에 참여하는 유치원 및 신체장애 아동교육원에 대한 시설 확충을 위해 현금 3만 달러 지원을 요청함.
- 외무부는 1978.2.24. 상기 시설 확충사업을 위해 3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함.

726

2. 여성직업훈련용 직물기기 등 지원

- 1979.6.5. 제2회 세이셸 혁명 기념행사에 정도순 주케냐대사가 참석함.
- 세이셸 대통령 부인은 정 대사 부인에게 자신이 총재로 있는 “세이셸 인민진보전선당 부인회” 사업에 필요한 재봉틀, 옷감, 가위, 실, 바늘 등 추가지원 요청
- 주케냐대사는 상기 사실을 외무부에 보고한바, 외무부 아프리카국은 동 사업을 중앙정보부의 공작사업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함.
- 중앙정보부는 새서울전문직업여성클럽이 대표단을 구성, 동국을 방문하여 직접 해당물품을 전달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동 여성 대표단은 세이셸을 방문하여 12.8. 대통령 관저에서 영부인에게 물품 전달식을 개최함.

3. 경운기 및 트럭 지원

- 주케냐대사는 세이셸 국경일 행사 참석차 1979.6.3.~9. 동국을 방문한바, 6.6. Sinon 외상은 경운기 및 소형화물차 공여를 요청함.
- 상기 관련, 외무부는 경운기 15대와 픽업트럭 10대를 기증하기로 결정
- 주케냐대사 및 세이셸 경제기획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1980.2.21. 기증식이 개최됨.

한국의 대시에라리온 원조(무상원조)

생산연도 1979-1980

생 산 과 경제협력2

MF번호 2010-62 / 9 / 1-134

1979~80년 중 한국의 대시에라리온 무상원조에 관한 내용임.

1. 1979년도 무상원조 요청

- 1978.9.19. June Holst-Roness 프리타운 시장은 주시에라리온대사를 집무실로 초치, 1977.11월 시장 취임 이래 시정상의 문제점을 설명하면서 무상원조를 요청해옴.
- 주시에라리온대사는 아래와 같이 무상원조를 제공할 것을 건의함.
 - 쓰레기 수거용 차량 지원
 - 초등학교 및 중학교용으로 한국 역사, 문화 및 생활을 영문으로 소개하는 책자 기증
 - 현재 프리타운에는 소방서 1개에 소방차 2대만을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며 향후 수도를 3등분 하여 2개의 소방서를 증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바, 2대 정도의 소방차 기증
 - 상기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서울시와 자매결연 추진

2. 1979년도 대시에라리온 무상원조 계획

- 무상원조액: 8만 달러
- 지원 내역: 승용차 20대 또는 경운기 30대 지원
- 기타
 - 무상원조에는 현금 원조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발전기 현지 구매 건은 무상원조 범위 내에서 지원 불가
 - 1978년도에는 시에라리온에 승용차 8대, 경운기 15대를 기증한 바 있음.

3. 1980년도 무상원조 요청

- 주시에라리온대사관은 1980.7월에 OAU(아프리카단결기구) 정상회담이 개최될 예정이므로 아래 내용을 특별히 고려해줄 것을 외무부에 건의함.
 - 시에라리온 외무성 요청사항: 국산 승용차, 모터사이클 및 소형버스
 - 주시에라리온대사관 측 건의사항: 승용차 50대, 모터사이클 50대 및 소형버스 5대
- 외무부는 예산 사정상 아래와 같은 지원 계획을 송부함.
 - 모터사이클 50대
 - 승용차(포니) 30대
 - 마이크로버스 1대

한국의 대수단 원조(무상원조)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경제협력2

MF번호 2010-62 / 10 / 1-25

1980년 중 한국의 대수단 무상원조에 관한 내용임.

1. 1980.6월 수단 정부는 농업개발에 필요한 경운기 원조 제공을 요청해옴.

2. 상기 요청에 대한 한국 정부의 검토 결과

- 수단은 비동맹 남북동시수교국으로서 1979년 하바나 비동맹회의 시 한국문제에 유보 입장을 취하는 등 한국 입장을 지지해옴.
- 비동맹 등 국제회의에서 한국에 대한 계속적인 지지 확보 및 자원이 풍부한 수단에 대한 한국기업의 진출 확대를 위해 1980년도 무상원조 계획의 일환으로 아래와 같이 경운기를 원조하기로 결정
 - 공여품목: 양수기 부착 경운기 30대
 - 금액: 96,561달러
 - 구입 방법: 주수단대사관과 관계회사와의 수의계약 형식
 - 공급업자 선정: 상공부에서 추천한 공급회사를 재외공관에 통보, 구매계약 체결
 - 결제 방법: 주수단대사관에 대금을 송금하여 계약 체결 후 동 대사관 계좌에 전신 또는 수표 송금

3. 외무부는 상기 공여 물자가 1980.8.10. 선적, 9.10.경 Port Sudan에 도착 예정임을 주수단대사관에 통보함.

한국의 대수리남 원조(무상원조)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경제협력2

MF번호 2010-62 / 11 / 1-35

1980년 중 한국의 대수리남 무상원조에 관한 내용임.

1. 1980.10월 외무부는 수리남 측이 요청한 무상원조 품목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주수리남대사관에 통보함.

- 농기구 품목 중 Back-Hoe 및 Field Squirt는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아 공여가 불가하며 나머지 공여 가능 품목과 픽업트럭에 관한 견적서를 참고하여 수리남 측과 협의, 10만 달러 범위 내에서 수리남이 희망하는 품목 및 수량을 보고할 것
- 특히 Dump Trailer는 품목 가격보다 운임이 2배 이상이므로 품목 선정에 참고할 것

2. 1980.12월 외무부는 수리남에 대한 무상원조 제공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고, 이를 주수리남 대사관에 통보함.

- 농기구 9종 28대, 3톤 트럭 1대, 픽업트럭 5대를 공여하기로 함.
- 수리남 정부 측에 문서로 통보하고 가능하면 공여물자에 대한 기증식을 개최하여 언론 및 관계요로에 적극 홍보할 것
- 상기 관련 원조금액 96,658달러를 송금 수속 중인바, 동 대금 수령 후 관계회사 계좌로 전신 또는 수표 송금조치 바람.

한국의 대우간다 원조(무상원조)

생산연도 1980-1981

생 산 과 동부아프리카

MF번호 2010-62 / 12 / 1-100

1980~81년 중 한국의 대우간다 무상원조에 관한 내용임.

1. 무상공여 품목 이양식

- 우간다에 대한 1979년도 무상공여 품목 중 군복 1천 벌과 신발 1만 켤레가 1980.3.13. 우간다에 도착, 주우간다대사관은 3.14. 이를 우간다 정부에 이양함.
- 이양식에는 Nabudere 재건문화상이 우간다 정부를 대표하여 물품을 인수함.
- 경찰총장, 문화성 차관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 TV와 라디오에 방송됨.

730

2. 공여품 중 라디오 1천 대는 1980.4.3.경 몸바사 도착, 4.15.경 캄팔라에 도착 예정임.

3. 외무부는 1980년도에도 우간다 및 말라위에 일정 규모의 물자원조를 공여할 계획임을 알리면서 공여 희망 품목 및 공여 시기 등에 관한 의견을 요청함.

- 우간다 공여 품목: 생필품 위주로 제공될 예정

4. 외무부는 우간다에 대한 1980년도 무상원조 품목을 아래와 같이 결정함.

- 금액: 102,864달러
- 내역: 카세트 라디오 2,400대
 - RC-6030 2천대
 - RC-6540 400대

한국의 대오토볼타 원조(무상원조)

생산연도 1979-1980

생 산 과 서부아프리카 / 경제협력2

MF번호 2010-62 / 13 / 1-38

1979~80년 중 한국의 대부르키나파소(구 오토볼타) 무상원조에 관한 내용임.

1. 1980.1월 주부르키나파소대사관은 무상원조 품목인 경운기 인도 관련 아래와 같이 보고함.

- 동 대사관 측은 그간 농촌개발성 사무차관과 수차에 걸친 접촉을 통해 동 건의 연내 해결을 촉구해왔으나 주재국 내에서의 창고료 및 관세(약 1만 달러) 면제 문제에 관한 주재국 정부의 행정절차 지연으로 연내 인도가 불가능하게 됨.
- 농촌개발성 사무차관은 1980.1월 초에는 관계기관의 행정절차가 완료될 것이라고 언급함.
- 창고료 지원 경비는 외무부로부터 수령 즉시 관계 운송회사에 지급함.

2. 무상원조 경운기 30대에 대한 인도·인수식(1980.2.15.)

- 부르키나파소 청년체육 장관 등 정부 요인 수십 명과 국영방송 및 신문기자 등 언론인 참석

WHO(세계보건기구)를 통한 대베트남 의료원조

생산연도 1979-1980

생 산 과 국제기구

MF번호 2010-62 / 14 / 1-62

1979~80년 중 WHO(세계보건기구)를 통한 대베트남 의료원조에 관한 내용임.

1. 1979년 DDT 살포기 원조

- 1979.8월 베트남 정부는 보건성 국제국장 명의로 WHO 서태평양지역처장 앞으로 아래 내용의 서한을 발송함.
 - 지난 3월 한국 외무부가 베트남 말라리아 사업의 일환으로 원조한 DDT 살포기 640대를 수령했는데, 이는 베트남의 보건사업에 대단히 유용하며 이 원조에 대해 한국에 심심한 사의를 표함.
 - 1980년 사업에도 동 살포기 확보가 매우 중요한바, 한국이 동 원조를 제공할 수 있도록 WHO 측에 요청함.
- WHO 측은 베트남의 상기 요청에 대한 한국 측 입장을 문의해옴.

2. 베트남의 요청에 대한 한국 입장

- DDT 살포기 추가 원조가 바람직함.
 - 제28차 서태평양지역회의 시 베트남 측에 이미 20~30만 달러 규모의 원조를 비공식으로 시사한 바 있음.
 - 1차로 제공한 DDT 살포기가 베트남 측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음.
 - 외교적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베트남과의 관계 개선 및 잔류 외교관 석방 등의 문제를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 규모
 - 베트남 측으로부터 살포기 수량에 관한 언급은 없으나 1차 원조 규모보다 많은 1,000대(약 4만 달러 상당)를 원조하고 그 다음 원조는 베트남의 반응에 따라 추후 결정함.
- 전달 방법
 - 1차 원조 시와 같이 WHO 서태평양 사무국을 통해 전달

한국의 대자이르 Kisangani 병원 지원

생산연도 1975-1980

생 산 과 중부아프리카

MF번호 2010-62 / 15 / 1-333

1975~80년 중 한국의 대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 키산가니 병원 지원에 관한 내용임.

1. 지원 연혁

- 1975.12월 의료 기재 지원(7만 5천 달러 상당)
- 1976.8월 키산가니 병원 인수 대신 지원 방침 결정
- 11월 키산가니 병원 보수공사 지원(5만 8천 달러 상당)
- 1978.7월 의약품 지원
- 1980.1.29. 의료 기재 전달식 거행

2. 키산가니 병원 지원 관련 여타 주요 일지

- 1975.4월 노신영 특사, 콩고민주공화국 방문 시 의료 지원 약속
 - 5월 수도 킨샤사에 100병상 규모 병원 설립 및 운영 방침 결정
- 1976.8월 윤석헌 특사 방문 시 50만 달러가 소요되는 병원 인수 대신 지원 방침으로 선회
- 1977.3월 김종필 특사, 10만 달러 지원 약속
- 1978.1월 주콩고민주공화국대사, 1978년도 사업으로 의료 기자재와 약품 15만 달러 지원 건의
- 5월 의료 기자재 5만 달러, 의약품 5만 달러 지원 계획 통보
 - 의료 기자재 리스트를 삼성물산과 대우실업에 제시했으나 공급 불가함을 통보
 - 주콩고민주공화국대사 의견대로 5만 달러 현금 지원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

화신실업(주)의 태국 Thai Zinc Ltd. 인수 및 제련공장 연불 수출 문제

생산연도 1977-1980

생 산 과 경제협력2

MF번호 2010-62 / 16 / 1-93

1977~80년 중 화신실업의 태국 Thai Zinc Ltd. 인수 및 제련공장 연불 수출 문제 관련 내용임.

1. 연혁

- 1977.8.28. 아연제련 플랜트 수출계약 체결
- 1978.4월 및 7월 한국수출입은행, 금융지원 불가 통보
- 1980.11.26. 태국 부수상, Thai Zinc Ltd.의 광업권 시한 만료(1980.12.4.자) 및 연장 불가 통보

734

2. 추진 경위

- 본 건은 아연제련사업에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New Jersey Zinc사의 자본 및 경영 참여와 IFC의 금융지원을 전제로 화신실업과 태국 Thai Zinc사 간에 아연제련 플랜트 연불수출 상담이 진행된 바 있음.
- 1978년 초 New Jersey Zinc사가 본 사업 참여를 포기함에 따라 IFC의 참여도 불투명해짐으로써 상기 계약은 현재 사문화됨.
- 이와는 별도로 화신실업은 G&W(New Jersey Zinc의 모회사이며 Thai Zinc의 실질적 소유자) 사로부터 Thai Zinc의 인수를 추진해 왔으며 인수에 따른 현지 자본참여와 아울러 아연제련 플랜트 연불수출을 재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음.

3. 한국수출입은행의 입장

- 본 건은 New Jersey Zinc사의 참여를 전제로 진행된 것인바, 동 사의 철수 이유가 분명하지 않고, 철수에 따른 타 기술제공선의 참여가 현재로서는 미정인 상태임.
- IFC의 참여 의사는 현재까지 부정적이며 따라서 현지 자금 조달계획이 미정임.
- 1977.5.28.자로 기체결한 연불수출 계약은 이미 무효화되었으며 재추진하고자 하는 연불거래의 조건은 현재 미확정인바, 현 상황에서는 자금 지원을 할 수 없음.

ADB(아시아개발은행) 차관 도입

생산연도 1979-1980

생 산 과 복미

MF번호 2010-62 / 17 / 1-28

1979~80년 중 ADB(아시아개발은행) 차관 도입에 관한 내용임.

1. 1980.6.26. ADB 이사회에서는 한국의 제2차 인천항 개발 차관사업 표결 시 미국 대표는 “정부의 훈령에 의해 기권한다”는 짤막한 발언만 있었을 뿐 안건은 만장일치로 통과됨.
2. 1980.9.8. 주한 미국대사관 경제담당 1등서기관은 외무부를 방문, 미국 정부는 한국의 인권 실태와 관련 IFC 및 ADB의 대한국 차관 및 투자승인안 의결 시 기권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을 통보해옴.
 - ADB 이사회(1980.6.26.)에서 미국의 기권에도 불구하고 차관사업은 만장일치로 의결됨.
 - 미국 측은 금번 이사회에서도 사유 설명 없이 기권할 것으로 전망됨.
3. 한국 중소기업의 대ADB 차관 신청 내용
 - 신청액: 4천만 달러
 - 추진 사업 내용
 - 중소기업은행의 중소기업 외화설비 자금 전대 목적
 - ADB 이사회 의결 일자
 - 1980.10.20.경

대일본 미곡차관 상환교섭

생산연도 1978-1980

생 산 과 경제협력1

MF번호 2010-62 / 18 / 1-148

1978~80년 중 대일본 미곡차관 상환교섭에 관한 내용임.

1. 대일본 미곡차관 내용

- 1969년도
 - 도입물량: 33만 3천 톤
 - 평가금액: 5,362만 달러
 - 조건: 10년 거치 20년 상환
- 1970년도
 - 도입물량: 30만 1천 톤
 - 평가금액: 4,459만 6천 달러
 - 조건: 10년 거치 20년 상환

2. 문제점

- 정부회계상 손실: 1,973억 원
 - 미가 상승에 따른 손실
 - 환차 손실
- 상환물량 확보 애로
 - 다수확종으로 품종 개량
 - 일본종과 기타종의 가격차로 인한 부담 가중

3. 대책

- 현물 상환을 현금 상환으로 변경 교섭
- 거치기간 10년 연장 가능성 타진

4. 합의사항

- 현금 상환
- 상환 방법
 - 태국 BOT에서 매주 발표하는 백미 가격
 - 현미 가격은 백미 가격의 88% 적용
- 상환 시기: 매년 5.31.까지로 하되 2개월 전에 양방이 금액 결정

대이라크 건설업체 진출

생산연도 1978-1980

생 산 과 경제협력2

MF번호 2010-62 / 19 / 1-40

1978~80년 중 대이라크 건설업체 진출에 관한 내용임.

1. 1980.7월 현대건설의 바그다드 의료건물 제2단계 공사 입찰 참여

- 발주처: 이라크 주택성 소속 건물청
- 공사 예정가: 3억 1,200만 달러
- 공사 개요
 - 외과 병동 공사 21층 650실
 - 소아과 병동 공사 6층 211실
 - 유아 병동 공사 10층 241실
 - 기타 시설: 주차장 건물, 서비스 건물, 강당 건물, 세탁소 건물, 기타 부대시설

2. 1980.7.16. 현대건설은 바스라 하수시설 제2단계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함.

- 발주처: 상하수도 공사 계약 공사
- 계약액: 8,160만 달러
- 공사기간: 36개월

3. 주택공사 입찰 초청 취소

- 1980.7.24. 주쿠웨이트대사는 KOCC 및 한양주택(시공사), KOCC 및 삼성종합건설(시공사)가 도급허가를 득한 주택공사에 대하여 발주처로부터 입찰 초청이 취소되어 입찰에 응하지 못하였음을 보고함.
- 주택성 발주공사에 경합 중인 현대건설은 현재 입찰 협의 절차 및 진행 등에 지장이 없으며 한국업체와 타발주처와의 관계도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므로 KOCC가 관여된 주택공사에 한하여 입찰이 취소된 것으로 분석됨.

대우개발의 수단 영빈관 건설

생산연도 1976-1980

생산과 경제협력2

MF번호 2010-62 / 20 / 1-48

1976~80년 대우개발이 수단 내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건설사업에 관한 내용임.

1. 대우실업이 대수단 경제협력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거나 장차 추진 계획 중인 사업 개요 (1977.4.25.)

- 영빈관 건설
 - 대우 측: 2천만 달러
 - 수단 측: 2천만 달러
- 화차연불수출
 - 대우 측: 6천 5백만 달러
 - 수단 측: 6천 5백만 달러
- Knitting 공장 합작
 - 대우 측: 2천만 달러
 - 수단 측: 1천 7백만 달러
- 의류공장 합작
 - 대우 측: 3백만 달러
 - 수단 측: 추후 발표
- 시멘트 공장
 - 대우 측: 1천 6백만 달러
 - 수단 측: 금액 미발표
- 12층 건물 건설
 - 대우 측: 4백만 달러
 - 수단 측: 미발표
- 4개 비행장 건설
 - 대우 측: 입찰 중
 - 수단 측: 미발표

2. 김우중 대우실업 회장은 영빈관 건설계약을 매듭짓기 위해 수단을 방문하여 수단 측과 2개의 계약을 체결함.

- 1977.5.14. 영빈관 건설계약
- 5.23. 차관협정



3. 영빈관 개관식(1980.5.27.)

- 수단 혁명 11주년을 기념하여 뉴메리 대통령, 멩기스트 에티오피아 의장 등 내외 귀빈 다수 참석 하에 영빈관의 개관식이 거행됨.
- 동 영빈관은 한국 차관 2천만 달러와 대우개발 기술진에 의해 건립된 12층 건물로 특실 1실, 스위트 30실, 객실 116실 및 수영장 등 시설을 갖추고 있음.

1980년도 대외기술공여사업

생산연도 1979-1980

생 산 과 경제조사

MF번호 2010-62 / 21 / 1-144



1980년도 대외기술공여 계획에 관한 자료임.

740

- 도미니카공화국
 - 연수생 초청 농업 2명, 6개월
- 아이티
 - 연수생 초청 농업 2명, 6개월
- 과테말라
 - 연수생 초청 방직 2명, 6개월
- 코스타리카
 - 연수생 초청 수산 2명, 6개월
- 니카라과
 - 연수생 초청 농업 2명, 6개월
- 도미니카연방
 - 연수생 초청 농업 2명, 6개월
- 세인트루시아
 - 연수생 초청 농업 2명, 6개월
- 수리남
 - 연수생 초청 수산 2명, 6개월
- 베네수엘라
 - 전문가 파견 수산 1명, 6개월
- 에콰도르
 - 전문가 파견 농업 2명, 6개월
- 볼리비아
 - 전문가 파견 지질학 1명, 6개월

한·벨기에 전자교환시설 운용 기술협력사업

생산연도 1976-1980

생 산 과 경제조사

MF번호 2010-62 / 22 / 1-84

1976~80년 중 한·벨기에 간의 전자교환시설 운용 기술협력사업에 관한 내용임.

1. 사업 추진 경위

- 1978.9월 박원근 체신부장관의 벨기에 체신부 방문 시 양국 간 전자교환기 운용 부문 기술협력 사업에 관한 의견교환 등 벨기에 측으로부터 기술 원조 제안이 있었음.
- 1978.10.5. 주벨기에대사와 벨기에 체신부 차관 간 회의에서 제시된 벨기에 측 제안 내용을 토대로 11월 체신부 안을 작성, 11.25. 벨기에 체신부 차관과 1차 협의를 했으며 이를 토대로 본 협력사업을 진행하게 됨.

2. 사업 내용

- 벨기에 원조자금 규모: 약 1백만 달러
- 벨기에 전문가의 한국 파견
- 벨기에 전문가의 임무
 - 전자교환기 운용시설 관련 운용기술 지원
 - 기술요원 훈련 실시
- 체신부 운용요원의 벨기에 파견
 - 파견 인원: 4개 분야 10명
 - 파견 기간: 1979.7~10월
 - 훈련 분야: 회계 및 문서 처리, 인력관리, 회선망 계획, 시설관리 및 유지

3. 체신부 부담사항

- 강의실 및 기타 부대시설을 구비한 건물 및 연료
- 교육자료 협조
- 보조요원 제공

한·이집트 과학기술협력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경제조사

MF번호 2010-62 / 23 / 1-34



1980년 중 한·이집트 간의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내용임.

1. 한국 과학기술대표단, 이집트 방문(1980.4.26.~5.1.)

- 대표단(단장)
 - 최형섭 한국과학재단 이사장
- 과학기술협력협정
 - 이집트 측에서 제안한 협력 분야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
 - 구체적인 협력 방법은 이집트 방문 시 제시하여 협의 예정
 - 집행계획서는 1979.5.30. 교환한 양해각서에 의해 작성
- 과학기술협력협정에 관한 한국 측 기본 입장
 - 이집트와의 과학기술협력협정은 한국과학재단과 ASRT(이집트과학재단) 간에 5.30. 교환된 양해각서에 입각하여 추진
 - 협력내용은 정부, 국내 관련 연구기관 및 한국과학재단 간의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수행
 - 양해각서에 따른 집행계획서는 정부의 사전 승인을 얻어 추진

2. 협력사업에 관한 한국 측 입장

- 협력형태
 - 천문지구과학 및 도량형 분야는 과학자 상호 교환사업으로 진행
 - 해양수산 및 농학 분야는 공동연구사업 중심으로 진행
 - 금속 및 비료 분야는 전문가 파견 및 훈련생 초청사업 중심으로 진행

전매청·우간다 국영 연초회사 간의 상호기술협력에 관한 각서교환

생산연도 1979-1980

생 산 과 경제조사

MF번호 2010-62 / 24 / 1-19

1979~80년 중 전매청과 우간다 국영연초회사 간의 상호 기술협력에 관한 각서교환 관련 내용임.

1. 대우간다 기술협력 현황

- 1974.12월 장예준 상공부장관 외 5인의 통상사절단 우간다 파견
- 1977.10월 우간다 국립연초회사 사장 방한
- 10.27. 전매청과 우간다 국립연초회사 간 연초 분야 기술협력 각서 체결
 - 1978.1.1.부터 1년간 유효
- 1978.10~12월 우간다 연수생 1명 초청

2. 각서 기간 연장 문제

- 1979.1월 우간다 정부는 1978.12.31.자로 만료되는 상기 각서에 대해 기간 연장 요청을 해옴.
 - 2월 한국 정부는 이에 동의함.

3. 외무부는 1980.1.30. 연초 기술자 우간다 파견 관련 우간다의 재정 및 정치 불안정으로 인해 이를 당분간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전매청장에게 전달함.

4. A. A. Ongom 우간다 국영연초공사 사장이 1980.2.15.자 전매청장 앞 서한으로 한·우간다 연초기술협력 각서 기간 연장을 요청하고, 전매청장은 동 요청을 수락하면서 각서교환 방법에 대한 타진 서한을 3.20.자로 발송한바, 새로운 각서의 교환 없이 수락 서한 발송으로 기간 연장 문제가 합의됨.

한·미국 과학기술협력

생산연도 1979

생 산 과 경제조사

MF번호 2010-62 / 25 / 1-96

1979년 중 한·미국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내용임.

1. 과학기술처는 1979.10.8. 한·미국 경제협의회(1979.11.10., 서울) 개최를 앞두고 관련 의제 및 토의자료를 아래와 같이 외무부로 송부하면서 주미국대사관 과학관에게도 대미국 과학기술협력 강화방안 통보를 요청함.

● 목적

- 한국의 최대 우방선진국인 미국과 과학기술면에 있어서 새로운 차원의 협력 사업을 전개 및 확대하여 1980년대 한국의 경제기술 발전을 촉진함.
- 성숙한 동반자로서의 상호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에 기여함으로써 전통적인 한·미국 유대 및 친선을 강화함.

● 배경

- 종래의 한·미국 간 기술협력관계는 주로 일방적인 공여와 수원의 형태로 이루어졌으나, 그 동안에 이룩한 한국 경제의 상당한 발전에 따라 새로운 차원의 협력 체제를 모색해야 할 단계에 이름.
- 그동안 한국의 경제기술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해온 미국 AID(국제개발처)의 기술 원조도 사실상 중단상태에 있는바, 앞으로 새로운 형태의 실질적인 과학기술협력사업을 전개함으로써 1980년대 한국의 발전목표를 성취하는데 미국이 계속 기여해줄 것을 요망함.
- 1979.7.1. 한·미국 정상회담을 통해 천명되고 약속한 바와 같이 양국이 국제사회에서 성숙한 동반자로서 함께 협력하여 제3국에 대한 지원사업을 함으로써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는 물론 실질적인 상호 이익도 추구할 필요가 있음.

2. 제안 사업(1979.10월, 과학기술처)

- 연례 공동회의 설치 및 운영
- 한·미국 협력에 의한 제3국 원조를 위한 기술훈련기관 설립 타당성 조사
- 한·미국 문화교류위원회 신설에 따른 과학기술협력사업 추진 방안
- AID 차관 자금에 의한 과학기술 인력의 해외 기술연수사업 추진
- 신설 미국 과학기술협력원과의 협력사업 추진

대중동 및 아프리카 의료요원 파견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아프리카총괄 / 마그레브

MF번호 2010-62 / 26 / 1-10

1980년 중 대중동 및 아프리카 의료요원 파견에 관한 내용임.

1. 에티오피아의 국내정세 불안과 경제사정 악화에 따라 1980.6월 외무부는 에티오피아에 근무하는 정부 파견의사 2명에 대한 보수 기준을 '가'지역으로부터 '나'지역으로 한 단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함.

- 현재 의료단원 봉급표
 - '가'지역 1,500달러
 - '나'지역 1,650달러
 - '다'지역 1,800달러

2. 1980.8월 주트리폴리총영사는 현재 리비아에 파견 중인 의료요원(간호사)에 대한 실정 및 향후 문제점 등 아래 내용을 외무부에 보고함.

- 한국 간호사에 대한 리비아 정부의 소극적 태도
- 리비아·북한 간 의료협력 강화에 따른 한국 측과의 의료협력 기대 효과 감소 등
- 현재 리비아에 파견된 의료요원은 고용 기간이 만료되는 대로 철수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한·캐나다 자원개발협력

생산연도 1979-1980

생 산 과 경제조사 / 경제협력1

MF번호 2010-62 / 27 / 1-83

1979~80년 중 한·캐나다 간의 자원개발협력에 관한 내용임.

1. Bennett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수상 방한(1979.10.9.~12.)

- 목적
 - 한국과 브리티시컬럼비아주 간 경제협력 및 자원협력 방안 협의
- 동자부장관과 자원분야 협의 결과
 - 한전의 삼천포 1, 2호기 발전소용 유연탄 공급계약 체결
 - 삼성물산과 Denison사 간 발전용 석탄 합작개발 등 자원개발 합작 추진 문제 검토
 - 한전과 캐나다 ENB사 간 우라늄광 운자 매광수입 추진 건에 호의적 배려 요청
 - 동광석 구매 건 가격 결정에 호의적 배려 요청

2.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광업사절단 방한(1980.4.7.~11.)

- 목적
 - 광산자원 수급에 관한 정보교환
 - 브리티시컬럼비아주 광업에 대한 한국의 개발투자 가능성 타진
- 사절단 구성
 - Macgregor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에너지차관보 외 3명

한파라산업(주)의 팔라우 인광석 개발 합작투자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경제조사

MF번호 2010-62 / 28 / 1-49

1980년 중 한파라산업의 팔라우 인광석 개발 합작투자에 관한 내용임.

1. 경위

- 1979.9.26. 장동욱 한파라산업 대표와 Roman Tmetuchl 팔라우 임시정부 의장 간에 광업, 농업, 채석, 수산, 석유기지, 건설, 삼림개발, 관광, 문화, 금융, 통상 등 12개 분야에 걸친 방대한 종합개발계획에 관한 계약이 체결됨.
- 9.26. 동 계획의 일환으로 인광석 광업권의 합작개발 사업에 관한 계약 체결
- 1980.3.12. 주하갯나총영사가 영사 확인함.

2. 인광석 개발 계약 골자

- Roman Tmetuchl 의장은 팔라우 임시정부의 영역에 있는 인광석 합작개발에 동의
- 한파라산업은 인광석 개발에 소요되는 시설자금 및 기자재와 인력을 투입
- 계약기간은 10년으로 함.
- 한파라산업은 채굴 선광된 정광량(품위 35%)을 기준으로 하여 톤당 5달러를 책정하여 Roman Tmetuchl 의장에게 지불
- 채광된 인광석은 한파라산업이 판매

3. 사업 계획

- 향후 10년간 수지 예상
 - 매광수입: 426억 원
 - 생산원가: 312억 원
 - 이익: 114억 원
- 투자 계획
 - 시설자금: 40억 원
 - 운영자금: 매년 10억 원

한·호주 원자재 가공 공동연구단회의, 제1-2차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통상1

MF번호 2010-62 / 29 / 1-41

1980년 중 개최된 제1~2차 한·호주 원자재 가공 공동연구단회의의 관련 내용임.

1. 제1차 회의(1980.4.28.~5.2., 서울)

- 대표단
 - 한국 측: 김철수 상공부 통상진흥관 외 6명
 - 호주 측: Ryan 국토개발 및 에너지부 우라늄 및 총괄국장 외 5명
- 주요 합의사항
 - 원자재 가공 분야에 대한 양국 간 협력 방안 지속적 연구
 - 우드 펄프와 알루미늄, 규소철, 망간 등 에너지 다소비 산업 분야에 있어서 장기공급계약 또는 합작투자 등 상호 협력 가능성 인정
 - 상호 교환한 정보를 관련 산업에 반영 및 2차 회의 시 구체적 프로젝트 검토
 - 외교 채널을 통한 지속적 정보 교환 및 필요시 타당성조사단 호주 파견

2. 제2차 회의(1980.11.24.~28., 캔버라)

- 대표단(수석대표)
 - 전계묵 상공부 철강금속 국장
- 주요 의제
 - 원자재 가공 분야에 대한 양국 정부의 정책과 입장
 - 원자재 가공 산업 현황과 전망
 - 호주산 원자재의 장기 공급 방안 협의
 - 합작투자 사업에 대한 구체적 협의
 -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문제
 - 지속적인 정보 교환 방안 협의

한·호주 자원협력위원회, 제1차. Canberra, 1980.2.27.-29.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경제조사

MF번호 2010-63 / 1 / 1-178

제1차 한·호주 자원협력위원회가 1980.2.27.~29. 캔버라에서 개최됨.

1.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유각종 동력자원부차관
- 호주 측: J. Scully 통상자원성 차관

2. 양국 주요 관심사항

- 한국
 - 석탄: 공급 확보
 - 우라늄: 장기 공급 확보, Ranger 광산 지분 참여(2.5%)
 - 천연가스: 개발 참여, 장기 공급 확보
- 호주
 - 석탄, 우라늄, 철광석 등의 장기 판매선 확보 희망
 - 장기수요 보장이 개발의 선결요건 등

3. 주요 결과

- 양국 간 상설자원위원회 설치 합의
 - 본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차관급을 단장으로 매년 양국 수도에서 개최하되 필요시에는 특별회의 개최
 - 본 위원회 제2차 회의는 1980.9월 서울에서 개최
- 자원위원회, Terms of Reference에 서명
 - 양국 간 자원개발 협력, 합작투자 촉진 및 자료 교환
- 자원 합작투자 및 장기공급계약 촉진 협의
 - 한국의 발전용, 시멘트 공업용, 제철용 유연탄 장기 안정적 공급을 위한 협력 확보
 - 양국 간 자원수급에 대한 정보교환으로 한국의 자원 수요계획과 호주의 자원 개발계획이 일치 하도록 노력
 - 호주 자원공급 능력 증대를 위해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 협력 촉진
 - 기타 철광석, 우라늄, LNG 등의 자원에 대한 합작투자 및 교역증대 협의
- 주요 인사 예방
 - Anthony 부수상, Carrick 국토개발성 장관

한·콜롬비아 자원협력위원회, 제1차. Bogota, 1980.11.12.-14.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경제조사

MF번호 2010-63 / 2 / 1-190

제1차 한·콜롬비아 자원협력위원회가 1980.11.12.~14. 보고타에서 개최됨.

1.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최동규 동력자원부차관
- 콜롬비아 측: Luis E. Giraldo Neira 광산동력성차관

2. 회의 개최 경위

- 1979.6월 한국 무연탄 개발조사단의 콜롬비아 방문 시 콜롬비아 광산동력성 사무차관과 자원협력위원회 설치에 합의하고, 9월 한·콜롬비아 자원협력공동위원회 설치에 합의

3. 주요 의제

- 한·콜롬비아 자원협력공동위원회 발족
- 우라늄, 석탄 등 자원탐사 및 개발협력
- 자원기술협력 및 자원 정보 교환

4. 회의 결과

- 자원협력위원회 운영규약 및 자원협력에 관한 의정서 서명
- 운영규약: 매년 1회 양국이 교대로 회의 개최
- 의정서
 - 자원교역 환경 조성을 위한 과학기술협력협정 조기 체결
 - 콜롬비아 자원개발에 한국 참여 의사 표명
 - 자원개발을 위한 협력 의사 표명
 - 콜롬비아 측은 국내 수요를 초과하는 원유 생산 시 한국에 대한 수출을 우선적으로 고려
 - 콜롬비아의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한국업체의 호혜적 참여

한·인도네시아 자원협력 실무위원회, 제2차. 서울, 1980.3.26.-28.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동남아 / 경제조사

MF번호 2010-63 / 3 / 1-247

1. Subroto 인도네시아 광업에너지성 장관 방한(1980.3.25.~29.)

- 방문단 구성
 - Subroto 장관 내외, Haryono 국영석유공사 Pertamina사 총재 내외, Katili 광업에너지성 차관보 등
- 주요 일정
 - 대통령, 국무총리, 부총리, 외무부장관 대리 예방 등
- 주요 성과
 - 한국 측의 원유 공급 증량 요청에 대해 인도네시아 측은 석유를 증산하는 경우 한국에 대해 안정적인 원유 공급 약속
 - 1980.8월부터 저유황유 공급을 위한 실무 절차 추진 합의
 - 인도네시아 측의 LNG, 펄프 분야 등 합작투자 진출 요청에 대해 한국 측은 검토를 약속
 - 3.28. 한·인도네시아 간의 광물자원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서명

2. 제2차 자원협력 실무위원회 개최(1980.3.26.~28., 서울)

-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이봉서 동력자원부 기획관리실장
 - 인도네시아 측: Katili 광업에너지성 광업차관보
- 주요 합의사항
 - 양국 간 기술협력 세부 절차 협의
 - 자원 관계기관 간 자매결연 대상기관 확정
 - 석유 및 가스 교역에 관해 한국 측 실무기관과 Pertamina사 간에 추가적 협의 약속
 - 민간기업 간 합작 진출을 위한 자료 교환

중공의 석유개발 현황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통상1

MF번호 2010-63 / 4 / 1-122

1980년 중 중국(구 중공)의 석유개발 현황에 관한 내용임.

1. 경위

- 1953~57년 제1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에서부터 역점을 두기 시작
- 1979.11월 중국의 석유·천연가스 개발공사, 프랑스 및 미국 회사 등과 기본 개발 계획 체결
- 1980.2월 중국·일본 발해만 유전탐사협정 조인
- 1980.7월 중국 외교부, 베트남·소련 간 해저 석유 공동개발협정 비난 성명 발표

752

2. 해저 유전 개발을 위한 대서방 협력

- 10년 간 해저 매장량 확인 탐사를 계속하면서 연간 1억 톤 생산을 목표로 발해만, 동중국해 및 주강하구 일대에 대한 서방 국가와의 공동개발 모색
- 중국이 서방 국가와의 공동협력을 모색하고 있는 것은 동 해역에 대한 소련의 진출을 서방 국가와 공동으로 견제하려는 전략인 것으로 보임.

3. 베트남과의 해양 분쟁

- 석유 보존 가능성이 높고 전략상 요충지인 통킹만, 남중국해지역을 둘러싼 중국과 베트남 간 영유권 분쟁이 그치지 않음.
- 1980.7월 베트남과 소련은 베트남 남부 유전 및 천연가스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을 모스크바에서 체결
 - 중국은 이에 대해 비난 성명 발표

4. 중국 해저석유 개발의 장래

- 문제점 및 개발에 미치는 영향
 - 개발속도와 단계
 - 투자 자본의 크기
 - 석유생산 개시 후 수익에 미칠 영향
 - 지하석유 개발과의 우선순위 결정 문제

항공유 공급확보 대책

생산연도 1979-1980

생 산 과 통상3

MF번호 2010-63 / 5 / 1-95

1979~80년 중 항공유 공급확보 대책에 관한 내용임.

1. 항공유 도입 현황 및 배경

- 미국의 지원 중단
 - 1979년 이후 FMS(대외군사판매) 판매 거절
- 1978.9월 대만(구 자유중국)과 공급계약 체결
 - 연간 소요량: 14만 배럴
 - 1차 수입: 4만 배럴(1976.6월)
 - 공급 중단: 원유사정 악화로 인해 중단(1979.6월)

2. 대만과의 교섭(1979.10.4., 주대만대사 보고)

- 1980.2월 공급 재개 가능
- 대만은 전량 공급은 곤란하지만 적극 협력할 것을 다짐

3. 미국과의 교섭

- 1979.10.15. 주미국대사 보고
 - Export Administration Act of 1969에 의거 수출통제 품목에 해당
 - 에너지성은 항공유 수출 면허 발급을 최대한 억제해줄 것을 요청
 - 하와이, 괌 등 3개 지역은 쿼터 면제지역으로 도입이 가능하나, 한국 측 수요에는 미흡할 것으로 예상
- 10.18. 주뉴욕총영사 보고
 - 미 국무부 사전 승인 품목이므로 국무부 당국과 접촉을 건의

4. 한·미국 안보협의회의에서 문제 제기

- 국방부는 안보협의회의에서 동 문제를 제기하여 미국 측과 토의할 예정

5. 여타 국가(싱가포르, 카타르, 튀르키예, 일본, 호주)는 항공유 수출이 불가능한 것으로 현지 공관이 보고함.

이란산 원유도입. 전2권 (V.1 1-2월)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통상3

MF번호 2010-63 / 7 / 1-218

1980.1~2월 중 이란산 원유도입에 관한 내용임.

1. 1980.1.30. 한국 측은 NIOC(이란석유공사) 측과 원유도입에 관한 계약에 서명함.

- KIPCO(한·이란석유주식회사) 원유
 - 기간: 1980년 1 / 4분기
 - 물량: 400만 배럴
 - 가격: 28.8달러
- G-G 원유
 - 기간: 1980년 상반기
 - 물량: 540만 배럴
 - 가격: 28.8달러 및 28.66달러
- Spot
 - 기간: 2월말 전
 - 수량: 180만 배럴
 - 가격: 36.86달러

2. KIPCO 및 G-G Extra Margin은 Side Agreement를 별도로 작성함.

- 총액 1,452만 달러는 Invoice에서만 추가로 합의하고 부속서에는 언급하지 않음.

3. 이란 측은 이란이 요청한 긴급물자 요청에 한국 측 반응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원유 공급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항을 문서화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으나, 한국 측은 이를 거절함.

이란산 원유도입. 전2권 (V.2 3-12월)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통상3

MF번호 2010-63 / 8 / 1-214

1980.3~12월 중 이란산 원유도입에 관한 내용임.

1. 양윤세 동자부장관, 이란 방문(1980.3.11.~18.)

- 방문 목적: 원유도입 방안 협의
- 알리 칼리파 알 사바 석유상 면담(3.12. 및 3.18.) 시 주요 협의내용
 - 1980.4.1.부터 한국에 공급할 물량은 10만 B/D이나 사정이 어렵다면 타국의 정유회사 등과 협의하여 3~6개월간 추가 물량을 공급하여 한국이 타공급원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협력하겠음.
 - 상기 추가 물량에 대한 확정을 위해 시간 여유가 필요
 - 유공 합작문제는 아직 쿠웨이트 정부의 입장이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1개월 정도 검토가 필요
 - 10만 배럴에 대해서는 1년 후 재갱신하는 것을 명문화함.
 - 쿠웨이트 측의 동의를 얻어 국내 타정유회사에 원유를 공급할 수 있는 조항을 삽입함.
- 3.13. 원유 공급기간 연장 및 전용문제에 관한 계약 체결

2. KIPCO(한·이란석유주식회사)의 이란 측 주식 매매

- 쌍용회장 및 KIPCO 사장은 1980.6월 초 이란을 방문, NIOC(이란석유공사) 측과 이란 측 주식 매입 합의 협상을 수차례 진행한바, 1980.6.4. 동 주식을 한국 측이 인수하는 합의서를 체결함.

3. 이란의 석유 수출 불가 보도

- 1980.10.23. 외무부는 주뉴욕총영사에게 이란 석유 수출 불가 보도에 대한 확인을 지시함.
- 동일 주뉴욕총영사는 10.20.자 PIW지는 이번 이란·이라크 전쟁으로 인한 피해로 이란은 향후 3~4년간 석유 수출을 재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보도하였음을 확인하여 기사 전문을 송부함.

쿠웨이트산 원유도입. 전2권 (V.1 1975-78)

생산연도 1975-1980

생 산 과 통상3 / 근동

MF번호 2010-63 / 9 / 1-130

1975~78년 중 쿠웨이트산 원유도입에 관한 내용임.

1. 유각종 동자부차관의 쿠웨이트 방문(1978.8.11.~13.) 시 알 사바 쿠웨이트 석유장관과의 협의 내용

- 쿠웨이트 측
 - 한국의 정유공장시설사업은 물론 석유화학 분야에의 적극 참여를 희망
 - 한국에 대한 장기 원유공급 문제에 있어 걸프사와의 계약이 끝나는 대로 직접 대한민국 대량공급을 원칙적으로 희망
 - 양국 간 협력사업의 구체적 추진을 위해 10~11월 중 실무진을 파한, 동 협의 결과에 따라 12월 중 알 사바 석유장관이 방한하여 최종 협의를 진행할 것임.
- 한국 측
 - 쿠웨이트의 대한민국 정유시설사업 참여 의사를 환영함.
 - 쿠웨이트의 대한민국 장기 원유공급 계획을 환영함.

2. 한·쿠웨이트 석유 실무자회의(1978.11.8.~11., 서울) 결과

- 원유 공급
 - 원유의 직접 공급 문제와 쿠웨이트 측의 한국 내 투자 문제는 분리하여 추진
 - 단기간 내 결정이 가능한 대정부 판매 방안을 우선적으로 적극 추진하며 구매계약이 1979년 중 체결되도록 노력
 - 1980년 초 알 사바 석유장관의 방한 시 구매 기본원칙에 대한 서명이 가능하도록 실무진 간에 협의 계속
- 신규 정유공장 건립 문제
 - 한국 정부는 투자자를 선정, 합작과 관련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여 쿠웨이트 정부와 협의할 것임.

쿠웨이트산 원유도입. 전2권 (V.2 1979-80)

생산연도 1975-1980

생 산 과 통상3 / 근동

MF번호 2010-63 / 10 / 1-330

1979~80년 중 쿠웨이트산 원유도입에 관한 내용임.

1. 원유도입 방안

- 장기적, 안정적 원유도입
 - 쿠웨이트로와 합의한 원유공급 재확인
 - 추가 도입은 불필요: 고가인 원유가, 원유의 질 불량
- 1979.2월 쿠웨이트와 원유공급에 관한 양해각서를 교환함.
 - 수량: 15만 B/D부터 시작하며 6개월 전 합의에 따라 30만 B/D까지 증량 가능
 - 기간: 1980.4월부터 9년간
- 교섭 방안
 - 1982년부터 30만 B/D를 공급하도록 요청
 - 정유공장 건설 시 일부 소요분 공급 요청

2. 원유도입과 연계한 협력 방안

- 경제개발계획 지원
 - 협력 가능 분야: 도로 건설, 항만 건설, 주택 건설 및 수자원 개발
- 쿠웨이트 개발계획(총 168억 달러)과 원유도입 연계 방안 추진
- 민간부문에서는 기진출 기업 등 대기업의 컨소시엄 형태 참여로 양국에 공장 건설
- 오일 달러 도입
 - 쿠웨이트 경제개발계획에 대한 협력을 통한 오일 달러 도입
- 쿠웨이트 아랍개발원조기금을 한국의 대중동 진출에 활용
 - 자본금: 34억 5천만 달러
- 한·쿠웨이트 공동위원회 설치
- 군사 분야 협력
 - 군수품 공급 등

말레이시아산 원유도입

생산연도 1979-1980

생 산 과 통상3

MF번호 2010-63 / 11 / 1-30

1979~80년 중 말레이시아산 원유도입 관련 내용임.

1. 경위

- 1979.12.26. 말레이시아산 원유도입 교섭을 위해 삼성물산(주)을 말레이시아 총리에게 소개하는 내용의 신현확 국무총리 명의 서한 발송
- 1979.12.31. 말레이시아 석유회사 Petronas사 회장에게 양윤세 동력자원부장관 명의 서한 발송, 삼성물산의 말레이시아산 석유도입 협조 요청
- 1980.1.10. 주말레이시아대사는 이견희 삼성그룹 부회장과 함께 후세인 옹 말레이시아 총리를 방문, 대한민국 석유공급에 호의적인 배려를 요청
 - 동 총리는 한국의 원유 수급 사정을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공급하지 못하였음을 미안하게 생각 한다면, 관계기관에 공급 여력 여부 확인을 선처하겠다는 반응과 공급 희망량을 문의
 - 주말레이시아대사는 원유 확보 여부가 한국 경제 및 정국 안정에 직결되어 있음을 설명, 동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관계기관에 지시하여 줄 것을 요청

2. 계약 체결

- 1980.4.1. 삼성물산과 Petronas사 간의 Gas Oil 1천 B/D 공급계약 체결
 - 향후 1년간 하루 Gas Oil 1천 배럴 상당량을 한국에 공급하게 되며, 1차 선적분 23만 배럴은 싱가포르에서 B-C(벙커씨)유 5만 톤과 교환하여 4.10.~20. 선적할 예정
 - Gas Oil은 국내에서 직접 사용할 수 없어 B-C유로 교환하여 도입

사우디아라비아산 원유도입

생산연도 1975-1980

생 산 과 통상3 / 중동

MF번호 2010-63 / 13 / 1-301

1975~80년 중 사우디아라비아산 원유도입 관련 내용임.

1. 한국의 원유도입처 조정 추진

- 1976.11월 말 기준 한국의 원유도입처 비율은 사우디 39.6%, 쿠웨이트 38.6%, 이란 12%, 기타 9.8%로 전체의 60.4%를 이란 및 쿠웨이트 등 유가 10% 인상국에서 수입
 - 한국의 석유류 제품 가격 인상폭이 타국에 비해 크게 높아져 국제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작용
- 따라서 1977년 중 한국의 소요 원유 1억 5,200만 배럴을 가급적 최대 5% 인상국인 사우디로부터 도입하도록 주사우디대사를 통해 사우디 측 입장 타진
- 사우디 증산 원유의 구입은 정부 간 교섭사항이 아니므로 Caltex 등 3개 Major를 통해 Aramco(사우디 국영 석유·천연가스회사)와 교섭 추진
 - 주사우디대사는 사우디 석유부 및 Petromin사와 이에 대한 지원 교섭 추진

2. 사우디로부터의 원유 직접 구매 추진

- 1978.3월 동력자원부, 1980년 상반기 Gulf사와의 원유공급계약 만료에 대비하여 사우디 정부와 원유의 직접 공급 교섭 추진

3. 남덕우 대통령 경제담당 특별보좌관, 원유구매 교섭 차 사우디 방문(1979.3.3.~6.)

- 2.28. 주사우디대사, Ali Reza 사우디 외무차관을 방문하고 한국 정부의 원유 요구량을 정식으로 사우디 정부에 요청
- 3.5. 주사우디대사, Petromin사와의 원유공급계약에 한국석유개발공사를 대신하여 서명
 - 1979.4월부터 1981년 말까지 하루 5만 배럴씩 3년간 총 5,025만 배럴 공급

4. 장예준 동력자원부장관, 원유도입 교섭을 위한 산유국 방문

- 사우디 방문(1979.6.9.~11.)
 - Yamani 석유성 장관과 면담 시 1979년 3/4분기부터 추가로 5만 배럴 원유공급 요청
 - 석유성 장관은 우선 Caltex로 하여금 보정하도록 조치하고, 사우디에서 일부만이라도 공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
- 사우디 및 쿠웨이트 방문(1980.3.16.~17.)
 - 사우디·쿠웨이트로부터의 원유 추가공급 등 협의, UAE 및 이라크로부터의 원유도입 협조 요청

5. 원유 추가 공급 요청

- 한국은 이란·이라크 전쟁으로 이란에서의 원유도입분 3만 B/D가 공급 중단 상태이고, 1981년도 수요 증가분에 대한 소요 물량도 확보하지 못한 실정이므로 사우디에서 5만 B/D의 원유도입이 절박한 형편
- 1980.5월 최규하 대통령의 사우디 방문 이후 사우디 측에 수차례 한국 측 서한 등을 전달하고 호의적 배려 요청
 - 사우디 측은 현 생산수준 이상 증산은 불가능하고 기공급자들로부터 부분적으로 삭감하여 신규 요청에 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

6. 참고자료

- 장기 안정적 원유도입 교섭(사우디아라비아 및 쿠웨이트)(1979.8월, 외무부장관)
- 대사우디 원유 교섭 문제(1980.2.21., 중앙정보부)
- 원유도입 교섭(4월, 외무부 통상국)
 - 사우디·이란·쿠웨이트·인도네시아·멕시코·베네수엘라·UAE·나이지리아 원유도입 교섭 동향, Spot 판매제의

원유도입 정부대표단 중동 및 프랑스 순방, 1980.9.24.-10.22.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통상3

MF번호 2010-64 / 1 / 1-204

원유도입 정부대표단의 1980.9.24.~10.22. 중동 및 프랑스 순방 관련 내용임.

1. 대표단 구성

- 수석대표: 유양수 동력자원대책위원회 위원
- 이봉서 동력자원부 자원정책실장, 원유수급과장, 외무부 통상3과장

2. 방문국

-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프랑스
 - 당초 계획 중 카타르, UAE, 바레인은 현지 사정으로 방문 취소되나, 동자부 자원실장만 UAE, 바레인 방문

3. 쿠웨이트(1980.9.24.~30.)

- 방문 목적: 1981년 소요 원유의 안정적 확보
- 협의 내용
 - 1981년도 추가 소요량(5만 B/D) 공급 협조 요청
 - 대한석유공사 주식 일부 인수 의사 타진
 - LPG 공급 요청

4. 사우디아라비아(1980.10.1.~8.)

- 방문 목적: 1981년 소요 원유 추가 요청, LPG 공급 요청, Caltex의 안정적 원유공급 보장 요청, 오일 달러의 한국 예치 등
- 협의 내용
 - 10만 B/D 추가공급 요청
 - 원유 생산 및 유가 계획 타진
 - Aramco 국유화와 대한민국 영향 타진
 - LPG 및 NPG 공급 요청

5. 프랑스(1980.10.10.~22.)

- 방문 목적: 프랑스 주재 사우디업체와 교섭(사우디 원유도입, 한국산 무기 및 군수물자 판매, 이라크와의 관계 개선 및 협력 등)

원유도입 교섭 정부대표단 중동 및 인도네시아 순방, 1980.1.6.-18.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통상3

MF번호 2010-64 / 2 / 1-178

원유도입 정부대표단의 1980.1.6.~18. 중동 및 인도네시아 순방 관련 내용임.

1. 대표단 구성

- 수석대표: 양윤세 동력자원부장관
- 경제기획원 경험차관보, 동력자원부 기획관리실장, 유정과장, 장관 비서관

2. 방문 목적

- 단기적으로 1980년도 원유 부족분을 확보하도록 하며, 장기적으로 한국의 경제 성장에 따른 원유 수요를 설명하고 산유국과의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원유의 장기 안정적 확보를 위한 기반 구축

3. 방문국

- 쿠웨이트,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4. 쿠웨이트(1980.1.6.~9.)

- State Visit에 대하여 부총리 겸 외무성 장관은 전폭적인 환영 표명
- 석유성 장관은 2월부터 석유 사정이 호전될 것이므로 최소 2월 하순경까지 기다려줄 것을 종용
- 대표단이 접촉한 모든 지도자들은 쿠웨이트 최고의 석유정책 결정기관인 Supreme Petroleum Council 멤버들인바, 한국 원유공급에 대하여 호의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언급

5. 오만(1980.1.9.~11.)

- 오만의 석유 생산량 중 40%는 합작회사인 Shell Co. 소유이고, 60%는 1979년 말까지는 Major를 통하여 거래하였으나, 금년부터는 완전히 오만 정부가 임의 처분하기로 함. 경제개발 재원의 필요성으로 임의 판매 첫 달인 금년 1월은 완전히 현물시장에서 처분하였으며 이러한 방식을 3월까지 연장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하지 않음.
 - 한국대표단은 거래량에 상관없이 가급적 내달부터라도 공식적으로 장기거래방식을 한국과 추진할 수 있도록 요청함.
- 대표단은 오만이 개발의욕이 크고 각종 천연자원 등 가능성이 많으며 대한민국 감정이 우호적이라고 평가



6. 사우디아라비아(1980.1.11.~14.)

- Yamani 석유장관 면담 시 한국에 원유 추가 공급을 요청한바, 동 장관은 현재 잉여는 없으나 미국 회사들에게 공급되는 분에서 삭감하여 한국으로 추가 공급할 것을 약속함.

7. 인도네시아(1980.1.15.~18.)

- 금년도 연간 360만 바렐(일당 1만 바렐)의 원유공급에 합의함.
 - 동 장기공급계약은 Pertamina사와 남방개발 간에 내주 초 서명 체결하기로 한바, 공급은 2월부터 개시하되 1월분까지 포함하여 선적하기로 함.

Diaz Serrano, Jorge 멕시코 석유공사(PEMEX) 총재 방한, 1980.10.19.-22.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통상3

MF번호 2010-64 / 3 / 1-253

Jorge Diaz Serrano 멕시코 석유공사 총재가 1980.10.19.~22. 방한함.

1. 방한 경위

- 정부의 원유도입처 다변화를 위한 자원외교 강화 시책의 하나로 1979.4.6. 장예준 동력자원부장관 명의 방한초청장을 송부함.

2. 주요 일정

- 예방·면담: 대통령(금탑산업훈장 수여), 국무총리, 동력자원부장관, 외무부장관
- 시찰: 유공 울산 공장, 현대중공업 울산 공장
- 제7차 한·멕시코 경제협력위원회 회의 참석, 태권도 시범 참관(명예 4단 수여)

3. 방한 결과

- 양측 기본입장의 이해
 - 금번 방문이 원유의 안정적 확보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 한국 측의 입장과 관계 인사와의 면담, 산업시찰 등으로 한국의 정확한 실정을 파악하게 됨. 또한 이를 장기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멕시코의 입장을 상호이해하게 됨.
- 원유도입 교섭 협의

이란·이라크 분쟁에 따른 원유정세 및 각국 반응

생산연도 1979-1980

생 산 과 통상3

MF번호 2010-64 / 4 / 1-168

1979~80년 중 이란·이라크 분쟁에 따른 원유 정세 및 각국 반응 관련 내용임.

1. 이란·이라크 분쟁

- 분쟁 진전 상황
 - 1980.9.23.~24. 이라크 공군이 이란 내 정유 시설과 유류 저장 탱크, 석유화학공업단지 등 이란 내 주요 공업 시설을 폭격한 데 이어 지상군은 이란 영토 내 10여 마일까지 진격
 - 이란 측은 이란 내 도시 함락 사실을 부인하고, Bani Sadr 대통령은 이란 국민에게 최후의 1인까지 싸울 것을 호소
- 원유 정세
 - 이라크와 이란은 하루 약 270만 배럴에 해당하는 양국의 석유 수출을 중단한바, 그동안 하루 약 250만 배럴의 초과공급으로 안정세를 유지해 오던 유류 가격은 향후 상승 추세를 보일 전망
- 각국 반응
 - 미국은 이란·이라크 분쟁으로 세계 석유 교역량의 6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이 폐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여타 국가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페르시아만 지역에 대한 항해 자유가 저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 강조
 - 영국은 서방 측의 충분한 원유 비축량, 원유 과잉 공급 등에 비추어 이란·이라크 전쟁으로 서방 원유 시장에 대한 단기적 위협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 다만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전체 서방 국가에 위협

2. 이란사태 관련 각국의 반응

- 카터 미 대통령, 이란산 석유 수입금지조치 발표
 - 1979.11.4. 주이란 미국대사관 인질사태 발발로 인해 카터 대통령은 11.12. 이란산 석유 수입금지조치를 취하고, 석유 소비 절약을 호소하는 성명 발표
- 이란 측 반응
 - 11.13. Monifar 이란 석유부 장관은 대미국 급유 중단으로 인해 1979년 말까지 4천만 배럴의 원유를 여타 수입국에 OPEC(석유수출국기구) 가격으로 판매할 것이라고 발언
 - 또한 Bani Sadr 이란 외무부장관 대리는 Le Monde지와 회견에서 미국의 이란산 석유 금수조치는 경제전쟁 선포라고 주장



- 원유 정세 전망
 - 미국 에너지부는 1980년도 OPEC 국가의 석유 공급이 1일 300만 배럴씩 감소되므로 절대적인 공급 부족 및 가격 상승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전망
 - 페르시아만 일부 봉쇄 시, 세계적으로 1일 1,200만 배럴 이상 부족, 미국은 4백만 배럴 부족 예상
 - 향후 수개월 후 만성적 또는 갑작스런 석유공급 중단사태 발생 가능성 다대
- 참고자료
 - 최근 이란사태에 대한 각국의 반응(재외공관 보고)(11.17., 외무부 통상국)
 - 이란사태와 관련한 각국의 반응(II)(석유관계)(11.22., 외무부 통상국)

한·가봉 간의 우라늄 공동 탐사

생산연도 1975-1980

생 산 과 중부아프리카

MF번호 2010-64 / 6 / 1-267

1975~80년 중 한·가봉 간의 우라늄 공동 탐사 관련 내용임.

1. 가봉 정부와 가봉산 우라늄광의 장기 구입 교섭 추진

- 1976.11.22. 가봉 측은 1980~90년까지 11년간 한국에 대한 우라늄 장기 공급에 합의하고 이를 명문화할 우라늄 협력에 관한 합의 의정서(안) 제시
 - 가봉 측은 Mbouy-Boutzit 가봉 광산에너지수자원부 장관 방한 시(1976.12.19.~23.) 동 의정서에 가서명 희망
 - 12.11. Bongo 가봉 대통령, 동 장관 방한을 취소

2. 한국전력조사단, 가봉 방문(1978.10.13.~20.)

- 활동 내용
 - 동 조사단은 프랑스의 Cogema사 관계자와 함께 가봉 동남부 Nord-Leyou지역 일대의 우라늄 탐사 후보지를 직접 답사, 조사 활동 전개
- 조사 결과
 - 개발 가치가 인정되며 적극적인 탐사 활동에 따라 좋은 결과가 기대되어 한국의 참여 건의
 - 초기 답사비용은 약 1천만 달러 소요

3. 한전·Cogema사와 가봉 간의 우라늄 공동탐사계약 체결

- 1979.3.2. 한전·Cogema·가봉 간의 우라늄 공동탐사 가계약 서명
- 1980.3.19. 한전·Cogema·가봉 간의 우라늄 공동탐사계약 서명
 - Bongo 대통령 주재, 가봉 정부 관계부처 장관이 임석한 가운데 대통령궁에서 서명식 거행
 - 가봉 정부를 대표해서 Bongo 대통령이 직접 서명하고, Cogema 및 한전 대표 서명

4. 참고자료

- 우라늄 시장 현황 및 확보 대책(1976.1월, 한국전력주식회사 원자력부)
- Nord Leyou 우라늄 공동탐사계약: 가봉국·Cogema·KECO, 1980.3.19.

수산외교 강화방안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재외국민1

MF번호 2010-64 / 9 / 1-23

1980.9.15. 외무부가 작성한 “수산 외교 강화 방안”임.

1. 원양어업 현황

- 원양어업 진출 현황, 원양어업의 문제점과 대책

2. 외국 선적 선원 취업 현황

- 개요, 내역, 문제점과 대책

768

3. 선원사고 분석과 예방 대책

- 사고 분석, 선원별 사고 원인 및 대책

4. 대외 어업 진흥을 위한 경제외교 시책

한·호주 간의 수산 합작조업

생산연도 1979-1980

생 산 과 경제조사

MF번호 2010-64 / 10 / 1-90

1979~80년 중 한·호주 간의 수산 합작조업 관련 내용임.

1. 동원수산·Kalis and France사 간 합작시험조업(1978.9.1. 허가)

- 내용: 시험조업 기간 중 어획한 어획물을 호주 측이 판매 후 이익 분배
 - 투입 어선: 한국 측 트롤어선 2척
 - 기간: 2년
- 시험조업 완료 후 어장성이 양호한 것으로 판명되면 법인체 설립
 - 어장 불량과 회사의 재정적 손해 누적으로 1979.12월 철수

2. 동방원양·Lombardo사 간 합작시험조업(1979.4.11. 허가)

- 내용: 시험조업 기간 중 어획한 어획물을 한국 측이 판매 후 이익 분배
 - 투입 어선: 한국 측 어선 6척(트롤어선 2척, 오징어어선 3척, 수송선 1척)
 - 기간: 2년
- 시험조업 완료 후 법인체 설립
 - 동원수산과 같은 이유로 1980년 철수

3. 호주 오징어시장 조사단 방한(1980.8.9.~14.)

- 조사단 구성
 - 호주 1차 산업부 수산담당관, 수산업체 담당자
- 활동 내용
 - 호주산 오징어(Squid, Cuttle Fish)의 대한국 수출 전망, 한국의 수입 제한, 관세제도 등 조사
 - 오징어 가공(특히 건조) 과정 및 시설, 오징어 합작시험조업, 한국의 어선 건조 및 선원 훈련 등에 관심

4. 참고자료

- 호주의 수산 합작조업에 관한 가이드라인(1980.9.30., 호주 1차 산업부)

한·브라질 어업협력

생산연도 1979-1980

생 산 과 경제협력1

MF번호 2010-64 / 11 / 1-47

1979~80년 중 한·브라질 간의 어업협력 관련 내용임.

1. 한·브라질 어업협정 체결 추진

- 1979.1.15. 외무부, 오랜 현안 문제인 브라질과의 어업협정 체결에 대한 주재국 입장, 진전 상황, 향후 전망 등을 보고하도록 주브라질대사에게 지시한바, 9.18. 주브라질대사는 아래와 같이 보고함.
 - 브라질 정부는 일반적, 개괄적 성격의 어업협력협정보다는 실질적 어로 작업 추진 중에 발견되는 특정의 문제점 내지 필요성이 있을 경우 그와 같은 특정사항에 대한 협정 체결이 관례
 - 개괄적 협정은 대체로 형식에 그치고 실익은 별로 없는 것으로 보며, 실질적 협력 관계는 협정 유무에 관계없이 추진 가능하다는 입장 표명
 - 한국 측 협정안에 대한 합의는 기대 난망이므로 동 협정안은 일단 보류하고 실질적 진출을 도모하는 한편, 필요 시 특정 문제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도록 노력 필요

2. 브라질 새우 트롤어장 입어 교섭

- 1979.1.29. 외무부는 프랑스령 기아나 및 가이아나의 200해리 어업수역 선포에 따라 한국 새우 트롤어선의 브라질 관할 수역 내 전선 조업을 위해 브라질 정부에 낸 입어허가 신청이 외무부의 제지로 수산개발청으로 반송되었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한국어선의 조속 진출이 가능하도록 교섭을 지시함.
- 9.13. 주수리남대사가 수리남 주재 브라질대사에게 상기 관련 브라질 정부의 사업 승인을 확인함.
 - 브라질은 8.5. 농무부령으로 1980.8.5.까지 1년간 한국어선 60척에 대해 브라질 영해 내 새우 어로 허용
 - 브라질 수산업체가 미국계 수산업체를 통해 한국 수산업체 어선을 용선하는 형식

한·일본 간 제주도 및 북해도 주변 수역에서의 조업 자율규제조치 교섭. 전11권 (V.7 8.26.-31.)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일본

MF번호 2010-65 / 5 / 1-139

1980.8.26.~31. 중 한·일본 간 제주도 및 홋카이도(北海道) 주변 수역에서의 조업 자율규제조치 교섭 관련 내용임.

1. 제7차 한·일본 실무자회의(1980.8.27.~28.) 준비(1980.8.27., 일본담당관실)

- 금번 실무자회의는 지난 6차에 걸쳐 교섭한 내용을 문서화하는 최종 회의임.
- 제7차 실무자 회의 진행 방법, 홋카이도·제주도 주변 수역 어업 분류 등을 협의하여 문서작성 작업을 행하고자 함.

2. 외무부, 1980.8.27. 홋카이도 및 제주도 수역 어업 분류 해결 교섭 결과를 대통령 앞으로 아래와 같이 보고

- 6차에 걸친 양국의 외무·수산 당국 간 실무교섭 결과
 - 홋카이도 주변 수역에서는 한국 측이 일정 수역에서 일정 기간 출어 척수에 있어 자율규제 실시
 - 한편 일본어선에 의한 자원 고갈과 연안 어민의 피해가 많은 제주도 주변 수역에서는 일본 측이 일정 수역, 일정 기간 출어 척수에 있어 자율규제를 행하는 방식으로 상호평등원칙에 의해 타결하기로 원칙적 의견 일치
- 향후 일정
 - 1980.8.27.~28. 서울에서 최종적인 실무 교섭을 갖고 합의 사항에 관해 문서화 작업을 중심으로 교섭 시행
 - 1980.8.29.~30. 양국 수산청장 회담을 개최, 몇 가지 미합의 사항에 관해 전반적 합의를 도출한 후 9월 초순 도쿄에서 양국 수산청장회담을 개최, 완전 타결 예정

3. 참고자료

- 홋카이도 및 제주도 수역 어업 분류 해결 교섭 결과 보고(1980.9월, 외무부·농수산부·수산청)
- 홋카이도 및 제주도 수역 어업 분류 해결 교섭(9월, 외무부·농수산부·수산청)
- 홋카이도 및 제주도 어업 분류 교섭 결과(10.14., 외무부)

한·일본 간 제주도 및 북해도 주변 수역에서의 조업 자율규제조치 교섭. 전11권 (V.8 9월)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일본

MF번호 2010-65 / 6 / 1-315

1980.9월 중 한·일본 간 제주도 및 홋카이도(北海道) 주변 수역에서의 조업 자율규제조치 교섭 관련 내용임.

1. 제7차 한·일본 외무·수산 실무자회의(1980.8.27.~28., 서울)

- 양측이 이미 의견 일치를 본 사항에 관해 문서화 작업을 중심으로 교섭
- 홋카이도 주변 수역과 제주도 주변 수역 문제는 원칙적으로 Equal Footing에서 취급되어야 한다는 상호평등원칙에 합의
- 본 건에 관한 문서는 아래와 같이 구성하기로 합의
 - 홋카이도 주변 수역에서의 왕복문서
 - 제주도 주변 수역에서의 왕복문서
 - 양측 대표단 간의 토의된 사항을 기록한 토의기록
- 문서의 사용언어는 한국어와 일본어로 하고, 동 문서에는 '오타트를 금지선'이라는 표현 대신 경도와 위도라는 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기로 합의
- 실효성 확보를 위한 단속은 제주도 주변 수역과 홋카이도 주변 수역이 원칙적으로 동일한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

2. 제2차 한·일본 수산청장 회담(1980.8.29.~30., 서울)

- 6차에 걸쳐 개최된 양국 실무자회의 시 합의 및 미합의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미합의 사항에 대해서는 양측 입장을 중심으로 협의
- 실무자회의에서 합의된 사항 확인
- 홋카이도 주변 수역 중 에리모 이서(以西)와 에리모 근해의 조업금지 수역 및 조업 척수, 제주도 주변 수역에서의 조업금지 시기와 척수에 관한 내용 논의

3. 제8차 한·일본 실무자회의(1980.9.17.~18., 서울)

- 양측 왕복서한 및 토의기록 문안 협의
- 상호 200해리 제도의 전면 또는 부분 적용을 회피하고, 현행 한·일본 어업협정 체제를 유지하면서 본 문제를 교섭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합의
- 한국 측은 북해도 주변 수역의 일부에서 일정 기간, 출어 척수에 있어 자율규제를 실시하는 한편, 일본 측은 제주도 주변 수역의 일부에서 일정 기간, 출어 척수에 있어 자율규제를 행하는 방식으로 상호평등원칙에 의하여 타결하기로 합의
- 미합의사항에 대하여는 수산청장회담에서 타결하기로 함.



4. 제3차 한·일본 수산청장회담(1980.9.19.~20., 서울)

- 김종수 수산청장과 이마무라 수산청장관 간 회담에서 아래와 같이 합의
 - 한·일 양국 모두 어획량이 거의 반감함에 따라 홋카이도 근해 5개소와 제주도 주변에 조업 규제 구역을 설치, 조업 기간 및 척수 등을 제한
 - 위반 등의 단속권은 기국주의로 하고, 1980.11.1.부터 실시하기로 합의
- 미합의사항에 관한 양측 입장(9.29., 일본담당관실)
 - 오호츠크해 양끝 부분 문제, 홋카이도 주변 수역에서의 척수 제한 문제

5. 참고자료

- 홋카이도 주변 수역 어업 분규 해결 교섭(1980.5월, 외무부·농수산부·수산청)
- 한·일 어업 문제 회담 자료(9.18.~20, 외무부 아주국)
- 홋카이도 및 제주도 수역 어업 분규(9.18., 일본담당관실)

한·일본 간 제주도 및 북해도 주변 수역에서의 조업 자율규제조치 교섭. 전11권 (V.9 10.1.-13.)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일본

MF번호 2010-65 / 7 / 1-189

1980.10.1.~13. 중 한·일본 간 제주도 및 홋카이도(北海道) 주변 수역에서의 조업 자율규제조치 교섭 관련 내용임.

1. 한·일본 어업 실무자회의(1980.9.30.~10.3., 서울)

- 홋카이도 및 제주도 주변 수역 어업 분규 타결
 - 한국 측은 한·일 양국의 우호관계를 고려, 홋카이도 주변 수역에서 조업을 자율적으로 규제
 - 일본 측은 제주도 주변 수역에서 조업을 자율적으로 규제
 - 상기 자율규제조치는 1980.11.1.부터 3년간 시행

774

2. 조업 자율규제조치 국무회의 보고

- 한국 측은 1980.10.14. '홋카이도 및 제주도 주변 수역에서의 한·일 양국의 조업 자율규제조치'를 국무회의에 보고함.
 - 일본 측은 10.17. 각의 보고

3. 각서교환 일자 및 장소 결정

- 장관 명의 각서교환 일자(미합의)
 - 일본 측 제의: 1980.10.17.
 - 한국 측 제의: 1980.10.20.부터 시작되는 주
- 장관 명의 각서교환 장소(합의)
 - 홋카이도 조업 문제 관련 각서: 서울
 - 제주도 조업 문제 관련 각서: 도쿄

한·일본 간 제주도 및 북해도 주변 수역에서의 조업 자율규제조치 교섭. 전11권 (V.10 10.15.-29.)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일본

MF번호 2010-65 / 8 / 1-183

1980.10.15.~29. 중 한·일본 간 제주도 및 홋카이도(北海道) 주변 수역에서의 조업 자율규제 조치 교섭 관련 내용임.

1. 홋카이도와 제주도 주변 수역 관련 문서 교환

- 홋카이도와 제주도 주변 수역에서의 한·일 양국의 자율규제조치 관련 각서와 기타 관련 문서 (토의기록, 실무자 간 협의기록, 양국 수산청장 서한)를 1980.10.20. 서울과 도쿄에서 각각 교환
- 제주도 및 홋카이도 근해에서의 조업 문제에 관한 한·일 양국 간 협상이 4년 만에 최종 타결

2. 타결 내용

- 한국 측은 홋카이도 주변 수역 중 일정 수역에서 일정 기간 동안 조업을 자율적으로 규제하고, 현재 조업 중인 트롤어선 19척을 17척으로 조정
- 일본 측은 제주도 주변 남서부 수역에서 170톤 이하의 소형 저인망어선의 조업을 9개월 동안 자제하고, 출어 척수도 현 270척을 106척으로 제한
- 자율규제조치의 실시 기간은 1980.11.1.부터 3년간
- 문서 형식상으로는 외무부장관이 상대국 대사에게 자국이 취할 자율규제 내용을 각각 외교 공한으로 통보하기로 합의

3. 교섭 성과

- 상호 200해리 어업수역 실시로 인한 부작용과 정치적 마찰을 피하면서 현안 문제 원만히 해결
- 홋카이도 주변 수역에서는 한국의 종래 어획량 15만 톤이 약 절반으로 감소되기는 하나, 일본의 트롤어선조차 조업이 금지된 일정 수역에서 조업할 수 있는 근거 확보
- 제주도 남서부 한·일 공동규제수역 내에서 일본 저인망어선의 조업을 9개월간 금지, 어획량을 반감시킴으로써 그만큼 한국 연안 어민의 조업 조건 및 소득 향상에 기여
- 미국 연안의 어획 쿼터 재배정 시 일본이 측면 지원함으로써 한국 측에 약 7만 톤의 추가 쿼터가 확보되어 홋카이도 주변 수역에서의 명태 어획량 감소분 충당 가능

한·일본 간 제주도 및 북해도 주변 수역에서의 조업 자율규제조치 교섭. 전11권 (V.11 11-12월)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일본

MF번호 2010-65 / 9 / 1-99

1980.11~12월 중 한·일본 간 제주도 및 홋카이도(北海道) 주변 수역에서의 조업 자율규제조치 교섭 관련 내용임.

1. 홋카이도 주변 한국어선 조업 문제

- 홋카이도 근해에 출어한 한국어선 선장의 보고와 일본 감시선의 통보
 - 1980.11.1.부터 한·일본 간 합의에 따라 조업 가능한 구역 내에 일본 어민이 고의적으로 정치(定置) 어구를 과다하게 설치, 사실상 동 구역 내 조업이 불가능한 실정
 - 상기 사실을 통보하고 야간 조업 자제 요망
- 관련 업계 의견
 - 이러한 일본 측의 조치는 고의적인 조업 방해이며, 명태 어획 감소 예상
- 한국 측 조치 내용
 - 수산청은 11.10. 주한 일본대사관 수산관을 초치, 항의 및 시정 요구
 - 외무부 아주국장은 11.12. 주한 일본대사관 공사를 초치, 사실 확인과 시정 요구 및 한·일 합의사항 위반이 있을 경우 항의 예정
 - 한·일 수산청 실무자회의(1980.11.28.~29., 도쿄)에서도 거론, 시정 요구 예정
 - 한·일 어업공동위(1980.12.1.~3., 서울) 계기 동 문제 재거론, 시정 요구 예정

2. 참고자료

- 해양법 대책위원회 자문위원단 회의 자료 - 홋카이도와 제주도 조업 문제 결과 보고를 중심으로 (1980.12.1., 외무부 아주국)
 - 정부 간 교섭 배경: 홋카이도 주변 수역에서의 어업 분류
 - 정부 간 교섭 일정
 - 정부 간 교섭 내용: 한·일 양측의 입장, 합의 내용
 - 정부 간 교섭 성과
 - 한·일 해양 관계 전망: 한·일 어업협정과의 관계, 한·일 어업질서의 재조정, 200해리 수역의 실시

한·케냐 어업협력

생산연도 1979-1980

생 산 과 경제협력1

MF번호 2010-65 / 10 / 1-78

1979~80년 중 한·케냐 어업협력 관련 내용임.

1. 한·케냐 어업협력 추진

- 1979.6월 케냐 ICDC(Industrial, Commercial Development Corporation)는 자매 회사인 KFI(Kenya Fishing Industries Limited)가 현대조선에서 어선 2척을 구매하기로 계약한 것과 관련하여 어업협력을 요청함.
 - 어선 2척에 대해 최소 2년간 선원 공급(척당 28명)
 - 참치(Tuna) 어로 방법, 선박 작동 및 관리 운용에 대한 이론과 실습을 위한 한국 내 훈련(12명)
- 6월 수산청은 한·케냐 어업협력에 대해 아래 입장을 외무부에 통보
 - 한국선원의 무상 공급은 불가능하며, 케냐가 고용할 경우 그 조건은 선장 월 2천 달러 이상, 기관장 및 항해사 월 1,500달러 이상, 일반 선원은 월 400달러 이상
 - 기술훈련은 가능하고 1980년도에 반영 노력 중이며 반영될 경우 1~2명 수준 가능
- 1979.10.2. 외무부, 한·케냐 어업협력사업 관련 아래 입장 통보
 - 어업기술훈련을 위한 케냐 훈련생 인원 추가 건에 대해 현대종합상사 측에서는 어선 건조 부문에서의 적자로 추가 경비 부담이 불가능하다는 입장
 - 대케냐 경제원조 방안에 의한 선원 공급은 정부의 예산 사정과 현대 측의 상기 사유로 인해 불가능한 실정

2. 참고자료

- 한·케냐 어업협력 및 자료 조사 보고(1979.9.7., 주케냐대사관)
 - KFI가 추가 발주 예정인 어선의 한국 발주 가능성
 - 한국어선의 몸바사 어업 기지 이용
 - 케냐 근해의 어장성 및 합작투자 추진 가능성
 - 케냐 200해리 경제수역 내에서 외국어선 조업에 대한 케냐 입장
- 케냐의 어로 관련 입법(Marine Fisheries Legislation in Kenya)

한·파푸아뉴기니 어업협력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동남아 / 기술협력

MF번호 2010-65 / 11 / 1-17

1980년 중 한·파푸아뉴기니 간의 어업협력 관련 내용임.

1. 파푸아뉴기니 어업협력 자료 조사

- 1980.7.10. 수산청, 광범위한 참치 어장을 보유한 파푸아뉴기니와 어업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주일본대사관 및 주인도네시아대사관을 통해 아래 자료가 입수될 수 있도록 외무부의 협조 요청
 - 파푸아뉴기니의 어업 현황 및 개발 계획
 - 어업 자원의 실태 보고서, 외국어선 진출 현황 및 진출 형태
 - 기타 관계자료
- 7.21. 주일본대사관, 일본 수산청으로부터 입수한 상기 관련 자료 외무부에 송부

2. 파푸아뉴기니·사조산업 간 용역계약 체결

- 사조산업은 1980.8.20. 수산청의 승인을 얻어 파푸아뉴기니의 수산업 개발에 기여하기 위해 어업 기술자 3명을 1981년부터 2년간 파푸아뉴기니에 파견하는 어업기술용역계약을 체결

한·세이셸 어업협력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동부아프리카 / 경제협력1

MF번호 2010-65 / 12 / 1-138

1980년 중 한·세이셸 어업협력 관련 내용임.

1. 세이셸, 한국과 단교 발표

- 1976년 남북한과 동시 수교한 이래 북한과 정치·군사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온 세이셸 정부는 한국 정부의 1979.5.18. 광주민주화운동 탄압 등을 사유로 1980.5.28. 한국과 외교관계 단절 선언

2. 단교 후 세이셸 해역 진출 한국어선 보호 문제

- 세이셸 부근 해역은 한국 원양어선의 주요 참치 어장이며, 빅토리아항은 인도양 출어 한국어선 기지이므로 한·세이셸 단교 이후 한국선원 및 선박의 보호 대책 수립 긴급
 - 세이셸은 한국과 단교를 선언했으나, 민간 베이스의 경제 협력은 별개의 문제라는 태도
 - 최악의 경우에 대비, 외교적 보호 방안으로서 영국을 세이셸에서의 한국 권익 보호국으로 선정하고자 영국 정부와 교섭
- 1980.8.12. 영국 정부, 내부 검토 결과 아래 두 가지 이유로 한국 측 요청을 수락하기 어렵다는 입장 표명
 - 세이셸은 영연방 국가이므로 기술적으로 선박 또는 선원의 이익을 보호할 '영사요원'이 없고, 해당 정부 당국에 의뢰해야 함.
 - 현실적으로 계속 좌경화 되고 있는 세이셸 정권과 영국 정부 간의 관계가 좋지 않은 상태이므로 한국 측의 요청 내용 시행이 어려움.

3. 한국원양어업협회, 세이셸 어업교섭단 파견(1980.8.9.~14.)

- 교섭단 구성: 함병림 삼송산업 사장, 고윤호 원양어업협회 국제부장
- 목적: 1980.10~81.9월 1년간의 한국 참치어선 입어허가 교섭
- 교섭 결과
 - 어선 톤당 월 50루피(약 8달러 상당) 입어로 지불에 합의하고 세이셸 대통령 재가 상신 중
 - 1차 계약 시 월 40루피(6.7달러), 연 53만 달러 입어로 지불

한·일본 어업공동위원회 회의, 제15차. 서울, 1980.12.1.-3. 전2권 (V.1기본문서)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일본

MF번호 2010-65 / 13 / 1-128

제15차 한·일본 어업공동위원회 회의가 1980.12.1.~3. 서울에서 개최됨.

1. 의제

- 어업자원의 과학적 조사에 관한 심의(잠정적 어업규제조치 사항 포함)
- 양 체약국 어선 간의 해상사고 및 그 처리 상황의 보고
- 양 체약국 어선 간의 사고에 대한 일반적 취급 방침에 관한 심의
- 협정 위반에 대한 동등한 형의 세목 제정에 관한 심의
- 해난 구조 및 긴급피난에 관한 약정 체결 교섭 촉진을 위한 심의
- 기타 협정 수행에 관련되는 제문제에 관한 사항

2. 대표단 구성

- 한국
 - 국별 위원: 최익성 수산청 차장, 최동진 외무부 심의관, 이봉래 수산진흥심의회위원
 - 전문위원 및 요원: 김성채 수산청 국제협력담당관 외 12명
- 일본
 - 국별위원: 가타야나기 신기치 농림중앙금고 고문, 야마우치 시즈오 수산청 차장, 하세가와 가즈 도시 외무성 아주국 심의관
 - 전문위원 및 요원: 차다니 하지메 수산청 해양어업부참사관 외 13명

3. 회의 결과

- 어업자원의 과학적 조사에 관한 심의 및 조치
 - 부어(浮魚)자원(전갱이, 고등어)은 안정된 수준에 있으나 저어(底魚)자원(참조기, 갈치, 참돔)은 약간 감소 경향으로 평가
 - 중점 연구과제 채택: “쓰시마 난류 관계 수역에 있어서의 해황(海況) 변동”에 대하여
- 제16차 회의는 1981.6월 이후 일본 도쿄에서 개최하기로 함.

한·일본 어업공동위원회 회의, 제15차. 서울, 1980.12.1.-3. 전2권 (V.2자료)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일본

MF번호 2010-65 / 14 / 1-143

제15차 한·일 어업공동위원회 회의(1980.12.1.~3., 서울) 관련 자료임.

1. 한·일 양국 어선 간 해상 사고 및 처리 상황표(한·일 어업공동위원회 한국 국별위원부)

- 1979.4.1.~80.3.31. 중 해상 사고 및 처리 상황표

2. 제15차 한·일 어업공동위원회 가의제(假議題)별 검토 자료(수산청)

- 운영소위원회, 자원소위원회(자원전문가회의 포함)
 - 가의제, 제14차 회의 내용, 관련 세부사항, 제15차 회의 대책(안)

3. 한·일 어업공동위원회 제15차 정기 연차회의(1980.12.1.~3., 서울) 자료

- 수산청 한·일 어업공동위원회 한국 국별위원부 작성 회의 시나리오

미국의 수산자원보호관리법 개정, 1980.12.5.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경제협력1 / 국제법규

MF번호 2010-65 / 15 / 1-218

미국의 수산자원보호관리법(Fishery Conservation and Management Act of 1976) 개정 (1980.12.5.) 관련 내용임.

1. 개정 추진 경위

- 미국 하원 '해양 및 어업위원회'에서 1980.4.15.부터 심의
 - John B. Breaux 해양 및 어업위원회 산하 어업·야생동물 보호 및 환경소위원회 의원이 개정안 발의
- 개정 목적: 미국 수역에서 조업하는 외국어선의 어획할당량을 1981년부터 매년 축소하여 1985년까지는 외국어선 완전 배제
 - 동 법안 통과 시 한국 북양어업에 막대한 타격을 줄 전망

2. 동 법안 개정에 대한 미국 내 반응

- 어업계는 조속 입법을 강력 지지하는 반면, 행정부(국무부, 상무부)는 반대 입장
 - 미국 수산물 수출 증대에 역효과: 외국에 쿼터 배정 없이 수산물 수출 증대 기대 난망
 - 전 어선에 감시원(Observer) 승선은 비경제적
 - 현행법으로도 충분하다는 입장

3. 1980.12.5. 통과된 개정법안(Breaux 법안) 주요 골자

- 어획 쿼터 삭감: 200해리 경제수역 내 출어하는 외국어선의 허용 어획량을 미국 어민 어획량에 비례하여 감축
- 입어료 부과: 1981.1월부터 총 어획량의 7%로 인상(종전 3.5%)
- 감시원 승선(경비부담 포함): 1982.1월부터 미국의 경제수역에 출어하는 전 외국어선에 승선 원칙
 - 종전: 출어선의 20%에 승선
- 외국에 대한 쿼터 할당 기준
 - 미국 수산물 수입량 및 관세장벽 정도
 - 미국 수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협력도
 - 전통적 어업실적(종전: 전통적 어업실적 및 미국 어업자원 보존연구 기여도 감안)
- 어장관리비: 1982년부터 출어국 분담
- 동 법 발효에는 대통령 서명이 남아있으나, 이의 없이 서명할 것으로 관측

한·일본 농림·수산 기술협력위원회 회의, 제12차. 서울, 1980.3.11.-14.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경제조사

MF번호 2010-66 / 1 / 1-110

제12차 한·일본 농림·수산 기술협력위원회의 회의가 1980.3.11.~14. 서울에서 개최됨.

1.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이병석 농수산부 농업기획관
- 일본 측: 마츠야마 료조 농림수산성 기술심의관

2. 주요 의제

- 시험연구의 현황과 문제점, 기술정보의 교환, 기술자의 교류
- 종자, 종묘의 교환, 시험연구의 협력
- 기타 기술협력의 촉진에 관한 사항
- 중점 협의 의제
 - 한일 농업 공동연구 사업(2차년, 1980년)
 - 소득 작목 신기술 개발 및 농작물 기상재해 대책 공동연구
 - 어류, 종묘 생산에 관한 공동연구

3. 결과보고서 첨부

한·미국 농산물 실무자회의, 제3차. 서울, 1980.8.27.-29.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경제조사

MF번호 2010-66 / 2 / 1-203

제3차 한·미 농산물 실무자회의가 1980.8.27.~29. 서울에서 개최됨.

1.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강경식 경제기획원 차관보
- 미국 측: K. Harrison 농무부 농산물판매국장

2. 주요 의제

- 한국 경제 및 농업 개황, 미국의 경제 개황
- 미국의 농산물 수급 전망
- 미국신용금융계획: CCC(관세협력이사회) 상업금융 및 PL 480
- 양국 수입의 다변화, 농산물 수출입에 따른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3. 회의 결과

- 미국 측, 아래 내역의 농산물 구매 신용차관 공여(총 4억 8천 7백만 달러)
 - FY80: CCC 보증차관 추가 5천만 달러
 - FY81: CCC 보증차관 4억 1천만 달러, PL480 자금 2,700만 달러
- 도입 농산물: 원면, 소맥, 사료, 우지
- 대미 미국 도입 자금 문제
 - 미국 측, 4억 8,700만 달러 중 1억 달러를 한국의 대미국 미국 도입 자금으로 사용 제의
 - 동 문제와 한국의 추가 소요자금에 관해서는 추후 협의하기로 합의

4. 참고자료

- 제3차 한·미 농산물 실무자회의 자료(1980.8월, 경제기획원)
- 제3차 한·미 농산물 실무자회의 사전 준비자료(8.20., 경제기획원)

중공의 한·일본 간 대륙붕 공동개발지역에서의 석유시추 개시에 대한 항의 성명 발표, 1980.5.7.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동북아1

MF번호 2010-66 / 4 / 1-78

1. 한·일본 대륙붕 공동개발에 대한 중국(구 중공)의 항의

- 1980.4.28. 중국 외교부는 주베이징 일본대사관 공사를 초치, 대륙붕 경계에 관하여 관계국 간에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개발 착수는 중국의 주권 침해인 것으로 항의했다고 5.1. 일본 외무성이 한국 측에 알렸음.
- 중국의 항의에 대하여 일본 측은 한·일본 대륙붕 개발은 정당하다는 입장을 중국 측에 재천명하고 일본 정부의 개발추진 입장에는 변함이 없음을 중국과 한국에 동시에 알렸음.
- 다만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언론보도 등에 신중을 기할 것임을 알려온바, 한국 측도 정부 보도에 가급적 신중을 기하기로 함.

2. 한·일본 간 대륙붕 공동개발지역에서의 석유시추 개시에 대한 중국의 항의 성명 발표

- 중국은 1980.5.7. 대륙붕 시추 개시는 불법이라는 취지의 정부 성명을 발표함.
- 중국의 이번 반응은 대륙붕 개발이 시추로 진전됨에 따라 종래의 중국 입장을 되풀이 한 것으로서 금번 성명 중에는 새로운 주장 첨가는 없음.
- 대책
- 중국 성명에 대해 필요할 경우 과거 한국 정부가 밝혀둔 입장에 따라 Low Key로 반응하며, 과대한 반응을 보이지 않도록 함.
- 언론 등이 대륙붕 개발에 관하여 과대한 보도를 하지 않도록 유도함.

일본·중공 간 대륙붕 공동개발 문제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일본 / 중국

MF번호 2010-66 / 5 / 1-130

1. 중국(구 중공)의 한·일본 대륙붕 공동개발에 대한 협의 용의 표명

- 1980.5.23. 오재희 주일본대사관 공사는 중국 인민외교학회 초청으로 1980.5.11.~21. 중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일본 국책 연구소의 야스기 이사장을 면담한바, 동인은 등소평 부수상과의 면담 내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언급함.
 - 야스기 이사장은 우호국 간의 협력적인 대처로 대륙붕 공동개발에 착수하게 된 것으로 상호 어느 정도의 주권 제한을 받아 들어가며, 중국도 이러한 정신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등소평에게 얘기한바, 등소평도 이해한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일본 정부와 우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반응을 보임.

786

2. 일본·중국 간 대륙붕 실무회의(1980.11.21.~22., 베이징)

- 수석대표
 - 일본 측: 가토 주중국 일본대사관 공사
 - 중국 측: 초향전 아시아국 부국장
- 회의 결과
 - 동 회의에서 양측은 공동개발에 대해 의견 접근을 보았으나, 대륙붕 개념에 대한 상이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 공동개발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절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양측의 대륙붕 영유권 주장
 - 일본 측: 해양법 회의에서 대륙붕을 대륙 연변 외측까지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중국해 대륙붕은 유구해구까지이며 그 중간선에서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음.
 - 중국 측: 동중국해 대륙붕은 유구열도 서쪽 오키나와 해역까지 자연 연장되어 있음.

한·일본 대륙붕 석유개발 항공지원 사업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조약1

MF번호 2010-66 / 7 / 1-56

1. 한·일본 대륙붕 석유개발 항공지원 사업 관련 문의

- 1980.4.16. 교통부는 대한항공으로부터 한·일본 대륙붕 석유개발 항공지원 사업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인가 및 운수에 관한 협정 설정인가와 외국 항공기의 국내사용 허가 신청이 있는바, 이와 관련된 비행구간을 대한민국의 영역으로 업무를 처리해도 되는지 외무부의 의견을 문의함.
- 4.22. 외무부는 상기 문의상의 비행구간에 포함된 7광구의 제5 및 제7소구역의 수역은 공해임을 확보함.

2. 한·일본 대륙붕 석유개발 항공지원 사업 허가

- 1980.7.7. 교통부는 한·일본 대륙붕 석유개발에 따른 제7광구 제5소구역에 대한 항공지원 사업을 기사행 중에 있으며, 금번 제7광구 제7소구역에 석유개발에 따른 부정기 항공운송 사업계획 변경인가 및 외국 항공기 국내사용을 허가하였음을 외무부에 통보함.
- 대한항공과 아사히 헬리콥터사는 한·일본 대륙붕 공동개발과 관련된 연안시추 지점과 한국 간의 헬리콥터 운송용역의 제공에 공동참여하기로 합의함.

IMF(국제통화기금)/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총회, 제35차. Washington D.C., 1980.9.30.-10.3.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2010-66 / 12 / 1-205

정부는 1980.9.30.~10.3.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제35차 IMF(국제통화기금)/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총회에 이승훈 재무부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국

- 143개 회원국

2. 회의 결과

- 중국(구 중공)의 등장
 - 각국 대표가 특별히 중국의 참여를 환영한 가운데 중국대표단 22명 참석
- PLO(팔레스타인해방기구) 옵서버 초청 문제
 - 미국·아랍권 간의 대립이 본회의장에서는 표면화되지 않음.
 -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선에서 타협점을 찾은바, 위원회 작업결과를 1981.1.31.까지 총회에 보고하도록 함.
- 미국·사우디 간 긴밀한 접촉
 - 사우디는 향후 5개년 공업개발사업(400억 달러)에 미국의 기술도입 추진

3. 한국대표단 활동

- 수석대표 기조연설(10.1.)
 - 국제금융상의 당면문제 해결을 위한 선진국의 적극적 협력 촉구
- Jaque de Larosiere IMF 전무이사 면담
 - 한국의 IMF 쿼터증액 문제를 제기한바, 동 전무이사는 제8차 쿼터증액 시 특별히 고려해야 할 대상으로 본다고 언급하고 IMF의 대한국 신용공급 확대의 필요성을 표명함.
- R. McNamara IBRD 총재 면담
 - 한국과 중동지역 국가와의 밀접한 관계를 지적하고, OPEC(석유수출국기구) 국가의 오일 달러 환류(Recycling) 문제에 있어 한국이 산유국에 협조를 구하여 주도록 요청함.

4. 관찰

- 현안 중인 대한국 IBRD 구조조정 차관 심의는 순조롭게 진행될 전망

IMF(국제통화기금)/IBRD(국제부흥개발은행) 개발위원회 Task Force 회의, 제1-5차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2010-66 / 13 / 1-251

1980년 중 개최된 제1~5차 IMF(국제통화기금) /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개발위원회 Task Force 회의 관련 내용임.

1. 제1차 회의(1980.3.12.~14., 워싱턴 D.C.)

- 대표: 이규성 재무부 국제금융과장
- 주요 토의내용
 - 최근 국제금융시장 동향의 검토
 - 주요 검토대상 확정: Background Material의 검토, 재원의 Recycling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비 양허적 재원이전 촉진을 위한 제안의 검토

2. 제2차 회의(1980.4.27., 함부르크)

- 대표: 이규성 재무부 국제금융과장
- 주요 토의내용
 - 제1차 회의 시 주요 의제에 대한 연구를 각국 대표에게 분담, 제2차 회의에 제출하고, 동 결과를 토대로 제3차 회의 이후 토의 방향 설정
 - 한국 대표 분담의제는 “수출신용 확대 방안”

3. 제3차 회의(1980.6.5.~6., 파리)

- 대표: 심형섭 재무부 국제금융과장
- 주요 토의내용
 - 개도국에 대한 비 양허적 재원이전의 필요성, 은행활동에 대한 국제적인 감시 및 규제, 국제금융 기구의 대부활동 확대를 위한 한도 증액, Trade Credit 확대 문제(한국 Paper) 등

4. 제4차 회의(1980.7.21.~25., 워싱턴 D.C.)

- 대표: 심형섭 재무부 국제금융과장
- 향후 전망
 - 산유국을 포함한 선진국은 이들 국가의 의회 등 국내사정으로 개도국에 대한 재원이전 증대 방안에 쉽게 합의하지 않고 있음. 문제는 개도국의 현재의 어려움을 선진국이 어느 정도 이해하고 또 지원할 용의가 있는가에 따라 본 Task Force의 역할이 좌우될 것으로 보임.



5. 제5차 회의(1980.10.29.~30., 멕시코 아카풀코)

- 대표: 신명호 재무부 국제금융과장
- 제5차까지 Task Force 작업 결과를 Semi-Final Report로 작성, 1981.5월 개발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함.

ADB(아시아개발은행) 총회 제13차 및 김원기 재무장관 미국 방문, 1980.4.30.-5.13.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2010-66 / 14 / 1-82

정부는 1980.4.30.~5.2. 마닐라에서 개최된 제13차 ADB(아시아개발은행) 총회에 김원기 재무부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총회 참가 필요성

- 한국은 ADB에 거액을 출자한 역내 회원국(4억 3,500만 달러 출자, 출자순위 5위)으로서 경제개발 소요외자의 상당부분을 ADB 차관도입에 의존하고 있음.
- 한국은 한국을 대표하는 ADB 정위원인 재무부장관이 금번 회의에 참가하여 한국의 ADB 차관도입을 협의하고 ADB 정책에 대한 한국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함.

2. 주요 토의 및 협의사항

- ADB 정책, 한국의 ADB 차관도입 문제, 한국의 ADB에 대한 출자금 증액 및 기술원조특별기금 출연 문제, 기타 국제경제상 한국의 현안 문제 협의 등

3. 수석대표 활동 내용

- 주요 금융인사 면담
 - Yoshida ADB 총재, 총회 의장인 Virata 필리핀 재무장관, Kaputin 파푸아뉴기니 재무장관, Wardhana 인도네시아 재무장관, Takeshita 일본 대장상, Tun Thin IMF 아시아국장, Husain IBRD 부총재 등을 면담하여 앞으로의 국제금융기구의 역할 증대 필요성과 ADB의 융자정책 등에 관하여 논의함.
- 기조연설(1980.5.1.)
 - 에너지 가격의 불안정, 고유의 인플레이, 지속되어온 경기 후퇴, 국제수지 불균형 등 세계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ADB와 같은 국제개발 금융기구의 역할이 중대함을 강조함.
 - 이를 위하여 ADB의 재원을 보충하여 회원국에 대한 재원이전을 증대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고 융자대상의 다양화를 포함한 ADB 융자정책의 개선을 촉구함.
 - 또한 자원개발, 기술이전 및 무역증진 분야에서의 역내 협력 기능의 강화를 주장함.

4. 미국 방문 계획

- 방문 기간: ADB 총회 종료 후부터 AfDB(아프리카개발은행)/AfDF 총회 참석까지의 기간
 - AfDB / AfDF 총회가 연기됨에 따라 대표단은 미국 방문 후 귀국함.
- 방문지역: 뉴욕 및 샌프란시스코



- 방문 필요성
 - 10·26 사태 이후 한국의 경제적, 정치적 상황에 대한 우려를 해소시켜 한국에 대한 신뢰회복과
순조로운 협력관계를 다짐
 - 석유가격 앙등, 선진국의 경기 후퇴 등으로 인한 한국의 국제수지 적자 증대를 보전할 해외차입
추진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Panel member 선정

생산연도 1979-1980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2010-66 / 15 / 1-18

1979~80년 중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심판관 단(Panel Members) 선정 관련 한국 위원 추천에 대한 내용임.

1. 추천 요청

- MTN(다자간무역협상) 결과 채택된 “분쟁해결에 관한 협약” 제13조에 따라 GATT 사무총장은 앞으로 GATT 내에서 발생될 각종 무역 분쟁의 조정과 해결을 담당할 심판관 단을 구성해 두고 특정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분쟁 당사국과의 협의에 의하여 적절한 심판관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음.
- 동 심판관 단은 각국 정부 공무원 또는 비정부 관계인사로 구성하게 되어 있으며, 정부 공무원의 경우 각국 정부에서 적격인사 1~2명을 선정, 사무총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음.
- 이에 따라 GATT 사무총장은 각 회원국 정부에 대하여 심판관 단을 선정해 줄 것을 요청하여 옴.

2. 위원 추천

- 1980.2.15. 한국 정부는 MTN 분쟁해결에 관한 양해협약 제13조에 따른 심판관 단 적격자로 이기주 주제네바대표부 참사관과 김철수 상공부 통상진흥관을 선정, GATT 사무국에 통보함.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MTN(다자간무역협상) 협정 가입 대책 및 주요국 가입 동향. 전2권 (V.1 1979.1-7월)

생산연도 1979-1980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2010-67 / 1 / 1-210

1979.1~7월 중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MTN(다자간무역협상) 협정 타결, 가입 대책 및 주요국 가입 동향 관련 내용임.

1. 도쿄라운드 MTN 타결

- 합의의정서 채택: 1979.4.12., 제네바
- 결의: GATT / TNC(무역협상위원회)
- 합의의정서 요지
 - 협상의 실질적 종결에 합의: 협정 Package(12개 협정) 채택
 - 의정서에 서명 후 각국은 협정 가입을 위한 국내 절차를 취함.
 - 일부 협정에 대해서만 가입의사 표시 가능
 - 미타결된 세이프가드 협약안 협상 계속(7.15.까지)
- 선진국 반응
 - 교섭결과에 만족 표명. 미국, 일본, EC(구주공동체)를 위시한 서방 국가 20개국 즉시 서명
- 개도국 반응
 - 교섭결과에 불만족. 개도국 이익보장 실패, 세이프가드, 수량제한 등 각 분야 문제점 지적
- 한국 입장
 - 협정 가입이 한국 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한국의 국제적 위치를 면밀히 분석한 후 대다수 개도국의 움직임을 보아 가입 여부를 최종 결정하고자 함.

2. MTN 협정 가입에 대한 대미국 입장(1979.7월)

- 기본입장
 - MTN 협상결과 채택된 12개 협정이 1980년대의 새로운 세계무역질서가 될 것이며, 한국의 수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주요 협정의 한국에 대한 영향 및 가입 실익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음.
- 가입 여부 및 가입 시기
 - 한국의 최종 가입 여부는 협정별 검토결과를 기초로 결정될 것이나, MTN 협상에서 미타결 중인 GATT 제19조 세이프가드 협상의 향배에 크게 좌우될 것임.
 - 가입 시기는 개도국 일원으로서의 입장을 고려, 타개도국의 동향을 보아 결정하고자 함.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MTN(다자간무역협상) 협정 가입 대책 및 주요국 가입 동향. 전2권 (V.2 1979.8월-1980)

생산연도 1979-1980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2010-67 / 2 / 1-339

1979.8월~1980년 중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MTN(다자간무역협상) 협정 가입 대책 및 주요국 가입 동향 관련 내용임.

1. MTN 가입 검토 준비회의(1979.8.23.)

- 참가자: 외무부(주관), 재무부, 농수산부, 상공부, 조달청, 공업진흥청 담당과장
- 회의 결과
 - 가입 의견이 확정적인 협정(4개 협정): 정부구매협정, 관세평가협정, 국제표준협정, 관세양허 의정서
 - 연내 가입을 추진함이 좋다는 협정: 관세인하 의정서, 국제표준협정

2. GATT / MTN 협정 가입대책 건의(1979.12월)

- MTN 결과가 성안되고 1979.11.26. 제35차 GATT 총회에서 최종 승인된 10개 다자 간 무역협정 중 한국의 가입이 유리한 관세인하 의정서 및 4개 비관세협정(정부조달, 관세평가, 기술장벽, 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정) 등 5개 협정에 대한 선별 가입을 추진함.
- 기타 2개 비관세협정(반덤핑, 수입허가절차), 농산물협정, 민간항공기협정 등 현재로서 한국의 가입 실익이 없거나, 계속 검토가 필요한 5개 협정에 대해서는 당분간 가입을 보류하거나 시일을 두고 계속 검토하도록 함.
- 각 협정에 대한 구체적 가입 시기는 개도국의 가입 동향을 보아 결정하되, 개도국 일반의 통일된 보조는 기대하기 곤란하므로 한국과 입장이 유사한 브라질, 싱가포르 등 선발개도국과 보조를 같이 하여 시기를 결정하고자 함.
 - 단, 관세인하 의정서와 기술장벽협정에 대해서는 동 협정이 1980.1.1.부터 발효되는 점을 고려, 국내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정식 서명할 것을 조건으로 우선 가서명하고자 함.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MTN(다자간무역협상): 한·아르헨티나 양자협상

생산연도 1979-1980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2010-67 / 3 / 1-45

1. PTN(개발도상국간무역협상의정서)/한·아르헨티나 양허협상 지침(1980.3.20.)

- 양국 교역 실적면에서 1976년 이래 한국이 계속 무역적자를 보이고 있음에 비추어 한국의 양허 요청 품목 모두에 대한 아르헨티나 측의 호의적인 고려를 요청하도록 함.
- 대아르헨티나 양허대상 품목으로는 기존 PTN 양허 품목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함.
 - 단, 기존 양허 6개 품목에 대해서는 아르헨티나로부터의 수입실적이 전무한 관계로 대한민국 수출 주종품목인 냉동오징어, 탈지양모, 소가죽에 대한 양허요청이 예상되고 있음.
 - 탈지양모 및 소가죽에 대해서는 현행 세율 거치 양허가 가능하나, 양허 제시 여부는 협상 실익에 따라 결정하도록 함.

796

2. MTN(다자간무역협상)/한·아르헨티나 양자협상

- 아르헨티나 측 요청으로 1980.6.17. 개최된 제1차 협상 결과
 - 한국 Request List에 대한 아르헨티나 정부의 검토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협상은 별다른 진전이 없었음.
 - 아르헨티나 측은 1971년에 한국이 양허한 6개 품목은 대한민국 교역실적이 전혀 없는 품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무런 혜택이 없음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의 협상은 상호주의에 입각한 양자협상의 형식을 취하여야 할 것이라는 아르헨티나 측 기본입장을 표명함.
 - 따라서 아르헨티나 측은 한국의 Request에 상응하는 대한민국 Request List를 준비 중이라고 하는바, 동 List가 준비되는 대로 재 회합을 갖기로 함.

튀니지의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잠정가입 연장

생산연도 1979-1980

생 산 과 경제기구 / 조약2

MF번호 2010-67 / 4 / 1-73

1. 튀니지와의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잠정가입 선언 연장 수락 건의(1979.12.27.)
 - 1979.11.27. GATT 총회 결의(L/4902)에 따라 튀니지와의 GATT 잠정가입 효력이 1981.12.31.까지 연장된바, 한국이 동국과의 GATT 관계를 1980.1.1. 이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주제네바대사로 하여금 동 Proces-Verbal에 서명할 것을 건의함.
 - 한국은 1977.6월 이래 튀니지와의 GATT 잠정가입 선언, 제10차 연장 의정서 및 제11차 연장 의정서에 각각 서명, 동국과의 GATT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2. 노신영 주제네바대사는 1980.1.11. 한국의 튀니지와의 GATT 관계 연장을 위한 Proces-Verbal에 서명함.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MTN(다자간무역협상): 한·미국 양자협상. 전2권 (V.1 1979.1-2월)

생산연도 1979-1980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2010-67 / 5 / 1-215

1979.1~2월 중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MTN(다자간무역협상) 한·미국 양자협상 관련 내용임.

1. 한·미국 양자협상 제의

- 1979.2.6. 미국 측은 현재와 같은 실무교섭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Political Decision을 위해 2.20.경 한·미국 고위 실무자회담 개최를 요청함.
- 신발류 관세인하 문제: 미국 측은 다소 조정은 가능할지 모르나 전면 고려는 불가능하다는 입장
- 도자기류 관세인하 문제: 미국 측은 일부 품목에 대한 조정 의사 표명

798

2. 한·미국 고위 실무자회담(1979.2.23.~27., 제네바)

- 수석대표
 - 한국 측: 이기주 주제네바대표부 참사관
 - 미국 측: Stephen Lande USTR(미국통상대표부) 협상대표
- 한·미국 양자협상의 잠정 합의문서(Joint Minutes) 서명(2.27.)
 - 각 본국 정부의 사후 승인 조건으로 양국 간 양허내용을 기초로 한·미국 양자협상 타결에 합의
 - 미국 측 수석대표 양해 서한: 대한민국 추가 양허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을 약속. 제3의 주요 공급국과의 협상결과에 의한 양허수정 및 보상조항
- 참고자료: 한국의 대미국 양허표, 미국의 대한민국 양허표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MTN(다자간무역협상): 한·미국 양자협상. 전2권 (V.2 1979.3-80.6월)

생산연도 1979-1980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2010-67 / 6 / 1-156

1979.3~80.6월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MTN(다자간무역협상) 한·미국 양자협상
관련 내용임.

1. MTN/한·미국 양자협상 종결을 위한 잠정 합의

- 한·미국 실무자 회의(1979.11.13., 서울)
 - 참가자: Stephen Lande USTR(미국통상대표부) 협상대표, 한탁채 외무부 국제경제국장, 김철수 상공부 통상진흥관 등
 - 결과: 상호 최종 양허 안에 잠정 합의
- 상기 최종 양허 안은 2.27. 제네바에서 양국 실무대표 간에 서명한 잠정합의 내용에 기초한 것으로 한국의 대미국 양허 내용 중 관세분야와 대미국 양자 간 자유화조치 양허에는 변동이 없음.
 - 다만 조건부 양허로 제시한 바 있는 MTN/Contribution 자유화 품목 172개 중 상공부에서 검토 후 철회한 5개 품목을 제외한 167개 품목이 최종 양허로 확정됨. 동 167개 품목은 양허 시행 후 3년이 되는 1983.1.1. 이후 한국의 재검토 후 철회가 가능하도록 단서를 붙임.

2. MTN / 한·미국 양자협상 합의문서 일부 수정(1980.5.8.)

- MTN의 일환으로 진행되어온 한·미국 양자협상을 종결시키기 위하여 양국 실무대표 간 교환된 합의서한(1979.12.27.자)과 관련, 한국은 동 합의가 양국의 관세양허표가 공히 GATT의 양허표가 되는 일자에 발효하는 것으로 양해한다는 미국 측의 제안에 동의하고자 함.
- 미국 수정제의 골자
 - 합의서한 발효일자: 양국 양허표의 발효일자
 - 한국 비관세 양허 품목의 자유화 시기: 합의서한 발효 이전. 단, 특정연도에 자유화할 것을 표시하여 양허한 품목은 동년도 1.1. 이전에 자유화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총회, 제36차. Geneva, 1980.11.24.-26.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2010-67 / 7 / 1-175

정부는 1980.11.24.~26.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36차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총회에 전상진 외교안보연구원 연구위원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국

- 86개국 및 EC(구주공동체)

2. 주요 의제

- 1980년도 GATT 활동사항 검토
- 1981년도 활동계획 토의

3. 한국대표단 활동사항

- 수석대표 기조연설
 - 대한민국 수입규제조치 완화 및 철폐 촉구
 - 개도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MTN(다자간무역협상) 협정 시행 요구
 - GATT의 무역 분규 해결 기능 강화 필요성 강조
 - 다자 간 섬유협상에서 개도국 요구 반영 긴요
 - 세이프가드 요건 및 절차 엄격 규정 필요
- 사무국 주최 리셉션 참석
 - 신임 사무총장에게 지속적인 대한민국 협조 당부
 - 미국, 일본, 아세안 대표와 의견 교환
- 현지 대표부와 GATT/MTN 현안문제 협의

4. 관찰사항

- 선진국의 보호주의 장기화
- 선발개도국에 대한 차별대우 구체화
- 세이프가드 협상의 조기 타결 난망
- 1981년도 다자 간 섬유협상 난관 예상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CG-18(18개국 자문단) 회의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2010-67 / 8 / 1-40

1980년 중 개최된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CG-18(18개국 자문단) 회의 관련 내용임.

1. 1980.3.3.~4. 회의

- 제35차 총회에서 GATT 상설기구로 승격된 CG-18의 첫 회의로 산업구조 조정과 무역정책 및 North-South Dialogue를 의제로 토의가 진행됨.

2. 1980.10.30.~31. 회의

- 의제 1항 “국제경제 현황과 무역정책”에 있어서 EC(구주공동체) 대표가 전반적으로 국제무역환경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GSP(일반특혜관세제도) 등에 의하여 개도국으로부터의 수입이 확대되고 있으며 보호주의도 억제되고 있다고 말한 후 EC의 대미국, 대일본 무역관계의 마찰현상에 대해 언급함.
- 한국 대표는 코트라가 작성한 자료에 근거하여 최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에 대한 한국 수출의 약 37%가 수입규제대상이 되고 있고 1976년 이후 그 수입규제 비율은 약 2.4배나 증대되었음을 지적함.
 - 또한 선진국 각국별로 총 수출에 대한 규제대상 비율을 설명하여 보호주의가 억제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과 같은 선발개도국의 경우 수출구조가 공업제품으로 다양화됨에 따라 보호주의는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 문제를 심각히 다루어야 할 시점에 도달하였다고 언급함.
- 의제 2항 “산업조정과 무역정책”에 관하여는 Working Party를 구성, 앞으로의 작업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할 것을 이사회에 건의하기로 함.
- 의제 3항 “CG 18”의 앞으로의 작업계획에 포함된 6개 항목에 대해서는 계속 토의하기로 함.

ISO(국제사탕기구) 회의. London(영국)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2010-67 / 9 / 1-25

1980년 중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ISO(국제사탕기구) 회의 관련 내용임.

1. 제9차 특별총회(1980.3.14.~4.1.)

- 대표: 이성주 주영국대사관 서기관
- 주요 결정사항
 - 협정 제62조의 가격 재조정 문제
 - 1977년도 사탕협정상 설탕가격의 Trigger Point를 최소한 2센트 이상 인상하고자 하는 수출국의 입장과 이를 가급적 현 수준에 동결하고자 하는 수입국의 입장이 팽팽히 대립함.
 - 절충안으로서 상기 Trigger Point를 우선 1980.4.1.자로 각각 1센트씩 상향 조정하되, 1980년도 하반기 정기총회에서 동 가격 수준을 재차 검토하기로 하자는 Price Review Committee의 절충안이 Executive Committee를 거쳐 Council에서 최종 합의됨.
 - 협정 제51조의 시행 문제: 7.1.까지 전면 시행할 것을 목표로 제10차 정기총회 시 협정상 규정된 분담금 부담률을 포함한 시행상의 세부사항을 재협의하기로 결정함.

2. 제10차 총회(1980.5.30.)

- 대표: 최낙천 주영국대사관 서기관, 이성주 주영국대사관 서기관
- 주요 결정사항
 - 협정 제51조 시행 문제: 동 규정을 1980.7.1.부터 시행하되, 현 시장정세에 따라 현 재고 비축량이 전무하여 가까운 장래에 재고 비축 재개 전망이 없으므로 동 규정상의 분담금 부담률을 대폭 감액 파운드당 0.02268센트(톤당 50센트)로 결정함.

3. 제11차 총회(1980.11.19.)

- 대표: 최낙천 주영국대사관 서기관
- 주요 결정사항
 - 협정 제62조의 가격 재조정 문제와 관련, 가격 상향 폭을 축소하려는 수입국 측 입장과 인플레이 및 달러화 구매력 감퇴 등 세계경제 사정을 들어 상향 폭을 더욱 확대하려는 수출국 측 입장 간 상호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금번 회의에서 가장 논란이 된 끝에 Executive Committee의 1센트 상향조정 권고안을 총회에서 통과시킴.

IWC(국제소맥위원회) 회의, 제91차. London, 1980.11.24.-27.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2010-67 / 10 / 1-69

정부는 1980.11.24.~27. 런던에서 개최된 제91차 IWC(국제소맥위원회) 회의에 최낙천 주영국대사관 서기관을 정부대표로 파견함.

1. 회의 결과

- 신탁정 체결문제와 관련 1979.10월 Special Committee에서 논의를 시작한 Alternative Approach에 대해 집중 토의함.
- Alternative Approach에 기초한 신탁정을 체결하는데 있어 기술적 타당성에는 동의하면서도 일부 개도국은 Reserve Stock에 따른 재정상 문제점을 설명하였고, 또한 일부 생산국도 국내 정치상 문제점이 있음을 설명, 그 외 다른 문제점도 제기됨.
- 결론을 얻지 못하고 1981.3.3.~6. 특별총회를 개최하여 재 토의하기로 함.

2. 참고자료

- 제91차 IWC 총회 회의 개최 통보 및 잠정 의제(영문)

ICAC(국제면화자문위원회) 총회, 제39차. Manila(필리핀), 1980.11.24.-29.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2010-67 / 11 / 1-79

정부는 1980.11.24.~29.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제39차 ICAC(국제면화자문위원회) 총회에 민형기 주필리핀대사관 참사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회의 참가 목적

- 회원국 간 원면생산, 교역 및 소비에 관한 각종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세계원면시장의 동태를 파악하여 안정된 원면공급시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자 함.
- 특히 최근 원면 가격의 폭등으로 인하여 한국의 주종 수출 품목의 하나인 면제품 생산원가가 상승하고 있으며, 소요 원면 자체의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인바, 주요 생산국과 접촉, 원면 수입선을 다양화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함.

2. 정부 훈령

- 원면 정책에 관한 토의
 - 주요 원면 생산 및 소비국가들의 면화사정과 원면 도입 동향 등을 청취·분석하여 한국의 원면 적기도입 계획 수립 및 수입선 다변화 방안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것
- 한국 원면 사정에 관한 보고
 - 한국의 금년도 원면 도입량이 150만 표에 달하고 있으며 세계 원면의 안정적 수요에 비중을 담당하고 있음을 인식시킬 것
 - 현재 국제 원면 가격의 양등으로 원가상승과 원면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바, 원면 생산국의 공급증대를 통한 가격 안정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음을 주장할 것

CCC(관세협력이사회) 상임기술위원회 회의, 제107-110차. Brussels(벨기에)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2010-67 / 12 / 1-93

1980년 중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제107~110차 CCC(관세협력이사회) 상임기술위원회 회의 관련 내용임.

1. 제107~108차 회의(1980.5.12.~16.)

- 대표: 박귀훈 관세청 수출1과장, 김종환 주벨기에대사관 재무관 외 1명
- 주요 토의내용
 - 세관절차의 간소화와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 해안연안 물품의 운반 부속서 등
 - ATA 협약 적용: 보증청구서는 세관당국과 보증단체 간에 해결해야 할 국내문제로 결론
 - 우편운송: CCC/UPU(만국우편연합) 연락위원회에 관한 일반협정을 계속 적용하기로 합의
 - 세관집행: 마약관리에 관한 유엔기구와의 관계 등
 - 세관행정에 있어서의 컴퓨터의 활용 등

2. 제109~110차 회의(1980.11.3.~7.)

- 대표: 변형 재무부 관세조정과장, 김종환 주벨기에대사관 재무관
- 주요 토의내용
 - 제55~56차 CCC 총회 결정사항 보고: 세관절차의 간소화와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총 30개의 부속서 완료 및 CCC 이사회 승인), 국제 관세용어 해설집 발간 등
 -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사무국 보고: CCC 각종 협약 및 권고사항(한국 대표는 한국이 아직 가입하지 않은 CCC 협약이나 권고에 대하여도 가입을 검토하고 있음을 설명)
 - ATA 까르네 운용: ATA 임시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부과(ATA 까르네 기간까지 관세부과 유예를 검토하기로 합의) 등
 - 우편운송: CCC/UPU 연락위원회에 관한 일반협정을 계속 적용하기로 합의
 - 세관집행: 항공화물 송장의 도난문제 등
 - 세관행정에 있어서의 컴퓨터의 활용 등

CCC(관세협력이사회) 세관감시제도 대표자 회의, 제13차. Ottawa(캐나다), 1980.4.21.-25.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2010-67 / 13 / 1-86

정부는 1980.4.21.~25. 캐나다 오타와에서 개최된 제13차 CCC(관세협력이사회) 세관감시제도 대표자 회의에 엄낙용 재무부 관세제도과장과 강희석 관세청 심리과 사무관을 정부 대표로 파견함.

1. 참가자

- 회원국 중 40개국 대표 61명, 유엔마약국, CCC, 국제경찰기구 등 총 65명

2. 주요 의제

- 상업적 거래와 관련한 세관예의 허위 신고
- 도난당한 항공운송증권
- 자금의 이동
- 마약단속
- 수단과 기법
- 국제 간 협력 증진

3. 회의 결과

- 지난 제12차 회의까지는 주로 마약, 무기, 골동품, 문화재 등에 중점을 두어 밀수방지를 위한 정보교환 협력문제가 주로 논의되어 왔으나, 이번 제13차 회의는 합법을 가장한 서류 등을 위조하여 이루어지는 밀수에 대한 각국 실태가 발표된바, 이에 대한 상호 정보교환을 강조함.
 - 이러한 범죄와 관련하여 자금수단으로서의 통화의 비공식적인 이동이 수반되므로 타국의 세관 검사과정에서 거액의 자금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그 출발 국가에 통보하자는 제안이 한국의 관심사로서 주목할 만한 제안이었음.
- 마약 문제에 대해서는 선진국의 가장 큰 관심사항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토의함.
 - 태국, 인도 등 불법 마약 생산국 대표들은 자국에서 세계 각국에 전파되는 마약밀수에 대하여 유감을 표시하고 이에 대한 정보교환 및 수사협력에 적극적으로 응하겠다는 내용의 발언을 함.
 - 또한 캐나다 대표는 마약 단속의 주무관청이 세관으로부터 경찰로 옮겨져 가고 있는 것 같으면서 캐나다의 인터폴 대표도 참석하여 세관의 적극적인 마약단속 활동을 강조하고 인터폴 간의 협조를 요청함.

CCC(관세협력이사회) 조화제도위원회 회의, 제21-23차. Brussels(벨기에)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2010-67 / 14 / 1-104

1980년 중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제21~23차 CCC(관세협력이사회) 조화제도위원회 회의 관련 내용임.

1. 제21차 회의(1980.5.19.~6.6.)

- 참가국
 - 미국, 영국, 프랑스 등 35개국, EC(구주공동체) 등 10개 국제기구
 - 대표: 김종환 주벨기에대사관 재무관, 김병준 재무부 관세협력과 사무관
- 회의 목적
 - 조화제도사업의 중간 결산 및 재검토
 - 향후 작업 계획 확정
 - 39류, 40류, 50~55류의 품목 분류
- 회의 결과
 - 조화제도사업의 각국 도입을 추진하기 위한 자료 및 발간사업 확정
 - 조화제도 품목분류표의 기본 골격 및 용도 해설: 1981년 상반기까지 완성 배포
 - 조화 CCCN과 현 CCCN의 비교 분석: 1981년 말까지 완성
 - 각국에서 조화 CCCN 관련 자료: 수시 발간하여 회원국에 배포
 - 22개류의 6단위 CCCN 토의
 - CCC 회원국 간 협력대책 구체화: 선진국 관세공무원 훈련과정에 조화제도사업 포함, 회원국 간의 정보교환 채널 모색
 - HS(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의 부호화 방법의 구체적 검토: 6단위로 실시하기로 함.
 - 향후 작업계획 확정

2. 제22차 회의(1980.10.6.~24.)

- 참가국
 - 미국, 영국, 스위스 등 35개국, 10개 국제기구
 - 대표: 손호목 재무부 관세협력담당관, 김종환 주벨기에대사관 재무관
- 회의 목적
 - 조화제도사업의 중간 결산 및 재검토
 - 향후 작업 계획 확정
 - 제44차 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확정(33개류)
 - 56~63류 등 8개류 검토

- 회의 결과

- 조화제도사업의 각국 도입을 추진하기 위한 자료 및 발간사업 확정
 - 조화제도 품목분류표의 기본 골격 및 용도 해설: 1981.2월까지 완성
 - 조화 CCCN과 현 CCCN의 비교 분석: 1981년 말까지 완성
 - 각국에서 조화 CCCN 관련 자료: 수시 발간하여 회원국에 배포
- 41개류의 6단위 CCCN 토의
- CCC 회원국 간 협력대책 구체화: 선진국 관세공무원 훈련과정에 조화제도사업 포함, 회원국 간의 정보교환 채널 모색
- 행정사항: 조화제도위원회 및 CCC 사무국 개편문제, 지역경제협력체의 법적지위 문제
- 향후 작업계획 확정

3. 제23차 회의(1980.12.8.~19.)

- 대표: 김종환 주벨기에대사관 재무관, 김병준 재무부 관세협력과 사무관

CCC(관세협력이사회) 총회, 제55-56차. Brussels(벨기에), 1980.6.16.-20.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2010-67 / 15 / 1-90

정부는 1980.6.16.~20.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제55~56차 CCC(관세협력이사회) 총회에 권태원 재무부 관세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자

- 계약국: 미국, 영국, 일본 등 63개국
- 옵서버: 중국(구 중공) 등 6개국
 - 중국 최초 참석
- 국제기구: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EC(구주공동체), ICC(국제상공회의소) 등 14개 기구

2. 회의 결과

- 기술협약 신규 가입국
 - 레바논: 작업용구, 전시용품, ATA 협약에 가입
 - 폴란드, 스페인: 국제관세법 협약 가입
 - 모로코, 파키스탄: 국제관세법방지협약 가입
- GATT/MTN(다자간무역협상) 관세평가협정 시행대비 세미나
 - 9~10월경 미국·EC 간 시행경험 강의 예정
- 상임기술위 부속서 인준
 - 관세법에 관한 부속서, 내수용품 가공에 관한 부속서 등
- 산하위원회 국장 선출
 - 평가위원회: J. B. O'Loughlin(미국)
 - 상임기술국장: G. D. Gotschlich(독일)
- 차기총회 일정 및 장소: 1981.6.15.~19. 불가리아 바르나

3. 한국 대표 활동사항

- 한국 관세공무원 훈련
 - 1980년: 핀란드, 오스트리아 주최 훈련과정에 각 1명씩 연수하기로 합의
 - 1981년: 독일 주최 훈련과정에 2명 연수하기로 합의
 - 차기총회(불가리아 개최)에 한국 초청: 사무총장으로부터 확인

CCC(관세협력이사회) 평가위원회 및 잠정기술위원회 회의. Brussels(벨기에)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2010-67 / 16 / 1-140

1980년 중 브뤼셀에서 개최된 CCC(관세협력이사회) 평가위원회 및 잠정기술위원회 회의 관련 내용임.

1. 제81~82차 평가위원회(1980.3.10.~14.)

- 대표: 김철진 주제네바대표부 재무관, 최규범 관세청 수입평가과장
- 주요 토의내용
 - 컨테이너 및 포장재에 대한 평가
 - 컴퓨터 자동제어장치에 대한 적절한 평가
 - 이전가격
 - 예시 문제의 주해
 - 운임 문제 등

2. 제2차 잠정기술위원회(1980.3.17.~20.)

- 대표: 김철진 주제네바대표부 재무관, 최규범 관세청 수입평가과장
- 주요 토의내용
 - 사무국에서 작성한 새로운 Information Document의 문제
 - 평가협정의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
 - 협약 적용상의 기술적인 문제 등

3. 제83차 평가위원회(1980.9.22.~26.)

- 대표: 김종환 주벨기에대사관 재무관, 박상태 재무부 관세국 사무관
- 주요 토의내용
 - 평가협약 및 평가에 관한 이사회 권고 가입 현황
 -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휴회 중에 발생한 문제
 - 제55~56차 이사회에 관한 의장의 보고
 - 자동제어장치의 과세가격
 - 이전가격
 - 해설서의 예규화를 위한 예시 문제 등

CCC(관세협력이사회) 품목분류위원회 회의, 제44-45차. Brussels(벨기에)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2010-67 / 17 / 1-200

1980년 중 브뤼셀에서 개최된 제44~45차 CCC(관세협력이사회) 품목분류위원회 회의의 관련 내용임.

1. 제44차 회의(1980.4.14.~25.)

- 대표: 김진배 관세청 수입과장, 김종환 주벨기에대사관 재무관, 정철호 재무부 관세조정과 사무관
- 주요 토의내용
 - 제33차 화학자위원회 결정사항의 인준
 - 제19~20차 조화제도위원회 결정사항의 확정
 - 계류 중인 상품에 대한 품목분류 결정
 - 신상품에 대한 품목분류 결정
 - CCCN 채택 국가 증가
- 한국 대표 활동사항
 - Sir. Ronald CCC 사무총장 예방
 - 핀란드, 오스트리아 관세공무원 훈련에 한국 실무자 포함 요청: 긍정적 답변
 - 조화제도사업 일정 연기 확정: 제20차 조화제도위원회 결정사항대로 조화 6단위 초안은 1981년 하반기에 완성하도록 결정

2. 제45차 회의(1980.11.17.~28.)

- 대표: 김종환 주벨기에대사관 재무관, 신영순 재무부 관세조정과 사무관
- 주요 결정사항
 - 조화제도 품목분류(섬유류 등): 10개 품목 확정
 - 계류 중인 품목분류(조제 식품류 등): 13건
 - 신규 상품에 대한 품목 분류(시계부착 라디오 등): 11건
- 한국 대표 활동사항
 - CCC 사무총장 및 사무차장 예방, 사무국 부국장 면담
 - 품목분류에 대한 한국 입장 발언(치과용 의자 등)

일본의 견직물 수입규제

생산연도 1979-1980

생 산 과 통상1

MF번호 2010-67 / 18 / 1-18

1979~80년 중 일본의 견직물 수입규제 관련 움직임과 주일본대사관의 대응활동 관련 내용임.

1. 견제품 수입규제 움직임

- 1980.5.9.자 일본경제신문은 견제품 수입규제 움직임에 관해 아래와 같은 요지로 보도함.
 - 자민당 내에서 현재 실시 중인 생사의 일원수입을 견제품 수입까지 포함하여 법률로서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바, 이는 생사 견직물 등의 수입증가를 이유로 한 일본 내 생산업자의 요망을 들어 참의원 선거 전에 실현하려는 것으로 5.9. 자민당 내에 잠사 견업 특별위원회를 발족시켜 견사 가격 안정법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금번 회기 내에 국회 성립을 실현한다는 것임.

2. 주일본대사, 사사키 통산대신 면담(1980.5.13.)

- 주일본대사는 1980.5.13. 사사키 통산대신을 방문하여 견직물 수입규제를 위한 의원 입법 움직임은 한·일본 양국관계 발전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하고 금후 그러한 조치가 한·일본 무역 또는 국제무역상에 미치게 될 제반 문제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함.
- 이에 대해 사사키 통산대신은 통산성으로서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동 입법화 저지를 위한 노력을 해왔으나, 동 문제는 5.13. 오전 자민당 정책심의회에서 이례적으로 2시간 반에 걸친 격론 후 일단 당 3역에 일임해 두는 형식으로 낙착되었다고 언급함.

3. 견직물 등 수입에 관한 일본 정부 대책

- 1980.5.16. 최동진 주일본대사관 참사관은 사카이 통산성 생활산업국 심의관을 면담한바, 견직물 등 수입에 관한 일본 정부 대책에 관한 진의를 타진함.
- 통산성 측은 이번 긴급대책은 유사제품, 우회 수입 등 이른바 탈법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에 대해서는 전혀 영향이 없다고 하고 동 대책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함.
 - 유사 견연사 규제: 유사품 규제를 위한 것이며 한국의 수출품목이 아님.
 - '아오다케' 문제: 중국(구 중공) 제품이 문제이며, 한국의 수출품목이 아님.
 - 견 2차 제품: 이는 주로 소폭의 오비 제품(홀치기 제품)과 자수 견직물을 지칭하는바, 한국의 주력 수출품이며, 협정 수량에 포함되지 않음. 이는 사전확인제도를 실시하는 것으로 순전히 수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며, 수입규제 의도는 전혀 갖고 있지 않음.

대중동 중장기 통상증진 대책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통상3

MF번호 2010-67 / 19 / 1-215

1980년 중 대중동 중장기 통상증진 대책 관련 내용임.

1. 정부는 제4차 중동문제 특별대책위원회 회의(1980.11.25.) 결과, 한국의 대이란 및 대이라크 정책을 아래와 같이 결정함.

- 기본적 정책 고려
 - 이란·이라크 전쟁의 어느 일방 당사자에게 전쟁 물자를 공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기존의 중립 정책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취하지 않음.
 - 수출시장 및 원유도입선으로서의 이란과의 관계 증진에 중요성을 부여함.
 - 이라크의 잠재적 가치를 인정하는 동시에, 이란·이라크 전쟁 이래 한국의 중립 정책을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무기 공급 등을 요청해오고 있는 이라크와의 관계 개선을 중장기 대중동 정책의 중요한 목표로 삼음.
- 이란 및 이라크에 대한 군수품 공급
 - 이란: 일반 군수품 수출은 제3국을 경유하여 조용한 방법(해상운송)으로 추진함. 무기류는 전쟁 종료 후로 미루되 상담은 계속 추진함.
 - 이라크: 전쟁 종료 후에 협의한다는 방식으로 상담을 지연시킴.
- 대중동 중장기 정책
 - 종전 후 대이란 및 대이라크 진출대책을 포함한 대중동 중장기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외무부와 중앙정보부는 관계부처의 협조를 얻어 타국(미국, 일본, 서구 국가)의 대중동 관계를 면밀히 참작한 종합계획(안)을 작성하여 차기 대책회의에서 보고함.

2. 외무부는 1980.12.3. 대중동 중장기 통상증진 대책 수립을 위해 중동지역 주재 공관에 아래 사항을 보고하도록 지시함.

- 주재국에 대한 주요 수출품 및 경쟁국의 대주재국 수출증대활동 방안 및 실례
- 한국의 대주재국 유망수출 품목
- 수출증대를 위한 공관의 건의
- 한국의 대주재국 중기(1980~85년) 및 장기(1985~90년) 수출입 계획

3. 각 공관은 상기 관련 주재국의 대중동 중장기 통상증진 대책을 보고한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미국
 - 미국의 경우 민간 기업의 대외경제활동에 관하여 정부의 사전 허가나 사후 통제 및 특별한 지원 없이 자율적 경쟁과 운영에 맡기고 있음.

- 미국은 Trade and Development Program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바, 정부 예산 사업으로 추진하며 대외기술협력의 성격을 갖고 있음. 주요 임무는 특정 사업에 대한 세미나 개최 등을 추진하나, 사실상 추후 동 국가가 여사한 사업을 집행하거나 국제경쟁입찰에 회부하는 경우 미국 정부 재원에 의한 사전 조사 및 미국업계의 입찰 참여라는 형식으로 미국업계에 유리한 결과가 됨.
- 미국의 대중동 경제 진출 대책은 주로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것으로 사우디에는 U.S. Joint Economic Commission, U.S. Army Corps of Engineer와 같은 미국 기관이 있음.

● 일본

- 일본은 완전 민간기업 주도형의 경제 정책을 취하고 있음. 따라서 건설 진출 등에 대해서는 홍보, 자료조사 등에만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건설성은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음.
 - 해외건설촉진기금: 해외건설공사의 국제입찰에 관한 사전조사비의 리스크 부담 경감, 정보 수집 강화, 해외요원 양성 도모 등을 위해 1977.9월 사단법인 해외건설협회 내에 해외건설 촉진기금(2억 엔, 이 중 국고보조금 1억 엔) 설립
 - 영문홍보지 발행: 일본의 건설기술, 건설산업 및 행정에 대해 해외에 소개하고, 해외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해외홍보지를 발행하여 각국 재외공관, 외국 정부 및 국제기관 등에 배포
 - 국제건설기술연구소: 사단법인 국제건설기술협회 내에 1978.7월 국제건설기술연구소를 설치하여 해외건설기술의 개발, 정보수집을 위한 조사, 컨설턴트의 공동체제 정비 수행
 - 1979년도에는 종래의 10개소에 추가하여 새롭게 주이라크 일본대사관에 건설성 출신의 서기관을 배치함.

한·중공 교역 추진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통상3 / 중국

MF번호 2010-67 / 20 / 1-61

1980년 중 한·중국(구 중공) 교역 추진 관련 내용임.

1. 대중국 교역 추진(1980.5.23.)

- 경위: 코트라 초청으로 1980.4.9. 방한한 K. W. Chan 홍콩 Hajaksan Trading Co. 사장과 장성환 코트라 사장 간 대중국 교역을 위한 상담 추진
- 중국의 대한민국 교역 태도
 - Chan 사장에 의하면 그간 중국의 대외무역기관 및 수출입공사 요원들은 한국과의 교역에 대하여 상당히 민감한 거부 반응을 보이다가 작년 말부터 이와 같은 태도를 완화, 중국 상품의 최종도착지가 한국임을 언급해도 그것은 구매자 측의 일로서 간섭할 바가 아니라는 태도를 보임.
 - 중국 관계요원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한·중국 교역 정상화는 2~3년 이내에 가능할 것으로 추정
 - 또한 중국 측은 한국의 경제발전을 높이 평가, 이를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함.
- 상담내용
 - 대중국 수출가능 품목: 시멘트, 비료, 철강재, 합판, 농기구, 모터사이클, 전화기, TV 및 카세트 라디오
 - 대중국 수입가능 품목: 석탄, 농산물, 화공원료, 광산물, 한약재, 유류, 송지유, 역청
 - 상기 품목 중 시멘트, 비료, 합판, 석탄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 상담이 진행되어 가격 등을 제시하고 중국 측 반응은 추후 통보받기로 함.

2. 코트라의 대중국 교역 활동(1980.12.2.)

- 한국 전자전기제품의 베이징 전시회 개최 계획에 대해 홍콩 소재 Hajaksan 상사 Chan 사장과 중국의 전자화학 전시책임자인 주맹기 간에 아래와 같이 원칙적으로 합의함.
 - 원산지의 한국 표시 불가, 상표도 한국적인 것은 Hajaksan의 표시를 부착하는 조건
 - 전시시기: 1981년 중국 춘추교역회 개최 전후(약 1주일 간)
 - 전시제품: TV, 음향제품, 냉방기, 냉장고 등
- 대중국 교역 홍콩 상사단의 방한 유치 계획
 - 대상: 과거 방한 사실 없는 유력상사와 현재 중국에 Joint-Venture를 경영하고 있는 전문상사
 - 시기: 1981년 상반기
 - 인원: 10명 정도

한·쿠바 교역 추진

생산연도 1977-1980

생 산 과 통상2

MF번호 2010-68 / 1 / 1-111

1977~80년 중 한·쿠바 교역, 특히 쿠바산 원당수입 추진 관련 내용임.

1. 쿠바산 원당수입 추진

- 추진 경위
 - 1979.12월 하바나 77그룹 회의에 참석한 주유엔대사는 쿠바 대외무역부 상업정책국장, 쿠바 소비재 수입회사 지배인 및 쿠바 사탕공사 사장 등과 면담한바, 한·쿠바 양국 간의 교역관계 개선 문제를 협의함.
- 협의 내용
 - 쿠바 대외무역부 상업정책국장: 직교역 방식에 의한 대한민국 원당 수출과 한국산 소비재 수입 용의를 표명
 - 쿠바 사탕공사 사장: 한국의 쿠바산 원당구매를 희망하며, 방한 의사 표명
 - 쿠바 소비재 수입회사 지배인 및 쿠바 사장: 한국산 전자제품과 섬유류의 대쿠바 수출이 가능 하다고 언급
- 특수지역 경제교류협의회 회의(1980.1.17.) 결과
 - 원칙적으로 원당수입을 추진하기로 함.
 - 제당협회 초청장을 쿠바 사탕공사 사장 앞으로 발송
 - 원당 수입량, 전담상사 지정, 수출품목 결정 등은 상공부에 일임
 - 주일본대사관으로 하여금 일본 주재 쿠바 대외무역부 출장소와 접촉, 추진하도록 함.

2. 대쿠바 원당수입 추진 현황

- 주유엔대사의 건의에 따라 그동안 주일본대사관을 Contact Point로 하여 삼성물산은 쿠바 대외 무역사무소 측과 접촉, 정책적 수입을 시도했으나, 1980.6월 현재 쿠바 측의 기피로 중단상태에 있음.
- 제3차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중서태평양 수산위원회 회의(1980.11.18.~22., 쿠바 하바나)에 참석한 한국 대표의 보고에 의하면, 대쿠바 원당수입과 관련하여 쿠바 측이 한국 대표에게 의사를 타진하여 온 바 없다고 함.

한·체코슬로바키아 통상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통상3

MF번호 2010-68 / 2 / 1-26

1980년 중 한·체코슬로바키아 간 교역 추진에 관한 내용임.

1. 1980.4.29.주핀란드대사관은 Chemapol 체코슬로바키아 국영화석유회사가 한국의 향생제, 인체용 및 축산용 비타민 등의 수입 가능 여부를 문의해 왔다고 하면서 동 상품의 수출 가능 여부를 외무부에 문의함.
2. 1980.5.27. 외무부는 수출 가능한 향생제, 비타민 등 의약품 리스트를 주핀란드대사관에 통보함.

대한상공회의소·세네갈중앙상공회의소 간의 경제협력 의정서 체결

생산연도 1979-1980

생 산 과 통상3

MF번호 2010-68 / 3 / 1-33

1979~80년 중 대한상공회의소·세네갈중앙상공회의소 간 경제협력 의정서 체결에 관한 내용임.

1. 1979.4.22. 생고르 세네갈 대통령의 방한 계기 대한상공회의소는 한·세네갈 민간경제협력 확대 일환으로 세네갈중앙상공회의소에 경제협력 의정서 체결을 제의하고 문안을 제시함.
2. 1980.6.25. 세네갈중앙상공회의소 측은 절충안을 제시함.
3. 1980.8.11. 대한상공회의소 측은 상기 절충안에 동의하고 의정서에 서명함.
4. 1980.9.24. 세네갈중앙상공회의소 측은 상기 의정서에 서명함.

[1978.2.7.자] 한·미국 간의 면직물·모직물·인조섬유직물 및 직물제품의 교역에 관한 협정의 시행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통상2

MF번호 2010-68 / 4 / 1-118

1980.8.4.~6.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한·미국 섬유협정 운영실무회의의 관련 내용임.

1. 수석대표

- 한국 측: 장석환 상공부 통상진흥국 미주통상과장
- 미국 측: D. McConville 국무부 섬유과장

2. 주요 의제

- 1980.4.3.~8. 서울에서 개최된 한·미국 간의 면직물·모직물·인조섬유직물 및 직물제품의 교역에 관한 협상에서 합의한 내용
 - 한국산 Down-Filled 의류의 1979년도 대미국 수출 실적 확정 문제
 - 한국산 범포(Cat 319), 기타 단섬유사(Cat 604) 협의
 - 한국산 스웨터(Cat 645, 646)의 쿼터 증량 문제, 한·미국 간 통계 차이 문제

3. 주요 결과

- Down-Filled 의류의 규제 수준에 합의함.
 - 1979년 실적: 1,951,957PCS
 - 1980년 규제수준: 2,342,348PCS
- 1980년 섬유 규제수준에 합의함.
 - Cat 319: 12,000,000SYD
 - Cat 604: 2,000,000SYD
- 1978년과 1979년 통계 차이를 인정함.
 - 1978년도 실적 중 통계 차이가 큰 12개 품목에 대해 여타 품목과 같이 양측 통계의 중간치를 1978년 실적으로 확정함.
 - 1979년도 실적 중 통계 차이가 큰 Cat 351, 647, 651, 669 등에 대해서는 통계 차이의 원인을 검토하기로 함.

대동구권 교역 추진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통상3 / 동구
MF번호	2010-68 / 6 / 1-157

1980년 중 정부의 대동구권 교역 현황 및 추진 방안임.

1. 필요성

- 대동구권 관계 개선을 위한 유리한 여건 조성
 - 동구권 국가(8): 유고, 동독, 폴란드, 소련, 체코,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 한국 상품 시장의 다변화, 에너지 자원 등 원자재 도입의 다변화 추진

2. 대동구권 교역 추진을 위한 정부의 법령 정비

- 1972.10.30. 무역거래법 제2조를 개정(법률 제2407호)하여 공산권과 수출입 행위 가능
- 1973.6.23. 평화통일 외교정책 선언
- 8.20. 선박기항에 관한 교통부 훈령(제418호)을 개정하여 공산권선박의 한국항 입항 및 한국 선박의 공산권 입항, 기항이 가능
- 1980.1월 무역거래법 시행령 제1조를 개정하여 코트라가 공산권과 직접 수출입 행위 가능
- 10.6. 정부는 대동구권 관계 개선을 위해 책임 공관을 지정
 - 유고담당 책임 공관: 주프랑스대사관, 주영국대사관 등 7개 공관
 - 루마니아담당 책임 공관: 주프랑스대사관, 주제네바대표부 등 5개 공관

3. 대동구권 교역 현황

- 공산권 국가들의 정치·경제 비분리 원칙을 고수하여 정부는 일본, 홍콩 등 자유진영 상사를 중개로 간접교역을 추진
 - 1978년: 수출 812만 달러, 수입 2,132만 9천 달러
 - 1979년(중국(구 중공), 베트남 제외): 수출 809만 2천 달러, 수입 3,902만 7천 달러

4. 대동구권 교역 문제점

- 경제적 제약
 - 바터 무역제도 등 무역제도상의 차이, 동구 국가의 외화 부족, 시장의 이질성으로 인한 제약
 - 동구 국가의 경제개발계획에 따른 중화학공업 제품의 우선 수입 정책으로 대서구 국가 소비 제품의 수입 억제
- 정치적 제약
 - 북한의 방해공작, 공산권 국가들의 정치·경제 비분리 원칙 고수

5. 교역 증진 방안

- 동서 교역 중심지(핀란드 등)에 현지 법인체 설립 등 간접교역의 확대
- 한국 민간상사와 공산권 상사의 현지 합작사업 등 직교역 추진

대동구권 교역 추진을 위한 현지 법인체 설립 문제

생산연도 1979-1980

생 산 과 통상3

MF번호 2010-68 / 7 / 1-146

1979~80년 중 대동구권 교역 추진을 위한 정부의 현지 법인체 설립 검토 내용임.

1. 1979.11월 스웨덴 거주 양윤근 교포는 대동구권 교역 추진을 위한 현지 법인체(암스테르담, 자본금: 정부 특별기금 100만 달러) 설립을 골자로 하는 대정부 건의서를 주스웨덴대사관을 통해 제출함.
2. 1979.12.1. 정부는 유고, 헝가리, 루마니아, 폴란드 등 동구 국가의 대외무역기관과 접촉한바, 한국과의 통상관계 발전 방안, 현지 법인체의 설립 방안 연구 목적으로 1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함.
3. 1980.7.4. 양윤근 씨는 상기 법인체 설립을 위해 정부의 지급 보증에 의한 외환은행 200만 달러 지원을 요청한바, 9.8. 정부는 재정 지원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주스웨덴대사관에 통보함.

한·호주 및 한·뉴질랜드 통상장관회담. 전3권 (V.1 사전준비)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통상1

MF번호 2010-68 / 8 / 1-209

1980.8월 중 개최된 한·호주 및 한·뉴질랜드 통상장관회담을 위한 준비 자료임.

1. 대표단 임명

- 수석대표: 신병현 상공부장관

2. 주요 일정

- 뉴질랜드(1980.8.4.~9.)
 - 제11차 한·뉴질랜드 통상장관회담, 제2차 한·뉴질랜드 민간경제합동회의 개최
 - 수상, 국회의장 예방, 산업시찰
- 피지(1980.8.9.~12.)
 - 수상 예방, 상공부장관, 농수산부장관 면담, 산업시찰
- 호주(1980.8.12.~16.)
 - 제11차 한·호주 통상장관회담, 제2차 한·호주 민간경제합동회의 개최
 - 수상 예방, 산업시찰

3. 한·호주 및 한·뉴질랜드 통상장관회담 의제(안)

- 양국 간 교역 현황, 교역 증대 가능성 검토(한국 측 관심 품목, 호주 측 관심 품목)
- 양국 교역제도, 경제협력(어업협력, 자원협력)
- 기타(민간경제협력위원회 활동 지원 등)

한·호주 및 한·뉴질랜드 통상장관회담. 전3권 (V.2 결과보고)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통상1

MF번호 2010-68 / 9 / 1-266

1980.8월 개최된 한·호주 및 한·뉴질랜드 통상장관회담 결과 및 관련 자료임.

1. 제11차 한·뉴질랜드 통상장관회담(1980.8.7.~8., 웰링턴)

- 수석대표
 - 한국 측: 신병현 상공부장관
 - 뉴질랜드 측: Talboys 외무장관 겸 대외무역장관
- 주요 결과
 - 양국 간 무역 불균형 시정 및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체결 추진에 합의
 - 뉴질랜드 측은 국제입찰에 한국 참여를 위한 협조를 약속하고 자국의 경제개발계획(약 40억 달러)에 한국기업의 참여를 환영함.
 - 뉴질랜드 측은 뉴질랜드 경제수역 내 한국어선의 조업 조건 개선을 고려하기로 하였으며, 한국은 뉴질랜드산 낙농제품 및 젖소의 수입을 검토하기로 함.

2. 제11차 한·호주 통상장관회담(1980.8.14.~15., 캔버라)

- 수석대표
 - 한국 측: 신병현 상공부장관
 - 호주 측: Anthony 부수상 겸 통상자원상
- 주요 결과
 - 양국 간 무역 불균형 시정에 합의
 - 호주 내 자원개발 및 원자재 가공 합작 투자의 조기 실현을 위한 양국 정부의 지원에 합의
 - 호주의 대한민국 수입규제 완화 고려: 섬유류, 철강제품, 신발류 등
 - 호주 측은 경제개발계획(약 300억 달러)에 한국기업의 자본 참여를 희망함.

한·호주 및 한·뉴질랜드 통상장관회담. 전3권 (V.3 자료)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통상1

MF번호 2010-68 / 10 / 1-220

1980.8월 중 개최된 한·호주 및 한·뉴질랜드 통상장관회담 관련 자료임.

1. 피지 경제 현황(1978.5.25., 시드니무역관)

- 개관, 경제 사정, 산업 동향, 무역 동향, 경제협력의 가능성

2. 상공부장관의 피지 방문자료(1980.6.24., 주호주대사관)

- 피지 경제 현황(총괄자료)

824

3. 한·호주 및 한·뉴질랜드 통상장관회담, 상공부장관의 피지 방문자료(1980.6.25., 외무부 통상1과)

- 회담 의제, 양국 간 경제협력 및 기타사업 추진 현황
 - 한·호주 관계, 한·뉴질랜드 관계, 한·피지 관계

4. 제11차 한·뉴질랜드 통상장관회담 자료(1980.7월, 주뉴질랜드대사관)

- 회담 의제, 현안문제, 1980년도 뉴질랜드 경제 전망 및 주요 경제 정책
- 뉴질랜드 경제개발계획 추진 현황, 수출 동향 분석, 신규 유망 품목 검토

한·벨기에 통상장관회담, 제6차. 서울, 1980.11.1.-5.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통상2

MF번호 2010-68 / 11 / 1-214

제6차 한·벨기에 통상장관회담이 1980.11.1.~5. 서울에서 개최됨.

1. 개최 경위

- 1980.1.21. 주한 벨기에대사관 측은 1980.11월 제6차 한·벨기에 통상장관회담의 서울 개최를 제의하였으며, 한국 측은 이에 동의함.

2.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서석준 상공부장관
- 벨기에 측: 로벨 위르벵 대외통상부 장관

3. 주요 의제

- 통상부문: 양국 통상 현황 검토, 수입 자유화, 수입규제 완화
- 경제협력 증진방안: 제3국 공동 진출 방안 등
- 기타: 원자력협정 체결 추진, 항공분야 협력, 벨기에의 대한민국 주요 프로젝트 참가 문제

4. 회의 결과, 아래 요지의 공동성명서에 서명함.

- 교역관계 확대에 합의하고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의 세이프가드와 MFA(다자간섬유 협정) 협상에서 상호 만족할 수 있는 해결책을 강구하기로 함.
- 벨기에 측은 한·EC(구주공동체) 간 협력협정 체결을 지원하기로 하고, 한국의 금속, 화학, 전자 및 엔지니어링 분야에 벨기에기업의 참여를 희망
- 양국 금융기관 간의 협력 증진, 양국 연구기관 간의 자매결연, 과학 및 기술 정보교환, 전문가 교환, 공동연구, 제3국 시장의 공동진출 등에 합의
- 한·벨기에 원자력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정에 가서명하고, 제7차 한·벨기에 통상장관회담은 1981년 벨기에에서 개최하기로 함.

한·자메이카 상공장관회담, 제3차. 서울, 1980.4.13.-17.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통상2 / 중미

MF번호 2010-68 / 12 / 1-61

W. Isaacs 자메이카 상공장관이 비공식으로 개최된 제3차 한·자메이카 상공장관회담 참석을 위해 1980.4.13.~17. 방한함.

1. 경위

- 1978.10월 H. Clarke 자메이카 상공장관 방한 시 한·자메이카 간 연례 상공장관회담 개최에 합의
- 1979.4월 킹스턴에서 제2차 한·자메이카 상공장관회담 개최
- 1980.3.4. 자메이카 측은 제3차 한·자메이카 상공장관회담의 서울 개최를 희망한바, 한국 측은 W. Isaacs 자메이카 상공장관을 방한 초청함.

2. 방한 목적

- 제3차 한·자메이카 상공장관회담 참석, 서울 춘계 교역전 참관
- 자메이카 정부 소유 2개의 직물공장에 대한 한국기업의 투자 협의

3. 주요 일정

- 상공부장관, 외무부차관, 경기원차관, 무역협회 회장, 대한상의 부회장 등 면담
- 상공부장관 주최 만찬, 공장 시찰, 한국 섬유업체 상담, 춘계 교역전 참관, 경복궁 관람

한·말레이시아 통상장관회담. Kuala Lumpur, 1980.4.1.-3.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통상1

MF번호 2010-68 / 13 / 1-214

한·말레이시아 통상장관회담이 1980.4.1.~3.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됨.

1. 경위

- 1979.7월 말레이시아 수상 방한 시 한·말레이시아는 양국 간 경제관계 고위급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한바, 정부는 1980.4월 쿠알라룸푸르에서 한·말레이시아 간 통상장관회담 개최를 제의함.

2. 수석대표

- 한국 측: 정재석 상공부장관
- 말레이시아 측: Mahathir Bin Mohamad 부수상 겸 통상공업장관

3. 주요 의제

- 양국 교역 현황 및 교역증대 가능성 검토
- 경제협력: 합작투자 촉진, 말레이시아 경제개발 참여
- 민간경제협력위원회 설립 및 활동 지원

4. 회의 결과

- 말레이시아 측은 한국 방산품에 대한 수입 확대 의사를 표명
- 한국기업의 대말레이시아 합작 투자에 대한 말레이시아 정부의 지원을 약속
- 양국 간 경제협력위원회 설치에 합의 및 한국기업의 말레이시아 경제개발 참여 추진

5. 참고자료

- 회담 의제 및 현안문제, 말레이시아의 주요 경제 정책, 말레이시아 경제개발계획 추진 현황, 양국 협력 가능 분야, 건의사항

한·필리핀 통상장관회담, 제2차 및 서석준 상공장관 말레이시아·중국 방문, 1980.11.16.-26.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통상1

MF번호 2010-68 / 14 / 1-205

서석준 상공부장관이 1980.11.16.~26. 필리핀, 말레이시아, 대만(구 자유중국)을 방문함.

1. 순방 일정

- 말레이시아(11.16.~18.)
 - Mahathir 말레이시아 부수상 겸 통상공업장관 면담, Hussein bin Onn 수상 예방
- 필리핀(11.19.~22.)
 - 제2차 한·필리핀 통상장관회담 개최, Marcos 대통령 예방, Ongpin 공업장관 면담
- 대만(11.23.~26.)
 - 장광세 경제부장 면담, 장경국 총통 예방

2. 방문 목적

- 말레이시아: 양국 간 통상 증진 및 석유화학분야 합작 방안 모색
- 필리핀: 제2차 한·필리핀 통상장관회담 개최
- 대만: 산업 현황 파악 및 협력 방안 모색

3. 주요 결과

- 말레이시아
 - 양측은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추진 중인 합작사업(Perak 말레이시아 시멘트 공장, 1억 7천만 달러)을 지원하기로 함.
 - 한·말레이시아 연례 통상장관회담 개최에 합의하고, 자동차 조립공장 등 합작사업 증진을 위해 공동노력하기로 함.
- 제2차 한·필리핀 통상장관회담(1980.11.19.)
 - 양국 교역 확대 노력에 합의하고, 상호 보완성에 입각한 경공업분야 합작모색 방안을 모색하기로 함.
 - 양국 간 무역 정보 및 요원 교류에 합의
- 대만
 - 양국 간 통상 확대 및 경제협력 강화, 대일본 무역 역조 시정을 위한 공동노력에 합의
 - 특정 산업 내에서의 비교 우위에 입각한 국제 분업을 추진하기로 함.

한·싱가포르 [통상] 각료회담, 제1차. Singapore, 1980.3.27.-31. 전2권 (V.1 기본문서집)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통상1

MF번호 2010-68 / 15 / 1-239

제1차 한·싱가포르 통상각료회담이 1980.3.27.~28. 싱가포르에서 개최됨.

1. 경위

- 1979.10월 이광휘 싱가포르 수상의 방한 시 한·싱가포르 간 연례 통상각료회담 개최에 합의함.

2. 수석대표

- 한국 측: 정재석 상공부장관
- 싱가포르 측: 고촉통 무역공업장관

3. 주요 의제

- 양국 교역 현황 및 교역증대 가능성 검토: 한국 측 관심품목, 싱가포르 측 관심품목
- 합작투자 확대 등 협력 증진
- 기타: 해운협정 체결, 국제무역협상에서 공동보조, 민간경제협력위원회 설립

4. 회의 결과

- 양측은 최근 5년간 양국 간 교역규모가 4배로 확대된 것에 만족을 표명하고 앞으로 통상증대, 경제협력을 강화하기로 함.
 - 양국 간 해운협정 체결 및 민간교류 추진, 국제무역협상에서 공동보조 노력, 한·싱가포르 통상 각료회담의 테두리 내에 실무자회의 개최에 합의함.
- 싱가포르 측은 한국의 대싱가포르 투자진출을 요망하고, 자국의 지하철건설 사업에 한국기업의 참여를 환영함.

한·싱가포르 [통상] 각료회담, 제1차. Singapore, 1980.3.27.-31. 전2권 (V.2 자료집)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통상1

MF번호 2010-69 / 1 / 1-341

1980.3.27.~28.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1차 한·싱가포르 통상각료회담 관련 자료임.

1. 한·싱가포르 통상장관회담(상공부)

- 회의 개요
 - 목적 및 장소, 대표단 명단
- 의제
 - 양국 간 교역 현황 검토, 교역증대 가능성 검토, 통상협력, 경제협력, 기술협력 등
- 참고자료
 - 싱가포르의 일반사항, 한·싱가포르 관계, 한국의 수출입 현황, 한국기업의 지사 설치 현황
 - 한국의 수입자유화, 환태평양 공동체 구상 현황, 북한과 싱가포르 관계

2. 한·싱가포르 연례 각료회의 자료(주싱가포르대사관)

- 회의 의제안 및 현안문제
- 싱가포르 경제개발 추진 현황
- 양국 간 경제협력 가능 분야
- 통계자료(싱가포르의 일반 경제개황, 싱가포르의 주요국별 교역 현황)

한·EC(구주공동체) 간의 섬유류 교역에 관한 협정 운영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통상2

MF번호 2010-69 / 2 / 1-19

1980.7.2.~3. 브뤼셀에서 개최된 한·EC(구주공동체) 섬유 쿼터회담 관련 내용임.

1. 수석대표

- 한국 측: 허승 주벨기에대사관 참사관
- EC 측: Boisson EC 집행위원회 섬유담당관

2. 주요 협의 내용

- 1980년도 품목별 쿼터 증량 합의
 - 품목 간 특별전용: 독일(편직운동복, 남자 외의류 등), 프랑스(텐트), 베네룩스(편직외의류), 영국(편직운동복)
 - 품목 내 국별 쿼터 재조정: 독일(편직장갑, 어망), 영국(손수건, 모직물)
- 대영국 아크릴사(Cat 22)의 최저가격제 설정 문제 관련 한국은 대영국 아크릴사 수출가격을 인상하여 수출하도록 한국업체에 행정지도할 것을 약속함.
- 손수건(Cat 19) 및 텐트(Cat 91)의 이중규제단위 철폐 관련 EC 측은 현 단계로는 불가하나, 철폐를 반대하는 회원국 설득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함.

3. 평가

- 정부는 상기 회담에서 독일, 영국의 협조로 450만 달러의 수출증대 효과를 얻었으나, 수출 전망이 좋은 프랑스, 이탈리아 경우 쿼터 증량이 거의 없음.

4. 대영국 Cat 22 섬유 쿼터 운영 관련 업계 행정 지도

- 상공부는 상기 회담 결과에 따라 1980.7.21. 아크릴사 관련 수출조합 및 업체 담당자 등에게 대영국 아크릴사 수출에 있어 아래와 같이 행정 지도를 실시함.
 - 아크릴사 수출 상사들이 저가 덤핑을 하지 않기로 정부 당국에 약속함.
 - 관련 수출조합에서 대영국 수출가격 추이의 체크 및 대업체 행정 지도를 실시하기로 함.
 - 대영국 Cat 22 Open Quota를 대영국 수출가격이 높은 상사에 우선 배정하기로 함.
- 상공부는 1980.7.29.자로 관련 조합에 상기 취지를 공문으로 시행함.

한·핀란드 섬유 [쿼터]회담. Helsinki, 1980.2.26.-27. 전2권 (V.1 사전준비)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통상2

MF번호 2010-69 / 3 / 1-165

1980.2.26.~27. 헬싱키에서 개최된 한·핀란드 섬유 쿼터회담 관련 내용임.

1. 개최 경위

- 1967.4.13. 한국은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에 가입하면서 핀란드와 ROU(양해각서, Record of Understanding)를 체결함. 동 ROU에 의거, 핀란드 측은 한국산 직물류가 핀란드 시장을 교란한다고 판단할 경우 일방적 수입제한조치를 취할 수가 있음.
- 1976.4.13. 핀란드 정부는 한국산 직물류 46개 품목에 대해 수입허가제를 실시하였으며 한국산 직물류의 대핀란드 수출은 매년 감소함.
- 1977년부터 정부는 ROU가 MFA(다국간섬유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ROU 폐기 및 양자 쿼터로의 전환을 핀란드 측에 요청함.
- 핀란드 측은 한·핀란드 섬유쿼터회담 개최를 제의한바, 양측은 동 회담을 1980.2.26.~27. 헬싱키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함.

2. 대표단 임명

- 노재원 외무부 통상국장 등 6명

3. 정부의 교섭 지침

- 상기 ROU에 기초한 핀란드 정부의 대한민국 섬유류 수입허가제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ROU 폐기
- 핀란드 측이 자국 시장의 협소를 이유로 규제가 필요할 경우 MFA 제4조에 의거 양자 쿼터협정을 체결하고 모든 품목의 규제 단위는 물량 규제로 함.

한·핀란드 섬유 [쿼터]회담. Helsinki, 1980.2.26.-27. 전2권 (V.2 결과보고 및 자료)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통상2

MF번호 2010-69 / 4 / 1-161

한·핀란드 섬유회담이 1980.2.26.~27. 헬싱키에서 개최됨.

1.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노재원 외무부 통상국장
- 핀란드 측: Pajari Erkki 외무성 고문

2. 주요 합의사항

- 규제기간: 1980.5.1.~82.12.31.
- 1980년 쿼터 품목(7개): 양말, 편직 의의류, 남자 코트, 남자 자켓, 드레스, 블라우스, 남자 셔츠
- 융통성 조항: 전용 5%, 조상 5%

3. 주요 성과

- 1976년 이후 핀란드 정부가 한국산 전 섬유류에 대해 일방적으로 실시해온 수입규제의 근거가 된 양국 간 ROU(양해각서, Record of Understanding, 1967.4.13. 체결)를 폐기하고 신규 양자 섬유쿼터협정을 체결함.
- 1976년 이후 핀란드 정부가 실시해온 CCCN 4개 기준 46개 품목에 대한 일방적 수입규제를 해제하여 자유화하고, 핀란드의 민감 품목인 5개 품목에 대해서만 쿼터를 설정하여 한국은 섬유류 수출확대 기반을 마련함.

4. 참고자료(1980.2.25., 주핀란드대사관)

- 한국대표단의 방문 일정, 대표단 명단, 핀란드의 무역 동향, 대핀란드 섬유류 수출 문제 등

1980년도 한·일본 생사류회담, 제1차. 서울, 1980.6.18.-19.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통상1

MF번호 2010-69 / 5 / 1-102

제1차 한·일본 생사류회담이 1980.6.18.~19. 서울에서 개최됨.

1. 경위

- 정부는 1979년 대일본 생사량 수출 쿼터 기간이 1980.3.31.자로 만료됨에 따라 1980년 대일본 생사류(생사, 견연사, 견직물) 수출 쿼터량 합의를 위해 1980년 초 한·일본 생사류회담 개최를 추진

834

2.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김정훈 외무부 통상국장
- 일본 측: 와다나베 고지 외무성 공사

3. 정부 훈령

- 생사, 견연사의 대일본 수출 물량은 국내 공급능력을 감안, 전년도 수준보다 하향 조정하되, 견직물은 전년도 수준을 확보할 것
- 일본 측이 1980.5.26.부터 일방적으로 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견(Silk) 2차 제품에 대해 사전확인제를 실시하고 있는바, 사전확인제의 철폐를 주장할 것

4. 주요 결과

- 한·일본 간 이견으로 성과 없이 끝나고 차기 회담을 일본 도쿄에서 1980.9월 중 개최하기로 합의함.

1980년도 한·일본 생사류회담, 제2차. 동경, 1980.9.16.-17.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통상1

MF번호 2010-69 / 6 / 1-91

제2차 한·일본 생사류회담이 1980.9.16.~17. 도쿄에서 개최됨.

1. 경위

- 1980.6.18.~19. 서울에서 개최된 제1차 한·일본 생사류회담에서 제2차 생사류회담을 도쿄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함.

2. 의제

- 1980년도 정부의 대일본 생사류(생사, 견연사, 견직물) 수출 쿼터 물량

3.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김정훈 외무부 통상국장
- 일본 측: 하세가와 가츠토시 외무성 공사

4. 정부 훈령

- 생사, 견연사의 대일본 수출 물량은 전년도 대비 하향 조정하되, 견직물은 전년도 수준을 유지
- 일본 측이 1980.5.26.부터 견(Silk) 2차 제품에 대해 사전확인제를 실시하고 있는바, 사전확인제의 철폐 또는 한국산 제품의 대일본 수출에 지장이 없도록 요청할 것

5. 주요 결과

- 한·일본 간 이견으로 성과 없이 끝나고 차기 회담을 서울에서 1980.11월 중 개최하기로 합의함.

1980년도 한·일본 생사류회담, 제3차. 서울. 1980.11.14.-15.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통상1

MF번호 2010-69 / 7 / 1-47

제3차 한·일본 생사류회담이 1980.11.14.~15. 서울에서 개최됨.

1. 경위

- 1980.9.16.~17. 도쿄에서 개최된 제2차 한·일본 생사류회담에서 제3차 생사류회담을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함.

2. 의제

- 1980년도 정부의 대일본 생사류(생사, 견연사, 견직물) 수출 쿼터 물량

3.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김정훈 외무부 통상국장
- 일본 측: 하세가와 외무성 참사관

4. 주요 결과

- 한국 측은 생사류회담이 조기 타결되지 않아 관계 업계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으며, 최근 악화 일로의 양국 간 무역역조의 시정을 촉구
- 양측은 생사, 견연사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고 계속 협의하기로 했으며, 한국 견직물의 대일본 수출 실세가 일본 시장에 손해를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견해를 같이함.

1980년도 한·일본 생사료회담, 제4-5차. 동경

생산연도 1980-1981

생 산 과 통상1

MF번호 2010-69 / 8 / 1-51

1980~81년 중 개최된 한·일본 생사료회담 관련 내용임.

1. 제4차 한·일본 생사료회담(1980.12.18.~19., 도쿄)

- 목적
 - 1980.11월 제3차 한·일본 생사료회담에서 미합의된 대일본 견직물 수출 쿼터 협의
-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김재정 농수산부 농특사업국장
 - 일본 측: 시무라 농림수산성 심의관
- 상호 이견으로 별 성과 없이 끝남.

2. 제5차 한·일본 생사료회담(1981.1.26.~27., 도쿄)

- 목적
 - 1980.11월 제3차 한·일본 생사료회담에서 미합의된 대일본 견직물 수출 쿼터 물량 타결
-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박홍식 상공부 상역국장
 - 일본 측: 사카이 통상성 심의관
- 합의 내용
 - 1980년도 한국 견직물의 일본에 대한 수출 규제수량의 한도는 통관 기준으로 750만 SM으로 하며, 동 수량 중 오시마 쓰무기 한도량은 36,500반으로 함.
 - 오시마 쓰무기의 특별비자 문제는 계속 협의하기로 함.

한·일본 무역회담, 제15차. 서울, 1980.1.10.-11.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통상1

MF번호 2010-69 / 9 / 1-274

제15차 한·일본 무역회담이 1980.1.10.~11. 서울에서 개최됨.

1.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노재원 외무부 통상국장
- 일본 측: 야나기야 겐스케 외무성 아세아국장

2. 의제

- 한·일본 간 무역 현황 검토, 무역의 확대 균형을 위한 협력, 양국 간 교역증진 방안

3. 정부 훈령

- 대일본 무역역조 시정을 위한 일본 측의 협력 촉구
- 한국 관심품목에 대한 일본의 조기 관세인하 실시를 요청
- 일본의 신규 수입규제에 강력 대처하고 일본의 비관세 장벽 철폐를 촉구

4. 주요 결과

- 무역역조 시정
 - 한국 측은 무역역조 시정을 위한 일본 측의 협조를 요청했으며, 일본 측은 1979년 이래 대일본 무역역조가 개선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무역의 확대 균형을 위한 상호 노력 필요성을 인정함.
- 관세 문제
 - 한국 측은 MTN(다자간무역협상)에 의한 일본의 관세양허 조기 실시를 요청하고 17개 한국의 관심품목을 제시한바, 일본 측은 조기 인하가 어렵다고 함.
- 비관세 문제
 - 한국 측은 활선어에 대한 수입금액할당제 폐지를 요구한바, 일본 측은 중소기업에 대한 영향력을 고려하여 적절히 운영할 것을 시사함.
 - 한국 측은 미역에 대한 수입사전확인제 적용 폐지, 일부 경공업 제품에 대한 비관세 장벽 개선을 요청한바, 일본 측은 검토하겠다고 언급함.
 - 일본 측은 1979년 생사류협정 합의 물량 중 일본의 미이행분 수입을 위한 노력을 약속함.
- 양측은 무역회담 산하 실무위원회 구성, 일본 극영화의 수입 문제, 일본 구매사절단의 한국 방문 문제, 주한 일본상사 지위 개선 문제 등을 협의함.

한·노르웨이 [섬유]쿼터회담. Oslo, 1980.2.28.-29.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통상2

MF번호 2010-69 / 10 / 1-164

한·노르웨이 섬유회담이 1980.2.28.~29. 오슬로에서 개최됨.

1.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노재원 외무부 통상국장
- 노르웨이 측: Kramme 상공부 국장

2. 의제

- 1980년도 한국의 대노르웨이 섬유 쿼터 수출 품목 및 물량 조절
- 기타 비섬유류 특정 상품의 대한국 수입규제 완화 문제

3. 정부 교섭 지침

- 노르웨이의 수입규제 철폐 혹은 완화 촉구
- 섬유류와 비섬유류는 분리 취급하고 노르웨이 시장 점유율이 미미한 품목은 자유화 또는 자율 규제방식으로 타결할 것

4. 주요 결과

- 한국의 대노르웨이 수출 섬유류 10개 품목 및 비섬유류 7개 품목에 대한 1980년도 수출 쿼터량을 새로 설정하는 한·노르웨이 섬유쿼터협정을 체결함.
- 한국 측은 노르웨이 측이 규제하고 있는 비섬유류 7개 품목에 대해 자유화할 것을 촉구한바, 노르웨이 측은 관계부처와 협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차기 회담 시 규제 자유화 문제를 협의하기로 함.

한·미국 특정품목 [컬러 T.V. 및 비고무화류]쿼터 협상

생산연도 1979-1980

생 산 과 통상2

MF번호 2010-69 / 11 / 1-287

1979~80년 중 한·미국 특정품목(컬러 TV 및 비고무화류) 쿼터 협상 관련 내용임.

1. 경위

- 정부는 미국의 대한민국 특정품목(컬러 TV 및 비고무화류) 수입품에 대한 규제 철폐를 위해 1979~80년 중 한·미국 간 쿼터 협상을 개최함.

2. 미국의 대한민국 수입규제 현황

- 비고무화
 - 근거: 쌍무쿼터(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제19조, 미 74 통상법 제201조)
 - 기간: 1977.6.28.~81.6.30.
 - 수준: 연평균 3,625만 족
- 컬러 TV
 - 근거: 자율규제(GATT 제19조)
 - 기간: 1979.2.1.~80.6.30.
 - 수준: 41만 1천 대

3.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박필수 상공부 상역차관보
- 미국 측: Stephen Lande USTR(미국통상대표부) 대표

4. 정부 훈령

- 세계 무역의 자유화를 위해 미국의 대한민국 수입규제조치 철폐 촉구
- 비고무화류: 일반 혁화와 기타 비고무화 간의 통합 또는 전용률 확대
- 컬러 TV: 잔여 협정 기간 중 완제품 추가 수출(5만 대) 확보

5. 비고무화류 쿼터 협상 결과

- 협상 개최
 - 제1차(1979.9.24.~26., 워싱턴 D.C.), 제2차(1979.12.4.~5., 서울), 제3차(1980.2.5., 워싱턴 D.C.)
- 한국은 현행 협정상의 품목별 쿼터량을 경쟁력이 있는 부분으로 전환조정을 요구하였으며, 미국 측은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미 업계와 협의 후 1980.2월 중에 통보하겠다고 함.



6. 컬러 TV 쿼터 협상 결과

- 협상 개최
 - 제1차(1979.9.24.~26., 워싱턴 D.C.), 제2차(1979.12.4.~5., 서울 및 1979.12.7., 도쿄), 제3차(1980.2.5., 워싱턴 D.C.)
- 한국 측은 현행 협정이 연장되는 경우(1980.7.1. 이후) 쿼터량이 대폭 증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바, 미국 측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함.
 - 양측은 현행 협정 잔여기간 중 쿼터량 이외 한국이 5만 대를 추가로 대미국 수출하는데 합의하였으며, 한국 측은 1980.6.30. 이전에 약 6만 1천 대(약 1천 2백만 달러)의 추가 선적이 가능

[1978.1.1.-81.12.31.] MFA(다자간섬유협정) 종합평가를 위한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TC(직물위원회) 회의. Geneva, 1980.10.22.-27.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통상2

MF번호 2010-69 / 13 / 1-361

정부는 1980.10.22.~27. 제네바에서 개최된 MFA(다자간섬유협정) 종합평가를 위한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TC(직물위원회) 회의에 이기주 주제네바대표부 참사관을 수석 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회의 목적

- MFA 제10조 4항의 규정에 따라 1978년도 발효되어 1981.12.31.자 종료되는 MFA의 운영이 원래 목적에 부합되었는지 여부를 평가

2. 참가국

- 80여 개국,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등 주요 국제기구

3. 주요 의제

- 1978~81년 MFA의 운영 평가, 섬유류의 생산 및 교역의 추세 분석 등

4. 주요 결과

- 참가국들은 MFA 운영 상태에 대해 의견을 표명함.
 - 선진국은 MFA 운영 상태에 대해 만족을 표명하였으며, 스웨덴 측은 한국, 홍콩 등 주요 공급자가 전체 개도국 섬유수출의 50%를 점유하여 후발개도국의 수출 증대에 장애가 된다고 주장함.
 - 개도국은 MFA 현행 의정서 중 개도국의 이익을 위협하는 독소 조항에 대해 우려를 표명함.

5. 한국대표단의 발언 요지

- 선진국이 현 MFA를 자의적으로 운용하여 개도국의 이익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함.
 - 선진국은 MFA 제4조를 근거로 시장교란 발생 이전에도 수입규제조치를 실시하고 있고 개도국 특정상품에 대해 1% 미만의 미미한 증가율만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 MFA 위반이라고 강조

[1978.1.1.-81.12.31.] MFA(다자간섬유협정) 장래문제 협의를 위한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TC(직물위원회) 회의, 제1차. Geneva, 1980.12.8.-10.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통상2

MF번호 2010-69 / 12 / 1-60

정부는 1980.12.8.~10.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1차 MFA(다자간섬유협정) 장래문제 협의를 위한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TC(직물위원회) 회의에 이기주 주제네바대표부 참사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국

- MFA 가맹국 45개국, GATT 등 주요 국제기구

2. 주요 의제

- 1981년 말 종료되는 MFA 의정서의 연장 문제 및 MFA 개정 여부

3. 주요 결과

- MFA의 연장 원칙에 합의하고, 차기 GATT/TC 회의를 1981.4월 제네바에서 개최하기로 함.
 - 선진국은 MFA 연장 의정서가 세계 섬유 교역의 질서유지에 공헌한 바 있다고 하고 MFA 존속 필요성을 강조함.
 - 개도국은 MFA 연장에 동의하나, 개도국의 이익을 외면하고 있는 현행 MFA의 상당수 조항이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4. 한국대표단의 발언 요지

- 개도국의 입장을 지지하고 1974년 MFA가 금후 협상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 수입규제를 실시하고 있는 선진 수입국의 섬유수출이 증가하고 개도국의 섬유수출 비중이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차기 MFA 협상 시 수입규제적 성격은 대폭 제거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개발도상국 간 MFA(다자간섬유협정) 평가회의. Bangkok, 1980.7.30.-8.4.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통상2

MF번호 2010-69 / 14 / 1-231

정부는 1980.7.30.~8.4. 방콕에서 개최된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개발도상국 간 MFA(다자간섬유협정) 평가회의에 이현홍 주태국대사관 공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경위

- ESCAP 사무국은 1978년도 발효되어 1981.12.31.자 종료되는 MFA 이행 과정에서 선진국 측이 MFA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개도국으로부터 섬유류 수입을 부당하게 규제한 사례를 검토하고 향후 MFA 갱신을 위한 협상 시 개도국에 불리한 규정을 수정, 개선하는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MFA 평가회의를 개최함.

2. 참가국

- 한국, 태국, 인도, 싱가포르, 파키스탄, 필리핀 등 아시아태평양지역 10개 개도국

3. 주요 의제

- 세계 섬유류 교역과 개도국, MFA 평가, 신참 수출국(New Entrants) 문제
- 개도국 간 공동보조 모색 방안, 신MFA 기초 작업 실시 방안

4. 주요 결과

- 참가국은 MFA가 선진국에 유리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선진국들이 과도하게 수입규제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한바, 향후 MFA 갱신을 위한 교섭에서 개도국 간 공동보조를 위해 ESCAP 개도국 대표로 구성된 실무그룹을 설치하기로 합의함.

5. 한국대표단의 발언 요지

- 국제기구의 통계에 의하면 선진국 시장의 교란 및 선진국 섬유산업 분야의 실업 발생은 기술혁신, 생산성 증대 및 여타 선진국으로부터의 섬유류 수입 증가에서 기인한다고 강조
- 향후 MFA 교섭에 대비하여 제네바 주재 ESCAP 회원국 개도국 대표로 구성된 실무그룹 설치를 제의함.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TSB(직물감독기구) 회의 및 정위원 임명

생산연도 1979-1980

생 산 과 통상2

MF번호 2010-70 / 1 / 1-91

1979~80년 중 정부의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TSB(직물감독기구) 정위원 임명
및 TSB 회의 결과임.

1. TSB 의원 현황

- TSB는 섬유류 양자 쿼터협정의 MFA(다자간섬유협정) 규정 일치 여부를 검토하며, 의장과
8명의 위원(섬유류 수출국 4, 수입국 4)으로 구성
 - 수입국: 미국, EC(구주공동체), 일본 대표 각 1명, 기타 수입국 대표 1명
 - 수출국: 한국 및 홍콩 대표 1명, 중남미 대표 1명, 아시아 및 동구권 대표 1명, 서아시아
및 중동 대표 1명

2. 정부의 TSB 정위원 임명

- 한국은 홍콩과 1개 그룹을 형성하여 매년 윤번제로 정회원국 및 교체위원국으로 활동함.
 - 1978.1~8월 정위원: 신정섭 주제네바대표부 공사
 - 8~12월 정위원: 박노수 주제네바대표부 공사
 - 1979년 교체위원: 박노수 주제네바대표부 공사
 - 1980년 정위원: 박노수 주제네바대표부 공사

3. TSB 전체 회의(1980.1.16.~18. 및 1.28.~30., 제네바) 결과

- 1979.12월 개최된 GATT 섬유직물위원회 결의에 따라 TSB에 위임된 MFA 부속서 B의 변태운영
(Variation) 현황을 적출(Catalogue)하는 방안을 협의했으나, 이견으로 결론에 도달하지 못함.

4. 한국 정부는 아래의 섬유 쿼터협정 자료를 TSB에 제출함.

- 한·오스트리아 협정, 한·스웨덴 협정, 한·캐나다 협정, 한·미국 협정

MFA(다자간섬유협정) 섬유수출 개발도상국 회의, 제1차. Bogota(콜롬비아), 1980.11.3.-7.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통상2

MF번호 2010-70 / 2 / 1-198

정부는 1980.11.3.~7.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개최된 제1차 MFA(다자간섬유협정) 섬유수출 개발도상국 회의에 김정훈 외무부 통상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경위

-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개도국 그룹 의장국인 콜롬비아는 MFA 연장 의정서가 1981.12.31. 종료되어 향후 선진국들과 연장교섭에 대비한 MFA 가입 개도국의 공동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섬유수출 개도국 회의를 개최함.

846

2. 참가국

- 한국, 태국, 인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라질, 페루, 루마니아 등 23개국, 국제기구 등

3. 정부 훈령

- 선진국의 대개도국 수입규제 부당성을 지적할 것
- 1980.12월 MFA 장래문제 회의 시 개도국 간 일치된 입장을 선진국에 과시할 것을 강조할 것

4. 의제

- 세계 섬유류 교역 동향, MFA 운영 평가, 선진 수입국의 MFA 개정 방향

5. 주요 결과

- 참가국은 선진국들이 MFA 제3조 시장교란의 불명료성을 자의로 남용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금번 회의 시 채택된 Aide Memoire를 기초로 1980.12월 MFA 회의 시까지 MFA 연장 협상 대비를 위해 제네바 주재 개도국 대표 간에 공동전략 방안을 추진하기로 함.

6. 한국대표단의 발언 요지

- 수석대표는 기초연설을 통해 한국이 주요 섬유 수출국으로서 MFA 운영 경험을 소개하고 향후 MFA 연장 협상 시 공동대책 수립 필요성을 강조함.

Pacific Rim Opportunities Conference, 제1차. Vancouver, 1980.11.19.-21.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북미

MF번호 2010-70 / 3 / 1-23

정부는 1980.11.19.~21. 캐나다 밴쿠버에서 개최된 제1차 Pacific Rim Opportunities Conference에 주캐나다대사를 정부대표로 파견함.

1. 배경

- 캐나다 상공부는 1980년대 태평양 연안국과의 경제협력 관계를 모색하고 태평양 연안국에 대한 캐나다 대중의 이해 증진을 위해 Pacific Rim Opportunities Conference를 개최함.

2. 참가자

- 태평양 연안국 공관장, 캐나다 공무원 및 업계 대표 등 약 260명

3. 의제

- 한국, 일본, 필리핀 등 태평양 연안국과 캐나다 간 정치·경제협력 증진 방안

4. 주요 결과

- 캐나다 관련 업계는 캐나다 정부가 태평양 연안국과의 무역 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강구하고, 환태평양 국가와 각종 민간단체를 통합하여 가칭 'Canada Pacific Rim Association'을 창설할 것을 건의함.
- 1980.11.20. Pace 캐나다 석탄협회 회장 사회로 개최된 한국 관계 Session에서 한·캐나다 실업인협회(Canada-Korea Business Council)를 결성하기로 합의하였으며, 1981.6월 중 제1차 한·캐나다 실업인협회 총회를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함.

무역진흥확대회의. 전3권 (V.1 제1-2차)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통상2

MF번호 2010-70 / 4 / 1-194

1980년 중 개최된 제1~2차 무역진흥확대회의의 관련 내용임.

1. 제1차 회의(1980.1.7.)

- 안건: 1980년 경제 외교 방향
- 주요 토의내용
 - 한국의 대외경제 현황: 1970년대 한국경제 개관, 1979년도 대외경제 분석
 - 1980년도 세계경제 전망: 경제 전망 일반, 분야별 전망
 - 한국경제의 당면 과제: 1980년 한국경제 여건, 당면 과제
 - 1980년도 경제외교 추진 방향: 기본 전략, 1980년 중동경제 분석, 대외경제 추진 방향(석유 확보 외교 중점 추진, 수출의 지속적 확대 도모, 외자 도입의 적극 추진)

2. 제2차 회의(1980.2.25.)

- 안건: 1980년 재외공관 수출진흥활동 방향
- 주요 토의내용
 - 1979년 공관별 수출 실적 분석
 - 1980년 지역별 수출 목표
 - 아주 4개국 경쟁관계 분석
 - 재외공관 수출진흥활동: 활동 목표를 해외시장 '쉐어'의 유지에 두고 이를 위해 다각적인 통상 진흥활동 전개

무역진흥확대회의. 전3권 (V.2 제3-4차)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통상2

MF번호 2010-70 / 5 / 1-166

1980년 중 개최된 제3~4차 무역진흥확대회의의 관련 내용임.

1. 제3차 회의(1980.3.31.)

- 안건: 아프리카 신시장과 한국의 진출 방향
- 주요 토의내용
 - 아프리카경제 개황: 아프리카경제의 특성과 동향, 아프리카 천연자원, 아프리카 개발계획, 아프리카 무역
 - 한국의 진출 현황: 남·북 경제 진출 대비(아프리카), 대아프리카 무역 추이, 대아프리카 건설 진출, 해외 투자 현황
 - 대아프리카 진출 방향: 아프리카 진출 기본 방향, 기본 전략, 나이지리아 거점 진출 강화, 아프리카 진출 세부 대책
 - 중앙 지원 시책: 민간 기업 진출여건의 개선, 세제·금융상의 지원 강화, 대아프리카경제 외교의 적극 전개

2. 제4차 회의(1980.4.30.)

- 안건: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다자 간 무역협상 경과와 한국의 대책
- 주요 토의내용
 - 협상의 개요: 협상의 경과, 도쿄라운드 협상의 특징
 - 협상의 결과와 평가: 분야별 협정 타결 현황, 한국 추진 협정 분석
 - 한국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한국의 수출활동에 미치는 영향, GATT 다자 간 협상에 대한 한국의 대책
 - 1980년대 무역환경과 대응 방향: 국내경제의 국제화 적극 추진, 경제활동의 범위 광역화

무역진흥확대회의. 전3권 (V.3 제5-7차)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통상3

MF번호 2010-70 / 6 / 1-256

1980년 중 개최된 제5~7차 무역진흥확대회의의 관련 내용임.

1. 제5차 회의(1980.5.30.)

- 안건: 환태평양지역 경제 진출 방향
- 주요 토의내용
 - 환태평양지역 협력 구상과 경제적 측면
 - 태평양지역 경제 현황
 - 한국과의 경제 관계
 - 환태평양지역에 대한 경제 진출 전략

2. 제6차 회의(1980.6.27.)

- 안건: 하반기 경제 외교 방향
- 주요 토의내용
 - 대외경제 당면 과제
 - 상반기 대외경제 현황
 - 상반기 대외경제 활동 분석
 - 하반기 경제 외교 추진 방향

3. 제7차 회의(1980.7.28.)

- 안건: 공관별 수출실적 분석과 전망
- 주요 토의내용
 - 최근 세계무역의 동향
 - 지역별 공관별 실적 분석
 - 해외시장 수요 전망
 - 목표 달성 대책과 전망

통상사절단 미국 방문, 1980.6.15.-28.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통상2

MF번호 2010-70 / 7 / 1-87

김태동 한·미국 경제협의회 이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통상사절단이 1980.6.15.~28. 미국을 방문함.

1. 방문지

- 뉴욕, 시카고, 댈러스, 로스앤젤레스

2. 경위

- 한·미국 경제협회의의 1980년도 사업계획의 일환

3. 사절단 활동

- 뉴욕 방문(6.16.~17.)
 - 주뉴욕총영사 주최 리셉션
 - 뉴욕상공회의소 부회장, 주미국대사 예방
 - 미국 주재 특파원과 기자회견
 - 사절단 수출입 상담
- 시카고 방문(6.19.~20.)
 - 한·미국 중서부 상공회의소장, 시카고상공회의소장 예방
 - 사절단 수출입 상담
- 댈러스 방문(6.23.~24.)
 - 댈러스 시장, 댈러스상공회의소장 예방
 - 사절단 수출입 상담
- 로스앤젤레스 방문(6.26.~27.)
 - 캘리포니아 국무장관 간담회
 - BOA 극동담당 부회장 주최 오찬
 - 사절단 수출입 상담

4. 종합 평가

- 홍보 활동
 - 미국 4개 지역 주요 인사 예방 및 리셉션에서 주요 실업인 및 언론인을 접촉, 한국사태의 배경 설명으로 미국 언론의 일방적 편향 보도로 오도된 한국에 대한 오해 불식



- 상담 활동
 - 수출 9,481,200달러, 수입 23,164,000달러
 - 총 32,645,200달러 상담으로 당초 목표 1억 달러의 32% 달성으로 실적 저조
- 코트라 현지 요원의 절대 부족과 업무 과다로 수출사절단 파견보다는 품목별 종합전시회 참가를 통한 수출 촉진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

이탈리아 통상사절단 방한, 1980.8.4.-8.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통상2

MF번호 2010-70 / 8 / 1-234

이탈리아 통상사절단이 1980.8.4.~8. 방한함.

1. 방한 경위

- 전 이탈리아 통상장관이 상공부장관의 방한 초청으로 1979.10월 방한 예정이었으나, 양측 사정으로 연기됨.
- 신임 통상장관을 대신해서 통상차관을 단장으로하는 사절단이 방한하기로 결정함.

2. 사절단 구성

- 단장: Delio Giacometri 통상차관
- 단원: Benaqlia 한·이탈리아 경협위원회 이탈리아 측 위원장, Verderame 사무총장 등

3. 주요 일정

- 국무총리, 외무부장관 및 차관 예방
- 상공부차관, 과기처차관, 재무부차관, 동자부차관 예방
- 한·이탈리아 경협위 합동회의 개최, 전경련, 무역협회, 코트라, 대한상의 방문
- 대우중공업, 군포 현대양행, 판문점 시찰

4. 방한 성과

- 외무부장관 예방
 - 외무부장관은 양국 간 우호관계를 재확인하고 자유경제체제 간의 협조 및 국가의 안정이 긴요함을 강조한바, 이탈리아 측도 이에 동감 표시
- 외무부차관 예방
 - 한국 측은 FAO(유엔식량농업기구) 대표부를 통한 북한책동 저지를 요청한바, 이탈리아 측은 정계인사들에게 주지시키고 적절한 대책 강구 촉구를 약속
- 상공부차관 예방
 - 경제협력 확대에 원칙 합의
- 한·이탈리아 경협위 합동회의
 - 한·이탈리아 교역 증진을 위한 민간실무위원회 설치 합의
 - EC(구주공동체)의 대한민국 수입규제 완화 공동 노력 등

라이베리아 투자유치사절단 방한, 1980.12.21.-24.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통상3 / 서부아프리카

MF번호 2010-70 / 9 / 1-161

라이베리아 투자유치사절단이 1980.12.21.~24. 방한함.

1. 방한 목적

- 투자 유치 및 통상·경제협력 증진

2. 사절단 구성

- 단장: Joseph H. Douglas 상공·교통 장관
- 단원: 경제기획성 차관 외 3명

3. 주요 일정

- 외무부장관 예방, 외무부장관 주최 오찬
- 재무부장관, 경제기획원장관, 보사부장관 예방
-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코트라 방문
- 대우실업, 국제상사, 금호실업, 현대종합상사, 삼성물산 방문
- 대우중공업, 인천제철, 새한자동차 방문

4. 방한 성과

- 1980.12.22. 한·라이베리아 무역협정 서명
- 협정 주요 골자
 - 최혜국대우 적용 및 예외 대상 규정
 - 타방 당사국 내에 무역센터 설치, 박람회 개최 협조 제공
 - 견본, 참고자료 면세
 - 지불수단은 양측이 수락하는 자유태환 통화
 - 문제해결을 위하여 필요시마다 상호협의

멕시코 Baja California주 통상사절단 방한, 1980.11.20.-24.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통상2

MF번호 2010-70 / 10 / 1-26

멕시코 바하칼리포르니아주 통상사절단이 1980.11.20.~24. 방한함.

1. 방한 목적

- 티후아나 자유무역지대에서의 한·멕시코 합작투자 협의, 농업협력 추진 및 한국의 산업기지 시찰

2. 사절단 구성

- Enrique Von Borstel 주지사 외 11명

3. 주요 일정

- 상공부차관, 무역협회 회장, 상공회의소 회장 예방
- 삼성물산, 대우실업, 국제상사, 대한조선공사 방문
- 삼성전자 수원공장 시찰
- 멕시코 및 티후아나 자유무역지대 설명회
- 코엑스 참관

4. 방한 성과

- 한국 종합상사와 티후아나 자유무역지대에서의 한·멕시코 합작투자, 농수산물 교역 상당 추진 등 협의

파키스탄 통상사절단 방한, 1980.6.8.-10.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통상1

MF번호 2010-70 / 11 / 1-27

파키스탄 통상사절단이 1980.6.8.~10. 방한함.

1. 방한 목적

- 주한 파키스탄총영사관 설치를 계기로 한·파키스탄 양국 간의 통상증진 방안 협의
- 카라치 수출자유무역지역 진출업체 모색
- 면사·면직물 및 각종 면제품의 대한국 판매 촉진
- 각종 사료의 대한국 판매 촉진
- 기타 대한국 수입품 및 Joint Venture 모색

856

2. 사절단 구성

- 파견기관: 파키스탄 수출진흥청
- 단장: Abdur Sattar Chinoy Chinoy & Co. 사장
- 간사: Mohammad Mohsin 수출진흥청 Investigator
- 단원: 면제품 및 사료업체 대표 5명

3. 주요 일정

- 외무부 통상국장, 상공부 통상진흥관 예방
- 코트라, 대한상공회의소 방문, 한국사료협회 회장 예방

4. 정부기관 및 경제단체 방문 결과

- 방문처: 상공부, 외무부, 코트라, 상공회의소
- 주요 협의내용
 - 1980.6월 하순 예정된 주한 파키스탄총영사관 설치를 계기로 양국 간 획기적인 통상증진 방안 협의
 - 파키스탄에서 공급 가능한 원면, 면사, 면직물, 각종 사료, 농산물, 원피 등의 공급 확대 방안 협의. 특히 면사 등 면제품의 경우 일부 한국업체에서 홍콩, 일본을 경유하여 간접수입하고 있는바, 파키스탄으로부터 직수입 방안 협의
 - 카라치 수출자유무역지역에 대한 한국업체의 진출방안 협의
 - 양국 간 유망 합작 분야 협의



5. 국내 업계와의 상담 결과

- 상담 업체: 대우실업, 삼성물산, 선경, 효성물산, 쌍용, 국제상사, 대농, 코리아엔지니어링 등 18개사
- 주요 상담 내용
 - 대한민국 수출 상담: 면사 수출 상담, 파키스탄산 천연가스 공급방안 협의 등
 - 대한민국 수입 상담: 합섬사, 플라스틱 사출기, 자동차 타이어, 냉장고 등 가전제품 수입 상담, 시멘트 입찰 참가방안 협의 등

스위스 산업전시회(SWISSKOR 80) 사절단 방한, 1980.5.28.-6.8.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경제협력1

MF번호 2010-70 / 12 / 1-107

스위스 산업전시회(SWISSKOR 80) 사절단이 1980.5.28.~6.8. 방한함.

1. 방한 목적

- 스위스 산업전시회(1980.5.31.~6.8., 서울) 및 제2차 한·스위스 민간경협위원회 합동회의 참석
- 상기 행사를 계기로 한·스위스 간 경제협력 및 통상증진을 위한 유대 강화

2. 사절단 구성

- Klaus Jacobi 해외경제성 순회대사, Max Krell 상무성 한국담당관 및 각계 민간대표

3. 주요 일정

- 제2차 한·스위스 민간경협위 합동회의 개최(전경련 주관)
- 경제기획원장관, 재무부장관, 상공부장관, 과학기술처장관, 외무부차관 등 주요 인사 예방

Cointat, Michel 프랑스 대외무역상 방한, 1980.11.6.-7.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서구

MF번호 2010-70 / 13 / 1-114

Michel Cointat 프랑스 대외무역상이 1980.11.6.~7. 방한함.

1. 방한 경위

- 1980.11.6.~8. 한국에서 개최되는 ENKOR 80(기계전시회) 참관 계기 방한

2. 사절단 구성

- 단장: Michel Cointat 대외무역상
- 단원: Pierre Sudreau 하원 의원, Freyche 대외무역성 총국장 등

3. 주요 일정

- 대통령 예방
- 국무총리, 외무부장관, 상공부장관 예방
- ENKOR 80 전시장 참관

4. 방한 성과

- 정치 및 경제 문제
 - Cointat 대외무역상은 대통령 면담 시 한국의 정치문제에 대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국무총리 및 각료들과의 면담을 통해 한국이 아시아에서 프랑스의 파트너로, 프랑스는 유럽에서 한국의 파트너로 제후하여 경제 부문에서 협력관계를 크게 증대시켜 나갈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다고 언급함.
- 한전·FRAMATOME 간 원전 9, 10호기 발주에 관한 계약 서명
 - 동 대외무역상은 상기 계약이 체결되어 만족한다며 사의를 표명하고, 아래 사항에 대하여 한국 정부와 계속 협의를 희망한다고 언급함.
 - 프랑스 측이 공급하는 농축 우라늄이 원전 9, 10호 이외에 사용되는 경우, 프랑스 측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양국 정부 간에 체결하고자 하는 원자력 평화이용 보충협정 제4조에 보완되어야 함.
- ENKOR 참가 성과
 - 프랑스 46개 업체가 참가하여 앞으로 양국 간 경제협력에 크게 기여할 것을 기대하며, 특히 중소기업 부문에서 제후 가능성이 많을 것 같다고 언급함.

Molapo, Mooki V. 레소토 상공장관 방한, 1980.5.18.-24.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통상3 / 남부아프리카

MF번호 2010-70 / 14 / 1-118

Mooki V. Molapo 레소토 상공장관이 1980.5.18.~24. 방한함.

1. 방한 경위 및 초청 목적

- 경위
 - 한·레소토 경제협력 증진 및 교역증대를 위하여 코트라 초청으로 방한함.
- 방한 초청 목적
 - 양국 간 경제협력 및 교역증대 방안 협의
 - 레소토를 통하여 인근 국가 및 EEC(유럽경제공동체) 시장 진출 방안 협의
 - 한국상사의 대레소토 투자진출을 유도하여 수출기반 확충

2. 주요 일정

- 상공부장관, 외무부장관 예방
- 무역협회, 상공회의소 방문
- 대우중공업, 현대조선, 삼성물산, 현대종합상사, 효성물산, 마산수출자유지역 산업 시찰
-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3. 방한 성과

- 외무부장관 면담(5.22.)
 - 레소토 상공장관은 레소토에 풍부한 양모(Wool) 및 모헤어(Mohair) 원료를 이용한 직물(Textile) 제품을 합작 생산할 것과 남아공을 통한 간접교역이 아니라 직접교역 관계를 갖고자 한다고 제의
 - 외무부장관은 업계 및 관련 기관으로 구성된 조사단을 파견할 수 있다고 하고, 우선 이번 방문 기회를 이용, 한국 경제인연합회 인사들과 접촉할 것을 권유
- 투자유치설명회 개최(5.23.)
 - 주제: 한·레소토 합작투자 및 기술협력을 통한 인접 국가 및 EEC 국가에 대한 수출증대 방안
- 동 장관 일행은 금번 방한 시 협의사항을 구체적으로 토의하기 위해 1981년 초 실무진을 파견할 계획임.
- 박세영 대우실업 전무를 주한 레소토명예영사로 위촉하기로 상호 양해함.
- 레소토 주재 코트라 무역관 설치를 건의한바, 설치 시 적극 협조하기로 약속함.

MAHATHIR bin Mohamad 말레이시아 부수상 겸 무역공업상 방한, 1980.10.6.-11. 전2권 (V.1 사전준비)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통상1 / 동남아

MF번호 2010-70 / 15 / 1-168

1980년 중 MAHATHIR bin Mohamad 말레이시아 부수상 겸 무역공업상 방한을 위한 사전준비 내용임.

1. 방한 경위

- 1978.11.24. 남덕우 부총리가 브란트위원회 참석차 말레이시아 방문 시 동인을 방한 초청
- 1980.6월 방한 예정이었으나, 한국 국내사정으로 연기되어 10월 방한

2. 방한 목적

- 한·말레이시아 우호 협력관계 증진, 특히 무역, 산업 및 군수 분야 협력 문제와 한·말레이시아 민간경제협력위원회 설립 문제 및 한국 내 말레이시아 무역사무소 설립 문제 논의
- 한국 중소기업 현황, 기술훈련 상황, 군수산업시설, 농업연구소, 새마을사업 시찰

3. 주말레이시아대사, 1980.9.26. 말레이시아 부수상의 외무부장관 면담 시 아래 내용 건의

- 정무관계
 - 대한민국 우호협조에 감사 표명
 - 국제무대에서의 한국 지지 표명 요청
 - 북한 허위선전 저지
- 경제관계
 - 말레이시아 측 요청 사항: 말레이시아 제품 및 반제품 수입확대 촉구, 천연고무 직수입, 팜오일 수입, 한·말레이시아 경제협력위원회 설치
 - 한국 측 요청사항: 대한민국 원유 공급, 한국건설업계의 개발계획 참여에 대한 지원

4. 방한 일정 준비

- 고위인사 예방 추진: 대통령, 국무총리, 부총리, 외무부장관, 상공부장관
- 산업시설 시찰: 수출산업공단, 창원공단, 목포조선소
- 기타: 새마을 부락 시찰, 경주 관광

MAHATHIR bin Mohamad 말레이시아 부수상 겸 무역공업상 방한, 1980.10.6.-11. 전2권 (V.2 결과보고)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통상1 / 동남아

MF번호 2010-70 / 16 / 1-154

MAHATHIR bin Mohamad 말레이시아 부수상 겸 무역공업상의 1980.10.6.~11. 방한 결과임.

1. 국무총리 면담(10.7.) 요지

- 남북대화 문제
 - 국무총리: 남북총리회담 개최를 북한 측이 거부
 - 부수상: 남북 간 회담은 바람직
- 김대중 문제
 - 국무총리: 김대중 재판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
 - 부수상: 타국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 것이 말레이시아의 대외정책
- 경제 문제
 - 국무총리: 한국은 외자도입과 해외진출 자유화를 추진하고 있어 해외협력의 폭이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되는바, 환태평양 협력체 구성 문제에 대한 의견 문의
 - 부수상: 자원개발을 위한 투자를 기대하는바, 동 협의체는 유연하게 운영되어야 함.

2.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 면담(10.6.) 요지

- 부총리: 이종과세방지협정 조속 체결 희망 및 팜오일의 안정적 공급 당부
- 부수상: 한국 노동자들의 근면성에 깊은 인상, 가전제품의 투자, 자동차 엔진 재생산업 관련 기술과 합작투자 진출 당부, 한국건설업체 적극 참여 기대

3. 외무부장관 면담(10.7.) 요지

- 외무부장관: 국제문제, 특히 비동맹회의에서 지원 요청, 남북문제의 대화를 통한 해결, 경제협력 강화 희망
- 부수상: 말레이시아의 공업화 계획과 합작사업 참여 희망

4. 언론보도

- 양국 언론들은 동 부수상의 방한 내용을 상세히 보도함.
 - 남양상보(10.7.자): 말레이시아 부수상 서울 방문, 말레이시아·한 경제 협력 역설
 - 코리아헤럴드(10.12.자): ROK Exports to Malaysia Increasing at Rapid Pace

Montenegro, Jose G. 파나마 자유무역지역청장 방한, 1980.4.4.-9.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중미

MF번호 2010-70 / 17 / 1-21

Montenegro 파나마 자유무역지역청장이 1980.4.4.~9. 방한함.

1. 방한 경위

- 1980.2.7. 주파나마대사, 한국상사의 주재국 자유무역지역 진출 강화를 위해 동인의 방한 초청을 건의
- 1980.2.21. 코트라 사장 명의로 방한초청장 발송

2. 방한 목적

- 한·파나마 통상증진 방안 협의 및 신파나마 운하 기획 관련 건설업체 참여 문제 협의

3. 주요 일정

- 외무부, 상공부, 전경련, 무역협회, 코트라, 국제상사, 효성물산, 대우실업 등 방문
- 창원기계공단, 마산수출자유무역지역 시찰

4. 방한 의의

- 한국업체 진출 관련 파나마 측의 협조 기대

Solbes, Pedro 스페인 통상관광성 차관보 방한, 1980.7.13.-15.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통상2

MF번호 2010-70 / 18 / 1-24

Solbes 스페인 통상관광성 차관보가 1980.7.13.~15. 방한함.

1. 방한 경위

- 1980.7.8. 주한 스페인대사 대리가 외무부 구주국장을 방문하여 아래와 같이 요청
 - 동 차관보가 일본 정부와의 업무 협의차 방일하는 기회에 방한 희망
 - 한국 관계당국을 방문하여 통상 문제 협의 희망

864

2. 주요 일정

- 외무부 경제차관보, 상공부 차관보 예방
- 코트라 사장 예방

3. 외무부 경제차관보 면담(7.14.)

- 무역협정 체결 교섭, 하반기 스페인 통상사절단 방한, 경제기술협력, 제3지역 공동 진출 방안 등에 관해 의견 교환

Farouk I. EL MAGBOUL 수단 통상협력장관 방한, 1980.9.2.-7.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통상3

MF번호 2010-70 / 19 / 1-73

El Magboul 수단 통상협력장관이 1980.9.2.~7. 방한함.

1. 방한 목적

- 양국 간 경제협력 및 통상증진 방안 협의

2. 방한 경위

- 1980.4.28. 주수단대사, Mohamed Idris 수단 대통령실 담당 장관의 요청에 따라 상공부장관 명의로 통상협력장관의 방한 초청을 건의

3. 주요 일정

- 외무부, 상공부, 대한상공회의소, 코트라 등 주요 인사 예방
- 포항제철, 창원공단 내 대우공장 시찰

4. 외무부 차관보 면담(9.3.)

- 차관보: 우호관계 증진 희망, 한국의 평화통일 노력 설명, 주한 수단 상주공관 설치 제의
- 통상협력장관: 양국 간 합작사업으로 수단에서 타이어가 생산되어 기쁘게 생각

Nott, John 영국 상무장관 방한, 1980.1.23.-26.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서구 / 통상2

MF번호 2010-70 / 20 / 1-183

Nott 영국 상무장관이 1980.1.23.~26. 방한함.

1. 방한 경위

- 1979.12.7. 주한 영국대사, 외무부 구주국장에게 Nott 영국 상무장관이 일본, 홍콩 등 아주지역 순방기회에 방한을 희망한다는 의사 전달
- 1979.12.24. 주영국대사, 동 장관에게 상공부장관이 공식방한 초청함을 서면 통보

2. 주요 일정

- 대통령, 국무총리, 부총리, 외무부장관 예방
- 상공부장관 오찬, 전경련 회장 주최 만찬

3. 한·영국 통상장관회담(1.24.) 주요 내용

- 한국의 수입 자유화 및 영국의 수입규제 완화 문제
 - 영국 측은 Stock-Sale을 위한 부품 수입제한조치에 우려를 표시하고, 한국 측은 대한국 수입 규제 완화를 요청한바, 무역확대를 위해 상호주의에 따라 해결하기로 합의
- EC(구주공동체)의 제2기 GPS(일반특혜관세제도) 수혜 문제
 - 한국 측이 EC의 제2기 GSP 수혜 계속을 위한 영국의 협조를 요청한 데 대해, 영국 측은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한국의 수입 자유화 노력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
- 영국 측은 한국이 발주 예정인 대형 프로젝트(발전 설비, 지하철 등)에 참여 의사를 표명하고, 대한국 합작투자의 촉진과 신용공여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을 언급

4. 외무부장관 면담(1.25.) 주요 내용

- 해운협정 및 항공협정 체결 문제 협의
- 외무부장관, 남북관계에 관해 상세히 설명

아랍 상공회의소연합회 인사 방한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통상3

MF번호 2010-71 / 1 / 1-91

1980년 중 아랍 상공회의소연합회 인사 방한 관련 내용임.

1. S. I. Abu Dawood 회장 겸 사우디아라비아상공회의소 회장 방한(1980.5.27.~6.1.)

- 주요 일정
 - 국무총리, 상공부장관, 경제기획원장관, 동력자원부장관, 건설부장관 예방
 - 대한상의회장, 코트라 사장 예방
 - 한국종합전시장 방문, 수원 삼성전자 시찰
- 방한 성과
 - 대한상공회의소와 아랍상공회의소연합회 간의 한·아랍위원회 설립의정서 서명

2. Burham Dajani 사무총장 및 Z. Asfour 요르단 상공회의소 부회장 방한(1980.11.4.~10.)

- 방한 목적
 - 한·아랍위원회 합동회의 및 한·아랍 민간경제협력 증진 협의
- 주요 일정
 - 외무부장관, 상공부장관, 경제기획원장관 예방
 - 코트라, 한국종합전시장 방문
 - 현대중공업 시찰, 용인민속촌 관광

대이란 긴급물자 공급

생산연도 1979-1980

생 산 과 통상3

MF번호 2010-71 / 2 / 1-98

1979~80년 중 대이란 긴급물자 공급에 관한 내용임.

1. 이란 측 희망 내용

- 1979.12.11. 이란 정부는 한국 정부의 긴급물자 공급 여부를 문의
- 주이란대사는 이란 측이 희망하는 품목, 수량 등 구체적 사항 표시를 요청
- 1980.1.15. 주이란대사는 이란 측이 한국에 대한 원유공급과 대이란 긴급물자 공급을 주장하고 있음을 보고

868

2. 대미국 교섭

- 1980.2.2. 외무부 통상국장은 Levine 주한 미국대사관 참사관과 접촉, 대이란 긴급물자 공급 관련 협의를 요청함.
- 2.4. Levine 참사관은 상기 요청 관련 아래와 같은 미국 측 반응을 전달해옴.
- 미국 인질사건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한국이 긴급물자를 인도하지 않는다는 양해 하에 한국의 대이란 긴급물자 공급 교섭에 반대하지 않음.

3. 조치사항

- 1980.1.31. 경제기획원 및 상공부에 관련 물자의 공급가능 여부를 검토, 회보하도록 요청
- 2.5. 미국 측 반응을 주이란대사에게 통보, 동 건을 적극 추진하도록 지시

대코트디부아르 어선 수출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서부아프리카

MF번호 2010-71 / 3 / 1-37

Coffi 주한 코트디부아르대사(일본 상주)는 코트디부아르 정부의 어선 구매 협의를 위해 1980.3월 방한함.

1. 코트디부아르, 어선 6척 구매 관련 아래와 같이 희망함.

- 선망어선 2척, 트롤어선 1척, 새우트롤어선 3척으로 각 200~300톤급
- 계약 후 6개월 이내 인도 희망
- 장기 연불 수출 희망
- 코트디부아르 정부는 국제입찰에 한국 측 응찰 희망

2. 수출입은행장 면담(1980.3.25.)

- Coffi 대사: 어선구매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의 융자제도 및 조건 문의
- 수출입은행장: 융자 한도액은 총액의 80%로 6척 구입에 1천만 달러가 가능하며, 상환 기간은 8년임.

3. 외무부장관 면담(1980.3.31.)

- Coffi 대사 주요 언급 요지
 - 어선 6척 구입 대상국에 한국 포함
 - 해운장관 방한 용의
 - 15년 상환 융자 희망: 본 건 추진에 있어서 문제는 재정 문제인바, 폴란드의 경우 정부 간 재정차관으로 상환기간 30년, 영국의 경우 15년, 한국도 상환 기간 15년 조건의 차관 기대
- 외무부장관: 재무부와 협의하여 적극 검토 용의

대보츠와나 군수품 수출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남부아프리카

MF번호 2010-71 / 4 / 1-10

1. 국방부, 1980.8월 외무부에 보츠와나에 대한 40mm탄 5만 발(125만 달러)의 수출 가능성에 관한 의견을 문의해옴.
2. 외무부, 1980.8.30. 주케냐대사(보츠와나 겸임)에게 탄약을 보츠와나에 수출함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 등에 관한 의견 보고를 지시함.
 - 주케냐대사는 수출 상담이 어떤 경로에 의해 진행 중인지 문의
 - 외무부는 보츠와나 국방성이 영국의 Centercof Trading Establishment 회사에 의뢰, 동 회사가 한국화약 런던지사를 통해 한국화약과 계약을 맺었고, 본 건 계약은 8.26. 주영국대사관으로부터 확인받은 사실이 있다고 통보
3. 주케냐대사는 1980.9.9. 보츠와나에 대한 탄약 수출에 이의가 없다고 보고함.

대그리스 및 터키에 대한 일반군수품 수출 관련 의견 문의 및 회신

생산연도 1979-1980

생 산 과 남구

MF번호 2010-71 / 5 / 1-16

1. 상공부는 현대종합상사로부터 사이프러스에 군수물자 수출추진을 위한 수출 예비승인 신청을 받았다고 알려온바, 동 건 추진에 관한 외무부 의견을 문의함.

● 품명 및 수량

- 106mm 무반동총 50문
- 106mm 무반동총 탄 3,000발
- 예상금액: 350만 달러
- 구매자: 국방성
- 수출 방법: 현금 베이스
- 수출정보 입수경위: 현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지사
- 계약 체결(예정) 일자: 1979.9월

● 외무부 통상국장은 1979.9.6. 구주국장에게 동 건 추진에 관한 의견을 문의함.

- 구주국장은 9.14. 사이프러스는 그리스 및 튀르키예 양계 주민 간의 분쟁이 타결되지 않은 분쟁 지역으로, 특히 그리스계지역에 대한 군수품 수출은 튀르키예계를 자극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억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회신함.

2. 상공부는 대우(주)의 그리스에 대한 군수품 수출 추진에 관한 외무부 의견을 문의함.

● 품목, 수량 및 예상금액: 지뢰탐지기 85세트, 93,500달러

- 외무부 구주국장은 1979.12.8. 대그리스 군수품 수출은 대튀르키예 관계를 고려하여 가급적 억제하여야 할 것이나, 이 품목은 직접적인 공격용 무기가 아님을 감안하여 보안조치를 철저히 기하는 조건이라면 허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회신함.

대과테말라 군수품 수출

생산연도 1979-1980

생 산 과 중미

MF번호 2010-71 / 6 / 1-20

1. 대과테말라 군수품 수출

- 1979.10.31. Misch 주한 미국대사관 서기관, 외무부 미주국을 방문하여 아래 사항 통보
- 삼성물산이 과테말라에 수출하는 총탄을 수송하는 컨테이너 6개가 롱비치항에 입항하였는바, 화물수송허가서를 발급받지 않고 입항한 이유로 미국 세관당국에 의하여 압류됨.
- 외무부, 주미국대사에게 동 물품이 당초 목적지로 계속 수송하는 데 필요한 수속 절차에 협조하고 결과 보고를 지시
- 주미국대사관 관계관이 미국 국무부 관계자에게 협조를 요청한바, 동 화물을 한국으로 반송한다는 조건하에서만 압류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언급

2. Sandoval Torres 과테말라 육군 참모차장 방한 초청 추진

- 1979.7.13. 주과테말라대사, 동인의 방한 초청을 건의
- 8.13. 국방부, 육군참모차장 명의 초청 방침 확정, 통보
- 주과테말라대사, 동인이 과테말라 국방장관의 승인을 얻어 1979.11.16. 방한 예정임을 보고
- 11.1. 국방부, 국내사정으로 동인의 방한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 이를 주과테말라대사에게 통보
- 1980.4.2. 주과테말라대사, 동인이 방한을 희망한다는 보고와 함께 방한초청장 재송부 등 조치 요망
- 6.27. 주과테말라대사, 동인의 1980.7.14.~19. 방한 희망 보고

대이란 군수품 수출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중동

MF번호 2010-71 / 7 / 1-119

1. 주한미군 군사지원단, 대이란 군장비 금수 요청

- 1980.4.3. 국방부, 외무부에 이란사태 관련 주한미군 군사지원단 측 요청사항 통보
 - 3.17. 주한미군 군사지원단장, 국방부 국방차관보에게 이란 정부가 외국 정부 혹은 상사를 통해 군사장비 및 부품을 구입하고자 한다는 정보가 있는바, 이란 인질사태의 심각성을 고려, 대이란 수출을 하지 않도록 협조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함.

2. 대이란 배터리 수출 문제

- 이란 국방성 요청사항
 - 품종: 한국산 PRC-77형 무전기용 배터리
 - 거래: 반도상사의 이란 Agent를 통해 2만 5천 개 수출 요청(1980.9.15.)
- 검토 의견
 - 동 배터리가 군 통신장비에만 사용되는 점, 이란·이라크 분쟁사태에 대한 한국 입장을 감안, 동 배터리의 공급은 바람직하지 못하나, 북한책동에 의한 이란과의 관계 악화 방지를 위해 특히 이란군 당국에 대한 성의표시 필요
- 외무부장관, 10.31. 주한 미국대사를 면담, 상기 내용 설명
- L/C 상의 선적기일(12.9.)
- 수송 방법
 - L/C 상의 선적수송을 시베리아 경유 육로수송으로 합의

대자메이카 군수품 수출

생산연도 1979-1980

생 산 과 중미

MF번호 2010-71 / 8 / 1-91



874

1. 대자메이카 군장비 수출 문제

- 1979.2월 한국 수출은행과 자메이카 중앙은행 간 대자메이카 500만 달러 전대차관협정을 체결하고 협약서 교환
- 자메이카 국방성은 동 전대차관 전액을 한국 군장비 수입에 사용할 것을 희망하고 동 건 협의를 위해 국방차관을 단장으로 한 사절단 파견을 제의
- 11.22. 외무부, 국방부에 자메이카의 쿠바 간의 긴밀한 관계를 감안할 때 한국의 군장비 정보가 쿠바를 통해 북한에 유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자메이카 군장비 판매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의견 통보
- 12.29. 외무부, 주자메이카대사에게 관계기관과의 협의 결과, 전대차관으로는 군수품 수출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통보

2. Roy A. McGann 국방차관 방한 초청 추진

- 1979.10월 국방부차관 명의 방한초청장 전달
 - 10·26 사태로 방한 보류
- 1980.4월 방한 예정이었으나 자메이카 국내사정으로 방한 보류
- 6월 방한 추진
 - 방한 기간: 1980.6.30.~7.5.
 - 대표단: 국방차관 외 9명
- 자메이카 국방부, 6.19.자 서한으로 차후 방한 희망 통보

대말레이시아 군수품 수출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안보

MF번호 2010-71 / 9 / 1-21

1. Haji Aboul Taib 국방장관 방한 초청 계획

- 방한 목적
 - 예비군제도, 방위산업 시찰, M-116 소총 및 포탄 제조를 위한 합작투자, 군사외교 증진
- 방한 기간: 1980.4.24.~29.

2. 대말레이시아 106mm 무반동총 500정 수출 문제 관련 외무부 미주국 관계관, Misch 주한 미국대사관 1등 서기관 면담

- 1980.6.12.
 - 미국은 한국이 말레이시아에 판매하고자 하는 106mm 무반동총 500정 수출에 대한 미국 정부 허가를 요청받은바, 과연 말레이시아가 그와 같이 방대한 양을 필요로 하는 것인지 수량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문을 제기함.
- 6.20.
 - 외무부 관계관은 주말레이시아대사관 무관을 통해 이미 확인된 수량이므로 재확인 필요하지 않다고 언급함.
 - Misch 서기관은 미국 측으로는 전례에 따라 무기 수입국에 대하여 확인 절차를 취할 것이라고 함.
- 7.31.
 - Misch 서기관은 한국의 대말레이시아 무기 판매 문제 관련 주말레이시아 미국대사관 무관을 통하여 말레이시아 정부 측에 확인한바, 정부 수준에서 거론된 바 없다고 확인되었음을 외무부에 알림.

875

대한민국 외교부서 역사지

대태국 군수품 수출

생산연도 1979-1980

생 산 과 통상1 / 동남아

MF번호 2010-71 / 10 / 1-58

1. 태국 군사사절단 방한(1979.5.27.~6.2.)

- 단장: 사탄 장군
- 군장비 수출 문제 협의(5.28.)
 - 수출가능 품목, 특수국산장비 등에 대해 설명

2. Dawee 태국 부수상,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 면담

- Dawee 부수상은 박정희 대통령 서거 조문사절로 방한한 계기에 1979.11.2.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과 아래 요지로 면담함.
 - 부수상은 베트남의 폴 포트 세력 소탕작전으로 태국 국경이 혼란스러워 이에 대한 대처가 시급한바, 태국이 필요로 하는 군장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선처를 당부함.
 - 최 권한대행은 국방부로 하여금 검토하도록 하겠지만, 가능한 한 태국 측에 협조하여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언급함.

3. 미국 측 반응 및 대태국 군수품 수출 추진

- 1980.2.14. 주미국대사는 대태국 군수품 수출에 관한 미국 반응을 아래 요지로 보고함.
 - 수출 가능한 군수품 품목, 수량 및 가격을 구체적으로 미국 측에 제시하는 경우 License를 보유한 품목에 대하여 수출을 동의할 예정임.
- 상기 관련 주태국대사는 아래와 같이 보고함.
 - 태국 국방상은 자체 예산이 없어 무기를 구입할 수 없으므로 모든 무기는 FMS(대외군사판매) 자금으로 구매하고 있는 실정이며 1980년도 자금은 이미 소진함.
 - 태국 측은 미국 측에 자금 추가 요청 및 1981년도 자금으로 무기 구입을 제의함.

대튀니지 군수품 수출

생산연도 1978-1980

생 산 과 통상3 / 중동

MF번호 2010-71 / 11 / 1-101

1. 1978.12.1. 외무부, 상공부에 아래 사항 통보

- 튀니지 외무성은 주튀니지대사관을 통해 군복 등 군 개인장비 납품계약이 적기에 이행된 데 대해 만족한다고 통보하고, 동 계약의 추가조항 방식을 통해 추가 구입 의향을 가지고 있으며 금융 조건의 갱신을 요구함.

2. 군수품 수출 사전승인

- 1979.2.12. 상공부는 외무부에 일반군수품 수출을 사전 승인하였다고 알려오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

3. 1979년도 제2차 수출보험심의회 개최(1979.6.11.)

- 안건: 대우실업(주)의 대튀니지 피복류 연불수출에 따른 중장기 연불수출보험 인수에 관한 건

4. 튀니지 연불수출 선적

- 1979.6.21. 외무부, 주튀니지대사에게 대우실업(주)이 제출한 대튀니지 군수품 수출수정 인도 계획표 및 세부 선적계획표 송부
- 1980.3.27. 외무부, 수출입은행장에게 아래 사항 통보
 - 주튀니지대사는 대우실업의 대튀니지 군수품 연불수출 관련 튀니지 국방성으로부터 1978.11월 계약분의 인수를 확인하였다고 보고

대남미지역 군수품 수출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남미

MF번호 2010-71 / 12 / 1-21

878

1. 페루

- 외무부 통상국장은 1980.2.11. 상공부로부터 아래 내용의 군수물자 수출 추진에 대한 외무부 의견을 문의 받은바, 미주국의 의견을 요청함.
 - 품목 및 수량: 106 M R. R M40A2 without Tripod 39문
 - 예상금액: 1,262,781달러
 - 수출대상상사: OTO Melara S. P. A.(이탈리아)
 - 수출추진업체: 기아산업(주)
 - 공급업체: 기아기공(주)
 - 비고: 이탈리아 피아트에서 생산하는 장갑차에 장착하여 최종 소비자인 페루에 수출하는 품목임.
- 미주국장, 2.13. 통상국장에게 페루·칠레 간의 분쟁관계를 감안, 양국 간에 살상용 무기류 수출은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을 것이나, 대페루 직접수출이 아닌 만큼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회신
 - 단, 판매과정에서 철저한 보안조치 필요

2. 에콰도르

- 상공부, 1980.3.8. 외무부에 대에콰도르 군수물자 수출 추진에 관한 의견 문의
 - 품목: 소총탄 반제품
 - 금액: 1,363,624달러
- 외무부 미주국장, 3.10. 통상국장에게 에콰도르에 대한 군수물자 수출에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회신
 - 단, 동국과 페루 간의 국경분쟁을 감안, 철저한 보안조치 필요

3. 콜롬비아

- 외무부 통상국장은 1980.4.29. 상공부로부터 아래 내용의 콜롬비아에 대한 군수품 수출에 대한 외무부 의견을 문의받은바, 미주국의 의견을 요청함.
 - 품명: CAL 30M1 Carbine, 550,000발
 - 금액: 63,250달러
- 외무부 미주국장, 5.1. 통상국장에게 콜롬비아에 대한 군수물자 수출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회신
 - 단,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 간 국경분쟁 상태에 있고, 반정부 단체의 준동 상존을 감안, 철저한 보안조치 필요



4. 칠레

- 외무부 통상국장, 1980.11.19. 미주국장에게 칠레 해군에 고속정 및 이에 부착할 대포 등 무기류 수출에 관한 의견을 문의함.
- 미주국장, 11.20. 통상국장에게 양국 간 영토분쟁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바, 분쟁관계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수출 억제 소망 의견을 회신함.
 - 칠레와 아르헨티나 간은 비글해협 문제로 인한 국경분쟁 상태

중공산 석탄 수입

생산연도 1979-1980

생 산 과 통상3 / 중국

MF번호 2010-71 / 14 / 1-274

1979~80년 중 중국(구 중공)산 석탄 수입 추진 관련 내용임.

1. 1979.1.22. 동력자원부는 효성물산의 중국산 무연탄 수입 승인 요청에 대한 외무부 의견 문의
 - 1.24. 외무부는 6·23 평화통일외교정책(공산권 국가와의 관계개선)에 따라 중국산 무연탄 수입 동의 입장 혁신
2. 1979.2.20. 동력자원부는 (주)쌍용, 효성물산, 한호산업, 용성상사, 삼경물산 등 5개 기업의 중국산 무연탄(총계 35만 5천 톤) 수입 승인 요청에 대한 외무부 의견 문의
3. 1979.3.29. 싱가포르 중개무역업체 Express Finance Ltd.는 주홍콩총영사관을 통해 중국산 무연탄의 한국 수출 판매를 제의
 - 4.23. Express Finance Ltd. 담당자, 방한하여 조달청 차장을 면담하고 구체적 수출입 조건 협의
4. 1979.9.25. 삼성물산은 홍콩 기업 UMO를 통한 중국산 무연탄 7만 5천 톤 수입계약 체결
5. 특수지역 무연탄 도입 문제 협의를 위한 관계부처 회의(1980.2.1., 외무부) 개최
 - 참가자: 외무부, 동력자원부, 재무부, 조달청, 한국전력 관계자
6. 1980.2.7. 두산산업, 홍콩소재 Anto 무역상사와 중국산 석탄(150만 톤) 구매계약 체결

일본산 쌀 도입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통상1

MF번호 2010-71 / 15 / 1-253

1980년 중 일본산 쌀 도입 추진 관련 내용임.

1. 1980.9.12. 농수산부는 추곡 작황량 추정을 통해 예상되는 쌀 부족량 일부 4만 5천 톤의 일본산 쌀 도입 추진 결정

- 9.13. 외무부는 주일본대사관에 일본산 쌀 4만 5천 톤 도입 교섭을 지시

2. 1980.10.6. 주일본대사, 가메오카 일본 농림수산상을 면담, 일본산 쌀 100만 톤 추가 도입 협조 요청

3. 1980.10.27. 강인희 농수산부차관, Hathaway 미 농무부 차관을 면담하고 한국의 일본산 쌀 100만 톤 추가 수입에 대한 미국 정부의 동의 획득

4. 일본산 쌀 100만 톤 도입을 위한 실무협의단 일본 파견(1980.11.6.~12.)

- 목적: 일본산 쌀 도입 시기 단축을 위한 실무협의 추진
- 대표단 구성: 신건호 농수산부 농업경제국장, 소하영 조달청 관리국장 등 4명
- 협의 결과
 - 1981.3월까지 30만 톤, 9월까지 70만 톤 선적
 - 30만 톤 도입 가격과 잔량 70만 톤 동일 가격 적용

5. 일본산 쌀 도입에 관한 한·일본 합의각서 서명(1980.12.9.)

- 주일본대사와 일본 식량청 장관 간 서명
- 수량: 현미 15만 톤(1978년산 4만 톤, 1977년산 11만 톤)
- 가격: FOB 톤당 9만 4천 엔

소련산 명태 수입

생산연도 1979-1980

생 산 과 통상3

MF번호 2010-71 / 16 / 1-38

1979~80년 중 소련산 명태 수입 추진 관련 내용임.

1. 추진 경위

- 1978.4.13. 주일본 러시아무역대표부 식품담당관, 주일본대사관 수산관과 면담에서 소련산 명태의 한국 수출 제의
 - 수량: 7,000~12,000톤
 - 수송방법: FOB를 나훗카로 정하여 러시아 무역공단이 인정하는 일본상사를 통해 한국 수출

882

2. 소련산 명태 수입에 대한 정부 입장

- 소련의 북양 동태 수출 제의를 수락하고 가능한 방법 강구 추진
- 소련과의 직접거래를 추진하나 우선 간접거래 실적을 구축한 후 직접거래로 전환

3. 주일본대사관을 통한 명태 수입 추진 방안

- 한국 전담업체 선정(창구 단일화)
- 주일본대사관으로 하여금 일본상사 대륙무역 및 주일본 러시아무역대표부에 제의
- 나훗카-부산 간 직항로 개설 교섭, 한국선박에 의한 수송

4. 소련산 명태 수입 효과

- 간접교역이지만 소련과의 교역관계 수립으로 수산관계 대화 통로를 열어 캄차카어장 입어 교섭
- 한국의 수출용 동태 가공시설을 활용, 소련산 명태의 수입 전량 1차 가공 수출을 통한 외화 획득
- 명태 수입 결제를 국산상품으로 변제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장기적으로 국산상품 소련 진출 모색

미국산 쌀 도입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통상1

MF번호 2010-71 / 17 / 1-242

1980년 중 미국산 쌀 도입 추진 관련 내용임.

1. 1980.9.10. 농수산부는 1981 미국년도 중 외국산 쌀 도입 계획의 일환으로 1980년산 미국산 쌀 40만 톤 도입 결정

- 외무부는 총 1억 달러의 미국산 쌀 도입자금을 FY81 GSM(General Sales Manager) 102 자금 유보분에서 확보 교섭할 것을 주미국대사관에 지시
- 9.26. 미 농무부, GSM에 의한 한국 정부 지원 쌀 도입 자금 1억 5천만 달러 공고

2. 미국산 현미 구매계약 체결(1980.9.12.)

- 수량: 14만 4천 톤
- 선적시기: 1980.10~81.2월
- 품종: Calrose(1980년산)
- 재원: KFX
 - 계약당시 GSM 102 자금 사용 내역이 공고되지 않아 부득이 KFX 자금으로 구입

3. 미국 남부미 20만 톤 도입 검토

- 외무부는 1980.11.22. 주미국대사에게 미국 남부미 Mars, Brazos, Saturn, Nortai 4개 품종 20만 톤 한도 내에서 구매를 결정한바, 동 사실을 미국 측에 통보할 것을 지시함.
 - 동 구매는 일본미 100만 톤의 대한국 수출에 대한 미국 측 반발 무마 차원에서 검토됨.
- 외무부는 11.29. 주미국대사에게 조달청이 남부미 Offer 가격이 440~450달러로 높다고 전해 온바, 미국 정부로 하여금 쌀 수출 업계에 무리하게 높은 가격을 요구하지 않도록 교섭해줄 것을 지시함.

베트남산 무연탄 수입 문제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통상3

MF번호 2010-71 / 18 / 1-47

1980년 중 베트남산 무연탄 수입 추진과 관련된 내용임.

1. 1980.1월 (주)범양사는 베트남 Minexport사와 베트남 Hongay탄 장기수입공급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동력자원부의 타당성 검토를 요청함.

- 원산지: 베트남 Hongay 탄전 및 Tay Vang Danh 탄광(추정 매장량 수억 톤)
- 공급기간: 1981~90년 10년간
- 공급량: 890만 톤
- 가격: 대일본 공급가격보다 5% 하향 조정

884

2. 대특수지역 및 베트남 무연탄 수입 관계부처 회의(1980.2.1., 외무부) 개최

- 회의 목적: 범양사의 베트남 무연탄 수입 추진 문제 협의
- 참가자: 외무부, 동력자원부, 재무부, 중앙정보부, 조달청, 한국전력 관계자
- 토의내용
 - 거래방식: 중간상 이익을 배제하는 직거래 방식으로 추진하도록 유도
 - 가격: 중국(구 중공)산 무연탄 도입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중국산과 같거나 저렴한 가격으로 구체적 제시
- 조치사항
 - 범양사에 회의 내용을 통보, 제시가격을 포함한 새로운 대안을 제출하도록 조치
 - 대안 검토 후 특수지역 경제교류협의회에 상정, 추진

한·일본 간 정기여객선(부관페리호) 운항 개선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일본

MF번호 2010-71 / 19 / 1-52

1980년 중 한·일본 간 정기여객선(부관페리호)의 운항 개선조치 관련 내용임.

1. 1980.4.10. 교통부는 한국관광산업 진흥책의 일환으로 부관페리호에 대한 자동차 반입금지조치 해제 추진과 관련하여 외무부, 내무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의 입장을 문의함.

- 부관페리호의 자동차 일시반입은 1974년 문세광 사건으로 인해 1974.10.1.부터 전면 금지됨.
- 외무부는 주일본대사관 및 주시모노세키총영사관 보고 내용을 참고, 아래와 같은 문제점을 고려하여 전면적 해제보다는 단계적 해제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교통부에 회신함.
 - 차량의 일시적 대량 반입에 따른 조종권, 극우파 등 불순분자의 잠입 가능성 및 수입 금지품의 은닉 수입 가능성
 - 반입차량에 의한 퇴폐적 풍조 유입 가능성

2. 1980.7.9. 관세청은 부관페리호 특수차량 탑승 허용문제 관련 관계부처 회의 개최를 제의함.

- 의제: 자동차 반입이 금지되고 있는 부관페리호에 의한 특수화물(오징어, 뱀장어, 명태, 수박 등) 차량 반출입 업무 개선
- 참가자: 외무부, 내무부, 상공부, 교통부, 보건사회부, 중앙정보부 관계자
- 외무부 의견
 - 부관페리호에 대한 모든 종류의 차량반입 허용은 시기상조라고 판단되나, 우선 냉동·냉장 농수산물, 활어운반용 트랙터 및 냉장차량에 대한 효과적 보안대책 수립 후 반출입 허용
 - 현지 공관 의견을 참작하고 비공식적이라도 일본 측 반응 사전 타진 필요
- 관세청은 7.29. 부관페리호를 이용한 냉동·냉장 농수산물 및 활어운반용 트랙터 및 차량과 용기가 부착된 냉동·냉장 차량 반출입 허용에 따른 감시대책을 마련, 관련부처에 송부함.

한·일본 간 구해저전선 문제

생산연도 1978-1980

생 산 과 일본

MF번호 2010-71 / 20 / 1-68

1978~80년 중 한·일본 간 구해저전선 문제 관련 양국 간 협의 동향임.

1. 한·일본 간 해저전선 문제

- 소유권 문제: 해저전선 분할 문제
- 사용료 문제: 1952.4.28.~63.9.15. 미군이 해저케이블 사용료로 일본 측에 일괄 지불한 13억 5천만 엔 중 한국에 반환해야할 금액 산정 및 환불 문제

886

2. 한·일본 간 구해저전선 사용료 문제 관련 한·일본 실무회담 개최(1978.5.30.~31., 서울)

- 1977.12월 도쿄회의에서 일본 측이 제시한 자료(요금수납액, 구간거리, 보수비)는 공식적임을 재확인
 - 일본 우정성이 한국 체신부에 공식문서로 확인하기로 합의
- 합의사항
 - 기존 해저전선은 극히 노후되어 재산적 가치가 없으므로 소유권 분할 문제와 사용료 환불 문제를 분리 협의
 - 일본은 한국 측에 3억 엔을 환불하고 계산액을 각각 자국 관계기관에 보고

한·일본 간 신해저케이블 설치

생산연도 1977-1980

생 산 과 일본

MF번호 2010-71 / 21 / 1-60

1977~80년 중 한·일본 간 국제통신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해저케이블 통신망 건설 계획 관련 내용임.

1. 경위

- 1978.6월 한·일본 해저케이블 건설, 보수 및 기술정보협정 체결
- 1979.5월 자재구매계약 체결
- 체신부와 일본 국제통신전화주식회사(KDD) 공동사업으로 착공

2. 사업 추진 현황

- 1979.7.9. 육상 시설물 착공
- 1980.8.3. 케이블 포설작업 개시
- 11.28. 개통식 개최

3. 신케이블 건설 계획 개요(유선)

- 통신 용량: 2,700회선(CS-36M 방식)
- 투자 규모: 140억 원
- 건설 기간: 1979.5월~80.11.28.
- 건설 구간: 부산-일본 하마타(280Km)

싱가포르항공기(SIA)에 대한 김포공항 야간 계류 허용조치

생산연도 1979

생 산 과 조약1

MF번호 2010-71 / 22 / 1-41

1. 1978.9월 싱가포르항공(SIA)은 서울-싱가포르 정기운항 항공기(주3편)의 김포공항 야간 계류 허용을 교통부에 요청함.
 - 교통부는 김포공항의 협소함을 이유로 야간 계류 불허
 - 실질적 불허 사유는 싱가포르항공의 일방적 대한민국 취항 및 중동취업 한국근로자 수송 잠식 문제
2. 1979.2월 싱가포르 외무성은 주싱가포르대사관을 통해 싱가포르항공의 새로운 운항시간표에 따른 야간 계류 허용을 재요청함.
 - 교통부는 김포공항 확장 공사 완료 시 야간 계류 허용 방침임을 싱가포르 정부에 회신
3. 1979.9.26. 교통부는 싱가포르항공의 김포공항 야간 계류를 허가함.
 - 양국 관계의 우호적 발전을 고려하여 리관유 싱가포르 총리의 공식방한(1979.10.16.~21.) 직전인 1979.10.1.부로 시행함을 싱가포르항공 서울지점에 통보

시베리아철도 이용을 위한 부산-Vostochny항(소련) 간 화물운송 요청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통상3

MF번호 2010-71 / 23 / 1-20

1. 1980.2월 핀란드 화물운송회사 MAT는 주핀란드대사관을 통해 부산-소련 보스토치니 항구 간 해상운송 및 시베리아철도를 통한 대핀란드 화물운송 협조를 한국 정부에 요청함.
 - 한국 정부의 부산-소련항 간 일본선박 이용 불가 정책 및 한국선박의 소련 입항 불가에 따라 핀란드 등 북구지역에 대한 화물운송이 불가능해짐.
 - 외무부는 한·핀란드 및 대북구 경제교역의 유용한 운송 방법인 시베리아철도 사용을 위해 부산-소련 보스토치니 항구 간 일본선박을 이용한 화물운송을 허용하여 줄 것을 해운항만청에 건의
2. 1980.2.29. 해운항만청은 국적선 이용 제고를 위해 개정된 “국적선 이용 화물 운송조정에 관한 규칙”의 웨이버 규정을 핀란드 화물에 대한 시베리아철도 이용에 탄력적으로 적용할 방침임을 외무부에 회신함.

미국의 PAN AM에 대한 할인요금 적용 신청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조약1

MF번호 2010-71 / 24 / 1-49

1. 1980.6월 미국 팬암 항공사는 한-미국 노선 할인요금(일명 아리랑 운임, 한국-미국 직항노선 대상) 적용을 요청
 - 한-미국 노선 할인요금은 한국과 미국 서해안을 직항 운항하는 항공사인 KAL, NWA, BRANIFF에 적용 중
2. 1980.6.23. 교통부는 팬암이 한국 정부의 국제선 정기항공 운송사업 면허업체가 아니고 해당 노선의 운임을 인가받은 항공사가 아니므로 할인요금(특별 저운임 항공요금) 적용대상이 아님을 통보
3. 1980.7.18. 주한 미국대사관은 1979.3월 개정 한·미국 항공협정을 근거로 팬암 항공사에 대한 할인요금 적용 재검토를 요청
 - 1980.9.11. 교통부는 협정 해석상 팬암이 저운임 적용대상이 아님을 회보

한·미국 해운회담. Washington D.C., 1980.2.7.-8.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통상2 / 조약1

MF번호 2010-71 / 25 / 1-190

제2차 한·미국 해운회담이 1980.2.7.~8. 워싱턴 D.C.에서 개최됨.

1.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신동원 외무부 경제차관보
- 미국 측: Boyd Hight 국무부 교통담당 부차관보

2. 주요 의제

- 한·미국 항로의 제3국 선박에 대한 문호 개방
- 한·미국 항로 및 제3국 항로상의 미 국적 선박에 의한 화물선적 웨이버 적용 문제

3. 주요 결과

- 한·미국 해운회담 합의 의사록 서명(1980.2.8.)
- 한·미국 간 해운 분야 관계 증진을 위한 정부 간 정례 해운기구 상설화 추진 합의

서Berlin 국제수입박람회 참가, 1980.8.27.-31.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통상2

MF번호 2010-71 / 27 / 1-165

1980.8.27.~31. 개최된 서베를린 국제수입박람회 관련 내용임.

1. 제18회 서베를린 국제수입박람회

- 주최: 서베를린 박람회
- 후원: EC(구주공동체) 집행위, 서독 연방정부 및 서베를린 정부
- 성격: 비구주국가와 구주국가 간 교역증진 목적으로 매년 개최되는 국제종합무역박람회
- 참가업체: 57개국 1,182개 업체
- 한국은 효성물산, 코오롱, 삼성물산, 신영섬유, 동국무역, 선경, 대우실업 등 15개 업체 참가

892

2. 한국기업 참가 목적

- 대서독 및 EC지역 섬유제품 수출시장 확대
- 일반소비재 및 신규 개발상품 시장 정보 수집
- 박람회 참가를 통한 경제유대 강화

3. 외무부는 이문용 주독일대사, 정주년 주제네바대표부 공사 등을 파견하여 한국 참여 기업 지원

제4차 Dakar(세네갈) 국제박람회 참가, 1980.11.25.-12.7.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통상3

MF번호 2010-72 / 1 / 1-97

제4차 다카르 국제박람회(1980.11.25.~12.7.) 참가 관련 내용임.

1. 1979.10.9. 생고르 세네갈 대통령, 한국기업의 다카르 국제박람회 참가를 요청하는 대통령 앞서한 송부

- 11.26. 상공부는 코트라 주관으로 대서부아프리카 시장 진출 기반 구축 및 대북한 우위 유지를 위해 다카르 국제박람회 참가 추진

2. 한국 측 참가 기업 및 출품 품목

- 한국기업: 대우실업, 현대, 동양정밀, 국제특수금속, 삼해공업, 금성사 등 7개 업체
- 출품 품목: 기계류, 자동차류, 금속제품, 하드웨어, 전기·전자 제품, 어망, 어구, 합성수지 및 피혁 제품, 문방구류, 시계류 등

중동지역 국제박람회 참가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통상3

MF번호 2010-72 / 2 / 1-124

1980년 중 중동·아프리카지역에서 개최된 국제박람회 관련 내용임.

1. 카르툼(수단) 국제박람회(제3차: 1980.1.24.~2.8., 제4차: 1980.11.3.~17.)

- 한국 참여 기업: 대우실업
- 전시품: 화물 및 승용차량 사출기, 양말제조기, 건축재료 등

2. 트리폴리 국제박람회(1980.3.1.~20.)

- 한국 참여 기업: 삼성, 대우실업
- 전시품: 버스, 승용차, 트럭, 공작기계 등 중장비, 의류, 광학기기, 전자제품, 가정용품 등

3. 다마스쿠스 국제박람회(1980.8.20.~9.8.)

- 한국 참여 기업 및 전시품
 - 국제상사: 직물, 의류, 주방용품, 디젤엔진, 전기·전자제품
 - 현대자동차: 포니 승용차, 포니 픽업트럭, 소형버스

4. 테헤란 국제박람회(1980.9.19.~10.1.)

- 한국 불참

구주지역 국제박람회 참가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통상2

MF번호 2010-72 / 3 / 1-53

1980년 중 구주지역에서 개최된 국제박람회 관련 내용임.

1. 서베를린 국제농산물박람회(1980.1.23.~2.3.)

-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각종 경공업제품 전시
- 한국 불참

2. 제네바 국제발명신기술전시회(1980.11.28.~12.7.)

- 한국 참가자: 오기원 국제발명품전시회 아시아지부장, 신석균 발명가, 안병렬 발명가 등 9인
전시품: 자동소화필터, 파이프 담배, 라디오 모자, 펌프 석유버너, 가스 겸용 석유버너, 인삼 주사액 등

895

대한민국 여권관리처 여권과

1980년도 동구권 개최 국제박람회 참가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통상3 / 동구

MF번호 2010-72 / 4 / 1-247

1980년 중 동구권지역에서 개최된 국제박람회 관련 내용임.

1. 브루노(체코슬로바키아) 소비재 박람회(1980.4.16.~24.)

- 한국은 핀란드 중개상사 Thomesto Oy를 통해 간접 참가
- 전시품: 전자제품, 의류, 신발류, 섬유류, 완구, 주방용구 등

2. 포즈난(폴란드) 박람회(1980.6.9.~17.)

- 한국은 두산산업 독일 현지법인 Dusan-Ams를 통해 간접 참가
- 전시품: 직물류, 전자 및 전기제품, 공작기기 등

3. 라이프치히(동독) 박람회(춘계: 1980.3.9.~15., 추계: 1980.8.31.~9.7.)

- 김성정 코트라 서베를린무역관장 참관

4. 자그레브(유고슬라비아) 박람회(1980.9.14.~23.)

- 변정현 주밀라노총영사, 장성환 코트라 사장, 김형식 코트라 밀라노무역관장은 박람회 참관을 위한 유고 입국 사증을 신청하였으나 유고 외무성에 의해 거절됨.

Cairo(이집트) KOTRA 사무소 설치 요청

생산연도 1979-1980

생 산 과 통상3

MF번호 2010-72 / 7 / 1-15

1. 1979.7.28. 주카이로총영사는 이집트 외무성 국제경제국장을 면담, 코트라 카이로사무소 (Korea Trade Center in Cairo) 설치 승인을 요청함.
2. 1980.4.22. 이집트 외무성은 코트라 별도 사무실 설치를 아래 조건으로 허가함.
 - 총영사관 일부인 Commercial Office로 설치, 대외명칭은 주카이로총영사관 사무실

77그룹 각료회의. New York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2010-72 / 8 / 1-215

1980년 중 뉴욕에서 개최된 유엔 특별총회 대비 77그룹 각료회의의 관련 내용임.

1. 회의 일정

- 고위실무자회의
 - 제1차: 1980.3.6.~10.
 - 제2차: 1980.8.18.~20.
- 각료회의
 - 제1차: 1980.3.11.~14.
 - 제2차: 1980.8.21.~22.
 - 제3차: 1980.9.29.~30.

898

2. 참가국

- 77그룹 소속 개도국 119개국

3. 회의 목적

- 1980년 유엔 특별총회를 앞두고 개최되는 Committee of Whole 회의에 대비한 77그룹 공동 입장 및 전략 수립
- 개도국 간 집단자조계획에 관한 아루사 선언 및 하바나 비동맹회의 결의 내용 이행 검토

4. 주요 의제

- Committee of Whole 회의 결과 검토
- “제3차 유엔 개발 10년” 개발전략 준비위원회 활동 검토
- 유엔 특별총회 준비 사항
- 개도국 간 경제협력

5. Committee of Whole 회의 기능

- 개발을 위한 국제경제협력에 관한 Global Negotiations 개최 준비
- 유엔 특별총회에 Global Negotiations의 진행절차, 회의 기간, 주요 의제에 대한 최종보고서 제출
- Global Negotiations 토의 안건: 원자재문제, 에너지문제, 무역문제, 개발문제, 통화 및 금융문제



6. 한국대표단 구성(수석대표)

- 제1차 회의: 문덕주 외무부 본부대사
- 제2차 회의: 윤석현 주유엔대표부대사
- 제3차 회의: 윤석현 주유엔대표부대사

선진국 경제정상회담(G7), 제6차. Venice(이탈리아), 1980.6.22.-23.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서구

MF번호 2010-72 / 9 / 1-91

제6차 선진국 경제정상회담(G7)이 1980.6.22.~23.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개최됨.

1. 참가국

-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2. 주요 의제

- 에너지문제, 인플레이션, 경제침체, 실업문제, 남북문제, 통화제도, 세계무역

900

3. 주요 경제관계 합의사항

- 에너지문제
 - 유가인상조치가 선진산업국 인플레 및 경기침체 요인임을 확인, 석유 수입억제와 대체에너지 개발 추진
 - EC(구주공동체), IEA 및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석유 소비절약을 위한 방안 추진
 - 1990년까지 석탄 사용 배증, 핵에너지 사용 증대
 - 향후 10년간 총 에너지 수요 중 석유의 비중을 현재의 53%에서 40%로 감축
- 국제무역
 - 자유무역 지지, 보호주의 배격
 - MTN(다자간무역협상) 조기이행 촉진
 - 선진개발국 시장개방 촉구
 - 개도국 국제수지 보전을 위한 IMF(국제통화기금) 지원 확대

ECDC(개도국간경제협력위원회) 아시아태평양지역 기구 설립문제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경제기구

MF번호 2010-72 / 10 / 1-57

1980년 중 ECDC(개도국간경제협력위원회) 아시아태평양지역 기구 설립 추진 관련 내용임.

1. 경위

- 1980.1.7.~15. 마닐라 개최 ECDC 아시아태평양지역 회의에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지역 개도국 간 경제협력을 위한 상설기구 설립을 제안

2. ECDC 아시아지역 회의 결정사항

- 동 기구 설립 제안 원칙적으로 환영
- 제네바 77아시아그룹 및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사무국에 기구 설립 관련 연구 지원 요청
- 1980.6월 개최 예정인 제1차 ECDC 특별회의에 제출할 권고안의 작성을 제네바 77아시아그룹에 의뢰

3. 아시아지역 경제협력기구 현황

- 아시아 국가들은 준지역적 조직인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ECWA(서아시아경제사회위원회), 방콕협정 등에 개별적으로 가입하고 있으나 SELA(중남미경제기구)나 OAU(아프리카단결기구) 등과 같은 아시아지역 전체개도국을 포함하는 개도국 간 경제협력 추진 기구는 부재

4. 한국 정부 입장

- 원칙적으로 환영하나 동 기구의 성격, 구조 및 기능 등에 관한 UNCTAD 연구팀의 검토 결과가 종합될 때까지 공식 입장 정립 유보

콜롬보플랜 자문위원회 회의, 제28차. Jakarta(인도네시아), 1980.11.20.-25.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경제조사

MF번호 2010-72 / 11 / 1-137

정부는 1980.11.20.~25.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제28차 콜롬보플랜 자문위원회 회의에 윤영교 주스리랑카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회의 일정

- 실무자회의: 1980.11.20.~22.
- 각료회의: 1980.11.24.~25.

2. 참가국

- 23개 회원국, 3개 옵서버국, 1개 국제기구

3. 주요 의제

- 콜롬보플랜의 장래 역할에 대한 실무자회의(1979.12.4.~6., 콜롬보) 합의사항 심의
- 3자 간 기술협력 관련 TCDC(개도국간경제기술협력) 및 ECDC(개도국간경제협력위원회)
- 브란트위원회 보고서에 의한 저개도국으로의 자원 이전
- 농촌의 이용과 환경에 적합한 신에너지 자원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4. 주요 결과

- 실무자회의
 - 콜롬보플랜 장래 역할
 - TCDC를 비롯한 기술협력 사업에 중점
 - 1986년까지 존속하기로 합의
 - 콜롬보플랜 사무국의 통계기능, 약물 자문사업 등의 계속 필요성에 합의
 - 콜롬보플랜 기술자 교육 대학
 - 각국 계속 지원하기로 합의
- 각료회의
 - 실무자회의 합의사항 원안대로 채택

5. 한국대표단 활동

- 농촌 이용에 적합한 신에너지 자원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토의
 - 한국 농촌 에너지 개발 현황과 입장을 인도네시아와 비교, 발표
- 콜롬보플랜 기술자 교육 대학에 가능한 지원의사 표명



- 각료회의 시 수석대표 발언 요지

- 의장 취임사에 대한 답사: 3자 간의 기술협력, 개도국에 대한 자원 이전, 농촌 대체에너지 개발 등에 관한 한국 입장과 경험 천명
- 3자 간 기술협력 및 자원 이전, 특히 인적자원 교류의 중요성 강조. 한국 개발 경험, 인력 및 기술을 타개도국에 제공할 의사 표명 및 이를 위한 선진국의 재정지원 필요성 강조

콜롬보플랜 기술협력이사회, 제150-151차. Colombo(스리랑카)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경제조사

MF번호 2010-72 / 12 / 1-42

제150차 및 제151차 콜롬보플랜 기술협력이사회 회의가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개최됨.

1. 제150차 회의(1980.2.15.)

- 콜롬보플랜에 의해 수행된 기술훈련계획 성과 분석
- 성과분석을 위한 각 회원국 담당관 지정 및 사무국 통보
- 한국은 윤영교 주스리랑카대사, 이남수 주스리랑카대사관 서기관이 대표로 참석

2. 제151차 회의(1980.4.24.)

- 윤영교 주스리랑카대사, 임기 1년 콜롬보플랜 이사회 의장으로 선출
 - 이사회 역할: 총회 제출 의제 사전 검토, 예산 심의 및 공보 담당

PBEC(태평양경제협의회) 총회, 제13차. Sydney(호주), 1980.5.6.-9.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일본

MF번호 2010-72 / 13 / 1-87

제13차 PBEC(태평양경제협의회) 총회가 1980.5.6.~9. 호주 시드니에서 개최됨.

1. 참가국

- 일본, 호주,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피지 등 17개국
- 한국기업인 참가자: 정인영(현대양행), 김종대(대전피혁), 김입삼(전경련), 배정일(남광토건), 김종배(화이자약품), 박노성(대원물산), 박대진(대한투자금융) 등 7인

2. 주요 토의내용

- 에너지, 식량, 제조업, 운수, 통신 사업 등 분야에서의 역내 국가 간 민간 차원에서의 협력체제 구축
- 일본 제안 PEC(태평양경제공동체) 구상에 관한 구체적 추진 방법
 - 모든 PBEC 회의 참가국, 일본의 PEC 구상에 만장일치 합의

3. 건의사항

- 금년도 총회는 민간대표로 구성되는 회의로서 정부 대표의 참여가 불허된바, 1980.5.6. Opening Session에만 옵서버로 참관이 가능함.
- 금년도 총회에는 미국,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등 PBEC 창설 국가의 정부로부터 축전이 있었는데, 한국도 차기 회의에는 관심 표시를 위한 축전 발송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SPEC(남태평양경제협력기구) 선박기금 모금 사절단 방한, 1980.5.5.-7.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동남아

MF번호 2010-72 / 14 / 1-62

남태평양 도서국 간의 선박 항로 개설 및 운용을 위한 SPEC(남태평양경제협력기구) 선박기금 모금 사절단이 1980.5.5.~7. 방한함.

1. 방한 목적

- SPEC가 설립 운용 중인 Pacific Forum Line의 선박기금 모금
- 사절단은 한국 방문 이후, 일본, 미국, 캐나다 등 순방 예정

906

2. 사절단 구성

- Asi Eikeni 사모아(구 서사모아) 교통장관(단장), Mahe Tupouniua 통가 재무장관

3. 방한 접수 필요성

- 남태평양지역 국가(현재 10개 독립국)와의 우호협력 강화, 해운항로 개설 및 어업진출을 위해 South Pacific Forum이 창설한 SPEC와의 협력이 중요

4. 주요 일정

- 경제기획원장관 예방(한국 경제 현황 브리핑 청취)
- 해운항만청장 예방(한국 해운정책 브리핑)
- 외무부차관 예방
- 원양어업협회장, 선주협회장 면담

Davignon, Etienne EC(구주공동체) 집행위원 방한, 1980.5.13.-14.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통상2

MF번호 2010-72 / 15 / 1-112

Davignon EC(구주공동체) 집행위원이 1980.5.13.~14. 방한함.

1. 방한 목적

- 한·EC 간 통상증대 및 경제협력 증진 방안 협의
- EC 역내시장, 산업정책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EC 집행위원 방한을 통해 한국의 대EC 섬유, 철강 수출 등 문제 협의

2. 주요 일정

- 경제기획원장관, 상공부장관, 외무부차관 예방

3. 상공부장관 및 외무부차관 예방 시 주요 협의내용

- 한국의 대EC 주요 수출입 품목 교역 확대 방안
 - 주요 수출품목: 섬유류, 전기기기, 가죽제품, 신발류, 목제품, 완구류, 선박 등
 - 주요 수입품목: 기계류, 전기기기, 유기화합물, 항공기, 철강제품, 광학기기 등
- 한국산 경공업 및 중공업제품에 대한 EC 회원국의 수입규제조치 완화 방안
 - EC 공동규제품목: 전 섬유류(CCCN 123개 품목 중 45개 품목), 양송이통조림
- 일본 정부 제안 환태평양공동체 구상에 대한 EC 입장
- 세이프가드 협상 관련 한국 정부 및 EC 입장

한국의 방사성 폐기물 해양 투기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일본

MF번호 2010-72 / 16 / 1-40

1. 1980.10.3. 아사히, 요미우리, 도쿄신문 등 일본 언론사는 한국의 방사성 폐기물 해양 투기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보도함.

- 한국, 일본해에 저레벨 방사성 폐기물 10년 전부터 투기
- 울릉도 근방 250Km 지점에 투기
- 수산자원의 보고, 오염 우려

2. 1980.10.7. 과학기술처는 방사성 폐기물 해양 투기에 대한 일본 언론사 보도에 대해 아래와 같은 답변 자료를 작성, 주한 일본대사관에 송부함.

- 1968~72년 중 원자력연구소는 국내 규정 및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권고기준에 따라 안전 처리하여 합법적으로 한국영해 내 울릉도 서남방 11해리 지점에 방사성 폐기물을 시험 투기하였음.
- 동 폐기물은 1년 이내에 방사능이 안전 수준까지 저감되는 핵종(AU-198, I-131 등)으로써 해상생물 및 환경에의 오염은 전혀 문제되지 않음.
- 폐기 상태는 강철제의 용기 중심부에 고체 폐기물을 넣고 콘크리트로 봉하여 해산 2,192m 지점에 투기되었음.
- 1972~73년 2차에 걸쳐 투기 지점에서 해수를 채취하여 방사능을 측정한 결과 자연 상태의 해수로부터 나오는 방사능과 차이가 없음을 확인함.

아프가니스탄사태(보고서)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서남아

MF번호 2010-72 / 17 / 1-450

1980.1~3월 중 아프가니스탄사태 현황과 전망에 대해 외무부가 작성한 보고서임.

1. 아프가니스탄사태 발생 경위

- 1979.12월 소련군, 탱크 및 기계화 전투부대 아프간 침공, 주요 도시 및 간선도로 요충지 장악
- 소련, 아프간 주둔군 병력 증원(약 8만 5천 명 추산)
- 아프간 신정권 동향
 - 소련식 정치체제 채택
 - 국내 위무정책 지속: 정치범 석방, 무신론적 경향 완화 등
 - 미국 특파원 추방조치

2. 아프간사태에 대한 미국의 대응

- “카터독트린” 선언: 소련의 아프간 침공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평화에 대한 가장 심각한 위협으로 군사조치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격퇴할 것임.
- 대중국(구 중공) 결속 강화: 중국에 대한 최혜국대우 지위 부여 결의안 통과
- 대파키스탄 4억 달러 군사원조 제공 및 인질석방을 조건으로 한 대이란 원조 제공 용의 표명
- 모스크바올림픽 보이콧

3. 소련의 대응

- 미국의 대파키스탄 원조, 대중국 최혜국대우 부여, 이슬람 외상회의 등을 비난하고 올림픽 강행 선언
- 4천 명의 소련 정부 고문관 파견, 아프간 정부 직접 장악

4. 중국의 대응

- 대파키스탄 군사 및 경제원조 등 중국·파키스탄 관계 공고화
- 베이징 개최 예정인 중국·러시아 회담의 일방적 중단(1980.1.19.)

5. 서방 국가 및 일본의 대응

- 영국, 독일, 프랑스 등: 대소련 보복조치 단행(특혜 수출차관 및 군사교류 중단, 모스크바올림픽 불참 등)
- 일본: 소련군의 아프간으로부터의 즉각 철군 요구, 대소련 문화협정 체결 교섭 연기(1980.1.24.)



6. 인접국

- 인도: 소련의 아프간 침공과 미국의 대파키스탄 군사원조 공히 비난
- 이란: 소련군의 이란 점령 주둔을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 강경 반대 입장 표명
- 파키스탄: 미국 군사원조 확대 요청, 미국·파키스탄 군사경제조약 체결 추진
- 이슬람 외상회의: 소련의 아프간 침공 규탄 결의안 채택, 카불정권의 이슬람회의 회원국 자격 정지

아프가니스탄사태. 전2권 (V.1 1979.6-80.1월)

생산연도 1979-1980

생 산 과 서남아 / 북미

MF번호 2010-72 / 18 / 1-283

1. 아프간사태 발생

- 1978.4월 타라키 공산당 서기장, 친소련 쿠데타로 다우드 대통령을 축출하고 집권
 - 1979.9월 아민 수상이 타라키 대통령을 축출하고 집권
- 12.27. 카르말 전 부수상, 소련의 무력개입으로 쿠데타에 성공하여 집권
 - 소련군 5만 명을 아프간에 투입, 소련 주둔군 총 10만 명 추산
 - 아프간 회교세력은 카르말 신정부에 극한투쟁 선언
 - 미국, 영국, 이란, 중국(구 중공) 등 세계 각국, 소련의 아프간사태 개입을 강력 비난

2. 아프간사태에 대한 세계적 대응

- 1980.1.4. 카터 미국 대통령의 아프간사태에 대한 연설
 - 소련군의 아프간 침공을 강력 비난하고 유엔안보리에 소련 제재 요청
 - SALT II 비준 연기, 미국·소련 영사관계 확대 중단, 대소련 무역 대폭 축소, 대소련 경제관계 축소
 - 모스크바올림픽 불참 고려 등
- 1.8. 카터 대통령, 대소련 보복조치 단행
 - 미국 경제수역 내 소련 어로 대폭 제한, 소련 여객기 미국 운항 감축, 고위인사 소련 방문 중지
- 1980.1.10.~14. 제6차 유엔 긴급특별총회 개최
 - 1.14. 아프가니스탄 내 외국군 즉각 철수 촉구 결의안 채택
- 1.21. 카터 대통령, 100여 국가원수에게 모스크바올림픽 불참 요청

3. 이슬람 외상회의(1980.1.27.~29.,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개최

- 36개국이 참가하여, 5개의 결의안 채택
 - 아프가니스탄 불참
- 5개 결의안의 주요 내용
 - 소련의 아프간 침공 규탄 및 소련군의 즉각적인 철수 요구
 - 회교국에 대한 각종 압력 및 군사기지 설치기도 규탄 등

아프가니스탄사태. 전2권 (V.2 1980.2-12월)

생산연도 1979-1980

생 산 과 서남아 / 북미

MF번호 2010-73 / 1 / 1-258

912

1. 서방의 소련의 아프간 침공 규탄

- 1980.2.3.~5. 독일·프랑스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소련의 아프간 침공 규탄
- 프레이저 호주 수상, 미국과 아프간사태 협의 및 대소련 강경노선 피력
- 2.5. EC(구주공동체) 9개국 외상회의, 대소련 응징 공동대책 수립 합의
- 서방 5개국 외상회의 무산
 - 1980.2.20.~21. 독일 본 개최 예정 외상회의가 프랑스의 반대로 무산
- 1980.2.27. ANZUS(태평양안보조약기구) 외상회의, 소련의 아프간 침공 비난 및 철군 촉구 공동성명
- 1980.11.20. 제35차 유엔총회에서 소련군 아프간 철수 결의안 채택

2. EC 외상회의의 아프가니스탄 중립화안 제의

- 1980.2.21. 로마 개최 EC 외상회의 공동성명 발표
 - 소련군의 철수 후 아프간을 중립화하고, 인근 아시아 국가로 국제 감시반을 구성, 파견
- 카터 미국 대통령, 소련군 철수되면 중립화 및 내정불간섭 보장동의 표명
- 2.29. 영국, 아프가니스탄 중립화안 소련에 제의
 - 소련 및 중국(구 중공), 중립화안 거부

3. 아프간사태 장기화 동향

- 1980.2.22. 대규모 반소련 반정부 시위 발생으로 아프간 정부, 계엄령 선포
 - 소련군이 전권을 행사하여 봉기 진압
- 3.14. 소련군의 아프간 잠정주둔협정 합의
- 6.22. 소련, 아프간 주둔 소련군 일부 철수 발표
- 10.16.~20. 카르말 아프간 대통령, 모스크바 공식방문
- 회교반군, 반소련·반정부 게릴라전 강화

각국의 폴리사리오(서부사하라) 승인

생산연도 1976-1980

생 산 과 마그레브

MF번호 2010-73 / 4 / 1-91

1. 서부사하라 문제

- 1976.2.28. 스페인군 완전 철수 후 '폴리사리오 전선'은 알제리 지원 하에 '사하라아랍민주공화국' 선포
- 모로코 및 모리타니는 스페인군 철수 직후 서부사하라를 양분하여 점령
 - 모로코 및 모리타니, 알제리와 관계 악화
- 북한은 3.16. 아프리카 외의 국가로는 처음으로 폴리사리오를 승인
- 1976.6~7월 개최 OAU(아프리카단결기구) 정상회의는 서부사하라 문제를 둘러싸고 심각하게 분열

2. 폴리사리오 승인 문제

- 1976.4.1. 외무부는 전 재외공관에 폴리사리오 승인 문제와 관련 주재국 입장 파악 지시
- 폴리사리오 승인 문제에 관한 아중동지역 국가의 태도(4.15. 현재)
 - OAU 47개 회원국 중 승인(알제리 등), 불승인 5개국(모로코, 모리타니 등), 중립 11개국(에티오피아, 나이지리아 등), 미확인 22개국
 - 중동지역 국가 7개국 중 중립 6개국(이란, 사우디 등), 미확인 5개국

서부사하라 문제

생산연도 1979-1980

생 산 과 마그레브

MF번호 2010-73 / 5 / 1-19

914

1. 모로코의 서부사하라 분쟁에 대한 한국 입장

- 모로코는 1979.6월 이전까지는 서부사하라 문제의 아프리카 내부기구에 의한 해결 주장
- 1979.7월 OAU(아프리카단결기구) 정상회의, 서부사하라조정위의 즉각 휴전과 국민투표 실시 건의안 채택
 - 11월 유엔에서 OAU 결의와 비슷한 알제리 결의안 통과
 - 12월 OAU 조정위에서 모로코 불참 속에 종전 결정 재확인
- 모로코는 OAU 무시정책의 불합리함을 인식하고 대아프리카 적극외교 추진
 - 1980.1.15. 대아프리카 외교 강화 일환으로 4개 친선사절단을 아프리카 28개국에 파견

2. 모로코군의 모리타니로부터의 철군

- 1979.12.31. 주유엔 모리타니대사의 안보리 의장에 대한 서한
 - 모로코 군이 모리타니로부터 완전 철군하였음을 통보
- 1980.5.13. 모로코와 상호방위협정으로 모로코군이 주둔하여 왔으나 방위협정 폐기로 철군

3. 모로코와 폴리사리오의 분쟁

- 1980.1.25. 폴리사리오의 모로코 아가디르지역 Akka 공격
- 1.30. 및 2.13. 서부사하라지역 내에서 폴리사리오의 대규모 공격
- 모로코는 폴리사리오 소탕작전을 위해 기동타격대 창설
- 4.28. 하산 모로코 국왕은 기자회견에서 소련이 알제리, 리비아를 통해 폴리사리오에 무기를 공급하고 있다고 비난

중국 정세

생산연도 1979

생 산 과 중국

MF번호 2010-73 / 10 / 1-167

1. 미국·중국(구 중공) 수교 후 대만(구 자유중국) 정세(1979.1.30.)

- 미국·중국 수교 후 장경국 대만 총통은 국민의 대동단결 호소, 선거의 무기연기, 국방태세 강화조치

2. 국민당 중앙상임위원회의 당, 정, 사회, 홍보, 경제, 국방의 혁신방안(1979.2.7.)

- 당무: 우수한 청년당원 발탁, 당의 교육 및 훈련 강화, 야당 및 사회 각 계층과의 유대 강화
- 정치: 의회 기능 강화, 서정쇄신운동 전개, 외교부 기능 강화, 대구주 관계 강화
- 사회: 준법정신강화운동 전개, 청년들의 취업보도 적극 추진
- 홍보: 중국의 통일전선 음모 폭로 및 대중국 역전전 강화, 대외선전 강화
- 경제: 민간투자 장려, 방위산업 강화, 민간무역 및 해외투자 강화
- 국방: 군의 현대화 촉진, 동원력 및 민방위 체제 강화

3. 장경국 총통 취임 1주년 대만 언론 반응(1979.5.20.)

- 중앙일보: 반공 입장 고수 절대 불변, 공산당과 불타협·불협상은 대만의 불변의 국시
- 연합보: 장 총통의 회생정신은 국민의 대정부 신뢰감 증강, 민주법치정신의 실천으로 공산당(중국)의 평화공세 봉쇄

4. 1979년도 대만 국가건설 연구회의(1979.7.6.~23.)

- 참가자: 대만 국내외 학자 및 정부 관계 인사 260여 명
- 정치외교, 교육, 문화선전, 재경, 상공, 과학기술, 의학위생 등 7개조로 나누어 진행
- 정치외교 분야 주요 토의내용
 - 외교부 대변인, 금호 외교방향 관련 발언: 반공과 헌정체제 하에서 민주진영을 고수하며 공산국가(중국과 소련)와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을 것이며, 외교 관계가 있는 국가와 각종 협력을 통해 양국 관계를 공고히 하고 실질적인 관계를 개선해 나가며, 외교 정책 집행기틀을 강화하고 외교경비를 대폭 증가시킬 것임.

5. 대만 정세 전망(1979.7.17.)

- 정치: 현 정권 안정성 유지
- 군사: 중국으로부터의 무력침공에 대비하기 위해 꾸준히 무력 및 군비 증강 계획을 추진 하면서 향후 5~6년 내에 군사자립체제 확립을 위해 노력함.

6. 손운선 대만 행정원장 사우디 방문(1979.9.16.~18.)

- 주요 일정: Fahd 국왕과 2차 회담, 제4차 대만·사우디 경제기술협력회의 참석, 공군사관학교 방문
- 방문 성과
 - 정치: 사우디 정부의 외교면에 있어 대만 적극 지지 다짐 등
 - 경제
 - 단세포, 단백질 공장 설립협정 체결(사우디 측: 공장 건설에 400만 달러 제공, 대만 측: 기술 및 기술요원 제공)
 - 담수어 양식업 합작개발협정 체결(사우디 측: 400만 달러 경비 제공, 대만 측: 기술요원 제공)
 - 군사: 양국 간 군사협력 논의

7. 국민당 제11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1979.12.10.)

- 장경국 국민당 주석 주재
- 참가자: 제11기 중앙위원, 중앙평의위원, 후보중앙위원 및 각종 단위의 국민당 간부요원 780여 명
- 주요 의제: 부흥기지 건설 경험을 통한 광복대륙국가 중건안의 책정, 부흥기지 장기 건설 방침안의 책정, 정치건설 가속화, 대중국 해외공작 강화안, 국민당의 당면임무 등
- 폐막사에서 장경국 총통은 중국과의 대화 및 접촉 불가능, 국민당이 집권하는 동안 군사통치, 국회의원 선거 조기실시, 민정 헌정 실시 등 언급

8. 대만 반체제 폭동(1979.12.10.)

- 대만 고웅시에서 반정부 월간 잡지사 Formosa 주최 인권대회 참석 군중 3천 명과 군경 간 충돌
- 군경 150여 명, 군중 40여 명 부상, 12.11. 사건 종식

중국·중공 관계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중국

MF번호 2010-73 / 11 / 1-45

1. 대만(구 자유중국)·중국(구 중공) 관계 동향

- 중국선원의 대만 상륙
 - 1980.3.26. 파나마 선적 화물선 '요세프 로드' 호, 대만 기류항 입항(26명의 중국 선원 탑승)
 - 대만 선원협회의 초청으로 3.27. 중국선원들은 타이베이 등 관광 후 3.28. 출국
 - 중국선원들의 대만 입항, 상륙, 관광은 최초의 일로 중국의 대대만 공세 일환으로 분석
- 대중국 접촉기구 발족 문제
 - 7.14. 외신은 대만 행정원이 중국과 비정치적 접촉 전담기구를 발족시켰다고 보도
 - 대만 외교부는 대중국 불협상, 불타협에 변함이 없으며 전담기구 설치의 사실 무근이라는 반응

2. 중국의 대만통일 평화공세에 대한 분석(1980.8월, 중국담당관실)

- 중국의 대만통일 평화공세 내용 분석과 전망
 - 중국 측 입장: 세계 여론 및 미국 측 입장에 영향되고, 이로 인한 대만의 외교적 고립 가속화가 기대됨.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는 개념에 합치됨.
 - 대만 측 입장: 대만의 정통성, 법통이 동요 와해됨. 국민당 장기집권에 대한 불안요소 증대 및 외교적 고립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만 증대 우려
 - 전망: 대만은 국제적 고립을 탈피하고 대내적 분열 방지를 위해 대중국 체제 우위 경쟁을 강화해 나가면서 '1개 중국, 2개 정부'를 기정 사실화시켜 현실적인 '자유중국의 대만화'를 도모할 것으로 전망됨.
- 중국의 대대만 평화공세 일지, 중국의 대대만 통일협상 제의와 대만 태도(1978.12.16. 미국·중국 수교 발표 이후), 대만 문제에 대한 중국의 태도 등

중공 정세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중국

MF번호 2010-73 / 14 / 1-262

1. 등소평, 중국(구 중공) 중앙간부회의에서 현 정세와 업무에 관하여 아래 요지로 보고(1980.1.16.)

- 1980년대에 해야 할 3대 과업
 - 반패권주의, 대만(구 자유중국)의 통일, 현대화 건설 강화
- 4개 현대화 건설의 실현, 당의 영도 개선 등

2. 중국의 주요 외교 동향

- 미국·중국 무역협정 발효
 - 1980.2.1. 베이징에서 중국 외교부와 주중국 미국대사관은 미국·중국 무역협정(1970.7.7. 서명)의 국내절차 완료 각서를 상호 교환함으로써 동일자로 동 협정을 발효시킴.
- 황화 중국 외상의 북·서구 순방
 - 스웨덴(6.8.~11.), 노르웨이(6.12.~16.), 덴마크(6.16.~18.), 서독(6.19.~21.), 프랑스(6.21.~23.) 방문
 - 순방 목적
 - 순방국과 기존 우호관계 다짐
 - 전략 요충 북구 국가에서의 소련 군사활동 및 평화공세 주의 환기
 - 서방 국가의 대베트남 원조 중단 촉구
 - 황화 외상의 금번 순방 시 한반도문제 언급
 - 지난 1980.5.27.~6.1. 화국봉 수상의 일본 방문 시 한반도문제 언급 내용과 기본적으로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한반도 현상 유지 희망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임.
 - 황화 외상은 각국 외상과의 회담에서 수차례 “북한은 남침 의사가 없다”고 강조한바, 이는 기존 미국·일본·중국 간 협력관계 파괴 및 북한의 친소련 선회 등을 우려하여 북한의 남침에 중국이 반대한다는 의사를 간접적으로 전하고자 한 것으로 분석됨.

3. 제5기 전인대 제3차 회의(1980.8.30.~9.10., 베이징)

- 결과
 - 모택통 시대의 종지부를 찍고 실용주의 등소평 시대 출범
 - 등소평을 정점으로 호요방 당총서기, 조자양 총리 체제로 실용주의 정책 추진 예상
 - 대외적으로는 반소 팽창중의, 4개 현대화, 대만 수복이라는 3대 국가과업 수행
- 분석
 - 중국의 실용주의 경제정책 추진은 한국과의 교역 확대 및 경제협력관계 수립에 긍정적 작용

중공·베트남 분쟁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중국

MF번호 2010-73 / 15 / 1-54

1. 중국(구 중공)·베트남 분쟁과 평화회담

- 1979.2.17.~3.5. 중국·베트남 전쟁(2.17. 중국군, 전 국경에서 베트남 침공 개시)
 - 영토분쟁, 화교분쟁, 캄보디아(구 캄푸차)·베트남 분쟁으로 양국 관계 악화
- 중국·베트남 전쟁 발생 후 종전처리를 위한 문제와 양국 정상화 문제에 관한 회담 개최
 - 제1차 회담(1979.4.18.) 이래 중국·베트남 부외상급 평화회담이 베이징, 하노이에서 15차례 개최
- 1980.3.6. 중국·베트남 평화회담에 대한 중국 측 입장을 외교 각서로 베트남 측에 통보
 - 1979.12월 이래 동결되어온 평화회담을 8월 하반기 재개 제의
 - 중국은 베트남의 적대행위, 캄보디아 침략전쟁 강화, 태국·동남아 평화 위협 비난
 - 베트남 측은 회담 재개를 3월이나 4월, 여의치 못할 경우 7.15. 재개 제의

2. 베트남 국민 16명, 1980.6.20. 하노이 주재 중국대사관에 망명 요청

- 각국 대처
 - 동 대사관은 인도적 차원에서 이들의 요구를 수락하고 베트남 외무성에 안전보장 요구
 - 베트남 당국은 동일 밤 베트남인 16명 전원을 강제로 연행
- 6.21. 동 대사관은 베트남 외무성에 비인도적 처사를 비난하는 항의각서 전달

3. 중국·베트남 분쟁 경과

- 1980.6.23. 베트남, 태국의 캄보디아 난민 송환 보복 구실로 태국 침공 개시
- 6.23. 중국 외교부, 베이징 주재 베트남대사관에 항의각서 전달
 - 제3단계 평화협상 재개 연기 선언, 제2차 대베트남 응징전 불사 시사
- 7.4. 베트남, 중국 측 침략 행위 비난 항의각서 전달
- 7.8. 베트남 외상, 중공군 3개 사단 국경지역으로 이동, 소련의 캄란만 군기지 사용 가능성 시사

동독·서독 관계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서구 / 북미

MF번호 2010-74 / 8 / 1-119

920

1. 동·서독 관계발전의 추이 보고서(1980.5월, 외무부 구주국)

- 독일의 분단부터 동·서독 간 현재의 교류까지 분석
- 주요 내용
 - 독일의 분단, 동·서독의 통일정책 변화
 - 브란트 수상에 동방정책, 제1차 및 제2차 동·서독 정상회담
 - 4대국 협정과 동·서독 협상, 동·서독 기본조약
 - 동·서독 관계 현황과 제3차 동·서독 정상회담
 - 동·서독 인적교류, 교역, 문화 및 체육 교류

2. 동·서독, 1980.4.30. 신교통협정 체결

- 서독과 서베를린을 연결하는 도로, 철도 및 수로의 시설확장(1984년 완공)

3. 동독, 1980.11월부터 동독 방문 서독인에 대해 동독화 의무매입액 대폭 인상조치

- 동·서독 간 관계 악화

이란사태. 전11권 (V.1 1978)

생산연도 1978-1980

생 산 과 중동 / 북미

MF번호 2010-74 / 15 / 1-347

1. 1978년 3/4분기 이란 정세

- 1978.8.12. 이스파한에서 경찰과 난동분자 간의 총격사건으로 소요사태 확대
- 9.8. 테헤란을 포함한 12개 도시에 계엄령 선포
- 종교인, 학생, 언론인 등의 불만고조
- 망명 중인 지도자 호메이니는 추종자들에게 지령을 내려 난동사태 선동
- Madari 회교지도자는 정부가 무력행사하는 경우, 회교도들도 무력투쟁을 불사하겠다고 발언
- 주요 야당으로서 National Front, Pan-Iranist Party, Iranian Freedom Movement 등 30여 개 정당에 있으나, 유명무실한 단체임.
-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선진 서방 국가는 현 이란 정부를 지지하는 태도

2. 이란사태 관련 소련 성명

- 1978.11.19. 브레즈네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은 당 기관지 프라우다지와와의 인터뷰에서 기자가 이란사태에 서방열강, 특히 미국의 개입과 심지어는 군사적인 간섭의 가능성까지 외신이 보도하고 있는바, 관련 보도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고 문의한데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함.
 - 모국에 의한 군사적인 간섭 가능성에 관한 보도를 포함하여 기자가 언급한 바와 같은 보도가 있었으나, 우리가 경계하는 것은 관계국 관리들이 여사한 보도를 부인하지 않는데 있음.
 - 현재 이란사태는 순수한 국내문제로서 이란인 자신들에 의해 결정하여야 하며, 소련과 직접 접경하고 있는 이란의 사태에 대한 여하한 간섭도, 특히 군사적인 간섭은 소련의 안보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일로 간주될 것임.

3. 이란 정국 동향

- 1978.12.30. 팔레비 국왕과 Bakhtiar 박사 간 회담에서 국왕은 신병치료 및 휴양을 위하여 스위스 또는 미국으로 출국하는 조건으로 Bakhtiar에게 수상직을 맡아줄 것을 요청한데 대해 Bakhtiar는 상하 양원합동회의에서 수상 인준이 된다면 그로부터 1주일 이내 조각을 완료한다는 조건으로 수상직을 수락함.

이란사태. 전11권 (V.2 언론보도, 1978)

생산연도 1978-1980

생 산 과 중동 / 북미

MF번호 2010-74 / 16 / 1-265

922

1. 이란 정세

- Azhari 내각은 1978.11.23. 상원의 신임투표에서 찬성 42표, 반대 10표로 신임을 얻음으로써 하원과 절대다수의 신임을 획득함.
- PANA 통신에 의하면 이스파한에서는 11.22. 난동자들이 은행에 방화한 사건이 발생하고, 시라즈에서도 11.19. 반정부 데모에 이어 11.22. 반정부 데모가 발생하였으나, 사상자는 없다고 보도함.
- 11.25.부터 테헤란 일원의 Guidance School(중학교의 일부에 해당)이 개학하여 학교정상화에 진일보하였으나, 그 이상의 학교는 연내 개학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2. 이란사태에 대한 미국 입장

- 카터 미국 대통령은 1978.12.7. 백악관 기자들과의 조찬 시 이란 국내사태와 관련, 샤하가 현 위기에서 헤어날 수 있을 것으로 믿느냐의 기자의 질문에 대하여 "I Don't know, I hope so"라고 답변함으로써 미국 언론에서는 카터 대통령이 샤하가 이란의 현 위기에서 헤어날 수(Survive) 있을 지에 관하여 처음으로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음.
- 12.7. 국무부 대변인은 정오 뉴스 브리핑에서 미국 정부는 이란 주재 미국 정부관리(군인포함)들이 그 가족들을 본국으로 보낼 때 비용은 정부에서 부담한다고 밝힘.
 - 동 대변인은 재이란 미국인 총 4만 5천 명 중 약 4천 명이 최근 수 주간 이란을 떠난 것으로 안다고 부연함.

3. 미국 국무부 발표 요지(1978.12.31.)

- 이란에서의 약탈, 협박 등은 계속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이란사태는 점점 더 혼란을 거듭해 가고 있음.
- 금일 미국 정부는 이란에 있는 미국 민간인(실업인) 가족의 이란 출국을 권유하였으나, 테헤란 공항의 폐업으로 현재 곤란한 상황임.

이란사태. 전11권 (V.3 1979.1-3월)

생산연도 1978-1980

생 산 과 중동 / 북미

MF번호 2010-75 / 1 / 1-355

1. Bakhtiar 내각 발족

- Bakhtiar 내각은 1979.1.6. 09시에 국왕을 알현함으로써 정식 성립되었으며, 동 내각의 신임 각료명단도 발표됨.
- 국왕은 동 내각의 국왕 알현식에서 아래와 같이 언급함.
 - 나는 휴양과 가료를 요하므로 적당한 기회가 오는 대로 당분간 외국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함. 헌법은 이 경우에도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바, 내가 나라를 떠나서 자리를 비우게 될 동안 일을 할 섭정위원회가 구성되도록 되어있고, 이는 나의 경우에 그렇게 될 것임.
 - 종교지도자 회의는 의회와 정부가 통과시킨 법률이 회교제도에 일치하는 것인지를 검토하게 될 것임.

2. 호메이니 귀국

- 호메이니는 1979.2.1. 전세기 편으로 THR 공항에 도착, 15년간의 망명생활을 끝내고 귀국함. 동 전세기는 호메이니 가족, 측근 보좌진, 내외기자 등 200여 명이 탑승함.
- 호메이니 귀국 시 환영인파는 약 400만 명으로 추산되나, 호메이니는 무질서한 환영인파에 밀려 시내 중심가에서 차량통행을 중단하고, 군 당국이 제공한 헬기로 공동묘지에 도착, 추도식을 집전한 것으로 알려짐.
- 동 추도식에서 행한 호메이니의 연설 요지는 아래와 같음.
 - 왕정은 사라졌으며, 미국은 왕정 존속을 획책하지 말 것
 - 국민의 여망에 따라 회교공화국 수립계획을 추진할 것임.
 - 군은 혁명에 가담, 국가의 독립을 수호할 것

3. 이란사태 급전

- 1979.2.11. 각 군 참모총장은 금번 사태와 관련, 회합을 갖고 군은 정치에 개입하지 않기로 결정, 테헤란 시내로부터 군을 철수하기로 발표함.
- 군의 철수소식을 들은 시민들은 호메이니의 승리를 축하하는 환성을 지르는 등 국왕 출국일에 있었던 축제분위기가 재연되었는바, 시내 중심가에는 군이 실제로 철수한 것이 확인됨.

이란사태. 전11권 (V.4 1979.4-8월)

생산연도 1978-1980

생 산 과 중동 / 북미

MF번호 2010-75 / 2 / 1-358

924

1. 호메이니, 이란회교공화국 수립 선포

- 이란은 1979.3.30.부터 양일간 회교공화국 수립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시행한 결과, 절대 다수가 찬성한바, 4.1. 밤 10시를 기하여 호메이니가 회교공화국 수립을 선포함.
- 테헤란 시내에는 회교공화국 수립선포가 발표되자 시민들은 “신은 위대하다”라는 구호를 외치며 환성을 지르고, 시내 일원에서는 축포가 들림.
- 호메이니는 4.1. 전 국민이 회교공화국 수립을 찬성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앞으로 4.1.을 국경일로 정하고, 국민투표를 개시한 3.30.을 순교일로 지정하도록 지시함. 장차 이란의 국호는 이란회교공화국(Islamic Republic of Iran)이라고 함.

2. 이집트와의 국교 단절

- 이란 정부는 1979.4.30. 이집트와 국교를 단절한바, 주이란대사는 이와 관련 일부에서는 아래와 같은 내막이 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음을 보고함.
 - 이집트와의 국교 단절은 전적으로 호메이니의 일방적인 지시에 따른 것이며, Yazdi 외상은 하루가 지난 후에야 성명을 발표, 이집트 국민에 대한 우호적이고 형제적인 관계는 지속된다는 내용을 발표한 것으로 보아, 동 외상은 이집트와의 단교를 바라지 않았던 것이 명백함.
 - 호메이니는 최근 이란을 방문하고 있는 리비아사절단(단장: 수상)의 강력한 요청과 아랍어 사용종족들의 자치권 부여 주장 등 압력을 무마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갑자기 이집트와의 단교를 결심했을 것으로 추측됨.

3. 제헌의회 개회식(1979.8.19.)

- 제헌의회는 8.19. 의장, 부의장, 전원회의의장을 선출하고 향후 매일 10시간, 휴일을 포함하여 만 30일간 헌법안을 심의, 채택할 예정임.
- 호메이니는 제헌회의 개회식에 보낸 메시지에서 국민의 절대다수가 “신은 위대하다”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구 왕정에 대항, 봉기하였고 이들은 또한 국민투표를 통해 회교공화국의 수립을 찬성 하였을 뿐 아니라, 이란을 승인한 외국 정부는 모두 회교공화국 이름의 이란을 승인한 만큼, 이란의 헌법과 법률은 100% 회교원리에 일치해야 한다고 언급함.

이란사태. 전11권 (V.5 1979.9-12월)

생산연도 1978-1980

생 산 과 중동 / 북미

MF번호 2010-75 / 3 / 1-269

1. 탈레가니, 심장마비로 급서(1979.9.10.)

- 이란 정부는 탈레가니가 급서한 9.10.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함.
 - 테헤란을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탈레가니 서거 애도 군중시위가 벌어지고, 2백만 명의 군중이 영결식이 거행될 테헤란대학과 장지인 Dehesht Zahra 묘지에 집결하여 동인의 서거를 애도함.
- 동인의 급서에 대해 호메이니와 바잘간 수상 등은 각각 성명을 발표, 동인의 종교 및 혁명에 있어서의 공적을 찬양하면서 국가적 손실이라고 애도함.
 - 호메이니는 탈레가니가 주관하던 테헤란지구 금요기도회를 제헌회의 의장으로 하여금 주관하도록 지정함.
- 또한 혁명평의회는 동인이 동 평의회 의장이었다고 처음으로 밝혀 동인이 호메이니 다음의 제2실력자였음을 인정, 주목을 끌고 있음.

2. 쿠르드 반란세력의 기습공격

- 1979.10.8. 혁명경비대 72명은 바네에서 이라크 국경 방면으로 이동 중에 쿠르드 반란세력으로 부터 공격을 받고, 22명이 사망, 10명 부상, 33명이 인질로 잡히는 큰 피해를 입음.
- 쿠르드 반란세력의 급습과 관련, 케트만샤 주지사는 동 반란세력의 지도자 Hosseini가 중앙정부에 대한 전면전을 개시하도록 쿠르드족에게 촉구하는 일반명령을 하달하였다고 Paveh 시장이 보고해 왔다고 밝힘.
 - 쿠르드 반란세력은 거울을 이용, 대규모 무장공격을 감행할 것으로 이란 측은 보고 있음.

3. 회교학생들, 주이란 미국대사관 점령

- 1979.11.4. 오전 학생의 날 시위를 계기로 호메이니 추종 회교학생이라 자칭하는 학생 400명은 주이란 미국대사관 앞에 집결, 성조기를 불태우며 전 국왕의 인도, 미국의 대이란 정책 변경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면서 대사관 구내 난입을 시도하였으며, 이에 동 대사관 경비 미 해병대는 최루탄을 발사하면서 저지하였으나, 오후 1시반경 대사관이 점령됨.
- 학생들은 오후 6시경 자신들의 행동은 미국 측의 전 국왕에 대한 망명 허용과 반혁명 세력에 대한 지원에 항의하기 위한 것이라는 요지의 성명을 발표함.

이란사태. 전11권 (V.6 보고문, 1979)

생산연도 1978-1980

생 산 과 중동 / 북미

MF번호 2010-75 / 4 / 1-292

이란사태 관련 1979년 중 작성된 주이란대사관의 보고와 외무부의 보고서가 수록됨.

1. 1/4분기(3월분) 정기보고(1979.4.3., 주이란대사관)

- 이란의 경제개황
- 한국과 이란과의 경제협력 현황과 앞으로의 전망

2. 주재국 정치정세 변동 추이와 전망(1979.4.20., 주이란대사관)

- 팔라비 왕정 주요 약사와 몰락
- 왕정말기의 정치동향
- 반왕정운동의 성공(혁명)과 회교공화국 수립
- 과정의 한계와 새로운 문제점 대두
- 정치정세 전망
- 한국과의 관계 변화 및 새로운 대처 방안

3. 최근 이란사태에 대한 각국 반응(1979.11.17., 외무부 통상국)

4. 이란사태 일일보고(1979.11.20.~12.31., 외무부 중동국)

이란사태. 전11권 (V.7 언론보도, 1979)

생산연도 1978-1980

생 산 과 중동 / 북미

MF번호 2010-75 / 5 / 1-142

1. Shah(팔레비 국왕)의 출국

- 1979.1.17. Daily Telegraph지는 아래 요지의 사설을 게재함.
 - Shah가 드디어 출국하였으나, Shah의 출국으로 현 사태가 수습되기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여러 가지 암담한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음.
 - Shah는 여러 가지 실정에도 불구하고 이란의 변영기반 구축과 서방 측과의 유대를 강화한 공을 남김.
 - 호메이니의 태도는 국수적이며 이란의 변영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있어 국민들이 차차 호메이니의 지도력에 매력을 덜 느끼게 될 것으로 보임.

2. 바자간 수상의 사임

- 1979.11.7. Financial Times지는 “Dictatorship in Iran” 제하의 아래 요지의 사설을 게재함.
 - 바자간은 9개월간의 재임 중 이슬람혁명위원회 횡포 때문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실정이었으나, 정치적인 야심을 떠나 애국심으로 그 자리를 지켜왔음.
 - 그는 취임 직후부터 호메이니파 성직자들과 의견대립이 있어왔으며, 특히 대미국 관계에서 큰 대립을 보여 왔음. 그는 미국과의 현존 관계 계속 유지를 주장해왔으며, 이번 사임은 이란 주재 미국대사관 난입 폭도에 대한 성직자들의 지지 표시가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임.

3. 이란사태

- 1979.11.30. 르몽드지는 아래 요지의 사설을 게재함.
 - 호메이니는 대화의 길을 서서히 열어보려던 외교책임자를 임명하지 불과 3주 만에 교체함으로써 여하한 양보도 일체 거절하고 실현될 수 없는 요구(Shah의 이란 송환)를 고집하는 최악의 정책을 택함.
 - 호메이니는 전통적인 세력분석에 입각한 정책을 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메시아적인 역할을 기존 국제질서에 도입하려 하고 있기에 모사데그, 나세르, 부메디안 등과도 다름.
 - 이란 주재 미국대사관원 인질사건으로 호메이니는 흔들리기 시작하던 단합을 되찾았고, 국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점도 있으나, 문제는 그가 중동의 평화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타협안을 일체 거절하고, 자기 스스로 정의라고 생각하는 것을 실현하고자 한다는 데 있음.

이란사태. 전11권 (V.8 1980.1-2월)

생산연도 1978-1980

생 산 과 중동 / 북미

MF번호 2010-75 / 6 / 1-335

1. 이란 주재 소련대사관 피습

- 1980.1.1. 이란 내 아프가니스탄 거류민 및 이들을 지지하는 이란인들이 이란 주재 소련대사관 앞에 집결,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무력 개입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인바, 이에 동 대사관 측은 소련 국기를 내리고 백기를 게양, 한동안 무저항 자세를 취하다가 다시 국기를 게양한 것이 목격됨.
- 목격자에 의하면, 15시경 무장청년들이 외곽경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이란인들이 동 대사관 건물을 자유로이 출입하고 있다고 하며, 간헐적으로 총성도 들렸다고 함.

928

2. 미국의 대이란 단교

- 바니사드르 이란 대통령은 1980.4.7. 정오경 호메이니를 방문, 혁명인질의 인수를 건의했으나, 호메이니에 의해 거부됨으로써 지난 3.25.부터 카터 미국 대통령과 친서외교를 벌여오면서 인질 문제의 돌파구를 찾으려던 바니사드르 대통령의 노력은 완전히 좌절됨.
- 미국은 즉각 대이란 단교 등 강경조치를 취함으로써 미국과 이란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됨.
- 이란 주재 영국 등 EC(구주공동체) 9개국 공관장들은 유엔조사위의 인질면회 실패 후 자국 정부에 대하여 인질문제 해결방안으로 오히려 우방에 피해를 줄 경제제재보다는 외교단절 등 정치적인 조치가 효과적이라는 견해를 상신한 점으로 보아, 이들 국가의 대이란 단교 등 대미국 지원 상응 조치 여부가 주목됨.

3. 미국, 인질구출작전 실패

- 미국의 인질구출작전은 1980.4.24. 야간에 테헤란 동남쪽 사막지대에서 실시되었으나, 항공기 충돌사고로 2명이 사망하여 실패함.
- 이란 주재 미국대사관 점령학생들은 4.26. 오후 성명을 발표, 미국의 침략구실을 제거하고 인질 감금에 전 국민이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인질들을 전국 여러 도시에 분산 감금하기로 결정하고, 필요한 시기까지 학생들의 협력을 얻어 각 시가 직접 책임을 지도록 했다고 밝힘.
- 이란은 4.26. 21시를 기하여 전국적으로 반미구호를 외치며 미국대사관의 인질분산, 주요인물 및 시설에 대한 경계강화를 주장하는 등 축제분위기였음.

이란사태. 전11권 (V.8 1980.3-5월)

생산연도 1978-1980

생 산 과 중동 / 북미

MF번호 2010-75 / 7 / 1-308

1. 미국의 이란 간섭 규탄 국제회의(1980.6.2.~5., 테헤란)

- 참가자: 504개국 대표 300여 명
 - 이탈리아 공산당 및 기민당, 프랑스 사회당 대표 등도 참가한 것으로 알려짐.
- 호메이니는 동 회의에 아래와 같이 메시지를 보냄.
 - 이란 국민들은 동 회의 참가자들의 공정한 판단과 미국 및 그 외 추종세력들이 범한 범죄를 조사함으로써 이들 압박자들을 규탄해 주기를 바람.
- 동 국제회의는 6.5. 이란국민 찬양, 회교혁명 순교자들에 대한 경의, 미국의 1953년 이래의 이란 내정간섭 규탄, 미국 인질구출작전 규탄, 전 국왕과 그의 재산의 반환, 인질문제 등을 포함한 12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폐회함.

2. 호메이니 암살시도

- 바니사드르 이란 대통령은 1980.7.10. 밤 정규방송 도중 TV에 나타나 미국, 이스라엘, 및 이라크의 지원을 받아 호메이니를 암살하고 테헤란의 주요 시설을 폭격, 현 정권을 전복하려는 군사쿠데타 음모를 약 1개월 전에 적발, 그동안 동태를 주시한 끝에 7.9. 이들 중 일부가 음모를 실행하려고 하는 것을 포착, 이를 분쇄했다고 언급함.
- 이어 공군참모총장은 구 왕정 용병들이 먼저 공군기지 1개를 점령한 후, 전 수상 박티알을 사령관으로 하여 군사작전을 벌이면서 라디오와 TV 방송을 통해 과도정부 수립을 선포하고, 박티알이 과점수반으로 취임, 현 정권을 전복하려는 것이 이들의 음모내용이라고 밝힘.

3. 팔레비 전 이란 국왕의 사망

- 1980.7.27. 이집트 정부는 팔레비 전 이란 국왕이 이집트의 마아디 육군병원에서 췌장출혈로 사망했다고 공식발표함.
- 이란중앙은행 측은 7.27. 팔레비 국왕과 그의 가족이 외국은행에 예치한 320억 달러의 재산반환을 계속 요구할 것이라고 밝힌바, 동일 과격파 학생 대변인은 팔레비의 해외자산이 반환되기 전에는 인질들이 석방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함.

이란사태. 전11권 (V.10 보고문, 1980.1-2월)

생산연도 1978-1980

생 산 과 중동 / 북미

MF번호 2010-75 / 8 / 1-319

1980.1~2월 중 작성된 이란사태 관련 보고문이 수록됨.

1. 1980.1.7. 보고문

- Brzezinski 안보담당보좌관, 1979.12.30. ABC와의 인터뷰에서 아래 요지로 언급함.
 -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소련의 군사개입과 관련 앞으로 이란이 소련의 군사적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이란이 인질을 조기 석방하고 미국과의 전통적 우호관계를 회복함으로써 소련의 위협에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함.
- 1980.1.4. 이란의 회교학생단은 이란 외무성에 언급되어 있는 Bruce Laingen 이란 주재 미국 대사 대리로부터 간첩문서에 관한 설명을 듣기 위해 동 대사 대리의 신병인도를 이란 외무성에 정식 요청함.
 - 이란 외무성은 50명의 인질 중 데이비드 로이더 중령을 베트남전쟁 당시 베트남 인민에게 폭격을 가한 전범죄로 재판에 회부할 방침이라고 선언하면서 이란 인질 사건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됨.

930

2. 1980.1.8. 보고문

- 1.5. 이란 회교혁명지도자 호메이니는 전 세계 회교산유국들이 석유의 막강한 영향력을 자각, 석유를 서방세계에 대한 강력한 무기로 사용하라고 촉구함.
- 주이란 아프가니스탄대사관 점거
 - 1.6. 약 15명의 정치망명자들로 구성된 “아프가니스탄 회교저항운동” 소속원들은 테헤란 주재 아프가니스탄대사관을 무력 점거한 후,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철군을 요구하는 농성을 벌임.

3. 1980.2.13. 보고문

- 2.11. 바니사드르 이란 대통령은 프랑스의 르몽드지와 회견에서 미국 정부에 아래와 같은 인질 석방 조건을 제시함.
 - 이란 정부의 팔레비 국왕 송환요구권과 재산반환권 인정
 - 과거 미국이 이란에서 행한 범죄 인정
 - 이란 내정예의 불간섭
- 동인은 미국이 상기 조건을 수락하면 “수일 내라도 미국 인질들을 석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함.
 - 종래 이란 측이 주장해온 “선 송환, 후 석방” 입장에서 “선 석방, 후 송환” 입장으로의 전환을 고려하고 있으며, 호메이니의 재가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힘.

이란사태. 전11권 (V.11 보고문, 1980.3-5월)

생산연도 1978-1980

생 산 과 중동 / 북미

MF번호 2010-76 / 1 / 1-210

1980.3~5월 중 작성된 이란사태 관련 보고문이 수록됨.

1. 1980.3.26. 보고문

- 팔레비 전 국왕의 이집트 망명에 대한 반응
 - 1980.3.23. Ghotbzadeh 이란 외상은 팔레비 전 국왕의 이집트 항발 이후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란 측의 인도 요구문서 수락 시한을 하루 앞두고 미국이 팔레비를 이집트로 빼돌린 것은 미국인 인질사태를 장기화시키고 중동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결과라고 비난함.
- 사다트 이집트 대통령은 군병원에 입원 중인 팔레비 전 국왕을 문병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팔레비 전 국왕이 이집트에 영구히 체류해 달라는 자신의 요청을 수락하였다고 밝힘.

2. 1980.4.17. 보고문

- 4.16.자 보스턴 글로브지는 미국은 인질사태 해결을 위한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으면 5.11.~17. 중 이란에 대한 해상봉쇄를 단행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동맹국 및 이란에 통보하였다고 보도함. 이에 조디 파월 백악관 대변인은 상기 보도를 공식 부인함.
- 동일 카터 미 대통령의 고위 보좌관은 카터 대통령이 금주 내에 새로운 대이란 경제 및 외교제재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시사하고, 미 우방국들이 5월 중순까지는 미국이 취한 대이란 단교 및 경제제재조치에 반응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면서, 동 기간까지는 이란에 대한 군사조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함.

3. 1980.4.26. 보고문

- 4.25. 01:30(이란 현지시간) 미국은 테헤란 주재 미국대사관에 억류 중인 인질을 구출하기 위하여 미군특공대를 테헤란 남방 약 320km 사막지대에 침투시켰으나, 2대의 헬기 고장으로 인질구출 작전을 중지하고 철수 도중, 작전에 동원된 수송기와 헬기의 지상충돌로 특공대원 8명이 사망, 4명이 부상당하여 잔여 특공대원을 이란으로부터 철수시킴.
- 동일 호메이니는 미국의 인질구출작전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반응함.
 - 카터 대통령은 재선을 위해 어떤 범죄, 심지어 모든 국민을 살해하는 대가를 지불할 준비까지 하고 있는 사람임. 그는 이란 국민이 어떤 국민인지 이해 못함. 이란 국민은 피의 국민이며, JIHAD(성전)의 학파임.

오히라 마사요시(大平正芳) 일본 수상 서거 및 각국 조위사절 일본 방문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일본

MF번호 2010-76 / 3 / 1-253

1. 장례식(1980.7.9., 일본)

- 장례형식: 내각, 자민당 합동장
- 조위사절 인원
 - 3명으로 제한
 - 일본 주재 공관장이 특사로 임명되지 않은 채 참석하는 경우에는 공관장 및 부인은 별도 참석 가능
- 사절의 종류
 - 본국으로부터 파견되는 특사 및 특사의 부인
 - 임명된 도쿄 주재 공관장 및 부인

2. 각국 조문사절

- 카터 미국 대통령, 화국봉 중국(구 중공) 당 주석, Fraser 호주 수상
- 태국 수상 및 외무차관, 잠비아 수상, 자이르(구 콩고민주공화국) 수상
- 싱가포르 부수상, 유고 부수상 등
- 박충훈 국무총리
 - 외무부장관, 주일본대사와 더불어 한·일본 의원연맹 대표로 정일권 및 채문식 의원 참석
- 동독, 파나마, 스리랑카 외상 등

3. 카터 미국 대통령, 일본 방문 계획

- 기간: 1980.7.9.~10.
- 카터 대통령 부인, Muski 국무장관, 상무장관, 하와이 주지사 등이 동행
- 카터 대통령과 화국봉 중국 주석, 1980.7.9. 정상회담 개최

일본 자위대 간첩 사건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일본

MF번호 2010-76 / 4 / 1-71

1. 1980.1.19.자 일본 언론, 자위대 간부의 간첩 사건 보도

- 일본 경찰은 1980.1.18. 미야나가 전 육상자위대 육장보(소장급)와 현역장교 2명을 군사기밀의 대소련 유출혐의(자위대법 위반 및 절도혐의)로 체포함.
- 미야나가 등은 소련, 중국(구 중공), 북한 관련 정보전문가로서 1974년 이래 본격적으로 주일본 소련대사관 무관에게 군사기밀을 유출함.

2. 일본 측 반응

- 일본 정부는 당분간 수사진전을 주시, 공식 논평을 보류 중임.
- 오히라 수상은 대소련 항의 등 대응책을 금주 내 밝힐 예정임.
- 기밀보전을 위한 입법조치 등은 당분간 고려하지 않으나, 자민당 우파 등은 스파이 방지 관련법 제정을 검토 중임.

3. 유출된 기밀내용

- 일본 경시청은 유출된 기밀 중 고도기밀사항은 없으며, 대부분 중국 내 군사동향에 관한 사항으로서 미군에 관한 정보는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밝힘.
- 언론들은 일본의 대소련 방위체제, 주일본 및 주한미군 관련 기밀의 유출 가능성을 보도함.

4. 조치사항

- 주일본대사로 하여금 자민당 내 정조회, 국방부회, 안보조사회 등과 비공식접촉, 유출된 기밀 중 한국 관련 내용의 여부(주한미군 포함), 북한 및 조총련계의 관련 및 첩보수집 활동 등을 파악, 보고하도록 훈령함.

일본 정치정세. 전3권 (V.1 오히라(大平) 내각 불신임안 통과)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일본

MF번호 2010-76 / 5 / 1-95

1. 경위

- 불신임안 제출 및 심의
 - 1980.5.16. 사회당, 오히라 내각 불신임안 제출
 - 동일 18:35 투표 개시
- 투표 결과, 재석 430석 중 찬성 243표, 반대 187표로 불신임안 통과

2. 배경

- 1980.6.29.로 예정된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야당 측은 금번 선거가 자민당 일당지배를 종식시킬 호기회로 판단, 공동협조 태세를 갖추어 왔음.
- 야당 측은 불신임안 제기 이유로서 자민당의 금권 부패정치의 일소, 물가상승 등 경제정책 실패와 외교면에서의 대미국 추종에 의한 자주외교 결여 등을 내세움.

3. 일본정계 동향

- 국회 해산
 - 오히라 수상은 1980.5.16. 임시각의를 소집, 국회 해산 방침을 정식 결정함.
- 총선거 일정
 - 헌법규정에 따라 국회 해산 후 40일 이내에 총선거를 실시해야 하는바, 5.17. 자민당 긴급의원 회의에서는 6.22. 총선거 실시 방침을 결정함.

4. 일본 국내외 반응

- 일본 국내 반응
 - 자민당뿐 아니라 야당으로서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태로 받아들이고 있음.
 - 언론계는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정치공백이 초래된데 대해 우려 표명
- 주요국 반응
 -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놀라운 사태이며,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라고 하고, 금번 사태로 미국·일본 관계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논평
 - 소련 타스 통신은 소련은 불신임안 가결을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이며, 악화되었던 일본·소련 간 관계에 변화가 올 것을 기대함.

일본 정치정세. 전3권 (V.2 중·참의원 동시 선거)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일본

MF번호 2010-76 / 6 / 1-278

1. 1980.6.22. 총선 결과 분석

- 자민당의 압승
 - 1970년대의 퇴조에서 1960년대 수준으로 의석수 회복
 - 단독정권 및 정국안정에 필요한 절대다수 의석 확보
- 야당세력의 전반적 약화로 대정부 견제력 약화
 - 사회당, 현상유지로 제1야당 자리 견지
- 자민당의 승인 및 야당의 패인
 - 안보, 경제 및 국제정세에 비추어 정국의 큰 변화보다 안정을 선호한 국민여론의 반영
 - 오히려 수상 서거로 자민당은 당내 항쟁을 멈추고 거당 태세로 선거에 임한 반면, 야당은 공격 목표 상실로 선거쟁점을 찾지 못함.
 - 야당의 분열로 야당 연합정권 구상의 허구성을 노정,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줌.

2. 일본 정국 추이 전망

- 자민당의 압승으로 당내 결속력이 약화되어 차기 수상 및 총재 선출을 둘러싸고 내분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음.
- 수상 후보 경선은 선출시기에 따라 다양한 후보자가 각축할 것으로 전망

3. 한국에 미치는 영향

- 자민당 압승으로 향후 3~4년간 기존의 양국 우호 협력관계의 유지, 발전이 기대됨.
- 야당세의 감퇴로 정부, 야당에 대한 야당의 대북한 접근 압력이 경감됨으로써 급격한 일본·북한 접근은 예상되지 않음.
- 일본 측은 안보·방위문제를 둘러싼 양국관계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접근해올 가능성이 있음.

일본 정치정세. 전3권 (V.3 스즈끼(鈴木) 내각 출범)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일본

MF번호 2010-76 / 7 / 1-153

936

1. 신정권 성립

- 1980.6.22. 총선에서 자민당이 압승, 중·참 양원에서 안정 다수 확보
- 총선 후 오히라 전 수상 후계문제와 관련, 사쿠라 우치 간사장, 니시무라 부총재 등이 중심이 되어 각 파벌 영수들과 의견을 조정한 결과, 스즈키 총무회장을 신총재로 선출하는데 의견이 일치됨.
- 7.15. 중·참 양원 의원총회에서 스즈키 총무회장을 제10대 당 총재로 선출하고 동시에 동인을 수상후보로 결정
- 7.17. 특별국회, 스즈키 자민당 총재를 제70대 수상으로 선출

2. 주요국 반응

- 미국
 - 일본의 민의가 보수적임을 재반영한 것임.
 - 미국은 일본이 안보 등 경제 외 분야에서도 좀 더 큰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함.
- 프랑스
 - 동 수상은 전통적으로 일본 수상이 거쳐 온 핵심 각료직, 즉 대장상과 당 간사장을 역임하지 않은 약점이 있지만, 당내 파벌싸움에서 야심 없이 양해와 형평 조정의 인물이며, 다나카가 스즈키의 수상 선출을 원했기 때문임.

3. 스즈키 수상 취임 기자회견 시 외교 부문 주요 언급요지

- 한·일본 관계에 있어서는 금후 한국의 추이를 신중히 주시하면서 종래의 우호 협력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정기 각료회의는 외상 등과 협의, 결정할 것임.
- 미국·일본 외교는 일본 외교의 기축임. 따라서 양국 간의 우호 신뢰관계를 진전시켜야 함.
- 일본·중국(구 중공) 관계는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필요함. 오히라 전 수상과 마찬가지로 양국 관계의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임.

일본 정세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일본

MF번호 2010-76 / 8 / 1-81

1. 1980년대 일본의 외교 기본방향

- 오키다 일본 외상은 1980.1.23. 외신기자클럽 초청 오찬에서 1980년대 일본의 외교 기본방향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함.
 - 1980년대 일본 외교는 수동외교에서 능동외교로 바뀌는 전환기가 될 것임.
 - 평화외교원칙의 재확인
 - 국제평화 및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 추구
 - 일본의 경제력과 기술을 빈국의 경제개발 및 세계발전에 건설적으로 기여

2. 외국인등록법 개정 문제

- 1980.3.7. 일본 중의원 예산위에서 구사가와 공명당 의원은 외국인등록법 개정 문제에 관하여 질의한바, 질문과 답변 요지는 아래와 같음.
- 질문: 법무성은 외국인 신규 등록 신청기간 연장 및 변경등록 신청의무의 완화, 갱신 신청기간의 합리화 및 재입국 허가수속 완화 등 4개 개정안을 명백하게 하고 있으나, 이는 사무절차 간소화에 불과하며, 본질적인 개정은 되지 않고 있는바, 지문날인제도의 폐지 등 근본적 문제의 개정 시기를 확실히 하라.
- 야마모토 법무성 관방차관 답변: 현재 검토 중에 있으나, 다소 시일을 요하는바, 앞으로 3년 전후를 기해 동법을 개정할 예정으로 있음.

3. 스즈키 내각의 경제 운영

- 1980.7.19.자 일본 경제지는 스즈키 내각의 경제각료 정책운영에 대해 아래 요지의 기사를 게재함.
 - 다나카 통상상: 석유 대체에너지 개발을 중점시책으로 할 것이며, 원자력, 석탄액화, 태양열, 지열 등의 개발을 가속하여 10년 후에는 1차 에너지 총 수요의 50%를 대체에너지로 충당할 계획임. 일본·미국 간 자동차 마찰에 대해서는 먼저 자동차 업계가 지혜를 짜내어 해결의 노력을 보여야 할 것임.
 - 고모토 기획청 장관: 물가가 대체적으로 안정된 방향에 있는 반면, 경기가 열려되기 때문에 경기, 물가의 양면작전이 필요함. 다만, 최종판단은 좀 더 상세히 조사한 후 관계성과의 의견 조율을 할 필요가 있음.

라이베리아 군사혁명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서부아프리카

MF번호 2010-76 / 12 / 1-298

938

1. 군부 쿠데타 발생

- 1980.4.12. 오전 2시 원주민 출신 Samuel Doe 상사가 영도하는 사병 수백 명은 대통령 집무실, 방송국 및 주요 기관을 기습 점령하고 오전 6시 방송을 통해 현 톨버트 정권을 완전히 전복시켰다고 발표함.
- 4.12. 새벽 대통령궁에서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톨버트 대통령과 수행원을 사살한 군사혁명은 아무런 기존정권의 저항도 받지 않은 채 순조로이 성공함.
- 혁명정권은 Doe 상사를 혁명위원회 의장 겸 국가수반으로 하고, 진보당 간부 등 반정부 기본세력을 총망라, 부정부패에 물들지 않은 톨버트 정권의 3개 장관도 재기용하는 등 국민 전체의 지지를 얻고 규합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

2. 전직각료 처형

- 군사혁명 후 반역죄, 부정부패, 권리남용, 인권침해 등으로 구속된 91명 중 14명에 대한 심사를 종결한 혁명군법회의는 이 중 13명에 대해 1980.4.22. 판결과 동시에 즉시 총살을 집행함.
 - 이들은 상·하원 의장, 대법원장, TWP 의장, 외무장관, 재무장관, 법무, 상공, 경제기획, 농림 장관, Nimba주 하원 의원, TWP 재정관 및 재무성 예산국장 등임.
- 혁명정부 수반인 Doe 상사는 처음으로 외신기자들과 회견을 갖고, 혁명위는 장기간 집권할 생각은 없으며, 부정부패를 제거하는 자체 숙정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본연의 임무를 위해 군막사로 돌아갈 것이라고 언급함.

3. 라이베리아, 프랑스대사 소환 요청

- 라이베리아 주재 프랑스대사가 A. B. Tolbert(톨버트 전 대통령 아들)을 자국 대사관에 피신시켜준 바, 이를 비난해온 라이베리아 정부가 동 대사의 48시간 내 출국을 요청하였다고 1980.6.20. 자르몽드지가 보도함.
- A. B. Tolbert는 주라이베리아 프랑스대사관에 피신하고 있던 중 6.14. 라이베리아 군인들이 동 대사관을 침입하여 동인을 체포하였으며, 이후 양국관계가 악화됨.

사우디아라비아 Mecca 사원 점령사건

생산연도 1979-1980

생 산 과 근동

MF번호 2010-77 / 9 / 1-127

1978~80년 중 사우디아라비아 메카 사원 점령사건에 관한 내용임.

1. 사건 개요

- 1979.11.20. 시아파에 속하는 무장 이슬람신도 약 300명이 소수 인원으로서 분산되어 약 3천 명의 신도들이 예배를 보고 있던 메카 알하람 사원 내로 침입함.
- 주동자 모하메드 압둘라(예비역 공군 소장)는 메시아로 인정받기 위해 예배를 준비 중인 압둘라 크레이피를 위협함.
- 압둘라 크레이피는 경찰에 긴급 연락하고, 경찰이 무장부대를 출동시켜 메카 사원을 포위하자 무장신도 약 200명이 약 40개의 사원 출입문을 봉쇄하고 경찰과 약 30분간 총격전을 벌임. 고위 성직자를 포함한 상당수의 경찰 희생자가 발생했고, 무장신도 측에는 사상자가 없는 것으로 판명됨.
- 사우디 보안군은 11.21. 밤 무장신도들에 의해 점령된 메카 알하람 사원을 공격, 동 사원의 대부분을 탈환하였으며 사우디 정부군은 11.22. 무장신도 200~300명과 대치함.

2. 사우디 정부 입장

- 사우디 정부는 관계당국이 알하람 사원의 사태 수습을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였으며, 종교 지도자 회의는 알하람 사원에 있는 신도들의 생명 보존 조치를 취하기로 결의했다고 발표함.
- 메카와의 모든 교통을 차단하여 출입통제를 엄격히 하고 있으며 모든 외국 순례객의 조속한 출국을 촉구하고 체재 기간 위반 시 강제송환 등 엄격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함.
- 이번 사건이 다른 국가와 관련되어 있다는 증거는 없으며 사원의 신성성과 인명보호를 위해 사원 2층에 잔류하고 있는 폭도들에게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밝힘.

3. 한국의 조치

- 외무부는 1979.11.21.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에게 동 사태의 경위, 배경 및 전망, 한국근로자의 안전 여부를 확인 보고하도록 지시
- 동일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는 상기 관련 아래와 같이 보고함.
 - 메카에는 동아건설 전화공사 요원 7명과 유학생 2명이 거주하고 있으나 이들의 숙소는 메카 알하람 사원으로부터 약 3km 지점에 있어 신변은 안전한 것으로 확인됨.

4. 최종 결과

- 동 사건으로 600명이 사망했으며 동 사원에 난입한 과한은 4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도됨.

미국 대통령 선거, 제40대, 1980.11.4. 전4권 (V.1 선거동향, 1-9월)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북미

MF번호 2010-78 / 3 / 1-196

제40대 미국 대통령 선거(1980.11.4.) 관련 1980.1~9월 동향에 관한 내용임.

1. 주요 선거 일정

- 양당의 전국대회
 - 민주당: 1980.8.11.~14., 뉴욕
 - 공화당: 7.14.~18., 디트로이트
- 국민 투표: 11.4.
- 선거인단 투표: 12.15.
- 집계 및 당선 선포: 1981.1.6.
- 취임: 1.20.

2. 예비선거 결과(1980.3.15. 기준)

- 민주당은 총 6개 지구, 공화당은 총 8개 지구 대의원 선출을 완료한바, 후보별 대의원 수는 아래와 같음.
- 민주당
 - 총 의석 수: 3,331
 - 카터: 269
 - 케네디: 139
- 공화당
 - 총 의석 수: 1,993
 - 레이건: 165
 - 부시: 45

3. 앤더슨 후보의 대한반도 정책

- 미국은 한국의 안보를 계속 지원할 책임이 있으며 대한반도 방위공약은 계속 중요함.
- 카터 행정부와 달리 한국으로부터 미군의 일방적인 철수는 하지 않음.
- 한국 정부의 탄압정책은 정치적 무질서를 초래함으로써 북한의 도발을 야기하고 전쟁을 재발시킬 위험이 있음.

미국 대통령 선거, 제40대, 1980.11.4. 전4권 (V.2 선거동향, 10월)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복미

MF번호 2010-78 / 4 / 1-171

제40대 미국 대통령 선거(1980.11.4.) 관련 1980.10월 동향에 관한 내용임.

1. 국회의원 및 주지사 선거 동향(1980.10.24.)

● 현황

- 공화당은 민주당 행정부의 실정으로 인한 경기 침체, 국방태세 약화 및 민주당의 장기적인 의회 장악으로 인한 의회 내 내분과 비능률 등을 부각시키는 선거 전략을 채택하고 수백만 달러의 선거자금을 살포하는 등 대대적인 공세를 펴고 있음.
- 민주당은 당내 결속의 부족과 당의 일관된 선거운동 방향이 결여된 상황에서 정당 차원에서의 통일된 선거운동보다는 개별적인 후보의 이미지 수립, 선거구 관리업적 등을 강조하는 대조적인 선거운동 양상을 나타냄.

● 하원 전망

- 공화당이 10~20석 정도 만회 예상

● 상원 전망

- 공화당이 3~6석 정도 만회 예상

● 주지사 전망

- 공화당이 3개주를 만회할 것으로 예상
- 양당의 백중지세: 미주리, 노스다코타, 워싱턴 등 3개주

2. 미 대통령 후보의 대한민국 정책 비교

● 카터

- 주한미군의 추가 철수는 당분간 보류

● 레이건

- 추가 감군조치는 없을 것으로 약속
- 현 정부가 정치적 참여 및 개인의 자유를 확대하도록 설득할 것

● 앤더슨

- 일방적 철군에 반대
- 민주주의와 자유 추구의 정당성 지지

미국 대통령 선거, 제40대, 1980.11.4. 전4권 (V.3 공화당 및 민주당 전당대회, 1980.7-8월)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북미

MF번호 2010-78 / 5 / 1-228

제40대 미국 대통령 선거(1980.11.4.) 관련 1980.7~8월에 개최된 공화당 및 민주당 전당대회에 관한 내용임.

1. 공화당 전당대회(1980.7.16.)

- 투표결과
 - 레이건이 대통령 후보로 지명됨.
 - 1,994명 대의원 중 레이건 1,939, 앤더슨 37, 부시 13 및 기타 5
- 레이건은 부통령 후보로 전 CIA 국장이며 유엔대사였던 부시를 지명함.
 - 부통령 후보는 7.17. 대의원들의 투표를 거쳐 선출될 예정
- 포드 전 대통령은 카터 대통령의 지도력 반공을 맹렬히 비난하고 앞으로 레이건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

2. 민주당 전당대회(1980.8.14.)

- 결과
 - 먼데일 부통령을 무투표로 부통령 후보로 재지명하고 정·부통령 후보의 지명 수락 연설 청취 후 폐막됨.
- 카터 대통령 지명 수락 연설
 - 케네디 의원을 강인하고 탁월한 경쟁자였다고 칭찬하고 동 의원의 적극 지지 호소
 -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강정책상의 차이점 부각
 - 민주당 승리의 불가피성과 당내 단합의 중요성 역설
- 케네디는 카터 연설 종료 후 등단하여 카터와 악수를 나눔으로써 양인 사이에는 일단 화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일부 인사는 양측의 태도가 다소 냉랭한 것으로 보여 케네디의 전폭적인 지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관측됨.

미국 대통령 선거, 제40대, 1980.11.4. 전4권 (V.4 대통령 선거, 1980.11월)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복미

MF번호 2010-78 / 6 / 1-201

제40대 미국 대통령 선거(1980.11.4.) 결과 관련 내용임.

1. 대통령 선거 최종 집계 결과

- 투표율: 52.9%
- 득표율
 - 레이건: 51%
 - 카터: 41%
 - 앤더슨: 7%
- 선거인단 득표
 - 레이건: 483표
 - 카터: 49표
 - 앤더슨: 0표

2. 분석 및 평가

- 카터는 미 대통령 선거 사상 11번째로 재선에 실패한 대통령이 됨.
- 레이건의 압도적인 승리 이유
 - 카터가 역점을 둔 '전쟁과 평화' 이슈를 통한 레이건의 호전성 부각 실패
 -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해서는 레이건과 같은 일관성 있는 태도와 강력한 지도력이 요망된다는 일반 국민의 보수적 성향에 부합
 - 이란 인질 문제가 선거 전에 해결되지 못하는데 대한 국민들의 실망
- 금번 선거는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 세력이 되어온 노동자 계층, 흑인과 유대인 및 중남미 등 소수 민족 유권자들은 물론 카터의 출신지역인 남부지역까지 현 정부에 대한 실망이 도출된 결과로 보임.

3. 신 행정부의 대외정책

- '위대한 미국의 재현'을 구현하기 위해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한 대소련 군사적 우위 견지를 표방함으로써 대소련 강경노선을 택할 것으로 보임.
- NATO(북대서양조약기구)를 주축으로 한 서구국가들과의 유대를 강화할 것으로 보임.
- 아태지역 내 미국의 강력한 역할 회복을 주장함으로써 소련의 팽창정책에 대응할 것으로 전망

미국 신탁통치령 남태평양 도서지역 독립문제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대양주

MF번호 2010-79 / 4 / 1-28

1980년 중 미국의 신탁통치령에 있는 남태평양 도서지역의 독립문제 관련 내용임.

1. 미국 신탁통치령 남태평양 도서지역 중 마셜제도, 미크로네시아연방, 팔라우는 1981년까지 미국 자치령의 지위를 확보, 준독립국으로서 대외 외교정책 수행 예정

2. 자유연합(Free Association) 합의

- 미국의 신탁통치령인 남태평양 군도의 독립을 위한 당사자 간 교섭은 1969년 이래 미크로네시아 연방 의회와 미국 정부 간 진행되어 지난 11년간의 절충으로 자유연합 형태의 독립에 합의, 1980.10.31. 자유연합협약 체결(가조인)
- 미크로네시아연방과 마셜제도는 10.31. 상기 협정에 가서명하고, 팔라우는 대통령 선거 관계로 11.17. 가서명함.

3. 협정 내용

- 자치 정부의 수립: 내정에 관해 각각 모든 권한(Full Authority) 향유
- 외교권의 행사: 조약 체결, 국제기구 가입 및 외교사절의 교환
- 국방 및 안보에 관한 미국의 절대 권한
- 경제 원조: 미국은 협정 발효 후 15년간 총 20억 달러 규모의 무상원조 제공

4. 협정 발효 시기

- 부속협정의 교섭, 국내 절차 완료, 신탁통치 상태의 종료 등 절차 완료 후 발효되도록 되어 있는 바, 1982년 중순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

5. 참고자료

- 미국 정부의 남태평양 신탁통치령의 정치적 지위 협상 자료
- Negotiations for the Future Political Status of the Trust Territory of the Pacific Islands

짐바브웨 독립. 전2권 (V.1 1-2월)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남부아프리카

MF번호 2010-79 / 10 / 1-459

1980.1~2월 중 짐바브웨 독립 관련 내용임.

1. 짐바브웨 총선 및 독립 배경

- 영국 정부의 주도 하에 무조레와 짐바브웨 로디지아 정부 측과 망명 독립 단체인 애국전선 지도자 간의 로디지아 당사자 회담(1979.9.10.~12.21., 런던)에서 전 당사자가 참여하는 총선을 통한 독립 방안에 합의하는 평화협정 체결(1979.12.21.)

2. 무가베 귀국(1980.1.27.)

- 애국전선의 ZANU(짐바브웨아프리카민족동맹)파 지도자 무가베가 5년에 걸친 망명 생활 후 모잠비크에서 귀국
 - 수도 하라레 도착 후 약 20만 명의 청중 앞에서 행한 연설에서 인종간의 평화와 흑백 양측의 평등을 호소하고, 경제면에서 ZANU의 사회주의 표방에도 불구하고 개인 영농제도 및 백인의 경제 참여 여건 보장 등 온건하고도 합리적인 지도자상 부각에 노력

3. 짐바브웨 총선

- 1980.1.24. 주영국대사관은 영국 외무부 로디지아국장 대리를 접촉하고 아래 결과를 보고함.
- 짐바브웨 총선(1980.2.14. 백인 20석, 2.27.~29. 흑인 80석) 전망
 - 무조레와, 은코모, 무가베 등의 3개 정당을 비롯, 흑인 후보자 난립 예상
 - 단일 정당 집권 불능으로 연립 정부 구성 확실시
 - 집권당에 따라 정치 노선 상이 예상: 무조레와 친서방, 애국전선 비동맹
- 짐바브웨 원주민 선거(1980.2.27.~29.)에 앞서 1980.2.14. 실시된 짐바브웨 소수 백인 대상 선거(20명의 의원 선출)에서 Ian Smith 전 총리가 이끄는 Rhodesian Front Party가 14석을, 기타 6석은 무소속이 차지

4. 참고자료

- 남로디지아 문제에 관한 유엔안보리 회의 결의안 및 토의록 등

짐바브웨 독립. 전2권 (V.2 3-4월)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남부아프리카

MF번호 2010-79 / 11 / 1-242

1980.3~4월 중 짐바브웨 독립 관련 내용임.

1. 짐바브웨 흑인 선거(1980.2.27.~29., 80석) 결과

- 투표율: 93.6%
- 분파별 의석 분포
 - ZANU(짐바브웨아프리카민족동맹) 무가베: 57석
 - ZAPU(짐바브웨아프리카인민동맹) 은코모: 20석
 - UANC(통일아프리카민족회의) 무조레와: 3석
- ZANU의 압승으로 무가베가 독립 짐바브웨의 초대 총리에 취임

2. 신정부 수립

- 신내각 구성(1980.3.11.)
 - 무가베 파(16명), 은코모 파(4명), 백인(2명) 총 22명의 각료
- 신내각의 특성
 - 무가베 파와 은코모 파 연합으로 하원의 절대 다수 의석 확보(100석 중 77석)
 - 2명의 백인 각료 임명은 백인에 대한 회유 및 신국가 건설에 백인의 참여 추구

3. 짐바브웨 독립

- 독립 절차
 - 40명의 상원 의원 선출(백인 선거인단 선출 10명, 흑인 선거인단 선출 14명, 추장회의 선출 10명, 대통령 임명 6명) 및 대통령 선거(의회에서 선출) 후 영국이 통치권을 신정부에 이양함으로써 정식 독립
 - 1980.4.11. 무가베 총리를 비롯한 10명의 하원 의원 추천으로 Chnaan Banana 감리교 목사를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
- 4.18. 90년간의 백인 지배를 청산하고 짐바브웨 독립
 - 아프리카의 50번째 독립국

4. 참고자료

- 로디지아 총선 및 독립(1980.3.5., 아프리카국)
- 로디지아 총선 결과 및 독립(3월, 아프리카국)

재외동포 동향

생산연도 1979-1980

생 산 과 교민2

MF번호 2010-81 / 13 / 1-55

1979~80년 중 재외동포 동향 관련 내용임.

1. 재외동포 동향(1979.12~80.1월)

- 국내사정에 대한 비판: 김재규 구명운동
- 재외동포의 활동상: 김재현 등 케네디 상원 의원 모금 파티 참가, L.A. 교포 유신철폐 시위
- 국내 주요인사에 대한 비판: 전두환 보안사령관, 이후락 공화당 의원의 장남 북한 망명, 김치열 전 법무부장관 일본 망명

2. 일본지역 재외교민 동향(1980.1.1.~31.)

- 민단 동향: 청년회, 민족차별 10만 인 서명 추진, 재일본 한인 복지향상 일부 해결, 구정 성묘단 2월 중 모국 방문, 시모노세키 민단회관 완성
- 조총련 동향: 미야기 조선 상공인 신춘 강연회, 조총련 중앙대회

3. 일본지역 재외교민 동향(1980.2.1.~29.)

- 재일교포에 대한 행정차별 철폐, 일본 외국인 등록법 및 입관령 완화 중의원 제출 예정, 재일본 민단 헌법 개정 관련 건의서 제출, 거류민단 동향, 조총련 동향, 재일교포 출입국 상황

4. 미주지역 재외동포 동향(1980.3월)

- '12인 위원회' 구성으로 신총리 추대, 의혹 던진 신총리 발언, 군부 재계 신당 추진설, 현 정부는 집단지도체제, 김대중 공동통신과 단독 기자회견 등

5. 일본지역 재외교민 동향(1980.4.1.~30.)

- 통일혁명당 일본대표부 설립, 도쿄 한·일본 의원연맹 결성, 재일본 한국인 거류민단 동향, 조총련 및 반한단체 동향

히로시마현 한국회관 건립 유공자 서훈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교민1

MF번호 2010-81 / 15 / 1-317

1980년 중 히로시마현 한국회관 건립 유공자 서훈 관련 내용임.

1. 히로시마현 민단 지방본부 청사 건립 유공자 표창

- 주일본대사관, 주시모노세키총영사관 관련 표창 건의(1980.4.25.)
 - 대통령 13명, 국무총리 17명
- 외무부, 표창 대상자 축소 재조정 지시(5.6.)
- 주시모노세키총영사관, 표창 대상자 축소 재조정(5.23.)
 - 대통령 5명, 국무총리 10명
- 유공교포 표창 상신(5.29.)

2. 히로시마 현 한국회관 건립유공자 표창(1980.8.7.)

- 히로시마 현 한국회관 건립유공자에 대한 표창 건은 주시모노세키총영사관 건의대로 유공자 5명에게는 대통령 표창, 10명에게는 국무총리 표창, 30명에게는 외무부장관의 표창을 각각 수여하기로 결정됨.
 - 대통령 표창: 서성수 외 4명
 - 국무총리 표창: 강태영 외 9명
 - 외무부장관 표창: 조유승 외 29명

일본의 국제인권 규약 가입 관련 재일본 한국인의 법적 지위 및 대우 문제

생산연도 1977-1980

생 산 과 일본

MF번호 2010-82 / 1 / 1-133

1977~80년 중 일본의 국제인권규약 가입 관련 재일본 한국인의 법적지위 및 대우 관련 내용임.

1. 외무부장관은 1978.2.14. 주일본대사에게 일본 정부의 국제인권규약 비준 움직임과 관련 재일본 한국인의 법적지위 및 대우문제를 아래와 같이 통보함.

- 비준에 따른 긍정적 효과
 - 어떤 형태의 차별도 없이(국가적 출신 포함) 규약상의 제권리를 보장해 줄 것과 동 권리의 완전한 실행을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입법조치를 포함한 모든 적절한 수단을 동원하도록 한 규약상의 의무(A, B 규약 제2조)에 따라 장차 일본 정부가 국내법 개정조치를 취할 경우에 재일본 한국인 문제도 포함될 것으로 보임.
 - 금후 재일 한국인의 법적지위 및 복지향상에 관한 대일본 교섭에 있어서 한국 측 입장을 간접적으로 강화시켜줄 것으로 기대
- 비준에 따른 부정적 효과
 - 조총련계 교포와 민단계 협정 영주권자 간의 지위 평준화의 근거를 제시해 줌으로써 조총련계 교포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개선, 강화될 여지도 있음.
 - B 규약 제18조 및 제19조는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명시함으로써 조총련의 반한활동 규제에 일본 측이 소극적 태도를 취할 우려가 있음.
- 위와 같이 동 규약 비준에는 재일 한국인의 법적지위 및 복지문제와 관련되는 문제점이 다소 포함될 것으로 보이긴 하나, 동 규약의 비준문제는 기본적으로 일본 국내문제에 속하는 사항임.
 - 동 협약이 비준된다고 하더라도 재일 한국인의 지위에 당장 큰 변화가 올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한국으로서는 지켜보는 입장을 취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2. 일본의 국제인권규약 비준과 재일교포의 권익보호(1980.1.17.)

- 1979.6.21. 일본이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제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및 '시민적·정치적 제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비준함으로써 상기 규약이 일본에 대해 발효 중인바, 재일교포의 권익보호와 관련 일본의 동 규약 이행에 관하여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약국은 관련 자료를 아주국과 영사교민국에 송부함.

재일본 한국인 법적지위 및 복지향상 문제. 전2권 (V.1 1-10월)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교민1

MF번호 2010-82 / 2 / 1-180

1980.1~10월 중 재일본 한국인의 법적지위 및 복지향상 문제 관련 내용임.

1. 재일본 한국인에 대한 국민금융공고 융자 허용

- 일본 대장성은 국민금융공고의 융자대상에 재일본 한국인을 포함시키고, 이를 1980.4.1.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주일본대사관에 통보함.
- 은행 등 일반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대부를 받기 어려운 “국민대중”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자금 공급을 목적으로 함.
 - 동 국민금융공고법 제1조에 “국민대중”에게만 적용한다고 하여 그간 재일본 한국인은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었음.

2. 재일본교포에 대한 국민연금 적용문제

- 1980.3.5. 일본 중의원 예산위에서 민사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후생성 장관은 아래와 같이 답변함.
 - 재일본 한국인에 국민연금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양국 간 협정이 필요
 - 동 연금은 25년이라는 장기간 불입이 필요한 것이므로 한국인에 대한 적용에 문제가 있음.
 - 한국인을 특별 취급하기는 곤란하나 한·일본 협정의 기본 정신에 따라 성의껏 검토하겠음.

3. 국민연금 가입문제 해결을 위한 실무자회의 개최

- 1980.10.6. 외무부 아국장은 무라오카 주한 일본대사관 공사를 초치, 아래와 같이 언급함.
 - 지난 1980.4월 한·일본 외무장관회의에서도 재일본 한국인의 국민연금 가입문제 해결을 위한 실무자회의 개최를 합의한 바 있음.
 - 주일본대사관을 통해 10월 하순경 동 실무자회의가 개최되도록 관계부처와 교섭할 것을 지시 하였던바, 일본 측은 국회일정 등으로 10월 하순경 개최는 어려울 것이라는 반응임. 이에 조속히 개최되도록 일본 측이 성의를 보일 것을 촉구함.

재일본 한국인 법적지위 및 복지향상 문제. 전2권 (V.2 11-12월)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교민2

MF번호 2010-82 / 3 / 1-118

1980.11~12월 중 재일본 한국인 국민연금 가입문제 관련 내용임.

1. 재일본 한국인의 국민연금 가입문제

- 박종기 주일본대사관총영사는 1980.12.3. 와타나베 일본 외무성 아시아국 참사관을 방문, 재일본 한국인의 국민연금 가입문제에 대한 상세한 면담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보고함.
- 일본 외무성·후생성 양 부처 간 조정 내용
 - 난민조약의 차기 국회 비준을 우선 목표로 하되, 재일본 한국인의 국민연금 가입의 문호개방(단, 35세 이상자에 대한 구제조치는 불가능), 아동수당의 지급 등 혜택을 실무적인 면에서 합의에 이르게 됨.
- 실무자회담 개최 관련 외무성 입장
 - 현 상황에서 회담을 개최해도 한국 측에 이득(경과조치 설정 등)이 될 것이 없으며, 난민조약의 유보 없는 비준을 겨우 설득하게 된 현 시점에서 양국 간 실무자회담을 개최하여 후생성을 자극시키는 것은 피하고자 하는 입장임.

2. 재일본 한국인 국민연금 가입문제 대책(1980.12월, 외무부 아주국)

- 실무자회담 개최 여부가 일본의 난민조약 가입문제에 직결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무회담에 상관없이 난민조약은 향후 1~2년 내에 비준될 것이며 동시에 후생성 측이 제출할 국민연금법 수정안도 통과될 것이 분명함.
- 이렇게 될 경우, 한국 측으로서는 35세 이상의 재일교포에 대한 경과조치 실시 주장을 하지 못하고 재일교포 국민연금 문제가 한국 측의 교섭에 의해서가 아니라 일본 정부가 선심을 썼다는 인상을 재일교포들에게 주면서 해결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국민연금 문제를 포함한 교포문제 전반에 관한 고위 실무자회담을 적극 추진하고 후생성이 국민연금 수정법안을 제출하는 단계에서 한국 측의 주장이 어느 정도 반영되도록 교섭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재일본 한국인 신용조합협회(한신협) 지원문제. 전2권 (V.1 1979)

생산연도 1979-1980

생 산 과 교민1

MF번호 2010-82 / 4 / 1-158

1979년 중 한신협(재일본 한국인 신용조합협회) 지원문제 관련 내용임.

1. 한신협의 추가자금 지원 요청에 따른 실태조사 및 대책(1979.8월)

- 한신협의 추가자금 지원 요청 내용
 - 신용조합 육성자금 추가 지원: 3천만 달러
 - 지원 이자율 인하: 현행 5.5%에서 4.25%로 인하
- 한신협 운영상의 문제점
 - 금융업무 경영능력 부족, 한신협의 지도역할 결여, 사전 및 사후 관리 기능(기구) 미비, 일부 조합원의 불성실한 자세, 부실조합 및 문제조합의 대두, 일본 감독기관의 태도 불명
- 정부의 추가자금 지원대책
 - 필요성: 열세 및 문제조합의 경영개선, 조신협과의 예금 경쟁 및 조합원의 추가 확보, 일본 정부의 긴급 금융정책 관련 교포생활의 안정화, 정부의 지속적인 교포 지원 의지 표현
 - 기본방향(지원 전제): 한신협의 강화, 문제조합의 경영개선, 조합의 자체 경영개선방안 수립, 사전 및 사후 관리 체계의 정비, 지원자금의 Commercial Base 원칙 계속 유지
- 방안
 - 지원규모: 3천만 달러(1979년 중 2천만 달러, 1980년 중 1천만 달러)
 - 재원: 한국은행 보유 외환
 - 지원금리: 현행의 금리체계(5.5%) 적용
 - 지원자금의 사용: 중소기업육성 지원, 열세 및 문제조합의 경영개선 지원

2. 재일교포 신용조합 지원 결정(1979.12월)

- 지원 총액: 3천만 달러
- 시기: 1979년도 말 2천만 달러, 1980년도 1천만 달러(개선 추이에 의거 결정)
- 금리: 6.25%(1979.12월 현재)
- 한신협 강화 및 경영개선 강력 추진: 한은, 외환은행에서 직원 각 1명 파견, 지도감사 실시, 조합의 확대 지양

재일본 한국인 신용조합협회(한신협) 지원문제. 전2권 (V.2 1980)

생산연도 1979-1980

생 산 과 교민2

MF번호 2010-82 / 5 / 1-93

1980년 중 한신협(재일본 한국인 신용조합협회) 지원문제 관련 내용임.

1. 한신협 경영개선을 위한 외환은행 직원 2인 파견(1980.3월)

- 주일본대사는 1980.4.25.부터 한신협 경영개선을 위한 외환은행 직원 2명의 파견 문제에 관하여 일본 측과 교섭한바, 일본 측은 한신협에 한국의 자금이 지원되고 있고 한신협에 전문 직원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외환은행 직원을 업무지도 차 파견한다는 것에 이의 없다는 의사를 표명함.
- 다만 한국인 신용조합이라 하더라도 일본법에 의거한 일본 금융기관이므로 파견된 은행 직원이 한신협의 감독이나 업무간섭 등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파견기간이 2~3년을 넘는 장기간이 되면 곤란하다는 의견임.

2. 한신협 지원

- 재무부는 1980.5월 한신협 경영개선을 위한 1천만 달러의 추가자금을 지원하고, 외환은행 직원 1명을 추가 파견하도록 관계 은행에 지시함.

3. 신용조합 지원자금 운영조정

- 재무부는 한신협 지원자금의 운영조정에 관해 한국은행, 외환은행, 신용조합 측에 1980.12.6.자로 아래와 같이 지시함.
 - 외환은행의 일본지점의 마진을 0.625%로 함.
 - 외환은행 일본지점의 대신용조합 대출금리가 일본 금융기관 상호 간 정기예금 금리 최고한도가 되도록 한국은행 예치금리를 조정 운영
 - 신용조합의 조합원 앞 대출금리도 외환은행의 대신용조합 대출금리에 상응하는 인하조치를 취할 것

재일본 한국인 유골봉환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일본

MF번호 2010-82 / 6 / 1-92

1980년 중 재일본 한국인 유골봉환 관련 내용임.

1. 한국 출신 전범자 동진회의 진정

- 1980.10.24.자 일본 석간 마이니지는 한국 출신 전범 유골문제 관련 기사를 보도한바, 주일본대사는 10.27. 동진회의 보상 청구 진정에 대한 외무부의 회답 지침을 요청함.
- 동진회의 진정 내용
 - 형사자들의 유골봉환: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23명이 처형되었으며, 이중 미귀환 유골은 11위로서 현재 도쿄도 내 유천사 및 혁명원에 분골 안치되어 있음(한국 출신 7, 북한 출신 4).
 - 자신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
- 외무부 검토의견(1980.11월)
 - 유골봉환 문제는 우선 진정인들로 하여금 일본 측이 요청하는 대로 유족 주소 및 명부를 작성하여 제시하게 하고 외교적 측면 지원을 하도록 함.
 - 보상 문제는 동인들이 청구권 협정에 의한 보상대상이 아니며, 또한 이미 청구권 신고기간이 지났으므로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여 이해시키고, 이미 진정인들도 보상 문제에는 역점을 두지 않음.

2. 유골봉환 추진 현황(1980.11.3., 일본담당관실)

- 1945.8월까지 일본에 강제동원된 총 36만 명의 한국인 중 21,919명이 전몰함.
- 전몰자 유골 중 연고자가 있는 유골은 종전 전후 및 1970년대에 거의 다 한국에 봉환, 유족에게 인도됨.
- 미봉환 유골: 1,146위(한국 본적 732, 북한 본적 414)
- 상기 1,146위의 유골은 연고자가 없으며, 그 중에는 북한 출신 유골들이 포함된 관계로 한국 측의 일괄 봉환을 둘러싸고 1969년 각료회의 시부터 한·일본 간 교섭이 진행되어 옴.

3. 한·일본 간 교섭

- 한국 측은 1980.12.24. 일본 외무성에 아래 요지의 합의문안을 재작성하여 전달함.
 - 한국 측 합의문안: 1년 이내 유족의 신청이 없는 경우 공시 종료시점에서 유족불명의 유골에 대해 일본 정부는 한국을 본적지로 한 자의 유골과 북한을 본적지로 한 자의 유골 중 한국에 연고자가 있음이 확인된 유골은 한국 정부가 일괄 인수함.
 - 한국 내 연고자가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북한 출신 유골에 대하여 일적·북적 채널을 통해서 인도된다면 한국 정부는 인도적 견지에서 반대하지 않음.

미국 South California(남가주) 한국학교 건립 지원 요청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교민2

MF번호 2010-82 / 8 / 1-64

1980년 중 미국 남가주(South California) 한국학교 건립 지원 요청 관련 내용임.

1. 남가주 한국학교 건립 추진 계획(1980.4월)

- 목적: 교포 2세들에게 모국의 얼과 전통을 가르치어 조국관 확립
- 학교 규모
 - 1차적으로 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정규학교를 설립하여, 2천 명의 교포 자녀를 주 4부제로 운영
 -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6학년의 전 과정 교육
 - 정규학교교사 30명, 한글교사 50명 확보
- 건물 및 시설비
 - 총액: 150만 달러
 - 정부지원 요청액: 20만 달러
 - 교포사회 모금: 30만 달러
 - 미국 시중은행 융자: 100만 달러

2. 남가주 한국학교 건립 추진 계획서 수정안 제출(1980.6.13.)

-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는 남가주 한국학교 건립추진위원회가 보고한 바 있는 한국계 사립학교 건립계획에 대한 수정안 제출을 보고함.
- 수정사항
 - 부지 확장, 건축단가 조정, 교실단위 면적 증가, 부대시설 증축으로 소요자금 증액
 - 기금수정
 - 총액: 300만 달러
 - 정부지원 요청액: 100만 달러
 - 교포사회 모금: 50만 달러
 - 미국 시중은행 융자: 150만 달러
-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 의견
 - 필요성: 교민 밀집지역에 민족 교육기관 설립 여망 고조. 대북한 저지의 일환
 - 건립의 실현성 및 장래성: 주 정부의 설립인가가 자유로워 실현성 있음. 설립 시 교포들의 다각적인 교육센터로서의 큰 역할 기대

재사할린 동포 귀환문제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일본

MF번호 2010-82 / 9 / 1-151

1980년 중 재사할린 동포 귀환문제 관련 내용임.

1. 외무부, 1980.1.31. 사할린 교포 귀환문제 관련 주일본대사에게 아래와 같이 지시함.

- 사할린 집행 실행위원회 보고에 의거, 사할린 교포들이 희망하는 위문품을 송부함.
 - 소품 인형 20점, 캘린더 100부, 녹음테이프 10개, 책자(한방약 2부, 생활력 10부)
- 사할린 교포를 조기 송환하도록 노력한다는 정부의 종래 방침에는 변함이 없으며, 일본 정부에 대해 대소련 접촉이 있을 때 마다 본건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 조기 송환이 실현되도록 촉구하고자 하니 이점 염두에 두고 적의 대처바람.

956

2. 사할린 교포 귀환 청원서

- 사할린 억류 한국인 귀환 소송재판 실행위원회는 유엔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청원서를 1980.7.17. 주일본대사관에 보내온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청원 사항(유엔사무총장 앞)
 - 사할린 억류 한국인 실태 파악을 위한 국제조사단을 파견해 줄 것
 - 사할린 억류 한국인의 일본 입국에 필요한 절차를 일본 정부가 소련 정부에 통고하도록 일본 정부에 촉구해 줄 것
 - 사할린 억류 한국인의 소련 출국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소련 정부가 일본 정부에 통고하도록 소련 정부에 촉구해 줄 것

3. 진정서 회신 전달

- 박노학 사할린 귀환 재일본 한국인회의 회장은 1980.7.10. 대통령 앞으로 진정서를 발송한바, 외무부는 이에 대한 회신(1980.8.6.자 외무부 아주국장 명익)을 주일본대사관에 송부하면서, 이를 박노학 회장에게 직접 전달하도록 지시함.

재외국민의 법적지위 실태 조사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교민2

MF번호 2010-83 / 2 / 1-47

1980년 중 재외국민의 법적지위 실태 조사 관련 내용임.

1. 외무부, 1980.8.2. 미주지역 및 구주지역 공관장을 대상으로 교포의 법적지위 향상을 위한 정부 간 교섭 참고자료 보고를 지시함.

- 해외 반한활동 순화 대책 관련 교민선도를 위한 교민의 불만해소 방안의 하나로서 현지 교민의 Minority Group 혹은 Ethnic Group 으로서 법적지위 향상(복지혜택, 고용기회, 사회참여 등 향상)을 위한 정부 간 교섭을 위해 참고하고자 하니, 관할 교민들의 현지 사회에서 법률·제도상 불평등한 대우, 사회활동상 장애사항, 기타 관련 개선 필요사항 등을 조사하여 개선 방안과 함께 보고하도록 지시함.

2. 상기 지시에 대한 공관 보고 주요 내용

- 대부분 공관은 현지 법률 혹은 제도상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지 않다고 보고함.
- 하गत나: 현지사회에서 특별히 불평등한 대우는 받고 있지 않으나 1975.4월 베트남에서 철수한 교민들의 신분변경을 위한 정부 간 교섭이 요망됨.
- 베네수엘라: 외국인 단독으로 법인 설립이 불가능. 고급 인력 기술자를 제외하고는 취업 기회가 거의 없음. 유색 아시아인 특히 중국(구 중공), 한국인에 대한 비자발급을 제한하며, 입국 후 체류기간 연장 절차가 까다로움 등

이란·이라크전에 따른 한국 근로자 보호대책 및 철수계획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중동

MF번호 2010-83 / 3 / 1-67

1980년 이란·이라크전에 따른 한국 근로자 보호대책 및 철수계획 관련 내용임.

1. 재이라크 한국 근로자 긴급 대피

- 주쿠웨이트대사 보고 및 건의(1980.9.25.)
 - 9.24. 현재 이란·이라크 분쟁상태 보고, 이라크 내 바스라 및 움카슬 지역 근로자 긴급대피 건의
 - 바스라지역 근로자 778명(현대건설, 가족 2명 포함), 움카슬지역 근로자 26명(삼성종합건설)
 - 현대건설 소속 근로자, 위협지역인 바스라에서 쿠웨이트 접경 사프완으로 잠정 이동조치
 - 바그다드 체류 인원 341명(현대 339, 삼성 2)은 사태 위급 시 육로로 요르단 대피 검토
- 외무부, 9.26. 공관장 책임 하에 현지 상황을 판단,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고 쿠웨이트로 대피하기 위한 필요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
- 관계부처 연석회의 토의내용(1980.9.26., 외무부)
 - 참가자: 신동원 외무부 경제차관보(주재), 외무부, 건설부, 노동청, 교통부, 중정 관계자
 - 향후 근로자 '철수'라는 용어 대신 '대피'를 사용
 - 바스라 및 움카슬 지역 근로자는 업계 의견을 참작, 공관장 책임 하에 쿠웨이트로 대피
 - 쿠웨이트 체류 연장을 위한 교섭을 공관장에 지시하였으나, 계속 불가능 경우 바레인으로 이전 대피 또는 항공편 귀국조치
 - 이란 근로자는 긴급 상황에 있지 않으며 바그다드 체류 인원은 긴급 시 요르단 대피조치

2. 종합평가 및 전망

- 한국 근로자 대피 불가피
 - 이란·이라크 분쟁은 주로 바스라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바, 동 지역 관공서는 전시체제에 돌입하여 정상 행정 업무가 중단상태임. 양국 간 휴전이 설립된다 하더라도 기배치된 군부대 및 미사일 잔류 가능성이 농후한바, 향후 이란의 공격 대상지역임.
 - 바스라지역 외국인 근로자는 소수의 파키스탄인을 제외하고 1980.9.27. 현재 전원 대피하여 본국에 귀환함. 금번 대피는 근로자의 희생방지 목적이라기보다 바스라지역이 이란의 주폭격 대상지역이 되어 계속적인 작업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임.
- 향후 재취업 전망: 향후 바스라지역 재취업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

재외동포의 반한 단체 동향. 전2권 (V.1 5-7월)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교민2

MF번호 2010-83 / 4 / 1-179

1980.5~7월 중 재외동포의 반한 단체 동향 및 대책 관련 내용임.

1. 해외 반한활동 순화대책(1980.7.1.)

● 반한활동 현황

- 광주사태 이후 아주, 구주 및 미주 지역 14개국 주요 도시에서 도합 100여 건의 반한활동 발생
- 반한활동의 주동세력은 조총련, 한민통을 비롯한 각종 친북한 단체 등이나 일부 불순 교민, 유학생, 종교인 및 좌익계 인사들까지 가담하는 등 그 폭이 넓어지고 있음.
- 반한활동 수법은 가두시위, 성토대회 이외에 단식집회, 광주시민을 위한 헌혈 및 모금과 국제 기구를 통한 여론 환기 등 그 양상이 조직적이고 다양화되고 있음.
- 반한활동은 또한 재외공관, 백악관, 국무부, 유엔본부 등 다중의 눈길을 끌 수 있는 곳에서의 시위 및 메시지 전달과 차량행진 등으로 언론보도를 유도, 활동의 효과를 높이려 하고 있음.

● 대책

- 대교민 선도활동 강화: 대교민 홍보 및 민원 업무 개선, 반한활동 동향 파악 및 활동 둔화 대책, 교민단체 조직 정비 및 활동 강화, 교민생활 안정 지원, 반한단체 활동 봉쇄 및 회유
- 홍보활동 강화: 홍보체제 강화, 재외공관 홍보활동 강화, 주재국 정부 접촉 강화, 친한 단체 활동 강화

2. 일본지역 반한활동 대책(1980.7.31.)

● 현황

- 광주사태 후 일본 전국 각지에서 반한활동이 전개됨.
- 반한활동 주동단체: 조총련 및 한민통

● 현 교민 동태

- 민단은 광주사태 당시 일본 보도기관의 과장 허위보도로 약간 당황했으나 현재는 동요 기색 없음.
- 일반 교민 내에서는 조총련 및 한민통에 동조하는 부류는 없는 것으로 보임.
- 민단은 7.4.을 기하여 조총련, 한민통 규탄 시위를 일본 전국 각지에서 대대적으로 시행함.

- 대책: 교민 자신들의 직접적인 문제에 관심을 집중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민단 자체의 융화와 단결, 교민의 관심을 자신들에 관한 문제에 집중, 대교민 홍보 강화, 교포 2, 3세에 대한 민족 주체성 고취 등

독일 내의 반한활동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재외국민

MF번호 2010-83 / 6 / 1-67

1980년 중 독일 내의 반한활동 관련 주독일대사의 보고 내용임.

1. 광주사태를 계기로 한 재독일 교민 및 불순분자 동향 관련 보고(1980.5.29.)

- 대부분의 일반 교민들은 동 사태가 신속히 수습된데 대해 다행으로 생각하면서 각기 생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특히 호남출신 교민들은 고국 내 친족, 진지 등의 안부에 대해 염려하고 있음.
- 한편 외신보도에 따른 왜곡된 추측과 이에 편승한 불순분자 및 과격분자들의 허위선전, 선동 등으로 일부 교민들의 시위 움직임이 있음.
 - 현지 경찰당국의 통보에 의하면 본에서 5.31. 11:00~12:00 200명이 시위할 것으로 관계당국에 보고됨.
 - 프랑크푸르트지역 역시 그간 반정부 운동을 주도했던 이영빈 목사 등의 책동으로 4~5명이 5.28. 16:00부터 단식시위에 들어감.

2. 재독일 유학생 중 불순자 선동 데모 및 단식투쟁 현황 및 대책(1980.6.5.)

- 독일에 한국인 유학생 1,330명이 있으며, 1980.5.31.을 전후하여 기독교 한인들을 주동으로 전국적인 데모, 단식투쟁을 전개함.
 - 선량한 학생들을 선동하여 계속적인 집회를 갖고 있고 앞으로도 전국 각지에서 전개가 예상됨.
 - 주독일대사관은 최선을 다해 현지 지도, 홍보물 우송, 전화 개별면담, 그룹면담 등으로 설득 및 순화하고 있는데 이는 상당한 효과가 있음.
- 대책
 - 각 지역별 유학생회 협조, 간부를 통한 정보 입수와 개별 선도 순화 당부
 - 5.26.부터 당 공관에 선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12회에 걸친 대책회의 소집과 현황 분석 및 대책 협의. 문제학생 개별면담 집중 선도 및 현지 출장 그룹면담 선도 등으로 문제점 파악, 분석 등
 - 전국 유학생회 및 유력 협조 학생에게 각종 설득자료 작성 발송 및 활용 당부

재일본 조선인 민주화 촉진 연맹(조민련) 동향

생산연도 1978-1980

생 산 과 교민1 / 일본

MF번호 2010-83 / 9 / 1-37

1978~80년 중 재일본 조민련(조선인 민주화 촉진 연맹) 동향 관련 내용임.

1. 재일본 조민련

- 결성 경위
 - 1975.1.2. 조총련 내 비판세력이 주동이 되어 비밀리에 결성대회 거행
 - 1976.4.21. 공식 발족 선언
- 조직 현황
 - 주동세력: 북한을 왕래하면서 북한 실정에 실망을 느끼고 한덕수 체제에 불만을 품은 전 조총련 본부 의장을 위시한 간부급 인사, 책임자급인 상공인, 학교 교사, 학생들
 - 회원 수: 약 2천 명 추산

2. 오정태 조민련 위원장의 대통령 앞 서한(1980.1월)

- 서한 내용(요지)
 - 대통령 취임 축하
 - 조민련 구성원 및 결성동기 설명
 - 조민련 연혁 및 업적 소개
 - 금후 방침: 7·4 공동성명 정신으로 최 대통령을 정신적 지주로 삼아 조총련의 민주화, 김일성 타도에 앞장서겠음.

3. 조민련 결기대회

- 주최: 조민련(위원장: 오정태) 및 일본 국민회(회장: 야나자와 오시오 중앙대 명예교수)
- 명칭: 북한 정부 당국 부산-신의주 간 평화대행진의 실현을 요구하는 총결기대회
- 일시 및 장소: 1980.7.30. 도쿄 요요키 야마나홀
- 참석 인원: 민단 측 보고 750명(경찰추계 600명)

재일본 한국인 보안사범에 대한 특별사면조치. 전2권 (V.1 1-5월)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일본

MF번호 2010-83 / 10 / 1-150

1980.1~5월 중 재일본 한국인 보안사범에 대한 특별사면조치 관련 내용임.

1. 항의문 송부(1980.1.7.)

- 주일본대사는 “11.22. 재일본 한국인 유학생, 청년 부당 체포자를 구원하는 회”가 항의문을 우송하여 왔다고 하면서 동 항의문을 외무부로 송부함.

2. 재일동포 수감자에 대한 특사 청원서 송부(1980.4.10.)

- 주일본대사는 재일본 거류민단 중앙본부 단장이 청원서를 통해 현재 복역 중인 재일동포 수감자 5명에 대하여 특사의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청하여 왔다고 하면서 동 청원서를 외무부로 송부함.

3. 재일교포 보안사범 가족 진정

- 주일본대사는 1980.5.13. 보안사범 이철의 숙부 이정린(“재일 한국인 정치범 가족 협의회” 및 “재일 한국인 정치범을 구원하는 가족교포의 회” 소속)이 “이철을 구하는 고교 동창회” 대표 등과 함께 주일본대사관을 방문, 진정서를 전달하였음을 보고하면서 동 진정서를 외무부로 송부함.

재일본 한국인 보안사범에 대한 특별사면조치. 전2권 (V.2 6-9월)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일본

MF번호 2010-83 / 11 / 1-133

1980.6~9월 중 재일본 한국인 보안사범에 대한 특별사면조치 관련 내용임.

1. 외무부의 보안사범 면회 관련 입장(1980.7.11.)

- 외무부는 재일교포 보안사범 김승효, 강종건 및 김철현에 대한 기무라 교수 등의 면회신청을 관계기관에 조회한 결과, 그 목적이 인도적인 것으로서 반한활동 등에 악용될 소지가 없다면 이를 허가하여도 무방하다는 의견임.
- 동인들에게 면회 허용 방침을 알리는 한편, 금번 면회가 인도적 견지에서 허용되는 것임을 충분히 주지시켜 귀일 후 반한활동 등에 악용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임을 다짐하기 바람.

2. 재일동포 수감자에 대한 청원(1980.7.28.)

- 주일본대사는 재일 거류민단 중앙본부가 청원서를 통해 재일동포 학생 7명에 대한 특사조치를 재차 건의하였다고 보고하면서 동 청원서를 외무부로 송부함.

3. 보안사범 이동석, 가석방

- 이동석은 1980.8.15. 특사로 가석방조치됨.
 - 형기: 5년
 - 형 종료일: 1981.1.5.
 - 가석방 기간: 1980.8.15.~81.1.5.(4개월 21일)
 - 거주지: 경북 상주군 소재 숙부 이수원의 집
 - 참고: 가석방 기간 중 동인은 가석방 단속규정 제14조(국외전주 등)에 의거, 감호 경찰서장, 석방교도소장(대전교도소)을 거쳐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을 경우 해외 전주할 수 있음.

재일본 한국인 서승·서준식 형제 간첩사건

생산연도 1978-1980

생 산 과 일본

MF번호 2010-83 / 12 / 1-241

1978~80년 중 재일본 한국인 서승, 서준식 형제 사법조치 및 동 형제 석방에 대한 진정 관련 내용임.

1. 서준식 석방에 대한 진정

- 1980.2.8. 오키다 일본 외상은 서준식의 조속한 일본 재입국을 바라는 도이 다카코 의원(사회당)의 진정 내용을 알리면서, 한국 측의 배려를 희망함.
- 2월 시오노야 의원(자민당) 외 10명의 의원은 대통령 앞으로 1980.5.27.부로 보안감호 처분이 완료되는 서준식의 석방을 진정함.
- 서준식 사법조치 관련사항
 - 체포일: 1971.3.7.
 - 형 확정일: 1972.5.23.
 - 형량: 징역 7년
 - 형량 완료일: 1978.5.27.
 - 사회안전법에 의한 보호감호 처분으로 2년간 재수감
 - 재수감 완료일: 1980.5.27
- 서준식의 형 서승 사법조치 관련사항
 - 체포일: 1971.3.7.
 - 형 확정일: 1973.3.13.
 - 형량: 무기징역

2. 서승 형제 관련 일본 국회의원 요망서

- 1980.2.19. 이케다 주한 일본대사관 1등서기관은 외무부를 방문, 권병현 일본담당관을 면담하면서 서승 형제 관련 일본 국회의원 요망서를 전달함.
- 동 면담 시 한국 측은 서승 형제는 어디까지나 한국의 법 절차에 따라 처리된 국내문제이며, 따라서 본 건에 대하여 일본 측이 요망할 것이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함.

3. 보안사범 서준식에 대한 보안감호처분기간 갱신

- 갱신기간: 1980.5.28.~82.5.27.(단, 본인이 용공활동을 삼가는 등 사회안전법 소정의 특정범죄를 재범할 위험성이 현저하게 감소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언제라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석방 가능)
- 갱신 결정 절차
 - 보안감호처분기간 심의위원회에서 기간을 갱신하기로 의결한바, 동 의결을 법무부장관이 재가함.

재일본 한국인 유학생 학원 침투 간첩단사건

생산연도 1975-1980

생 산 과 일본 / 교민1

MF번호 2010-83 / 13 / 1-272

1975~80년 중 재일본 한국인 유학생 학원 침투 간첩단 사건 관련 내용임.

1. 학원 간첩단 사건에 관한 일본 외무성의 비망록 전달

- 1975.12.26. 일본 외무성 아주국장은 윤하정 주일본대사관 공사를 초치, 아래 요지의 비망록을 전달함.
 - 중앙정보부 발표문 중 아래 내용에 관해 한국 정부의 설명을 요구함.
 - 재일본 한국인에 관한 피의사실로서 일본 국내에 있어서의 행위가 여러 곳에 언급되어 있음. 동 발표문에 첨부된 질의응답 자료에서는 간첩의 자수에 관하여 “대한민국 외에서는 가장 가까운 대한민국 공관에 자수하도록 권고한다”고 되어있음. (일본 측은 공관이 자수를 받는 행위는 수사행위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음) 동 발표문 중 김삼량이라는 인물의 인적사항에는 불명확한 점이 있음.
 - 아래 내용에 관해 한국 정부에 주의를 환기함.
 - 일본 국내에서 일본 정부의 동의 없이 외국 국가기관의 공권력 행사가 있을 수 없음. 대사관 및 영사관원은 국제법상 인정된 것 외의 기관으로서의 행위는 용인되지 아니함.

2. 일본 외무성의 비망록에 대한 회신 전달 및 구두 보충설명

- 1976.1.13. 윤하정 주일본대사관 공사는 나카에 아주국장에게 아래 요지 비망록 전달 및 구두설명
 - 본건 발표문에 언급된 일본 국내에서의 행위에 관하여는 과거 수차례에 걸쳐 한국 내에서 검거된 간첩들의 진술에 의하여 일본 내에 북한 간첩활동의 거점이 있다는 단서를 포착하고, 혐의자의 한국 출입국 상황, 한국 내에서의 동향 및 접촉자 등에 관한 사항 등 본 사건과 관련된 모든 수사과 증거 수집은 한국 내에서 행하여진 것임.
 - 대한민국 재외공관에는 형사 사법권이 없으므로 “대한민국 공관에 자수”를 운운한 것은 공관에 대한 대한민국 법률상의 자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본국 정부 관계당국에 자수할 것을 희망하는 자는 이에 관하여 공관과 상의하라는 취지로서, 이는 국제법상 재외공관이 가지는 자국민 보호기능의 일부라고 봄.

3. A.I.(국제사면위원회)는 유엔사무총장 앞으로 간첩사형수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인도적 조치를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한바, 주유엔대사는 버펄 유엔사무국 사무차장과 1976.7.30. 면담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 및 지침 등을 7.28. 외무부로 요청함. 이에 외무부는 7.29. 설명자료와 함께 아래와 같이 지침을 전달함.

- 극히 비공식적으로 버펄 사무차장과 접촉하되, 버펄 사무차장이 한국 측 설명을 참작하여 A.I.가 더 이상 이 문제에 관하여 한국 재판에 부당한 간섭을 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줄 것을 교섭할 것



4. 외무부, 1979.7.13. 백옥광 면회 관련 주일본대사관에 아래와 같이 지시함.

- 백옥광 면회 관련 모친 사망사실을 알리는 목적의 면회는 허가하기로 함. 다만, 야마다 교수가 면회 후 반한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일본 외무성의 확약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한민통 인사의 일본 재입국 문제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일본

MF번호 2010-83 / 14 / 1-281

1980년 중 한민통 인사의 일본 재입국 문제 관련 내용임.

1. 일본 정부, 1980.3월 한민통 인사의 UNITAR(유엔훈련기구) 학술회의 참석을 위한 일본 재입국 신청 허가

- 1979.7월 한민통 정경모, UNITAR 국제학술회의(1979.10월, 뉴델리) 참석차 재입국 허가 신청
- 동인은 한국여권을 신청할 의사가 없다고 밝히고 일본 법무성 발행 도항증명서 발급을 요청
- 일본 측은 한국이 여권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정치 난민으로 취급, 도항증 발급이 불가피함을 설명
- UNITAR 회의, 1980.3.11.~17.로 연기
- 1980.2.21. 주일본 인도대사관, 정경모에게 Affidavit 발급
- 1980.3.5. 일본 정부, 상기 Affidavit을 근거로 재입국 허가(정경모는 UNITAR 회의에 불참)

2. 일본 법무성 자격심사과장, 1980.6.10. 한민통 간부의 S.I. 회의(오슬로) 참가를 위한 일본 재입국 신청에 대한 허가 관련 아래와 같이 설명

- 6.4. 한민통 3인은 S.I. 회의 옵서버 참석 목적으로 재입국 신청, 법무성은 6.7. 이를 허가함.
- 상기 3인은 회의 주최 측의 초청장을 주일본 노르웨이대사관에 제시하고 노르웨이 방문을 요청, 동 대사관은 본국 허가를 얻어 여행증명서를 발급
- 동인들은 출입국관리령 제2조 5항에 따른 여행증명서 및 회의참가 초청장을 지참, 법률상 모든 요건을 구비, 외무성 측도 반대가 없어 재입국을 불허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음.

3. 일본 정부, 1980.9~10월 한민통 간부의 유엔총회 참가를 위한 일본 재입국 신청에 대한 불허

- 한민통이 소위 김대중 구출활동의 일환으로 5명의 대표단을 유엔에 파견하려던 계획은 일본 정부의 재입국 불허 방침으로 좌절되었으며, 그 대신 이토 나리히코 중앙대 교수와 사사키 히데노리 변호사 2명을 한민통 대표로 1980.11.2. 유엔에 파견함.

4. 일본 정부, 한민통 간부의 노르웨이 방문 및 S.I. 총회(마드리드) 참가를 위한 일본 재입국 신청 불허

- 1980.10.31. 한민통 간부 배동호, 정제준, 조활준은 노르웨이(노동당 초청으로 친선관계 증진), 서독, 프랑스(지인 방문), 스페인(S.I. 회의 방청) 여행(1980.11.7.~20.)을 위해 일본 재입국을 신청함.
- 11.5. 외무부장관, 주한 일본대사 면담 시 재입국 불허 강력 요청
- 11.7. 일본 법무성, 한민통에게 재입국 불허 방침 통고

조총련 동포 북한 방문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일본

MF번호 2010-84 / 1 / 1-202

1980년 중 조총련 동포의 북한 방문 관련 내용임.

1. 만경봉호가 1980.3.7. 아오모리항에 입항하여 방북자 27명을 승선한 후 3.8. 아오모리항을 출항하여 청진항으로 향발함.
2. 만경봉호가 1980.3.30. 니가타에 입항(일본인 북한 방문자 1명 하선), 4.1. 조총련 북한 단기 방문자 147명(한국 국적 소지자 8명 포함), 일본인 방문자 13명을 싣고 출항함.
3. 삼지연호가 1980.4.16. 니가타 입항(조총련 북한 단기 방문자 220명 하선), 4.17. 단기 방문자 129명을 싣고 출항함.
4. 삼지연호가 1980.5.2. 조총련 북한 방문자 172명을 싣고 니가타에 입항하였으며, 5.3. 북한 방문자 205명(한국 국적 소지자 3명 포함)을 싣고 출항함.
5. 삼지연호가 1980.5.19. 니가타 입항(조총련 북한 방문자 약350명 하선), 5.20. 조총련 북한 단기 방문단 294명(한국 국적 소지자 13명 포함)을 싣고 출항함.
6. 주센다이영사는 1980.5.4. 아오모리항에 입항하여 5.5. 북한 청진으로 향한 북한선박 만경봉호의 선원, 승객 명부 및 승객휴대품 목록을 송부함.
7. 주니가타총영사는 1979.1.1.~80.6.30. 조총련 복송 및 방문자 현황을 송부함.
 - 상기 현황에 한국 국적 소지자의 북한 방문 상황이 포함됨.

조총련 동향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일본 / 교민1

MF번호 2010-84 / 2 / 1-278

1980년 중 조총련 동향 관련 내용임.

1. 조총련 동향 분석 및 대책(1980.3.7.)

- 1980년 초 동향 및 1980년대 활동방침
 - 1월 중 각 지부별 열성자 대회, 학습회 개최
 - 2.2. 조총련 중앙상임위, 민단에 제의서 송부: 총련, 민단 공동명의로 남북대화 지지 성명 발표, 3·1 운동 61주년 기념식 공동개최 등
- 1980년대 활동 방침
 - 김일성 주체사상 확립
 - 조국통일사업 추진: 남한 민주화, 통일 조속화 투쟁 증진 등
- 분석 및 평가
 - 1980년대 특히 1980년을 조국통일을 위한 적기 또는 호기로 판단
 - 자체 내부조직 강화
 - 종래의 대민단 조직 침투활동 및 북한의 대남한 적화사업 전진기지로서의 역할 수행
 - 대일본 접촉을 적극 추진 등
- 대책
 - 일본·북한 관계 증진 적극 저지
 - 일본·북한 무역확대 억제
 - 한·일본 우호관계 심화 등

2. 조총련 간부 재입국 문제

- 1980.9.21. 박종기 주일본대사관 총영사가 이토 법무성 심의관을 접촉, 아래와 같이 타진함.
 - 최근 조총련은 한덕수의 신병(목 및 정강이) 치료 목적으로 북한 방문을 위한 재입국 허가 여부를 법무성에 타진하여 왔는바, 외무성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불허하고 조총련 측에 통보함.
 - 조총련 측은 이에 대해 신병치료 목적의 재입국은 인도적인 견지에서 허가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법무성으로서는 신병을 일본에서 치료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는 점을 지적함.

조총련의 반한영화 상영

생산연도 1978-1980

생 산 과 일본

MF번호 2010-84 / 3 / 1-68

1978~80년 중 조총련의 반한영화 상영 관련 내용임.

1. 북한선전영화 상영

- 주일본대사는 조총련이 도쿄 시부야역 근처 도쿄 문화홀을 임차하여 북한선전영화를 장기적으로 상영할 계획이며, 조총련 기관지 조선시보 1978.1.25.자 보도에서 2월 중 상영일정을 발표하였다고 보고함.
- 2.3.~4. 피의 바다 제1부(극영화), 살기 좋은 나라 조선(기록영화)
- 2.7.~9. 새로운 조선 제1부(극), 젊은 세대를 위하여(기록) 등

970

2. 외무부, 1978.5.26. 상기 관련 주일본대사관에 아래와 같이 지시

- 북한 및 조총련이 일본 각지에서 영화관을 임차하여 반한영화를 상영하고 있는바, 이들 영화의 대부분이 반한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사실 왜곡, 국가원수 모독 등의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어 심히 유감임.
- 특히 “항쟁의 땅 남조선”이라는 영화는 6·25 북한 남침과 4·19 및 5·16 혁명을 왜곡 선전하면서, 한국 국가원수를 ‘만고의 역적’ 등으로 모독하고 폭력과 무력을 찬양하고 있어 일본 영화윤리규정의 심사기준에 따라 당연히 제재가 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방치, 상영된 바 있음.
- 이러한 영화가 선린 우호국인 일본에서 계속 상영된다는 것은 한국 정부로서 용납할 수 없으며, 한국의 국민감정을 격화시켜, 한·일본 우호관계가 크게 저해될 것이 우려되니, 상술한 문제점을 들어 일본 측의 강력한 규제(상영중지)를 요청하고 결과보고 바람.

브라질 십자새마을농장 건설 추진 현황 보고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교민2

MF번호 2010-84 / 4 / 1-149

1980년 중 정부의 브라질 십자새마을농장 건설 추진 현황 및 관련 내용임.

1. 경위

- 1977.11월 정부는 브라질 한국인 불법체류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브라질 수도 브라질리아 동북방 80km 지점에 십자새마을농장 건립을 추진하고 1978.5.24. 동 농장용 토지를 매입함.
- 1980.10월 현재 브라질 거주 한국인
 - 합법이주자: 10,115명
 - 실제거주자: 13,500명
 - 불법체류자: 3,600명

2. 십자새마을농장 현황

- 농장규모: 2,895헥타르(ha), 50세대 입주 목표
- 정부의 농장건설 지원 현황(1980.8.18. 현재)
 - 지원액 누계: 3,659,275달러
 - 지출액: 1,864,194달러
 - 잔액 1,795,081달러
- 1980.5월 현재 100ha를 개간하여 벼 3,500포 미곡을 수확함.

3. 십자새마을농장 건설 문제점

- 1980.11월 정부는 브라질 정부가 상기 농장 건설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사업 중지를 희망하며 한국인 불법체류자 문제와 별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1980.8.18. 농장 건설의 자금 집행을 중지하고 농지건설문제 해결을 위해 브라질 정부와 협정 체결을 추진하기로 함.

4. 참고자료

- 십자새마을농장 건설 집행 현황 보고서(1980.1.24., 주브라질대사관)
 - 농장 확보, 농장세부 측량, 농장 입주자 선정, 농지개간, 파종, 농기구 확보 등
- 십자새마을농장 사업 현황보고서(7.8., 주브라질대사관)
 - 자금집행 현황 내역, 금후 자금 집행계획
- 브라질 불법체류자 문제 및 농장 건설 현황(11.13., 외무부 영사교민국)

남미지역 농업이민

생산연도 1977-1980

생 산 과 재외국민

MF번호 2010-84 / 5 / 1-312

1977~80년 중 정부의 남미지역 농업이민 추진 현황 및 관련 내용임.

1. 정부는 1962년 이민법 제정 후 국민의 해외진출 기반조성 및 해외 농지확보를 위해 남미에 소규모 단위의 농업이민을 추진하였으며 1980.12월 현재 약 3만 명의 한국인이 남미로 이주함.

- 대상지역: 남미 4개국(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칠레)

2. 1977.5.4. 정부는 파라과이 한국인 이주자의 상당수가 인접국으로 밀입국하여 불법체류(브라질 약 5천 명) 등 외교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대남미지역에 대한 이주 허가를 중지하고 한국인의 이탈 및 불법체류 문제의 해결을 위해 남미지역에 농장(한국해외개발공사 주관) 건설을 추진함.

- 1978.5.25. 대통령의 재가로 아르헨티나 농장매입(약 3,450만 평)을 결정하고 향후 5개년간 매년 약 20억 원의 예산을 남미농업 이주사업에 계상하기로 함.
 - 5월 정부의 브라질 십자새마을농장용 토지 구입(약 869만 평, 58만 달러)
 - 8월 정부의 아르헨티나 앳타마우카농장 구입(208만 6천 달러)

3. 남미농장 현황(1980.12.23. 현재)

- 규모: 3,997ha
 - 브라질 농장(1,550ha), 아르헨티나 농장(947ha), 파라과이 농장(1,500ha)
- 정부의 총 투자액: 약 40만 달러

4. 남미지역 농업이민의 문제점

- 충분한 타당성 조사도 없이 농지를 매입하였으며 농업 수익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결여

5. 참고자료

- 남미 농업이민사업 기본계획(안)(1980.1월)
 - 현황, 농업이민의 문제점과 대책, 사업계획, 실시계획 등
- 남미 농업이민사업 기본계획에 대한 수정(안)(10월)
 - 수정 이유, 주요수정 내용, 기본계획과 수정계획 대비
 - 실시계획(농지확보, 농장 개척, 영농방법, 이주자 선발 및 교육, 자금 운용 및 사후 관리)

브라질 불법체류자 구제 및 십자새마을농장 건설문제. 전3권 (V.1 1-7월)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교민2 / 남미

MF번호 2010-84 / 7 / 1-278

1980.1~7월 중 브라질 불법체류자 구제 및 십자새마을농장 건설을 위한 한·브라질 간 교섭 내용임.

1. 경위

- 정부는 브라질 거주 한국인 불법체류자(1979년 말 현재 5,550명)의 합법화 방안으로 1977~79년 366만 달러를 지원하여 브라질 수도 인근의 2,890헥타르(ha) 토지를 매입, 십자새마을농장을 건립하고 1차로 불법체류자 25세대를 입주시켜 입주 세대의 신분 합법화를 위해 브라질 정부와 교섭을 추진함.

2. 한국인 불법체류자 추방 비용 문제

- 1980.2.28. 브라질 영사법규 국장은 한국인 불법입국자 문제 해결을 위해 브라질 정부가 추방하는 불법체류자의 비용을 한국 정부가 부담해줄 것을 요청
- 3.3. 주브라질대사는 기존 불법입국자의 신분 합법화 전제 하에 금후 발생하는 불법체류자의 추방 비용을 한국 정부가 부담한다는 요지의 교환각서를 브라질 정부에 제출함.
- 5.25 외무부는 불법체류자의 추방 비용을 한국 정부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불법체류자의 신분합법화 및 십자새마을농장 건설 승인을 요청하는 교환각서를 주브라질대사관에 송부하고 5.27. 주한 브라질대사를 초청하여 협조를 요청함.
- 6.24. 주한 브라질대사는 김동휘 외무부차관 면담 시 브라질 정부는 한국의 각서안을 수락 하다고 언급함.

3. 브라질 정부의 신이민법 제정 추진

- 1980.5.23. 브라질 행정부는 종전의 산발적인 외국인 출입국 관계 규정을 통합한 종합적인 신이민법을 의회에 제출함(1980.8.5. 발효 예정).
- 신이민법은 외국과 양자협정 체결을 통한 불법체류자 구제기능을 행정부에 부여하고 신분 합법화 대상 자격을 1978.12.31. 이전 브라질 입국한 자로 제한하며, 송출국이 불법체류자 추방에 따른 운임 부담 등을 규정

브라질 불법체류자 구제 및 십자새마을농장 건설문제. 전3권 (V.2 8-12월)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교민2 / 남미

MF번호 2010-84 / 8 / 1-293

1980.8~12월 중 정부의 브라질 불법체류자 구제 및 십자새마을농장 건설 추진 현황임.

1. 정부의 십자새마을농장 건설 보류 및 양자협정 체결 추진

- 1980.8.18. 정부는 브라질 정부가 십자새마을농장 건설과 불법체류자 구제 문제의 분리를 주장하고 동 농장을 불법으로 간주하며 사업 중지를 바라고 있음을 감안하여 동 농장 건설자금의 집행을 보류함.
 - 십자새마을농장 지원액 누계(1980.8.18. 현재): 3,659,275달러
- 11.13. 정부는 8.19. 브라질 정부의 신이민법 제정을 계기로 한국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교포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한·브라질 간 양자협정 체결을 통한 불법체류자의 해결 방안을 추진함.
 - 9.17.~30. 주브라질대사관은 3차례 걸쳐 브라질 법무부 국장 및 외무부 과장을 면담하고 양자협정 체결 문제 등 한국인 불법체류자 구제 문제에 대해 협의

2. 민병학 외무부 사무관의 브라질 출장(1980.12.11.~14.)

- 출장 목적: 십자새마을농장 건설 현황 및 불법체류자 구제 현황 파악
- 상기 불법 농장 사업에 대한 브라질 정부의 반대 입장, 주브라질대사관의 농장 운영 미숙 등을 이유로 십자새마을농장 자산을 국내법과 브라질법에 합치되는 현지 업체(협동조합 또는 지주회사 형식)를 구성하여 전면 이관시켜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건의함.

브라질 불법체류자 구제 및 십자새마을농장 건설문제. 전3권 (V.3 한·브라질 간 쌍무협정안)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교민2 / 남미

MF번호 2010-84 / 9 / 1-152

정부는 브라질 불법체류 한국인 구제를 위해 1980.10.15. 한·브라질 간 양자협정(안)(국문 및 영문)을 작성함.

- 한국인 불법체류자의 신분 합법화
 - 브라질 정부는 1978.12.31. 이전 브라질 한국인 입국자에 대해 브라질 법령에 따라 영주허가를 부여
- 증빙서 발급 및 효력인정
 - 한국 정부는 영주허가 대상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발급하고 브라질 측은 그 효력을 인정
- 거주지 및 생업의 자유 부여
 - 영주권 취득자의 현 거주지 및 생업을 인정
 - 영주권 취득자는 내국인에 적용되는 브라질 관계법령의 적용을 받음.
- 한국의 재정, 기술협력 공여
 - 한국은 이주자의 조기 생활정착을 위한 재정 및 기술협력을 제공함.
- 추방비 부담
 - 한국은 협정체결 이후 발생하는 불법입국자의 추방비를 부담
- 발효 및 유효 기간
 - 비준서 교환일로부터 30일 이후 발효, 협정 유효기간은 3년

일본어선의 한국영해 및 어업전관수역 침범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일본

MF번호 2010-84 / 10 / 1-95

1980년 중 일본어선의 한국영해 및 어업전관수역 침범에 대한 정부의 대응임.

1. 1980.2.20. 수산청 어업지도선이 한국 어업전관수역(부산 서남방 해상)을 침범하여 조업하는 일본어선 3척을 검거함.
2. 1980.3.4. 일본어선 2척이 북제주군 죽도 서남 10마일 해상 영해를 침범하자 한국 해경 경비정이 검거하여 제주항에 예인함. 정부는 3.5. 일본인 어로장 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각각 벌금 15만원을 예납하게 한 후 전원 출항시킴.
 - 주부산 일본영사관은 벌금 30만원을 대납함.
3. 1980.11.28. 주한 일본대사관은 9.7. 일본어선 '구라에이마루'가 황해 수역에서 조업 후 어구를 정리하고 남해로 무해 통과하는 도중에 한국 측으로부터 임검을 당했다고 하면서 무해통항에 대한 한국 입장을 알려줄 것을 외무부에 요청함.
 - 1981.1.6. 외무부는 정부가 '구라에이마루'의 무해통항을 부당하게 방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화신함.

필리핀 회교 반도에 의한 한일개발 신� 필호 피납사건

생산연도 1979-1980

생 산 과 교민2

MF번호 2010-84 / 11 / 1-84

1979~80년 중 필리핀에서 납치된 신� 필호 한일개발 과장의 석방 관련 내용임.

1. 1979.10.30. 주필리핀대사관은 10.29. 신� 필호 한일개발 장비과장이 필리핀 민다나오섬에 위치한 아우구스 전력 댐 공사(공사액 3,700만 달러) 장비 점검 차 자동차로 가던 도중 필리핀 회교 무장반도 5명에 의해 피납되었다고 외무부에 보고함.
2. 1979.10.31. 정부는 주필리핀대사에게 필리핀 정부 측에 피납인의 안전구출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고 공관장 판단 하에 모든 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시함.
 - 10.31. 주필리핀대사는 공한을 통해 필리핀 외무부에 신� 필호의 구조를 요청하고 에스피노 필리핀 참모총장 및 라모스 경찰군 총사령관에게 안전구조 협조를 요청한바, 동인들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함.
3. 1979.11.9. 필리핀 정부와 군 당국의 협조, 한일개발의 중계인을 통한 비밀협상 결과, 신� 필호 과장은 석방됨.

소련의 한국어선(제3삼광호) 납치사건

생산연도 1979

생 산 과 일본

MF번호 2010-84 / 12 / 1-150

1979년 중 소련이 납치한 한국어선 석방을 위한 정부의 교섭 내용임.

1. 경위

- 1979.7.28. 소련 경비정은 한국 오징어잡이어선(제3삼광호, 79.51톤, 선원 34명)이 울릉도 동북방 약 230마일, 소련령 나훗카 남방 약 80마일 떨어진 200해리 어업 수역 내 10마일 지점에서 무허가 오징어조업을 이유로 나포함.
- 정부는 제3삼광호가 7.18. 울릉도에서 출항하여 동해에서 조업 중 무전기 고장으로 7.26.부터 통신이 두절되고 기관 고장으로 표류하게 된 것으로 추정

2. 정부는 소련과 국교가 없음을 감안하여 사건 해결을 위해 일본 외무성을 통하여 선원들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기송환에 노력함.

- 1979.7.31. 주일본대사관은 일본 정부로부터 한국어선의 피납 사건을 통보받았다고 외무부에 보고한 바, 외무부는 일본 정부가 한국어선의 조기석방을 위해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하도록 지시함.

3. 1979.8.10. 나훗카 인민재판소는 한국어선에 대해 소련 어업수역 내에서 불법조업의 이유로 유죄 판결함.

- 손해 배상, 벌금 등 약 127,500달러, 오징어 5톤 몰수

4. 정부는 한국수협이 선주에 융자하는 형식으로 상기 127,500달러를 8.25. 및 8.31. 주일본대사관을 경유, 소련 측에 송금조치함.

5. 1979.9.4. 제3삼광호의 선원 전원 및 선박이 석방됨.

남미 거주 한국인 불법체류 문제

생산연도 1980

생 산 과 교민2

MF번호 2010-84 / 13 / 1-23

1980년 중 남미 거주 한국인 불법체류 문제에 대한 외무부의 조치 내용임.

1. 1980.6.10. 외무부는 남미 거주 한국인 불법체류 증가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체류자에 대한 영사행위는 '여권상 목적지 관할공관에서만 허용되며 거주지 관할공관 소관 사항이 아니다'라는 요지의 영사확인 지침을 재외공관에 지시함.
2. 1980.7.4. 주상파울루총영사관은 파라과이 등에서 이민 목적으로 입국한 교포들이 최근 브라질에 5천 명이 불법입국하여 재외국민 보호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영사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외무부에 건의함.
 - 7.10. 외무부는 상파울루 거주 불법체류자 중 공관에 등록된 자에 한하여 초청장 확인업무를 제외한 기타 영사확인 행위를 허가한다고 통보함.
3. 1980.7.10. 정부는 브라질 등 남미지역에 한국인 불법체류의 증가 방지를 위해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볼리비아에 대한 여권상의 목적지 또는 경유지 추가를 엄격히 통제하도록 재외공관에 지시함.

마약 밀수 범죄 관련 한·미국 간 협력

생산연도 1979-1980

생 산 과 복미

MF번호 2010-84 / 14 / 1-93

1979~80년 중 마약밀수 범죄에 대한 한·미국 간 협력 현황임.

1. 1979.11.23. 주한 미국대사관은 외무부 앞 공한을 통해 밀수혐의로 미국에 체포되어 있는 마약밀수범 3명의 재판에 한국 거주 장규섭이 출두하여 미국 검찰 측 증인으로 증언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함.
 - 12.10. 주한 미국대사관은 장규섭의 도미 증언이 불가능할 경우 미국 검사가 내한하여 주한 미국대사관 영사의 협조 하에 장규섭의 증언 청취를 희망함.
2. 1979.12.27. 정부는 장규섭의 도미 증언을 허용할 수가 없으며, 마약 범죄의 국제적 단속을 위한 협력 정신 및 한·미국 영사협약 규정에 따라 미국 영사가 한국 관련 당국의 참여 조건하에 장규섭으로부터의 증언을 청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마련함.
3. 1980.1.25. 외무부는 주한 미국대사관 앞 공한을 통해 장규섭의 소재지 확인이 어렵다고 통보한바, 1.31. 주한 미국대사관은 미국 검찰청이 장규섭의 증언을 추진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회신함.
4. 1980.3.7. 주한 미국대사관 측은 외무부 앞 공한을 통해 미국 내 마약밀수 혐의로 재판에 계류 중인 미국인 피고인에 대한 보충 증거자료 수집을 위해 1978년 동인의 방한 시 출입국 기록을 요청한바, 정부는 한·미국 간 협력증진 차원에서 1980.4.11. 출입국 자료를 회신함.

한국군용기의 일본 이·착륙 건에 대한 일본의 항의

생산연도 1975

생 산 과 동북아1

MF번호 2010-87 / 10 / 1-9

1975년 중 한국군용기의 일본 이·착륙 건에 대한 일본의 항의에 관한 내용임.

1. 일본 측 항의

- 1975.10.20. 일본 외무성 북동아과장, 김옥민 주일본대사관 1등서기관에게 아래와 같이 알려줌.
 - 한국군용기 S2F기가 일본 정부의 허가 없이 1971.11.9. U.S. Naval Air Facility Atsugi에 착륙, 1972.5.6. 이륙한 사실이 있음.
 - 일본 정부의 허가 없이 한국군용기가 일본에 착륙한 사실에 대해 정식 항의하고자 하므로 명일 외무성으로 와 줄 것을 요청함.

2. 외무부, 주일본대사에게 경위 회신

- S2F-244호기의 일본 내 정비를 전적으로 주선하였던 미국 당국이 본건 착륙을 일본 측에 미처 통보 또는 허가 신청하지 않았고 한국 공군 측은 미군 측이 착륙 수속을 완료한 것으로 생각하고 착륙함.
- 이 때문에 당시에도 일본 측에 의해 문제화되었으나, 한국항공기에 의한 최초의 케이스이며, 본의 아닌 사무 착오임을 감안하여 공군 무관이 일본 측 외무성 담당자에게 구두로 유감을 뜻을 표하고 마무리 지었던 바 있음.

주한미군이 사용 중인 조선호텔 반환 교섭

생산연도 1960

생 산 과 구미 / 조약

MF번호 2010-88 / 11 / 1-17

1960년 중 주한미군이 사용한 조선호텔의 반환교섭 관련 내용임.

1. 조선호텔 현황

- 소유권: 국유
- 관리자: 6·25 이전 교통부, 6·25 이후 미8군 사령부
- 현사용자: 미8군(고급장교 숙소), 주한 미국대사관(귀빈숙소, Health Unit), 미국 정부관리 숙소

982

2. 조선호텔 반환교섭을 위한 외무부·주한 미국대사관 간 회의 개최(1960.9.14., 외무부)

- 외무부 입장
 - 공식 합의 없이 미군 측이 장기간 징발 사용하여 온 동 호텔을 한국 정부 자체의 사용을 위해 반환 요청함.
 - 국무회의 지시사항에 의거, 사용자에 대한 대책 강구 후 호텔 회수
- 주한 미국대사관 입장
- 마이어협정 제3조 13항에 의거, 미군의 동 호텔 사용권을 허용하여 왔음.
- 미군 입장과 사정을 확인한 후 외무부에 조선호텔 반환과 관련한 내용을 통보함.



부 록

| 1980년 |

- 1.2. 1977년도 국제사탕협정(ISO) 한국에 대하여 발효(조약 제700호)
- 1.6.-8. 미국 하원 외무위원회 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 의원단 방한
- 단장: Wolff, L. 위원장
- 1.6.-18. 양윤세 동력자원부장관 중동 및 인도네시아 순방
- 쿠웨이트(1.6.-9.), 오만(1.9.-11.), 사우디아라비아(1.11.-14.), 인도네시아(1.15.-18.)
- 1.9. 한·덴마크 간의 해운협정 서명, 발효(조약 제696호)
- 1.12.-15. 미국 상원 합동경제위원회 의원단 방한
- 단장: Bentsen, Lloyd N. 의원
- 1.14. 우주물체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국제책임에 관한 협약, 한국에 대하여 발효(조약 제702호)
- 1.14.-16. Holbrooke, Richard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 및 태평양담당 차관보 방한
- 1.15.-18. 제3차 국제농업개발자금(IFAD) 총회(Rome)
- 수석대표: 안광호 주이탈리아대사
- 1.18. 한·일본 간의 교육시설 확충, 국립의료 및 보건연구기관 장비 현대화 및 도시 하수처리시설 사업을 위한 차관에 관한 각서교환, 발효(조약 제698호)
- 1.18. 한·유엔인구기금(UNFPA) 간의 인구계획에 관한 제2차 협정 서명, 발효(조약 제699호)
- 1.19. 기니 정부, 주한 경제대표부 개설 통고
- 1978.1.6. 한·기니 외교관계 수립
- 1980.2.8. 외교관계 정지
- 1.21. 한·국제원자력기구(IAEA) 간의 기술원조 제공에 관한 보충협정 개정 발효(조약 제703호)
- 1.27.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한국에 대하여 발효(조약 제697호)
- 1.29.-2.5. 한·미국 섬유회담(Washington D.C.)
- 2.1. 한·구주공동체(EC) 간의 섬유류 교역에 관한 협정 서명, 발효(외무부고시 제49호)
- 2.4. 한·미국 비고무화류 회담(Washington D.C.)
- 2.4. 한·미국 컬러 TV 회담(서울)

- 2.6. 남북 총리회담 제1차 실무대표 접촉(판문점)
- 2.6.-9. Gregg, Donald P.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위원 방한
- 2.7. 남북 총리회담을 위한 남북 실무대표단 전용 직통전화(2회선) 개통
- 2.7.-8. 한·미국 해운회담(Washington D.C.)
- 2.8. 주한 페루대사관 개설
- 2.10.-18. 최종완 건설부장관 중동 순방
- 바레인(2.10.), 쿠웨이트(2.10.-12.), 사우디아라비아(2.12.-18.)
- 2.13.-14. Hinton, D.R. 미국 국무부 경제담당 부차관보 방한
- 2.13.-26. 이한빈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 미국 방문
- 2.15. 국제민간항공협약(ICA0)의 개정, 한국에 대하여 발효(조약 제1397호)
- 2.18. 한·독일 간의 재정협력에 관한 협정 서명, 발효(조약 제704호)
- 2.22. 한·나이지리아 외교관계 수립
- 2.22.-24. 김동휘 외무부차관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 2.22.-3.7. 유양수 교통부장관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 2.23. 한·핀란드 간의 경제·공업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발효(조약 제701호)
- 2.27. 아프리카개발기금(ADF) 설립협정, 한국에 대하여 발효(조약 제706호)
- 2.27.-29. 제1차 한·호주 자원협력위원회(Canberra)
- 수석대표: 유각중 동력자원부차관 / Scully, J. 무역자원성 차관
- 2.28.-29. 한·노르웨이 섬유쿼터회담(Oslo)
- 2.28.-3.18. 양윤세 동력자원부장관 중동(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쿠웨이트) 방문
- 3.1.-4.20. 한·미국 합동군사훈련 '80 틴스피리트 실시
- 3.3.-4.4.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제9회기(New York)
- 수석대표: 문덕주 외무부 본부대사
- 3.5.-13. 제15차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아시아태평양지역 총회(New Delhi)
- 수석대표: 김주호 농수산부 기획관리실장
- 3.17. 제12차 한·일본 민간합동경제위원회(도쿄)

- 3.18.-29. 제36차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 총회(Bangkok)
- 수석대표: 김인권 주태국대사
- 3.24. 주나이지리아대사관 개설
- 3.24.-27. 제4차 한·영국 경제협력 실무자회의(London)
- 수석대표: 황진형 경제기획원 경제협력국장 / Panton, E. 수출신용보증처 차장
- 3.27.-31. 제1차 한·싱가포르 통상각료회담(Singapore)
- 수석대표: 정재석 상공부장관 / Goh Chok Tong 무역공업상 겸 보건상
- 3.27.-4.1. 박동진 외무부장관 인도, 스리랑카 방문
- 3.30.-4.2. 미국 하원 외무위원회 국제경제소위원회 의원단 방한
- 단장: Bingham, Jonathan B. 위원장
- 3.31.-4.5. 제5차 국제통신위성기구(INTELSAT) 가입국 총회 및 제9차 서명자 회의(Orlando, 미국)
- 수석대표: 장기익 체신부 전무국장
- 3.31.-4.7. Lin Tong 대만(구 자유중국) 입법위원 방한
- 4.1.-3. 한·말레이시아 통상장관회담(Kuala Lumpur)
- 수석대표: 정재석 상공부장관 / Mahathir Bin Mohamad 부수상 겸 통상공업성장관
- 4.1.-11. 박동진 외무부장관 구주 순방
- 스위스(4.2.-5.), 스페인(4.6.-10.), 영국(4.10.-11.)
- 4.7.-13. 제126차 국제의원연맹(IPU) 이사회(Oslo, 노르웨이)
- 4.8.-12. Armacost, Michael H.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 및 태평양담당 부차관보 방한
- 4.8.-12. 한·미국 항공회담(Washington D.C.)
- 4.8.-12. 제1차 한·핀란드 공동위원회(서울)
- 수석대표: 정재석 상공부장관 / Rekola, E. 대외통상장관
- 4.8.-18. 한·호주 어업회담(Canberra)
- 4.10.-16. 제14차 한·대만(구 자유중국) 경제각료회담(Taipei)
- 수석대표: 이한빈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 / 장광세 경제부장
- 4.12.-13. Leifland, Leif 스웨덴 외무차관 방한
- 베트남(월남) 억류 한국 외교관 인솔

- 4.13.-17. 제3차 한·자메이카 상공장관회담(서울)
- 수석대표: 정재석 상공부장관 / Isaacs, William 상공부장관
- 4.14. 한·미국 외무장관회담(Washington D.C.)
- 수석대표: 박동진 외무부장관 / Vance, Cyrus R. 국무장관
- 4.18. 제12차 아시아태평양이사회(ASPAC) 사회문화센터 집행위원회 정기회의(서울)
- 4.24.-5.1. 제21차 아·아 법률자문위원회(AALCC) 총회(Jakarta)
- 수석대표: 함병춘 외교안보연구원 연구위원
- 4.26.-29. Eu, March Fong 미국 캘리포니아주 국무장관 방문
- 4.26.-5.1. 한국 과학기술대표단 이집트 방문
- 단장: 최형섭 한국과학원장
- 4.27.-30. 제3차 한·일본 의원안전보장협의회 총회(서울)
- 4.30.-5.2. 제13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총회(Manila)
- 수석대표: 김원기 재무부장관
- 5.1. 한·독일 간의 투자진흥 사업에 관한 제2차 각서교환 소급 발효(외무부고시 제63호)
- 5.2. 한·키리바시 외교관계 수립
- 5.3.-13. 김원기 재무부장관 미국 방문
- 5.4.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한국에 대하여 발효(조약 제707호)
- 5.5.-7. 양윤세 특사(동력자원부장관) 나이지리아 방문
- 5.5.-23. 제33차 세계보건기구(WHO) 총회(Geneva)
- 수석대표: 진의중 보건사회부장관
- 5.6.-9. 한·노르웨이 해운회담(서울)
- 5.11.-15. 최규하 대통령 중동 방문
- 사우디아라비아(5.11.-13.), 쿠웨이트(5.13.-15.)
- 5.12. 제1차 한·말레이시아 정책협의회(서울)
- 수석대표: 이문용 외무부차관 / Zakaria 외무차관
- 5.12.-15. 제22차 아시아생산성기구(APO) 이사회(도쿄)
- 수석대표: 김선길 상공부 경공업차관보
- 5.12.-19. 제3차 한·프랑스 어업회담(Paris)
- 수석대표: 권동만 주프랑스대사관 공사

- 5.15.-19. 최종완 건설부장관 오만, 카타르 방문
- 5.18. 미국 국무부 한국 계엄령 확대에 우려 표명 성명
- 5.19. 제3차 한·덴마크 경제협력위원회 합동회의(서울)
- 5.19.-24. 제10차 한·독일 경제 실무자회담(Bonn)
 - 수석대표: 차화준 경제기획원 경제협력차관보 / Klamser, Franz 경제협력성 아주 총국장
- 5.22. 주암스테르담(네덜란드)총영사관 개설
- 5.22. 주시모노세키(일본)총영사관 개설(영사관에서 승격)
- 5.22. 주센다이(일본)총영사관 개설(영사관에서 승격)
- 5.26.-31. 제48차 국제수역국(IOC) 총회(Paris)
 - 수석대표: 이창구 농촌진흥청 가축위생연구소장
- 5.28. 한·세이셸 단교
 - 1976.6.28. 외교관계 수립
- 5.29. 제2차 한·스위스 경제협력위원회 합동회의(서울)
 - 수석대표: Jacobi, Klaus 경제성 대사
- 6.2.-13. 제45차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총회(Stockholm)
 - 수석대표: 한재열 공업진흥청 차장
- 6.3.-6. 제6차 세계식량이사회(WFC) 총회(Arusha, 탄자니아)
- 6.4. 한·독일 간의 광산재해방지 사업의 확장을 위한 각서교환, 발효
(외무부고시 제54호)
- 6.9.-10. 제5차 한·미국 경제협의회 합동회의(서울)
- 6.13.-25. 제10차 국제최고회계감사기관기구(INTOSAI) 총회(Nairobi, 케냐)
 - 수석대표: 동홍욱 감사원 사무총장
- 6.16.-20. 제6차 국제법정계량기구(IOLM) 총회(Washington D.C.)
 - 수석대표: 나창수 공업진흥청 기술지도국장
- 6.18. 한·투발루 간의 어업협정 서명, 발효(조약 제710호)
- 6.18. 한·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외교관계 수립
- 6.18.-19. 1980년도 제1차 한·일본 생사료회담(서울)
- 6.18.-19. 제3차 한·필리핀 민간 경제협력위원회 합동회의(서울)

- 6.19. 주한 노르웨이대사관 개설
- 6.23.-27. 제16차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 아프리카개발기금(ADF) 총회(Abidjan, 코트디부아르)
 - 수석대표: 김원기 재무부장관
- 6.25. 주한 파키스탄총영사관 개설
- 6.26.-27. 제5차 한·네덜란드 혼성위원회(The Hague)
 - 수석대표: 한탁채 외무부 국제경제국장 / Huibregtse, J.W.A. 경제성
대외경제협력국장
- 6.30. 제13차 아시아태평양이사회(ASPAC) 사회문화센터 집행위원회 정기회의(서울)
- 7.10.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6조, 제16조 및 제26조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협정, 한국에 대하여 발효(조약 제709호)
- 7.12.-14. Solarz, Stephen J. 미국 하원 의원 방한
- 7.14. 중국(구 중공), 북한의 한반도 통일방안 지지 및 주한미군 철수 요구
- 7.14.-31. 유엔 세계여성회의(Copenhagen)
 - 수석대표: 이매리 대한적십자사 부총재
- 7.15. 한·스리랑카 간의 투자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발효(3.28. 서명, 조약 제711호)
- 7.21.-23. 한·영국 해운회담(서울)
- 7.28.-8.29.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제9회기 속개회의(Geneva)
 - 수석대표: 함병춘 주유엔대사
- 7.30.-31. 제7차 한·일본 경제협력 실무자회담(도쿄)
- 8.4. 주앵커리지(미국)총영사관 개설
- 8.4. 한·세네갈 간의 문화협정 발효(조약 제712호)
- 8.4.-6. 제1차 한·네덜란드 해운회담(서울)
 - 수석대표: 김정훈 외무부 통상국장 / Timmermans, J.M. 교통·공공사업성 해운국장
- 8.5.-7. 도초카 다자와 일본 자민당 참의원 방한
- 8.6. 한·이탈리아 [민간] 경제협력위원회 합동회의(서울)
 - 수석대표: Giacometti, Delio 대외통상차관
- 8.7. 제2차 한·뉴질랜드 경제협력위원회 합동회의(Wellington)

- 8.7.-8. 제11차 한·뉴질랜드 통상장관회담(Wellington)
- 수석대표: 신병현 상공부장관 / Talboys, B.E. 부수상 겸 외상 겸 대외무역상
- 8.9.-24. 브라질 불법체류자 문제 해결을 위한 비공식 회담
- 수석대표: 신동원 외무부 경제차관보
- 8.14.-15. 제11차 한·호주 통상장관회담(Canberra)
- 수석대표: 신병현 상공부장관 / Anthony, J.D. 부수상 겸 무역자원장관
- 8.15. 주몬트리올(캐나다)총영사관 개설
- 8.19. 제3차 한·인도네시아 경제협력위원회 합동회의(Jakarta)
- 8.25. 한·쿵제도 간의 어업협정 서명, 발효(조약 제713호)
- 8.27.-29. 한·스위스 항공회담(서울)
- 9.1. 전두환 제11대 대통령 취임
- 9.1. 한·세네갈 간의 경제기술협력협정 발효(조약 제714호)
- 9.2. 남덕우 제14대 국무총리 취임
- 9.2. 노신영 제18대 외무부장관 취임
- 9.8. 미국, 대북한 금수조치 1년간 연장
- 9.9.-15. 제31차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 지역회의(Manila)
- 수석대표: 장경식 보건사회부 의정국장
- 9.14.-24. 제67차 국제의원연맹(IPU) 총회 및 제127차 이사회(East-Berlin)
- 수석대표: 박준규 의원
- 9.16.-17. 1980년도 제2차 한·일본 생사료회담(도쿄)
- 9.16.-10.7. 제23차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총회(Montreal)
- 수석대표: 성기용 교통부 항공국장
- 9.16.-12.17. 제35차 유엔총회
- 9.22.-26. 제24차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Vienna)
- 수석대표: 심명원 주오스트리아대사
- 9.23.-10.28. 제21차 유네스코 총회(Beograd, 유고슬라비아)
- 수석대표: 민병기 주프랑스대사
- 9.24.-26. 후쿠다 다케오 전 일본 수상 방한

- 9.25. 북한, 남북 총리회담을 위한 남북 실무대표단 전용 직통전화 중단
- 9.30.-10.3. 제35차 국제통화기금(IMF) /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총회(Washington D.C.)
- 수석대표: 이승윤 재무부장관
- 10.2.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한국에 대하여 발효(조약 제715호)
- 10.5.-11. 제16차 아시아태평양의원연맹(APPU) 총회(Taipei)
- 수석대표: 서상린 의원
- 10.8.-11. 제2차 한·영국 정책협의회(서울)
- 수석대표: 노신영 외무부장관 / Youde, Edward 외무성 부차관
- 10.9. 국제전기통신위성기구(INTELSAT)의 특권, 면제 및 면책에 관한 의정서, 한국에 대하여 발효(조약 제720호)
- 10.13. 제3차 한·칠레 경제협력위원회 합동회의(서울)
- 10.14.-17. 제4차 한·미국 원자력 및 기타 에너지 기술에 관한 공동상설위원회(Washington D.C.)
- 수석대표: 이병휘 과학기술처 원자력위원 / Nosenzo, Louis V. 국무부 원자력 및 에너지 기술문제담당 부차관보
- 10.16.-21. Armacost, Machael H.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 및 태평양담당 부차관보 방한
- 10.20. 한·일본 북해도 및 제주도 주변수역 조업 문제에 관한 합의서 교환
- 10.20.-24. 제6차 국제전기통신위성기구(INTELSAT) 가입국 총회(Venice, 이탈리아)
- 수석대표: 김정렬 체신부 전무국장
- 10.21. 제7차 한·멕시코 경제협력위원회 합동회의(서울)
- 10.24. 한·칠레 간의 항공협정 발효(조약 제719호)
- 11.1.-5. 제6차 한·벨기에 통상장관회담(서울)
- 수석대표: 서석준 상공부장관 / Urbain, Robert 대외통상장관
- 11.4. 제16차 유엔식량농업기구(FAO) 국제포프라위원회 회의(Izmir, 튀르키예)
- 수석대표: 현신규 국립임목육종연구소장
- 11.4. 파나마 운하 영구중립과 운영에 관한 조약 의정서, 한국에 대하여 발효(조약 제718호)
- 11.5. 제5차 한·프랑스 민간경제위원회 합동회의(서울)
- 11.5. 한·바누아투 외교관계 수립

- 11.12.-14. 제1차 한·콜롬비아 자원협력위원회(Bogota)
- 수석대표: 최동규 동력자원부차관 / Giraldo Neira, Luis E. 광산동력차관
- 11.14.-15. 1980년도 제3차 한·일본 생사료회담(서울)
- 11.14.-12.4. 특별사절단 서남아 및 중동(싱가포르, 스리랑카, 태국, 인도, 파키스탄, 이집트, 수단, 리비아) 순방
- 단장: 최광수 무임소장관
- 11.15.-12.7. 노신영 외무부장관 아프리카(가봉, 코트디부아르, 카메룬, 세네갈, 가나, 감비아) 순방
- 11.16.-19. Albrecht, Anthony C.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 경제담당 부차관보 방한
- 11.16.-26. 서석준 상공부장관 아주 순방
- 말레이시아(11.16.-18.), 필리핀(11.19.-22.), 대만(구 자유중국)(11.23.-26.)
- 11.17.-12.13. 특별사절단 아프리카(모리셔스, 에스와티니(구 스와질란드), 보츠와나, 레소토, 말라위, 케냐) 순방
- 단장: 천명기 보건사회부장관
- 11.18. 한·가봉 간의 무역협정 발효(조약 제722호)
- 11.18. 한·가봉 간의 경제·기술·문화 및 과학협력에 관한 협정 발효(조약 제723호)
- 11.18. 한·가봉 간의 협력에 관한 한·가봉 공동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협정 발효(조약 제724호)
- 11.19.-22. 제2차 한·필리핀 통상장관회담(Manila)
- 수석대표: 서석준 상공부장관 / Villafuerte, L.R. 통상장관
- 11.19.-27. 제10차 미주기구(OAS) 총회(Washington D.C.)
- 수석대표: 오재희 주미국대사관 공사
- 11.20.-25. 제28차 콜롬보플랜(Colombo Plan) 자문위원회(Jakarta)
- 수석대표: 윤영교 주스리랑카대사
- 11.21. 한·케냐 간의 문화협정 발효(11.6. 서명, 조약 제721호)
- 11.23.-12.16. 특별사절단 중남미(코스타리카, 니카라과, 파나마, 페루, 아르헨티나, 브라질) 순방
- 단장: 박동진 전 외무부장관
- 11.24.-26. 제36차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총회(Geneva)
- 수석대표: 박쌍용 주제네바대사

- 11.26.-12.16. 특별사절단 중남미(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바베이도스, 수리남, 자메이카) 순방
 - 단장: 김용휴 총무처장관
- 11.28.-12.1. 제8차 아시아 노동장관회의(Manila)
 - 수석대표: 권중동 노동청장
- 12.1.-3. 제15차 한·일본 어업공동위원회(서울)
- 12.1.-5. 제43차 정부 간 해사자문기구(IMCO) 해사안전위원회(London)
 - 수석대표: 선준영 주영국대사관 참사관
- 12.1.-5. 세계기상기구(WMO) 기본조직 전문위원회(Geneva)
 - 수석대표: 서상문 중앙관상대 기상연구소장
- 12.2.-5.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 공업개발장관회의
 - 수석대표: 김선길 상공부차관
- 12.5. 주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대사관 개설
- 12.7.-12. 제3차 한·일본 대륙붕공동위원회
- 12.8.-10. 한·미국 섬유회담(Geneva)
- 12.8.-11. 제4차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총회(Rome)
 - 수석대표: 안광호 주이탈리아대사
- 12.10. 한·코트디부아르 문화협정 발효(조약 제705호)
- 12.11. 한국, 제4차 국제농업 개발기금(IFAD) 총회에서 1981-83년 임기의 교체이사국으로 피선
- 12.12. 한·솔로몬제도 간의 어업협정 발효(조약 제726호)
- 12.13. Brown, Harold 미국 국방장관 방한
- 12.15.-17. 한·구주공동체(EC) 섬유회담(Brussels)
- 12.15.-18. 한·프랑스 항공회담(Paris)
- 12.16. 주도미니카공화국대사관 개설
- 12.17. 주피지대사관 개설
- 12.18. 한·키리바시 간의 키리바시 연안에서의 어업에 관한 협정 발효(조약 제727호)
- 12.18.-19. 한·스리랑카 항공회담(서울)

- 12.19. 한·캐나다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 및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
발효(조약 제725호)
- 12.19. 한·프랑스 간의 어업협정 발효(조약 제717호)
- 12.26.-27. Solarz, Stephen J. 미국 하원 의원 방한
- 12.29. 한·리비아 외교관계 수립
- 1978.1.23. 영사관계 수립

대한민국 외교문서요약집

1980년

인쇄 | 2024년 6월 14일

발행 | 2024년 6월 28일

발행처 외교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8길 60

기획 외교부 기획조정실 외교사료팀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72

편찬위원 권기창, 류광철, 박강호, 송금영, 엄기영, 이강국,
이호성, 정인균

감수위원 하태운

인쇄 (사)한국장애인유권자연맹인쇄사업부